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29호

2024. 12. 19.(목)

서울특별시

# 목 차

## ◈ 자치법규 등

**[행정예고]**

제2024-3497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5

## ◈ 고 시

제2024-606호 2025년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 위탁·운영 고시 ····· 13
제2024-607호 2025년 장기수선계획 운영 교육 위탁·운영 고시 ····· 31
제2024-608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 제정 고시 ····· 35
제2024-609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36
제2024-610호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38
제2024-612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41
제2024-613호 문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54
제2024-614호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 56
제2024-61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7
제2024-616호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64
제2024-617호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2
제2024-6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102
제2024-620호 충정로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05
제2024-621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32
제2024-622호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56
제2024-623호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92
제2024-624호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취소 ····· 228
제2024-62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229
제2024-626호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 233
제2024-627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34

제2024-628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258
제2024-629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4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61

## ◈ 공 고

제2024-3411호 전문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 291
제2024-3432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292
제2024-3441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 293
제2024-3442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300
제2024-345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04
제2024-3458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 306
제2024-3462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공고 ····· 307
제2024-3464호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1-1공구) 공사완료 공고 ····· 308
제2024-347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309
제2024-3475호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310
제2024-3476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 330
제2024-3477호 시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철거)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333
제2024-3478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고 ····· 338
제2024-34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340
제2024-3483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354
제2024-348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355
제2024-3485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356
제2024-3486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57
제2024-3487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 358
제2024-3489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359
제2024-3492호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 ····· 361
제2024-3502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 363
제2024-3506호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 437

## ◈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규칙]

제1092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440
제1093호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 442

## ◈ 구 고 시

제2024-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중구) ····· 491
제2024-4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진구) ····· 493
제2024-1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고시(성북구) ····· 495
제2024-134호 도시계획시설[증산(가칭)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 496
제2024-16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마포구) ····· 504
제2024-108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강서구) ····· 506
제2024-16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동작구) ····· 508
제2024-16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동작구) ····· 509
제2024-17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동작구) ····· 510
제2024-1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동작구) ····· 511
제2024-17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동작구) ····· 512
제2024-17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동작구) ····· 513
제2024-17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동작구) ····· 514
제2024-17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동작구) ····· 515
제2024-1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 변경) 고시 (관악구) ····· 516
제2024-1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 변경) 고시 (관악구) ····· 520
제2024-1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 변경) 고시 (관악구) ····· 524
제2024-1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 변경) 고시 (관악구) ····· 527
제2024-1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 변경) 고시 (관악구) ····· 531
제2024-1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 변경) 고시 (관악구) ····· 535
제2024-1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 변경) 고시 (관악구) ····· 540
제2024-24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말죽거리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고시(서초구) ····· 543
제2024-2564호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 547
제2024-107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송파구) ····· 561
제2024-1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송파구) ····· 563
제2024-220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 565

## ◈ 구 공 고

제2024-1396호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조성계획(최초) 열람공고(광진구) ····· 571
제2024-1647호 -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동대문구) ····· 582
제2024-167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강북구) ····· 584
제2024-168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열람공고 (강북구) ····· 586
제2024-227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동작구) ····· 588
제2024-22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동작구) ····· 591
제2024-2472호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열람공고(강동구) ····· 594

## ◈ 사업소고시

제2024-3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97
제2024-39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98
제2024-39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98

## ◈ 사업소공고

제2024-7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금천소방서) ····· 599
제2024-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마포소방서) ····· 600
제2024-4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송파소방서) ····· 601

## ◈ 기 타

제2024-54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02
제2024-552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03
제2024-55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04
제2024-55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05

## 자치법규 등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97호**

###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기관(부서)별 공무직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관(부서)별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2,115명에서 2,083명으로 32명 감원 조정(안 제4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bjh982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F A X : 02-2133-0822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이 규정안은 확정된 훈령안이 아니므로 중요문서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 2,115명”을 “총 2,083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공무직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명)

| 부 서 별 | 계 | 일반 종사원 | 환경 정비원 | 도로 보수원 | 시설정비원 | | | | | | | 시설 청소원 | 시설 경비원 | 대민 종사원 |
|---|---|---|---|---|---|---|---|---|---|---|---|---|---|---|
| | | | | | 계 | 기계 | 전기 | 토목 | 건축 | 통신 | 기타 | | | |
| 총 계 | 2,083 | 319 | 492 | 81 | 440 | 234 | 143 | 8 | 16 | 11 | 28 | 431 | 210 | 110 |
| 본 청 | 270 | 105 | 15 | 0 | 64 | 26 | 27 | 0 | 6 | 0 | 5 | 81 | 5 | 0 |
| 민방위담당관 | 3 | | | | 2 | 1 | 1 | | | | | 1 | | |
| 소방행정과 | 18 | | | | 6 | 3 | 3 | | | | | 7 | 5 | 0 |
| 일자리정책과 | 21 | 21 | | | | | | | | | | | | |
| 복지정책과 | 3 | 3 | | | | | | | | | | | | |
| 어르신복지과 | 1 | 1 | | | | | | | | | | | | |
| 돌봄복지과 | 0 | 0 | | | | | | | | | | | | |
| 택시정책과 | 1 | 1 | | | | | | | | | | | | |
| 물류정책과 | 1 | 1 | | | | | | | | | | | | |
| 문화유산활용과 | 11 | 2 | 9 | | | | | | | | | | | |
| 건강관리과 | 1 | 1 | | | | | | | | | | | | |
| 감염병관리과 | 3 | 3 | | | | | | | | | | | | |
| 데이터전략과 | 4 | 4 | | | | | | | | | | | | |
| 정보시스템과 | 8 | 8 | | | | | | | | | | | | |
| 총무과 | 174 | 55 | | | 54 | 22 | 23 | | 4 | | 5 | 65 | | |
| 주택정책과 | 2 | 2 | | | | | | | | | | | | |
| 한옥건축자산과 | 1 | 1 | | | | | | | | | | | | |
| 광화문광장사업과 | 10 | | | | 2 | | | | 2 | | | 8 | | |
| 동물보호과 | 8 | 2 | 6 | | | | | | | | | | | |
| 직속기관 | 311 | 60 | 2 | 0 | 119 | 94 | 19 | 0 | 2 | 2 | 2 | 106 | 24 | 0 |
| 서울시립대학교 | 111 | 20 | | | 20 | 10 | 8 | | 2 | | 0 | 51 | 20 | |
| 보건환경연구원 | 24 | 8 | | | 10 | 4 | 4 | | | 2 | | 6 | | |
| 인재개발원 | 6 | | | | | | | | | | | 6 | | |

| 부 서 별 | 계 | 일반 종사원 | 환경 정비원 | 도로 보수원 | 시설정비원 | | | | | | | 시설 청소원 | 시설 경비원 | 대민 종사원 |
|---|---|---|---|---|---|---|---|---|---|---|---|---|---|---|
| | | | | | 계 | 기계 | 전기 | 토목 | 건축 | 통신 | 기타 | | | |
| 농업기술센터 | 9 | 7 | | | 2 | | | | | | 2 | | | |
| 서울종합방재센터 | 2 | | | | | | | | | | | 2 | | |
| 소방서 | 126 | 25 | | | 75 | 75 | | | | | | 26 | | |
| 소방학교 | 21 | | 2 | | 6 | 3 | 3 | | | | | 9 | 4 | |
| 시민안전체험관 | 12 | | | | 6 | 2 | 4 | | | | | 6 | | |
| 사업소 | 1,493 | 154 | 475 | 81 | 257 | 114 | 97 | 8 | 8 | 9 | 21 | 235 | 181 | 110 |
| 서울아리수본부 | 127 | 9 | 5 | | 54 | 21 | 21 | | | | 12 | 44 | 11 | 4 |
| 미래한강본부 | 142 | | 76 | | 6 | 1 | 1 | | 1 | 1 | 2 | 52 | 2 | 6 |
| 데이터센터 | 8 | | | | 3 | 3 | | | | | | 4 | 1 | |
| 시립어린이병원 | 39 | 7 | | | 9 | 4 | 5 | | | | | 10 | 2 | 11 |
| 시립서북병원 | 60 | 7 | | | 12 | 5 | 6 | | 1 | | | 8 | 9 | 24 |
| 시립은평병원 | 25 | 2 | | | 8 | 4 | 4 | | | | | 9 | 4 | 2 |
| 서울역사박물관 | 115 | 37 | | | 28 | 14 | 14 | | | | | 19 | 31 | |
| 한성백제박물관 | 77 | 41 | | | 14 | 4 | 4 | | 1 | 1 | 4 | 8 | 14 | |
| 서울시립미술관 | 45 | 3 | | | 13 | 8 | 5 | | | | | 16 | 9 | 4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56 | | 38 | | | | | | | | | | | 18 |
| 서울도서관 | 3 | 3 | | | | | | | | | | | | |
| 서울역사편찬원 | 5 | 4 | | | | | | | | | | 1 | | |
| 품질시험소 | 2 | | | | | | | | | | | 1 | 1 | |
| 동부도로사업소 | 25 | | 1 | 14 | 8 | 4 | 4 | | | | | 0 | 2 | |
| 서부도로사업소 | 17 | | 1 | 14 | | | | | | | | 0 | 1 | 1 |
| 남부도로사업소 | 19 | | 1 | 13 | | | | | | | | 1 | 3 | 1 |
| 북부도로사업소 | 20 | | 1 | 14 | | | | | | | | 2 | 1 | 2 |
| 성동도로사업소 | 16 | | 1 | 13 | | | | | | | | 2 | 0 | |
| 강서도로사업소 | 17 | | 1 | 13 | | | | | | | | 2 | | 1 |
| 중랑물재생센터 | 11 | | 3 | | 3 | 2 | | 1 | | | | 2 | 3 | |
| 난지물재생센터 | 7 | | 4 | | 1 | | | 1 | | | | 1 | | 1 |

| 부 서 별 | 계 | 일반 종사원 | 환경 정비원 | 도로 보수원 | 시설정비원 | | | | | | | 시설 청소원 | 시설 경비원 | 대민 종사원 |
|---|---|---|---|---|---|---|---|---|---|---|---|---|---|---|
| | | | | | 계 | 기계 | 전기 | 토목 | 건축 | 통신 | 기타 | | | |
| 서울대공원 | 180 | 6 | 55 | | 64 | 29 | 17 | 6 | 5 | 6 | 1 | 20 | 9 | 26 |
| 동부공원여가센터 | 66 | 2 | 52 | | | | | | | | | 5 | 5 | 2 |
| 중부공원여가센터 | 106 | 1 | 83 | | 3 | 1 | 2 | | | | | | 19 | |
| 서부공원여가센터 | 132 | | 90 | | 4 | 1 | 1 | | | | 2 | 4 | 28 | 6 |
| 북부공원여가센터 | 44 | | 26 | | 2 | 1 | 1 | | | | | | 16 | |
| 서울시립과학관 | 43 | 26 | | | 6 | 3 | 3 | | | | | 6 | 4 | 1 |
| 서울식물원 | 65 | 4 | 37 | | 11 | 5 | 5 | | | 1 | | 7 | 6 | |
| 서울기록원 | 2 | 2 | | | | | | | | | | | | |
| 아동복지센터 | 4 | | | | 2 | 1 | 1 | | | | | 2 | 0 | |
| 차량정비센터 | 0 | | | | | | | | | | | 0 | | |
| 공무원수련원 | 15 | | | | 6 | 3 | 3 | | | | | 9 | | |
| 의회사무처 | 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 | 0 | 0 |
| 의회사무처 | 9 | | | | | | | | | | | 9 | | |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4조(정원의 총수) ① 시 공무직의 정원은 총 2,115명으로 한다.<br>② (생 략) | 제4조(정원의 총수) ① 시 공무직의 정원은 총 2,083명으로 한다.<br>② (현행과 같음) |

## 현 행

〔별표〕 공무직 정원표 (제4조 관련)

| 부 서 별 | 계 | 일반 종사원 | 환경 정비원 | 도로 보수원 | 시설정비원 | | | | | | | 시설 청소원 | 시설 경비원 | 대민 종사원 |
|---|---|---|---|---|---|---|---|---|---|---|---|---|---|---|
| | | | | | 계 | 기계 | 전기 | 토목 | 건축 | 통신 | 기타 | | | |
| **총 계** | 2,115 | 323 | 515 | 81 | 440 | 233 | 144 | 8 | 16 | 11 | 28 | 421 | 219 | 116 |
| **본 청** | 270 | 108 | 15 | 0 | 64 | 26 | 27 | 0 | 6 | 0 | 5 | 76 | 6 | 1 |
| 민방위담당관 | 3 | | | | 2 | 1 | 1 | | | | | 1 | | |
| **빅데이터담당관** | 4 | 4 | | | | | | | | | | | | |
| **정보공개담당관** | 8 | 8 | | | | | | | | | | | | |
| 소방행정과 | 20 | | | | 6 | 3 | 3 | | | | | 7 | 6 | 1 |
| 일자리정책과 | 22 | 22 | | | | | | | | | | | | |
| 복지정책과 | 3 | 3 | | | | | | | | | | | | |
| **안심돌봄복지과** | 1 | 1 | | | | | | | | | | | | |
| 어르신복지과 | 1 | 1 | | | | | | | | | | | | |
| 택시정책과 | 1 | 1 | | | | | | | | | | | | |
| 물류정책과 | 1 | 1 | | | | | | | | | | | | |
| **문화재관리과** | 11 | 2 | 9 | | | | | | | | | | | |
| **보건의료정책과** | 1 | 1 | | | | | | | | | | | | |
| 감염병관리과 | 3 | 3 | | | | | | | | | | | | |
| 총무과 | 169 | 55 | | | 54 | 22 | 23 | | 4 | | 5 | 60 | | |
| 주택정책과 | 2 | 2 | | | | | | | | | | | | |
| **건축기획과** | 2 | 2 | | | | | | | | | | | | |
| 광화문광장사업과 | 10 | | | | 2 | | | | 2 | | | 8 | 0 | |
| 동물보호과 | 8 | 2 | 6 | | | | | | | | | | | |
| **직속기관** | 307 | 62 | 2 | 0 | 120 | 94 | 19 | 0 | 2 | 2 | 3 | 98 | 25 | 0 |
| 서울시립대학교 | 108 | 22 | | | 21 | 10 | 8 | | 2 | | 1 | 44 | 21 | |
| 보건환경연구원 | 24 | 8 | | | 10 | 4 | 4 | | | 2 | | 6 | | |
| 인재개발원 | 6 | | | | | | | | | | | 6 | | |
| 농업기술센터 | 9 | 7 | | | 2 | | | | | | 2 | 0 | | |
| 서울종합방재센터 | 1 | | | | | | | | | | | 1 | | |
| **119특수구조단** | 0 | | | | | | | | | | | 0 | | |
| 소방서 | 124 | 25 | | | 75 | 75 | | | | | | 24 | | |
| 소방학교 | 21 | | 2 | | 6 | 3 | 3 | | | | | 9 | 4 | |
| 시민안전체험관 | 14 | | | | 6 | 2 | 4 | | | | | 8 | | |
| **사업소** | 1,531 | 153 | 498 | 81 | 256 | 113 | 98 | 8 | 8 | 9 | 20 | 240 | 188 | 115 |
| 서울아리수본부 | 128 | 9 | 6 | | 53 | 21 | 21 | | | | 11 | 47 | 9 | 4 |

## 개 정 안

〔별표〕 공무직 정원표 (제4조 관련)

| 부 서 별 | 계 | 일반 종사원 | 환경 정비원 | 도로 보수원 | 시설정비원 | | | | | | | 시설 청소원 | 시설 경비원 | 대민 종사원 |
|---|---|---|---|---|---|---|---|---|---|---|---|---|---|---|
| | | | | | 계 | 기계 | 전기 | 토목 | 건축 | 통신 | 기타 | | | |
| **총 계** | 2,083 | 319 | 492 | 81 | 440 | 234 | 143 | 8 | 16 | 11 | 28 | 431 | 210 | 110 |
| **본 청** | 270 | 105 | 15 | 0 | 64 | 26 | 27 | 0 | 6 | 0 | 5 | 81 | 5 | 0 |
| 민방위담당관 | 3 | | | | 2 | 1 | 1 | | | | | 1 | | |
| 소방행정과 | 18 | | | | 6 | 3 | 3 | | | | | 7 | 5 | 0 |
| 일자리정책과 | 21 | 21 | | | | | | | | | | | | |
| 복지정책과 | 3 | 3 | | | | | | | | | | | | |
| 어르신복지과 | 1 | 1 | | | | | | | | | | | | |
| **돌봄복지과** | 0 | 0 | | | | | | | | | | | | |
| 택시정책과 | 1 | 1 | | | | | | | | | | | | |
| 물류정책과 | 1 | 1 | | | | | | | | | | | | |
| **문화유산활용과** | 11 | 2 | 9 | | | | | | | | | | | |
| **건강관리과** | 1 | 1 | | | | | | | | | | | | |
| 감염병관리과 | 3 | 3 | | | | | | | | | | | | |
| **데이터전략과** | 4 | 4 | | | | | | | | | | | | |
| **정보시스템과** | 8 | 8 | | | | | | | | | | | | |
| 총무과 | 174 | 55 | | | 54 | 22 | 23 | | 4 | | 5 | 65 | | |
| 주택정책과 | 2 | 2 | | | | | | | | | | | | |
| **한옥건축자산과** | 1 | 1 | | | | | | | | | | | | |
| 광화문광장사업과 | 10 | | | | 2 | | | | 2 | | | 8 | | |
| 동물보호과 | 8 | 2 | 6 | | | | | | | | | | | |
| **직속기관** | 311 | 60 | 2 | 0 | 119 | 94 | 19 | 0 | 2 | 2 | 2 | 106 | 24 | 0 |
| 서울시립대학교 | 111 | 20 | | | 20 | 10 | 8 | | 2 | | 0 | 51 | 20 | |
| 보건환경연구원 | 24 | 8 | | | 10 | 4 | 4 | | | 2 | | 6 | | |
| 인재개발원 | 6 | | | | | | | | | | | 6 | | |
| 농업기술센터 | 9 | 7 | | | 2 | | | | | | 2 | | | |
| 서울종합방재센터 | 2 | | | | | | | | | | | 2 | | |
| 소방서 | 126 | 25 | | | 75 | 75 | | | | | | 26 | | |
| 소방학교 | 21 | | 2 | | 6 | 3 | 3 | | | | | 9 | 4 | |
| 시민안전체험관 | 12 | | | | 6 | 2 | 4 | | | | | 6 | | |
| **사업소** | 1,493 | 154 | 475 | 81 | 257 | 114 | 97 | 8 | 8 | 9 | 21 | 235 | 181 | 110 |
| 서울아리수본부 | 127 | 9 | 5 | | 54 | 21 | 21 | | | | 12 | 44 | 11 | 4 |

## 현 행

〔별표〕 공무직 정원표 (제4조 관련)

| 부 서 별 | 계 | 일반 종사원 | 환경 정비원 | 도로 보수원 | 시설정비원 | | | | | | | 시설 청소원 | 시설 경비원 | 대민 종사원 |
|---|---|---|---|---|---|---|---|---|---|---|---|---|---|---|
| | | | | | 계 | 기계 | 전기 | 토목 | 건축 | 통신 | 기타 | | | |
| 미래한강본부 | 142 | | 76 | | 6 | 1 | 1 | | 1 | 1 | 2 | 52 | 2 | 6 |
| 데이터센터 | 8 | | | | 3 | 3 | | | | | | **3** | **2** | |
| 시립어린이병원 | **38** | 7 | | | 9 | 4 | 5 | | | | | **8** | **3** | 11 |
| 시립서북병원 | **62** | 7 | | | 12 | 5 | 6 | | 1 | | | **9** | 9 | **25** |
| 시립은평병원 | **24** | 2 | | | 8 | 4 | 4 | | | | | **7** | **5** | 2 |
| 서울역사박물관 | **118** | 37 | | | 28 | 14 | 14 | | | | | **21** | **32** | |
| 한성백제박물관 | **80** | 41 | | | 14 | 4 | 4 | | 1 | 1 | 4 | 8 | **17** | |
| 서울시립미술관 | **44** | 3 | | | 13 | 8 | 5 | | | | | 16 | **8** | 4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66** | | **44** | | | | | | | | | | | **22** |
| 서울도서관 | 3 | 3 | | | | | | | | | | | | |
| 서울역사편찬원 | 5 | 4 | | | | | | | | | | 1 | | |
| 품질시험소 | 2 | | | | | | | | | | | 1 | 1 | |
| 동부도로사업소 | **26** | | 1 | 14 | 8 | 4 | 4 | | | | | **1** | 2 | |
| 서부도로사업소 | **18** | | 1 | 14 | | | | | | | | **1** | 1 | 1 |
| 남부도로사업소 | **20** | | 1 | 13 | | | | | | | | **2** | 3 | 1 |
| 북부도로사업소 | 20 | | 1 | 14 | | | | | | | | 2 | 1 | 2 |
| 성동도로사업소 | **17** | | 1 | 13 | | | | | | | | 2 | **1** | |
| 강서도로사업소 | 17 | | 1 | 13 | | | | | | | | 2 | | 1 |
| 중랑물재생센터 | **10** | | 3 | | 3 | 2 | | 1 | | | | 2 | **2** | |
| 난지물재생센터 | 7 | | 4 | | 1 | | | 1 | | | | 1 | | 1 |
| 서울대공원 | 180 | **5** | **57** | | **66** | 29 | **19** | 6 | 5 | 6 | 1 | **17** | 9 | 26 |
| 동부공원여가센터 | **74** | 2 | **58** | | | | | | | | | **6** | **6** | 2 |
| 중부공원여가센터 | **110** | 1 | **87** | | 3 | 1 | 2 | | | | | | 19 | |
| 서부공원여가센터 | 132 | | **93** | | **2** | | | | | | 2 | 4 | **27** | 6 |
| 북부공원여가센터 | 44 | | 26 | | 2 | 1 | 1 | | | | | | 16 | |
| 서울시립과학관 | **47** | 26 | | | 6 | 3 | 3 | | | | | **8** | **6** | 1 |
| 서울식물원 | **67** | 4 | **38** | | 11 | 5 | 5 | | | 1 | | **8** | 6 | |
| 서울기록원 | 2 | 2 | | | | | | | | | | | | |
| 아동복지센터 | **5** | | | | 2 | 1 | 1 | | | | | 2 | **1** | |
| 차량정비센터 | **1** | | | | | | | | | | | **1** | | |
| 공무원수련원 | **14** | | | | 6 | 3 | 3 | | | | | **8** | | |
| **의회사무처** | **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 | **0** | **0** |
| 의회사무처 | **7** | | | | | | | | | | | **7** | | |

## 개 정 안

〔별표〕 공무직 정원표 (제4조 관련)

| 부 서 별 | 계 | 일반 종사원 | 환경 정비원 | 도로 보수원 | 시설정비원 | | | | | | | 시설 청소원 | 시설 경비원 | 대민 종사원 |
|---|---|---|---|---|---|---|---|---|---|---|---|---|---|---|
| | | | | | 계 | 기계 | 전기 | 토목 | 건축 | 통신 | 기타 | | | |
| 미래한강본부 | 142 | | 76 | | 6 | 1 | 1 | | 1 | 1 | 2 | 52 | 2 | 6 |
| 데이터센터 | 8 | | | | 3 | 3 | | | | | | **4** | **1** | |
| 시립어린이병원 | **39** | 7 | | | 9 | 4 | 5 | | | | | **10** | **2** | 11 |
| 시립서북병원 | **60** | 7 | | | 12 | 5 | 6 | | 1 | | | **8** | 9 | **24** |
| 시립은평병원 | **25** | 2 | | | 8 | 4 | 4 | | | | | **9** | **4** | 2 |
| 서울역사박물관 | **115** | 37 | | | 28 | 14 | 14 | | | | | **19** | **31** | |
| 한성백제박물관 | **77** | 41 | | | 14 | 4 | 4 | | 1 | 1 | 4 | 8 | **14** | |
| 서울시립미술관 | **45** | 3 | | | 13 | 8 | 5 | | | | | 16 | **9** | 4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56** | | **38** | | | | | | | | | | | **18** |
| 서울도서관 | 3 | 3 | | | | | | | | | | | | |
| 서울역사편찬원 | 5 | 4 | | | | | | | | | | 1 | | |
| 품질시험소 | 2 | | | | | | | | | | | 1 | 1 | |
| 동부도로사업소 | **25** | | 1 | 14 | 8 | 4 | 4 | | | | | **0** | 2 | |
| 서부도로사업소 | **17** | | 1 | 14 | | | | | | | | **0** | 1 | 1 |
| 남부도로사업소 | **19** | | 1 | 13 | | | | | | | | **1** | 3 | 1 |
| 북부도로사업소 | 20 | | 1 | 14 | | | | | | | | 2 | 1 | 2 |
| 성동도로사업소 | **16** | | 1 | 13 | | | | | | | | 2 | **0** | |
| 강서도로사업소 | 17 | | 1 | 13 | | | | | | | | 2 | | 1 |
| 중랑물재생센터 | **11** | | 3 | | 3 | 2 | | 1 | | | | 2 | **3** | |
| 난지물재생센터 | 7 | | 4 | | 1 | | | 1 | | | | 1 | | 1 |
| 서울대공원 | 180 | **6** | **55** | | **64** | 29 | **17** | 6 | 5 | 6 | 1 | **20** | 9 | 26 |
| 동부공원여가센터 | **66** | 2 | **52** | | | | | | | | | **5** | **5** | 2 |
| 중부공원여가센터 | **106** | 1 | **83** | | 3 | 1 | 2 | | | | | | 19 | |
| 서부공원여가센터 | 132 | | **90** | | **4** | **1** | **1** | | | | 2 | 4 | **28** | 6 |
| 북부공원여가센터 | 44 | | 26 | | 2 | 1 | 1 | | | | | | 16 | |
| 서울시립과학관 | **43** | 26 | | | 6 | 3 | 3 | | | | | **6** | **4** | 1 |
| 서울식물원 | **65** | 4 | **37** | | 11 | 5 | 5 | | | 1 | | **7** | 6 | |
| 서울기록원 | 2 | 2 | | | | | | | | | | | | |
| 아동복지센터 | **4** | | | | 2 | 1 | 1 | | | | | 2 | **0** | |
| 차량정비센터 | **0** | | | | | | | | | | | **0** | | |
| 공무원수련원 | **15** | | | | 6 | 3 | 3 | | | | | **9** | | |
| **의회사무처** | **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 | **0** | **0** |
| 의회사무처 | **9** | | | | | | | | | | | **9** | | |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06호

## 2025년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 위탁·운영 고시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한 “2025년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교육기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 교육대상자
   1)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교육(법 제70조제1항)
      ·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관리사무소장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2) 휴면자격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전 교육(법 제70조제2항)
      · 대상 : 휴면자격자(직전 5년이내 관리기구 및 주택관리업의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
      · 시기 : 배치 전
   3)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 교육(법 제70조제3항)
      · 대상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
      · 시기 : 3년 마다

# 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 총괄표

| 교육기관 | 교육구분 | 교육장 | 교육 형태 | 교육장소 | 교육 일시 | 교육 예정인원 |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 서울 교육장 | 비숙박 | 협회 평생교육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168) | 2025. 1.~12. | 100명/회 |
| | | 대전 교육장 | 숙박 | 한화리조트 대천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3길 11-10) | 2025. 4.~12. | |
| | | 온라인 과정 | 온라인 | 온라인 교육 | 2025. 1.~3. | |
| | 휴면자격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전 교육 | 서울 교육장 | 비숙박 | 협회 평생교육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168) | 2025. 4.~10. | 100명/회 |
| | | 대전 교육장 | 숙박 | 한화리조트 대천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3길 11-10) | 2025. 5.~11. | |
| | | 온라인 과정 | 온라인 | 온라인 교육 | 2025. 1.~3. | |
| |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 전국 시·도 | 비숙박 | 협회 평생교육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168) | 2025. 1.~11. | 100명/회 |
| | | 대전 교육장 | 숙박 | 한화리조트 대천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3길 11-10) | 2025. 3.~12. | |
| | | 경주 교육장 | | 한화리조트 경주 (경북 경주시 보문로 182-27) | 2025. 4.~12. | |
| | | 온라인 과정 | 온라인 | 온라인 교육 | 2025. 1.~3. | |
| |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과 동일(통합실시) | | | | |

1. 교육일시 및 장소, 시간

가.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 주택관리사보 휴면자격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전 교육(법 제70조제1항 따른 주택관리사보 배치교육에 통합하여 실시)

○ 교육비 : 집체(숙박 38만원, 비숙박 28만원), 온라인(13만원)

1) 교육장 및 교육형태

| 교육장명 | 장소 | 교육형태 | 비고 |
|---|---|---|---|
| 서울교육장 | 협회 평생교육원<br>(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168) | 집체<br>(비숙박) | - 기수 : 1월(1기), 2월(2기), 5월(4기), 10월(6기), 12월(9기) |
| 대천교육장 | 한화리조트 대천<br>(충남 보령시 해수욕장3길 11-10) | 집체<br>(숙박) | - 기수 : 4월(3기), 7월(5기), 11월(7기), 12월(8, 10기) |
| 온라인과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 - 기수 : 1월(1기), 2월(2기), 3월(3, 4기) |

2) 교육 일정

- 집체교육

| 구분 | 기수 | 교육기간 | 예정인원 | 교육형태 | 지역 |
|---|---|---|---|---|---|
| 보<br>(10회) | 1기 | 01.15 ~ 01.17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 2기 | 02.19 ~ 02.21 | 100명 | | |
| | 3기 | 04.16 ~ 04.18 | 100명 | 숙박 | 대천 |
| | 4기 | 05.28 ~ 05.30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 5기 | 07.16 ~ 07.18 | 100명 | 숙박 | 대천 |
| | 6기 | 10.15 ~ 10.17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 7기 | 11.12 ~ 11.14 | 100명 | 숙박 | 대천 |
| | 8기 | 12.17 ~ 12.19 | 100명 | | |
| | 9기 | 12.22 ~ 12.24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 10기 | 12.29 ~ 12.31 | 100명 | 숙박 | 대천 |

- 온라인교육

| 구분 | 기수 | 교육기간 | 예정인원 | 교육형태 | 지역 |
|---|---|---|---|---|---|
| 보<br>(4회) | 1기 | 1월 중 | 100명 | 온라인 | - |
| | 2기 | 2월 중 | 100명 | | |
| | 3기 | 3월 중 | 100명 | | |
| | 4기 | | 100명 | | |

※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진행 예정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 또는 '코로나19' 와 같은 비상상황의 경우 변경되거나 '온라인 과정' 으로 대체 될 수 있음

3) 교육 시간표

- 집체교육

<table>
<tr><th>시간 \ 요일</th><th>1일차</th><th>2일차</th><th>3일차</th></tr>
<tr><td>09:00-10:00</td><td rowspan="2"></td><td rowspan="4">사업자 선정지침<br>(3시간)</td><td rowspan="2">공동주택 노무일반<br>(2시간)</td></tr>
<tr><td>10:00-11:00</td><td>오리엔테이션<br>(1시간)</td></tr>
<tr><td>11:00-12:00</td><td rowspan="2">공동주택관리법령 주요내용<br>(2시간)</td><td>숙지도 평가 및 설문조사<br>(1시간)</td></tr>
<tr><td>12:00-13:00</td><td>중식(中食)</td><td>중식(中食)</td></tr>
<tr><td>13:00-14:00</td><td>중식(中食)</td><td rowspan="3">건설공사계약실무<br>(3시간)</td><td rowspan="2">관리사무소장<br>소양 및 윤리<br>(2시간)</td></tr>
<tr><td>14:00-15:00</td><td rowspan="2">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br>(2시간)</td></tr>
<tr><td>15:00-16:00</td><td rowspan="3"></td></tr>
<tr><td>16:00-17:00</td><td rowspan="2">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br>(2시간)</td><td rowspan="2">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br>(2시간)</td></tr>
<tr><td>17:00-18:00</td></tr>
</table>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교육

| 차시(시간) | | | 주 요 내 용 |
|---|---|---|---|
| 1과목 | 1차시 | 50 ‘ |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br>1. 재난상황(호우) 대응요령<br>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분쟁조정<br>3. 갑질예방(갑질방지 및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
| 2과목 | 2차시 | 50 ‘ | 【공동주택관리법령 주요내용】<br>1.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관리규약 등<br>2.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관련 법령 등 |
| | 3차시 | 50 ‘ | |
| 3과목 | 4차시 | 50 ‘ |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br>1. 주택관리사보로서 필요한 소양 및 윤리 |
| | 5차시 | 50 ‘ | |
| 4과목 | 6차시 | 50 ‘ | 【건설공사계약실무】<br>1. 개요<br>2. 도급계약서<br>3. 계약서 살펴보기<br>4. 계약 조항 살펴보기<br>5. 기타 사항 |
| | 7차시 | 50 ‘ | |
| | 8차시 | 50 ‘ | |
| 5과목 | 9차시 | 50 ‘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br>1. 공동주택의 회계<br>2. 핵심감사사항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및 산출<br>3. 회계감사의 근거 법령 |
| | 10차시 | 50 ‘ | |
| 6과목 | 11차시 | 50 ‘ | 【공동주택 노무일반】<br>1. 근로계약 체결 시 법률문제<br>2. 근로기준법상 적용범위 |
| | 12차시 | 50 ‘ | |
| 7과목 | 13차시 | 50 ‘ |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br>1. 시설별 안전관리<br>2. 안전유지관리 매뉴얼 |
| | 14차시 | 50 ‘ | |
| 8과목 | 15차시 | 50 ‘ |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br>1. 민원 사례의 분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무 등<br>2. 관리비, 장기수선계획, 하지보수, 행위허가 등 |
| | 16차시 | 50 ‘ | |

| 차시(시간) | | | 주 요 내 용 |
|---|---|---|---|
| 9과목 | 17차시 | 50 ‘ | 【사업자 선정지침】<br>1. 선정지침의 이해<br>2. 입찰 업무 프로세스<br>3. 입찰과정과 계약 작성 실무능력 |
| | 18차시 | 50 ‘ | |
| | 19차시 | 50 ‘ | |
| 10과목 | 20차시 | 50 ‘ | 【설문조사 및 숙지도 평가】 |

4) 교육과목별 세부내용

| 과목명 | 주요내용 | 강의목표 |
|---|---|---|
| 공동주택관리법령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관련 규정 주요사항<br>◦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요 쟁점별 규정 내용<br>◦기타 공동주택관리관련 규정별 주요 내용<br>◦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관련 법령 등 | ◦공동주택관리법 근거한 관리주체 업무처리 도모 |
|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 ◦주택관리사보로서 자기관리<br>◦일의 정서적 측면 | ◦자기관리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 |
| 건설공사계약실무 | ◦입찰 및 계약 관계 법령<br>◦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br>◦공동주택 입찰 실무<br>◦공동주택 계약 실무<br>◦입찰 관련 각 종 서식 | ◦법령을 준수한 흠결없는 사업자 선정<br>◦사업자 선정지침 준수<br>◦투명한 입찰 행정 |
| 공동주택의 회계처리기준 | ◦감리결과 양정기준<br>◦회계감사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br>◦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및 산출<br>◦회계 감사 의견 사례 |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회계업무의 전반적 이해와 회계상태 진단능력 강화<br>◦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격증빙 도모 |
| 공동주택 노무일반 |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br>◦법정근로조건<br>◦여성, 연소자 특별보호, 남녀고용평등<br>◦인사 이동<br>◦징계, 해고 및 퇴직<br>◦취업규칙 | ◦근로기준에 적합한 인사행정 도모. |
|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별 안전관리<br>◦안전유지관리 매뉴얼 | ◦시설별 안전관리 및 정비 도모 |
|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 ◦관리주체<br>◦입주자대표회의 | ◦최근 주무부처의 민원사례 중심으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 |

| 과목명 | 주요내용 | 강의목표 |
|---|---|---|
| | ◦선거관리위원회<br>◦관리규약<br>◦관리비등<br>◦장기수선계획<br>◦하자보수<br>◦행위허가 | |
| 사업자 선정지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관례 기준의 이해<br>◦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이해 |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대한 학습 등 법령 이해능력 함양 |
|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 | ◦층간소음 대응<br>◦재해·재난 시 대응 요령<br>◦갑질에 대한 자세 등<br>◦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br>◦재해·재난 시 대응 능력 강화 |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하여 각 과목의 특성에 맞춰 3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나.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 주택관리사 휴면자격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전 교육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배치교육에 통합하여 실시)

○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배치교육에 통합하여 실시)

○ 교육비 : 집체(숙박 38만원, 비숙박 28만원), 온라인(13만원)

1) 교육장 및 교육형태

| 교육장명 | 장소 | 교육형태 | 비고 |
|---|---|---|---|
| 서울교육장 | 협회 평생교육원<br>(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168) | 집체<br>(비숙박) | - 기수 : 4월(1기), 6월(3기), 8월(5기), 10월(7기) |
| 대천교육장 | 한화리조트 대천<br>(충남 보령시 해수욕장3길 11-10) | 집체<br>(숙박) | - 기수 : 5월(2기), 7월(4기), 9월(6기), 11월(8기) |
| 온라인과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 - 기수 : 1월(1기), 2월(2기), 3월(3기), 4월(4기), 5월(5기), 6월(6기), 7월(7기), 8월(8기), 9월(9기), 10월(10기), 11월(11기), 12월(12기) |

2) 교육 일정

- 집체교육

| 구분 | 기수 | 교육기간 | 예정인원 | 교육형태 | 지역 |
|---|---|---|---|---|---|
| 사<br>(8회) | 1기 | 04.09 ~ 04.11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 2기 | 05.14 ~ 05.16 | 100명 | 숙박 | 대천 |
| | 3기 | 06.25 ~ 06.27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 4기 | 07.09 ~ 07.11 | 100명 | 숙박 | 대천 |
| | 5기 | 08.20 ~ 08.22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 6기 | 09.17 ~ 09.19 | 100명 | 숙박 | 대천 |
| | 7기 | 10.29 ~ 10.31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 8기 | 11.26 ~ 11.28 | 100명 | 숙박 | 대천 |

- 온라인교육

| 구분 | 기수 | 교육기간 | 예정인원 | 교육형태 | 지역 |
|---|---|---|---|---|---|
| 사<br>(3회) | 1기 | 1월 중 | 100명 | 온라인 | - |
| | 2기 | 2월 중 | 100명 | | |
| | 3기 | 3월 중 | 100명 | | |

※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진행 예정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 또는 '코로나19' 와 같은 비상상황의 경우 변경되거나 '온라인 과정' 으로 대체 될 수 있음

3) 교육 시간표

– 집체교육

<table>
<tr><th>시간 \ 요일</th><th>1일차</th><th>2일차</th><th>3일차</th></tr>
<tr><td>09:00-10:00</td><td rowspan="2"></td><td rowspan="3">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br>(3시간)</td><td rowspan="2">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br>(2시간)</td></tr>
<tr><td>10:00-11:00</td><td>오리엔테이션<br>(1시간)</td></tr>
<tr><td>11:00-12:00</td><td rowspan="2">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br>(2시간)</td><td>숙지도 평가 및 설문조사<br>(1시간)</td></tr>
<tr><td>12:00-13:00</td><td>중식(中食)</td><td>중식(中食)</td></tr>
<tr><td>13:00-14:00</td><td>중식(中食)</td><td rowspan="2">관리비 징수납부<br>(2시간)</td><td rowspan="2">관리사무소장<br>소양 및 윤리<br>(2시간)</td></tr>
<tr><td>14:00-15:00</td><td rowspan="2">공동주택 회계감사<br>(2시간)</td></tr>
<tr><td>15:00-16:00</td><td rowspan="3">입찰 및 계약<br>(3시간)</td><td rowspan="3"></td></tr>
<tr><td>16:00-17:00</td><td rowspan="2">소통하는 공동주택<br>(2시간)</td></tr>
<tr><td>17:00-18:00</td></tr>
</table>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교육

| 차시(시간) | | | 주 요 내 용 |
|---|---|---|---|
| 1과목 | 1차시 | 50 ‘ |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br>1. 재난상황(호우) 대응요령<br>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분쟁조정<br>3. 갑질예방(갑질방지 및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
| 2과목 | 2차시 | 50 ‘ |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br>1.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br>2. 관리방법결정, 관리규약 등<br>3.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관리주체 업무처리 도모 |
| | 3차시 | 50 ‘ | |
| | 4차시 | 50 ‘ | |
| 3과목 | 5차시 | 50 ‘ |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br>1. 주택관리사로서 필요한 소양 및 윤리 |
| | 6차시 | 50 ‘ | |
| 4과목 | 7차시 | 50 ‘ | 【소통하는 공동주택】<br>1. 소통의 중요성<br>2. 관리사무소장, 직원, 입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
| | 8차시 | 50 ‘ | |
| 5과목 | 9차시 | 50 ‘ | 【공동주택 회계감사】<br>1. 핵심감사사항<br>2. 관련법령과 규정<br>3. 실무 참고사항(회계오류 등) |
| | 10차시 | 50 ‘ | |
| 6과목 | 11차시 | 50 ‘ |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br>1. 공사 발주 및 시공 절차에 따른 업무 검토 및 조정<br>2. 발주 서류 작성 등 |
| | 12차시 | 50 ‘ | |
| 7과목 | 13차시 | 50 ‘ | 【관리비 징수납부】<br>1. 관리비 징수 절차 |
| | 14차시 | 50 ‘ | |
| 8과목 | 15차시 | 50 ‘ | 【공동주택 민원회신 사례】<br>1. 주무부처 민원 사례 중심으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br>: 하자보수, 관리업무, 장기수선계획, 입주자대표회의 등 |
| | 16차시 | 50 ‘ | |

| 차시(시간) | | | 주 요 내 용 |
|---|---|---|---|
| 9과목 | 17차시 | 50 ‘ | 【입찰 및 계약】<br>1. 선정지침의 이해<br>2. 입찰업무 프로세스<br>3. 입찰과정과 계약 작성 실무능력 배양 |
| | 18차시 | 50 ‘ | |
| | 19차시 | 50 ‘ | |
| 10과목 | 20차시 | 50 ‘ | 【설문조사 및 숙지도 평가】 |

4) 교육과목별 세부내용

| 과목명 | 주요내용 | 강의목표 |
|---|---|---|
|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br>관리방법결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관리비 및 회계운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공동주택의 분쟁조정 등 |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근거한 관리주체 업무처리 도모 |
|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 ◦주택관리사로서 자기관리<br>◦일의 정서적 측면 | ◦자기관리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 |
| 소통하는 공동주택 | ◦공동주택 소통의 중요성, 종류 및 방법<br>◦게시판의 관리 및 인터넷카페 활용<br>◦회의 진행을 위한 프리젠테이션<br>◦노트북과 컴퓨터 모니터 활용한 진행<br>◦PT 슬라이드 작성 | ◦공동주택 게시판 우수 사례 전파<br>◦각종 현장설명회 대비 |
| 공동주택 회계감사 | ◦회계처리기준<br>◦회계처리 및 회계처리기준의 해설<br>◦회계감사 감리결과 양정기준<br>◦관리주체의 회계감사<br>◦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및 산출<br>◦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회계업무를 전반적 이해와 회계상태 진단능력 강화<br>◦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격증빙 도모 |
| 공동주택<br>수선공사 집행 | ◦착공단계의 업무<br>착공신고, 안전관리계획, 공사대장 및 시공계획서, 공사안내문<br>◦시공단계의 업무<br>공사기준 및 내용 숙지, 자재 검사 및 보관, 현장관리, 기성검사 및 대금지급<br>◦준공단계의 업무<br>준공검사원 접수 및 검사, 공사대금 정산 및 지급, 지체상금 및 지연이자 | ◦공동주택 수선공사 착공·시공·준공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제시<br>◦관리현장 활용(준용) 능력 배양<br>◦투명한 공사 집행 |
| 관리비 징수납부 | ◦관리비 징수 절차 | ◦관리비 징수 및 납부 업무처리 능력 도모 |

| 과목명 | 주요내용 | 강의목표 |
|---|---|---|
| 공동주택 민원회신 사례 | ◦관리주체<br>◦관리규약<br>◦관리비 등<br>◦장기수선계획<br>◦하자보수<br>◦행위허가<br>◦선거관리<br>◦입주자대표회의 | ◦최근 주무부처의 민원사례 중심으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 |
| 입찰 및 계약 | ◦입찰 및 계약 관계 법령<br>◦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br>◦공동주택 입찰 실무<br>◦공동주택 계약 실무<br>◦입찰 관련 각 종 서식 | ◦법령을 준수한 흠결 없는 사업자 선정<br>◦사업자 선정지침 준수<br>◦투명한 입찰 행정 |
|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 | ◦층간소음 대응<br>◦재해·재난 시 대응 요령<br>◦갑질에 대한 자세 등<br>◦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br>◦재해·재난 시 대응 능력 강화 |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하여 각 과목의 특성에 맞춰 3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 교육비 : 집체(숙박 38만원, 비숙박 28만원), 온라인(13만원)

1) 교육장소 및 교육형태

| 교육장명 | 장소 | 교육형태 | 비고 |
|---|---|---|---|
| 서울교육장 | 협회 평생교육원<br>(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168) | 집체<br>(비숙박) | - 기수 : 1월(1기), 4월(3, 6기), 5월(8기), 6월(12기), 7월(16기), 9월(18기), 10월(22기), 11월(24기) |
| 대천교육장 | 한화리조트 대천<br>(충남 보령시 해수욕장3길 11-10) | 집체<br>(숙박) | - 기수 : 3월(2기), 4월(4, 7기), 5월(9, 10기), 6월(13, 14 기), 8월(17기), 9월(19기), 10월(21기), 11월(23기), 12월(26기) |
| 경주교육장 | 한화리조트 경주<br>(경북 경주시 보문로 182-27) | | - 기수 : 4월(5기), 6월(11기), 7월(15기), 9월(20기), 12월(25기) |
| 온라인과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 - 기수 : 1월(1, 2기), 2월(3, 4기), 3월(5, 6기) |

2) 교육 일정

- 집체교육

| 구분 | 기수 | 교육기간 | 예정인원 | 교육형태 | 지역 |
|---|---|---|---|---|---|
| 보수<br>(26회) | 1기 | 01.22 ~ 01.24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구분 | 기수 | 교육기간 | 예정인원 | 교육형태 | 지역 |
|---|---|---|---|---|---|
| | 2기 | 03.12 ~ 03.14 | 100명 | 숙박 | 대천 |
| | 3기 | 04.02 ~ 04.04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 4기 | 04.09 ~ 04.11 | 100명 | 숙박 | 대천 |
| | 5기 | 04.16 ~ 04.18 | 100명 | 숙박 | 경주 |
| | 6기 | 04.23 ~ 04.25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 7기 | 04.28 ~ 04.30 | 100명 | 숙박 | 대천 |
| | 8기 | 05.14 ~ 05.16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 9기 | 05.21 ~ 05.23 | 100명 | 숙박 | 대천 |
| | 10기 | 05.28 ~ 05.30 | 100명 | 숙박 | 대천 |
| | 11기 | 06.03 ~ 06.05 | 100명 | 숙박 | 경주 |
| | 12기 | 06.11 ~ 06.13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 13기 | 06.18 ~ 06.20 | 100명 | 숙박 | 대천 |
| | 14기 | 06.25 ~ 06.27 | 100명 | 숙박 | 대천 |
| | 15기 | 07.02 ~ 07.04 | 100명 | 숙박 | 경주 |
| | 16기 | 07.09 ~ 07.11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 17기 | 08.27 ~ 08.29 | 100명 | 숙박 | 대천 |
| | 18기 | 09.03 ~ 09.05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 19기 | 09.17 ~ 09.19 | 100명 | 숙박 | 대천 |
| | 20기 | 09.24 ~ 09.26 | 100명 | 숙박 | 경주 |
| | 21기 | 10.15 ~ 10.17 | 100명 | 숙박 | 대천 |
| | 22기 | 10.29 ~ 10.31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 23기 | 11.11 ~ 11.13 | 100명 | 숙박 | 대천 |
| | 24기 | 11.25 ~ 11.27 | 100명 | 비숙박 | 서울 |
| | 25기 | 12.09 ~ 12.11 | 100명 | 숙박 | 경주 |
| | 26기 | 12.22 ~ 12.24 | 100명 | 숙박 | 대천 |

– 온라인교육

| 구분 | 기수 | 교육기간 | 예정인원 | 교육형태 | 지역 |
|---|---|---|---|---|---|
| 보수<br>(6회) | 1기 | 01.06 ~ 01.19 | 100명 | 온라인 | – |
| | 2기 | 01.20 ~ 02.02 | 100명 | | |
| | 3기 | 02.03 ~ 02.16 | 100명 | | |
| | 4기 | 02.17 ~ 03.02 | 100명 | | |
| | 5기 | 03.03 ~ 03.16 | 100명 | | |
| | 6기 | 03.17 ~ 03.30 | 100명 | | |

※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진행 예정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의 경우 변경되거나 ‘온라인 과정’으로 대체 될 수 있음

3) 교육 시간표

- 집체교육

<table>
<tr><th>요일<br>시간</th><th>1일차</th><th>2일차</th><th>3일차</th></tr>
<tr><td>09:00-10:00</td><td></td><td rowspan="3">입찰과 계약<br>(3시간)</td><td rowspan="2">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br>(2시간)</td></tr>
<tr><td>10:00-11:00</td><td>오리엔테이션<br>(1시간)</td></tr>
<tr><td>11:00-12:00</td><td rowspan="2">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br>(2시간)</td><td>숙지도 평가 및 설문조사<br>(1시간)</td></tr>
<tr><td>12:00-13:00</td><td>중식(中食)</td><td>중식(中食)</td></tr>
<tr><td>13:00-14:00</td><td>중식(中食)</td><td rowspan="2">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br>(2시간)</td><td rowspan="2">주택관리사(보) 소양 및 윤리<br>(2시간)</td></tr>
<tr><td>14:00-15:00</td><td>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br>(1시간)</td></tr>
<tr><td>15:00-16:00</td><td rowspan="3">근로계약 및 취업규칙<br>(3시간)</td><td rowspan="3">공동주택 주요시설 교체 및 수리방법 등의 전문지식<br>(3시간)</td><td rowspan="3"></td></tr>
<tr><td>16:00-17:00</td></tr>
<tr><td>17:00-18:00</td></tr>
</table>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교육

| 차시(시간) | | | 주 요 내 용 |
|---|---|---|---|
| 1과목 | 1차시 | 50 ‘ |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br>1. 재난상황(호우) 대응요령<br>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분쟁조정<br>3. 갑질예방(갑질방지 및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
| 2과목 | 2차시 | 50 ‘ |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br>1.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 적용 시 주요 참조사항<br>2.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주요 쟁점별 관련 주요내용<br>3.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별 주요 내용 |
| | 3차시 | 50 ‘ | |
| | 4차시 | 50 ‘ | |
| 3과목 | 5차시 | 50 ‘ | 【주택관리사(보) 소양 및 윤리】<br>1. 주택관리사(보) 로서 필요한 소양 및 윤리 |
| | 6차시 | 50 ‘ | |
| 4과목 | 7차시 | 50 ‘ | 【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br>1. 하자보수절차 및 분쟁해결<br>2. 기타민원사례 |
| | 8차시 | 50 ‘ | |
| 5과목 | 9차시 | 50 ‘ |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br>1. 주무부처 민원 사례 중심으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br>: 하자보수, 관리업무, 장기수선계획,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련 |
| | 10차시 | 50 ‘ | |
| 6과목 | 11차시 | 50 ‘ | 【입찰과 계약】<br>1. 사업자 선정지침 이해<br>2. 입찰과정과 계약 작성 등 실무능력 배양 |
| | 12차시 | 50 ‘ | |
| | 13차시 | 50 ‘ | |
| 7과목 | 14차시 | 50 ‘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br>1. 채용 및 수습, 사용자와 근로자<br>2.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인사•행정 업무 처리 |
| | 15차시 | 50 ‘ | |
| | 16차시 | 50 ‘ | |
| 8과목 | 17차시 | 50 ‘ | 【공동주택 주요시설 교체 및 수리방법 등의 전문지식】<br>1. 시설별 안전관리<br>2. 안전유지관리 매뉴얼 |
| | 18차시 | 50 ‘ | |
| | 19차시 | 50 ‘ | |
| 9과목 | 20차시 | 50 ‘ | 【설문조사 및 숙지도 평가】 |

4) 교육과목별 세부내용

| 과목명 | 주요내용 | 강의목표 |
|---|---|---|
|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 적용 시 주요 참조사항<br>◦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요 쟁점별 관련 규정내용<br>◦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별 주요 내용<br>주요 공·사법령,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안전·방재관리 관련 주요 법령, 인사관리 관련 주요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와 관계된 법령의 개정 내용 이해 |
| 주택관리사(보) 소양 및 윤리 | ◦주택관리사(보)로서 자기관리<br>◦일의 정서적 측면 | ◦자기관리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 |
| 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 | ◦하자보수절차 및 분쟁해결<br>◦기타민원사례 | ◦하자보수절차를 통해 분재해결 능력강화 |
|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 ◦관리주체<br>◦입주자대표회의<br>◦선거관리위원회<br>◦관리규약<br>◦관리비등<br>◦장기수선계획<br>◦하자보수<br>◦행위허가 | ◦최근 주무부처의 민원사례 중심으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 |
| 입찰과 계약 | ◦입찰 및 계약 관계 법령<br>◦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br>◦공동주택 입찰 실무<br>◦공동주택 계약 실무<br>◦입찰 관련 각 종 서식 | ◦법령을 준수한 흠결 없는 사업자 선정<br>◦사업자 선정지침 준수<br>◦투명한 입찰 행정 |
| 공동주택 주요시설 교체 및 수리방법 등의 전문 지식 | ◦시설별 안전관리<br>◦안전유지관리 매뉴얼 | ◦공동주택 주요시설 교체와 수리방법을 통해 안전관리 능력 함양 |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 ◦채용 및 수습<br>◦사용자와 근로자<br>◦근로계약 체결 시 법률문제<br>◦근로시간, 휴일, 휴가<br>◦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br>◦여성 및 연소자 보호 |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인사 · 행정 업무처리 |
|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 | ◦층간소음 대응<br>◦재해·재난 시 대응 요령<br>◦갑질에 대한 자세 등<br>◦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br>◦재해·재난 시 대응 능력 강화 |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하여 각 과목의 특성에 맞춰 3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2. 교육강사 관련

가.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 과목 | 강사 | 비고 |
|---|---|---|
| 공동주택관리법령 주요내용 | 한영화 강사 | 변호사 한영화 사무소 |
|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 주현덕 강사 | 멘탈케어센터 |
| 건설공사계약실무 | 장시진 강사 | 주택관리공단 |
| 공동주택의 회계처리기준 | 최준호 강사 | 청석세무회계법인 |
| 공동주택 노무일반 | 김영규 강사 | 리더스노무법인 |
|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 이태봉 강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 최인석 강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 사업자 선정지침 | 이현숙 강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 | 유벽희 강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나.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 과목 | 강사 | 비고 |
|---|---|---|
|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 한영화 강사 | 변호사 한영화 사무소 |
|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 주현덕 강사 | 멘탈케어센터 |
| 소통하는 공동주택 | 유벽희 강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 공동주택 회계감사 | 최준호 강사 | 청석세무회계법인 |
|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 장시진 강사 | 주택관리공단 |
| 관리비 징수납부 | 한영화 강사 | 변호사 한영화 사무소 |
|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 최인석 강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 입찰 및 계약 | 김해경 강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 | 유벽희 강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다.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 공통과목 | 강사 | 비고 |
|---|---|---|
|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 한영화 강사 | 변호사 한영화 사무소 |
| 주택관리사(보) 소양 및 윤리 | 주현덕 강사 | 멘탈케어센터 |
| 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 | 한승복 강사 | 국토안전관리원 |
|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 최인석 강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 입찰과 계약 | 김해경 강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 공동주택 주요시설 교체 및 수리방법 등의 전문 지식 | 이태봉 강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 손강용 강사 | 대일노무법인 |
|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 | 유벽희 강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 상기 교육계획은 준비사항에 따라 일부조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07호

## 2025년 장기수선계획 운영 교육 위탁·운영 고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운영 교육”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교육기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 교육대상자
   1) 장기수선계획 운영교육(법 제29조제4항)
      · 대상 : 관리사무소장
      · 시기 : 필요시(비의무)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시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장기수선계획의 운영교육 총괄표

| 교육기관 | 교육구분 | 교육 일시 | 지역 | 교육장소 | 교육 형태 | 교육 예정인원 |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전산실무과정 | 2024. 1.~ 6. | 서울 | 협회 평생교육원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 비숙박 (1일, 8시간) | 200명 |
| | | 2024. 7.~ 12. | 서울 | 협회 평생교육원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 비숙박 (1일, 8시간) | 200명 |
| | 실무과정 | 2024. 1.~ 6. | 17개 시·도 | 지역별 교육장 | 비숙박 (1일, 8시간) | 1,000명 |
| | | 2024. 7.~ 12. | 17개 시·도 | 지역별 교육장 | 비숙박 (1일, 8시간) | 1,000명 |

1. 교육일시 및 장소 시간

1) 교육장 및 교육형태

– 전산실무과정 (교육비 – 비숙박 : 11만 8천원)

| 지역 | 장소 | 교육형태 | 비고 |
|---|---|---|---|
| 서울 | 협회 평생교육원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 비숙박 (1일, 8시간) | 8회 예정 (전산실습과정) |

– 실무과정 (교육비 – 비숙박 : 9만 8천원)

| 지역 | 장소 | 교육형태 | 비고 |
|---|---|---|---|
| 전국 | 지역별 교육장 | 비숙박 (1일, 8시간) | 1월 ~ 12월 중 20회 예정 |

※ 실무과정의 경우 지역별 세부 교육장은 대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교육 일정

– 장기수선계획 수립 · 조정교육(전산실무과정)

| 구분 | 교육기간 | 예정인원 | 교육형태 | 지역 |
|---|---|---|---|---|
| 상반기 | 1월 ~ 6월 | 200명 | 비숙박 | 서울 |
| 하반기 | 7월 ~ 12월 | 200명 | 비숙박 | |

– 장기수선계획 수립 · 조정교육(실무과정)

| 구분 | 교육기간 | 예정인원 | 교육형태 | 지역 |
|---|---|---|---|---|
| 상반기 | 1월 ~ 6월 | 1000명 | 비숙박 | 17개 시·도 |
| 하반기 | 7월 ~ 12월 | 1000명 | 비숙박 | |

※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진행 예정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 또는 '코로나19' 와 같은 비상상황의 경우 변경되거나 '온라인 과정' 으로 대체 될 수 있음

3) 교육 시간표

| 시 간 | 교육 내용 | | |
|---|---|---|---|
| ~08:45 | 교육등록 | | |
| 08:45~09:00 | 교육안내 | | |
| 09:00~13:00 | 1교시<br>(4시간) | - 장기수선계획 개관 및 조정실무<br>- 표준장기수선계획서 작성실무 | □장기수선제도의 변천<br>□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법령<br>□표준장기수선계획 작성<br>□질의 회신 |
| 13:00~14:00 | 중식(中食) | | |
| 14:00~18:00 | 2교시<br>(4시간) | - 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 활용<br>※노트북 활용 실습<br>(전산실무과정에만 해당됨) | □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 사용법<br>□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연<br>□수선공사의 이해 |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교육과목 및 내용

| 과목 | 교육목적 | 주요 내용 |
|---|---|---|
| 장기수선계획 개관 및 조정 실무 | ◦공동주택 공유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내구연한 연장<br>◦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br>◦표준장기수선계획서 수립(안)을 활용한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 ◦장기수선제도<br>◦장기수선계획운영 기준<br>◦장기수선계획 검토<br>◦질의 회신 사례 |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프로그램 | ◦장기수선공사 대상 공종 선정과 수량산출 및 단가 산정<br>◦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세대평형별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금액 산출<br>◦수립된 장기수선계획서 대상 시설의 노후화, 물가 등을 고려한 수선주기, 단가 등 조정 | ◦사용신청 및 변경, 단지정보 입력<br>◦장기수선공사 대상 항목관리<br>◦장기수선공사 항목별 정보 등록<br>수선주기, 소요수량, 단가<br>◦장기수선계획 현황보고서 작성<br>◦표준장기수선계획서 수립(안)에 의한 기준단지 시스템 활용<br>◦장기수선공사 항목에 대한 공종 및 재료의 이해 |

3. 교육 강사

| 과목 | 강사 | 비고 |
|---|---|---|
| 장기수선계획 운영 실무 | 우기성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 장기수선계획 운영시스템 활용 | 문시형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 상기 교육계획은 준비사항에 따라 일부조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https://new.khmais.net)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08호

##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 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원에 대하여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그 명칭을 제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원명칭 제정

| 연번 | 구분 | 공원세분 | 위치 | 규모(㎡) | 제정 공원명칭 | 비고 |
|---|---|---|---|---|---|---|
| 1 | 제정 | 소공원 | 중랑구 면목동 1537-1 | 1,221.8 | 빛길공원 | |
| 2 | 제정 | 소공원 | 중랑구 묵동 164-52 | 165.9 | 푸름공원 | |
| 3 | 제정 | 소공원 | 중랑구 묵동 396-2 | 854.6 | 마중공원 | |
| 4 | 제정 | 소공원 | 중랑구 면목동 1549-1 | 446.7 | 면목어울공원 | |
| 5 | 제정 | 소공원 | 중랑구 면목동 1544-2 | 1,261.8 | 꽃가람공원 | |
| 6 | 제정 | 소공원 | 중랑구 면목동 1548-1 | 500.2 | 소담공원 | |
| 7 | 제정 | 소공원 | 중랑구 망우동 603 | 1,121.9 | 다온공원 | |
| 8 | 제정 | 소공원 | 중랑구 망우동 625-1 | 1,286.9 | 잎새공원 | |
| 9 | 제정 | 소공원 | 중랑구 망우동 596 | 1,086.5 | 해길공원 | |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원도시정책과(☎02-2133-2020) 및 중랑구 공원녹지과(☎02-2094-2362)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09호

##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목적
   가. 입면의 다양한 변화로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하여 다채로운 도시경관의 창출, 가로변과 공공보행통로변에 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 조성, 새로운 보행경관 창출 계획
   나. 열린 주거문화 창출, 지역주민들의 소통을 위해 커뮤니티 시설 및 공공이용시설을 집약 배치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 신길13특별건축구역(획지1) |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 14,271.00 |

※ 신길13구역 면적 : 15,120㎡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 구역명 | 용 도 | 최고층수 | 비 고 |
|---|---|---|---|
| 신길13특별건축구역(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5층 | |

나. 특례적용사항

| 구역명 | 특례적용사항 | 적용 취지 |
|---|---|---|
| 신길13(획지1) 특별건축구역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 배제 | • 다채로운 디자인을 하기 위해 신길근린공원 변 주동은 고층으로 계획하고, 주변 학교 및 주거지에 인접한 동은 중층으로 계획하여 단지를 조화롭게 배치하기 위함. |

4.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9호(2024.10.4.)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름
※ 추후 신길재정비촉진계획(신길13구역) 변경 시 해당 내용에 따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관계 법령에 따름

6. 그밖에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개방형 주민공동시설로 운영

7.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02-2133-7219) 및 영등포구 주거사업과(☎02-2670-35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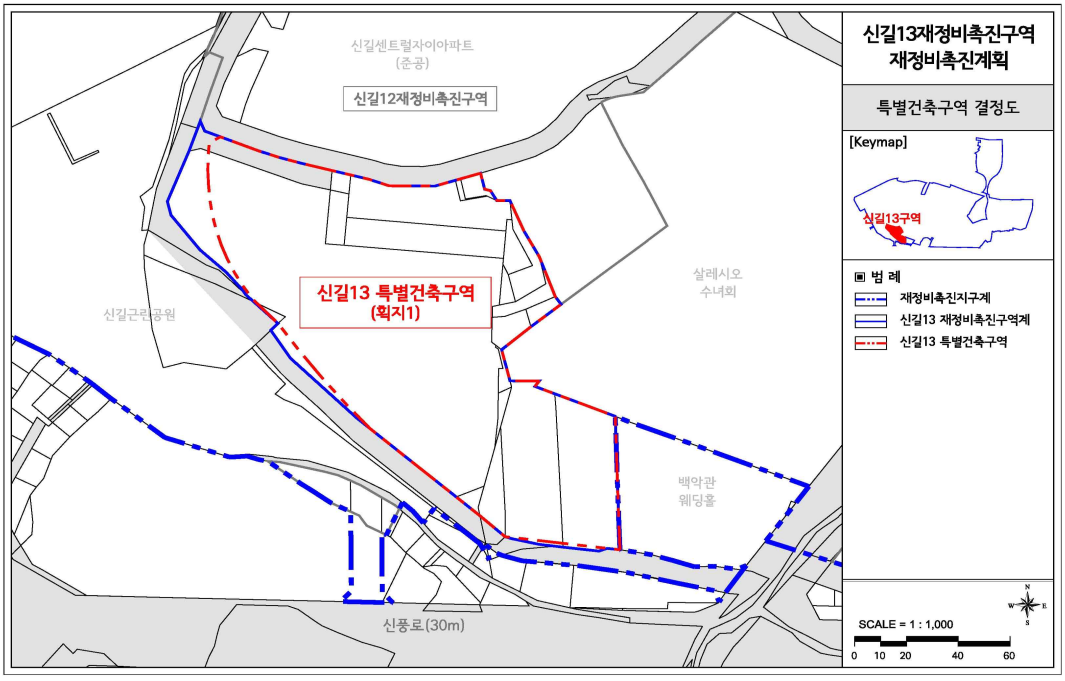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0호

##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 일대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대하여「건축법」제72조 제2항에 따라 2024년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2024.05.28.)를 거쳐 「건축법」제71조 제6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동 배치 및 스카이라인을 형성

나. 차고지 상부 녹지 공간 조성으로 지역의 휴식공간 제공 및 녹지축 연결 등 지역 연결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범 위 | 면적(㎡) |
|---|---|---|---|---|
| 1 |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특별건축구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62 일대 |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내 차고지복합용지 | 38,119.40 |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 구역명 | 주용도 | 면적(㎡) | 최고층수 |
|---|---|---|---|
|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특별건축구역 | 공동주택 및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38,119.40 | 25층 |

나. 특례 적용사항

| 구역명 | 특례 적용내용 | 특례 적용취지 |
|---|---|---|
|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특별건축구역 |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및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항 | - 버스차고지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차고지 화재와 교통안전을 고려한 버스박차장의 층별면적 최대화와 시설별 분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br>- 주동의 남측 배치를 통한 상부 녹지공간 조성으로 지역의 휴식공간 제공 및 녹지축 연결 등 지역 연결성과 공공성 확보 |

4.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공공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따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에 따름

6.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70),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체도시설계부(☎02-3410-769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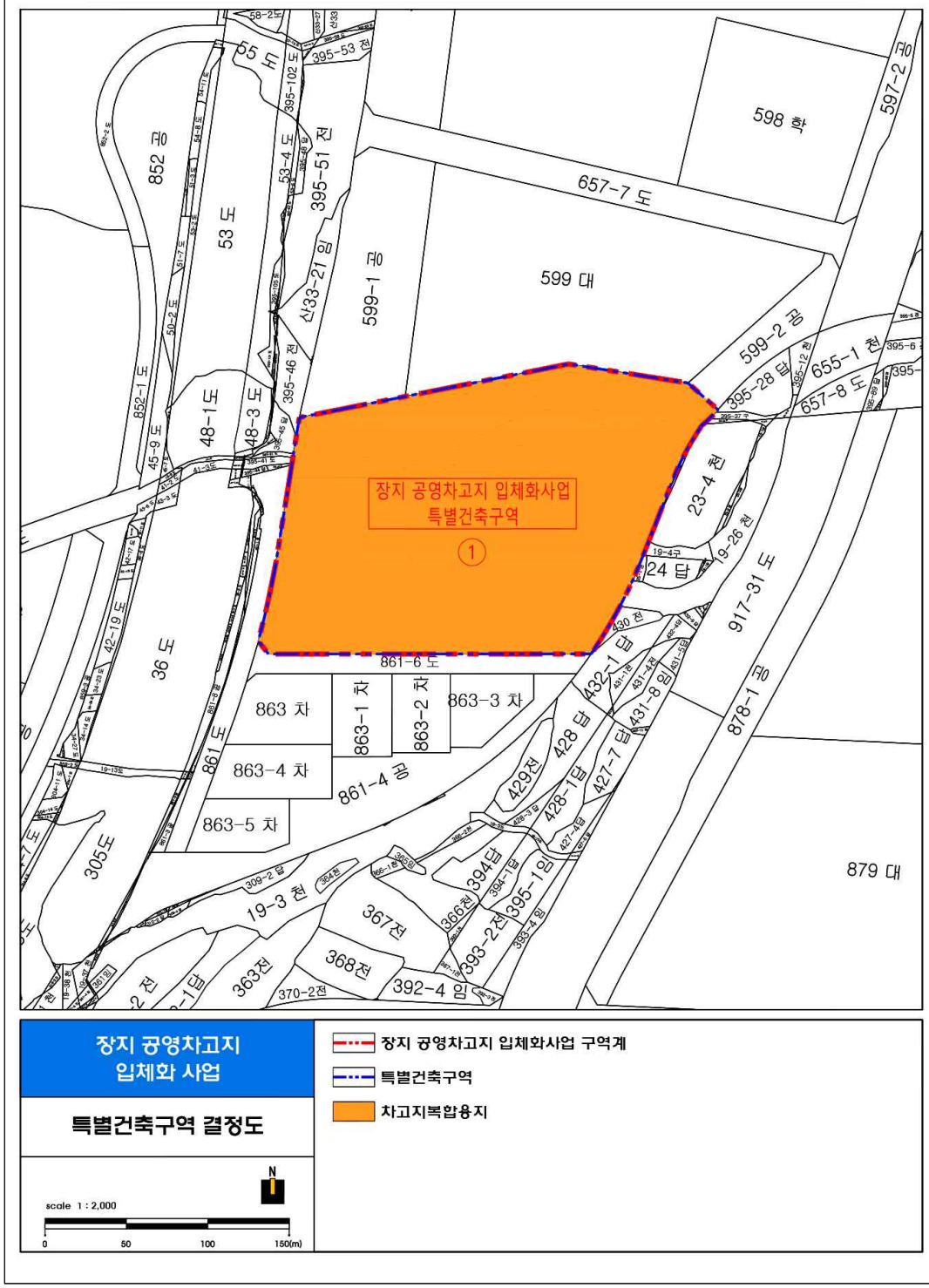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특별건축구역
①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구역계
특별건축구역
차고지복합용지
N
scale 1 : 2,000
0
50
100
150(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2호

##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호(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2017.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0호(2017.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8호(2018.0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6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1호(2019.10.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9호(2020.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1호(2021.1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74호(2022.4.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2호(2022.8.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1호(2022.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1호(2024.0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5호(2024.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7호(2024.7.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 | | 지정목적 |
|---|---|---|---|---|---|---|
| | |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
|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 지형 | 관악구 신림동 일원 | 491,110.8 | - | 491,110.8 | •노후 ·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림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인구 · 주택수용계획 : 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8)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 계획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12) 공공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1)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2)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3)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나) 정비계획 : 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공동 이용시설 | 관리사무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16-55번지 일대 | 215.96 | 감)1.94 | 214.02 | |
| | 주민공동시설 | | 926.03 | 증)32.99 | 959.02 | |
| | 문 고 | | 247.07 | 감)34.58 | 212.49 | |
| | 보육시설 | | 352.63 | 증)0.09 | 352.72 | |
| | 경로당 | | 225.49 | 감)2.43 | 223.06 | |
| | 어린이놀이터 | | 772.00 | - | 772.00 | |
| | 주민운동시설 | | 458.03 | - | 458.03 | |

※ 변경사유 :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이용시설 계획 변경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 건축시설계획 : 변경

<table>
<tr><th rowspan="2">결정<br>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br>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용적률<br>산정용<br>연면적(㎡)</th><th rowspan="2">주 된<br>용 도</th><th rowspan="2">건폐율<br>(%)</th><th rowspan="2">용적률<br>(%)</th><th rowspan="2">평균층수<br>/최고층수</th></tr>
<tr><th>명 칭</th><th>면적(㎡)</th><th>명 칭</th><th>면적(㎡)</th></tr>
<tr><td rowspan="2">기정</td><td rowspan="2">신림3<br>재정비<br>촉진구역</td><td rowspan="2">35,136.4</td><td>3-1</td><td>22,463.3</td><td>관악구 신림동<br>316-62번지 일대</td><td>58,404.58<br>이하</td><td>공동주택</td><td>30%<br>이하</td><td>236%<br>이하</td><td>15/17</td></tr>
<tr><td>3-2</td><td>1,299.3</td><td>관악구 신림동<br>산69-16번지 일대</td><td>2,598.60</td><td>사회복지시설</td><td>60%<br>이하</td><td>200%<br>이하</td><td>-/6</td></tr>
<tr><td rowspan="2">변경</td><td rowspan="2">신림3<br>재정비<br>촉진구역</td><td rowspan="2">35,136.4</td><td>3-1</td><td>22,463.3</td><td>관악구 신림동<br>316-62번지 일대</td><td>53,013.38<br>이하</td><td>공동주택</td><td>30%<br>이하</td><td>236%<br>이하</td><td>15/17</td></tr>
<tr><td>3-2</td><td>1,299.3</td><td>관악구 신림동<br>산69-16번지 일대</td><td>2,598.60</td><td>사회복지시설</td><td>60%<br>이하</td><td>200%<br>이하</td><td>-/6</td></tr>
<tr><td rowspan="4">변경<br>없음</td><td colspan="2">주택의 규모 및<br>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8">•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br>(단, 종전 주택규모가 115㎡ 초과 시 165㎡ 범위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br>• 건설비율<br>-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br>-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30% 이상<br>• 건립예정세대수 : 571세대 이상</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br>관한 계획</td><td colspan="8">•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br>• 신림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td></tr>
<tr><td colspan="2">기준용적률<br>20%상향</td><td colspan="8">•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조정계획 (행정부시장 방침 제96호, 2010.3.9)<br>- 기준용적률 상향 170% → 180%</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8">• 236%이하</td></tr>
<tr><td rowspan="2">변경</td><td colspan="2" rowspan="2">소형주택<br>공급기준<br>(법적기준)</td><td>기정</td><td colspan="7">• 소형주택 건설규모<br>= (변경용적률 - 기정용적률)<br>= (233.70% - 219.98%) = 13.72%</td></tr>
<tr><td>변경</td><td colspan="7">• 소형주택 건설규모<br>= (변경용적률 - 기정용적률)<br>= (233.98% - 219.98%) = 14.0%</td></tr>
<tr><td>변경<br>없음</td><td colspan="2">소형주택 확보방법</td><td colspan="8">• 기준용적률 10%상향 조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계획</td></tr>
</table>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74호(2022.4.21.) (변경)결정 시 오기된 사항 정정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변경없음

(4) 신림4재정비촉진구역(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변경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 | | 최초결정일 |
|---|---|---|---|---|---|---|
| | |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
|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 지형 | 관악구 신림동 일원 | 491,110.8 | - | 491,110.8 | •서고2006-357호 (2006.10.19) |

(2)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 용도지역 | | | 면적(㎡) | | | 구성비(%)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 계 | | | 491,110.8 | - | 491,110.8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 443,803.1 | 감) 157.5 | 443,645.6 | 90.3 |
| | 일반 주거 지역 | 제1종 | 87,749.8 | 감) 554.0 | 87,195.8 | 17.8 |
| | | 2종(7층) | 57,429.6 | 감) 36.4 | 57,393.2 | 11.7 |
| | | 2종 | 233,278.7 | 증) 178.5 | 233,457.2 | 47.5 |
| | | 3종일반 | 42,407.0 | 증) 120.1 | 42,527.1 | 8.7 |
| | 준주거 | | 22,938.0 | 증) 134.3 | 23,072.3 | 4.7 |
| 자연녹지 | | | 47,307.7 | 증) 157.5 | 47,465.2 | 9.7 |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7호(2024.7.25.) (변경)결정 시 오기된 사항 정정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마. 관계도서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2133-7227) 및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8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붙임 ] 신림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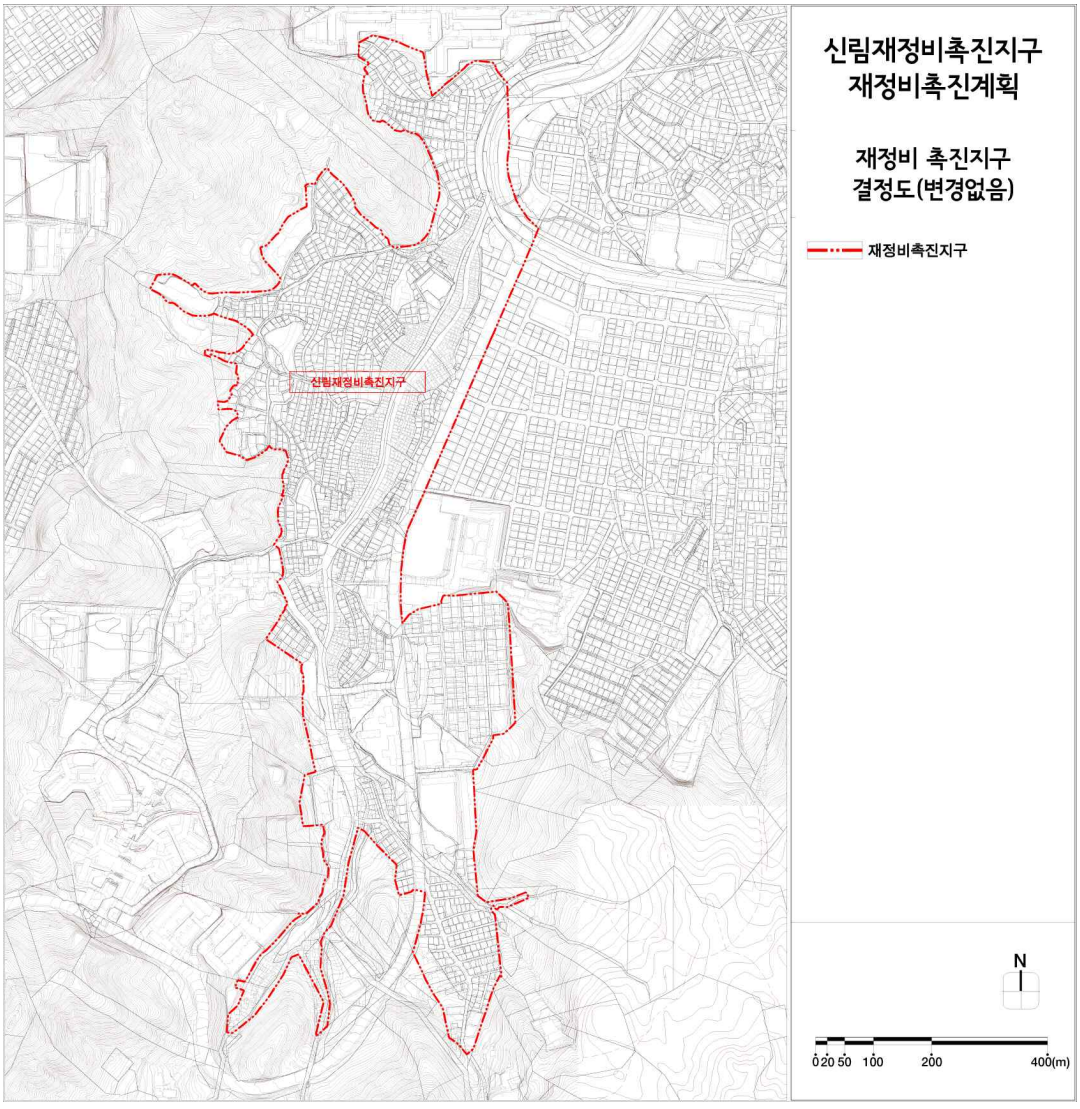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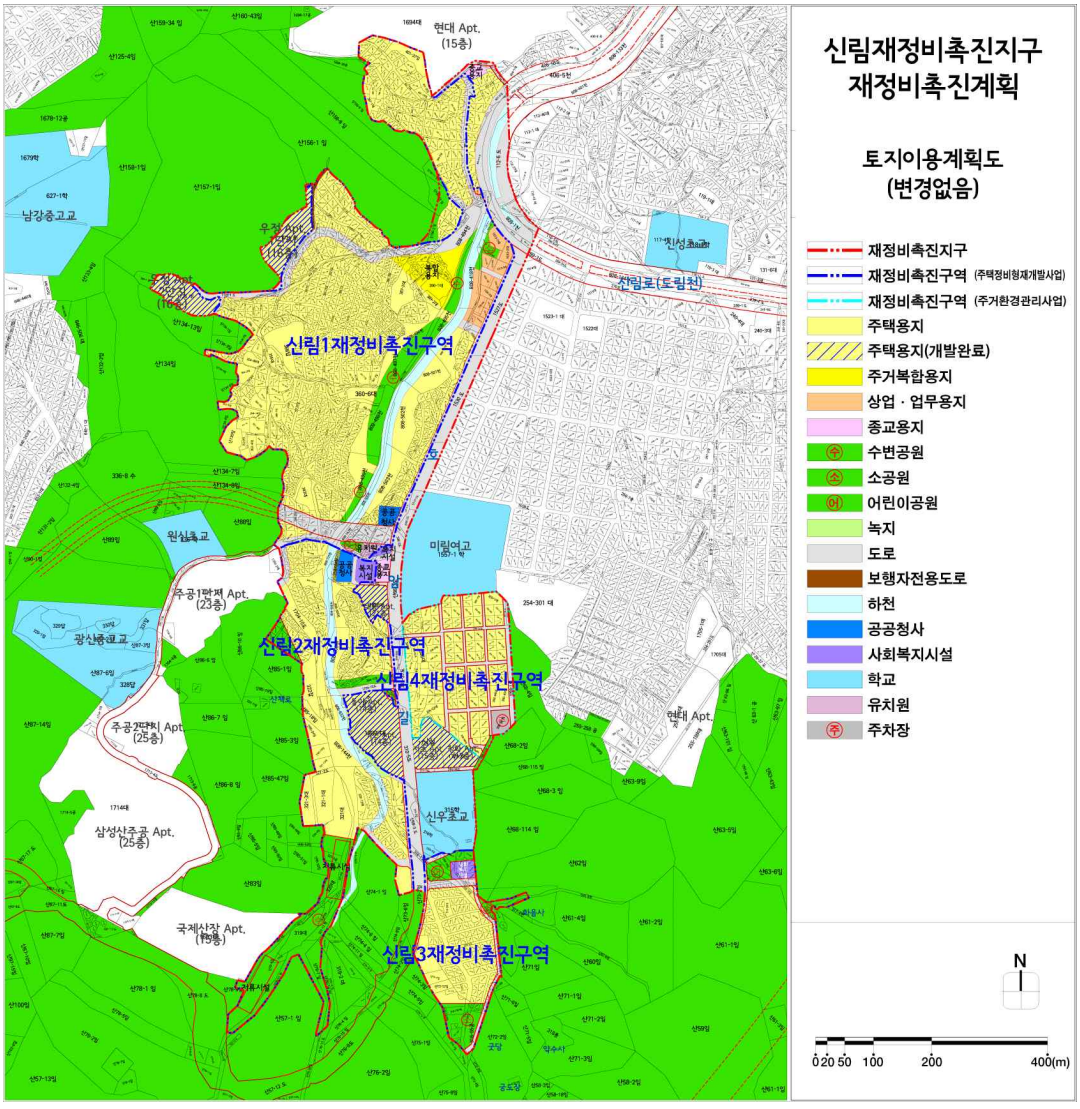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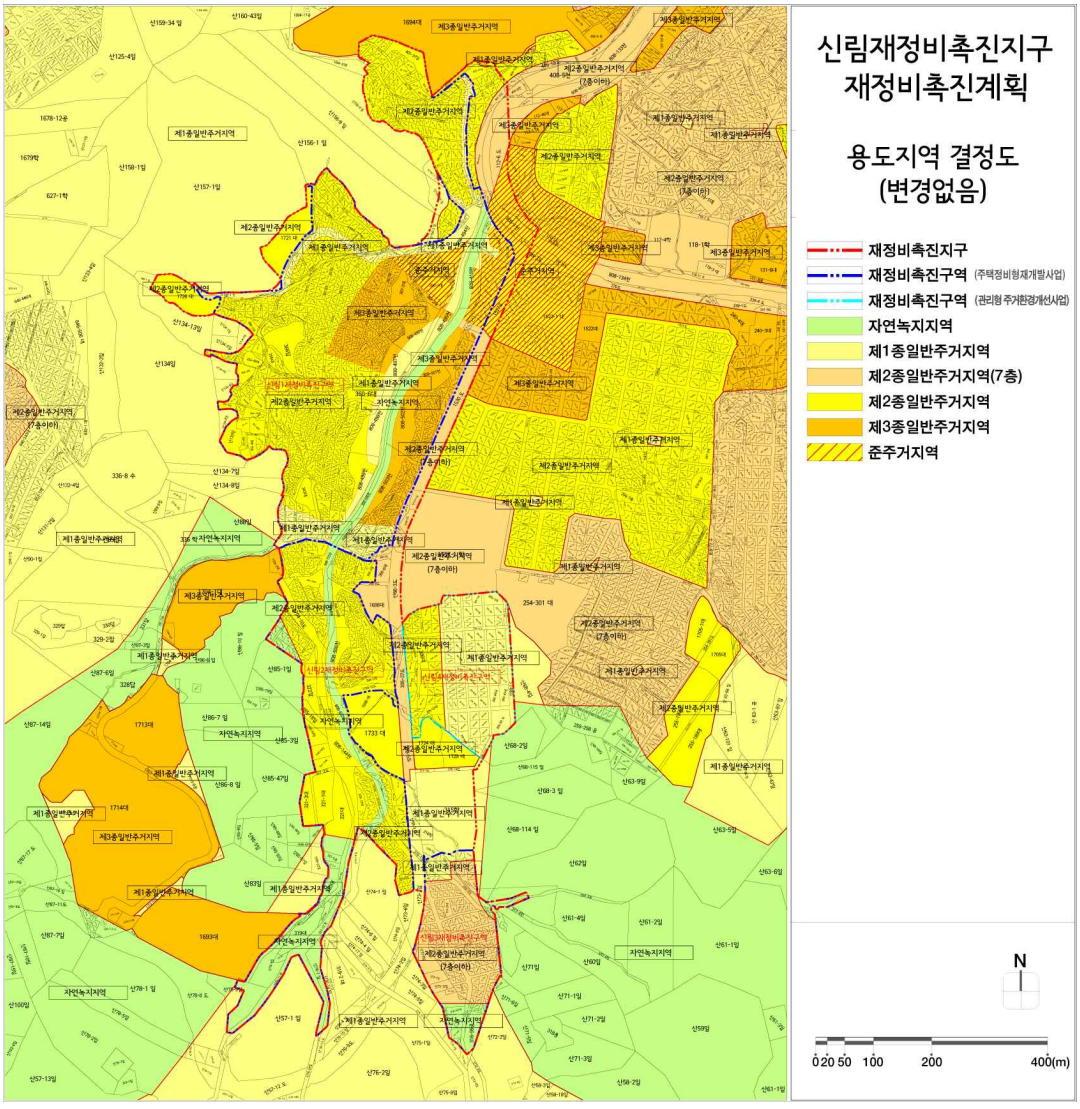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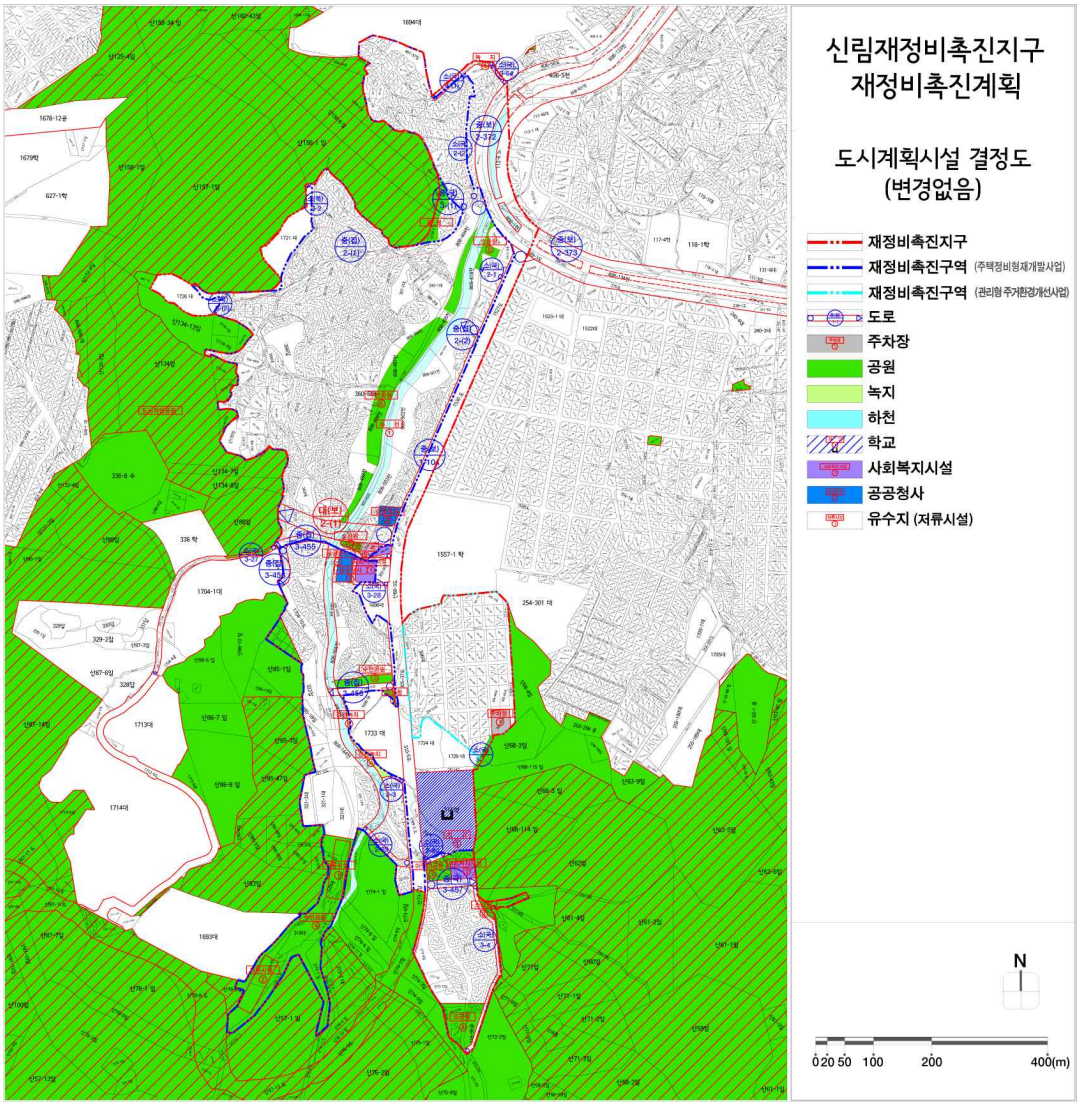

[신림3재정비촉진구역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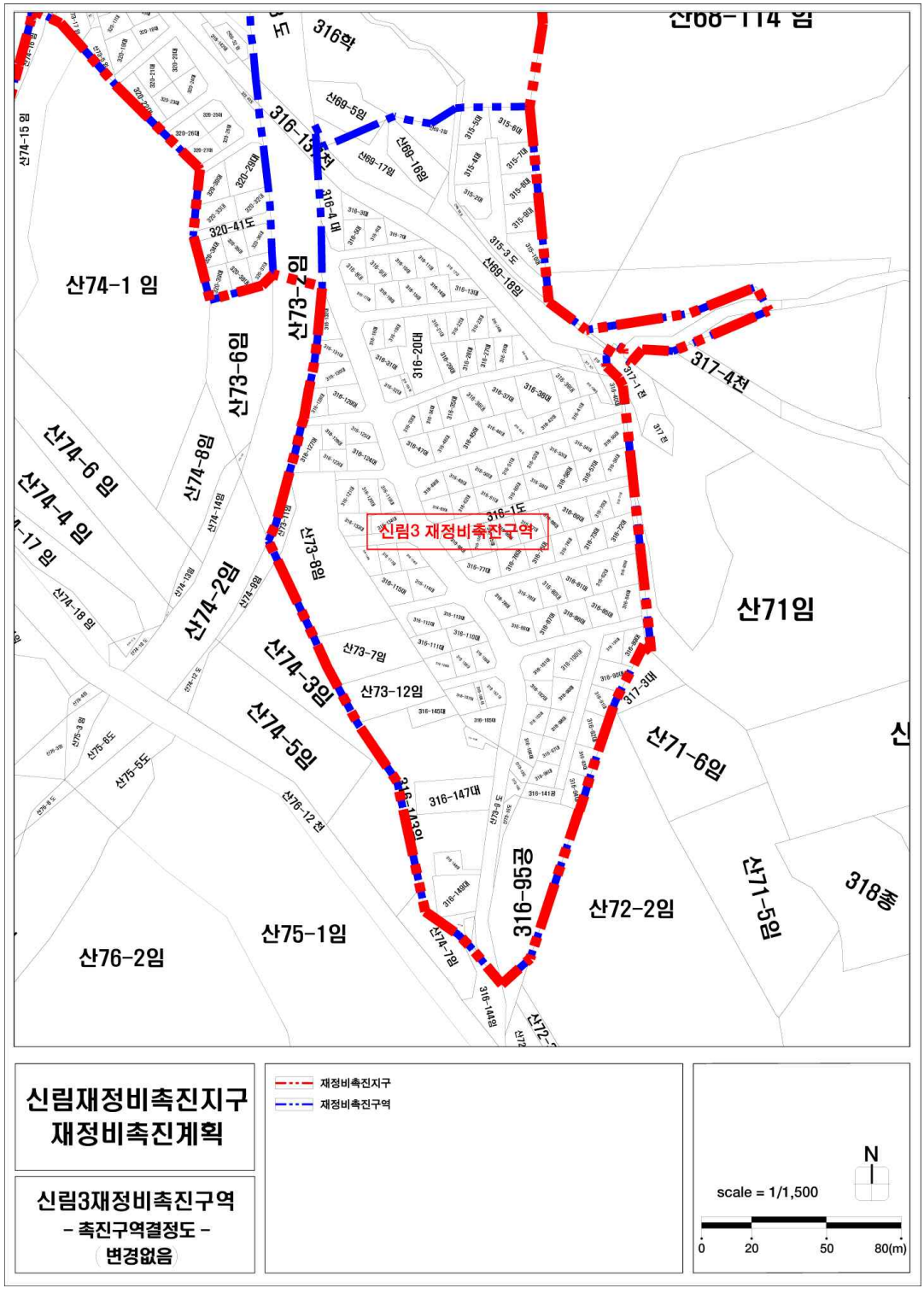

[신림3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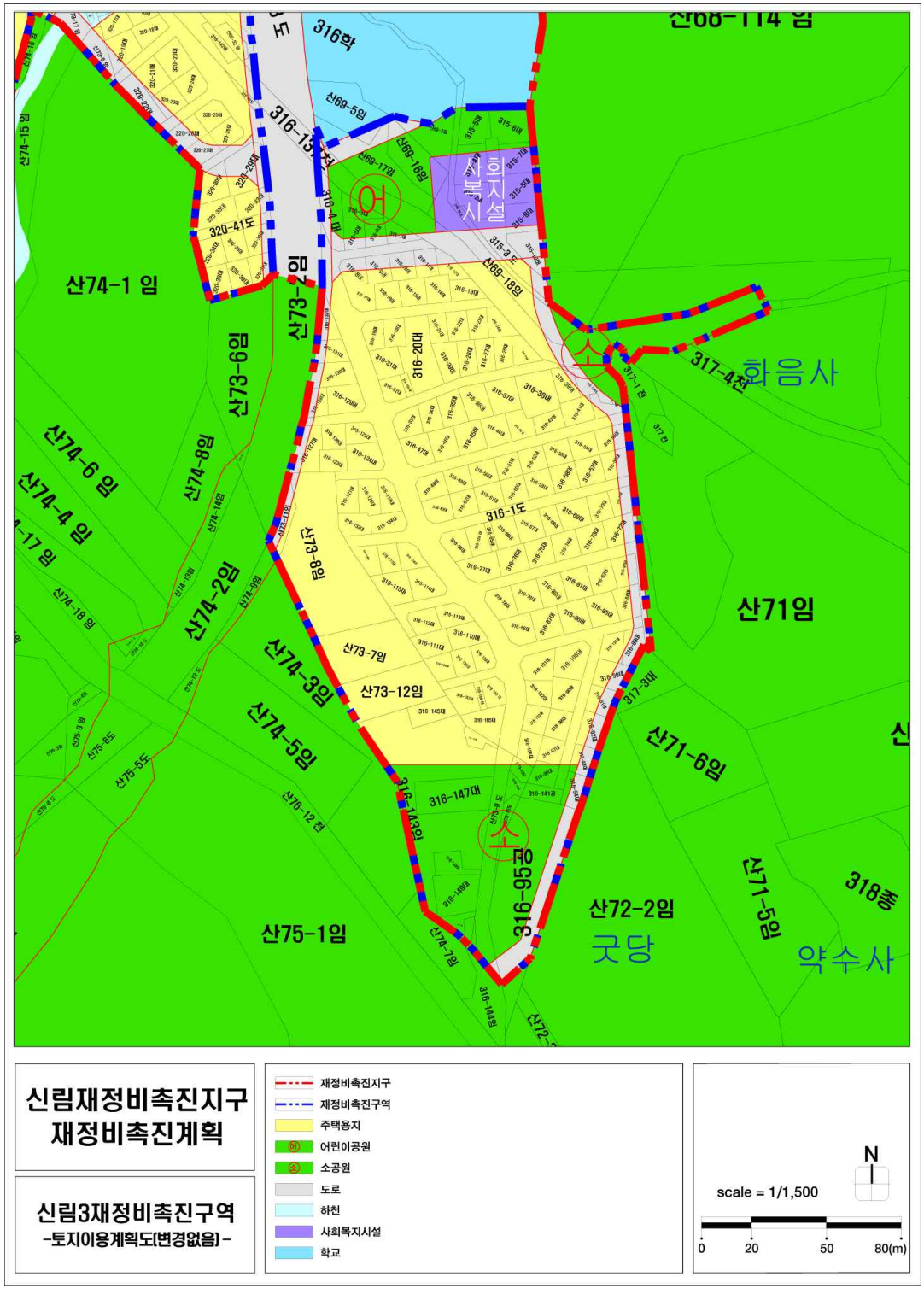

[신림3 용도지역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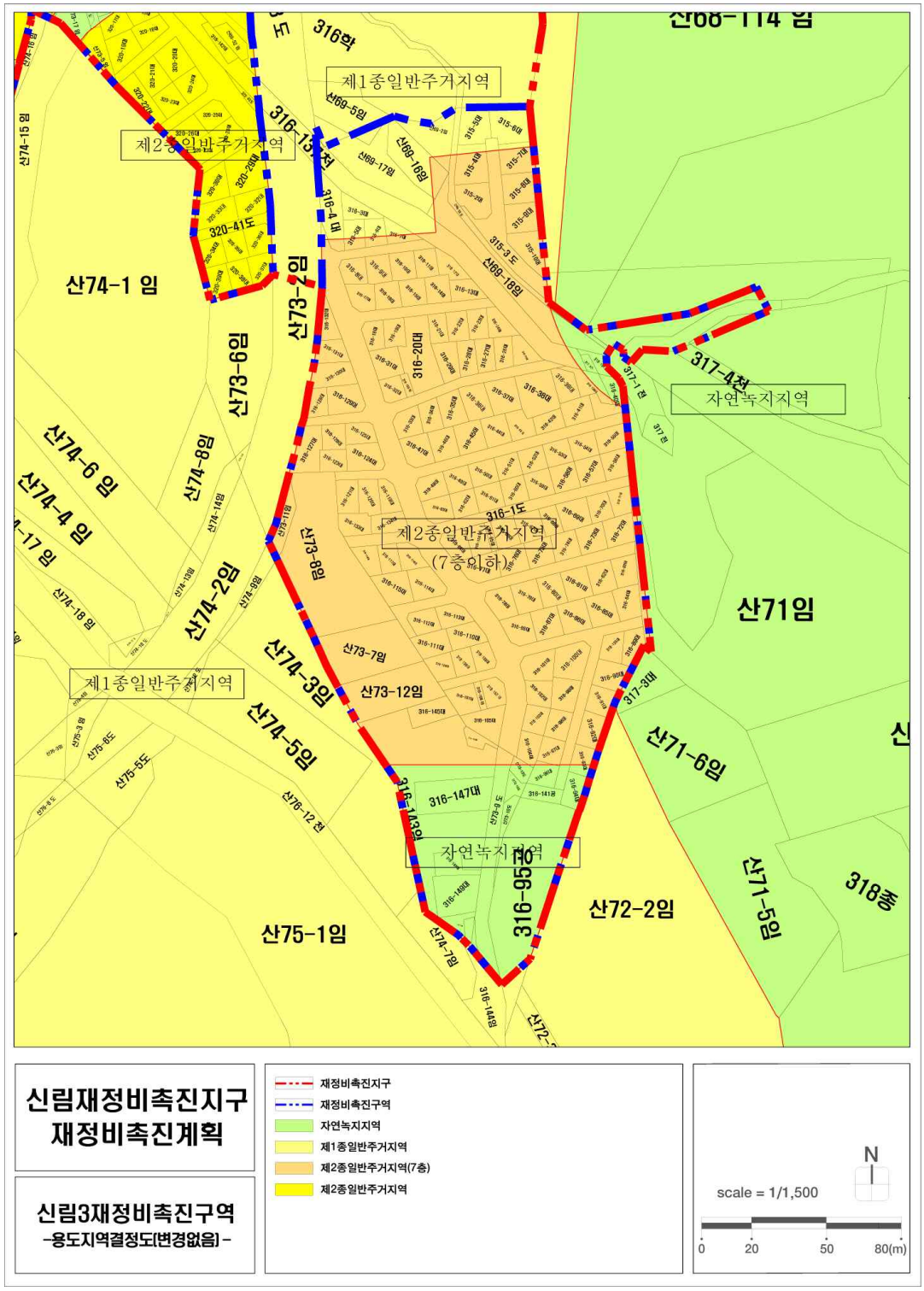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결정도[변경없음]-**

[신림3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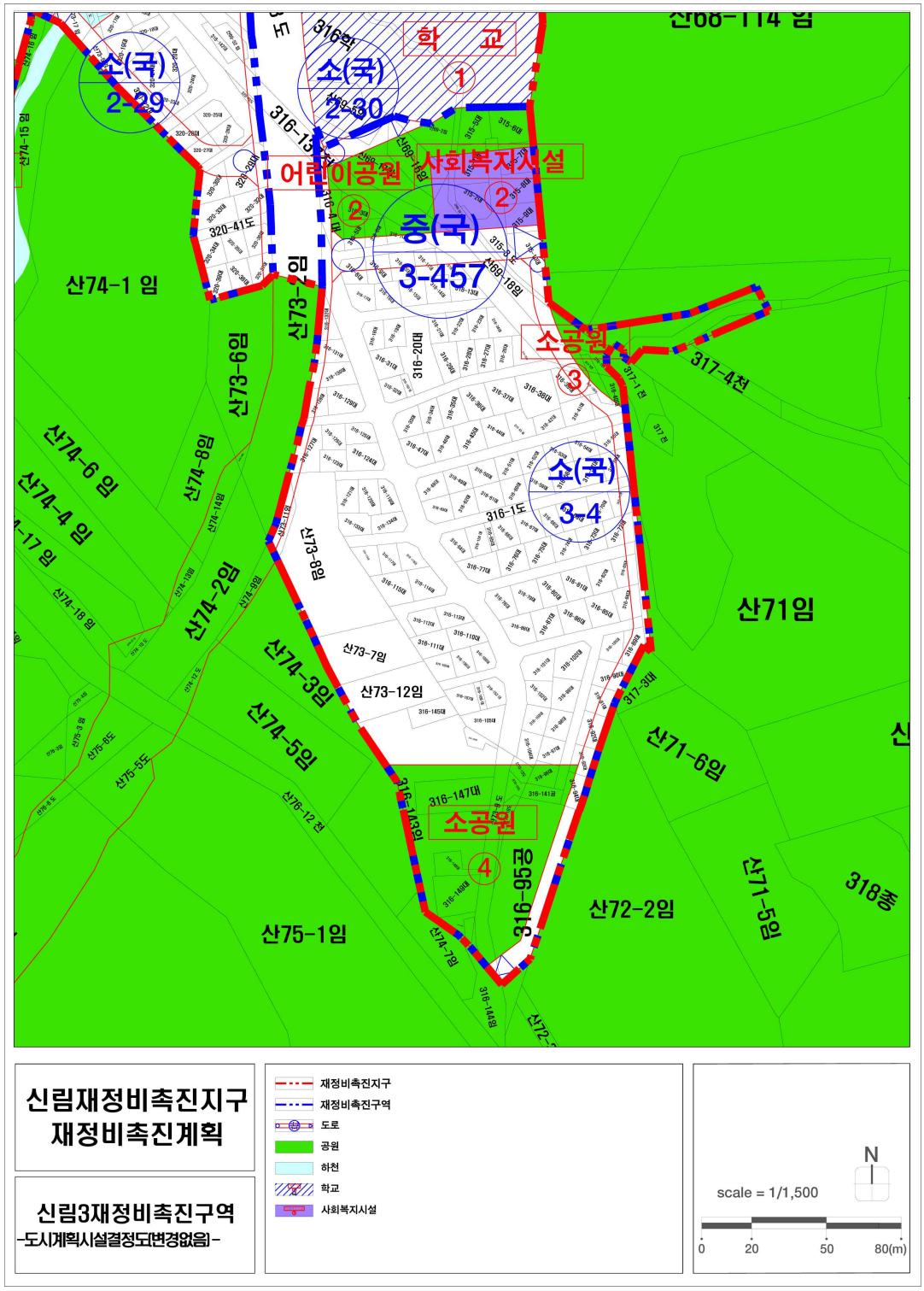

[신림3 정비계획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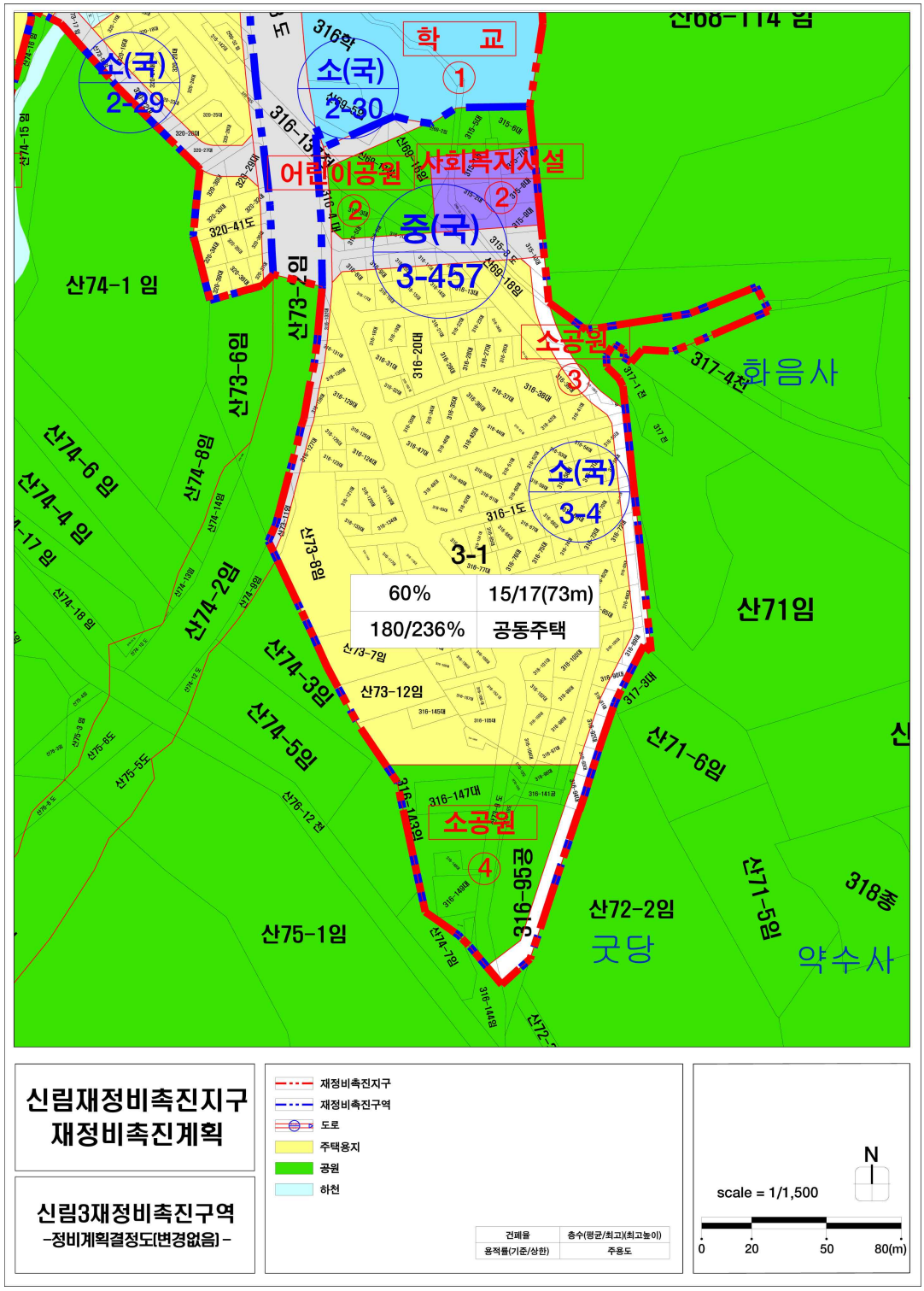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3호

## 문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7호(2007.6.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8호(2009.5.28.)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문정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문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문정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 면 적 : 548,239.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개발 도모
   - 신성장동력산업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시 행 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 사무소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

|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 총 사업 시행기간 | 2007.6.28. ~ 2024.12.31. | 2007.6.28. ~ 2026.12.31. | 증 2년 |
| 1공구 | 2007.6.28. ~ 2017.5.18. | 2007.6.28. ~ 2017.5.18. | 부분준공 완료 (서공고 제2017-1164호) |
| 2공구 | 2007.6.28. ~ 2022.7.14. | 2007.6.28. ~ 2022.7.14. | 부분준공 완료 (서공고 제2022-2039호) |
| 3공구 | 2007.6.28. ~ 2024.12.31. | 2007.6.28. ~ 2026.12.31. | 증 2년 |

   - 시행방법(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7. 토지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변경없음) : 생략
9.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Ⅱ. 문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문정 도시개발구역
2. 사업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개발 도모
   - 신성장동력산업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 면 적 : 548,239.7㎡
4. 시행자(변경)
   - 시 행 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 사무소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5. 시행기간(변경)

|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 총 사업 시행기간 | 2007.6.28. ~ 2024.12.31. | 2007.6.28. ~ 2026.12.31. | 증 2년 |
| 1공구 | 2007.6.28. ~ 2017.5.18. | 2007.6.28. ~ 2017.5.18. | 부분준공 완료<br>(서울시공고<br>제2017-1164호) |
| 2공구 | 2007.6.28. ~ 2022.7.14. | 2007.6.28. ~ 2022.7.14. | 부분준공 완료<br>(서울시공고<br>제2022-2039호) |
| 3공구 | 2007.6.28. ~ 2024.12.31. | 2007.6.28. ~ 2026.12.31. | 증 2년 |

6.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생략
8.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변경없음) : 생략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10.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도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02-2133-8497)
    - 송파구 전략개발과 (☎02-2147-2173)
    -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02-3410-759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4호

##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 구 명 :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지구

2. 사업위치 : 삼선동1가 275-5 일대 (한성대학교 북서측)

3.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4. 사업규모 : 270필지, 51,619㎡
(※ 관련 조서 및 도면 열람 :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5. 변경사유 :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지급·징수철차 미실시

6.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내용

| 구 분 | 기 정 | 변 경 |
|---|---|---|
| 사업기간 | 2018. 12. ~ 2024. 12. | 2018. 12. ~ 2025. 12.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5호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73-76호(1973.2.28.)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13호(2001.6.3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97호(2021.11.4.)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0 일대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하여 2024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4.11.6.)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취지

○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하여 기 준공된 건축물 면적을 현황에 맞게 반영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밀도계획 변경 내용을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반영하고, 서초중앙로에 면한 인문관을 신축하면서 가로활성화용도 조성과 연계해 학교경계부 1.5D 사선 및 층수제한을 완화사항을 반영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조서(변경 없음)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 기정 | 학교 | 대학<br>(서울교육대학교) | 서울시 서초구<br>서초동 1650 | 86,349.9 | - | 86,349.9 | 건설부고시<br>제1973-76호<br>(1973.2.28)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역계획(변경없음)

| 구역 | 구분 | 면적(㎡) |
|---|---|---|
| 일반관리구역 | ① | 10,484.3 |
| | ② | 27,846.7 |
| | ③ | 18,124.7 |
| | 소 계 | 56,455.7 |
| 상징경관구역 | ④ | 5,447.6 |

| 구역 | 구분 | 면적(㎡) |
|---|---|---|
| | 소 계 | 5,447.6 |
| 외부활동구역 | ⑤ | 21,867.6 |
| | ⑥ | 2,579.0 |
| | 소 계 | 24,446.6 |
| 합 계 | | 86,349.9 |

(2) 밀도계획(건폐율)(변경 없음)

| 구분 | 밀도산정기준 면적(㎡) | 법정건폐율 (%) | 사용건폐율 (%) | 관리건폐율 (%) | 비고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6,349.9 | 60.0 | 26.0 | 28.0 | ○ 밀도 산정시 제외한 면적 없음<br>- 비오톱1등급지 없음 |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 · 높이)(변경)

| 구역 구분 | 용적률 (%) | | | | | | | 높이(m) | 비고 |
|---|---|---|---|---|---|---|---|---|---|
| | 법정 용적률 | 사용용적률 | | 계획 용적률 | 이전 용적률 | 관리용적률 | | | |
| | | 기정 | 변경 | | | 기정 | 변경 | | |
| ① | 200 | 114.9 | 96.2 | 96.2 | - | 120 | 112 | • 지표로부터 20m 이하 | 부설초등학교 |
| ② | 200 | 91.7 | 100.3 | 100.3 | - | 95 | 103 | • 지표로부터 32m 이하 | |
| ③ | 200 | 144.5 | 144.5 | 144.5 | - | 150 | 150 | • 지표로부터 20m~32m 이하 | |
| ④ | 200 | 90.5 | 90.5 | 90.5 | - | 93 | 93 | • 지표로부터 13m 이하 | 상징경관구역<br>(미술관,가사관,제2미술관,학군단, 과학관) |
| ⑤ | 200 | 39.4 | 39.4 | 39.4 | - | 46 | 46 | • 지표로부터 5m~32m 이하<br>(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 부대시설에 한하여 허용) | 외부활동구역<br>(대운동장, 야외학습장, 구령대, 융 · 복합스포츠센터) |
| ⑥ | 200 | 0.0 | 0.0 | 0.0 | - | 3 | 3 | • 지표로부터 5m 이하<br>(외부공간 부대시설 한하여 허용) | 외부활동구역<br>(부설초운동장) |
| 합계 | 200 | 89.5 | 90.0 | 90.0 | - | 95 | 95 | | |

※ 구역별 높이계획 : 결정도면 참조

(4) 변경 건축물 조서

| 구분 | 건물명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지상층연면적(㎡) | | 층수 |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① 구역 | 부설유치원 및 어린이집 | 490.00 | 0.00 | 1,960.00 | 0.00 | 1,960.00 | 0.00 | 지상4 | - | 신축계획 취소 |
| ② 구역 | 제2강의동 및 교수연구동 (인문관) | 858.80 | 1,435.58 | 3,455.15 | 10,900.00 | 3,455.15 | 5,900.00 | 지상4 | 지하2, 지상7 | 금회 신축 |
| | 음악교육관 | 894.63 | 879.63 | 2,543.46 | 2,483.46 | 2,456.42 | 2,396.42 | 지하1, 지상4 | 지하1, 지상4 | 준공면적 반영 |
| ③ 구역 | 서록1관 (기숙사) | 1,549.96 | 1,556.22 | 11,953.52 | 11,997.93 | 7,903.64 | 7,909.17 | 지하2, 지상10 | 지하2, 지상10 | 건물명 변경, 준공면적 반영 |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상세내용은 결정도면(건축물조서 포함)에 의함

3. 2024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24.11.6., 조건부 동의) 조건사항

○ 서초중앙로변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조형물(청람문)은 준공전까지 개방 공간 확보

– 조형물(청람문) 및 신축건축물 사이 보행공간을 조성하여 서초중앙로에서 교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 계획 마련 및 건축배치계획 조정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관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2133-8412)

– 서초구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역환승주차장 405호(☏2155-6787)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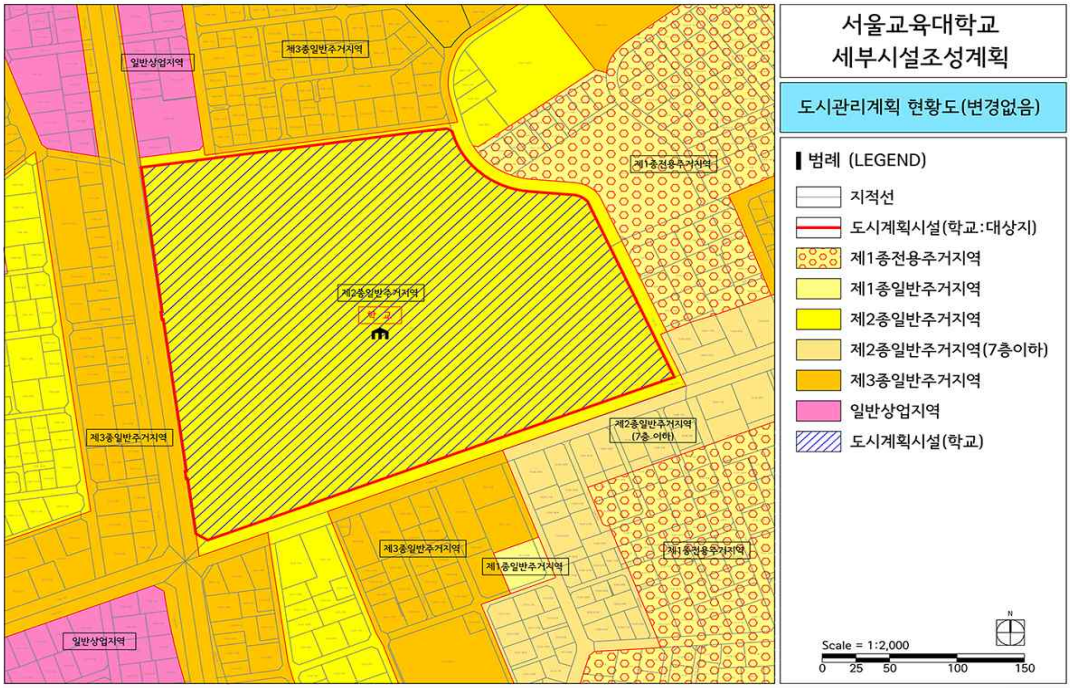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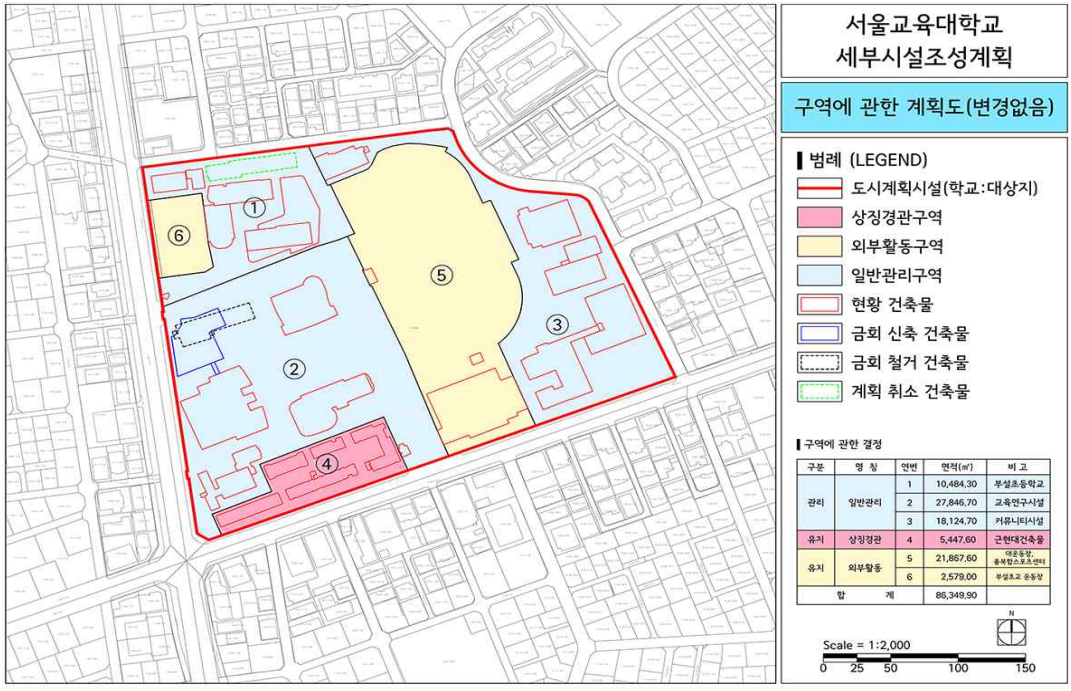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 · 용적률)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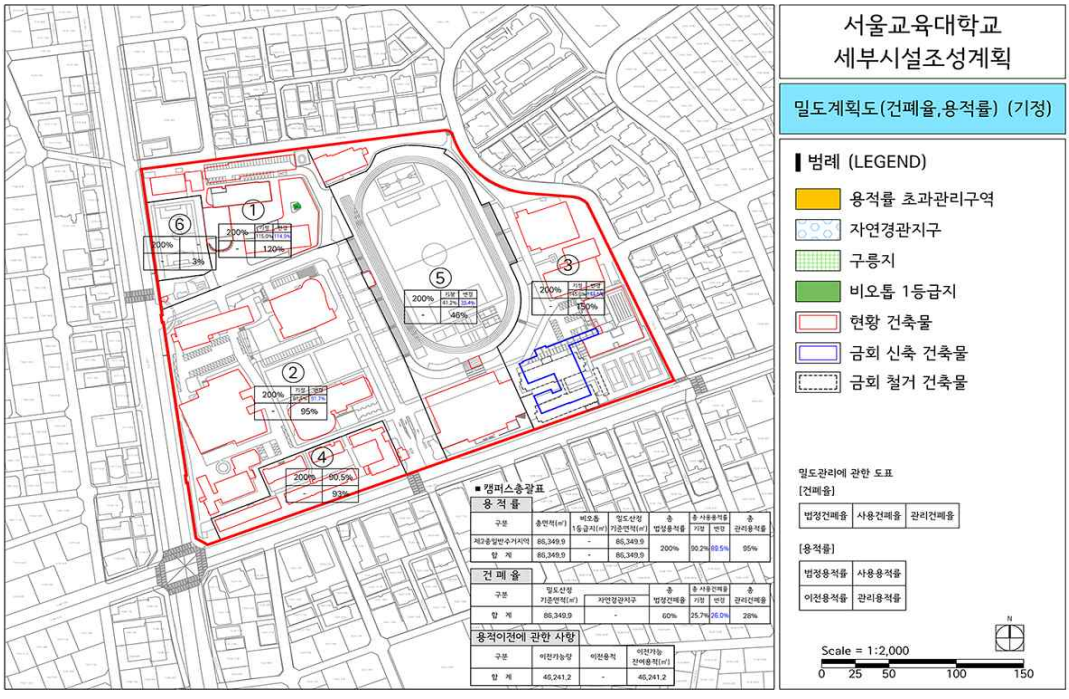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 · 용적률)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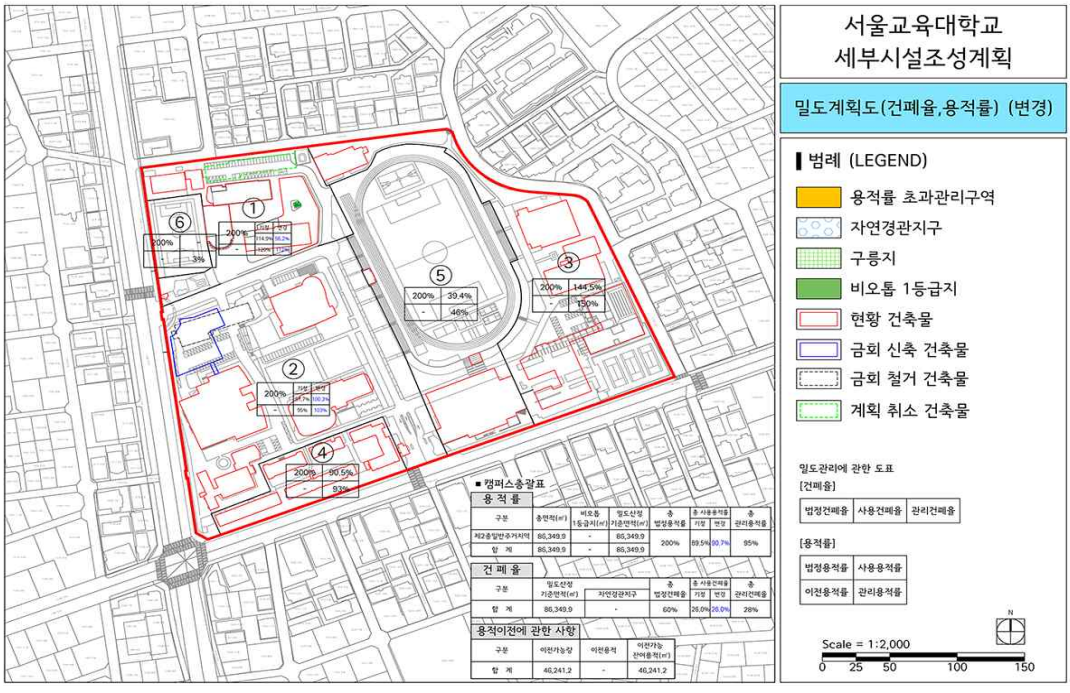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높이)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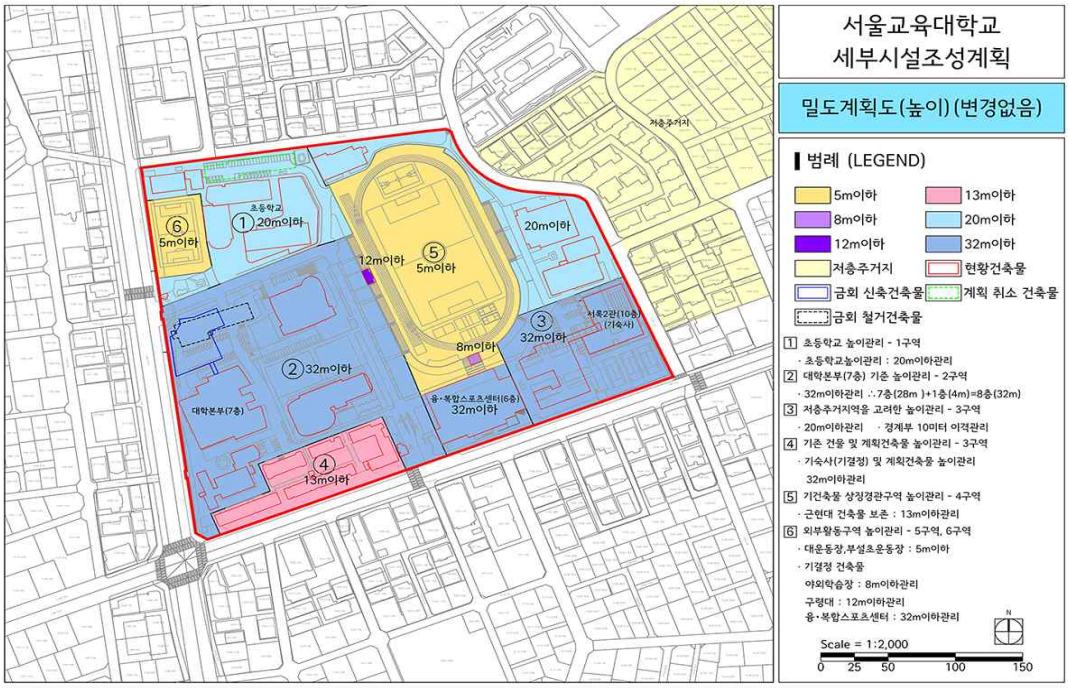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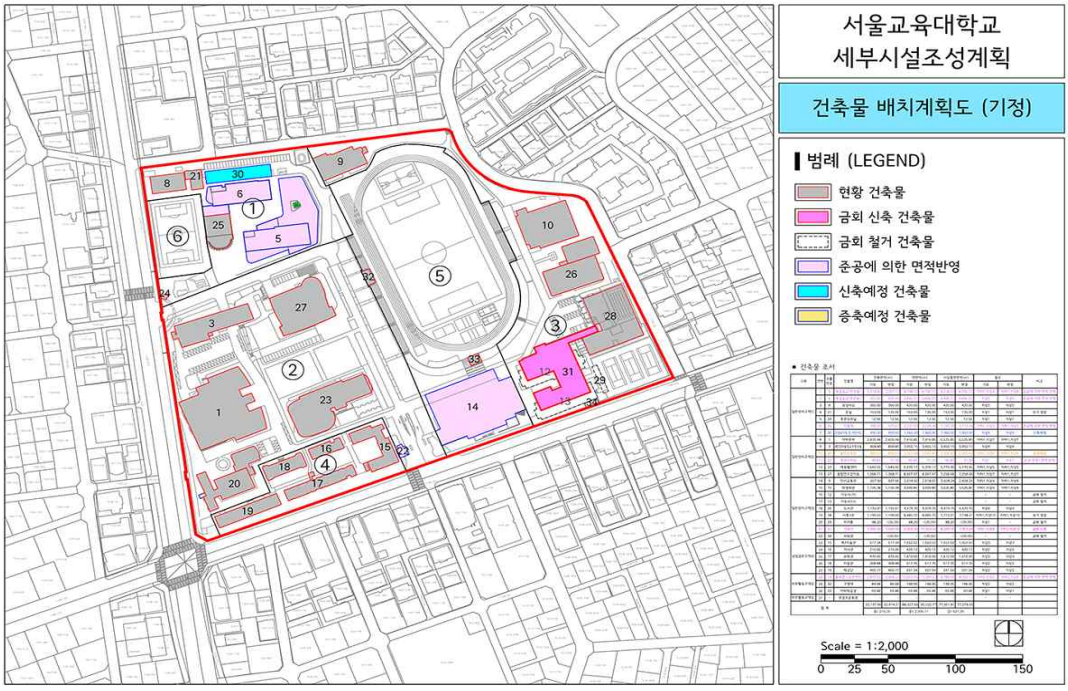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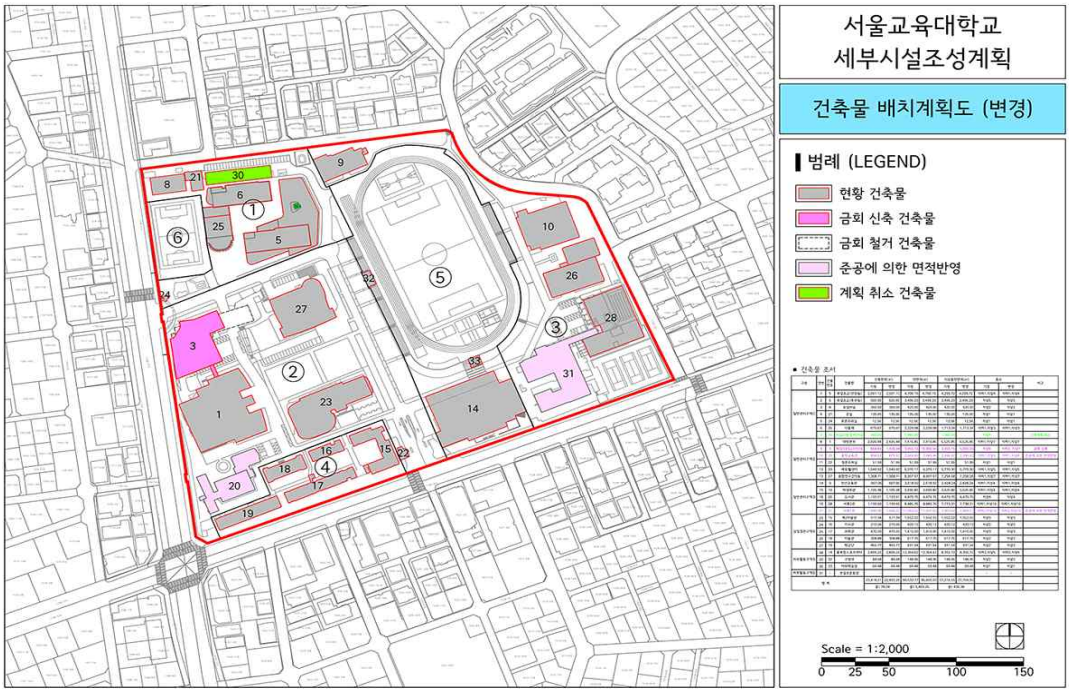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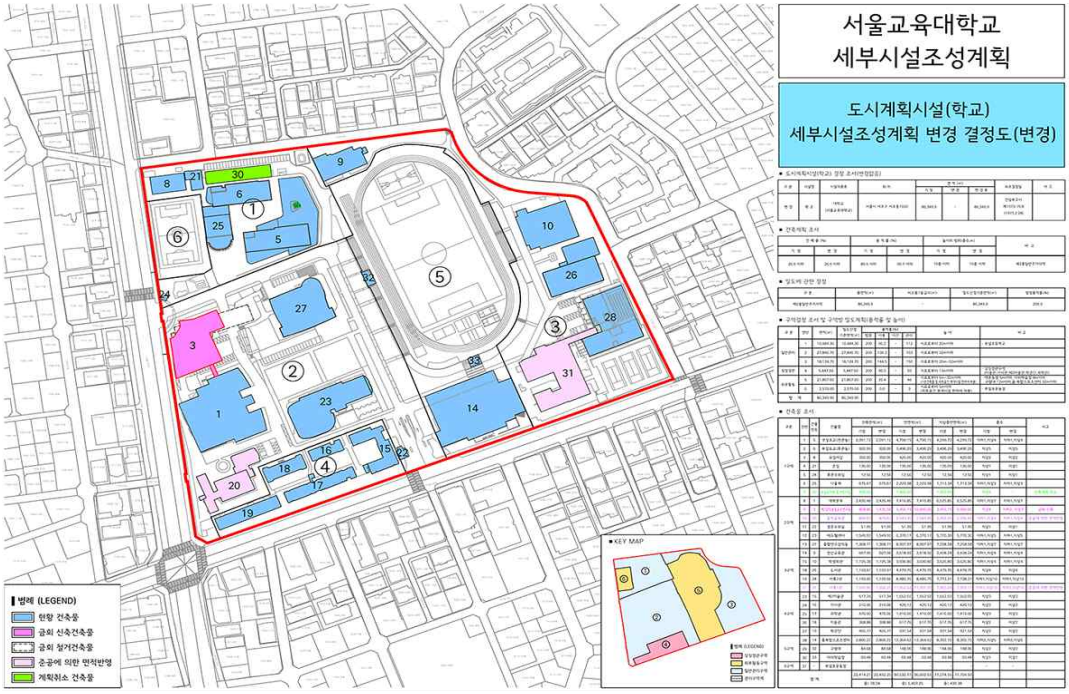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6호

##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고시와 함께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오세훈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대지면적(㎡) | 38,119.40 | 층 수 | 지하 2층, 지상 25층 |
| 건축면적(㎡) | 24,561.07 | 건폐율(%) | 64.43 |
| 연면적(㎡) | 135,951.45 | 용적률(%) | 259.64 |
| 주 용 도 | 공공주택, 운동시설,<br>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대수 | 689 |
| 동 수 | 12(주 6 / 부 6) | 세 대 수 | 658 |

4. 사업시행기간 : 2020.05. ~ 2028.10.

5.「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 면적(㎡) | | | 구성비(%)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계 | | 38,119.4 | - | 38,119.4 | 100.0 | |
| 주거지역 | 소계 | - | 증) 38,119.4 | 38,119.4 | 100.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0,477.4 | 30,477.4 | 80.0 | 장지지구 |
| | | - | 증) 7,642.0 | 7,642.0 | 20.0 | 위례지구 |
| 녹지지역 | 소계 | 38,119.4 | 감) 38,119.4 | - | - | |
| | 자연녹지지역 | 30,477.4 | 감) 30,477.4 | - | - | 장지지구 |
| | | 7,642.0 | 감) 7,642.0 | - | - | 위례지구 |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 | | 기정 | 변경 | | | |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8,119.4 | 260 | · 자동차정류장 입체복합화를 통한 차고지 환경개선, 생활SOC시설 제공, 양질의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인접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도로 총괄표

| 류별 | 합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 합계 | 2 | 14 | 169.3 | - | - | - | - | - | - | 2 | 14 | 169.3 |
| 중로 | 2 | 14 | 169.3 | - | - | - | - | - | - | 2 | 14 | 169.3 |

※ 연장은 동일노선(중로3-5 및 중로3-14) 기준으로 산정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 | | | | | |
| 신설 | 중로 | 3 | 5 | 12 | 국지도로 | 14 | 위서중3-15 | 연결녹지1 | 일반도로 | - | | 장지지구 |
| 신설 | 중로 | 3 | 14 | 12 | 국지도로 | 14 | 송파구 장지동 23-4 일원 (하천1-서(2)) | 송파구 장지동 599-2 일원 (연결녹지8) | 일반도로 | - | | 위례지구 |

※ 중로3-5 : 자동차정류장1(116.5㎡) 및 연결녹지1(111.5㎡)과 중복결정
중로3-14 : 자동차정류장2(52.8㎡) 및 연결녹지8(48.3㎡)과 중복결정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중로3-5 | · 신설<br>- 폭원 : 12m<br>- 연장 : 14m | ·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생활SOC시설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 - | 중로3-14 | · 신설<br>- 폭원 : 12m<br>- 연장 : 14m | ·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생활SOC시설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②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정류장 총괄표

| 구분 | 개소수(개소) | | 면적(㎡) | | 비 고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자동차정류장 | - | 2 | - | 38,119.4 |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계 | | 2개소 | - | - | 38,119.4 | | - |
| 신설 | 1 | 자동차 정류장 | 공영 차고지 |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 | 30,477.6 | | 장지지구, 공간적범위 결정조서 참조 |
| 신설 | 2 | 자동차 정류장 | 공영 차고지 | 송파구 장지동 599-2 일원 | 7,642.0 | | 위례지구, 공간적범위 결정조서 참조 |

※ 자동차정류장1 : 중로3-5(116.5㎡) 및 연결녹지1(3,408.6㎡)과 중복결정
자동차정류장2 : 중로3-14(52.8㎡) 및 연결녹지8(6,636.5㎡)과 중복결정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1 | 자동차 정류장 | · 신설<br>- 면적 : 30,477.6㎡ | · 공공주택특별법 특례에 따라 공공시설 부지에 입체복합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자동차정류장 신설 |
| 2 | 자동차 정류장 | · 신설<br>- 면적 : 7,642.0㎡ | · 공공주택특별법 특례에 따라 공공시설 부지에 입체복합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자동차정류장 신설 |

▌자동차정류장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구분 | 공간적범위 결정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신설 | 1 | 자동차 정류장 |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 | 층수 및 수평투영면적 (㎡) | 계 : | 43,547.77 | | 장지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
| | | | | | 지상 3층 : | 15,585.97 | | |
| | | | | | 지상 2층 : | 2,304.82 | | |
| | | | | | 지상 1층 : | 18,421.62 | | |
| | | | | | 지하 1층 : | 4,983.93 | | |
| | | | | | 지하 2층 : | 2,251.43 | | |
| 신설 | 2 | 자동차 정류장 | 송파구 거여동 599-2 일원 | 층수 및 수평투영면적 (㎡) | 계 : | 8,932.38 | | 위례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
| | | | | | 지상 3층 : | 3,118.89 | | |
| | | | | | 지상 1층 : | 3,074.17 | | |
| | | | | | 지하 1층 : | 2,739.32 | | |

▌자동차정류장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1 | 자동차 정류장 | · 자동차정류장 공간적범위 결정<br>· 층수 : 지하2층~지상3층<br>·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43,547.77㎡<br>· 수평투영면적 : 43,547.77㎡ | ·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의 입체·복합화를 위해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 상부 및 하부에 비도시계획시설 (시민의 휴식공간 및 공공주택)을 건설하고자 함 |
| 2 | 자동차 정류장 | · 자동차정류장 공간적범위 결정<br>· 층수 : 지하1층~지상3층<br>·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8,932.38㎡<br>· 수평투영면적 : 8,932.38㎡ | ·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의 입체·복합화를 위해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 상부 및 하부에 비도시계획시설 (시민의 휴식공간 및 공공주택)을 건설하고자 함 |

나) 공간시설

① 녹지

녹지 총괄표

| 구분 | 개소수(개소) | | 면적(㎡) | | 비 고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합 계 | 2 | 2 | 22,892.6<br>(12,676.4) | 20,261.3<br>(10,045.1) | |
| 완충녹지 | 1 | - | 12,600.0<br>(5,034.4) | 7,565.6<br>( - ) | |
| 연결녹지 | 1 | 2 | 10,292.6<br>(7,642.0) | 12,695.7<br>(10,045.1) | |

※ ( )는 장지차고지 구역내

▌녹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2개소 | - | - | 22,892.6<br>(12,676.4) | 감) 2,631.3<br>(감) 2,631.3) | 20,261.3<br>(10,045.1) | | |
| 변경 | 4 | 녹지 | 완충 녹지 | 송파구 장지동 31 일원 | 12,600.0<br>(5,034.4) | 감) 5,034.4<br>(감) 5,034.4) | 7,565.6<br>(-) | 서고 418호 (03.12.26) | 장지지구 |
| 신설 | 1 | 녹지 | 연결 녹지 |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 | - | 증) 3,408.6 | 3,408.6<br>(3,408.6) | | 장지지구 |
| 변경 | 8 | 녹지 | 연결 녹지 | 송파구 거여동 599-2 일원 | 10,292.6<br>(7,642.0) | 감) 1,005.5<br>(감) 1,005.5) | 9,287.1<br>(6,636.5) | 국토부 2010-754호 | 위례지구 |

※ ( )는 장지차고지 구역내
※ 연결녹지1 : 자동차정류장1(3,408.6㎡) 및 중로3-5(111.5㎡)와 중복결정
연결녹지8 : 자동차정류장2(6,636.5㎡) 및 중로3-14(48.3㎡)와 중복결정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4 | 완충녹지 | · 지구내 폐지<br>- 면적 : 12,600.0㎡→7,565.6㎡<br>(5,034.4㎡→0㎡) | · 지구내 녹지 신설에 따른 완충녹지의 기능 및 유지 필요성 저하로 인한 완충녹지 축소 |
| 1 | 연결녹지 | · 신설<br>- 면적 : 3,408.6㎡ | · 자동차정류장 상부에 인근 주민 및 입주자의 부족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연결녹지 신설 |
| 8 | 연결녹지 | · 변경<br>- 면적 : 10,292.6㎡→9,287.1㎡<br>(7,642.0㎡→6,636.5㎡) | · 지구내 녹지 신설에 따른 연결녹지의 기능 및 유지 필요성 저하로 인한 연결녹지 축소 |

※ ( )는 장지차고지 구역내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구 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 고 |
|---|---|---|---|---|
| 기정 | 장지택지개발사업지구<br>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 | 648,032<br>(30,477.4) | 장지지구 |
| 기정 | 위례<br>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일원<br>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일원<br>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일원 | 6,754,201.1<br>(7,642.0) | 위례지구 |

※ ( )는 장지차고지 구역내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변경)도서 내 포함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변경)도서 내 포함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차고지용지(변경)

| 구분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 획지번호 | 획지위치 | 획지면적(㎡) | |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합 계 | | 37,741<br>(25,443) | 감) 25,443<br>(감) 25,443) | 12,298<br>(-) | - | - | 37,741<br>(25,443) | 감) 25,443<br>(감) 25,443) | 12,298<br>(-) | |
| 차고지용지 | J1 | 25,443<br>(25,443) | 감) 25,443<br>(감) 25,443) | -<br>(-) | -1 | 장지동<br>39-4 일원 | 8,443<br>(8,443) | 감) 8,443<br>(감) 8,443) | - | 장지지구 |
| | | | | | -2 | 장지동<br>21 일원 | 15,046<br>(15,046) | 감) 15,046<br>(감) 15,046) | - | 장지지구 |
| | | | | | -3 | 장지동<br>38-3 일원 | 1,954<br>(1,954) | 감) 1,954<br>(감) 1,954) | - | 장지지구 |
| | J2 | 12,298 | - | 12,298 | -1 | 장지동<br>28-4 일원 | 1,855 | - | 1,855 | 장지지구 |
| | | | | | -2 | 장지동<br>30-1 일원 | 1,736 | - | 1,736 | 장지지구 |
| | | | | | -3 | 장지동<br>32-1 일원 | 1,885 | - | 1,885 | 장지지구 |
| | | | | | -4 | 장지동<br>34-7 일원 | 2,517 | - | 2,517 | 장지지구 |
| | | | | | -5 | 장지동<br>34-10 일원 | 2,406 | - | 2,406 | 장지지구 |
| | | | | | -6 | 장지동<br>307 일원 | 1,877 | - | 1,877 | 장지지구 |

※ ( )는 장지차고지 구역내

② 차고지복합용지(신설)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적(㎡) | |
| 합 계 | | 38,119.4 | 2개소 | 38,119.4 | |
| GC | GC1 | 30,477.4 |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 | 30,477.4 | 장지지구 |
| | | 7,642.0 | 송파구 거여동 599-2 일원 | 7,642.0 | 위례지구 |

마)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차고지용지(변경)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 (기정)<br>J1-1~3<br>J2-1~6<br><br>(변경)<br>J2-1~6 | (기정)<br>J1-1~3<br>J2-1~6<br><br>(변경)<br>J2-1~6 | 지정용도 | • 자동차관련시설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및 그 부속용도<br>•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가정비를 목적으로 한 정비공장 |
|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br>• 학교보건법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동법 제6조의 행위 및 시설 |
| | | 건 폐 율 | • 20%이하 |
| | | 용 적 률 | • 50%이하 |
| | | 높 이 | • 10m이하 |
| |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택시차고지(J2) 북측 도로변 5m이상 |
| | | 배 치 | • 건축한계선에 적합한 배치로 시각적 연속성과 방향성 유도 |
| | | 형태·외관 | - |
| | | 채 색 |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따뜻한 계열색을 권장 |
| | | 담 장 | • 개방형 휀스 또는 1.2m이하의 생울타리 권장 |
| | | 기 타 | - |

② 차고지복합용지(신설)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 GC | GC1 | 허용용도 | 〈 도시계획시설 〉<br>•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정류장 및 부대시설·편익시설<br>〈 비도시계획시설 〉<br>• 「건축법 시행령」 [별표1]<br>-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br>-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제외)<br>-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br>- 교육연구시설<br>- 운동시설<br>※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특례로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br>※ 상기 허용용도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상 허용되는 용도에 한함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 폐 율 | • 70%이하 |
| | | 용 적 률 | • 260%이하 |
| | | 높 이 | • 25층이하 |
| |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하천변 3m |
| | | 배 치 | - |
| | | 형태·외관 | • 건축물의 지붕과 외벽면을 조립식 패널자재로 마감할 수 없음 |
| | | 채 색 |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따뜻한 계열의 색 사용을 권장함 |
| | | 담 장 | - |
| | | 기 타 | - |

< 차고지복합용지의 주택 규모 및 세대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

| 필지 번호 | 주택유형 (㎡) | 필지면적 (㎡) | 세대수 (호) | 인구수 (인) | 건폐율 (%) | 최고 층수 | 용적률(%) | 비고 |
|---|---|---|---|---|---|---|---|---|
| 계 | | 38,119.4 | 658 | 1,173 | - | - | 260 | |
| GC1 | 60㎡이하 | 38,119.4 | 658 | 1,173 | 70 | 25층 이하 | 260 | |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붙임1 참조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0)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체도시설계부(☏3410-769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지형도면

1. 용도지역 · 지구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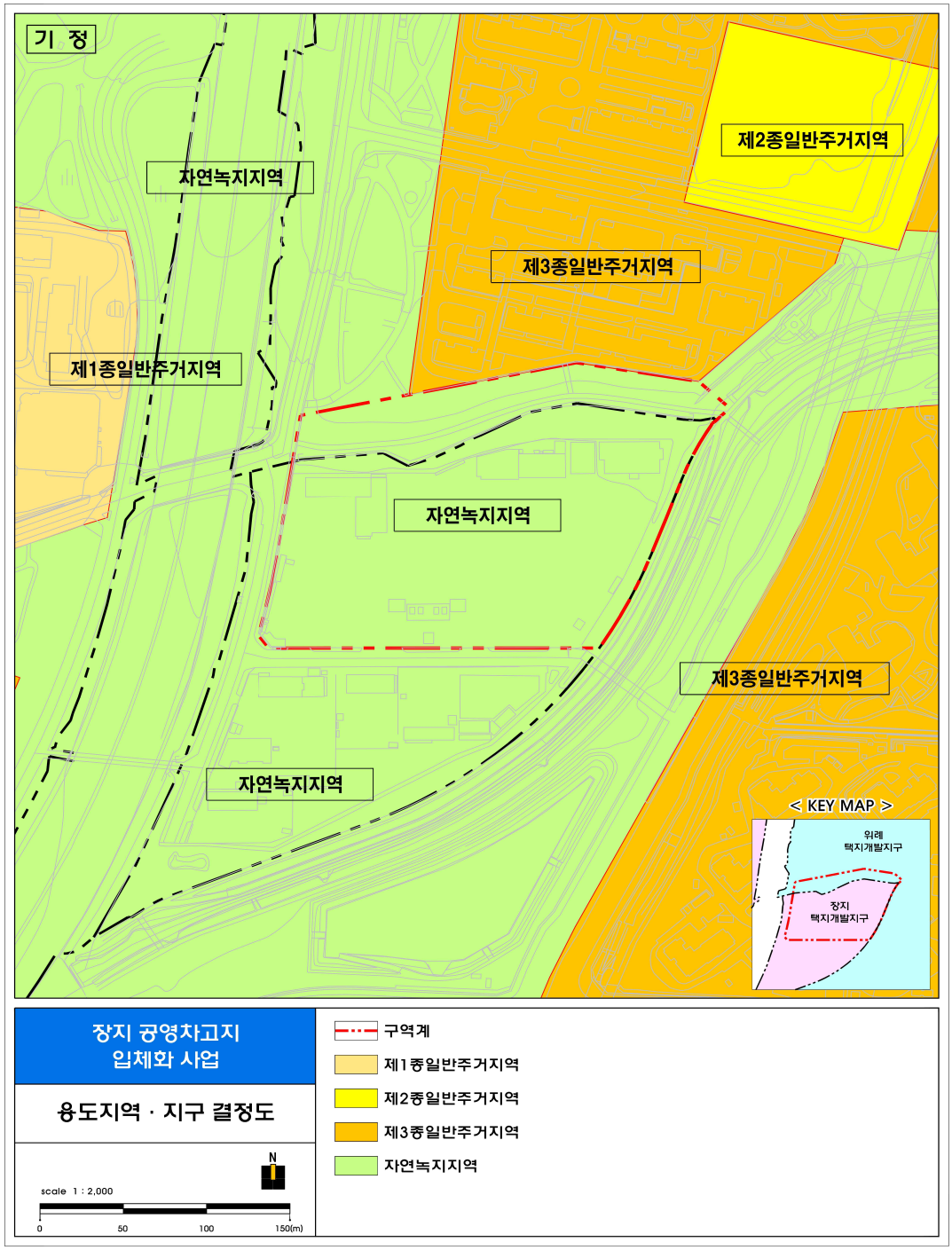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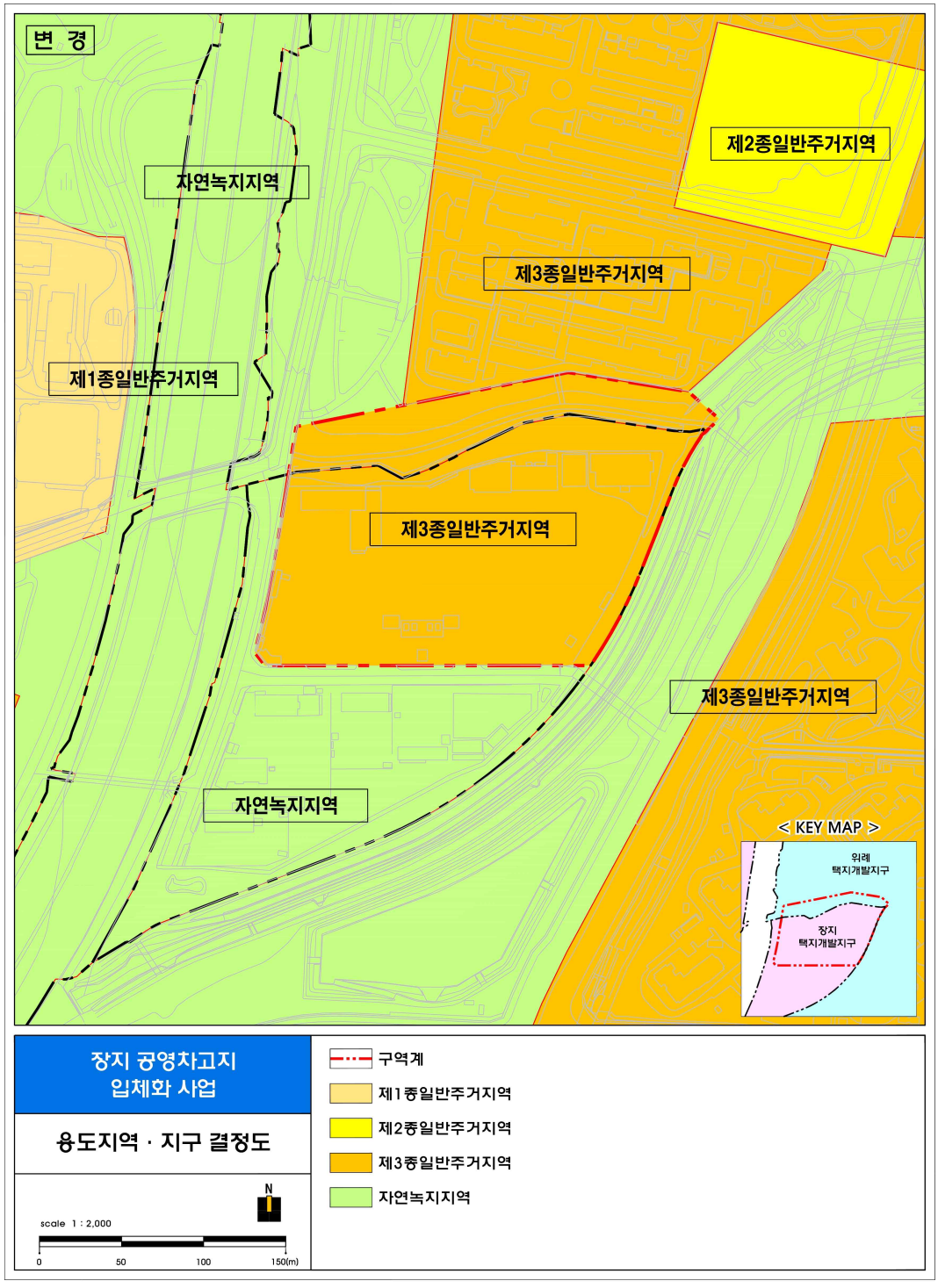
변 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KEY MAP >
위례
택지개발지구
장지
택지개발지구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N
scale 1 : 2,000
0
50
100
150(m)
구역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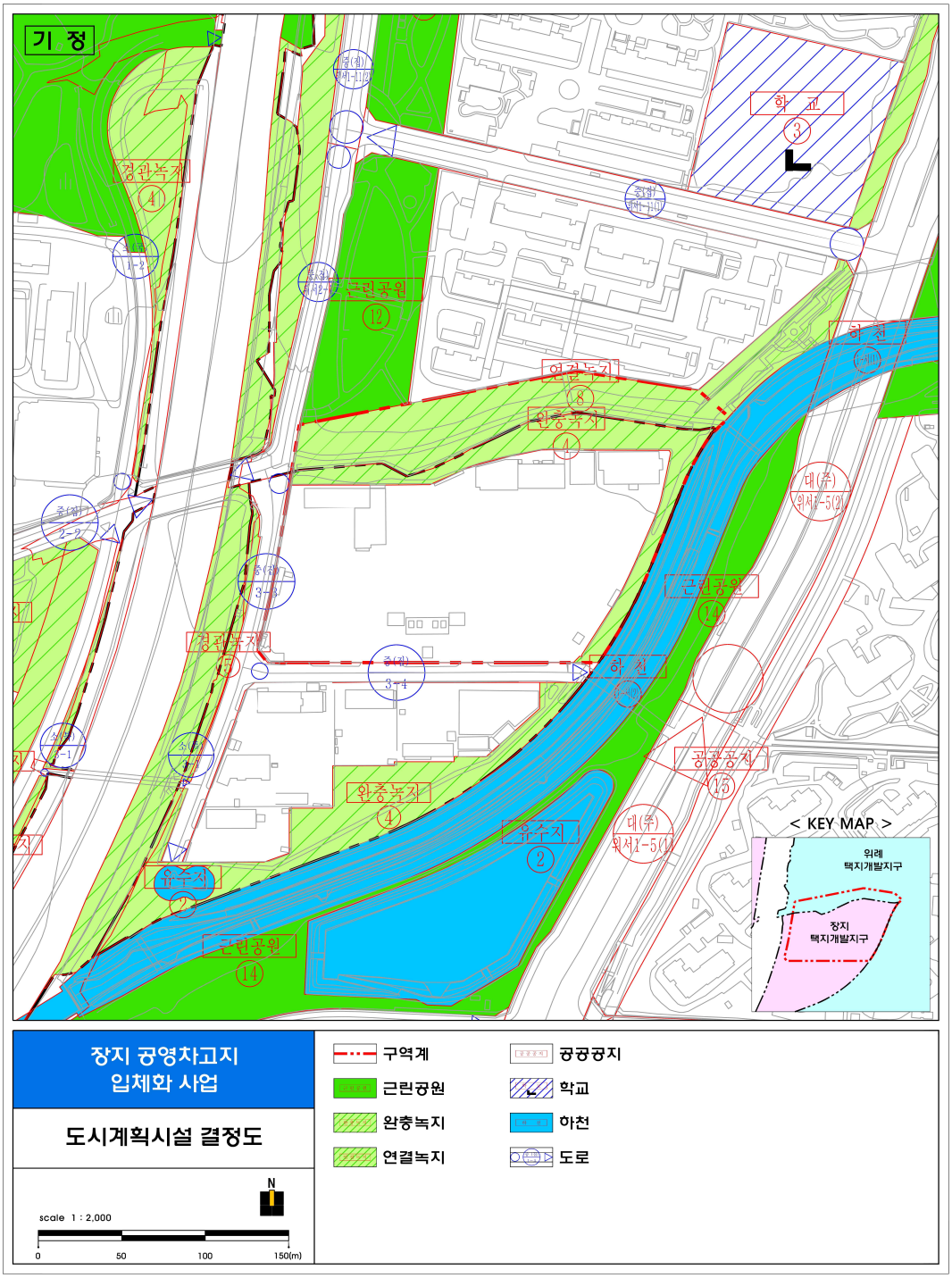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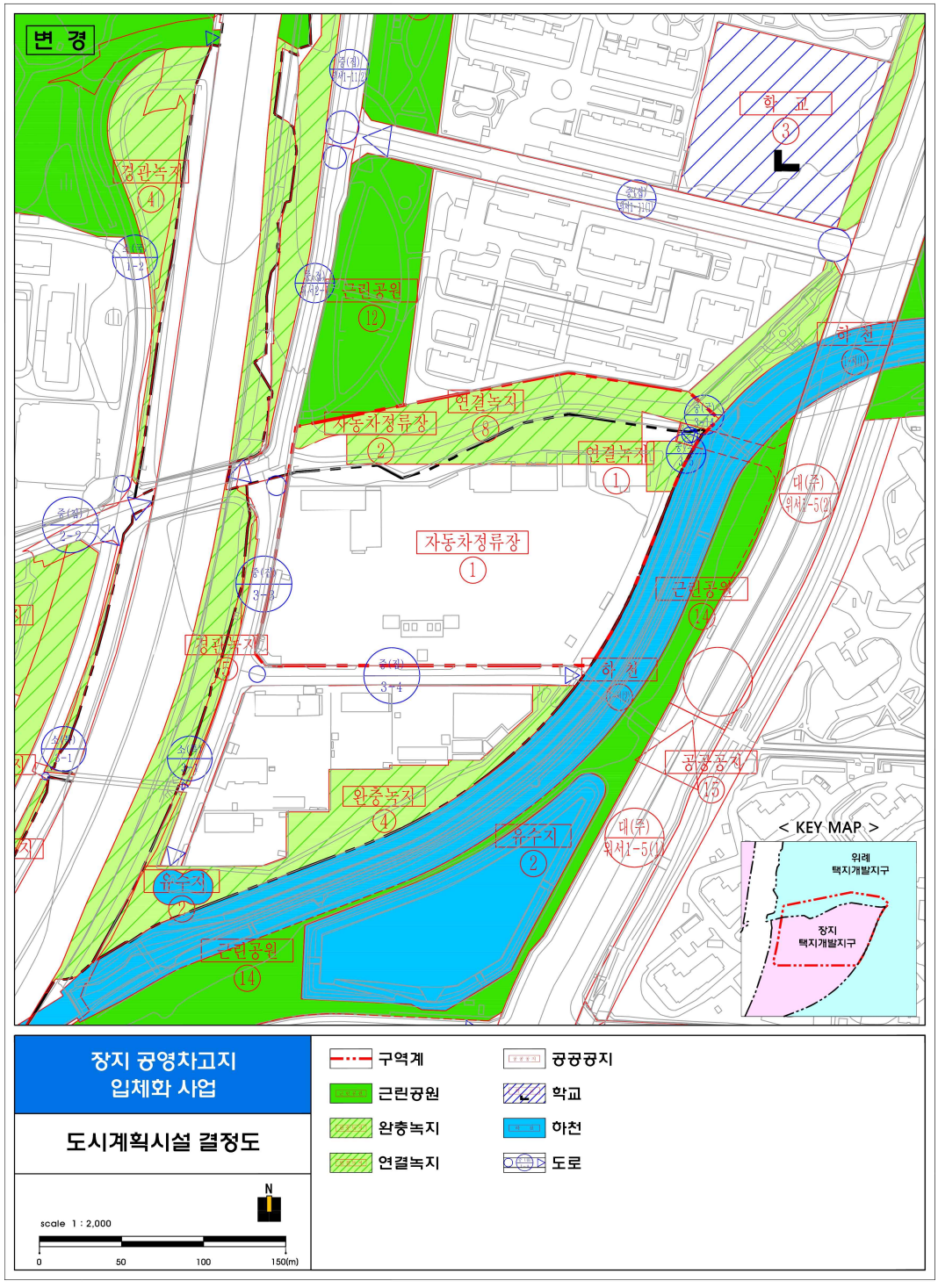
변 경
학 교
③
경관녹지
④
근린공원
⑫
하 천
연결녹지
⑧
자동차정류장
②
연결녹지
①
대(주)
위서Y-5(2)
자동차정류장
①
근린공원
⑭
경관녹지
⑤
하 천
공공공지
⑮
완충녹지
④
유수지
②
대(주)
위서Y-5(1)
유수지
②
근린공원
⑭
< KEY MAP >
위례
택지개발지구
장지
택지개발지구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구역계
근린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공공공지
학교
하천
도로
N
scale 1 : 2,000
0
50
100
150(m)

3. 공간적범위 결정도

–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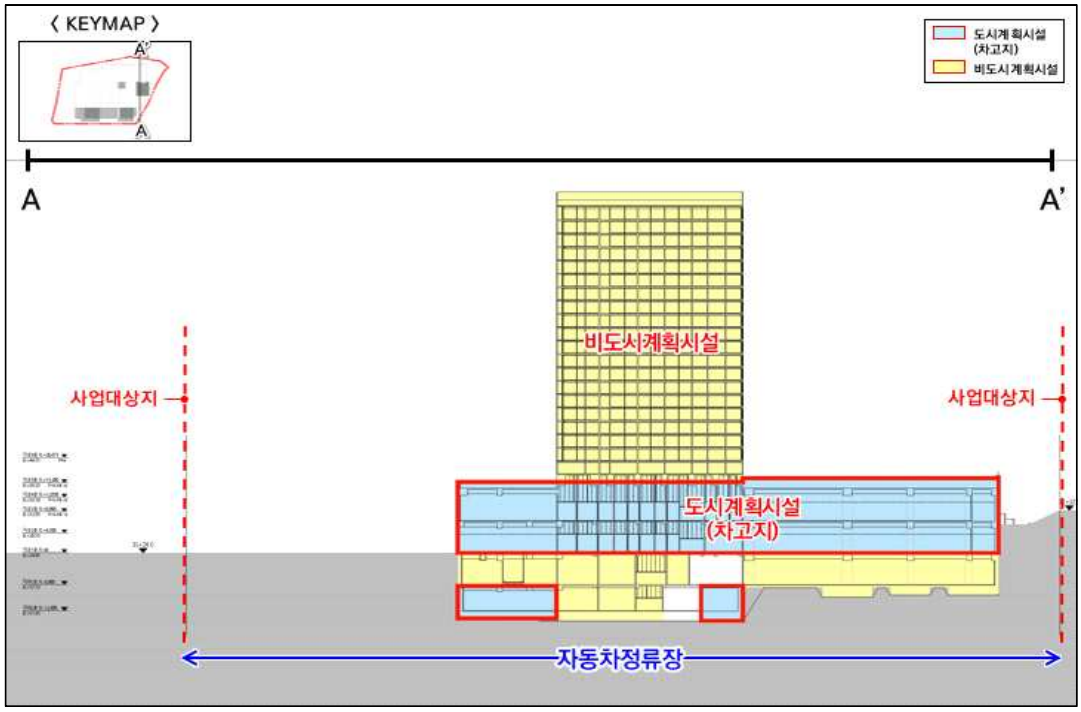


–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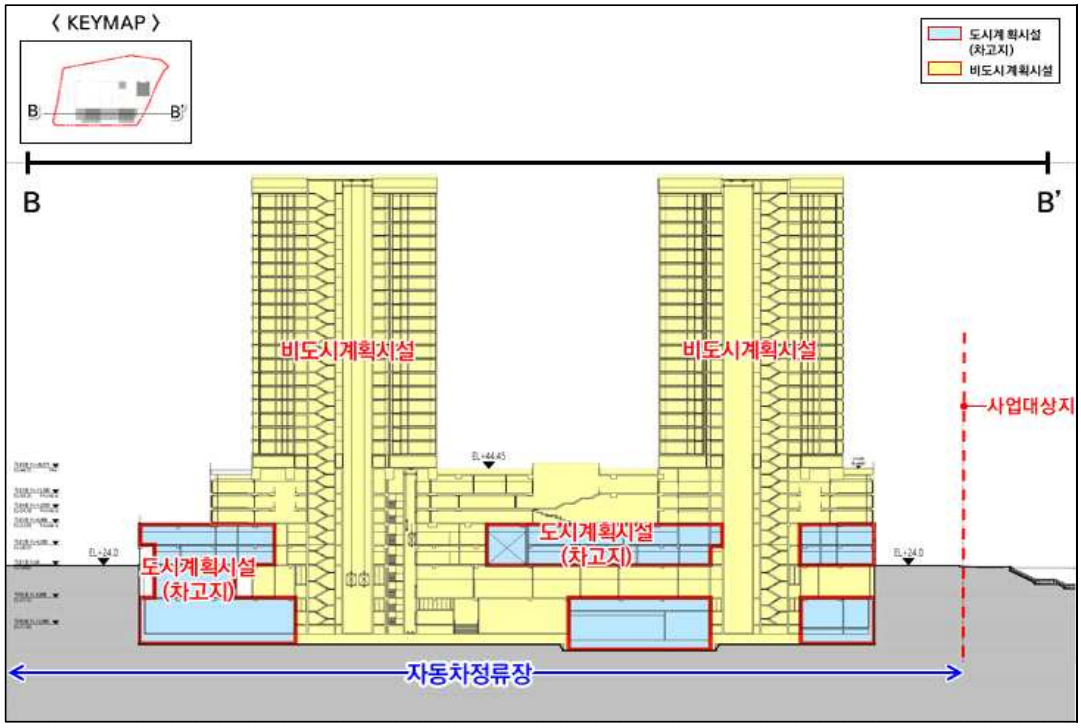

– 층별 평면도

| 지상 1층 | 지상 2층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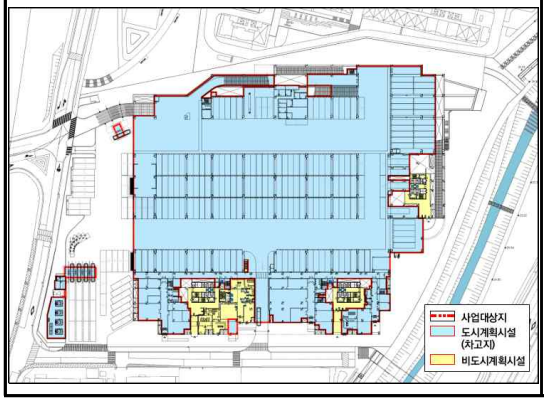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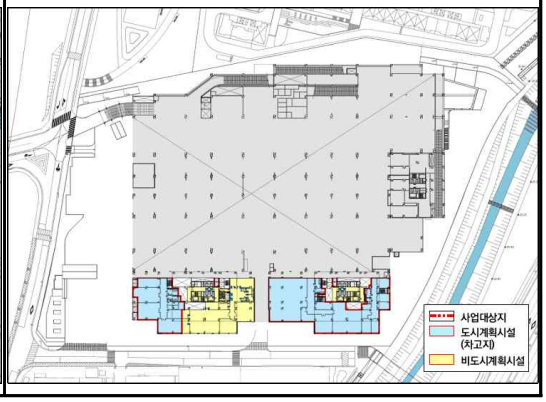 |

| 지상 3층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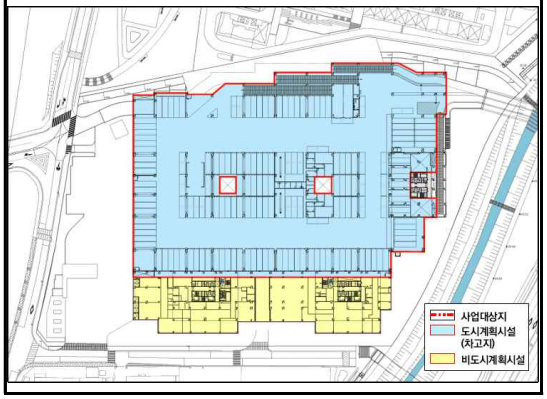 |

| 지하 1층 | 지하 2층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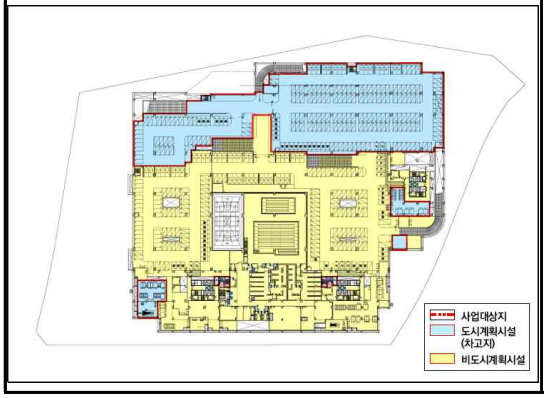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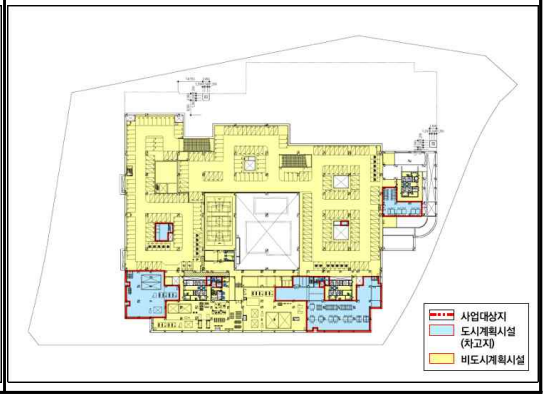 |

4. 건축물 등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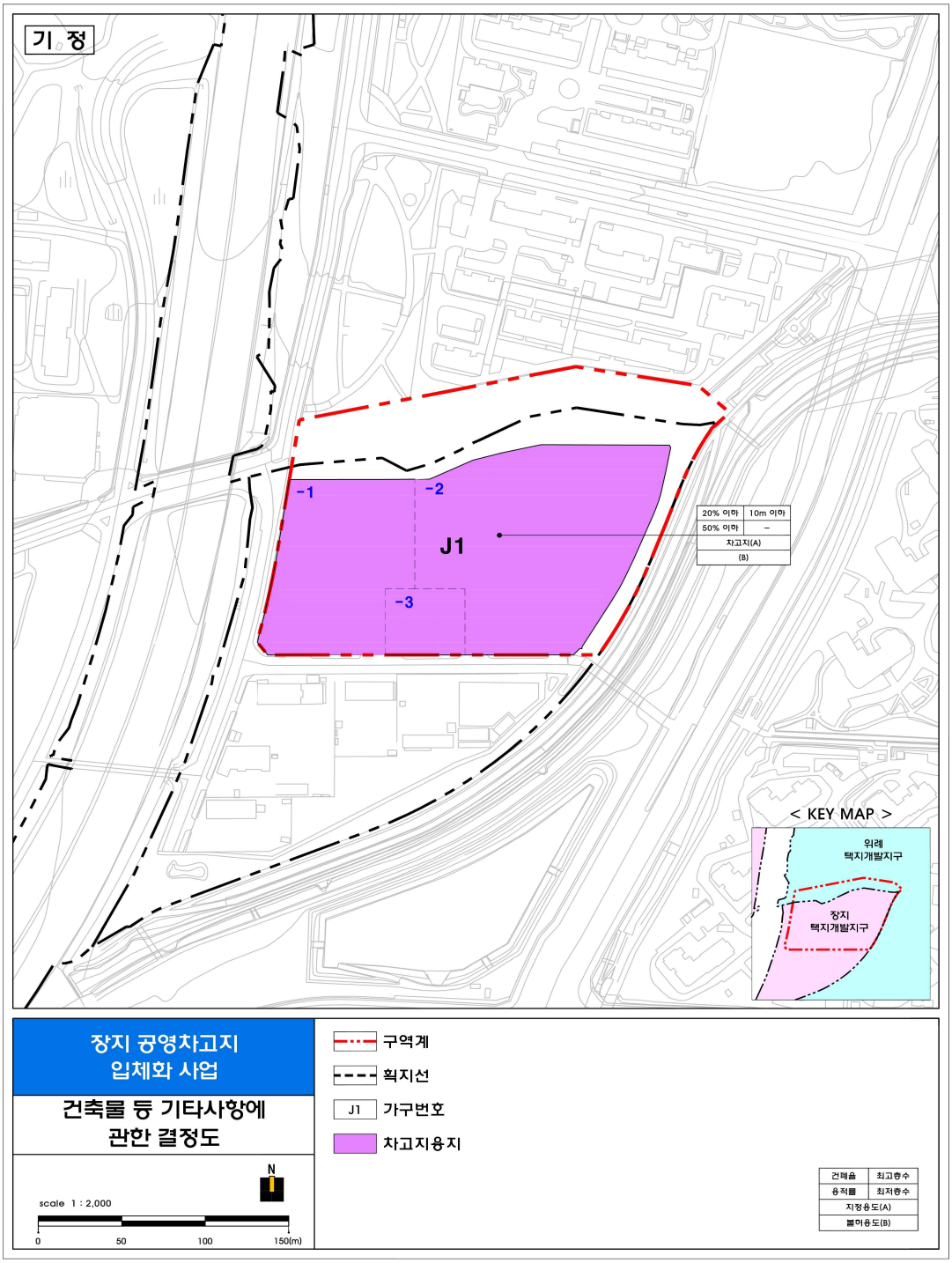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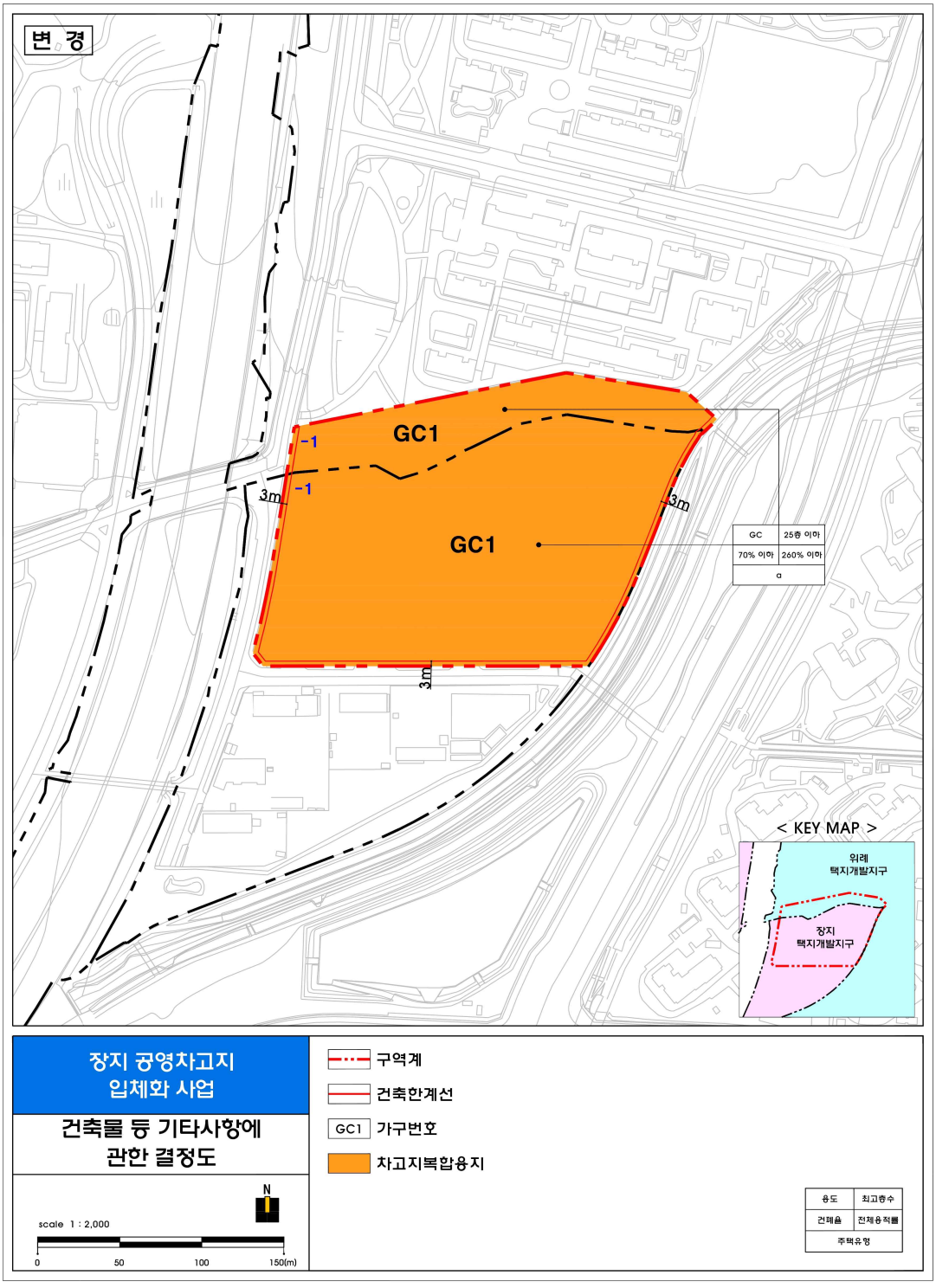
변 경
GC1
-1
-1
3m
3m
3m
GC1
GC
25층 이하
70% 이하
260% 이하
α
< KEY MAP >
위례
택지개발지구
장지
택지개발지구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건축물 등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N
scale 1 : 2,000
0
50
100
150(m)
구역계
건축한계선
GC1 가구번호
차고지복합용지
용도
최고층수
건폐율
전체용적률
주택유형

[붙임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 구 분 | | | 사업계획승인 내역 | 비 고 |
|---|---|---|---|---|
| ① 대 지 위 치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 일원 | |
| ② 대 지 면 적 (㎡) | | | 38,119.40 | |
| ③ 건 축 면 적 (㎡) | | | 24,561.07 | |
| ④ 건축 연면적 (㎡) | | | 135,951.45 | |
| ⑤ 건 폐 율 (%) | | | 64.43 | |
| ⑥ 용 적 률 (%) | | | 259.64 | |
| ⑦ 주택 규모 | 동수 및 층수 | | 공공임대주택 4동 658세대 (지하2층~지상25층) | |
| | 주택 형별 | 공공임대 | 전용 31A형㎡ : 126세대 | |
| | | | 전용 U31A형㎡ : 26세대 | |
| | | | 전용 31B형㎡ : 152세대 | |
| | | | 전용 31C형㎡ : 6세대 | |
| | | | 전용 31D형㎡ : 3세대 | |
| | | | 전용 41A형㎡ : 6세대 | |
| | | | 전용 51A형㎡ : 152세대 | |
| | | | 전용 51B형㎡ : 17세대 | |
| | | | 전용 51C형㎡ : 26세대 | |
| | | | 전용 51D형㎡ : 4세대 | |
| | | | 전용 56A형㎡ : 126세대 | |
| | | | 전용 56B형㎡ : 8세대 | |
| | | | 전용 59A형㎡ : 6세대 | |
| | | 계 | 총 658세대 | |
| ⑧ 사 업 기 간 | | | '20.05. ~ ' 28.10. | |
| ⑨ 부대 복리 시설 | 지하주차장 | | 14,555.56㎡ | |
| | 관리사무실 | | 192.28㎡ | |
| | 재활용품보관소 | | 230.71㎡ | |
| | 경비실 | | 25.68㎡ | |
| | 세대창고 | | 776.55㎡ | |
| | 어린이집 | | 476.49㎡ | |
| | 어린이집대기공간 | | 23.64㎡ | |
| | 주민공동시설-1 | | 446.22㎡ | |
| | 주민공동시설-2 | | 483.22㎡ | |
| | 주민공동시설-3 | | 512.91㎡ | |
| | 돌봄센터 | | 162.50㎡ | |
| | 게스트하우스 | | 39.82㎡ | |
| | 전기/발전기실 | | 678.66㎡ | |

| 구 분 | | | 사업계획승인 내역 | | | | | | 비 고 |
|---|---|---|---|---|---|---|---|---|---|
| | 기계실 | | 781.01㎡ | | | | | | |
| | 정화조 | | 142.01㎡ | | | | | | |
| | 동통신실/전기실 | | 129.04㎡ | | | | | | |
| | 빗물저류조-1 관리층 | | 238.65㎡ | | | | | | |
| ⑩ 단위 세대 면적 | | | 세대수 | 전용 | 주거공용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계약면적 | |
| | 공공 임대 | 31A | 126 | 31.25㎡ | 26.45㎡ | 57.70㎡ | 22.98㎡ | 80.68㎡ | |
| | | U31A | 26 | 31.25㎡ | 26.44㎡ | 57.69㎡ | 22.97㎡ | 80.66㎡ | |
| | | 31B | 152 | 31.51㎡ | 26.58㎡ | 58.09㎡ | 23.16㎡ | 81.25㎡ | |
| | | 31C | 6 | 31.84㎡ | 28.30㎡ | 60.14㎡ | 23.40㎡ | 83.54㎡ | |
| | | 31D | 3 | 31.62㎡ | 27.43㎡ | 59.05㎡ | 23.25㎡ | 82.30㎡ | |
| | | 41A | 6 | 41.68㎡ | 35.25㎡ | 76.93㎡ | 30.63㎡ | 107.56㎡ | |
| | | 51A | 152 | 51.74㎡ | 43.33㎡ | 95.07㎡ | 38.02㎡ | 133.09㎡ | |
| | | 51B | 17 | 51.90㎡ | 44.60㎡ | 96.50㎡ | 38.14㎡ | 134.64㎡ | |
| | | 51C | 26 | 51.76㎡ | 43.85㎡ | 95.61㎡ | 38.04㎡ | 133.65㎡ | |
| | | 51D | 4 | 51.99㎡ | 45.04㎡ | 97.03㎡ | 38.23㎡ | 135.26㎡ | |
| | | 56A | 126 | 56.86㎡ | 46.31㎡ | 103.17㎡ | 41.80㎡ | 144.97㎡ | |
| | | 56B | 8 | 56.83㎡ | 47.66㎡ | 104.49㎡ | 41.79㎡ | 146.28㎡ | |
| | | 59A | 6 | 59.86㎡ | 50.52㎡ | 110.38㎡ | 44.00㎡ | 154.38㎡ | |
| ⑪ 생활 SOC | 지하2층 | | 전용(운동시설) : 710.60㎡ / 공용 : 4,203.28㎡ | | | | | | |
| | 지하1층 | | 전용(운동시설) : 2,699.68㎡ / 공용 : 1,664.81㎡ | | | | | | |
| | 지상1층 | | 전용(근린생활시설) : 153.37㎡ / 공용 : 280.65㎡ | | | | | | |
| | 지상2층 | | 전용(운동시설) : 685.07㎡ / 공용 : 170.25㎡ | | | | | | |
| ⑫ 차고지 시설 | 지하2층 | | 공용 : 2,251.43㎡ | | | | | | |
| | 지하1층 | | 공용 : 7,723.25㎡ | | | | | | |
| | 지상1층 | | 전용 : 21,214.66㎡ / 공용 : 281.13㎡ | | | | | | |
| | 지상2층 | | 전용 : 2,277.58㎡ / 공용 : 27.24㎡ | | | | | | |
| | 지상3층 | | 전용 : 18,648.94㎡ / 공용 : 55.92㎡ | | | |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7호

##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9.21.)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0호(2024.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12호(2024.8.22.) 및 서초구고시 제2024-191호(2024.10.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에 대하여 2024년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10.2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잠원동 66-2번지 개발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기정 | ① |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 2,841,838.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 (2023.9.21.) |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구 | | 획지 | | | | | 비고 |
|---|---|---|---|---|---|---|---|
| 구분 | 번호 | 번호 | 위치 | | 면적(㎡) | 대지면적(㎡) | |
| 기정 | J | J3 | 잠원동 | 66-2 | 10,562.3 | 13,176.9 | 특별계획구역7 |
| | | | 잠원동 | 66-15 | 2,614.6 | | |
| 변경 | J | J3-1 | 잠원동 | 66-2 | 10,562.3 | 10,562.3 | 특별계획구역7-1 |
| | | J3-2 | 잠원동 | 66-15 | 2,614.6 | 2,614.6 | 특별계획구역7-2 |

▌변경사유서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획지 | • 획지 J3을 2개의 획지(J3-1, J3-2)로 분할 | • 토지 소유주 및 부지 활용 계획이 상이함에 따라 공동개발이 불가하여 특별계획구역7 지침에 따라 획지 분할 |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5.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 유형구분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가구J | 기정 | 특별계획구역7 | 잠원동 66-2 일대 | 13,176.9 | 감)13,176.9 | - | 유형3 |
| | 변경 | 특별계획구역7-1 | 잠원동 66-2 | - | 증)10,562.3 | 10,562.3 | 유형3 |
| | | 특별계획구역7-2 | 잠원동 66-15 | - | 증) 2,614.6 | 2,614.6 | 유형3 |

▌변경사유서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특별계획구역 | • 특별계획구역7을 2개의 특별계획구역(7-1, 7-2)으로 분할 | • 토지 소유주 및 부지 활용 계획이 상이함에 따라 공동개발이 불가하여 특별계획구역7 지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분할 |

나.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1) 유형Ⅰ: 정비계획수립 완료형(변경없음)

2) 유형Ⅱ: 정비구역 지정대상(전환)형(변경없음)

3) 유형Ⅲ: 일반 세부개발계획 수립형

○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역으로 향후 구역별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적, 체

계적, 합리적, 창의적인 재건축 정비계획을 유도하고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함.

▌기정 : 특별계획구역7(파스텔 골프클럽)

(1) 특별계획구역7 지침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 colspan="3">위치</td><td>•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6-2, 66-15 일대</td><td></td></tr>
<tr><td colspan="3">특별계획구역<br>면적(㎡)</td><td>• 13,176.9㎡</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지구</td><td>•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td><td></td></tr>
<tr><td colspan="3">획지계획</td><td>• 획지 J3<br>- 필요시 66-15 획지분할 가능</td><td></td></tr>
<tr><td colspan="3">공공시설 등 계획</td><td>•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411호(2017.11.16.)에 따른 공공시설계획 준용<br>•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규모 및 건축계획에 따라 필요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td><td></td></tr>
<tr><td rowspan="2">용도계획</td><td>불허용도</td><td>획지 J3</td><td>•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허용 이외 용도<br>•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의 허용 건축물 중 다음 용도<br>- 안마원, 총포판매소, 장의사 -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br>- 정신병원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의료시설<br>-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br>-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br>- 교정 및 국방시설 - 방송통신시설<br>- 발전시설</td><td></td></tr>
<tr><td>권장용도</td><td></td><td>전층: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아동관련시설<br>저층부(1층) 가로활성화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td><td></td></tr>
<tr><td rowspan="3">밀도계획</td><td colspan="2">건폐율</td><td>• 50% 이하</td><td></td></tr>
<tr><td>용적률</td><td rowspan="2">획지 J3</td><td>• 기준용적률 : 120%이하 / 허용용적률 : 150%이하 / 상한용적률 : 200%이하<br>※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11호에 따라 결정 ·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인센티브 계획내용을 따른다.</td><td></td></tr>
<tr><td>높이</td><td>• 20m 이하</td><td></td></tr>
<tr><td rowspan="2">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td><td>건축선</td><td>획지 J3</td><td>• 건축한계선 : 가로변 2m 이격거리 확보로 보행환경 개선</td><td>지침도에 따름</td></tr>
<tr><td colspan="2">대지내 공지</td><td>• 전면공지, 공개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br>• 공공보행통로(24시간 개방) :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소통 및 단지간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대상지 북측변 학교시설과 접하여 공공보행통로(폭 6m 이상) 조성</td><td>지침도에 따름<br>(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td></tr>
<tr><td colspan="3">교통처리계획</td><td>• 북측 학교 인접지역 차량출입을 제한하여 통학(보행)권 보호</td><td>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td></tr>
<tr><td colspan="3">기타에 관한 사항</td><td>•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11호(2017.11.16.) 결정사항 준용<br>•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0.05)」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br>• 학교폐지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통합개발 원칙<br>• 통합개발이 불가할 경우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허용<br>• 건축계획시 인접 정주환경 및 학교학습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청 협의</td><td></td></tr>
</table>

▌변경 : 특별계획구역7-1(파스텔 골프클럽)

(1) 특별계획구역7-1 지침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2">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 colspan="3">위치</td><td colspan="2">•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6-2</td><td></td></tr>
<tr><td colspan="3">특별계획구역<br>면적(㎡)</td><td colspan="2">• 10,562.3㎡</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지구</td><td colspan="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td><td></td></tr>
<tr><td colspan="3">획지계획</td><td colspan="2">• 획지 J3-1</td><td></td></tr>
<tr><td colspan="3">공공시설 등 계획</td><td colspan="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규모 및 건축계획에 따라 필요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td><td></td></tr>
<tr><td rowspan="3">용도<br>계획</td><td>불허<br>용도</td><td rowspan="3">획지<br>J3-1</td><td colspan="2">•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허용 이외 용도<br>•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의 허용 건축물 중 다음 용도<br>- 안마원, 총포판매소, 장의사 -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br>- 정신병원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의료시설<br>-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br>-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br>- 교정 및 국방시설 - 방송통신시설<br>- 발전시설</td><td></td></tr>
<tr><td rowspan="2">권장<br>용도</td><td>전층</td><td>저층부(1층) 가로활성화 용도</td><td rowspan="2"></td></tr>
<tr><td>• 문화 및 집회시설<br>• 교육연구시설<br>• 아동관련시설</td><td>•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td></tr>
<tr><td rowspan="3">밀도<br>계획</td><td colspan="2">건폐율</td><td colspan="2">• 50% 이하</td><td></td></tr>
<tr><td>용적률</td><td rowspan="2">획지<br>J3-1</td><td colspan="2">• 기준용적률 : 120%이하 / 허용용적률 : 150%이하 / 상한용적률 : 200%이하<br>※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준에 따름</td><td></td></tr>
<tr><td>높이</td><td colspan="2">• 20m 이하</td><td></td></tr>
<tr><td rowspan="2">건축선<br>및<br>대지내<br>공지</td><td>건축선</td><td>획지<br>J3-1</td><td colspan="2">• 건축한계선 : 가로변 2m 이격거리 확보로 보행환경 개선</td><td>지침도에<br>따름</td></tr>
<tr><td colspan="2">대지내 공지</td><td colspan="2">• 전면공지, 공개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br>• 공공보행통로(24시간 개방) :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소통 및 단지간 보행 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J3-1 : 3m, J3-2 : 3m, J12 : 3m)조성</td><td>지침도에 따름<br>(세부개발계획<br>수립시 결정)</td></tr>
<tr><td colspan="3">교통처리계획</td><td colspan="2">• 북측 학교 인접지역 차량출입을 제한하여 통학(보행)권 보호</td><td>지정위치는<br>결정도를 따름</td></tr>
<tr><td colspan="3">기타에 관한 사항</td><td colspan="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0.05)」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 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br>• 건축계획시 인접 정주환경 및 학교학습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청 협의</td><td></td></tr>
</table>

(2) 특별계획구역7-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구분 | | | 세부계획기준 | 비고 | |
|---|---|---|---|---|---|
| 계획유도 | 획지계획 | 획지단위 개발 | • 기준용적률×0.04 | • 획지분할가능선으로 분할시 미적용 | |
| |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0 | | 개방형 구조에 한함 |
| | | 건축 한계선 |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2.0 | • 폭2m이상 | |
| | | 공공 보행통로 |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5 | • 폭6m이상 | |
| | 건축물 용도 | 권장용도 |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5 | • 20% 이상 설치시 | |
| |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 • 기준용적률×0.02 | • 판매 및 근생시설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 1/2 이상 | |
| | 건축물 개방 |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 • 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0.5 |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 |
| 친환경 | 녹색건축인증 | |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0.06<br>•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0.04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준용<br>•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대상 준수 | |
|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0.04<br>•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0.03 | | |
|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 • 신재생에너지 2등급 이상 : 기준용적률×0.05<br>• 신재생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0.02 |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에 관한 규칙 적용<br>•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 |
| | 중수도 시설 설치 | | • 기준용적률×0.02 |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br>•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 |
| | 빗물관리시설 | | • 기준용적률×0.02 |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 및 빗물침투시설<br>• 침투량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 |
| | 옥상녹화 | |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br>•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 |
| | 자연지반 보존 | |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1 |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br>•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 |

주) 본 특별계획구역지침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을 준용

▌변경 : 특별계획구역7-2

(1) 특별계획구역7-2 지침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 colspan="3">위치</td><td>•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6-15</td><td></td></tr>
<tr><td colspan="3">특별계획구역<br>면적(㎡)</td><td>• 2,614.6㎡</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지구</td><td>•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td><td></td></tr>
<tr><td colspan="3">획지계획</td><td>• 획지 J3-2</td><td></td></tr>
<tr><td colspan="3">공공시설 등 계획</td><td>•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규모 및 건축계획에 따라 필요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td><td></td></tr>
<tr><td rowspan="3">용도<br>계획</td><td>불허<br>용도</td><td>획지<br>J3-2</td><td>•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허용 이외 용도<br>•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의 허용 건축물 중 다음 용도<br>- 안마원, 총포판매소, 장의사 -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br>- 정신병원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의료시설<br>-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br>-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br>- 교정 및 국방시설 - 방송통신시설<br>- 발전시설</td><td></td></tr>
<tr><td>권장<br>용도</td><td></td><td>전층: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아동관련시설<br>저층부(1층) 가로활성화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td><td></td></tr>
<tr><td rowspan="3">밀도<br>계획</td><td colspan="2">건폐율</td><td>• 50% 이하</td><td></td></tr>
<tr><td>용적률</td><td rowspan="2">획지<br>J3-2</td><td>• 기준용적률 : 120%이하 / 허용용적률 : 150%이하 / 상한용적률 : 200%이하<br>※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준에 따름</td><td></td></tr>
<tr><td>높이</td><td>• 20m 이하</td><td></td></tr>
<tr><td rowspan="2">건축선<br>및<br>대지내<br>공지</td><td>건축선</td><td>획지<br>J3-2</td><td>• 건축한계선 : 가로변 2m 이격거리 확보로 보행환경 개선</td><td>지침도에<br>따름</td></tr>
<tr><td colspan="2">대지내 공지</td><td>• 전면공지, 공개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br>• 공공보행통로(24시간 개방) :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소통 및 단지간 보행 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J3-1 : 3m, J3-2 : 3m, J12 : 3m)조성</td><td>지침도에 따름<br>(세부개발계획<br>수립시 결정)</td></tr>
<tr><td colspan="3">교통처리계획</td><td>• 북측 학교 인접지역 차량출입을 제한하여 통학(보행)권 보호</td><td>지정위치는<br>결정도를 따름</td></tr>
<tr><td colspan="3">기타에 관한 사항</td><td>•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0.05)」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 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td><td></td></tr>
</table>

(2) 특별계획구역7-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구분 | | | 세부계획기준 | 비고 | |
|---|---|---|---|---|---|
| 계획유도 | 획지계획 | 획지단위 개발 | • 기준용적률×0.04 | • 획지분할가능선으로 분할시 미적용 | |
| |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0 | | 개방형 구조에 한함 |
| | | 건축 한계선 |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2.0 | • 폭2m이상 | |
| | | 공공 보행통로 |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5 | • 폭6m이상 | |
| | 건축물 용도 | 권장용도 |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5 | • 20% 이상 설치시 | |
| |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 • 기준용적률×0.02 | • 판매 및 근생시설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 1/2 이상 | |
| | 건축물 개방 |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 • 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0.5 |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 |
| 친환경 | 녹색건축인증 | |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0.06<br>•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0.04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준용<br>•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대상 준수 | |
|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0.04<br>•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0.03 | | |
|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 • 신재생에너지 2등급 이상 : 기준용적률×0.05<br>• 신재생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0.02 |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에 관한 규칙 적용<br>•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 |
| | 중수도 시설 설치 | | • 기준용적률×0.02 |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br>•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 |
| | 빗물관리시설 | | • 기준용적률×0.02 |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 및 빗물침투시설<br>• 침투량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 |
| | 옥상녹화 | |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br>•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 |
| | 자연지반 보존 | |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1 |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br>•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 |

주) 본 특별계획구역지침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을 준용

▌변경사유서

| 구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 | • 특별계획구역7(획지 J3)에 대해 각각 2개 획지(J3-1, J3-2) 및 특별계획구역(7-1, 7-2)으로 분할 | • 토지 소유주 및 부지 활용 계획이 상이함에 따라 공동개발이 불가하여 특별계획구역7 지침에 따라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을 분할 |
| 대지내 공지 (공공 보행통로) | • 공공보행통로 위치 변경<br>: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소통 및 단지간 보행 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J3-1 : 3m, J3-2 : 3m, J12 : 3m)조성 | • 반포아파트지구 보행동선체계에 부합하도록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정위치 변경<br>※결정도에 따름(위치 변경) |

## Ⅲ.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특별계획구역7-1 | 잠원동 66-2 | - | 증)10,562.3 | 10,562.3 | - | |

▌변경사유서

| 구역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특별계획구역7-1 | • 특별계획구역7(획지 J3)에 대해 각각 2개 획지(J3-1, J3-2) 및 특별계획구역(7-1, 7-2)으로 분할 | • 토지 소유주 및 부지 활용 계획이 상이함에 따라 공동개발이 불가하여 특별계획구역7 지침에 따라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을 분할 |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구분 | | 면 적 (㎡) | | | 구성비(%)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10,562.3 | - | 10,562.3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0,562.3 | - | 10,562.3 | 100.0 |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해당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해당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가구번호(도면번호)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 J | 서초구 잠원동 66 일대 | 94,351.80 | |

나.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해당없음)

다.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구 | | 획지 | | | | | 비고 |
|---|---|---|---|---|---|---|---|
| 구분 | 번호 | 번호 | 위치 | | 면적(㎡) | 대지면적(㎡) | |
| 변경 | J | J3-1 | 잠원동 | 66-2 | 10,562.3 | 10,562.3 | 특별계획구역7-1 |

▌변경사유서

| 구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획지 | • 획지 J3을 2개의 획지(J3-1, J3-2)로 분할 | • 토지 소유주 및 부지 활용 계획이 상이함에 따라 공동개발이 불가하여 특별계획구역7 지침에 따라 획지 분할 |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구분 |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
| 불허용도 | |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허용 이외 용도<br>•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의 허용 건축물 중 다음 용도<br>- 안마원, 총포판매소, 장의사 - 정신병원<br>- 공장 , 창고시설<br>-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br>- 교정 및 국방시설 - 발전시설<br>-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br>-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의료시설<br>-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br>-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좌동 | |
| 권장 용도 | 전층 | • 문화 및 집회시설<br>• 교육연구시설<br>• 아동관련시설 | | |
| | 저층부(1층) 가로활성화용도 |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 | |

## 3.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table>
<tr><th>구분</th><th colspan="5">계획지침</th><th>세부개발계획</th><th>비고</th></tr>
<tr><td>건폐율</td><td colspan="5">• 50%이하</td><td>좌동</td><td></td></tr>
<tr><td rowspan="3">용적률</td><td colspan="5">• 기준용적률 : 120% 이하 / 허용용적률 : 150% 이하 / 상한용적률 : 200% 이하<br>※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준에 따름</td><td>좌동</td><td></td></tr>
<tr><td colspan="6">-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세부계획기준</th><th colspan="2">비고</th></tr>
<tr><td rowspan="7">계획유도</td><td rowspan="2">획지계획</td><td>획지단위 개발</td><td>•기준용적률×0.04</td><td colspan="2">•획지분할가능선으로 분할시 미적용</td></tr>
<tr><td rowspan="2">대지내 공지</td><td>공개공지</td><td>•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0</td><td></td><td rowspan="2">개방형구조에 한함</td></tr>
<tr><td>건축한계선</td><td>•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2.0</td><td>•폭2m이상</td></tr>
<tr><td>대지내 공지</td><td>공공 보행통로</td><td>•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5</td><td>•폭6m이상</td><td>개방형구조에 한함</td></tr>
<tr><td rowspan="2">건축물 용도</td><td>권장용도</td><td>•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5</td><td colspan="2">•20% 이상 설치 시</td></tr>
<tr><td>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td><td>•기준용적률×0.02</td><td colspan="2">•판매 및 근생시설 1층 벽면 길이 및 바닥면적 1/2 이상</td></tr>
<tr><td>건축물 개방</td><td>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td><td>•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 ×0.5</td><td colspan="2">•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td></tr>
</table></td></tr>
<tr><td>용적률</td><td colspan="5">-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계속)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세부계획기준</th><th>비고</th></tr>
<tr><td rowspan="6">친환경</td><td>녹색건축인증</td><td>•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0.06<br>•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0.04</td><td rowspan="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준용<br>•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대상 준수</td></tr>
<tr><td>에너지 효율등급 인증</td><td>•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0.04<br>•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0.03</td></tr>
<tr><td>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td><td>•신재생에너지 2등급 이상 : 기준용적률×0.05<br>•신재생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0.02</td><td>•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적용<br>•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td></tr>
<tr><td>중수도 시설 설치</td><td>•기준용적률×0.02</td><td>•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br>•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td></tr>
<tr><td>빗물관리시설</td><td>•기준용적률×0.02</td><td>•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 및 빗물침투시설<br>•침투량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td></tr>
<tr><td>옥상녹화</td><td>•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td><td>•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br>•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 까지만 허용</td></tr>
</table></td><td></td></tr>
</table>

| 구분 | 계획지침 |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
| | 구분 | 세부계획기준 | 비고 | |
| |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1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br>•지하구조물 미설치시 | |
| 높이 | • 20m이하 | | 좌동 | |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구분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
| 건축한계선 | • 가로변 2m 이격거리 확보로 보행환경 개선 | 좌동 | 지침도에 따름 |
|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좌동 | 지침도에 따름 |
| 공공보행통로 | •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소통 및 단지 간 보행 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J3-1: 3m, J3-2: 3m, J12: 3m)조성 | 좌동 | 지침도에 따름 |
| 공공시설 등 계획 |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규모 및 건축계획에 따라 필요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 | 해당사항 없음 | |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
| 교통처리계획 | • 북측 학교 인접지역 차량출입을 제한하여 통학(보행)권 보호 | 좌동 | 지침도에 따름 |
| 기타 사항 |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0.05)」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br>• 건축계획시 인접 정주환경 및 학교학습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청 협의 | • 건축계획시 인접 정주환경 및 학교학습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청 협의 | |

Ⅳ.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7) 및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8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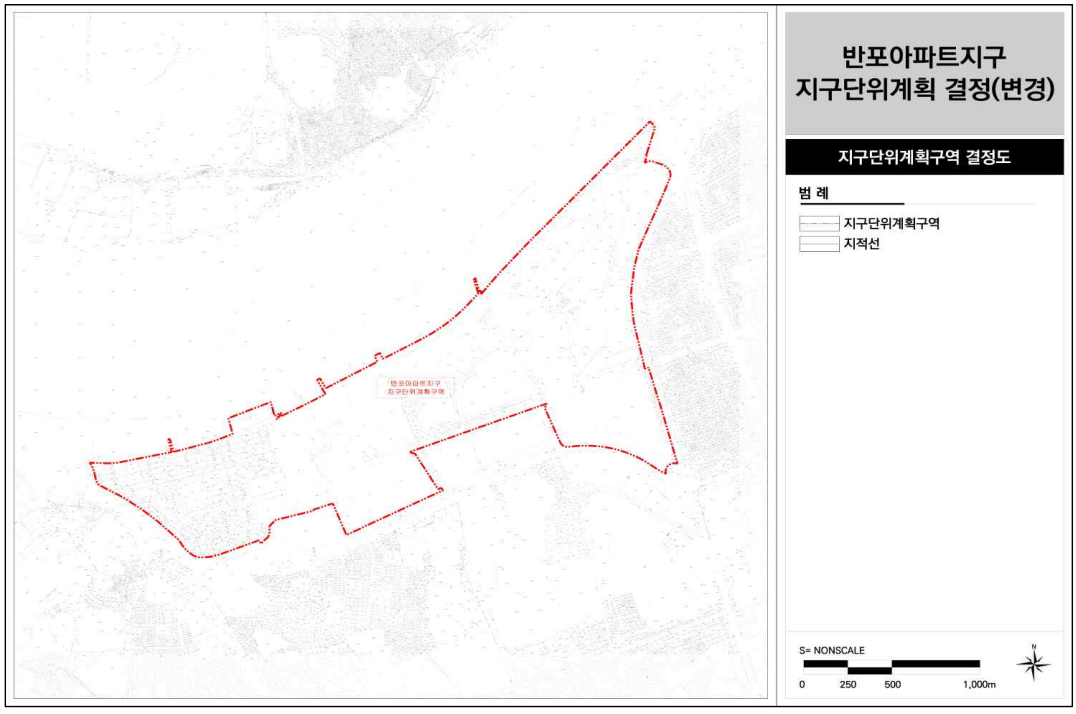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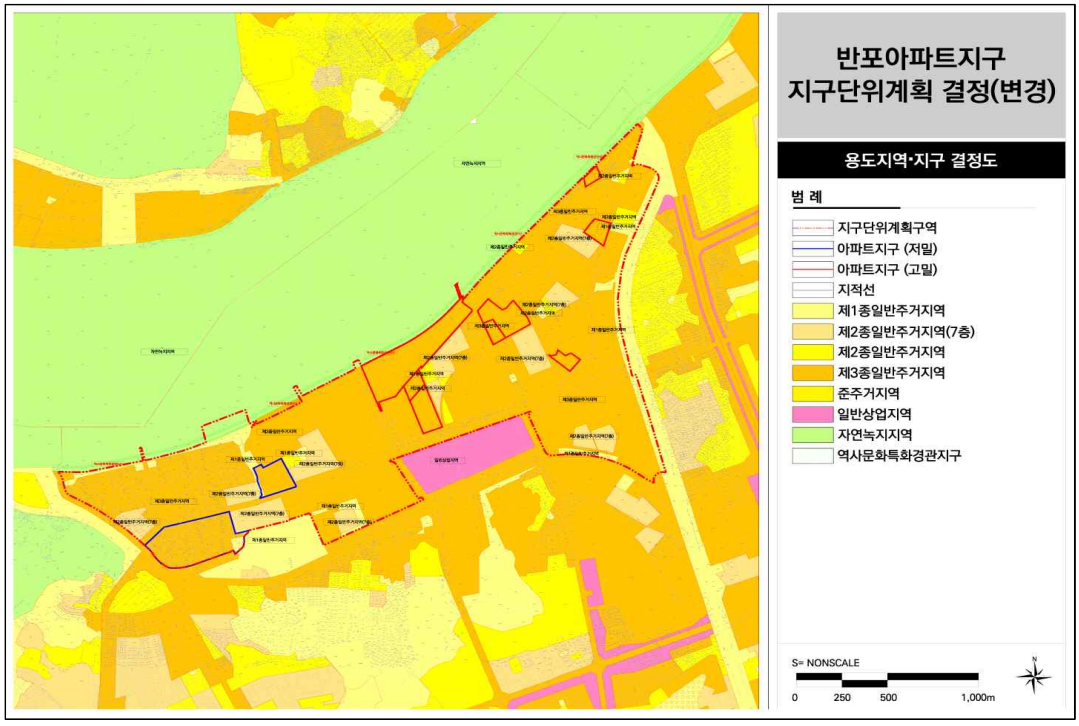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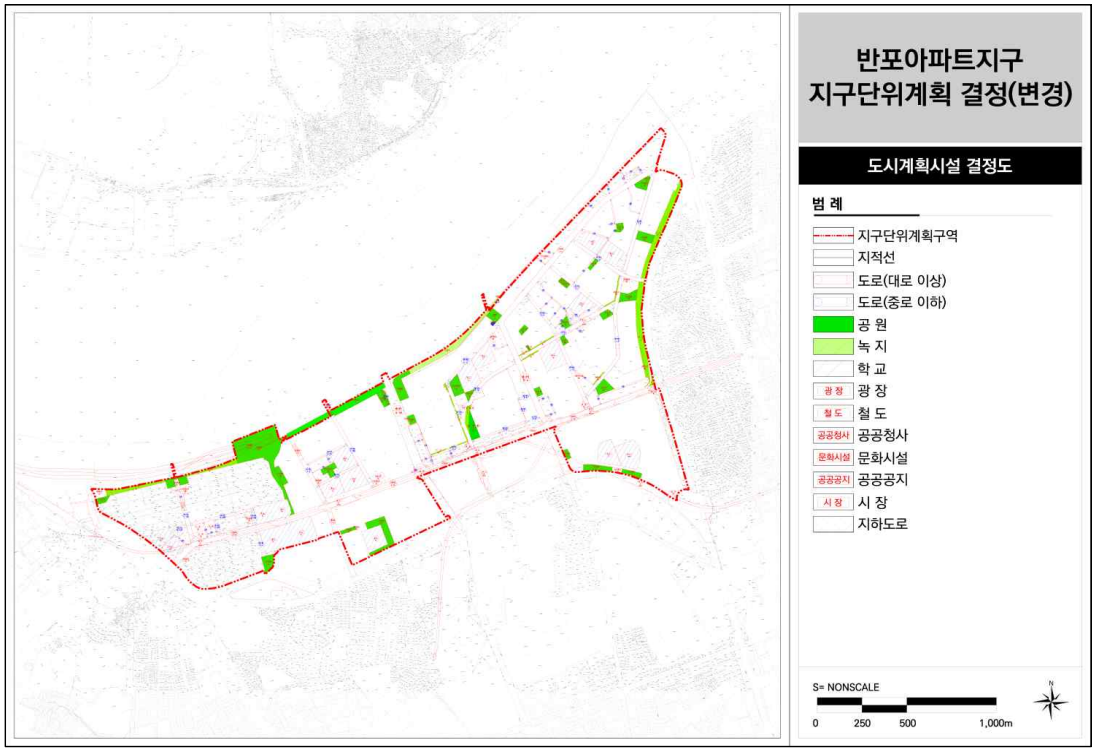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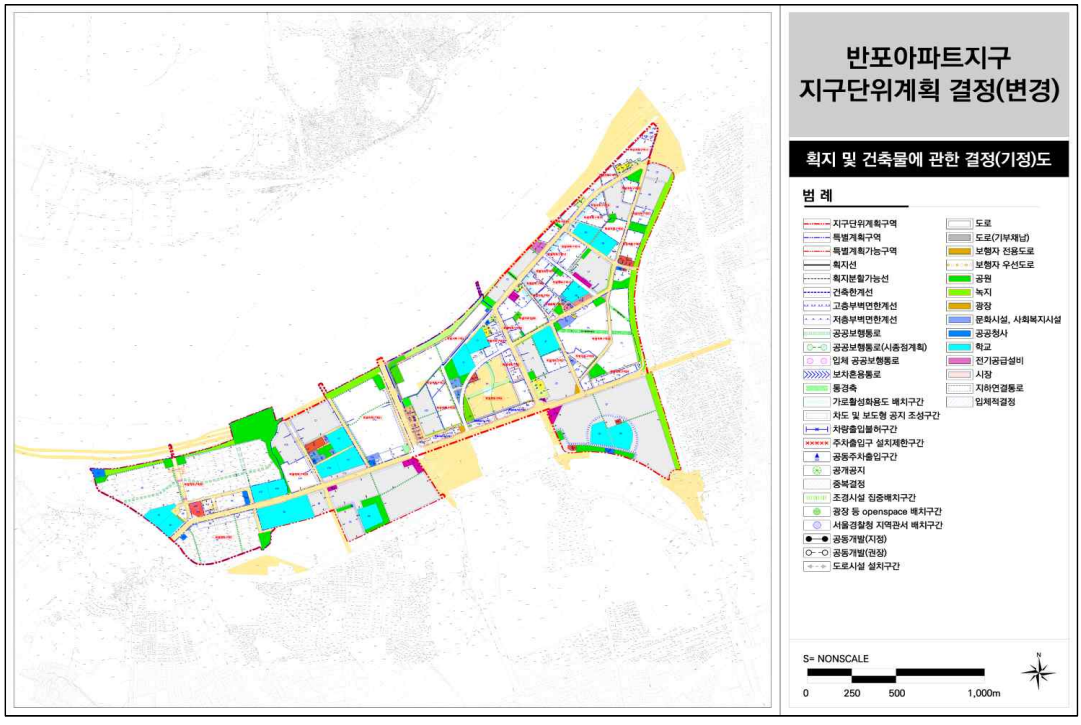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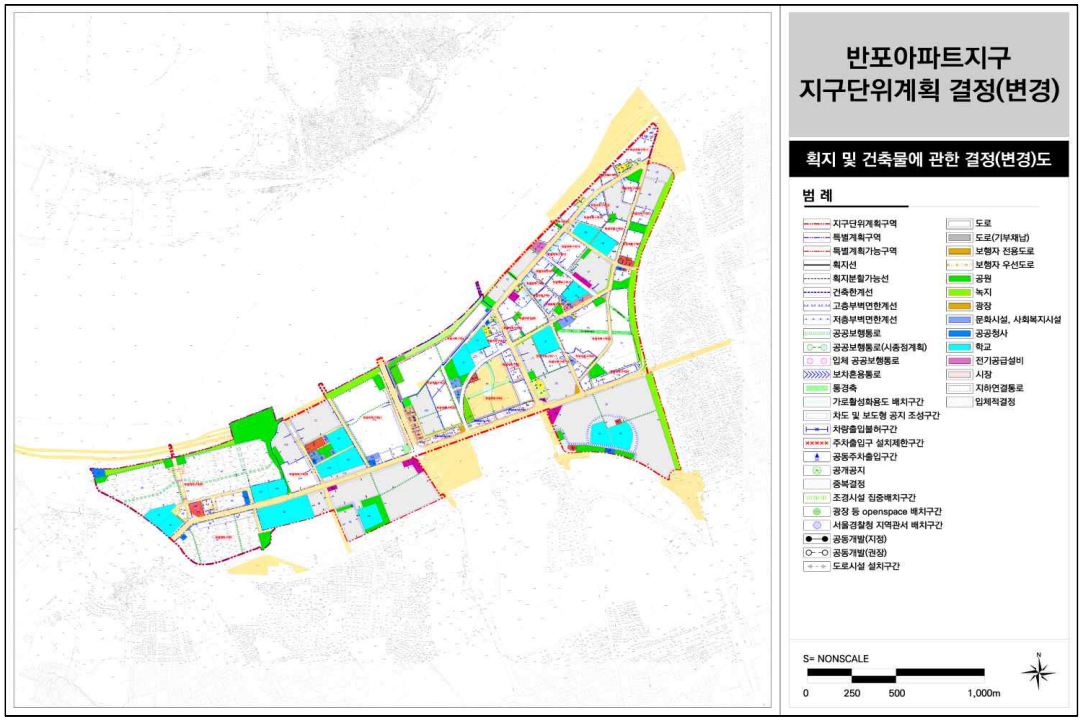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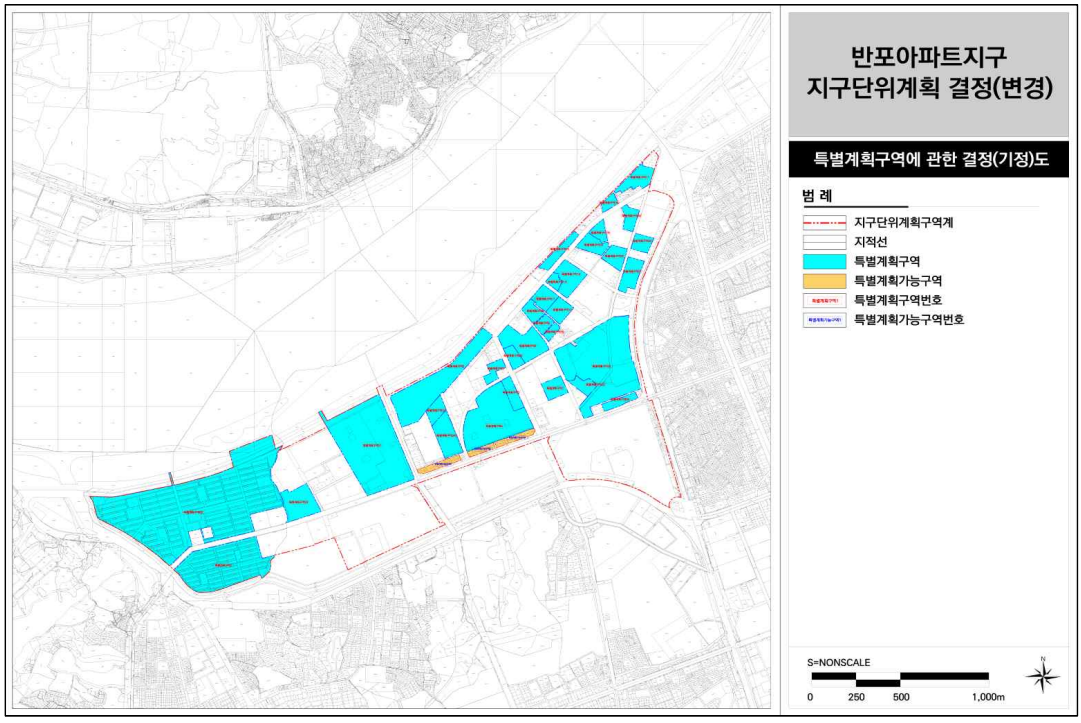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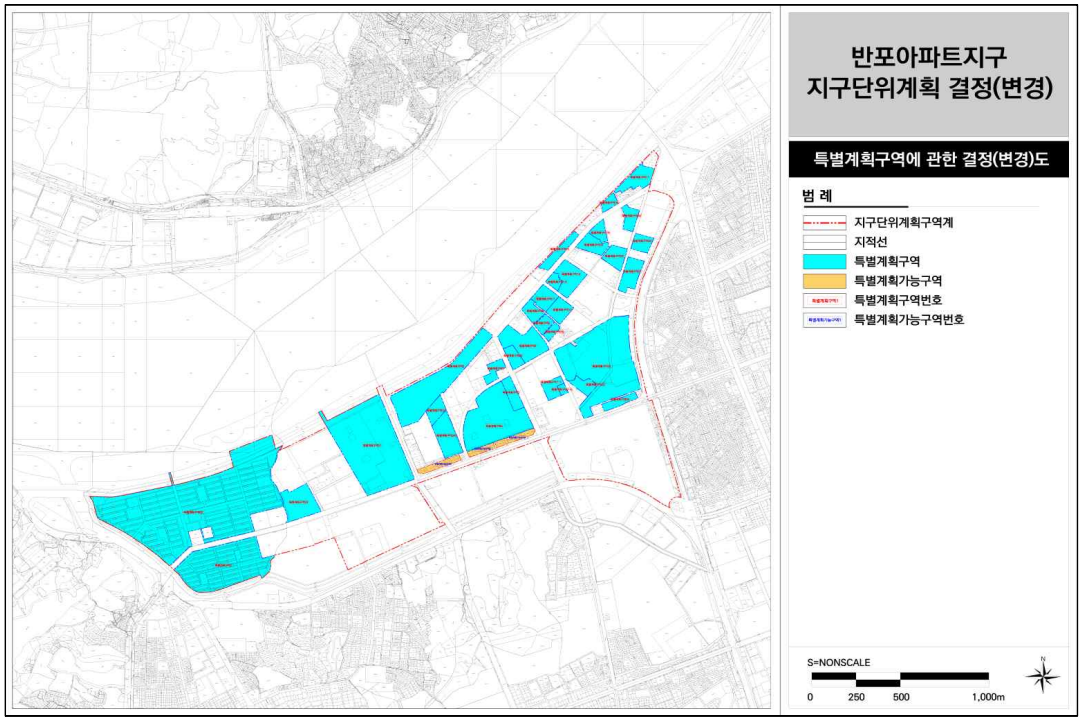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7에 관한 계획지침(기정)도

▌특별계획구역7-1 및 7-2에 관한 계획지침(변경)도

<붙임2>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특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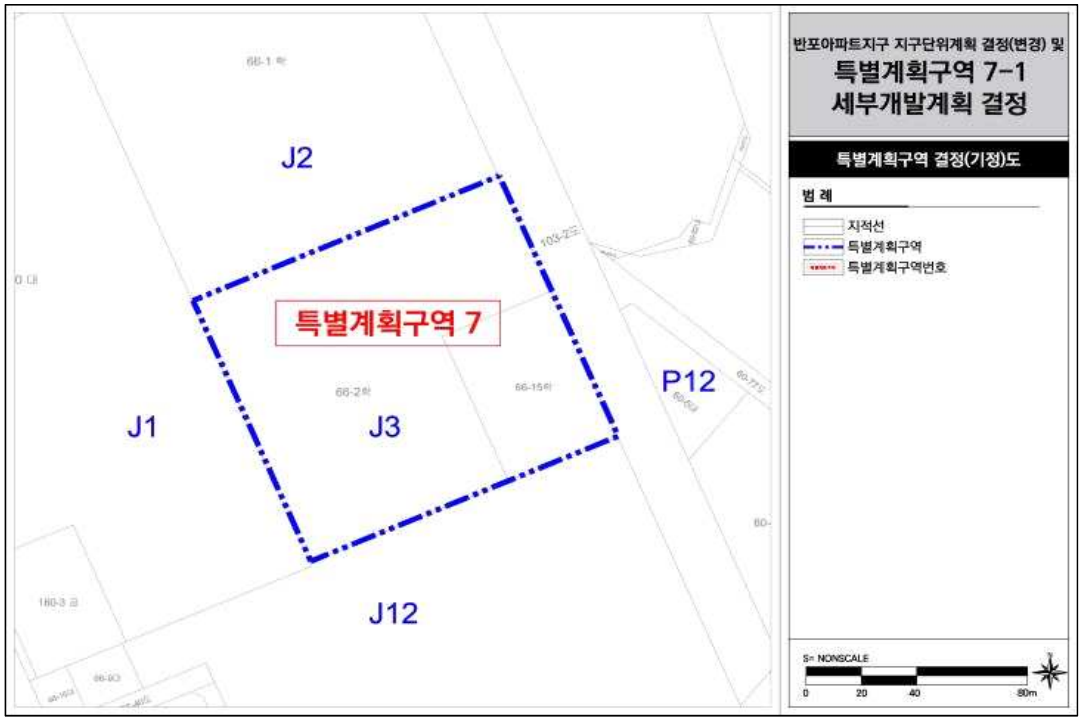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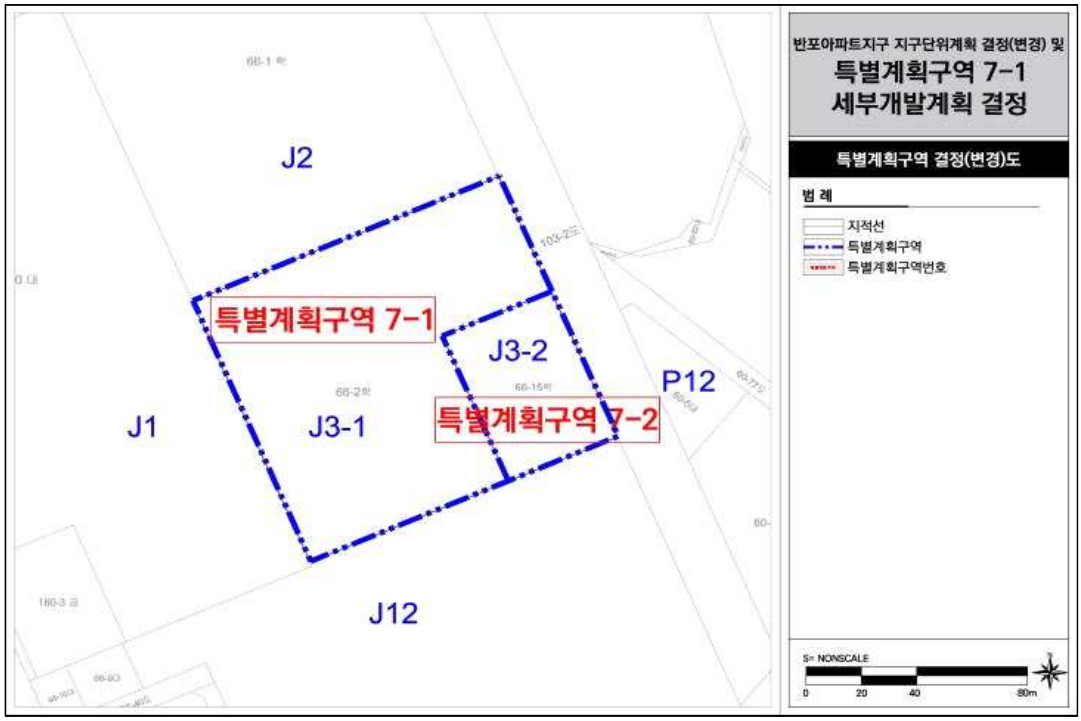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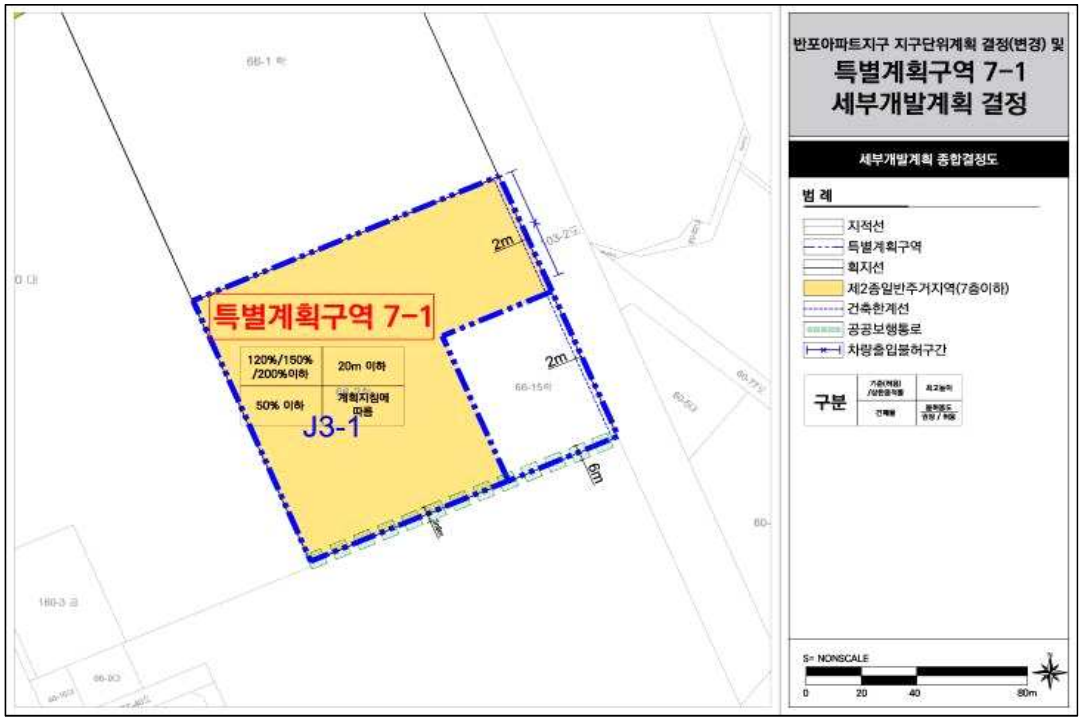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9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22호(2017.03.30.),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141호(2017.10.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256호(2018.11.0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24호(2018.12.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97호(2020.05.1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호(2021.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69호(2022.04.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8호(2022.8.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82호(2023. 5.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30호(2023.12.7.)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0조에 따라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비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중로 | 1 | C | 20~26 | 집산도로 | 861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8 |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256-8 | 일반도로 | 청계산길 |
| 중로 | 2 | 259 | 15~21 | 집산도로 | 84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9-1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8 | 일반도로 | 청계산길 |
| 중로 | 2 | G | 17~25 | 집산도로 | 335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84-4 |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50-2 | 일반도로 | 헌릉로 연결도로 |
| 소로 | 1 | C | 10~20 | 집산도로 | 641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252 |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05 | 일반도로 | 제2청계산길 |
| 소로 | 2 | ㄱ | 8~15 | 국지도로 | 338 |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433-3 |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427-3 | 일반도로 | 새원~탑성간 도로 |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비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소로 | 3 | ㄷ | 6~ 9 | 국지 도로 | 233 |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07-2 |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428-2 | 일반 도로 | 본마을 연결도로 |
| 소로 | 3 | ㅈ | 2.5~ 6.3 | 특수 도로 | 28 |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248 |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26-11 | 보행자전용 도로 | 청룡마을 진입도로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착수일 : 2018년 12월 27일(최초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변경) : 2025년 12월 31일 (당초 : 2024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토지세목조서 : 수용 - 변경없음

○ 토지세목조서 : 사용 - 변경없음

7) 위치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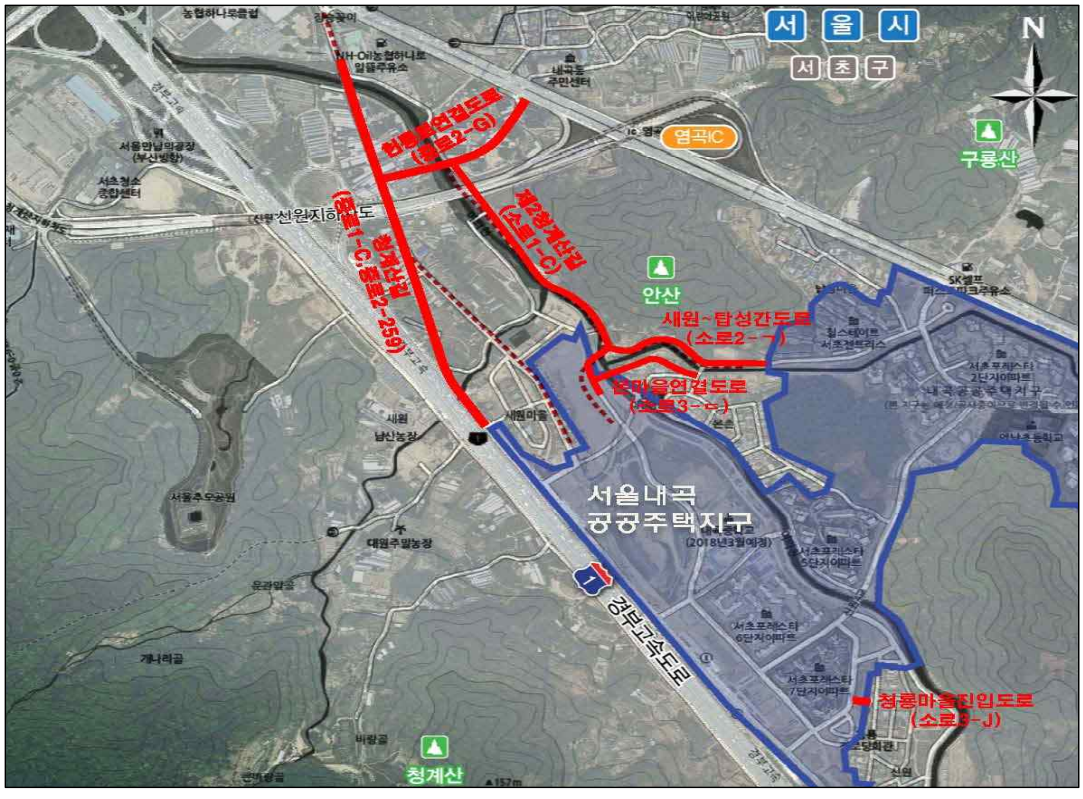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9)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02-2133-8077),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설계부(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02-3410-7599)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와 지형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무상귀속 토지조서(변경 없음)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명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

○ 국토교통부-서초구

| 일련번호 | 구분 | 토지소재지 | | 지목 | 면적(㎡) | | 관리청 | 실제이용현황 | | 현황 | 비고 |
|---|---|---|---|---|---|---|---|---|---|---|---|
| | | 동 | 지번 | | 공부상 | 편입 | | 공공시설 | 공공시설외 | | |
| 4 | | 원지동 | 240-9 | 도 | 8 | 8 | 국토부 | 8 | | 도로:5 | |
| 15 | | 원지동 | 608-4 | 도 | 57 | 57 | 서초구 | 8 | 49 | 도로:8<br>전:49 | |
| 18 | | 신원동 | 427-15 | 도 | 5 | 5 | 서초구 | 5 | | 하천:5 | |

○ 서초구

| 일련번호 | 구분 | 토지소재지 | | 지목 | 면적(㎡) | | 관리청 | 실제이용현황 | | 현황 | 비고 |
|---|---|---|---|---|---|---|---|---|---|---|---|
| | | 동 | 지번 | | 공부상 | 편입 | | 공공시설 | 공공시설외 | | |
| 2 | | 원지동 | 102-12 | 도 | 141 | 141 | 서초구 | 116 | 25 | 도로:116<br>대지:25 | |
| 25 | | 신원동 | 436-14 | 도 | 3 | 3 | 서초구 | 3 | | 도로:3 | |
| 29 | | 신원동 | 439-2 | 천 | 21 | 21 | 서초구 | 21 | | 하천:21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0호

## 충정로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이하 '충정로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3,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10.11.)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 | 비고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 신규 | 충정로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 | - | 증) 7,523.1 | 7,523.1 | - |

2. 토지이용계획

|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 합계 | | 7,523.1 | 100.0 | - |
| 정비기반시설 등 | 소계 | 410.6 | 5.5 | - |
| | 도로 | 201.9 | 2.7 | - |
| | 공공공지 | 208.7 | 2.8 | |
| 획지 | | 7,112.5 | 94.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사회복지시설 |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면적(㎡) | | | 비율(%) | 비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계 | 7,523.1 | - | 7,523.1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282.9 | 감) 7,112.5 | 170.4 | 2.3 | |
| 준주거지역 | 240.2 | 증) 7,112.5 | 7,352.7 | 97.7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
| | | 기정 | 변경 | | |
| - |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원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7,112.5 | • 준주거 위요지역, 교차역세권, 간선도로 인접 등 입지특성 반영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구역 지정 도서 참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 구 분 | 항 목 | | | 금 액(천원) |
|---|---|---|---|---|
| 수 입 | 합 계 | | | 212,236,734 |
| | 분양주택 | 토지등소유자 | 99세대 | 99,456,568 |
| | | 일반 | 97세대 | 88,217,725 |
| | 공공임대 | 재개발의무 | 23세대 | 4,521,212 |
| | | 국민주택규모주택 | 78세대 | 9,477,045 |
| | 기타시설 | 근린생활시설 | 일반 | 10,564,184 |
| | 매출부가세 | | | - |
| | 기타수입 | | | - |
| 지 출 | 합 계 | | | 144,272,078 |

| 구 분 | 항 목 | 금 액(천원) |
|---|---|---|
| | 공사비 | 108,881,478 |
| | 설계비 | 4,355,853 |
| | 보상비 | 5,325,942 |
| | 기타경비 | 25,708,805 |
| 종전자산추산액 | | 70,109,803 |
| 추정비례율 | 96.18%=[총 수입(2,122.4억원) - 총 지출(1,442.7억원) ÷ 종전자산(701.1억원)]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 비례율 변화표 | | 변동률 | 공사비 | | | | |
|---|---|---|---|---|---|---|---|
| | | | -10% | -5% | 0% | 5% | 10% |
| 변동률 | | 평균단위단가 (만원/3.3㎡) | 630 | 665 | 700 | 735 | 770 |
| 분양가 (일반분양기준) | 10% | 50,688 | 134.66% | 126.37% | 118.08% | 109.79% | 101.49% |
| | 5% | 48,384 | 123.71% | 115.42% | 107.13% | 98.84% | 90.55% |
| | 0%(기준) | 46,080 | 112.76% | 104.47% | 96.18% | 87.89% | 79.60% |
| | -5% | 43,776 | 101.82% | 93.52% | 85.23% | 76.94% | 68.65% |
| | -10% | 41,472 | 90.87% | 82.58% | 74.28% | 65.99% | 57.70% |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소로 | 1 | 21 | 10 | 집산 도로 | 350 (8) | 충정로3가 323-2 | 합동 116-3 | 일반 도로 | - | 서울시고시제412호 (`81.11.13) | - |
| 변경 | 소로 | 1 | 21 | 10 | 집산 도로 | 350 (21) | 충정로3가 323-2 | 합동 116-3 | 일반 도로 | - | 서울시고시제412호 (`81.11.13) | - |

※ ( )는 정비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구분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소로1-21 | • 변경<br>- 폭원 : 10m, 연장 350m(8)<br>→ 폭원 : 10m, 연장 350m(21) | • 마포로5구역 사업 지연시를 대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대상지 내 도로 확보 |

나. 공공공지 결정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
| 신설 | 1 | 공공공지 | 충정로3가 360-6번지 일대 | - | 증) 208.7 | 208.7 | - | |

※ 공공공지는 추후 서울시로 기부채납될 예정이며,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됨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공공공지 | • 공공공지 신설<br>- A = 208.7㎡ | •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공공공지 신설 |

다.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
| 신설 | 1 | 사회복지시설 | 충정로3가 347-5번지 일대 | - | 증) 1,720.2 | 1,720.2 |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참조 |

※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의 세부용도·규모·위치 등은 추후 정비사업 시행시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계획 및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 (서대문구 등)와 협의하여 결정

※ 준공시 서대문구에 기부채납 예정(대지지분 포함)이며,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됨

■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결정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구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신설 | 1 | 사회복지시설 | 충정로3가 347-5번지 일대 | 층수(층) | - | 지상 3~5층 | 지상 3~5층 | -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별도 코어로 계획하여 독립된 진출입이 가능토록 함 |
| | | | | 수평투영면적(㎡) | - | 증) 638 | 638 | | |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1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 신설<br>- 지상3~5층 입체적 범위 결정<br>- A = 1,720.2㎡ | • 구역내 평생학습관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신설 |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구분 | 시설의 종류 | | 법 정 | | 계획면적(㎡) | 비고 |
|---|---|---|---|---|---|---|
| | | | 기 준 | 면적(㎡) | | |
| 신설 | 주민공동시설 | 소 계 |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br>(297세대×2.5㎡×1.25) | 928.1 이상 | 1,020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적용 |
| | | 경로당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br>(50㎡+297세대×0.1㎡) | 99 이상 | 160 | |
| | | 어린이집 | - | - | 210 | |
| | | 작은도서관 | - | - | 110 | |
| | | 주민운동시설 | - | - | 240 | 옥내(190),<br>옥외(50) |
| | | 어린이놀이터 | - | - | 250 | - |
| | | 주민휴게시설 | - | - | 50 | - |
| | 경비실 | | - | - | 1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 | 관리사무소 | | 10㎡+[(297-50)×0.05㎡] | 22.35 이상 | 65 | |

※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 및 별표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 위 치 | 정비 개량 계획(동) | | | | | 비고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 신설 |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7,523.1 | 획지 | 7,112.5 |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 | 74 | - | - | 74 | - |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건축계획) | 용적률(%) | | | 높이(m) (최고 층수) |
|---|---|---|---|---|---|---|---|---|---|---|---|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 | 기준 | 정비 계획 | 법적상한 (건축계획) | |
| 신설 |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7,523.1 | 획지 | 7,112.5 |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사회복지시설 | 60 이하 (31.21%) | 230 이하 | 286.31 이하 | 450 이하 (449.99%) | 최고 100m이하 (30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297세대 (의무공공임대 23세대, 국민주택규모임대 78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 건립규모 | | 세대수(세대) | 비율(%) |
|---|---|---|---|
| 합 계 | | 297 | 100 |
| 85㎡이하 | 60㎡이하 | 182 | 61.3 |
| | 60㎡초과~85㎡이하 | 86 | 29.0 |
| 85㎡초과 | | 29 | 9.7 |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90.3%
- 임대주택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40㎡ 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 소형주택(60㎡이하) 건설: 22.65% 이상 확보(공급 연면적 1,658.25㎡ 이상)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심의완화 사항**

- 용도지역 완화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20% 완화
- 허용용적률 20% 완화(공공보행통로 등 인센티브 적용)

|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건축계획) | 용적률(%) | | | 높이(m) (최고 층수)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 기준 | 정비 계획 | 법적상한 (건축계획)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부 도로변(소로1-21) 3m | | | | | | | | | |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 보차혼용통로 : 마포로5구역 도로 계획과 연계하여 조성(폭원 8m)<br>• 공공보행통로 : 충정각 및 공공공지 이면부 보행연계를 위해 조성(폭원 6m) | | | | | | | | | | |

※ 획지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의 세부용도·규모·위치 등은 추후 정비사업 시행시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계획 및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서대문구 등)와 협의하여 결정

※ 준공시 서대문구에 기부채납 예정(대지지분 포함)이며,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됨

| 구분 | 산정내용 | | | | | | | | |
|---|---|---|---|---|---|---|---|---|---|
| 토지 이용 계획 | 계 (구역면적) | 대지면적 (공동주택 용지) | 신설 기반시설 면적 | | 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기반시설 외 신설 공공시설 등 면적 | | |
| | | | 소계 | 토지 (도로,공공공지) | | | 소계 | 토지지분 면적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 | 7,523.1㎡ | 7,112.5㎡ | 410.6㎡ | 410.6㎡ | 53.90㎡ | 209.15㎡ | 919.56㎡ | 254.44㎡ | 665.12㎡ |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 순부담률 : 14.2%(구역면적 대비)<br>• 신설 기반시설 면적 - 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기반시설 외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br>= 410.6㎡ - 53.90㎡ - 209.15㎡ + 919.56㎡ = 1,067.11㎡ | | | | | | | | |
| 신설 기반시설 + 공공시설 등 | 부지(토지) 면적 | • 도로 : 201.9㎡<br>• 공공공지 : 208.7㎡<br>• 사회복지시설 토지지분 : 254.44㎡ ( 토지지분 = 대지면적(㎡) ÷ 전체연면적(㎡) × 시설연면적(㎡) = 7,112.5 ÷ 48,085.38 × 1,720.2 = 254.44㎡) | | | | | | | |
|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 사회복지시설 환산부지 면적 = 표준건축비(원/㎡) × 시설 연면적(㎡) / 부지가액(원/㎡)<br>= 4,096,498원/㎡ × 10/11 × 1,720.2 / 9,631,628/㎡ = 665.12㎡ | | | | | | | |
| | | 표준건축비 | 4,096,498원/㎡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2, 서울시) / 복지지원센터. 키즈센터 평균가 적용 | | | | | |
| | | 시설 연면적 | 1,720.2㎡ | 사회복지시설(지상 1,468.2㎡, 지하 252.0㎡) | | | | | |
| | | 부지가액 | 9,631,628원/㎡ | 구역내 토지 평균 공시지가(4,815,814원/㎡, 2022년 기준) × 2 | | | | | |
| | | ※ 공공시설 등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라 환산<br>※ 향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결정 후 공공기여에 따른 부지면적을 환산하여 재산정 후 반영 | | | | | | | |
| 계획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 230%<br>- 소형주택 추가확보 완화 적용 = 210% + 20% = 230% | | | | | | | |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산정내용</th></tr>
<tr><td></td><td>허용<br>용적률</td><td colspan="2">• 250%<br>-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 적용 = 230% + 20% = 250%<br>※ 공공보행통로 5%, 열린단지 5%, 돌봄시설 5%, 방재안전 5%</td></tr>
<tr><td rowspan="2">정비계획<br>(상한)<br>용적률</td><td>기준 20%<br>상향 전</td><td>• 상한용적률 : 266.31%<br>= 허용용적률 X (1 + (1.3X α토지1X가중치) + (1.3X α토지2) + (0.7X α건축물))<br>= 230 X (1 + (1.3X0.02151X1.494) + (1.3X0.03710) + (0.7X0.09698))<br>= 266.31%</td><td rowspan="2">- 가중치 = 343.63% / 230% = 1.494<br>-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 면적<br>α(토지1) = (1,067.11㎡-919.56㎡) / (7,112.5㎡-254.44㎡) = 0.02151<br>α(토지2) = 254.44㎡ / (7,112.5㎡-254.44㎡) = 0.03710<br>-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 면적<br>= 665.12㎡ / (7,112.5㎡-254.44㎡)<br>= 0.09698</td></tr>
<tr><td>기준 20%<br>상향 후</td><td>• 상한용적률 : 286.31%<br>= 허용용적률 X (1 + (1.3X α토지1X가중치) + (1.3X α토지2) + (0.7X α건축물)))<br>= 250 X (1 + (1.3X0.02151X1.494) + (1.3X0.03710) + (0.7 X 0.09698))<br>= 286.31%</td></tr>
<tr><td>법적상한<br>용적률</td><td colspan="2">• 450% 이하<br>※ 준주거지역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적용</td></tr>
</table>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①기준 용적률 | 항 목 | | |
|---|---|---|---|
| 230% | 공공보행통로 |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br>⇒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a ※ a=1이하<br>※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등기로 설정) | 10%p 이내 |
| | 열린단지 | •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 단지*로 조성 (지형도면고시)<br>⇒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위원회가 인정시)<br>※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 5%p |
| | 공개공지 | •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br>⇒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대지면적]×a ※a=1이하<br>※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시 /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 5%p이내 |
| | 돌봄시설 | •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br>⇒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br>※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 5%p |
| | 방재안전 | • 화재 · 소방 · 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개선<br>⇒ 기준: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 · 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 5%p |
| | 지역기반 시설정비 | • 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도로,공원,통학로등/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br>⇒ 기준용적률×(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a ※a=1이하<br>※ 환산부지면적:정비비용/사업지 대지가액(市 기부채납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 5%p이내 |
| | 지역특화 | •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br>⇒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위원회에서 인정시) | 10%p이내 (합산) |
| 합 계 | | | 최대 20% 이내 |

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계 획 | | 인센티브 | ③허용용적률 (①+②) |
|---|---|---|---|
| 공공보행통로 |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a=1이하<br>□ = 230% × (209㎡ / 7,112.5㎡) = 6.76% | 5% | 250% |
| 열린단지 |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위원회가 인정시) | 5% | |
| 돌봄시설 |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br>= 928.1 × 1/5 = 185.62㎡ ≤ 210㎡ | 5% | |
| 방재안전 |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 · 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 | 5% | |
| ②인센티브 적용 계 | | 20% | 최대 20% 이내 |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 건설 계획

| | |
|---|---|
| 계획 기준 | • 임대주택 건설 :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br>•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40㎡ 이하<br>※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
| 산출 근거 | • 전체 세대수 : 148세대 [297세대-149세대(법적상한 증가분 제외)]<br>•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 23세대<br>•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전체 세대수(148세대)의 15% 이상<br>⇒ 148세대 X 15% = 22.2세대 이상 < 23세대 계획<br>•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40㎡ 이하 규모의 주택 건설<br>⇒ 23세대 X 30% = 6.9세대 이상 < 18세대 계획 |

| 구 분 | 세대수 | 전체 비율 | 임대주택 비율 |
|---|---|---|---|
| 합 계 | 23세대 | 7.7% | 100.0% |
| 40㎡이하 | 18세대 | 6.0% | 78.3% |
| 40㎡초과~50㎡이하 | - | - | - |
| 50㎡초과~60㎡이하 | 5세대 | 1.7% | 21.7% |
| 60㎡초과 | - | - | - |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5">•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 제54조에서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br>•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초과용적률(건축계획)</td><td colspan="5">• 449.99%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5">• 286.31%</td></tr>
<tr><td rowspan="3">국민주택규모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 449.99% - 286.31% = 163.68%</td></tr>
<tr><td>증가용적률의 50%</td><td colspan="5">• 163.68% × 50% = 81.84%<br>• 81.84% × 7,112.5㎡ (획지면적) = 5,820.87㎡</td></tr>
<tr><td>의무연면적</td><td colspan="5">• 5,820.87㎡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6">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29.99㎡</td><td>44.10㎡</td><td>19세대</td><td>837.90㎡</td><td>-</td></tr>
<tr><td>51.99㎡</td><td>76.62㎡</td><td>27세대</td><td>2,068.74㎡</td><td>-</td></tr>
<tr><td>59.98㎡</td><td>88.76㎡</td><td>29세대</td><td>2,571.04㎡</td><td>-</td></tr>
<tr><td>84.97㎡</td><td>124.26㎡</td><td>3세대</td><td>372.78㎡</td><td>-</td></tr>
<tr><td colspan="2">합계</td><td>78세대</td><td>5,850.46㎡</td><td>≥ 5,820.87㎡</td></tr>
</table>

※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참고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도시경관 | • 대상지 주위의 주요 조망축에서의 경관이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방지를 위하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 | - |
| 환경보전 | • 자연환경: 빗물의 지하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경면적 최대 반영<br>- 주변단지와 도로 Level에 맞게 계획<br>- 녹지면적증가, 지구내 녹지공간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br>• 생활환경: 스카이라인등을 고려한 계획<br>-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 시행후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포장면적의 축소<br>• 도시계획시행 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br>- 장비 분산투입, 작업장내 차속제한, 저소음·저진동 공사장비 투입, 야간작업 지양 | - |
| 재난방지 | • 지반붕괴를 유발하거나 유수기능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절성토의 규제<br>•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 우·오수관로 개량 및 설치계획을 수립<br>• 공원의 녹음시설을 통한 수해예방효과를 기대(우수의 침투 및 보수효과)<br>• 건축법 및 주택법의 방화, 소방, 피난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 | - |

나. 환경성 검토결과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비오톱 |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및 개별비오톱 평가제외로 조사됨 |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 향상 | - |
| 생태 네트워크 | 녹지연결성 확보 | ○ | • 일부 주거지역 내 식재 수목 | •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 - |
| 동·식물상 | 동식물상보호 | ○ |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 •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 - |
|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 보전 | - | • 계획지구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 - |
| 토지이용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 |
| 토양 | 토양오염방지 | ○ | • 토양측정망 검토 결과 기준에 만족 | •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 - |
| 지형·지질 | 지형변화 최소화 | ○ | • 기 조성부지로 지형변화 미미 | •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br>•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br>• 인접지반 침하대책 수립 | |
| 물순환, 수리·수문 | 생태면적률 30% | ○ | • 생태면적률 계획 확인 자연지반녹지율, 인공지반녹지 확인 | • 자연지반녹지율, 생태면적률 증가 계획 수립 | - |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수질 |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 • 수질 상태 확인<br>•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확인<br>•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br>• 운영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물질 유출 영향 예상 | • 수질 등급 유지 또는 오염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 수립 | - |
| 바람 | 바람길 확보 | ○ |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 •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 - |
| 열 |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 • 열환경 취약지역 조사 | • 열섬효과 최소화 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 - |
| 대기질 미세먼지 | 비산먼지 저감 대기오염 최소화 | ○ | • 공사시 비산먼지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 | •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 - |
| 온실가스 | 온실가스 저감 | ○ |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 - |
| 에너지 |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 | • 계획 특성상 과다한 에너지소비를 유발하지 않음 | • 건축물 에너지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 친환경 건축자재 선정 | - |
|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 • 서대문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 - |
| 소음 및 진동 | 규제기준 만족 | ○ |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 운영시 도로소음 영향 예상 |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저감방안 수립 | - |
| 경관 | Skyline 보전 | ○ | • 고층 건물 입지에 의한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 •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 |
| 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 • 계획지구 주변 휴식·여가공간 부족 | • 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보·계획 | - |
| 일조 | 일조 침해 최소화 | ○ | • 계획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br>• 계획지구 인근: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br>• 일부 일조영향 예상 | • 관련규정(건축법, 서울시 조례)을 준수한 건물 배치계획 수립 | - |
| 보행 친화공간 | 보행공간 계획수립 | ○ | • 보행자 위한 공간 확보 계획 | •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보행연결성 강화 | - |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 | 비고 |
|---|---|---|---|---|---|---|---|
| | | | | 현 황 | 증·감 | 계 획 | |
| 신설 |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지정 후 4년 이내 | 서울주택도시공사 | 80세대 | 증) 217세대 | 297세대 | -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현황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 | 비고 |
|---|---|---|---|---|
| | 주민대표회의 구성 ~ 착공 전 | 착공 ~ 공사 완료 | 범죄예방설계 적용 | |
| - |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br>•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br>•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규정 준수 안전 시공<br>•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 • 낮은 관목 및 울타리 등으로 놀이터 및 광장 주변 시야 확보<br>• 각종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등 주요 지점의 CCTV 설치 | -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신설 |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 | - | 증) 7,523.1 | 7,523.1 |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면적(㎡) | | | 비율(%) | 비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계 | 7,523.1 | - | 7,523.1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282.9 | 감) 7,112.5 | 170.4 | 2.3 | |
| 준주거지역 | 240.2 | 증) 7,112.5 | 7,352.7 | 97.7 |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소로 | 1 | 21 | 10 | 집산 도로 | 350 (8) | 충정로3가 323-2 | 합동 116-3 | 일반 도로 | - | 서울시고시제412호 (`81.11.13) | - |
| 변경 | 소로 | 1 | 21 | 10 | 집산 도로 | 350 (21) | 충정로3가 323-2 | 합동 116-3 | 일반 도로 | - | 서울시고시제412호 (`81.11.13) | - |

※ ( )는 정비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구분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소로1-21 | • 변경<br>- 폭원 : 10m, 연장 350m(8)<br>→ 폭원 : 10m, 연장 350m(21) | • 마포로5구역 사업 지연시를 대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대상지 내 도로 확보 |

2) 공공공지 결정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
| 신설 | 1 | 공공공지 | 충정로3가 360-6번지 일대 | - | 증) 208.7 | 208.7 | - | |

※ 공공공지는 추후 서울시로 기부채납될 예정이며,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됨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공공공지 | • 공공공지 신설<br>- A = 208.7㎡ | •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공공공지 신설 |

3)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
| 신설 | 1 | 사회복지시설 | 충정로3가 347-5번지 일대 | - | 증) 1,720.2 | 1,720.2 |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참조 |

※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의 세부용도·규모·위치 등은 추후 정비사업 시행시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계획 및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 (서대문구 등)와 협의하여 결정

※ 준공시 서대문구에 기부채납 예정(대지지분 포함)이며,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됨

■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결정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구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신설 | 1 | 사회복지시설 | 충정로3가 347-5번지 일대 | 층수(층) | - | 지상 3~5층 | 지상 3~5층 | -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별도 코어로 계획하여 독립된 진출입이 가능토록 함 |
| | | | | 수평투영면적(㎡) | - | 증) 638 | 638 | | |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1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 신설<br>- 지상3~5층 입체적 범위 결정<br>- A = 1,720.2㎡ | • 구역내 평생학습관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신설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구 분 | 가 구 | 위 치 | 면적(㎡) | | | 비율(%) | 비고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
| 신설 | 획지 |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 | - | 증) 7,112.5 | 7,112.5 | 94.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사회복지시설 |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구 분 | | 가 구 | 용 도 | 비 고 |
|---|---|---|---|---|
| 신설 | 허용용도 | 획지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br>• 「주택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지안의 부대시설·복리시설<br>•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br>•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및 다목의 시설 | 허용용도 외의 타용도 불허 |

2)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 구 분 | | 지 역 | 건폐율 | 비 고 |
|---|---|---|---|---|
| 신설 | 획지 | 준주거지역 | 60% 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사회복지시설 |

나) 용적률 계획

| 구 분 | | 용적률(%) | | | | 비 고 | |
|---|---|---|---|---|---|---|---|
| | | 기준 | 허용 | 상한용적률 | | | |
| | | | | 상한 | 법적상한 | | |
| 신설 | 획지 | 230 이하 | 250 이하 | 400 이하 | 450 이하 | 정비계획 | 허용용적률 250% 이하<br>상한용적률 286.31% 이하<br>법적상한용적률 450% 이하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 구 분 | 인센티브 | 인센티브량 | | 비 고 |
|---|---|---|---|---|
| 신설 | 공공보행통로 |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a<br>= 230% X (209.0㎡ / 7,112.5㎡) = 6.76% | 5% | 20% |
| | 열린단지 |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5% | |
| | 돌봄시설 |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 5% | |
| | 방재안전 |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보다 초과 설치 · 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 | 5% | |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 구 분 | 용적률 완화 | | 비고 |
|---|---|---|---|
|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
| 신설 | 36.31% | 163.68% | 총 199.99% |

다) 높이 계획

| 구 분 | 명 칭 | 용 도 지 역 | 높이기준 | 비고 |
|---|---|---|---|---|
| 신설 | 획지<br>(공동주택용지) | 준주거지역 | 최고 100m이하<br>(30층 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br>사회복지시설 |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 분 | 적용위치 | 계획내용 |
|---|---|---|
| 보차혼용통로 | 대상지 중앙부 | 폭원 8m |
| 공공보행통로 | 충정각 및 공공공지 이면부 | 폭원 6m |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부 도로변<br>(소로 1-21) | 3m 이격 |

라. 경관계획(배치·형태 포함)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 구분 | 적용위치 | 계획내용 |
|---|---|---|
| 건축물의 방향성 | 획지 | • 주동배치는 전체 동이 주 도로변과 평행 또는 직각 방향으로 일률적인 배치가 되지 않도록 계획 |
| 근린생활시설 | 획지<br>(도심지원기능배치구간) | • 상업활성화를 위해 건물주변 4면 오픈스페이스공간 조성 |
| 부대복리시설 | 획지 | • 보행동선을 중심으로 한 주민공동시설 다목적 광장 및 휴게공간 등을 계획하여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이 교류가 형성되도록 계획 |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구 분 | 적용위치 | 계획내용 |
|---|---|---|
| 건축물 외부형태 | 획지 | • 사선절제형 건축형태 금지<br>•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함<br>•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br>•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br>•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 금지<br>• 주변 현황 등의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경사 및 단차를 최소화<br>(프랑스대사관과의 고저차 극복을 위한 3단계 이상의 계획 단차 형성) |
| 저층부 외관 | 획지 | • 주가로에 면한 1층 벽면적의 7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br>• 1층 개구부 높이 통일<br>•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조화로운 저층부 디자인 |
| 재료 및 색채 | 획지 | •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br>• 원색계열 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br>•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br>• 외부공간의 바닥포장재료, 패턴, 조경시설물 등은 충정각, 충정로 유래 등 지역의 역사적 요소 반영 |
| 진입구 처리 | 획지 |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br>• 접근로는 유효폭 1.8m 이상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함<br>• 가로변에 면한 외부공간은 개방성을 고려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무장애 환경으로 계획<br>•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등을 고려한 특화방안제시 |

3) 경관에 관한 계획

| 구 분 | 적용위치 | 계획내용 |
|---|---|---|
| 개방감 | 남북방향 | • 단지 중앙부 개방감 확보를 위한 통경축 계획 |
| 조명계획 | 획지 | •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보행통로변 및 보차혼용통로 등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야간 조명 설치 계획 검토 |
| 스카이라인 | 획지 | •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는 주변과 조화를 이룬 스카이라인(SkyLine)을 형성토록 계획 |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 구분 | 적용위치 | 계획내용 |
|---|---|---|
| 전면공지 | 대지경계부<br>도로변 3m<br>(소로 1-21) | • 건축한계선에 의한 보행공간 확보 |
| 보차혼용통로 | 대상지 중앙부 8m | • 역사성 반영(옛길 보전), 마포로5구역 도로계획 연계를 위해 대상지 중앙부에 보차혼용통로(폭 8m) 조성<br>• 단, 종근당 이면도로 개설시 보차혼용통로는 단지내 도로로 용도변경을 허용함<br>• 보차혼용통로는 통행 등을 위해 단지내 도로로 용도변경 전까지 지역권 설정함 |
| 공공보행통로 | 충정각 및 공공공지 배후지역<br>6m | • 충정각 조망접근, 충정로 이면도로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충정각 배후지역 공공보행통로(폭 6m) 조성<br>•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리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br>• 공공보행통로는 통행 등을 위해 지역권 설정함 |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 구 분 | 적용위치 | 계획내용 |
|---|---|---|
| 통행체계 | 충정로 이면도로<br>(소 2-20)<br>서소문로 이면도로<br>(소 1-21) | • 단지 내 주출입구로 진 · 출입 가능 |

3) 환경관리계획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비오톱 |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및 개별비오톱 평가제외로 조사됨 |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 향상 | - |
| 생태 네트워크 | 녹지연결성 확보 | ○ | • 일부 주거지역 내 식재 수목 | •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 - |
| 동·식물상 | 동식물상보호 | ○ |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 •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 - |
|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 보전 | - | • 계획지구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 - |
| 토지이용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 |
| 토양 | 토양오염방지 | ○ | • 토양측정망 검토 결과 기준에 만족 | •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 - |
| 지형·지질 | 지형변화 최소화 | ○ | • 기 조성부지로 지형변화 미미 | •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br>•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br>• 인접지반 침하대책 수립 | - |
| 물순환, 수리·수문 | 생태면적률 30% | ○ | • 생태면적률 계획 확인 자연지반녹지율, 인공지반녹지 확인 | • 자연지반녹지율, 생태면적률 증가 계획 수립 | - |
| 수질 |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 • 수질 상태 확인<br>•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확인<br>•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br>• 운영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물질 유출 영향 예상 | • 수질 등급 유지 또는 오염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 수립 | - |
| 바람 | 바람길 확보 | ○ |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 •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 - |
| 열 |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 • 열환경 취약지역 조사 | • 열섬효과 최소화 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 - |
| 대기질 미세먼지 | 비산먼지 저감 대기오염 최소화 | ○ | • 공사시 비산먼지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 | •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 - |
| 온실가스 | 온실가스 저감 | ○ |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 - |
| 에너지 |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 | • 계획 특성상 과다한 에너지소비를 유발하지 않음 | • 건축물 에너지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 친환경 건축자재 선정 | - |
|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 • 서대문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 - |
| 소음 및 진동 | 규제기준 만족 | ○ |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 운영시 도로소음 영향 예상 |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저감방안 수립 | - |
| 경관 | Skyline 보전 | ○ | • 고층 건물 입지에 의한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 •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 |
| 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 • 계획지구 주변 휴식·여가공간 부족 | • 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보·계획 | - |
| 일조 | 일조 침해 최소화 | ○ | • 계획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br>• 계획지구 인근: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br>• 일부 일조영향 예상 | • 관련규정(건축법, 서울시 조례)을 준수한 건물 배치계획 수립 | - |
| 보행 친화공간 | 보행공간 계획수립 | ○ | • 보행자 위한 공간 확보 계획 | •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보행연결성 강화 | - |

4)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 구 분<br>(전용면적) | 전체<br>세대수 | 전체<br>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 | | 공공임대주택 비율(%) | | |
|---|---|---|---|---|---|---|---|---|
| | | | 소계 | 공공재개발<br>의무임대 | 국민주택<br>규모주택 | 전체세대수<br>대비 | 전체비율 | 공공임대중<br>국민주택<br>규모주택 |
| 합계 | 297 | 100.0 | 101 | 23 | 78 | 34.0 | 100.0 | 77.2 |
| 40㎡이하 | 54 | 18.2 | 37 | 18 | 19 | 12.5 | 36.6 | 18.8 |
| 40㎡초과~50㎡이하 | - | - | - | - | - | - | - | - |
| 50㎡초과~60㎡이하 | 128 | 43.1 | 61 | 5 | 56 | 20.5 | 60.4 | 55.4 |
| 60㎡초과~85㎡이하 | 86 | 28.9 | 3 | - | 3 | 1.0 | 3.0 | 3.0 |
| 85㎡초과 | 29 | 9.8 | - | - | - | - | - | - |

Ⅲ. 2024년 제10차(’ 24.10.11.)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 구분 | 심의결과 | 심의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제10차 도시계획 위원회 신속통합 기획 정비사업등 수권분과 위원회 | 수정 가결 | • 상한용적률 : 286.31%<br>• 순부담 : 1,067.11㎡(14.02%)<br>• 세대수 : 전체 297세대 (임대 101세대 포함)<br>※ 임대 : 의무공공임대(23세대), 국민주택규모임대(78세대)<br>•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에 따라 복합건축물에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별도 코어로 계획하여 독립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 | ▶ 상한용적률 : 286.31%<br>▶ 순부담 : 1,067.11㎡(14.02%)<br>▶ 세대수 : 전체 297세대(임대 101세대 포함)<br>※임대 : 의무공공임대(23세대), 국민주택 규모임대(78세대)<br>▶기부채납 공공시설은 별도 코어로 계획하여 독립적 진출입이 가능토록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결정조서에 반영하였음 | 수정 사항 |
| | | • 소로1-21 단면계획은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도 확폭방안 검토 | ▶소로1-21 단면계획은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도폭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음 | 조건 사항 |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3), 서대문구 신통개발과(☎02-330-169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내용에 관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합의서는 충정로1구역 결정 도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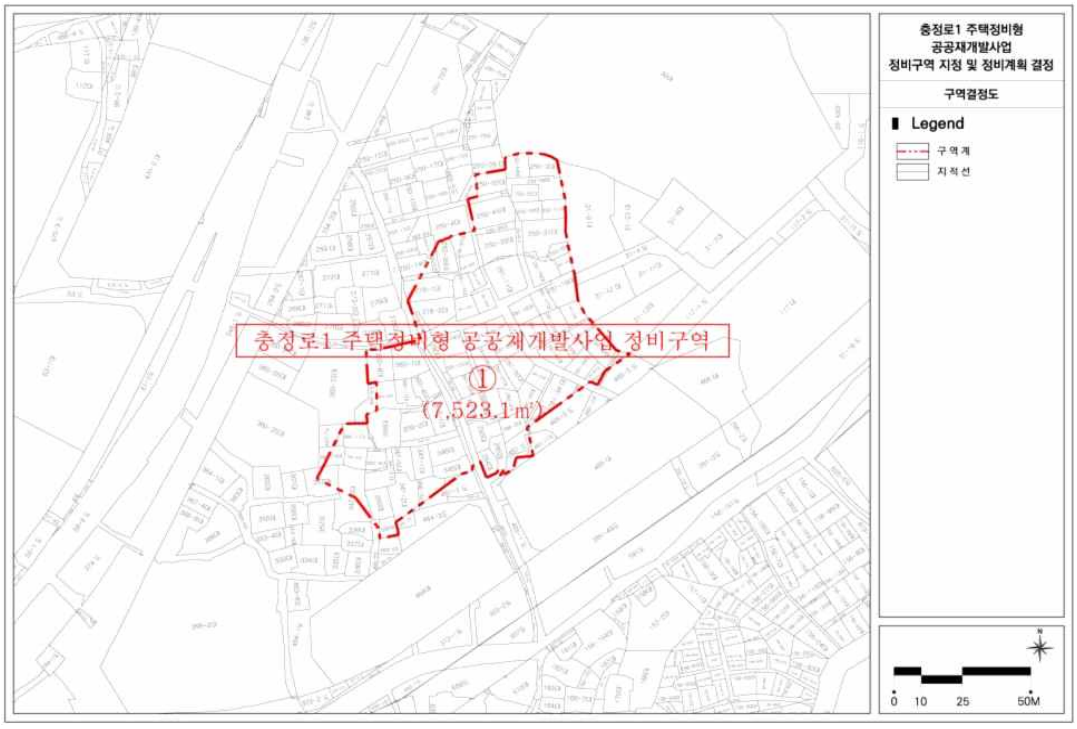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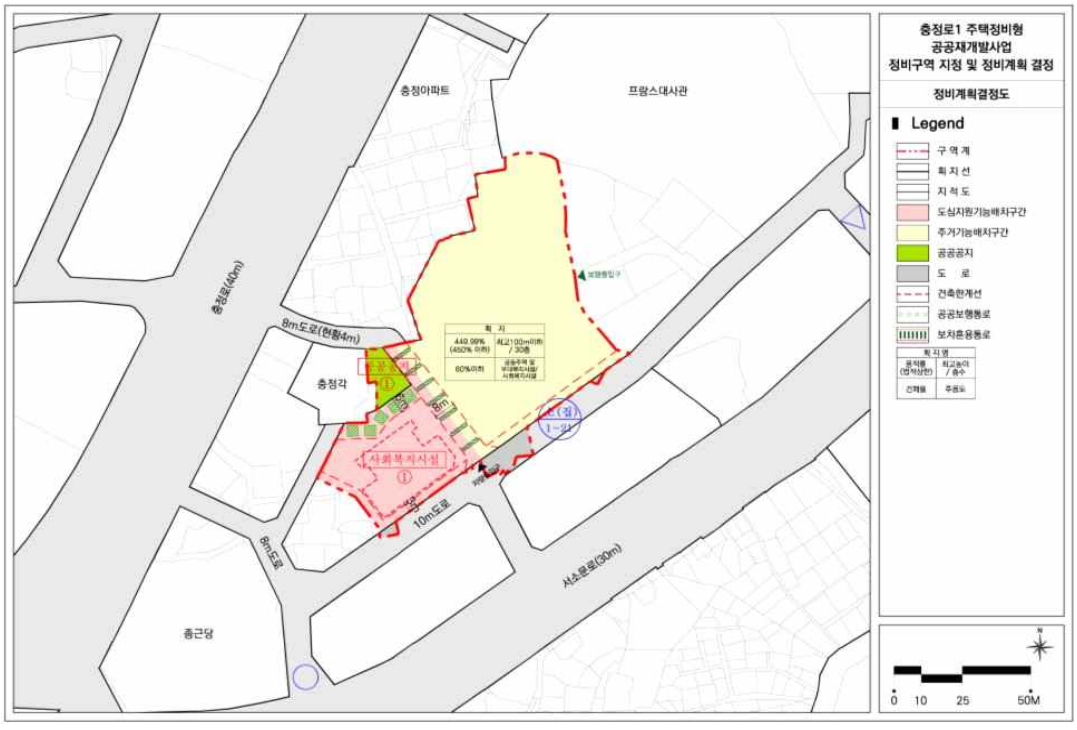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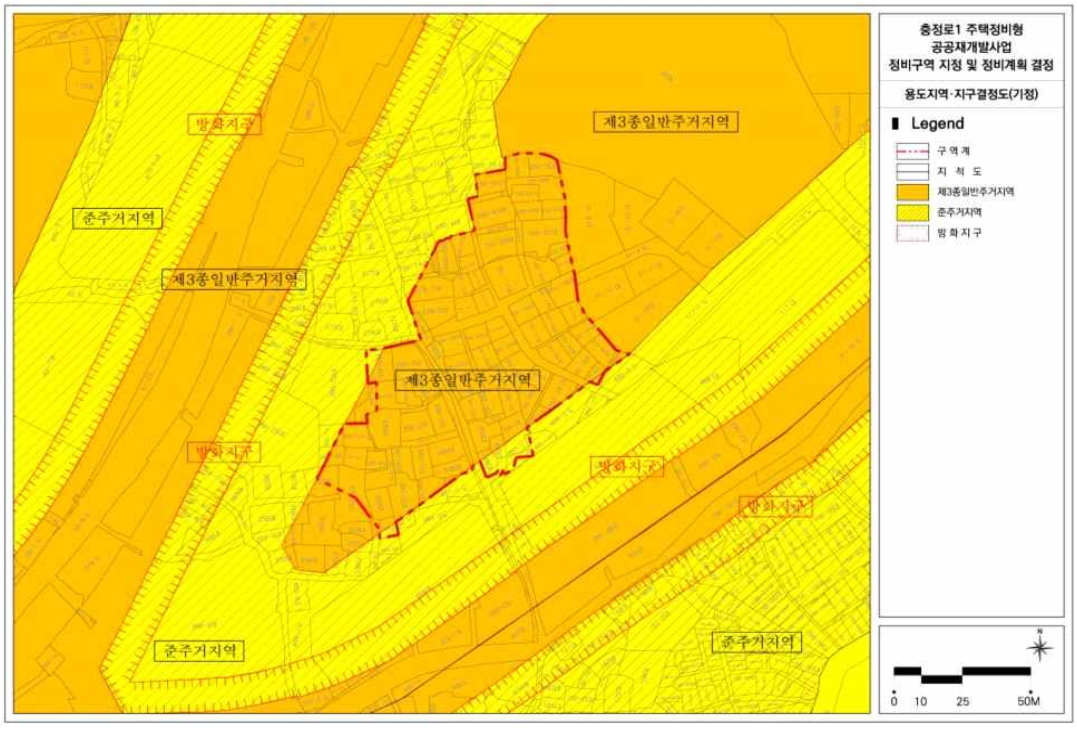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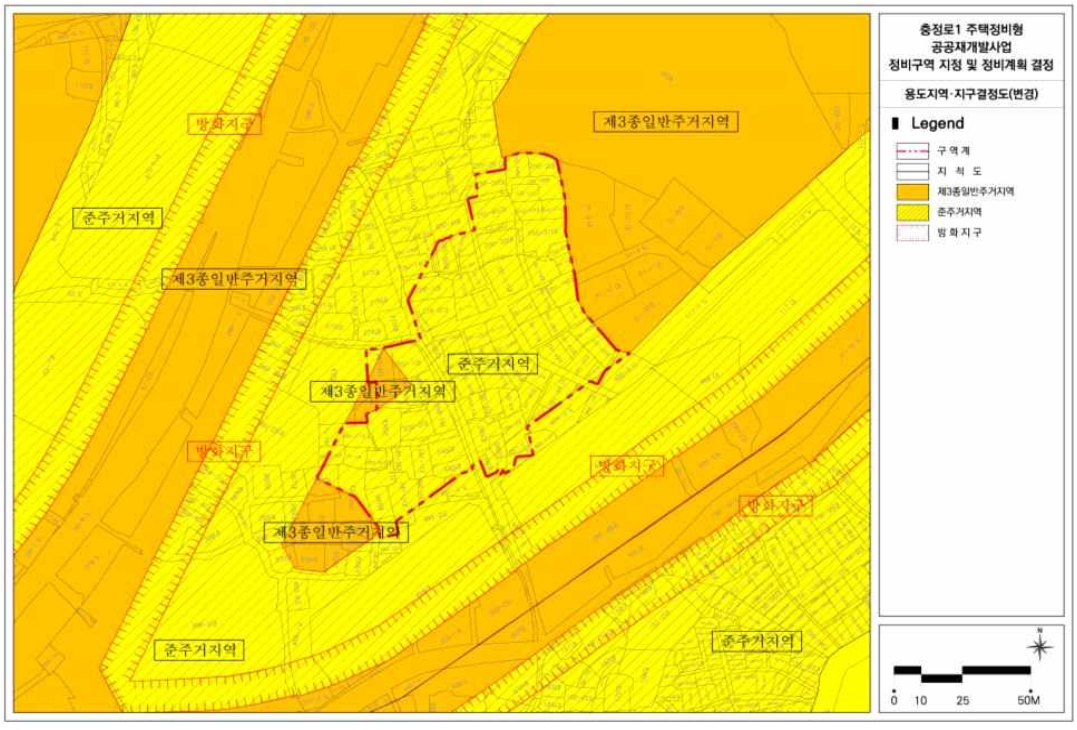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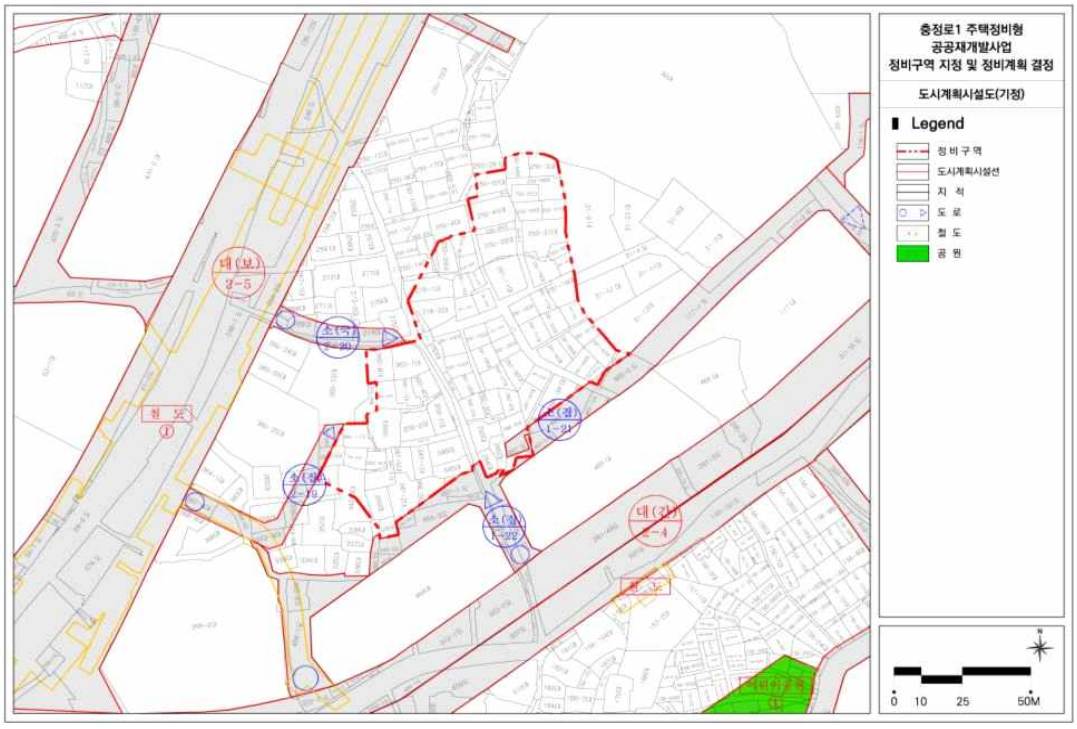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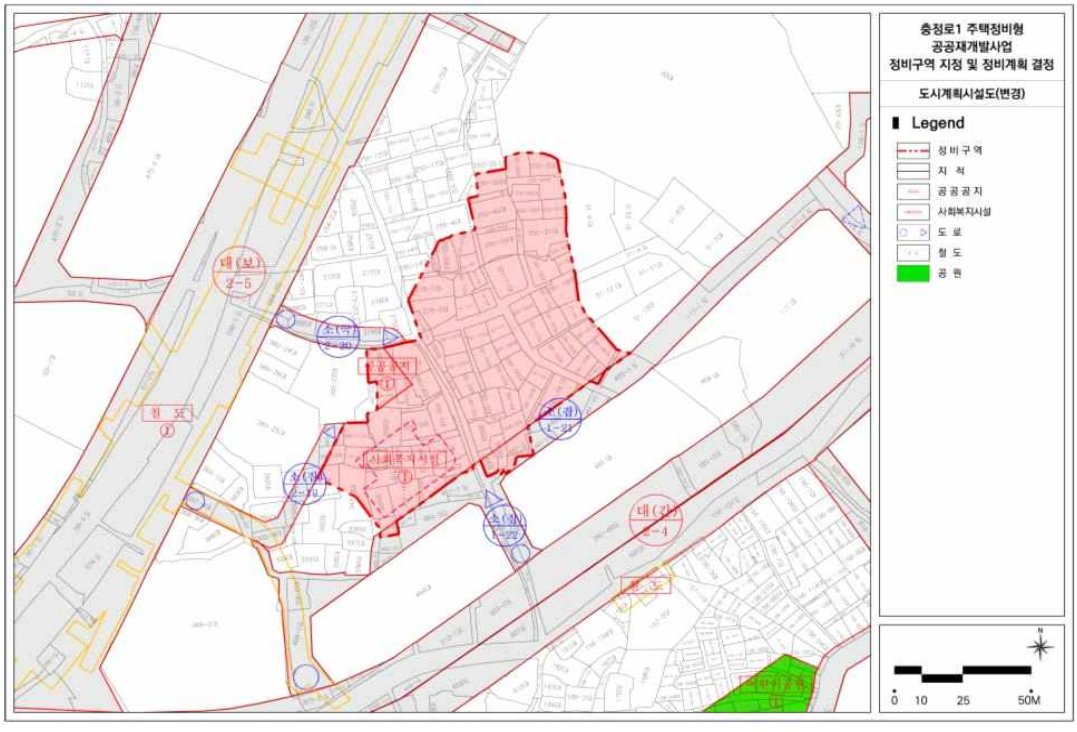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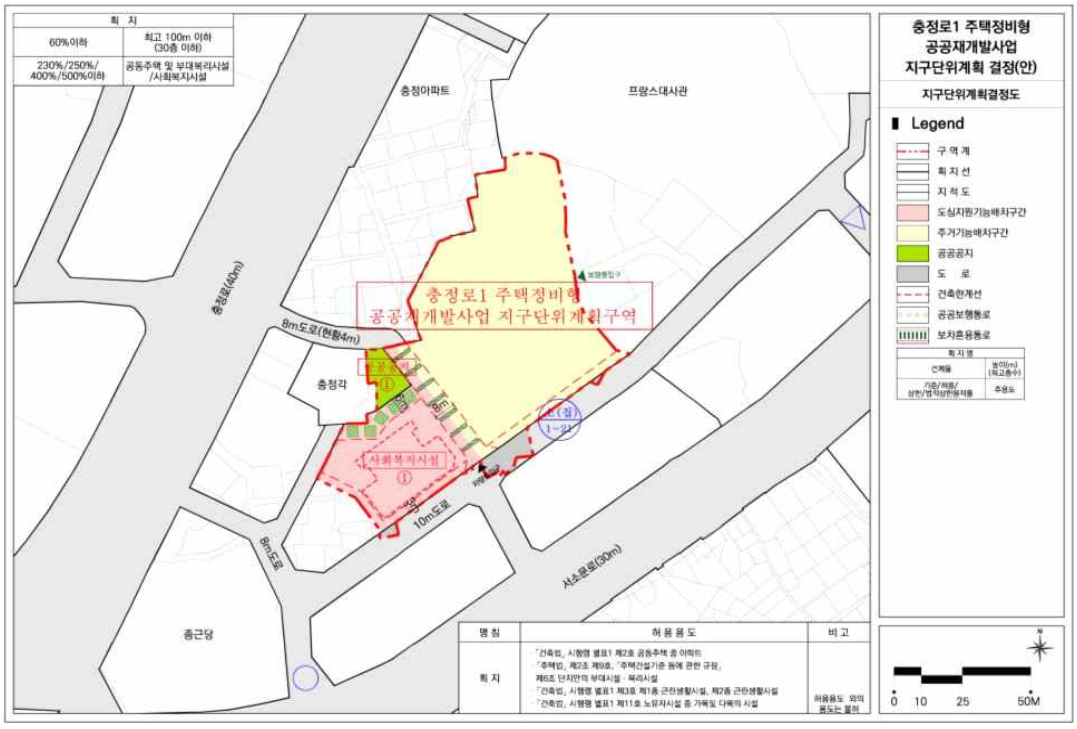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1호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58호(2005.0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4호(2009.01.02.)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2015.0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04.14.)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호(2018.01.18.)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1호(2019.03.14.)로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 서울시 성북구 고시 제2023-162호(2023.10.26.), 제2024-45호(2024.03.2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10호(2024.04.25.)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된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 지구명 | 유형 | 위치 | 면적(㎡) | 지정목적 |
|---|---|---|---|---|
|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 | 중심지형 | 성북구 하월곡동 88 일대<br>강북구 미아동 70 일대 | 478,515.0 | ·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으로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육성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br>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br>서울동북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함 |

2. 재정비 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 구분 | 면적(㎡) | | | 비율(%) | 비고 |
|---|---|---|---|---|---|
| | 기정 | 증감 | 변경 | | |
| 합 계 | 478,515.0 | - | 478,515.0 | 100.0 | |
| 상업 · 주거 | 152,841.0 | | 152,841.0 | 32.0 | 금회 획지 경계 조정 |
| 업무 · 주거 | 7,666.0 | - | 7,666.0 | 1.6 | |
| 근린생활시설 | 2,914.4 | - | 2,914.4 | 0.6 | |
| 일반상업 | 30,520.0 | - | 30,520.0 | 6.4 | |
| 상업 · 업무 | 21,627.0 | - | 21,627.0 | 4.5 | |
| 상업 · 문화 | 22,725.0 | - | 22,725.0 | 4.7 | |
| 업무 | 20,561.0 | - | 20,561.0 | 4.3 | |
| 종교시설 | 1,683.2 | - | 1,683.2 | 0.3 | 금회 획지 경계 조정 |
| 공원 | 9,534.0 | - | 9,534.0 | 2.0 | |
| 공공공지 | 200.0 | - | 200.0 | 0.04 | |
| 공공청사 | 553.6 | - | 553.6 | 0.1 | |
| 전기공급설비 | (2,263.0) | - | (2,263.0) | - | |
| 도시철도 | (17,810.6) | - | (17,810.6) | - | |
| 주차장 | (3,999.7) | - | (3,999.7) | - | 신월곡1구역 공원<br>(하월곡동 104-88)과 중복결정 |
| 도로 | 207,689.8 | - | 207,689.8 | 43.4 | |

※ 변경사유 : 신월곡제1재정비촉진구역 획지-2(종교시설)의 합리적인 건축물 신축을 위해 획지-1(상업·주거)과의 경계 조정

2) 인구 · 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5)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6)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변경없음)
8)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신길음구역 정비계획(변경없음)
(나) 신길음1구역 정비계획(변경없음)
(다) 신월곡2구역 정비계획(변경없음)
(라) 강북2구역 정비계획(변경없음)
(마) 강북5구역 정비계획(변경없음)
(바) 강북2구역 정비계획(변경없음)
(사) 강북6구역 정비계획(변경없음)
(아) 강북7구역 정비계획(변경없음)
(자) 신월곡1구역 정비계획(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구분 | 재정비촉진 사업명칭 | 위치 | 면적(㎡)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기정 |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 | 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 | 56,024.5 | - | 56,024.5 | 고밀개발구역 (역세권) |

(2) 추정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없음)

| | |
|---|---|
|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br>•추정비례율 : 131.98%<br>- 총 수입 추정 : 2,352,211,133,532원 (2조 3,249억원)<br>- 총 지출 추정 : 1,749,786,115,240원 (1조 7,398억원)<br>- 종전자산총액 : 456,447,513,347원 (4,564억원) |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 감정평가법인의 산출금액 적용(기준시점 - 2020.08.20. 사업시행계획인가)<br>- 종전자산총액 : 456,447,513,347원 |
| 추정 분담금 산정 | •추정분담금(공동주택) 〈종전자산 3억원 기준〉 |

| 평형 | 타입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비례율 | 권리가액 | 추정분양가(원) | 추정분담금(원) |
|---|---|---|---|---|---|---|---|
| 12평 | 27 | 27.924 | 41.109 | 131.98% | 396,403,464 | 253,850,000 | -142,093,674 |
| 12평 | 28 | 28.958 | 42.93 | | | 285,363,333 | -110,580,341 |
| 26평 | 59A | 59.908 | 86.273 | | | 559,371,484 | 163,427,810 |
| 36평 | 84A | 84.992 | 120.286 | | | 759,783,456 | 363,839,782 |

| 평형 | 타입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비례율 | 권리가액 | 추정분양가(원) | 추정분담금(원) |
|---|---|---|---|---|---|---|---|
| 43평 | 101A | 101.972 | 144.272 | | | 843,485,600 | 447,541,926 |
| 47평 | 106P | 106.923 | 157.357 | | | 1,042,137,500 | 646,193,826 |
| 49평 | 115A | 115.975 | 163.1 | | | 912,759,375 | 516,815,701 |
| 49평 | 109P | 109.977 | 162.323 | | | 1,073,025,000 | 677,081,326 |
| 51평 | 115PA | 115.823 | 171.414 | | | 1,208,262,500 | 812,318,826 |
| 51평 | 115PB | 115.956 | 171.588 | | | 1,208,262,500 | 812,318,826 |
| 65평 | 148P | 148.954 | 217.44 | | | 1,477,850,000 | 1,081,906,326 |
| 69평 | 155P | 155.861 | 230.411 | | | 1,549,200,000 | 1,153,256,326 |
| 66평 | 149D | 149.965 | 219.753 | | | 1,411,225,000 | 1,015,281,326 |
| 80평 | 183D | 183.864 | 266.777 | | | 1,731,750,000 | 1,335,806,326 |

•추정분담금(공동주택) 〈종전자산 5억원 기준〉

| 평형 | 타입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비례율 | 권리가액 | 추정분양가(원) | 추정분담금(원) |
|---|---|---|---|---|---|---|---|
| 12평 | 27 | 27.924 | 41.109 | | | 253,850,000 | -406,056,124 |
| 12평 | 28 | 28.958 | 42.93 | | | 285,363,333 | -374,542,791 |
| 26평 | 59A | 59.908 | 86.273 | | | 559,371,484 | -100,534,640 |
| 36평 | 84A | 84.992 | 120.286 | | | 759,783,456 | 99,877,332 |
| 43평 | 101A | 101.972 | 144.272 | | | 843,485,600 | 183,579,476 |
| 47평 | 106P | 106.923 | 157.357 | | | 1,042,137,500 | 382,231,376 |
| 49평 | 115A | 115.975 | 163.1 | 131.98% | 660,672,440 | 912,759,375 | 252,853,251 |
| 49평 | 109P | 109.977 | 162.323 | | | 1,073,025,000 | 413,118,876 |
| 51평 | 115PA | 115.823 | 171.414 | | | 1,208,262,500 | 548,356,376 |
| 51평 | 115PB | 115.956 | 171.588 | | | 1,208,262,500 | 548,356,376 |
| 65평 | 148P | 148.954 | 217.44 | | | 1,477,850,000 | 817,943,876 |
| 69평 | 155P | 155.861 | 230.411 | | | 1,549,200,000 | 889,293,876 |
| 66평 | 149D | 149.965 | 219.753 | | | 1,411,225,000 | 751,318,876 |
| 80평 | 183D | 183.864 | 266.777 | | | 1,731,750,000 | 1,071,843,876 |

추정 분담금 산정

•추정분담금(공동주택) 〈종전자산 7억원 기준〉

| 평형 | 타입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비례율 | 권리가액 | 추정분양가(원) | 추정분담금(원) |
|---|---|---|---|---|---|---|---|
| 12평 | 27 | 27.924 | 41.109 | | | 253,850,000 | -670,018,573 |
| 12평 | 28 | 28.958 | 42.93 | | | 285,363,333 | -638,505,240 |
| 26평 | 59A | 59.908 | 86.273 | | | 559,371,484 | -364,497,089 |
| 36평 | 84A | 84.992 | 120.286 | 131.98% | 924,941,416 | 759,783,456 | -164,085,117 |
| 43평 | 101A | 101.972 | 144.272 | | | 843,485,600 | -80,382,973 |
| 47평 | 106P | 106.923 | 157.357 | | | 1,042,137,500 | 118,268,927 |

| 평형 | 타입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비례율 | 권리가액 | 추정분양가(원) | 추정분담금(원) |
|---|---|---|---|---|---|---|---|
| 49평 | 115A | 115.975 | 163.1 | | | 912,759,375 | -11,109,198 |
| 49평 | 109P | 109.977 | 162.323 | | | 1,073,025,000 | 149,156,427 |
| 51평 | 115PA | 115.823 | 171.414 | | | 1,208,262,500 | 284,393,927 |
| 51평 | 115PB | 115.956 | 171.588 | | | 1,208,262,500 | 284,393,927 |
| 65평 | 148P | 148.954 | 217.44 | | | 1,477,850,000 | 553,981,427 |
| 69평 | 155P | 155.861 | 230.411 | | | 1,549,200,000 | 625,331,427 |
| 66평 | 149D | 149.965 | 219.753 | | | 1,411,225,000 | 487,356,427 |
| 80평 | 183D | 183.864 | 266.777 | | | 1,731,750,000 | 807,881,427 |

•추정분담금(공동주택) 〈종전자산 9억원 기준〉

| 평형 | 타입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비례율 | 권리가액 | 추정분양가(원) | 추정분담금(원) |
|---|---|---|---|---|---|---|---|
| 12평 | 27 | 27.924 | 41.109 | 131.98% | 1,189,210,392 | 253,850,000 | -933,981,022 |
| 12평 | 28 | 28.958 | 42.93 | | | 285,363,333 | -902,467,689 |
| 26평 | 59A | 59.908 | 86.273 | | | 559,371,484 | -628,459,538 |
| 36평 | 84A | 84.992 | 120.286 | | | 759,783,456 | -428,047,566 |
| 43평 | 101A | 101.972 | 144.272 | | | 843,485,600 | -344,345,422 |
| 47평 | 106P | 106.923 | 157.357 | | | 1,042,137,500 | -145,693,522 |
| 49평 | 115A | 115.975 | 163.1 | | | 912,759,375 | -275,071,647 |
| 49평 | 109P | 109.977 | 162.323 | | | 1,073,025,000 | -114,806,022 |
| 51평 | 115PA | 115.823 | 171.414 | | | 1,208,262,500 | 20,431,478 |
| 51평 | 115PB | 115.956 | 171.588 | | | 1,208,262,500 | 20,431,478 |
| 65평 | 148P | 148.954 | 217.44 | | | 1,477,850,000 | 290,018,978 |
| 69평 | 155P | 155.861 | 230.411 | | | 1,549,200,000 | 361,368,978 |
| 66평 | 149D | 149.965 | 219.753 | | | 1,411,225,000 | 223,393,978 |
| 80평 | 183D | 183.864 | 266.777 | | | 1,731,750,000 | 543,918,978 |

추정 분담금 산정

•추정분담금(공동주택) 〈종전자산 11억원 기준〉

| 평형 | 타입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비례율 | 권리가액 | 추정분양가(원) | 추정분담금(원) |
|---|---|---|---|---|---|---|---|
| 12평 | 27 | 27.924 | 41.109 | 131.98% | 1,453,479,368 | 253,850,000 | -1,197,943,472 |
| 12평 | 28 | 28.958 | 42.93 | | | 285,363,333 | -1,166,430,139 |
| 26평 | 59A | 59.908 | 86.273 | | | 559,371,484 | -892,421,988 |
| 36평 | 84A | 84.992 | 120.286 | | | 759,783,456 | -692,010,016 |
| 43평 | 101A | 101.972 | 144.272 | | | 843,485,600 | -608,307,872 |
| 47평 | 106P | 106.923 | 157.357 | | | 1,042,137,500 | -409,655,972 |
| 49평 | 115A | 115.975 | 163.1 | | | 912,759,375 | -539,034,097 |
| 49평 | 109P | 109.977 | 162.323 | | | 1,073,025,000 | -378,768,472 |
| 51평 | 115PA | 115.823 | 171.414 | | | 1,208,262,500 | -243,530,972 |
| 51평 | 115PB | 115.956 | 171.588 | | | 1,208,262,500 | -243,530,972 |
| 65평 | 148P | 148.954 | 217.44 | | | 1,477,850,000 | 26,056,528 |
| 69평 | 155P | 155.861 | 230.411 | | | 1,549,200,000 | 97,406,528 |
| 66평 | 149D | 149.965 | 219.753 | | | 1,411,225,000 | -40,568,472 |
| 80평 | 183D | 183.864 | 266.777 | | | 1,731,750,000 | 279,956,528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187호(23.12.14)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기준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구분 | 명칭 | 면적(㎡) | | | 비율(%)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 합계 | | 56,024.5 | - | 56,024.5 | 100.0 | - |
| 정비 기반시설 등 | 소계 | 13,868.2 | - | 13,868.2 | 24.8 | - |
| | 도로 | 9,064.8 | - | 9,064.8 | 16.2 | 주차장 중복결정 |
| | 문화공원 | 3,265.3 | - | 3,265.3 | 5.8 | 주차장 중복결정 |
| | 어린이공원 | 1,538.1 | - | 1,538.1 | 2.7 | - |
| | (주차장) | (3,999.7) | - | (3,999.7) | (7.1) | 문화공원, 중로2-호선 중복결정 |

| 구분 | 명칭 | 면적(㎡) | | | 비율(%)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 획지 | 소계 | 42,156.3 | - | 42,156.3 | 75.2 | - |
| | 획지-1 | 41,511.3 | - | 41,511.3 | 74.1 | 판매, 주거, 업무 또는 숙박<br>(금회 획지 경계 조정) |
| | 획지-2 | 645.0 | - | 645.0 | 1.2 | 종교시설<br>(금회 획지 경계 조정) |

※ 변경사유 : 획지-2의 합리적인 건축물 신축을 위해 획지-1과의 경계 조정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① 교통시설(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대로 | 1 | 55 | 35~45 | 주간선도로 | 3,550<br>(252) | (하월곡동<br>104-127) | (하월곡동<br>88-16) | 일반도로 | - | - | 미아로 |
| 기정 | 대로 | 3 | 56 | 25~63 | 주간선도로 | 1,750<br>(455) | (하월곡동<br>104-5) | (하월곡동<br>104-217) | 일반도로 | - | - | 정릉로 |
| 기정 | 중로 | 2 | 506 | 15 | 집산도로 | 45 | 하월곡동<br>104-421 | 하월곡동<br>88-90 | 일반도로 | - | - | 도시계획시설<br>주차장 중복결정 |
| 기정 | 중로 | 2 | 512 | 18~19 | 집산도로 | 274<br>(229) | 하월곡동 88-16 | 하월곡동<br>88-909 | 일반도로 | - | 서고2002-263<br>(2002.7.2.) | - |
| 기정 | 중로 | 2 | 513 | 15 | 국지도로 | 185 | 하월곡동<br>104-5 | 하월곡동<br>88-909 | 일반도로 | - | 서고2007-198<br>(2007.6.21.) | - |
| 기정 | 중로 | 2 | 2 | 15 | 집산도로 | 59 | 하월곡동<br>88-529 | 하월곡동<br>88-959 | 일반도로 | - | 서고2002-263<br>(2002.7.2.) | - |

※ ( )는 구역 내 사항임

② 교통시설(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 기정 | 주차장 | - | 하월곡동<br>104-130 일대 | 3,999.7 | - | 3,999.7 | - | 문화공원 및<br>중로2-호선 중복결정 |

③ 공간시설(공원 ·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 기정 | 공원 | 어린이 공원 | 하월곡동 88-958호 | 1,538.1 | - | 1,538.1 | 서고2008-494 (2009.1.2.) | - |
| 기정 | 공원 | 문화 공원 | 하월곡동 104-130 일대 | 3,265.3 | - | 3,265.3 | 서고2008-494 (2009.1.2.)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중복결정 |

(5)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 계획(변경없음)

|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 | | | 비고 |
|---|---|---|---|---|---|---|---|---|---|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 기정 |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 | 56,024.5 | 하월곡동 88-142일대 | 358 | - | - | 358 | - | - |

② 건축시설계획(변경)

|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 높이 | 비고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 기준 | 허용 | 상한 | | |
| 기정 | 신월곡1 재정비 촉진구역 | 56,024.5 | 획지1 | 41,511.3 | 하월곡동 88-142 일대 | 판매, 주거, 업무 또는 숙박 | 60% 이하 | 350% 이하 | 580% 이하 | 680% 이하 | 155m 이하 | - |
| | | | 획지2 | 645.0 | 하월곡동 88-350 일대 | 종교시설 |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적용 | | | | | - |
| 변경 | | 56,024.5 | 획지1 | 41,511.3 | 하월곡동 88-142 일대 | 판매, 주거, 업무 또는 숙박 | 60% 이하 | 350% 이하 | 580% 이하 | 680% 이하 | 155m 이하 | 획지경계조정 |
| | | | 획지2 | 645.0 | 하월곡동 88-350 일대 | 종교시설 |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적용 | | | | | 획지경계조정 |
| 임대주택 | | | · 건설규모 : 전용면적 40㎡ 이상<br>· 건설비율 : (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17% 또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10%) x (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전체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으로 산정된 비율 이상<br>※ 의무연면적 산정 시 결합개발분은 제외하여 산정 | | | | | | | | |

<table>
<tr><td rowspan="2">결정<br>구분</td><td colspan="2">구역구분</td><td colspan="2">가구 또는<br>획지 구분</td><td rowspan="2">위치</td><td rowspan="2">주된<br>용도</td><td rowspan="2">건폐율<br>(%)</td><td colspan="3">용적률(%)</td><td rowspan="2">높이</td><td rowspan="2">비고</td></tr>
<tr><td>명칭</td><td>면적(㎡)</td><td>명칭</td><td>면적(㎡)</td><td>기준</td><td>허용</td><td>상한</td></tr>
<tr><td>주택의 규모 및<br>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2">· 주거비율 : 전체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 85% 미만(오피스텔 제외)<br>·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없음<br>· 주택공급계획 : 2,206세대(공공임대 197세대)
<table>
<tr><th colspan="2">건립규모</th><th>세대수(세대)</th><th>비율(%)</th><th>비고</th></tr>
<tr><td rowspan="4">일반분양</td><td>60㎡ 이하</td><td>460(97)</td><td>20.9</td><td rowspan="4">성북2구역의<br>이전세대수<br>201세대<br>포함</td></tr>
<tr><td>60㎡~85㎡ 이하</td><td>1,279(104)</td><td>58.0</td></tr>
<tr><td>85㎡ 초과</td><td>270</td><td>12.2</td></tr>
<tr><td>소 계</td><td>2,009(201)</td><td>91.1</td></tr>
<tr><td rowspan="4">공공주택</td><td>60㎡ 이하</td><td>150</td><td>6.8</td><td rowspan="4">성북2구역<br>임대주택<br>제외대상<br>(한옥보전)</td></tr>
<tr><td>60㎡~85㎡ 이하</td><td>47</td><td>2.1</td></tr>
<tr><td>85㎡ 초과</td><td>-</td><td>-</td></tr>
<tr><td>소 계</td><td>197</td><td>8.9</td></tr>
<tr><td colspan="2">합 계</td><td>2,206(201)</td><td>100.0</td><td></td></tr>
</table></td></tr>
<tr><td>건축물의<br>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2">· 정릉로 건축한계선 : 5m<br>· 미아로 및 기타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 3m</td></tr>
</table>

※ (  )는 결합개발에 따른 저밀관리구역(성북2구역)의 이전세대수 해당
※ 변경사유 : 획지-2의 합리적인 건축물 신축을 위해 획지-1과의 경계 조정

■ 건축물의 용도(지정/불허)(변경없음)

| 구분 | | | 내용 | 비고 |
|---|---|---|---|---|
| 획지 1 | 지정용도 | | · 판매, 주거, 업무 또는 숙박시설<br>- 본 계획상 지정용도는 모두 도입되어야 함<br>- 주용도(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가 지정용도로 설정되어야 함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밀도 계획<br>(서고 2008-112호, 2008.4.3.) |
| | 불허용도 | 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자동차정비관련단, 판매시설의 부속용도로서 지하층 설치 제외)<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전신전화국 제외)<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 |
| | | 조례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 |
| 획지 2 | 지정용도 |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 |
| | 불허용도 | | · 지정용도 외 건축물 | - |

(6)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 구분 | 시행 방법 | 시행예정 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
| 기정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 | 조합 | 현황 : 733세대<br>계획 : 2,206세대<br>증) 1,473세대 | 집중호우 시 저지대의 침수우려 및 화재 시 소방통로 미확보에 따른 침사우려로 인한 정비사업시행 필요 | 성북2구역의 이전 세대수 201세대 포함 |

■ 세대수 계획

· 기존 세대수 : 733세대_(세입자 622세대 포함)

· 계획 세대수 : 2,206세대_(신월곡1구역 2,005세대, 성북2구역 이전 201세대)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획지 | | | | 비고 |
|---|---|---|---|---|---|---|
| | | 위치 | 면적(㎡)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1 | 1 | 하월곡동<br>88-142 일대 | 41,511.3 | - | 41,511.3 | 판매, 주거,<br>업무 또는 숙박<br>(금회 획지 경계 조정) |
| | 2 | 하월곡동<br>88-350 일대 | 645.0 | - | 645.0 | 종교시설<br>(금회 획지 경계 조정) |

※ 변경사유 : 획지-2의 합리적인 건축물 신축을 위해 획지-1과의 경계 조정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구분 |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고 |
|---|---|---|---|---|---|---|---|
| 기정 | 하월곡동<br>88-142 일대 | - | - | 29,116.26 | 197세대 | 84㎡ : 47세대<br>59㎡ : 150세대 | 성북2구역임대주택<br>제외대상(한옥보전) |

(9)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구분 | 면적(㎡) | | 설치계획 |
|---|---|---|---|
| | 관계법령 | 기준 | |
| 관리<br>사무소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 ·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500㎡를 더한 면적.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을 100㎡로 할 수 있다. | 238㎡ |
| 휴게시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항 | · 삭제 | 해당없음 |
| 근린생활<br>시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br>· 주택건설에 대한 규정 제7조(적용특례)제3항 | ·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당없음 |
| 주민공동<br>시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br>·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 · 주민공동시설 총량 1,000세대 이상 : 500㎡에 세대당 2㎡ 더한 면적x1.25<br>· 주민공동시설 면적(총 6,398.56㎡)<br>경로당 766.20㎡<br>어린이집 766.20㎡<br>작은도서관 378.00㎡<br>어린이놀이터 2,044.20㎡<br>주민운동시설 2,231.00㎡<br>다함께돌봄센터 212.96㎡ | 6,398.56㎡ |
| 유치원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br>· 주택건설에 대한 규정 제7조(적용특례)제3항 | ·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당없음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 건립예상 세대수 : 2,206세대(성북제2구역에서 이전하는 세대수 포함)

(10)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도시경관 | · 기 획보된 도로 및 신규 확보될 도로도 녹화와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완전한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함<br>· 시야 확보가 가능한 지점에 공원 또는 휴게공간을 확보토록 함<br>· 건축물의 충분한 이격으로 통경축 확보<br>· 주변지역과 연계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유도 | - |
| 환경보전 | · 환경친화적인 조경시설물 및 포장재료 이용<br>· 불투수 포장면을 최소화하여 토양오염 방지<br>· 단지 내 풍부한 녹지와 순환형 보행자 전용녹도를 조성<br>·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 | - |
| 재난방지 | · 굴토공사 시 안전한 흙막이 공법 선정으로 침하 등 방지<br>· 공사소음 및 진동대책 : 저소음 무진동 발파 대안 마련 및 법적 규제 이내의 소음관리<br>· 비산분진 대안 마련 :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으로 분진발생 최소화 및 주기적인 살수 실시<br>· 공사안전 대안 마련 : 안전사고 및 화개 등 공사안전 무사고 실시 | - |

② 환경성 검토결과(변경없음)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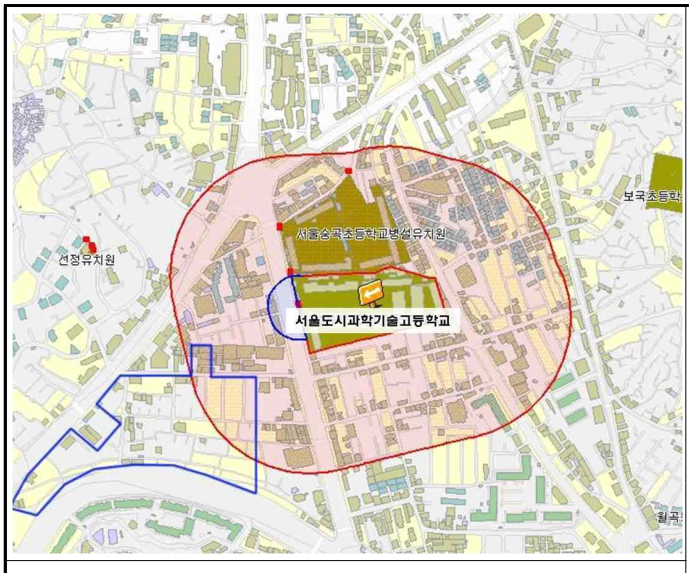


※ 학교(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정화구역도
(자료출처 : 성북교육청)

1. 건축물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정화구역의 설정)에 따른 제6조(학교환경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준수

2.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 환경성검토결과 참조(별첨)
· 환경영향평가 대상구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주변환경 영향 추가검토 예정
→ 사업시행인가 시 사업계획서 협의 예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3항)

(12)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결합정비구역의 지정 내용에 따름

(13)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 구성비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 기정 |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 | 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 | 56,024.5 | - | 56,024.5 | 100.0 | -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① 교통시설(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대로 | 1 | 55 | 35~45 | 주간선도로 | 3,550 (252) | (하월곡동 104-127) | (하월곡동 88-16) | 일반도로 | - | - | 미아로 |
| 기정 | 대로 | 3 | 56 | 25~63 | 주간선도로 | 1,750 (455) | (하월곡동 104-5) | (하월곡동 104-217) | 일반도로 | - | - | 정릉로 |
| 기정 | 중로 | 2 | 506 | 15 | 집산도로 | 45 | 하월곡동 104-421 | 하월곡동 88-90 | 일반도로 | - | -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중복결정 |
| 기정 | 중로 | 2 | 512 | 18~19 | 집산도로 | 274 (229) | 하월곡동 88-16 | 하월곡동 88-909 | 일반도로 | - | 서고2002-263 (2002.7.2.) | - |
| 기정 | 중로 | 2 | 513 | 15 | 국지도로 | 185 | 하월곡동 104-5 | 하월곡동 88-909 | 일반도로 | - | 서고2007-198 (2007.6.21.) | - |
| 기정 | 중로 | 2 | 2 | 15 | 집산도로 | 59 | 하월곡동 88-529 | 하월곡동 88-959 | 일반도로 | - | 서고2002-263 (2002.7.2.) | - |

※ ( )는 구역 내 사항임

② 교통시설(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 기정 | 주차장 | - | 하월곡동 104-130 일대 | 3,999.7 | - | 3,999.7 | - | 문화공원 및 중로2-호선과 중복결정 |

③ 공간시설(공원 ·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 기정 | 공원 | 어린이 공원 | 하월곡동 88-958호 | 1,538.1 | - | 1,538.1 | 서고2008-494 (2009.1.2.) | - |
| 기정 | 공원 | 문화 공원 | 하월곡동 104-130 일대 | 3,265.3 | - | 3,265.3 | 서고2008-494 (2009.1.2.)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중복결정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획지 | | | | 비고 |
|---|---|---|---|---|---|---|
| | | 위치 | 면적(㎡)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1 | 1 | 하월곡동 88-142 일대 | 41,511.3 | - | 41,511.3 | 판매, 주거, 업무 또는 숙박 (금회 획지 경계 조정) |
| | 2 | 하월곡동 88-350 일대 | 645.0 | - | 645.0 | 종교시설 (금회 획지 경계 조정) |

※ 변경사유 : 획지-2의 합리적인 건축물 신축을 위해 획지-1과의 경계 조정

(2)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①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구분 | | | 내용 | 비고 |
|---|---|---|---|---|
| 획지 1 | 지정용도 | | · 판매, 주거, 업무 또는 숙박시설<br>- 본 계획상 지정용도는 모두 도입되어야 함<br>- 주용도(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가 지정용도로 설정되어야 함 | 서울시 도시 · 환경정비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밀도 계획 (서고 2008-112호, 2008.4.3.) |
| | 불허 | 법에서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정비관 | - |

| 구분 | | | 내용 | 비고 |
|---|---|---|---|---|
| | 용도 | 허용하는 건축물 중 | 련 단, 판매시설의 부속용도로서 지하층 설치 제외)<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단, 전신전화국 제외)<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
| | | 조례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br>·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 |
| 획지 2 | 지정용도 |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 |
| | 불허용도 | | · 지정용도 외 건축물 | - |

②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구분 | 가구 | 건폐율 (%) | 용적률(%) | | | 높이 | 비고 |
|---|---|---|---|---|---|---|---|
| | | | 기준 | 허용 | 상한 | | |
| 기정 | 획지1 | 60% 이하 | 350% 이하 | 580% 이하 | 680% 이하 | 155m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1호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과밀방지를 위해 상한용적률 680% 이하로 계획 |
| 기정 | 획지2 |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적용 | | | | | 종교시설 |

(3)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구 분 | | 적용위치 | 계획내용 |
|---|---|---|---|
| 기정 | 건축 한계선 | 정릉로변 | 건축한계선 5m 지정 |
| | | 미아로 및 기타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정 |

(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①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 구분 | 정비계획 | 비고 |
|---|---|---|
| 공개공지 | · 공공시설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계획 | - |
| 지하철 관련 | · 지하철(길음역)과의 지하연계보행통로 및 공영주차장 설치 | - |
| 쌈지형공지 | · 공공시설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쌈지형 공지계획 | - |
| 전면공지 |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를 보행공간 및 차량진출입 차선 조정 | - |
| 공공보행통로 | ·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보행편리성 제고 및 합리적 보행통로 계획 | - |

②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 구분 |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고 |
|---|---|---|---|---|---|---|---|
| 기정 | 하월곡동 88-142 일대 | - | - | 29,116.26 | 197세대 | 84㎡ : 47세대<br>59㎡ : 150세대 | 성북2구역 제외대상 (한옥보전) |

2. 결합정비구역 지정 및 결합정비계획 결정(변경)

1 결합정비구역 지정 및 결합정비계획 결정(변경)

1. 결합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

1) 정비구역의 명칭 :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구분 | 정비사업명칭 | 위치 | 면 적(㎡)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기정 |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사업 | 성북구 성북동 266-103 일대<br>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 | 131,097.3 | - | 131,097.3 | 결합개발 |

3) 결합토지이용계획(변경)

| 구 분 | 명 칭 | | 면 적(㎡) | | | 구성비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 계 | | | 131,097.3 | - | 131,097.3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 26,471.1 | - | 26,471.1 | 20.2 | - |
| | 도 로 | | 16,936.1 | - | 16,936.1 | 12.9 | - |
| | 공원 및 녹지 | 소계 | 9,262.3 | - | 9,262.3 | 7.1 | - |
| | | 도시자연공원 | - | - | - | - | - |
| | | 역사공원 | 2,797.6 | - | 2,797.6 | 2.1 | - |
| | | 문화공원 | 3,265.3 | - | 3,265.3 | 2.5 | - |
| | | 어린이공원 | 1,538.1 | - | 1,538.1 | 1.2 | - |
| | | 소공원 | 1,661.3 | - | 1,661.3 | 1.3 | - |
| | | 경관녹지 | - | - | - | - | - |
| | 공공공지 | | 272.7 | - | 272.7 | 0.2 | - |
| | (주차장) | | (3,999.7) | - | (3,999.7) | (3.1) | 문화공원 및 도로와 중복결정(지하) |
| 획지 | 소 계 | | 103,714.9 | - | 103,714.9 | 79.8 | - |
| | 공동주택 | | 63,988.6 | - | 63,988.6 | 48.8 | 금회 획지 경계 조정 |
| | 개별정비 | | 39,992.6 | - | 39,992.6 | 30.5 | - |
| | 한옥조성 | | - | - | - | - | - |
| | 종교시설 | | 645.0 | - | 645.0 | 0.5 | 금회 획지 경계 조정 |

※ 변경사유 : 신월곡1구역(고밀개발구역) 획지-2(종교시설)의 합리적인 건축물 신축을 위해 획지-1(공동주택)과의 경계 조정

2. 정비구역의 결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저밀관리구역 | 고밀개발구역 | 비고 |
|---|---|---|
| · 구역명칭 : 성북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br>· 위 치 :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대<br>· 면 적 : 75,072.8㎡ | · 구역명칭 : 신월곡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br>· 위 치 : 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br>· 면 적 : 56,024.5㎡ | - |

3.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관한 계획 : 결합 후 분할시행(변경없음)

| 구분 | 시행지구 명칭 | 위치 | 면적(㎡)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성북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 - | - | 131,097.3 | - | 131,097.3 | 결합개발 |
| 저밀관리구역 | 성북제2구역 |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대 | 75,072.8 | - | 75,072.8 | 구릉지 |
| 고밀개발구역 | 신월곡1구역 | 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 | 56,024.5 | - | 56,024.5 | 역세권 |

※ 분할시행은 구역별 정비계획 내용에 따름

4. 결합정비사업 용적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결합정비사업에 따른 용적률 배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배분용적률
· 성북제2구역 : 결합용적률 80% 중 48.5% 결정
· 신월곡1구역 : 결합용적률 80% 중 31.5% 결정

6. 사업시행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조합 | 결합개발 (분할시행) |

7. 기타사항(변경없음)

2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없음)

1.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2. 정비계획(변경없음)
3. 정비구역 변경 결정 조건부여(변경없음)

3 신월곡1 도시정비형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 고밀개발구역에 대한 결정(변경)사항은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 내 신월곡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과 동일함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성북2구역은 변경사항 없음 : 도면 생략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02-2133-7226)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 (☎02-2241-285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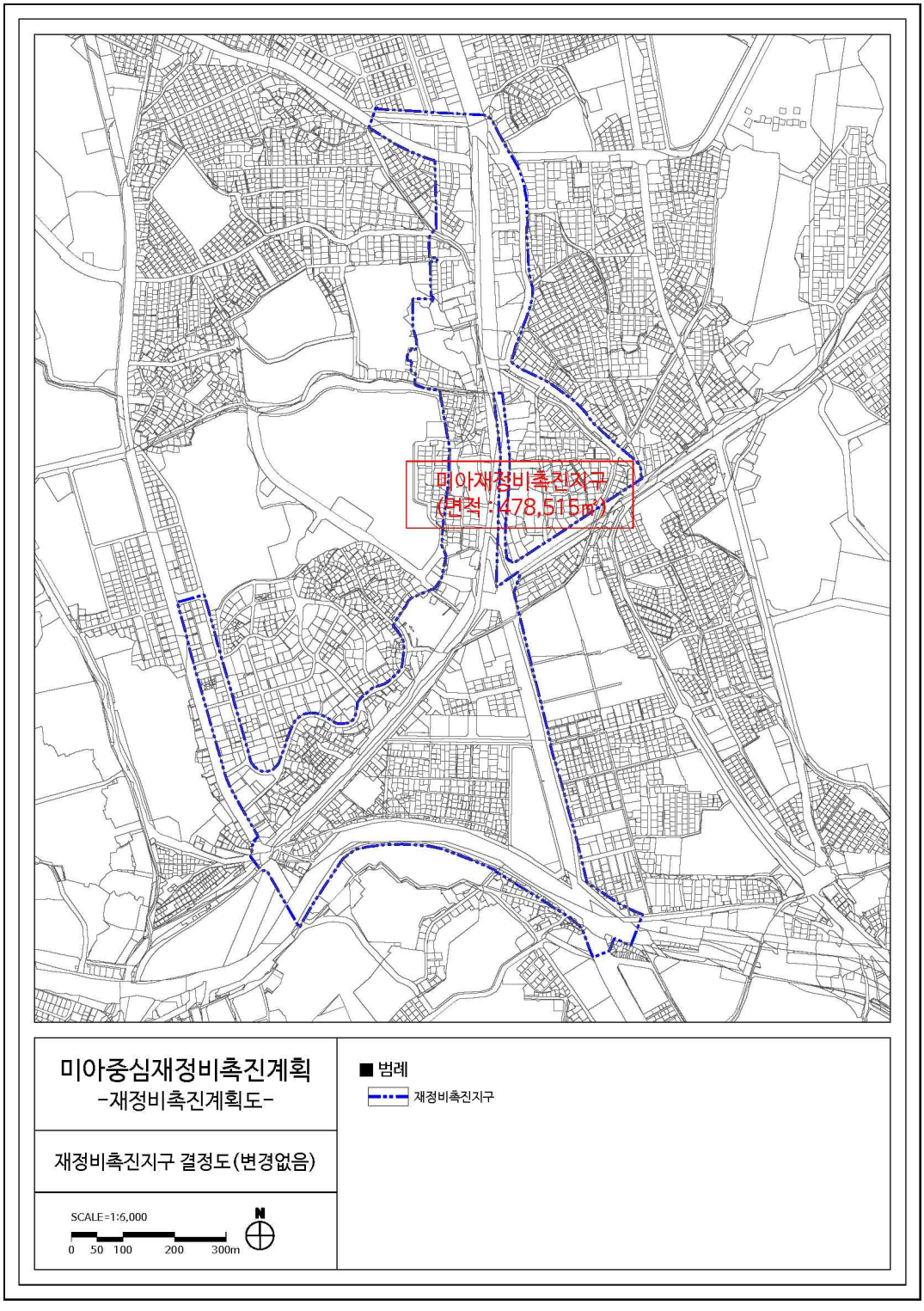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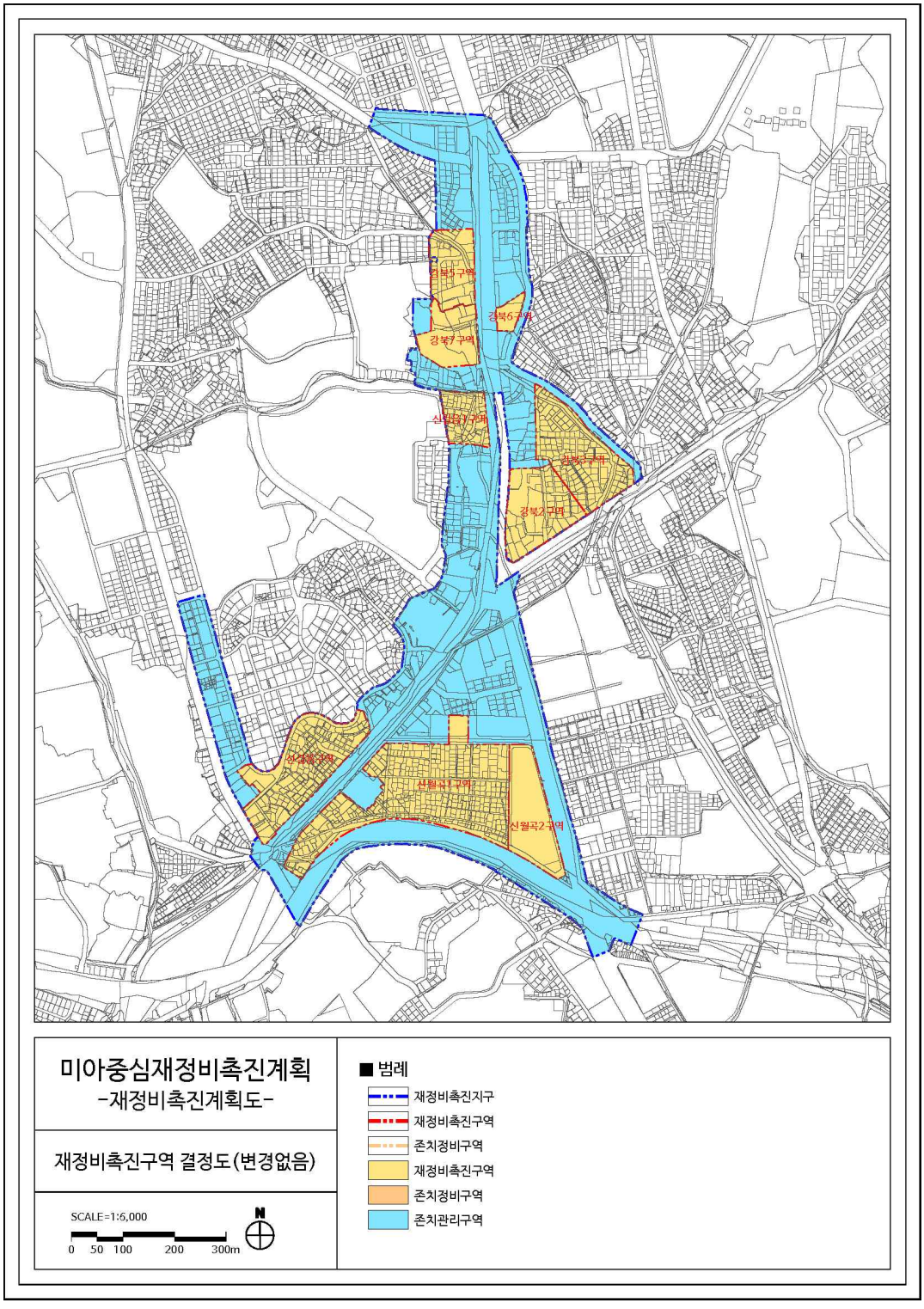

[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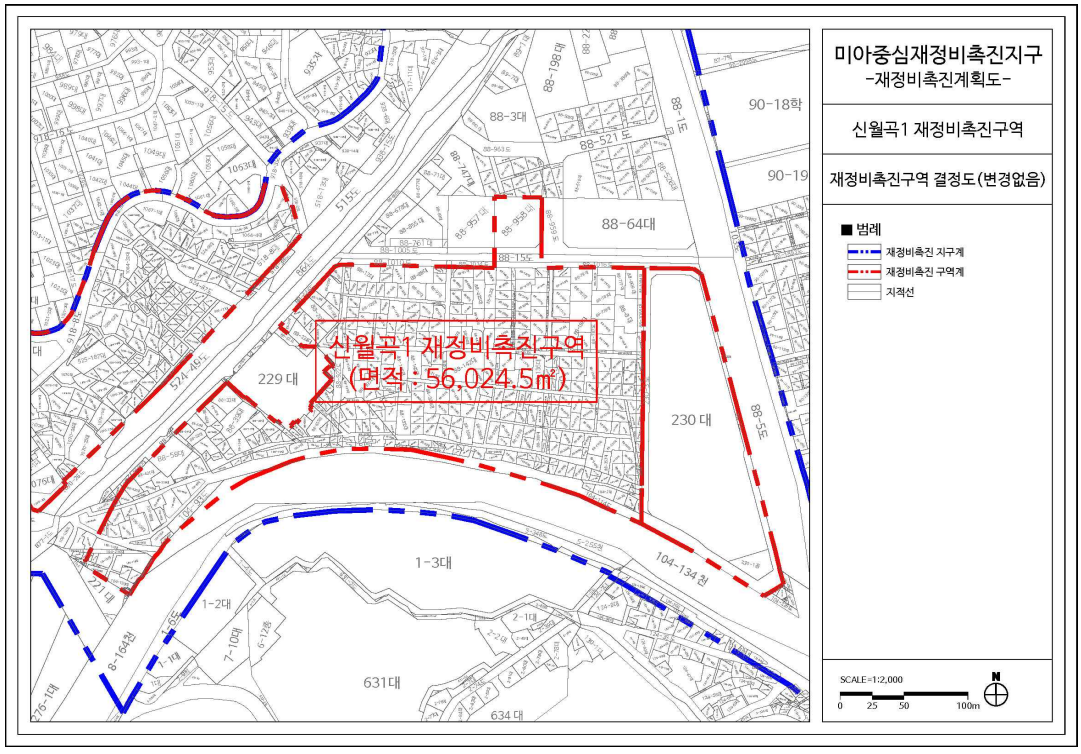


[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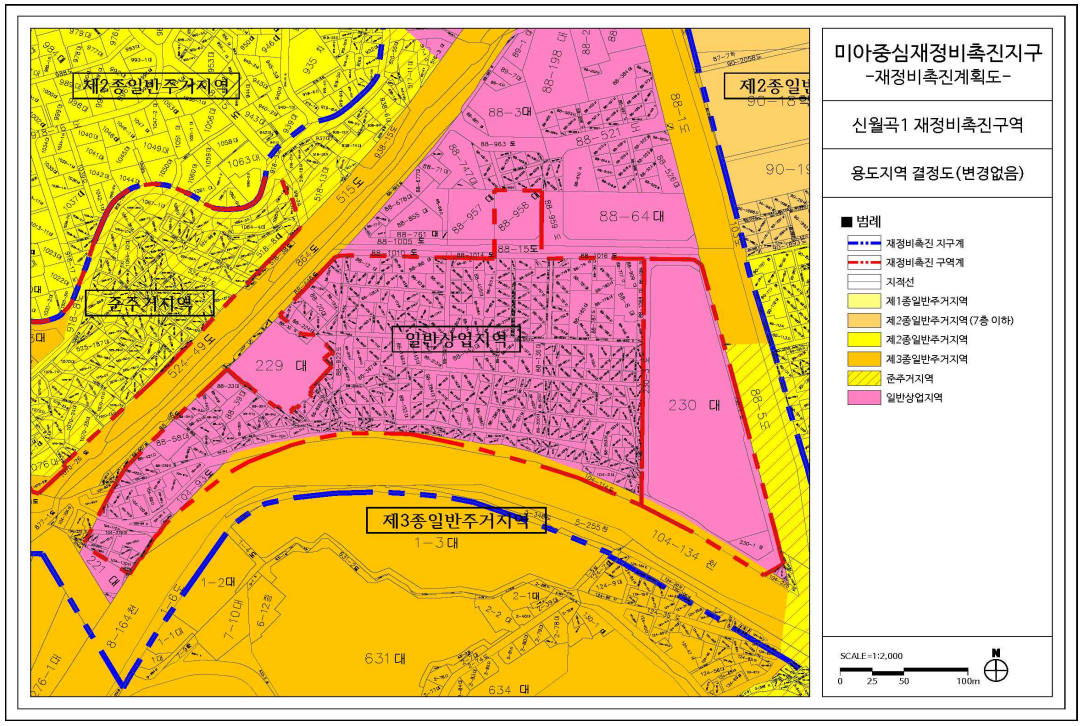

[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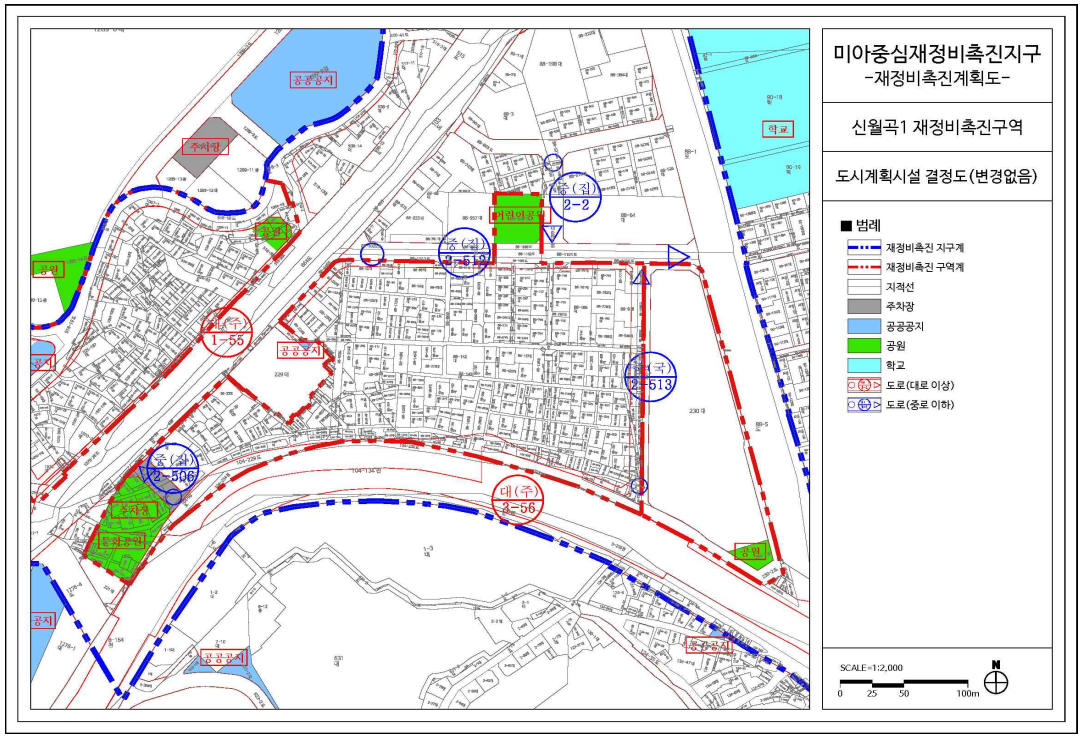


[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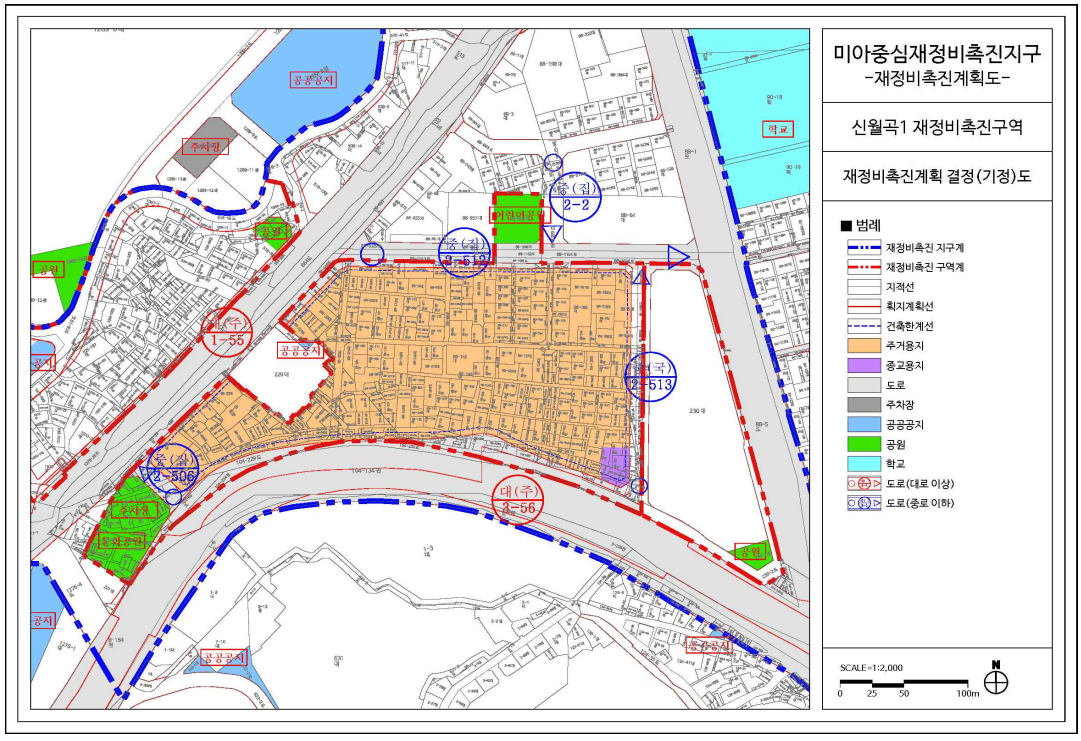

[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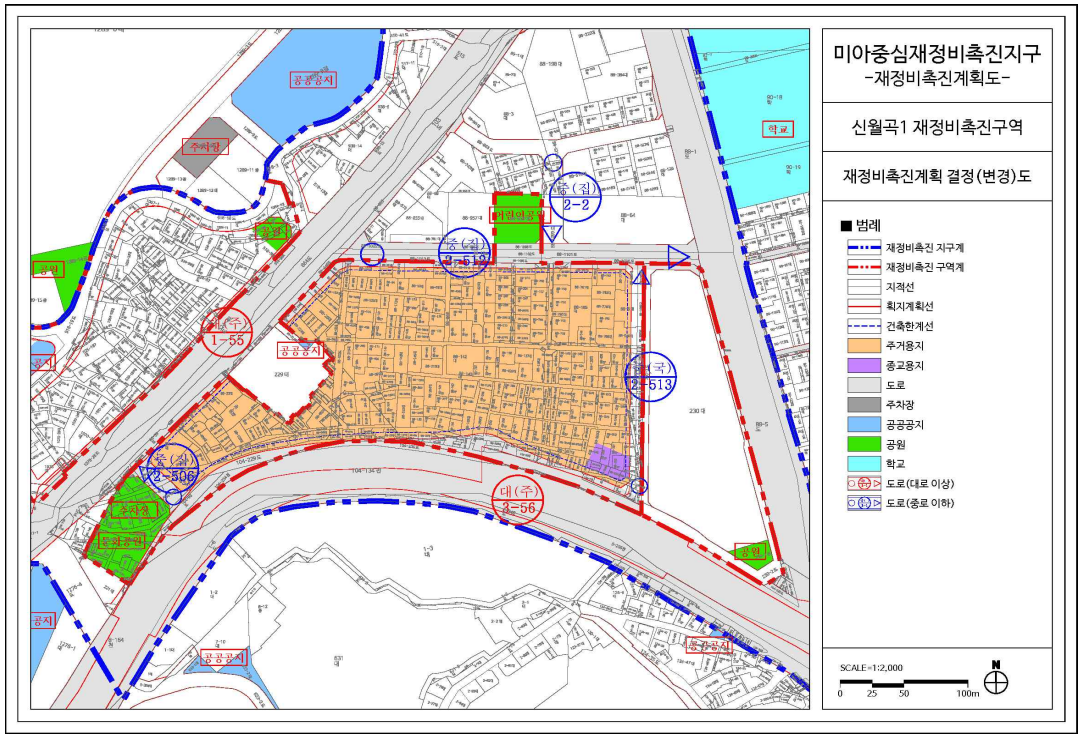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2호

#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6-4번지 일대(이하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 7. 31.)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시행에 관한 계획

|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신설 |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6-4번지 일대 | - | 증) 42,402.3 | 42,402.3 | - |

2.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 | 구역총괄 | | | 비율(%)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 계 | | | - | 증) 42,402.3 | 42,402.3 | 100.0 | - |
| 정비기반시설 등 | 소계 | | - | 증) 4,302.4 | 4,302.4 | 10.1 | - |
| | 도로 | | - | 증) 4,002.4 | 4,002.4 | 9.4 | - |
| | 공공청사 | | - | 증) 300.0 | 300.0 | 0.7 | 교통센터 |
| 획지 | 소계 | | - | 증) 38,099.9 | 38,099.9 | 89.9 | - |
| | 전체 | | - | 증) 37,742.0 | 37,742.0 | 89.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 제2종 | - | 증) 27,250.3 | 27,250.3 | 64.4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 | - | 증) 10,491.7 | 10,491.7 | 24.7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종교용지 | | - | 증) 357.9 | 357.9 | 0.8 | 종교부지 (청룡사) |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면적(㎡) | | | 비율(%) | 비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 계 | 42,402.3 | - | 42,402.3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7,314.9 | 감) 16,638.3 | 676.6 | 1.6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87.4 | 증) 6,146.6 | 31,234.0 | 73.7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0,491.7 | 10,491.7 | 24.7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위 치 | 용도지역 | | 면적(㎡) | 변경 사유 |
|---|---|---|---|---|
| | 기정 | 변경 | | |
| 승인동56 일대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676.6 | •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br>• 지봉로변 가로활성화 및 창신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6,606.0 | |
|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32.3 | |
| | | 소계 | 17,314.9 |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4,628.0 | |
|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10,459.4 | |
| | | 소계 | 25,087.4 | |
| | 계 | | 42,402.3 |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 구분 | 항목 | | | 금액(천원) |
|---|---|---|---|---|
| 수입 | 소계 | | | 805,386,460 |
| | 분양주택 | 조합원 | | 289,881,400 |
| | | 일반 | | 458,022,500 |
| | 임대주택 | 재개발임대 | | 43,470,146 |
| | | 국민주택규모임대 | | 13,318,084 |
| | 기타시설 | 근린생활시설 | 일반분양 | 9,276,000 |
| | | | 조합분양 | - |
| | | | 매출부가세 | -8,581,670 |
| 지출 | 소계 | | | 547,260,403 |
| | 공사비 | | | 406,541,080 |
| | 제사업경비 | | | 140,719,323 |
| 종전자산 추정액 | | | | 258,038,000 |
| 추정비례율 | 100.03% = [(총수입(805,386,460천원) - 총지출(547,260,403천원)] / 종전자산 추정액(258,038,000천원)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 84형 일반분양가(천원/3.3㎡) \ 공사비(천원) | 7,000 | 7,500 | 8,000 (기준) | 8,500 | 9,000 |
|---|---|---|---|---|---|
| 36,900 | 151.24% | 141.24% | 131.25% | 121.25% | 111.26% |
| 35,200 | 135.63% | 125.64% | 115.64% | 105.65% | 95.65% |
| 33,500 (기준) | 120.02% | 110.03% | 100.03% | 90.04% | 80.05% |
| 31,800 | 104.42% | 94.42% | 84.43% | 74.43% | 64.44% |
| 30,200 | 88.81% | 78.82% | 68.82% | 58.83% | 48.83% |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사용형태 | 연장 (m) | 위치 |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기점 | 종점 | | | |
| 기정 | 대로 | 3 | 195 | 20~45 | 주간선 | 일반 | 1,680 (253) | 숭인동 83-5 | 성북구 보문동1가 | - | - | 지봉로 |
| 변경 | 대로 | 3 | 195 | 20~45 | 주간선 | 일반 | 1,680 (253) | 숭인동 83-5 | 성북구 보문동1가 | - | - | 지봉로 |
| 신설 | 중로 | 2 | D | 15~19 | 국지 | 일반 | 117 | 숭인동 53-29 | 숭인동 57-10 | - | - | - |
| 폐지 | 소로 | 3 | C | 3~5 | 국지 | 일반 | 99 | 숭인동 16-1 | 숭인동 7-41 | - | 건고 432 ('63.07. 01.) | - |
| 폐지 | 소로 | 3 | D | 4 | 국지 | 일반 | 24 | 숭인동 55-17 | 숭인동 53-23 | - | - | - |
| 기정 | 소로 | 3 | E | 6~7 | 국지 | 일반 | 59 | 숭인동 24-1 | 숭인동 24-1 | - | - | - |
| 변경 | 소로 | 3 | E | 6~7 | 국지 | 일반 | 59 | 숭인동 24-1 | 숭인동 24-1 | - | - | - |
| 신설 | 소로 | 3 | G | 6 | 국지 | 일반 | 75 | 숭인동 57-74 | 숭인동 57-44 | - | - | - |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연장 내 ( )는 구역 내 해당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도로명 |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대로 3-195 | 대로 3-195 | • 도로 선형 변경<br>- B: 20~45m / L: 1,680m | • 정비구역 내 원활한 차량 진출입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도로 선형 조정 |
| - | 중로 2-D | • 도로 신설<br>- B: 15~19m / L: 117m | • 정비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 소로 3-C | - | • 도로 폐지 | •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
| 소로 3-D | - | • 도로 폐지 | •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
| 소로 3-E | 소로 3-E | • 도로 선형 변경<br>- B: 6~7m / L: 59m | • 교통안전을 위한 우회전 도류화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
| - | 소로 3-G | • 도로 신설<br>- B: 6m / L: 75m | • 정비구역 인접 필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치 |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기점 | 종점 | | | |
| 신설 | 소로 | 3 | H | 6 | 특수 | 보행자 전용 | 151.8 (14.5) | 숭인동 53-5 | 창신동 산6-41 | - | - | 보행자 전용도로. 151.8m 중 대로3-195호선 중복결정 (L=14.5m), |
| 신설 | 소로 | 3 | K | 6 | 특수 | 보행자 전용 | 45.5 | 숭인동 57-57 | 숭인동 58-587 | - | - | 숭인근린공원 중복결정 (L=30.2m), 입체적 결정 (L=15.3m) |

※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하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설치시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엘리베이터, 계단 및 연결 통로 등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여 설치한 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지봉로 상부에 조성되는 입체보행로(소로3-H) 구간에 대하여 숭인동56일대에서 先 사업추진시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이후 창신동23일대 사업추진시 일체 조성함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도로명 |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소로 3-H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br>- B: 6m /<br>L: 151.8m (14.5m) | • 창신동과 숭인동간 동~서의 보행네트워크 연결, 창신공원 및 숭인공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 - | 소로 3-K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br>- B: 6m / L: 45.5m | • 숭인공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및 입체적결정) |

3) 철도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 | 연장(km)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 | | |
| 기정 | - | 철도 | 고속철도 (6호선) | 응암역 | 신내역 | - | 36.4 | - | - | - |

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구분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숭인동 9-1일대 | 층수(층) | - | 지하1층 ~ 지하2층 | 지하1층 ~ 지하2층 | - | 건축물 기부채납 (연면적 : 4,500.0㎡) |
| | | | | | 수평투영면적(㎡) | - | 증) 4,500.0 | 4,500.0 | | |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공동주택용지 내 지분면적 포함)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 | 주차장 | • 주차장(건축물 기부채납) 신설<br>- 층수 : 지하1층~지하2층<br>- 수평투영면적 : 4,500.0㎡<br>- 연면적 : 4,500.0㎡ | •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내 지붕로변으로 주차장 설치를 통해 토지 효율성 제고 및 이용 편의성 향상 |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2 | 숭인근린공원 | 근린공원 | 숭인동 59번지 일대 | 53,469.0 | - | 53,469.0 (182.8) | '04.9.10 | 숭인공원 |

※ 면적 ( )는 구역 내 해당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 구 분 |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 | 공공청사 | 교통센터 | 숭인동 53-29 | 숭인동 5-4 일대 | 용도 | 공공청사 | 82.9 | 증) 217.1 | 300.0 | - | 건축물 기부채납 (600㎡) |
| | | | | | | 연면적 | 600.0㎡ | | | | | |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
| - | 공공청사 | • 공공청사 위치 변경<br>- 숭인동 53-29 → 5-4일대<br>• 공공청사 면적 변경<br>- 82.9㎡ → 300㎡ (증 217.1㎡)<br>• 공공청사(건축물 기부채납) 신설<br>- 연면적 : 600㎡ | • 토지이용 효율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해 창신역 인근으로 공공청사(교통센터) 위치 이전 및 면적 증가<br>• 공공청사(경찰서) 건축물 신축 및 기부채납 |

라. 사회복지시설

1)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구분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숭인동 9-1일대 | 층수(층) | - | 지하1층 ~ 지상2층 | 지하1층 ~ 지상2층 | - | 건축물 기부채납 (연면적 : 3,128.0㎡) |
| | | | | | 수평투영면적 (㎡) | - | 증) 2,128.0 | 2,128.0 | | |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공동주택용지 내 지분면적 포함)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건축물 기부채납) 신설<br>- 층수 : 지하1층~지하2층<br>- 수평투영면적 : 2,128.0㎡<br>- 연면적 : 3,128.0㎡ | •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내 지봉로변으로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신축을 통해 토지 효율성 제고 및 이용 편의성 향상 |

##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시설의 종류 | | 위 치 | 기 준 | | 계획(안) | 비 고 |
|---|---|---|---|---|---|---|
| 공동이용시설 | 소 계 | 획지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br>(974세대×2.5㎡)×1.25 | 3,043.75㎡ 이상 | 3,262.0㎡ | - |
| | 경로당 | 〃 | 시설설치기준 :<br>500세대 이상<br><br>시설면적기준 :<br>500~1,000세대 미만 | 330㎡ 이상 | 330.0㎡ | |
| | 어린이집 | 〃 | | 330㎡ 이상 | 382.0㎡ | |
| | 작은도서관 | 〃 | | 158㎡ 이상 | 300.0㎡ | |
| | 다함께돌봄센터 | 〃 | | - | 350.0㎡ | |
| | 어린이놀이터 | 〃 | | - | 600.0㎡ | |
| | 기타 | 〃 | | - | 588.0㎡ | |
| | 주민운동시설 | 〃 | | - | 712.0㎡ | |
| 관리사무소 | | 〃 | 50세대 이상<br>10㎡+(974세대-50세대)×0.05㎡ | 56.2㎡ 이상 | 63.7㎡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7호 다목 규정에 따라 전체 구역을 하나의 단지로 보고 주민공동시설 배치
※ 향후 사업승인 시 시설설치면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계획

|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 | |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 42,402.3 | 전체 | 37,742.0 | 숭인동 56-4 일대 | 298 | - | - | - | 298 |
| | | | 제2종 | 27,250.3 | 숭인동 56-4 일대 | 222 | - | - | - | 222 |
| | | | 제3종 | 10,491.7 | 숭인동 7-13 일대 | 71 | - | - | - | 71 |
| | | | 종교용지 | 357.9 | 숭인동 24-10 일대 | 5 | - | - | - | 5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 높이(m)/최고층수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 정비계획 | 법적상한 | |
| 신설 |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 42,402.3 | 전체 | 37,742.0 | 숭인동 56-4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복합시설 | 57.22 이하 | 219.25 이하 | 259.67 이하 | 해발 125m 이하/ 26층 이하 |
| | | | 제2종 | 27,250.3 | 숭인동 56-4 일대 | | 60 이하 | 207.63 이하 | 246.25 이하 | |
| | | | 제3종 | 10,491.7 | 숭인동 7-13 일대 | | 50 이하 | 249.43 이하 | 294.53 이하 | |
| | | | 종교용지 | 357.9 | 숭인동 24-10 일대 | 종교시설 | 관련 법규에 의함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 세대수 : 974세대 (분양 804세대, 임대 170세대)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세대수 : 183세대 (분양 113세대, 임대 70세대)

| 구 분 | | 계 획 | |
|---|---|---|---|
| | | 세대수 | 비율(%) |
| 합 계 | | 974 | 100.0 |
| 분양 | 소계 | 804 | 82.6 |
| | 전용 39㎡ | 82 | 8.4 |
| | 전용 46㎡ | 137 | 14.1 |
| | 전용 59㎡ | 141 | 14.5 |
| | 전용 74㎡ | 55 | 5.6 |
| | 전용 84㎡ | 255 | 26.2 |
| | 전용 104㎡ | 134 | 13.8 |
| 임대 | 소계 | 170 | 17.4 |
| | 전용 39㎡ | 30 | 3.1 |
| | 전용 46㎡ | 11 | 1.1 |
| | 전용 59㎡ | 52 | 5.3 |
| | 전용 74㎡ | 21 | 2.2 |
| | 전용 84㎡ | 56 | 5.7 |

|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 높이(m)/최고층수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 정비계획 | 법적상한 | |

- 정비계획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법적상한용적률 증가분 제외)

| 구 분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 | |
|---|---|---|---|---|
| 규 모 | 합계 | 40㎡이하 | 40~60㎡이하 | 60~85㎡이하 |
| 세대수 | 100 | 30 | 55 | 15 |
| 비율(%) | 100.0 | 30.0 | 55.0 | 15.0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 확보 관련 규정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이상
  → 계획 : 86.24%(840세대)
- 임대주택 건설 1) 주택 전체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주택 전체연면적의 10%이상
  → 계획 : 주택 전체연면적의 10.01%(7,923.15㎡)
  2)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내 범위에서 30%이상 또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로 건설
  → 계획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0%(30세대)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183세대) 제외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퍼센트보다 높은 경우 또는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여야 함

-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85㎡이하)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이상

| 구분 | | 정비계획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초과용적률 (법적상한-정비계획) |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계획 (초과용적률의 50%) |
|---|---|---|---|---|---|
| 전체 | | 219.25% | 259.67% | 40.42% | 7,647.88㎡ (≥ 7,627.58㎡) |
| | 제2종 | 207.63% | 246.25% | 38.62% | 5,262.48㎡ (≥ 5,261.57㎡) |
| | 제3종 | 249.43% | 294.53% | 45.10% | 2,385.40㎡ (≥ 2,366.01㎡) |

**심의 완화사항**

- 용도지역 상향 :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20%)
  - 기준용적률 상향한 부분을 소형주택(60㎡이하)으로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한하여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의 완화 적용

|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 높이(m)/최고층수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 정비계획 | 법적상한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 지정<br>- 대지경계선 및 공공보행통로로부터 3m 이상<br>• 벽면한계선 지정<br>- 건축한계선에서 3m 이상(건축한계선을 활용하여 보행공간 조성구간에 적용)<br>- 공공보행통로로부터 3m 이상(1층 필로티의 경우 해당없음) | | | | | | | | |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 공공보행통로(폭원 6m 이상) 계획<br>- 지봉로~대상지~숭인근린공원(연결통로) 연결 | | | | | | | | | |

나. 용적률 계획

| 구 분 | | 산 정 내 용 | | | | | | | | | |
|---|---|---|---|---|---|---|---|---|---|---|---|
| 토지 이용 계획 (㎡) | | 계 (구역면적) | 대지면적 (공동주택 용지) | 공공시설 등 제공 면적 | | | | |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 | | | | 계 | 도로 | 입체 보행로 | 교통 센터 | 사회복지시 설 (토지지분) | 주차장 (토지지분)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 |
| | | 42,402.3 | 37,742.0 | 9,797.0 | 3,750.7 | 251.8 | 300.0 | 706.3 | 1,016.0 | 3,772.2 | 1,967.9 | 3,827.5 |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 • 순부담면적 4,001.6㎡<br>•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건축물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포함)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 면적<br>= 9,797.0㎡ - 1,967.9㎡ - 3,827.5㎡ = 4,001.6㎡<br>※ 구역면적(42,402.3㎡) 대비 9.4% | | | | | | | | | |
| 용적률 | 기준 | • 기준용적률 : 192.37%<br>= {(27,250.3㎡ × 185.62%) + (10,491.7㎡ × 209.88%)} / 37,742.0㎡ = 192.37%<br>- 제2종(제2종일반주거지역) = {(16,606.0㎡ × 170%) + (10,644.3㎡ × 210%)} / 27,250.3㎡ = 185.62%<br>- 제3종(제3종일반주거지역) = {(32.3㎡ × 170%) + (10,459.4㎡ × 210%)} / 10,491.7㎡ = 209.88% | | | | | | | | | |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산 정 내 용</th></tr>
<tr><td rowspan="2">용적률</td><td>허용</td><td>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면적(㎡)</th><th>기준용적률</th><th>비 고</th></tr>
<tr><td colspan="2">전체</td><td>37,742.0</td><td>192.37%</td><td rowspan="3">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하)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20%)</td></tr>
<tr><td></td><td>제2종</td><td>27,250.3</td><td>185.62%</td></tr>
<tr><td></td><td>제3종</td><td>10,491.7</td><td>209.88%</td></tr>
</table>
• 허용용적률 : 202.37%<br>
= {(27,250.3㎡ × 195.62%)+(10,491.7㎡ × 219.88%)} / 37,742.0㎡ = 202.37%<br>
- 제2종(제2종일반주거지역) = {(16,606.0㎡ × 180%)+(10,644.3㎡ × 220%)} / 27,250.3㎡ = 195.62%<br>
- 제3종(제3종일반주거지역) = {(32.3㎡ × 180%)+(10,459.4㎡ × 220%)} / 10,491.7㎡ = 219.88%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면적(㎡)</th><th>허용용적률</th><th>비 고</th></tr>
<tr><td colspan="2">전체</td><td>37,742.0</td><td>202.37%</td><td rowspan="3">공공보행통로(+5%)<br>열린단지(+5%)</td></tr>
<tr><td></td><td>제2종</td><td>27,250.3</td><td>195.62%</td></tr>
<tr><td></td><td>제3종</td><td>10,491.7</td><td>219.88%</td></tr>
</table>
</td></tr>
<tr><td>정비계획<br>(상한)</td><td>
• 정비계획용적률 = 219.25% 이하<br>
= {(27,250.3㎡ × 207.63%)+(10,491.7㎡ × 249.43%)} / 37,742.0㎡ = 219.25%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면적(㎡)</th><th>상한용적률(%)</th><th>공공기여 비율(%)</th><th>비 고</th></tr>
<tr><td colspan="2">전체</td><td>37,742.0</td><td>219.25% 이하</td><td>100.0</td><td rowspan="3">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최대 상한용적률 이하 범위에서 공공기여 비율 안배<br>※ 공공기여 비율은 사업시행자가 결정</td></tr>
<tr><td></td><td>제2종</td><td>27,250.3</td><td>207.63% 이하</td><td>55.0</td></tr>
<tr><td></td><td>제3종</td><td>10,491.7</td><td>249.43% 이하</td><td>45.0</td></tr>
</table>
• 정비계획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β건축물·현금)<br>
- 제2종 = 195.62% × {1 + (1.3 × 0.98693 × 0.00480)} + (0.7 × 0.07888)} = 207.63%
<table>
<tr><th>구 분</th><th>산출근거</th><th>비 고</th></tr>
<tr><td>가중치</td><td>= 공공기여 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br>= 193.07% / 195.62% = 0.98693</td><td></td></tr>
<tr><td>α토지</td><td>= 공공시설 부지(토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br>= 126.18㎡ / 26,303.03㎡ = 0.00480</td><td>기부채납 면적 =<br>229.42㎡ × 55.0% =<br>126.18㎡</td></tr>
<tr><td>β건축물 · 현금</td><td>= 공공시설물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br>= 2,074.71㎡ / 26,303.03㎡ = 0.07888</td><td>기부채납 면적 =<br>3,772.2㎡ × 55.0% =<br>2,074.71㎡</td></tr>
</table>
- 제3종 = 219.88% × {1 + (1.3 × 0.87807 × 0.01062)} + (0.7 × 0.17470)} = 249.43%
</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산 정 내 용</th></tr>
<tr><td></td><td></td><td>
<table>
<tr><th>구 분</th><th>산출근거</th><th>비 고</th></tr>
<tr><td>가중치</td><td>= 공공기여 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br>= 193.07% / 219.88% = 0.87807</td><td></td></tr>
<tr><td>α토지</td><td>= 공공시설 부지(토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br>= 103.24㎡ / 9,716.66㎡ = 0.01062</td><td>기부채납 면적 =<br>229.42㎡ X 45.0% =<br>103.24㎡</td></tr>
<tr><td>β건축물 · 현금</td><td>= 공공시설물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br>= 1,697.49㎡ / 9,716.66㎡ = 0.17470</td><td>기부채납 면적 =<br>3,772.2㎡ X 45.0% =<br>1,697.49㎡</td></tr>
</table>
※ 획지별 공공기여 면적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최대 상한용적률 이하 범위에서 완화
</td></tr>
<tr><td></td><td>법적상한</td><td>
• 법적상한용적률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면적(㎡)</th><th>법적상한 용적률(%)</th><th>비 고</th></tr>
<tr><td colspan="2">전체</td><td>37,742.0</td><td>259.67% 이하</td><td>건축계획 용적률<br>(259.67%)</td></tr>
<tr><td></td><td>제2종</td><td>27,250.3</td><td>246.25% 이하</td><td>건축계획 용적률<br>(246.25%)</td></tr>
<tr><td></td><td>제3종</td><td>10,491.7</td><td>294.53% 이하</td><td>건축계획 용적률<br>(294.53%)</td></tr>
</table>
</td></tr>
</table>

1) 계획용적률(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구분 | 인센티브(용적률) | | 적용여부 | 허용용적률 |
|---|---|---|---|---|
| 공공보행통로<br>(보차혼용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설정) | 10%p<br>이내 | 5% | 202.37%<br>2종-195.62%<br>3종-219.88% |
|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지형도면 고시) | 5%p | 5% | |
| 공개공지 |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 5%p<br>이내 | - | |
|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5%p | - | |
| 방재안전 |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 5%p | - | |
| 기반시설<br>등 정비 | 사업구역 주변 환경 정비 (도로, 공원, 통학로 등 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 5%p<br>이내 | - | |
| 지역특화 인센티브 |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 10%p<br>이내<br>(합산) | - | |
| 합 계 | 최대 20%p 이내 | | 10% | 최대 10%이내 |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1) 임대주택 건설 계획

| 구분 | 내용 |
|---|---|
| 계획 기준 |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br>※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br>•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4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 |

| 건립규모 | 세대수 | 전체 비율 | 임대주택 비율 |
|---|---|---|---|
| 합계 | 100 | 12.6% | 100.0% |
| 전용 39㎡ | 30 | 3.8% | 30.0% |
| 전용 46㎡ | 11 | 1.3% | 11.0% |
| 전용 59㎡ | 44 | 5.6% | 44.0% |
| 전용 74㎡ | 15 | 1.9% | 15.0% |

※ 전체 791세대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계획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6">내 용</th></tr>
<tr><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6">•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br>•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br>(건축계획)</td><td colspan="6">• 259.67%(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br>(정비계획용적률)</td><td colspan="6">• 219.25%</td></tr>
<tr><td rowspan="3">국민주택<br>규모 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6">• 259.67% - 219.25% = 40.42%</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6">• 40.42% × 0.5 = 20.21%<br>• 37,742.0㎡ × 20.21% = 7,627.58㎡</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6">• 7,627.58㎡ 이상</td></tr>
<tr><td rowspan="9">초과용적률<br>시설계획</td><td rowspan="6">분양 등 시설<br>확보계획</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 수</td><td>연면적</td><td colspan="2">비고</td></tr>
<tr><td>39.99㎡</td><td>61.38㎡</td><td>51</td><td>3,130.62㎡</td><td colspan="2">제2종 : 30세대<br>제3종 : 21세대</td></tr>
<tr><td>46.99㎡</td><td>70.00㎡</td><td>54</td><td>3,780.00㎡</td><td colspan="2">제2종 : 39세대<br>제3종 : 15세대</td></tr>
<tr><td>59.99㎡</td><td>85.70㎡</td><td>8</td><td>685.60㎡</td><td colspan="2">제2종</td></tr>
<tr><td>근린생활<br>시설</td><td>-</td><td>-</td><td>11.06㎡</td><td colspan="2">2종 : 3.52㎡<br>3종 : 7.54㎡</td></tr>
<tr><td colspan="2">소계</td><td>113</td><td>7,607.28㎡</td><td colspan="2">≤7,627.58㎡</td></tr>
<tr><td rowspan="2">국민주택규모<br>주택 확보계획<br>(건축심의에서</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 수</td><td>연면적</td><td colspan="2">비고</td></tr>
<tr><td>59.99㎡</td><td>85.70㎡</td><td>8</td><td>685.60㎡</td><td colspan="2">제3종</td></tr>
</table>

| 구 분 | | 내 용 | | | | |
|---|---|---|---|---|---|---|
| | 최종결정) | 74.99㎡ | 102.73㎡ | 6 | 616.37㎡ | 제2종 |
| | | 84.99㎡ | 113.32㎡ | 56 | 6,345.91㎡ | 제2종 : 41세대<br>제3종 : 15세대 |
| | | 소계 | | 70 | 7,647.88㎡ | ≥7,627.58㎡ |
| | 합계 | | | 183 | 15,255.16㎡ | - |

##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구분 | 계획내용 |
|---|---|
| 환경보전 |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br>•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복원 및 강화<br>•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포장의 증가로 생태면적률 37.60% 확보<br>• 폐기물 수거는 종로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 재난방지 | • 토목공사 완료 즉시 나대지를 안정화시키며, 조경식재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br>• 토목공사는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며, 강우 시 나출지에 임시 비닐막이나 부직포를 덮어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 |

## 10. 환경성 검토 결과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1.1 비오톱 |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및 도로등급, 개별비오톱 도로 및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 •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br>(녹지면적 17,398.65㎡ 계획) | - |
| 1.2 생태네트워크 |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 • 기존 시가지 상태로 숭인근린공원 등에 의한 녹지지역이 위치함 | •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br>• 녹지평가지표 I등급으로 계획됨 | - |
| 1.3 동식물상 | 동식물상 보호 | ○ | • 현존식생은 시가화지역, 도로로 조사됨<br>•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으로 조사됨 | •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서식환경개선<br>•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생물서식공간 마련 | - |
| 1.4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 보전 | ○ | • 대상지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 | - |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2.1 토지이용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br>• 노후주택지역으로 주변 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수 위치 |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br>-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오픈스페이스 확보<br>• 공동주택, 근생시설, 부대복리시설 | - |
| 2.2 토양 | 토양오염 최소화 | ○ | •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기준 만족<br>•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br>• 공사장비를 통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br>• 토양오염발생시 신고 및 적법처리계획 수립 | - |
| 2.3 지형·지질 |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 • 평균표고 46.56m<br>• 평균경사 11.74°<br>• 불투수포장 90% 이상 | • 부지계획고는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절·성토고를 최소화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계획임 | - |
| 3.1 물순환, 수리 · 수문 | 생태면적률 30% | ○ | • 생태면적율 44.17% 계획 | •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을 적용하여 생태면적률 35%이상 계획<br>• 저영향개발(LID) 적용 검토 | - |
| 3.2 수질 |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 • 수질현황(BOD기준 Ia등급(매우좋음)~Ib등급(좋음))<br>•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br>• 운영시 계획세대에 의한 오수발생<br>•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지역 '한강H' 유역에 해당 | • 공사시 토사유출저감대책 수립 (침사지, 유출지하수저감대책)<br>• 운영시 우오수, 상수대책 수립 (저영향개발계획 등) | - |
| 4.1 바람 | 바람길 확보 | ○ | • 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와 상업지가 위치함 | •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 - |
| 4.2 열 | 열환경 환경 최소화 | ○ | • 열환경 공간 유형 조사<br>•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시가지, 녹지로 분류됨 | •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 - |
| 4.3 대기질 · 미세먼지 | 대기오염 최소화 | ○ | • 모든 항목 대기환경기준을 하회<br>• 공사시 대기질 영향 예상 |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살수, 가설방진망 등) | - |
| 4.4 악취 | 악취공해 해결 | X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4.5 온실가스 | 온실가스 저감 | ○ | • CH4를 제외한 온실가스 매년 증가추세<br>• 공사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 등)<br>•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물 수립계획 | - |
| 4.6 에너지 |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 | • 대상지는 황함유량 0.1%이하의 경유 및 황함유량 0.3%이하의 중유 사용지역에 해당함<br>• 향후 에너지사용량 증가 | • LNG사용, 온실가스배출 최소화<br>•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 - |
| 5.1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 • 공사시 생활·건설폐기물 및 분뇨 발생 예상<br>• 운영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예상 | •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분뇨발생 저감대책 수립 | - |
| 5.2 소음진동 | 소음진동 최소화 | ○ | • 현재 교통소음 영향 지역<br>• 공사시 소음영향이 예상<br>•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소음영향 예상 | • 공사시 소음저감방안 수립(저소음장비, 가설방음판넬, 소음자동 측정망 등) | - |
| 5.3 경관 | Skyline 보전 | ○ | • 도심지 경관이며 근거리에 자연녹지경관(숭인근린공원)이 위치함<br>• 건축 밀집지역으로 건물상부 조망 | • 건축물 색채 및 식재계획 수립<br>•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 |
| 5.4 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 • 종로구 관내에 공원,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 위치<br>• 대상지 주변 숭인근린공원, 자주바위어린이공원등이 위치함 | • 대상지 내부에 오픈스페이스 및 단지내 조경녹지 계획으로 주민 휴식공간 마련 | - |
| 5.5 일조 | 일조 침해 최소화 | ○ | • 저층 및 고층 건축물이 혼재된 지역<br>• 대상지 북측 주거지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건축물 적정이격거리를 설정한 위치선정<br>• 건축물 주변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br>• 관련법을 준수한 건축계획 수립 | - |
| 5.6 보행친화 공간 | 보행자 보호계획 수립 | ○ | • 대상지 서측으로 지봉로(폭원 20m, 4~5차로)가 주 접근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 보행동선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br>•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 |
| 5.7 전파장해 | 전파장해 영향 저감 | X | • 해당사항 없음 | - | - |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6.1 인구<br>(6.2 주거 포함) | 인구 고려한 계획 | ○ | • 인구증가율은 감소, 고령자수 증가 추세<br>• 공동주택 입지로 인해 종로구의 인구수는 소폭 증가 예상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개발로 인해 생활권 접근성 향상 및 상주인구 증가 예측 | - |
| 6.3 산업 | 산업 고려한 계획 | X | • 해당사항 없음 | - | - |

##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 |
|---|---|---|---|---|---|---|
| | | | | 현 황 | 증 감 | 계 획 |
| 신규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br>(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정비구역지정<br>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숭인동56일대<br>주택정비형 재개발<br>정비사업조합 | 709세대 | 증) 265세대 | 974세대 |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안전 및 범죄예방 | • 단지 내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은 주동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등 환경설계를 통한 자연감시 시스템(휴먼시큐리티)을 구축<br>• 단지/아파트 출입문에 보안카메라 및 잠금장치 설치, 지하주차장 내 밝은 조명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비인가자의 진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 통제<br>•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 유도를 통해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위험 감소 및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br>• 산책로 및 보행가로변에는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 | -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신설 | 숭인동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6-4번지 일대 | - | 증) 42,402.3 | 42,402.3 | - |

2.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면적(㎡) | | | 비율(%) | 비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 계 | 42,402.3 | - | 42,402.3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7,314.9 | 감) 16,638.3 | 676.6 | 1.6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87.4 | 증) 6,146.6 | 31,234.0 | 73.7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0,491.7 | 10,491.7 | 24.7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위 치 | 용도지역 | | 면적(㎡) | 변경 사유 |
|---|---|---|---|---|
| | 기정 | 변경 | | |
| 숭인동 56일대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676.6 | •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br>• 지봉로변 가로활성화 및 창신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6,606.0 | |
|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32.3 | |
| | | 소계 | 17,314.9 |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4,628.0 | |
|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10,459.4 | |
| | | 소계 | 25,087.4 | |
| | 계 | | 42,402.3 |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사용형태 | 연장(m) | 위치 |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기점 | 종점 | | | |
| 기정 | 대로 | 3 | 195 | 20~45 | 주간선 | 일반 | 1,680 (253) | 숭인동 83-5 | 성북구 보문동1가 | - | - | 지봉로 |
| 변경 | 대로 | 3 | 195 | 20~45 | 주간선 | 일반 | 1,680 (253) | 숭인동 83-5 | 성북구 보문동1가 | - | - | 지봉로 |
| 신설 | 중로 | 2 | D | 15~19 | 국지 | 일반 | 117 | 숭인동 53-29 | 숭인동 57-10 | - | - | - |
| 폐지 | 소로 | 3 | C | 3~5 | 국지 | 일반 | 99 | 숭인동 16-1 | 숭인동 7-41 | - | 건고 432 ('63.07. 01.) | - |
| 폐지 | 소로 | 3 | D | 4 | 국지 | 일반 | 24 | 숭인동 55-17 | 숭인동 53-23 | - | - | - |
| 기정 | 소로 | 3 | E | 6~7 | 국지 | 일반 | 59 | 숭인동 24-1 | 숭인동 24-1 | - | - | - |
| 변경 | 소로 | 3 | E | 6~7 | 국지 | 일반 | 59 | 숭인동 24-1 | 숭인동 24-1 | - | - | - |
| 신설 | 소로 | 3 | G | 6 | 국지 | 일반 | 75 | 숭인동 57-74 | 숭인동 57-44 | - | - | - |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연장 내 ( )는 구역 내 해당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도로명 |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대로 3-195 | 대로 3-195 | • 도로 선형 변경<br>- B: 20~45m / L: 1,680m | • 정비구역 내 원활한 차량 진출입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도로 선형 조정 |
| - | 중로 2-D | • 도로 신설<br>- B: 15~19m / L: 117m | • 정비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 소로 3-C | - | • 도로 폐지 | •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
| 소로 3-D | - | • 도로 폐지 | •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
| 소로 3-E | 소로 3-E | • 도로 선형 변경<br>- B: 6~7m / L: 59m | • 교통안전을 위한 우회전 도류화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
| - | 소로 3-G | • 도로 신설<br>- B: 6m / L: 75m | • 정비구역 인접 필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사용형태 | 연장(m) | 위치 |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기점 | 종점 | | | |
| 신설 | 소로 | 3 | H | 6 | 특수 | 보행자 전용 | 151.8 (14.5) | 승인동 53-5 | 창신동 산6-41 | - | - | 보행자 전용도로. 151.8m 중 대로3-195호선 중복결정 (L=14.5m), |
| 신설 | 소로 | 3 | K | 6 | 특수 | 보행자 전용 | 45.5 | 승인동 57-57 | 승인동 58-587 | - | - | 승인근린공원 중복결정 (L=30.2m), 입체적 결정 (L=15.3m) |

※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하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설치시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엘리베이터, 계단 및 연결 통로 등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여 설치한 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지봉로 상부에 조성되는 입체보행로(소로3-H) 구간에 대하여 승인동56일대에서 先 사업추진시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이후 창신동23일대 사업추진시 일체 조성함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도로명 |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소로 3-H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br>- B: 6m /<br>L: 151.8m (14.5m) | • 창신동과 승인동간 동~서의 보행네트워크 연결, 창신공원 및 승인공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 - | 소로 3-K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br>- B: 6m / L: 45.5m | • 승인공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및 입체적결정) |

3) 철도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 | 연장(km)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 | | |
| 기정 | - | 철도 | 고속철도 (6호선) | 응암역 | 신내역 | - | 36.4 | - | - | - |

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구분 | 면 적(㎡)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숭인동 9-1일대 | 층수(층) | - | 지하1층 ~ 지하2층 | 지하1층 ~ 지하2층 | - | 건축물 기부채납 (연면적 : 4,500.0㎡) |
| | | | | | 수평투영면적(㎡) | - | 증) 4,500.0 | 4,500.0 | | |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공동주택용지 내 지분면적 포함)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 | 주차장 | • 주차장(건축물 기부채납) 신설<br>- 층수 : 지하1층~지하2층<br>- 수평투영면적 : 4,500.0㎡<br>- 연면적 : 4,500.0㎡ | •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내 지봉로변으로 주차장 설치를 통해 토지 효율성 제고 및 이용 편의성 향상 |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2 | 숭인근린공원 | 근린공원 | 숭인동 59번지 일대 | 53,469.0 | - | 53,469.0 (182.8) | '04.9.10 | 숭인공원 |

※ 면적 ( )는 구역 내 해당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 구 분 | | 면 적(㎡)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 | 공공청사 | 교통센터 | 숭인동 53-29 | 숭인동 5-4 일대 | 용도 | 공공청사 | 82.9 | 증) 217.1 | 300.0 | - | 건축물 기부채납 (600㎡) |
| | | | | | | 연면적 | 600.0㎡ | | | | | |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
| - | 공공청사 | • 공공청사 위치 변경<br>- 숭인동 53-29 → 5-4일대<br>• 공공청사 면적 변경<br>- 82.9㎡ → 300.0㎡ (증 217.1㎡)<br>• 공공청사(건축물 기부채납) 신설<br>- 연면적 : 600.0㎡ | • 토지이용 효율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해 창신역 인근으로 공공청사(교통센터) 위치 이전 및 면적 증가<br>• 공공청사(경찰서) 건축물 신축 및 기부채납 |

라. 사회복지시설

1)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구분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숭인동 9-1일대 | 층수(층) | - | 지하1층 ~ 지상2층 | 지하1층 ~ 지상2층 | - | 건축물 기부채납 (연면적 : 3,128.0㎡) |
| | | | | | 수평투영면적 (㎡) | - | 증) 2,128.0 | 2,128.0 | | |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공동주택용지 내 지분면적 포함)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건축물 기부채납) 신설<br>- 층수 : 지하1층~지하2층<br>- 수평투영면적 : 2,128.0㎡<br>- 연면적 : 3,128.0㎡ | •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내 지봉로변으로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신축을 통해 토지 효율성 제고 및 이용 편의성 향상 |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구 분 | 가 구 | 획 지 | | 면 적(㎡) | 위 치 | 비고 |
|---|---|---|---|---|---|---|
| 신설 |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 계 | | 38,099.9 | 숭인동 56-4 일대 | - |
| | | 전체 | | 37,742.0 | 숭인동 56-4 일대 | |
| | | | 제2종 | 27,250.3 | 숭인동 56-4 일대 | |
| | | | 제3종 | 10,491.7 | 숭인동 7-13 일대 | |
| | | 종교용지 | | 357.9 | 숭인동 24-10 일대 | |

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구 분 | | 획 지 | 용 도 | 비고 |
|---|---|---|---|---|
| 신설 | 허용용도 | 전체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br>•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br>•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br>•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 |
| | | 종교용지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br>•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 구 분 | 획 지 | | 건 폐 율 | 비고 |
|---|---|---|---|---|
| 신설 | 전체 | | 57.22% 이하 | - |
| | | 제2종 | 6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분 |
| | | 제3종 | 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부분 |
| | 종교용지 | | 관련 법규에 의함 | 종교부지 |

나) 용적률 계획

| 구분 | 획지 | 용 적 률 | | | | 비고 |
|---|---|---|---|---|---|---|
|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
| 신설 | 전체 | 192.37% | 202.37% | 219.25% 이하 | 259.67% 이하 | 건축계획 용적률은 건축심의 시 법정상한용적률 이하 범위에서 결정 |
| | 제2종 | 185.62% | 195.62% | 207.63% 이하 | 246.25% 이하 | 건축계획 용적률 246.25% |
| | 제3종 | 209.88% | 219.88% | 249.43% 이하 | 294.53% 이하 | 건축계획 용적률 294.53% |
| | 종교용지 | 관련 법규에 의함 | | | | 종교부지 |

다) 높이 계획

| 구 분 | 지역 | 높이 기준 | 비고 |
|---|---|---|---|
| 신설 | 전체 | 해발고도 125m이하(26층 이하) 범위에서 영역별 높이 계획 준수 | 낙산 최고높이 이하 |

다. 건축물 배치 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분 | 적용 위치 | 계획내용 |
|---|---|---|
| 건축한계선 | 전체 | • 대지경계선 및 공공보행통로로부터 3m 이상 |
| 벽면한계선 | | • 건축한계선에서 3m 이상 (건축한계선을 활용하여 보행공간 조성구간에 적용)<br>• 공공보행통로로부터 3m 이상 (1층 필로티의 경우 해당없음) |

2)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 구분 | | 적용위치 | 계획내용 |
|---|---|---|---|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 지봉로변 |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서 가로의 1/2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도로 레벨 이상)에 가로활성화 시설을 연도형으로 조성<br>•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br>-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br>-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라. 경관계획(배치 · 형태 포함)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 구분 | 적용위치 | 계획내용 |
|---|---|---|
| 건축물의 배치 | 전체 | • 건폐율을 고려한 대상지 내 적절한 통풍, 채광, 개방감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br>• 간선도로 변은 탑상형 주동 배치 등 적정 배치를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계획 |
| 건물 진출입구 | 전체 | • 보행약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단차가 발생하는 지점에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계획 |

2) 건축물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구분 | 적용위치 | 계획내용 |
|---|---|---|
| 건축물의 외부 형태 | 전체 | • 스텝형, 주상복합형 등 다양한 주동조합을 통해 지역의 상징성이 담긴 입체적인 단지 디자인 적용<br>• 단지 외곽 개방 및 담장 미설치 등 주변 지역과의 소통을 유도하는 시각적으로 열린단지 조성 |
| 재료 및 색채 | 전체 |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 |

3) 경관에 관한 계획

| 구분 | 적용지역 | 계획내용 |
|---|---|---|
| 조명계획 | 전체 | •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조명 설치 |
| 스카이라인 | 전체 | • 상업가로변 및 단지 중심은 높이고 단지 인근, 문화재 주변 등은 최대한 낮게 계획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 저층배치 구간 | 제2종일반 주거지역 부분 | • 청룡사 인근 저층배치구간 설정 |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구분 | 적용위치 | 계획 내용 | 비고 |
|---|---|---|---|
| 공공보행통로 | 전체 | • 공공보행통로(폭원 6m 이상) 계획<br>- 지봉로~대상지~숭인근린공원(연결통로) 연결 | - |

2) 환경관리 계획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1.1 비오톱 |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및 도로등급, 개별비오톱 도로 및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 •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녹지면적 17,398.65㎡ 계획) | - |
| 1.2 생태네트워크 |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 • 기존 시가지 상태로 숭인근린공원 등에 의한 녹지지역이 위치함 | •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br>• 녹지평가지표 I등급으로 계획됨 | - |
| 1.3 동·식물상 | 동·식물상 보호 | ○ | • 현존식생은 시가화지역, 도로로 조사됨<br>•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으로 조사됨 | •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서식환경개선<br>•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생물서식공간 마련 | - |
| 1.4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 보전 | ○ | • 대상지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 | - |
| 2.1 토지이용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br>• 노후주택지역으로 주변 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수 위치 |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br>-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오픈스페이스 확보<br>• 공동주택, 근생시설, 부대복리시설 | - |
| 2.2 토양 | 토양오염 최소화 | ○ | •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기준 만족<br>•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br>• 공사장비를 통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br>• 토양오염발생시 신고 및 적법처리계획 수립 | - |
| 2.3 지형·지질 |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 • 평균표고 46.56m<br>• 평균경사 11.74°<br>• 불투수포장 90% 이상 | • 부지계획고는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절·성토고를 최소화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계획임 | - |
| 3.1 물순환, 수리 · 수문 | 생태면적률 30% | ○ | • 생태면적율 44.17% 계획 | •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을 적용하여 생태면적률 35%이상 계획<br>• 저영향개발(LID) 적용 검토 | - |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3.2 수질 |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 • 수질현황(BOD기준 Ia등급(매우좋음)~Ib등급(좋음))<br>•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br>• 운영시 계획세대에 의한 오수발생<br>•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지역 '한강H' 유역에 해당 | • 공사시 토사유출저감대책 수립 (침사지, 유출지하수저감대책)<br>• 운영시 우오수, 상수대책 수립 (저영향개발계획 등) | - |
| 4.1 바람 | 바람길 확보 | ○ | • 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와 상업지가 위치함 | •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 - |
| 4.2 열 | 열환경 환경 최소화 | ○ | • 열환경 공간 유형 조사<br>•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시가지, 녹지로 분류됨 | •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 - |
| 4.3 대기질 · 미세먼지 | 대기오염 최소화 | ○ | • 모든 항목 대기환경기준을 하회<br>• 공사시 대기질 영향 예상 |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살수, 가설방진망 등) | - |
| 4.4 악취 | 악취공해 해결 | X | • 해당사항 없음 | - | - |
| 4.5 온실가스 | 온실가스 저감 | ○ | • CH4를 제외한 온실가스 매년 증가추세<br>• 공사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 등)<br>•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물 수립계획 | - |
| 4.6 에너지 |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 | • 대상지는 황함유량 0.1%이하의 경유 및 황함유량 0.3%이하의 중유 사용지역에 해당함<br>• 향후 에너지사용량 증가 | • LNG사용, 온실가스배출 최소화<br>•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 - |
| 5.1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 • 공사시 생활·건설폐기물 및 분뇨 발생 예상<br>• 운영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예상 | •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분뇨발생 저감대책 수립 | - |
| 5.2 소음·진동 | 소음·진동 최소화 | ○ | • 현재 교통소음 영향 지역<br>• 공사시 소음영향이 예상<br>•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소음영향 예상 | • 공사시 소음저감방안 수립(저소음장비, 가설방음판넬, 소음자동 측정망 등) | - |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5.3 경관 | Skyline 보전 | ○ | • 도심지 경관이며 근거리에 자연녹지경관(숭인근린공원)이 위치함<br>• 건축 밀집지역으로 건물상부 조망 | • 건축물 색채 및 식재계획 수립<br>•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 |
| 5.4 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 • 종로구 관내에 공원,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 위치<br>• 대상지 주변 숭인근린공원, 자주바위어린이공원등이 위치함 | • 대상지 내부에 오픈스페이스 및 단지내 조경녹지 계획으로 주민 휴식공간 마련 | - |
| 5.5 일조 | 일조 침해 최소화 | ○ | • 저층 및 고층 건축물이 혼재된 지역<br>• 대상지 북측 주거지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건축물 적정이격거리를 설정한 위치선정<br>• 건축물 주변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br>• 관련법을 준수한 건축계획 수립 | - |
| 5.6 보행친화 공간 | 보행자 보호계획 수립 | ○ | • 대상지 서측으로 지봉로(폭원 20m, 4~5차로)가 주 접근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 보행동선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br>•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 |
| 5.7 전파장해 | 전파장해 영향 저감 | X | • 해당사항 없음 | - | - |
| 6.1 인구 (6.2 주거 포함) | 인구 고려한 계획 | ○ | • 인구증가율은 감소, 고령자수 증가 추세<br>• 공동주택 입지로 인해 종로구의 인구수는 소폭 증가 예상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개발로 인해 생활권 접근성 향상 및 상주인구 증가 예측 | - |
| 6.3 산업 | 산업 고려한 계획 | X | • 해당사항 없음 | - | - |

3)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주택의 규모별 비율(법적상한용적률 증가분 제외)

| 구분 | 내용 |
|---|---|
| 계획 기준 |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이상<br>※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br>•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4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 |

| 건립규모 | 세대수 | 전체 비율 | 임대주택 비율 |
|---|---|---|---|
| 합계 | 100 | 12.6% | 100.0% |
| 전용 39㎡ | 30 | 3.8% | 30.0% |
| 전용 46㎡ | 11 | 1.3% | 11.0% |
| 전용 59㎡ | 44 | 5.6% | 44.0% |
| 전용 74㎡ | 15 | 1.9% | 15.0% |

※ 전체 791세대

Ⅲ. 2024년 제 7차( ‘24.07.31)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연번 | 협의의견 | 반영계획 | 비 고 |
|---|---|---|---|
| 1 | • 보행자 전용도로(소로 3-H, 3-K)의 폭원은 6m로 수정 | • 보행자 전용도로(소로 3-H호선, 소로 3-K호선)은 기존 3m에서 6m로 확폭하였음. | - |
| 2 | • 지봉로 상부 입체보행교계획은 대상지 및 창신23 두 구역의 사업추진 시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 | • 숭인동56 일대에서 선 사업 추진시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이후 창신동23일대에서 사업추진시 일체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입체적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에 명기하였음. | - |
| 3 | • 동측 공원 상부로 연계되는 입체보행로계획은 향후 유지관리 담보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소로 3-K) 결정 범위 내 전용 엘리베이터를 포함 검토할 것.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결정 범위 내 엘리베이터, 계단 및 연결통로 등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여 계획하였으며 조성 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 | - |

| 연번 | 협의의견 | 반영계획 | 비 고 |
|---|---|---|---|
| 4 | • 상한용적률계획 관련 주관부서에서 정비계획 결정고시 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선방안' 등 관련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인할 것. | • 숭인동 56번지 일대는 2023. 11. 10.~ 12. 11. 정비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한 구역으로 2024. 10. 18. 전부 개정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선방안' 경과규정(제4장 제1절)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획함. | - |
| 5 | • 벽면한계선 및 건축한계선계획은 구역 전체 계획 필요성(동측, 남측 경계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융통성 있게 조정할 것. | • 도로변과 공공보행통로 주변의 벽면한계선 및 건축한계선은 유지하고 숭인근린공원 연접부 등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구간의 벽면한계선을 조정하여 계획함 | - |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정비계획 결정도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8), 종로구 도시개발과(☎02-2148-2683)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도면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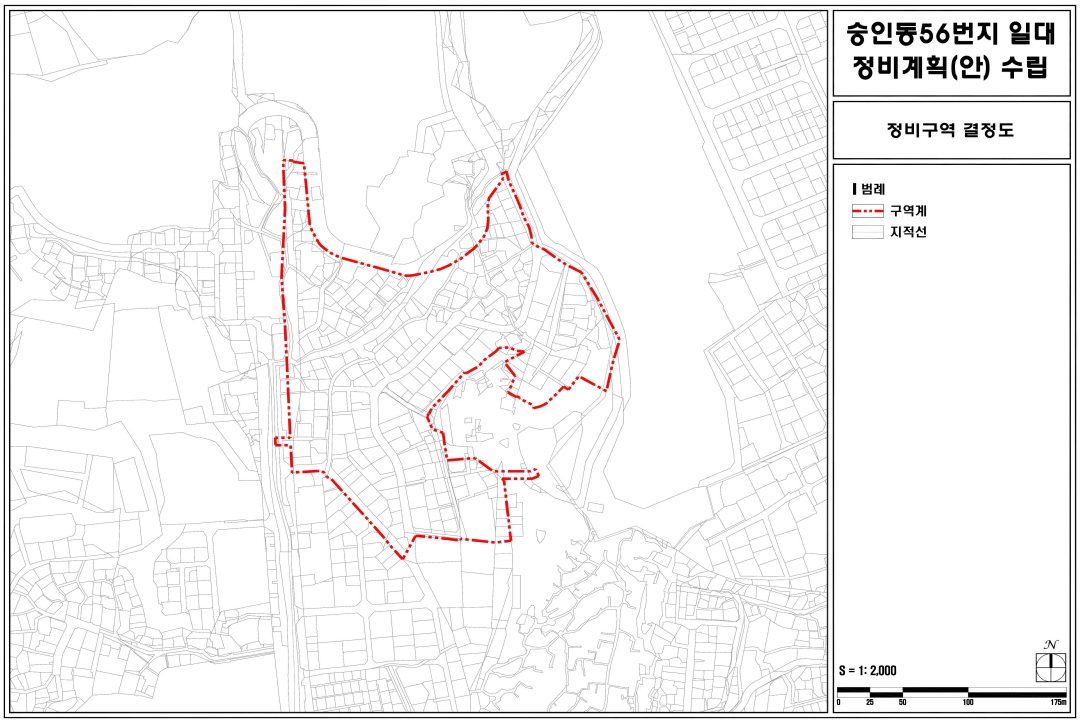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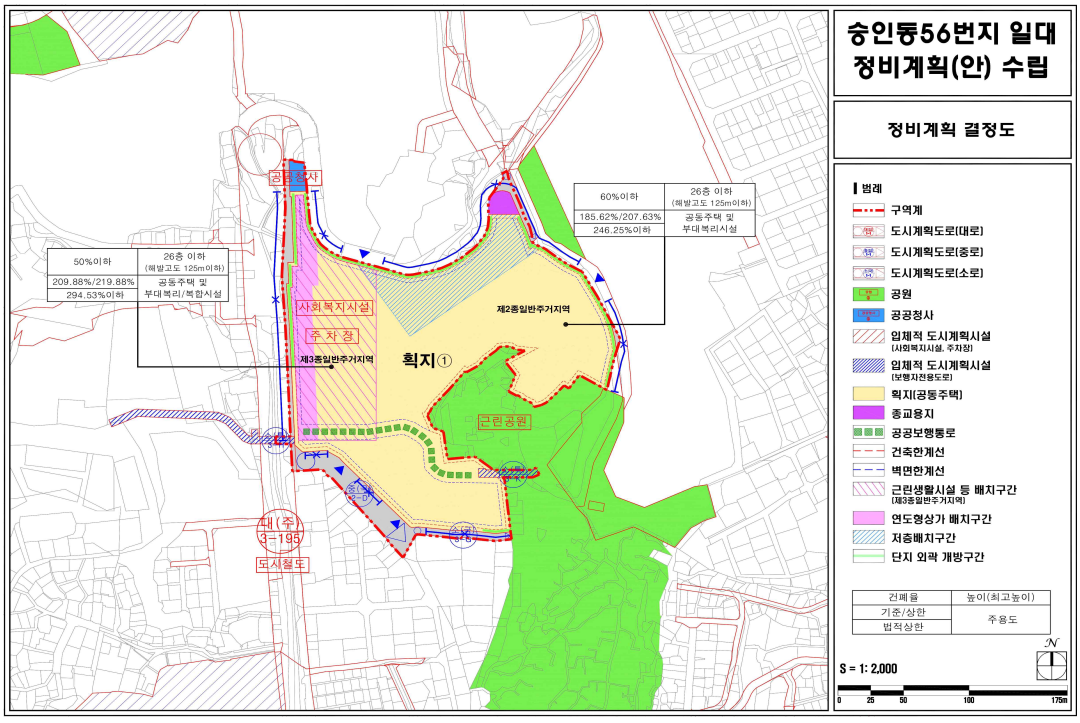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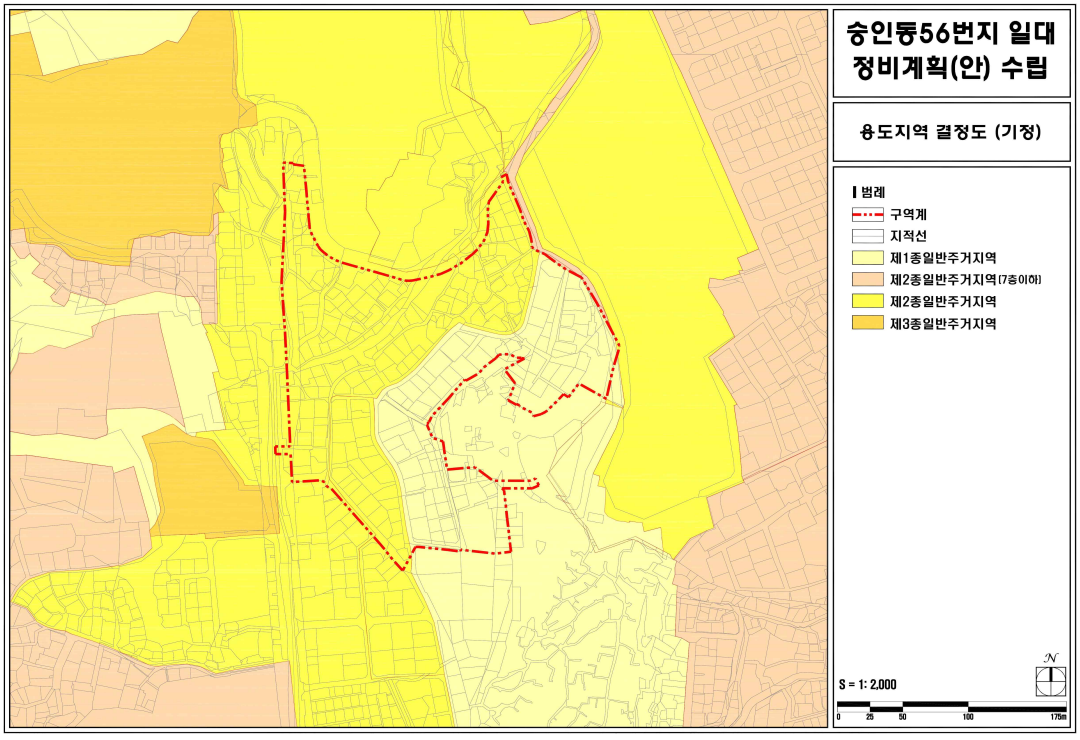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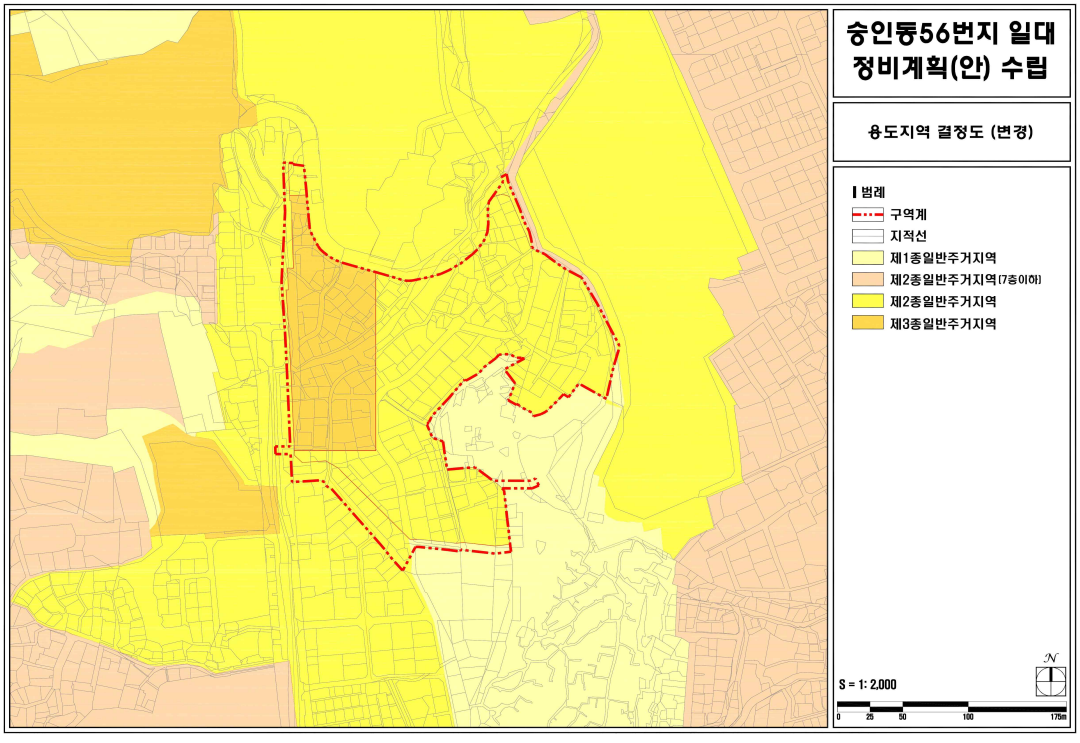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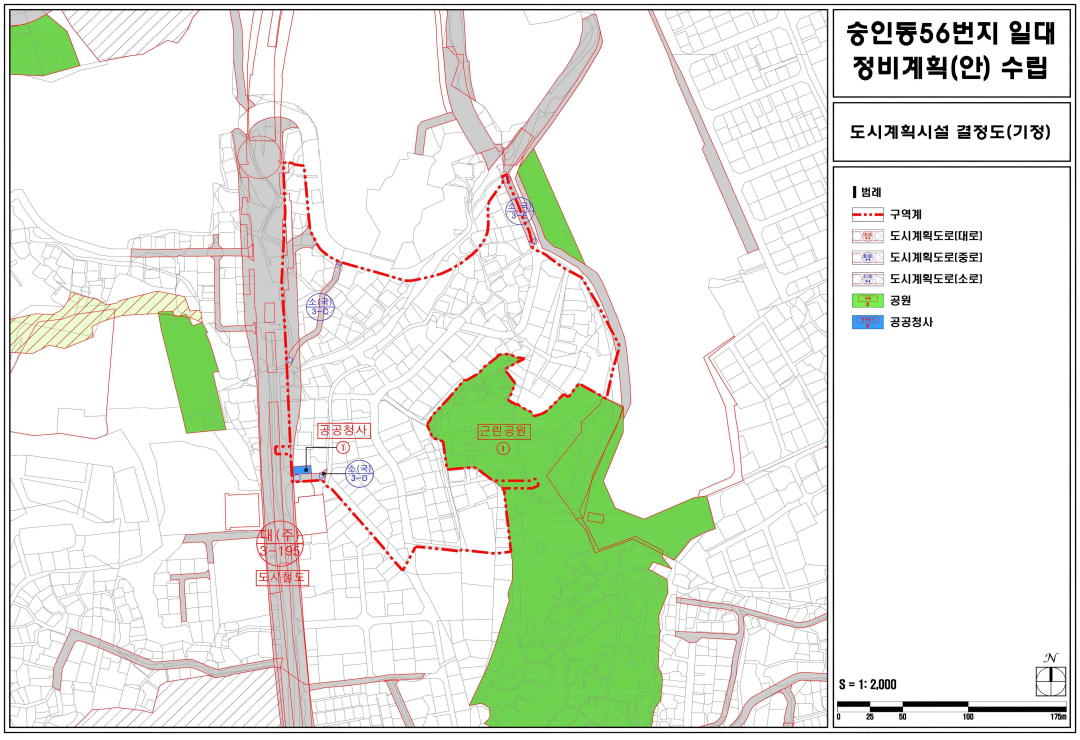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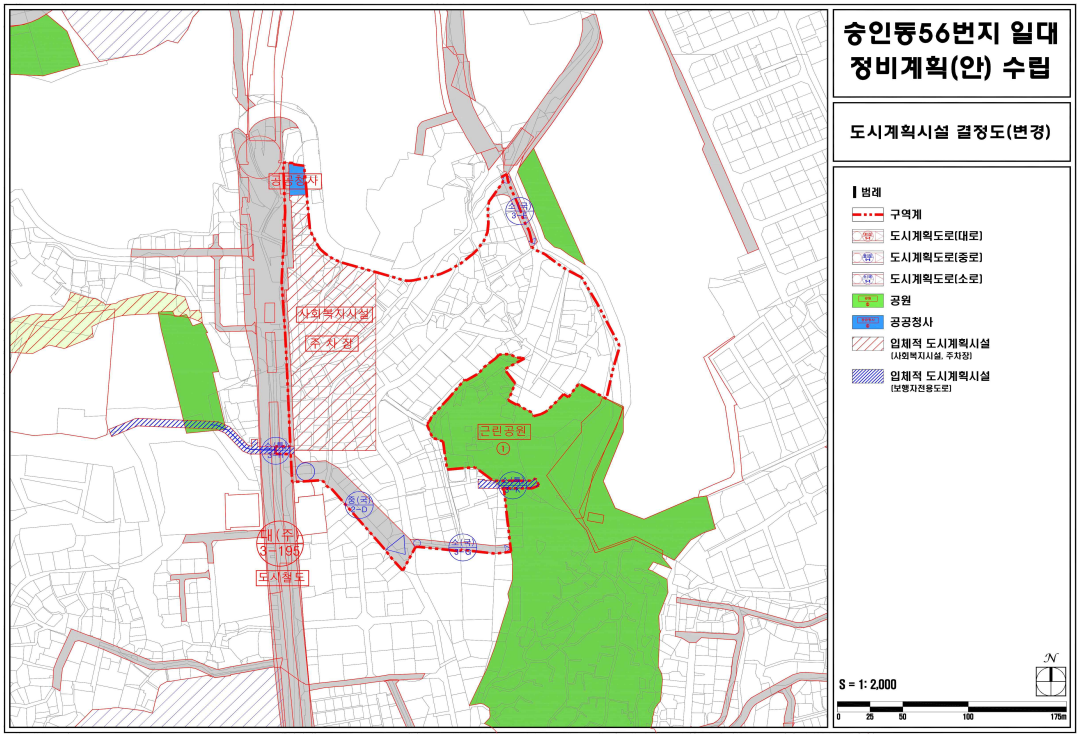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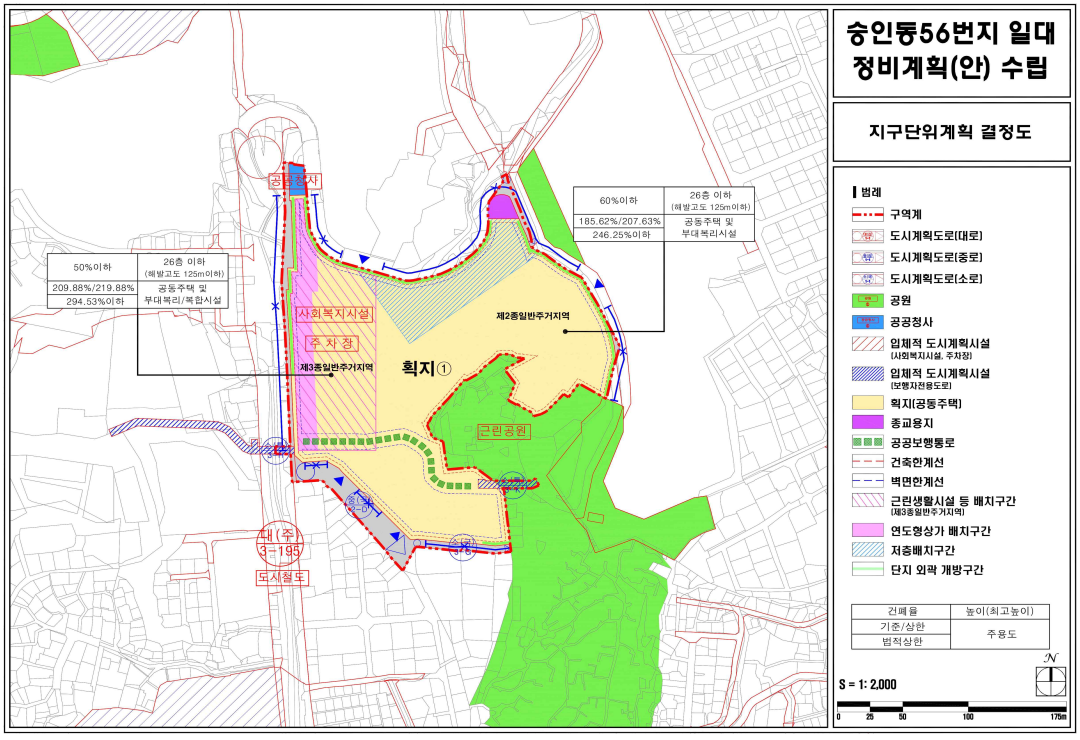
승인동56번지 일대
정비계획(안) 수립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범례
구역계
도시계획도로(대로)
도시계획도로(중로)
도시계획도로(소로)
공원
공공청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보행자전용도로)
획지(공동주택)
종교용지
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근린생활시설 등 배치구간 (제3종일반주거지역)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저층배치구간
단지 외곽 개방구간
건폐율
높이(최고높이)
기준/상한
주용도
법적상한
S = 1: 2,000
0 25 50 100 175m
N
획지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사회복지시설
주 차 장
근린공원
공원
공공청사
60%이하
185.62%/207.63%
246.25%이하
26층 이하
(해발고도 125m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09.88%/219.88%
294.53%이하
26층 이하
(해발고도 125m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폭 8m
폭 6m
폭 8m
폭 6m
폭 8m
폭 6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3호

#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이하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7.31.)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신설 |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 | - | 증) 64,822.4 | 64,822.4 | - |

2.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 | 면적(㎡) | | | 비율(%)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 계 | | | - | 증) 64,822.4 | 64,822.4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계 | | - | 증) 17,577.6 | 17,577.6 | 27.1 | - |
| | 도로 | | - | 증) 7,535.7 | 7,535.7 | 11.6 | - |
| | 공원 | | - | 증) 10,041.9 | 10,041.9 | 15.5 | - |
|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 - | 증) (6,000) | (6,000) | - | 공원 지하부 중복결정 |
| 획지 | 소계 | | - | 증) 47,244.8 | 47,244.8 | 72.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 획지1 | - | 증) 41,236.9 | 41,236.9 | | |
| | | 획지2 | - | 증) 6,007.9 | 6,007.9 | | |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면적(㎡) | | | 비율(%) | 비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계 | 64,822.4 | - | 64,822.4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617.9 | 감) 5,589.0 | 13,028.9 | 20.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33,974.8 | 감) 31,251.2 | 2,723.6 | 4.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281.2 | 증) 37,096.7 | 48,377.9 | 74.6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48.5 | 감) 256.5 | 692.0 | 1.1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위 치 | 용도지역 | | 면적(㎡) | 변경 사유 |
|---|---|---|---|---|
| | 기정 | 변경 | | |
| 창신동 23-2번지 일대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2,762.3 | •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5,855.6 | |
| | | 소계 | 18,617.9 |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 2,723.6 | |
| |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66.6 | |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30,984.6 | |
| | | 소계 | 33,974.8 |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1,281.2 | |
| | | 소계 | 11,281.2 | |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56.5 | |
|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692.0 | |
| | | 소계 | 948.5 | |
| | 계 | | 64,822.4 |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 구분 | 항목 | | | 금액(천원) |
|---|---|---|---|---|
| 수입 | 소계 | | | 913,377,631 |
| | 분양주택 | 조합원분양 | | 234,650,600 |
| | | 일반분양 | | 617,570,900 |
| | 임대주택 | 재개발임대 | | 60,181,460 |
| | | 국민주택규모임대 | | 589,196 |
| | 기타시설 | 근린생활시설 | 일반분양 | 8,082,500 |
| | | | 조합원분양 | - |
| | | | 매출부가세 | -7,697,025 |
| 지출 | 소계 | | | 702,670,897 |
| | 공사비 | | | 459,349,024 |
| | 제사업경비 | | | 243,321,873 |
| 종전자산 추정액 | | | | 198,100,000 |
| 추정비례율 | 106.36% = [(총수입(913,377,631천원) - 총지출(702,670,897천원)] / 종전자산 추정액(198,100,000천원)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 공사비(천원) / 84형 일반분양가 (천원/3.3㎡) | 8,000 | 8,500 | 9,000 (기준) | 9,500 | 10,000 |
|---|---|---|---|---|---|
| 36,900 | 178.62% | 165.55% | 152.47% | 139.40% | 126.32% |
| 35,200 | 155.57% | 142.49% | 129.42% | 116.34% | 103.27% |
| 33,500 (기준) | 132.51% | 119.44% | 106.36% | 93.29% | 80.21% |
| 31,800 | 109.46% | 96.39% | 83.31% | 70.24% | 57.16% |
| 30,200 | 86.41% | 73.33% | 60.26% | 47.18% | 34.11% |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사용형태 | 연장 (m) | 위치 |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기점 | 종점 | | | |
| 기정 | 대로 | 3 | 195 | 20~45 | 주간선 | 일반 | 1,680 (253) | 숭인동 83-5 | 성북구 보문동1가 | - | - | - |
| 변경 | 대로 | 3 | 195 | 20~45 | 주간선 | 일반 | 1,680 (253) | 숭인동 83-5 | 성북구 보문동1가 | - | - | 지봉로 소로3-H호선 중복결정 (L=12.0m) |
| 신설 | 중로 | 2 | A | 12~18 | 국지 | 일반 | 221 | 창신동 17-42 | 창신동 6-41 | - | - | 소로3-H호선 중복결정 (L=53.4m) 소로3-L호선 중복결정 (L=17.5m) |
| 신설 | 중로 | 2 | B | 15 | 국지 | 일반 | 140 | 창신동 23-216 | 창신동 23-393 | - | - | - |
| 신설 | 중로 | 3 | C | 12 | 국지 | 일반 | 44 | 창신동 23-393 | 창신동 23-386 | - | - | - |
| 기정 | 소로 | 3 | A | 4 | 국지 | 일반 | 63 (33) | 창신동 23-871 | 창신동 23-91 | - | - | - |
| 변경 | 소로 | 3 | A | 4 | 국지 | 일반 | 30 | 창신동 23-871 | 창신동 23-81 | - | - | - |
| 폐지 | 소로 | 3 | B | 6 | 국지 | 일반 | 6 | 창신동 128-86 | 창신동 23-778 | - | - | - |
| 신설 | 소로 | 3 | F | 6~15 | 국지 | 일반 | 130 | 창신동 17-12 | 창신동 23-875 | - | - | 소로3-H호선 중복결정 (L=71.9m), 소로3-J호선 중복결정 (L=3.8m) |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연장 내 ( )는 구역 내 부분에 해당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도로명 |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대로 3-195 | 대로 3-195 | • 소로3-H호선과 중복결정<br>- L=12.0m | • 창신동~숭인동간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 - | 중로 2-A | • 도로 신설<br>- B: 12~18m / L: 221m | • 정비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 및 공원연결로 조성을 위한 도로 신설<br>• 창신동~숭인동간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 - | 중로 2-B | • 도로 신설<br>- B: 15m / L: 140m | • 인접 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통한 도로 신설 |
| - | 중로 3-C | • 도로 신설<br>- B: 12m / L: 44m | • 인접 도로 확폭 및 정비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 소로 3-A | 소로 3-A | • 도로 연장 감소<br>- L: 63m → 30m | •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연장 감소 |
| 소로 3-B | - | • 도로 폐지 | •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
| - | 소로 3-F | • 도로 신설<br>- B: 6~15m / L: 130m | • 정비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 및 창신기동대 연결로 조성을 위한 도로 신설<br>• 창신동~숭인동간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사용형태 | 연장(m) | 위치 |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기점 | 종점 | | | |
| 신설 | 소로 | 3 | H | 6 | 특수 | 일반 | 151.8<br>(137.3) | 숭인동<br>53-5 | 창신동<br>산6-41 | - | - | 보행자 전용도로 137.3m 중<br>대로3-195호선 중복결정<br>(L=12.0m),<br>중로2-A호선 중복결정<br>(L=53.4m),<br>소로3-F호선 중복결정<br>(L=71.9m),<br>수도공급시설 중복결정<br>(A=89.7㎡) |
| 신설 | 소로 | 3 | I | 6 | 특수 | 일반 | 36.4 | 창신동<br>23-315 | 창신동<br>6-13 | - | - | 보행자 전용도로.<br>창신공원 중복결정<br>(L=28.2m),<br>입체적 결정 (L=8.2m) |
| 신설 | 소로 | 3 | J | 6 | 특수 | 일반 | 13.9 | 창신동<br>산6-25 | 창신동<br>산6-25 | - | - | 보행자 전용도로.<br>소로3-F호선 중복결정<br>(L=3.8m),<br>입체적 결정 (L=10.1m) |
| 신설 | 소로 | 3 | L | 6 | 특수 | 일반 | 25.5 | 창신동<br>산6-41 | 창신동<br>산6-41 | - | - | 보행자 전용도로.<br>중로2-A호선 중복결정 (L=17.5m),<br>입체적 결정 (L=8.0) |

※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하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설치시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엘리베이터, 계단 및 연결 통로 등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여 설치한 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지봉로상부에 조성되는 입체보행로(소로3-H) 구간에 대하여 창신동23일대에서 先 사업추진시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이후 숭인동56일대 사업추진시 일체 조성함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도로명 |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소로 3-H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br>- B: 6m /<br>L: 151.8m (137.3m) | • 창신동과 숭인동간 동~서의 보행네트워크 연결, 창신공원 및 숭인근린공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 - | 소로 3-I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br>- B: 6m / L: 36.4m | • 창신공원 및 채석장전망대간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 - | 소로 3-J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br>- B: 6m / L: 13.9m | • 소로3-H와 창신 획지2간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 - | 소로 3-L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br>- B: 6m / L: 25.5m | • 소로3-H와 창신 획지1간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폐지 | 1 | 지봉골공원 | 어린이공원 | 창신동 산6-25일대 | 3,538.0 | 감) 3,538.0 | - | - | - |
| 신설 | 1 | 창신공원 | 문화공원 | 창신동 23-315 일대 | - | 증) 10,041.9 | 10,041.9 | -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자원순환센터)중복결정 , 소로3-1호선과 중복결정 |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1 | 지봉골공원 | • 공원 폐지<br>- A : 3,538.0㎡ | • 정비구역 내 창신공원 신설(대체 확보)에 따른 공원 폐지 |
| 1 | 창신공원 | • 공원 신설<br>- A : 10,041.9㎡ | • 지역의 명소화 및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역사공원 신설<br>• 지하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자원순환센터) 중복결정<br>• 소로3-1호선(입체보행로)과 중복결정 |

다.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 | 창신녹지 | 완충녹지 | 창신동 14-20 일대 | 4,426.0 | 감) 1,180.6 | 3,245.4 | 건설부고시 제342호 (1980.11.14.) |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
| - | 창신녹지 | • 녹지 면적 변경<br>- A : 4,426.0㎡ → 3,245.4㎡<br>(감 1,180.6㎡) | • 창신공원 및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자원순환센터)(중복결정) 조성에 따른 면적 감소 |

라. 유통 및 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폐지 | 1 | - | 열공급설비 | 창신동 23-315 일대 | 6,998.0 | 감) 6,998.0 | - | - | - |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 | 열공급설비 | • 열공급설비 폐지<br>- A : 6,998.0㎡ | • 정비사업에 따른 창신공원 및 자원순환 센터 조성을 위한 열공급설비 폐지 |

2)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 | 낙산 아리수 올림터 | 수도 공급설비 | 창신동 23-815 일대 | - | 증) 120.0 | 120.0 | - | 중로 2-A 중복결정 (A=35.2㎡)<br>소로 3-F 중복결정 (A=84.8㎡)<br>소로 3-H 중복결정 (A=89.7㎡) |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 | 낙산아리수올림터 | • 수도공급설비 신설<br>- A : 120.0㎡ | • 창신동 산6-25번지(지봉골공원) 내 위치한 낙산가압장의 대체 시설로써 기존 수도가압시설 기능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수도공급설비 신설 |

마.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1 | 자원순환 센터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 창신동 23-315 일대 | - | 증) 6,000.0 | 6,000.0 | - | 창신공원 지하부 중복결정 |

※ 공공재원(종로구)으로 조성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1 | 자원순환센터 | • 자원순환센터 신설<br>- A : 6,000.0㎡ | •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자원순환센터)을 창신공원 지하부에 신설하여 중복결정 |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시설의 종류 | | 위 치 | 기준 | | 계획(안) | 비 고 |
|---|---|---|---|---|---|---|
| 주민공동시설 | 소 계 | 공동주택획지 | 1,000세대 이상<br>{500+(1,038세대×2.0㎡)}×1.25 | 3,220.0㎡ 이상 | 3,776.8㎡ | - |
| | 경로당 | 〃 | 500세대 이상 | 580㎡ 이상 | 580.0㎡ | |
| | 어린이집 | 〃 | | 580㎡ 이상 | 580.0㎡ | |
| | 작은도서관 | 〃 | | 203㎡ 이상 | 390.8㎡ | |
| | 다함께돌봄센터 | 〃 | | - | 290.0㎡ | |
| | 어린이놀이터 | 〃 | | - | 821.0㎡ | |
| | 주민운동시설 | 〃 | | - | 1,115.0㎡ | |
| 관리사무소 | | 〃 | 50세대 이상<br>10㎡+(1,038세대-50세대)×0.05㎡ | 59.4㎡ 이상 | 66.9㎡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7호 다목 규정에 따라 전체 구역을 하나의 단지로 보고 주민공동시설 배치
※ 향후 사업승인 시 시설설치면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계획

|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 | |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 64,822.4 | 전 체 | 47,244.8 | 창신동 23-2 일대 | 233 | - | - | - | 233 |
| | | | 획지1 | 41,236.9 | 창신동 23-2 일대 | 206 | - | - | - | 206 |
| | | | 획지2 | 6,007.9 | 창신동 23-814 일대 | 10 | - | - | - | 10 |
| | | | 획지 외 | - | 창신동 23-815 일대 | 17 | - | - | - | 17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최고층수 |
|---|---|---|---|---|---|---|---|---|---|---|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 | 정비 계획 | 법적 상한 | |
| 신설 |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 64,822.4 | 전 체 | 47,244.8 | 창신동 23-2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60 이하 | 223.56 이하 | (224.82)이하 | 해발 125m 이하/ 28층 이하 ※ 영역별 높이 기준 준수 |
| | | | 획지1 | 41,236.9 | 창신동 23-2 일대 | | | 221.65 이하 | - | |
| | | | 획지2 | 6,007.9 | 창신동 23-814 일대 | | | 236.62 이하 | 246.57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 세대수 : 1,038세대 (분양 879세대, 임대 159세대)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세대수 : 8세대 (분양 4세대, 임대 4세대)

| 구분 | | 계획 | |
|---|---|---|---|
| | | 세대수 | 비율(%) |
| 합계 | | 1,038 | 100.0 |
| 분양 | 소계 | 879 | 84.7 |
| | 전용 39㎡ | 92 | 8.9 |
| | 전용 46㎡ | 56 | 5.4 |
| | 전용 59㎡ | 190 | 18.3 |
| | 전용 74㎡ | 126 | 12.1 |
| | 전용 84㎡ | 295 | 28.4 |
| | 전용 104㎡ | 120 | 11.6 |
| 임대 | 소계 | 159 | 15.3 |
| | 전용 39㎡ | 62 | 6.0 |
| | 전용 46㎡ | 81 | 7.8 |
| | 전용 59㎡ | 16 | 1.5 |

|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 높이(m)/최고층수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 정비계획 | 법적상한 | |

- 정비계획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법적상한용적률 증가분 제외)

| 구분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 | |
|---|---|---|---|---|
| 규모 | 합계 | 40㎡이하 | 40~60㎡이하 | 60~85㎡이하 |
| 세대수 | 155 | 62 | 93 | - |
| 비율(%) | 100.0 | 40.0 | 60.0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 확보 관련 규정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이상
  → 계획 : 88.43%(918세대)
- 임대주택 건설 1) 주택 전체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주택 전체연면적의 10%이상
  → 계획 : 주택 전체세대수의 15.05%(155세대)
  2)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내 범위에서 30%이상 또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로 건설
  → 계획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0%(62세대)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8세대) 제외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퍼센트보다 높은 경우 또는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여야 함

-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85㎡이하)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이상

| 구분 | 정비계획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 초과용적률(법적상한-정비계획) |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계획(초과용적률의 50%) |
|---|---|---|---|---|
| 획지2 | 236.62% | 246.57% | 9.95% | 342.80㎡ (≥ 298.89㎡) |

**심의 완화사항**

- 용도지역 상향 : 제1종 및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20%)
  - 기준용적률 상향되는 부분을 소형주택(60㎡이하)으로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한하여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따른 채광방향 사선제한 완화 적용 (획지2 해당)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지정
  - 대지경계선 및 공공보행통로로부터 3m 이상
- 벽면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에서 3m 이상(건축한계선을 활용하여 보행공간 조성구간에 적용)
  - 공공보행통로로부터 3m 이상(1층 필로티의 경우 해당없음)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폭원 6m 이상) 계획
  - 지봉로~대상지~채석장 공원 연결
  - 단지출입구~대상지~창신6가길 연결

나. 용적률 계획

| 구 분 | 산 정 내 용 | | | | | | | |
|---|---|---|---|---|---|---|---|---|
| 토지 이용 계획 (㎡) | 계 (구역면적) | 대지면적 (공동주택 용지) | 공공시설 등 제공 면적 | | |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 · 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 · 공유지) 면적 |
| | | | 계 | 도로 | 공원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입체보행로) | | |
| | 64,822.4 | 47,244.8 | 18,747.7 | 7,535.7 | 10,041.9 | 1,170.1 | 7,418.8 | 6,630.8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면적 4,698.1㎡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건축물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포함)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 · 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국 · 공유지) 면적
  = 18,747.7㎡ − 7,418.8㎡ − 6,630.8㎡ = 4,698.1㎡

※ 구역면적(64,822.4㎡) 대비 7.25%

**용적률**

**기준**

- 기준용적률 : 205.04%
  = {(41,236.9㎡ × 206.92%) + (6,007.9㎡ × 192.16%)} / 47,244.8㎡ = 205.04%
  − 획지1 : = {(3,176.5㎡ × 170%)+(38,060.4㎡ × 210%)} / 41,236.9㎡ = 206.92%
  − 획지2 : = {(2,679.1㎡ × 170%)+(3,328.8㎡ × 210%)} / 6,007.9㎡ = 192.16%

| 구 분 | 면적(㎡) | 기준용적률 | 비 고 |
|---|---|---|---|
| 합계 | 47,244.8 | 205.04% |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하)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20%) |
| 획지1 | 41,236.9 | 206.92% | |
| 획지2 | 6,007.9 | 192.16% | |

**허용**

- 허용용적률 : 인센티브 사항 없음

**정비계획 (상한)**

- 정비계획용적률 = 223.56% 이하
  = {(41,236.9㎡ × 221.65%)+(6,007.9㎡ × 236.62%)} / 47,244.8㎡ = 223.56%

| 구 분 | 면적(㎡) | 상한용적률(%) | 공공기여 비율(%) | 비 고 |
|---|---|---|---|---|
| 합계 | 47,244.8 | 223.56% 이하 | 100.0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최대 상한용적률 이하 범위에서 공공기여 비율 안배<br>※ 공공기여 비율은 사업시행자가 결정 |
| 획지1 | 41,236.9 | 221.65% 이하 | 69.0 | |
| 획지2 | 6,007.9 | 236.62% 이하 | 31.0 | |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산 정 내 용</th></tr>
<tr><td rowspan="2">용적률</td><td>정비계획<br>(상한)</td><td>
• 정비계획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β건축물·현금)<br>
- 획지1 : 206.92% × {1 + (1.3 × 0.74930 × 0.05903)} + (0.7 × 0.01958)} = 221.65%
<table>
<tr><th>구 분</th><th>산출근거</th><th>비 고</th></tr>
<tr><td>가중치</td><td>= 공공기여 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br>= 155.04% / 206.92% = 0.74930</td><td></td></tr>
<tr><td>α토지</td><td>= 공공시설 부지(토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br>= 2,434.32㎡ / 41,236.9㎡ = 0.05903</td><td>기부채납 면적 =<br>3,528.0㎡ × 69.0% =<br>2,434.32㎡</td></tr>
<tr><td>β건축물·현금</td><td>= 공공시설물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br>= 807.38㎡ / 41,236.9㎡ = 0.01958</td><td>기부채납 면적 =<br>1,170.1㎡ × 69.0% =<br>807.38㎡</td></tr>
</table>
- 획지2 : 192.16% × {1 + (1.3 × 0.80683 × 0.18204)} + (0.7 × 0.06038)} = 236.97%<br>
∴ 236.62%(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 최대 상한용적률 적용)
<table>
<tr><th>구 분</th><th>산출근거</th><th>비 고</th></tr>
<tr><td>가중치</td><td>= 공공기여 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br>= 155.04% / 192.16% = 0.80683</td><td></td></tr>
<tr><td>α토지</td><td>= 공공시설 부지(토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br>= 1,093.68㎡ / 6,007.9㎡ = 0.18204</td><td>기부채납 면적 =<br>3,528.0㎡ × 31.0 =<br>1,093.68㎡</td></tr>
<tr><td>β건축물·현금</td><td>= 공공시설물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br>= 362.72㎡ / 6,007.9㎡ = 0.06038</td><td>기부채납 면적 =<br>1,170.1㎡ × 31.0% =<br>362.72㎡</td></tr>
</table>
</td></tr>
<tr><td>법적상한</td><td>
• 법적상한용적률
<table>
<tr><th>구 분</th><th>면적(㎡)</th><th>법적상한 용적률(%)</th><th>비 고</th></tr>
<tr><td>획지2</td><td>6,007.9</td><td>246.57% 이하</td><td>건축계획 용적률<br>(246.57%)</td></tr>
</table>
</td></tr>
</table>

1) 계획용적률(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적용사항 없음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1) 임대주택 건설 계획

| 구분 | 내용 |
|---|---|
| 계획 기준 |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br>※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br>•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4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 |

| 건립규모 | 세대수 | 전체 비율 | 임대주택 비율 |
|---|---|---|---|
| 합계 | 155 | 15.05% | 100.0% |
| 전용 39㎡ | 62 | 6.01% | 40.0% |
| 전용 46㎡ | 81 | 7.87% | 52.3% |
| 전용 59㎡ | 12 | 1.17% | 7.7% |

※ 전체 1,030세대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계획

■ 획지2 부분

| 구분 | | 내용 |
|---|---|---|
| 계획 기준 | |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br>•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임 |
| 법적상한용적률<br>(건축계획) | | • 246.57%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
| 상한용적률<br>(정비계획용적률) | | • 236.62% |
| 국민주택<br>규모 주택<br>의무면적 | 용적률 증가분 | • 246.57% - 236.62% = 9.95% |
| | 증가된 용적률의 50% | • 9.95% × 0.5 = 4.975%<br>• 6,007.9㎡ × 0.04975 = 298.76㎡ |
| | 의무면적 | • 298.76㎡ 이상 |

| 구분 | | 내용 | | | | |
|---|---|---|---|---|---|---|
| 초과용적률 시설계획 | 분양 등 시설 확보계획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비고 |
| | | 39.99㎡ | 61.38㎡ | 4 | 245.53㎡ | - |
| | | 근린생활 시설 | - | - | 9.19㎡ | - |
| | | 소계 | | 4 | 254.72㎡ | ≤298.76㎡ |
| |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비고 |
| | | 59.99㎡ | 85.70㎡ | 4 | 342.80㎡ | - |
| | | 소계 | | 4 | 342.80㎡ | ≥298.76㎡ |
| | 합계 | | | 8 | 597.52㎡ | - |

##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구분 | 계획내용 |
|---|---|
| 환경보전 |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br>•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복원 및 강화<br>•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포장의 증가로 생태면적률 획지1(37.13%), 획지2(50.75%) 확보<br>• 폐기물 수거는 종로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 재난방지 | • 토목공사 완료 즉시 나대지를 안정화시키며, 조경식재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br>• 토목공사는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며, 강우 시 나출지에 임시 비닐막이나 부직포를 덮어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 |

## 10. 환경성 검토 결과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1.1 비오톱 |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 | • 비오톱 유형평가 1, 2, 5등급, 개별비오톱 2등급 및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 •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생태 기능 복원 및 강화 | - |
| 1.2 생태네트워크 |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 • 기존 시가지 상태로 주변 녹지가 미미한 상태임 | •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br>• 녹지평가지표 I등급으로 계획됨 | - |
| 1.3 동·식물상 | 동·식물상 보호 | ○ | • 현존식생은 시가화 지역, 아까시나무림, 경작지,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조사됨 | •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서식환경개선<br>•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생물서식공간 마련 | - |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1.4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 보전 | ○ | • 대상지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 - |
| 2.1 토지이용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br>• 노후주택지역으로 주변 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수 위치 |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br>-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오픈스페이스 확보<br>• 공동주택, 근생시설, 부대복리시설 | - |
| 2.2 토양 | 토양오염 최소화 | ○ | •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기준 만족<br>•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br>• 공사장비를 통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br>• 토양오염발생시 신고 및 적법처리계획 수립 | - |
| 2.3 지형·지질 |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 • 평균표고 58.51m<br>• 평균경사 19.43°<br>• 불투수포장 90% 이상 | • 부지계획고는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절성토고를 지양하여 지형변화 최소화 | - |
| 3.1 물순환, 수리 · 수문 | 생태면적률 30% | ○ | • 생태면적율 30% 이상 계획 | •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을 적용하여 생태면적률 30%이상 계획<br>• 저영향개발(LID) 적용 검토 | - |
| 3.2 수질 |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 • 수질현황:Ia(매우좋음)~Ib(좋음)<br>※ BOD기준<br>• 공사 시 토사유출 발생<br>• 운영 시 계획인구에 의한 오수발생<br>•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지역 '한강H' 유역에 해당 | • 공사 시 토사유출저감대책 수립(침사지, 유출지하수저감대책)<br>• 운영 시 우오수, 상수공급대책 수립(저영향개발계획 등) | - |
| 4.1 바람 | 바람길 확보 | ○ | • 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와 공동주택 및 상업지가 위치함 | •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 - |
| 4.2 열 | 열환경 환경 최소화 | ○ | • 열환경 공간 유형 조사<br>• 대부분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 해당 | •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 - |
| 4.3 대기질 · 미세먼지 | 대기오염 최소화 | ○ | • 모든 항목 대기환경기준 하회<br>•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질 영향 예상 | • 공사 시 저감방안 수립 (살수, 가설방진망 등)<br>• 운영 시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 (친환경 보일러, 녹지조성 등) | - |
| 4.4 악취 | 악취공해 해결 | X | • 해당사항 없음 | - | - |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4.5 온실가스 | 온실가스 저감 | ○ | • 온실가스 매년 증가추세<br>• 공사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 공사 시 저감방안 수립(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 등)<br>•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물 수립계획 | - |
| 4.6 에너지 |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 | • 대상지는 황함유량 0.1%이하의 경유 및 황함유량 0.3%이하의 중유 사용지역에 해당함<br>• 향후 에너지사용량 증가 | • LNG사용, 온실가스배출 최소화<br>•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 - |
| 5.1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 • 공사 시 생활·건설폐기물 및 분뇨 발생 예상<br>• 운영 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예상 | •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분뇨발생 저감대책 수립 | - |
| 5.2 소음진동 | 소음진동 최소화 | ○ | • 현재 교통소음 영향 지역<br>• 공사 시 소음영향이 예상<br>• 운영 시 교통량에 따른 소음영향 예상 | • 공사 시 소음저감방안 수립 (저소음장비, 가설방음판넬 등) | - |
| 5.3 경관 | Skyline 보전 | ○ | • 도심지 경관이며 근거리에 자연녹지경관 위치함<br>• 건축 밀집지역으로 건물상부 일부 조망 | • 건축물 색채 및 식재계획 수립<br>•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 |
| 5.4 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 • 종로구 관내에 공원,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 위치<br>• 대상지와 최소 170m 이격하여 숭인근린공원이 위치함 | • 대상지 내부에 오픈스페이스 및 단지내 조경녹지 계획으로 주민 휴식공간 마련 | - |
| 5.5 일조 | 일조 침해 최소화 | ○ | •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으로 지형적 단차가 있는 지역 | • 건축물 적정이격거리를 설정한 위치선정<br>• 건축물 주변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br>• 관련법을 준수한 건축계획 수립 | - |
| 5.6 보행친화 공간 | 보행자 보호계획 수립 | ○ | • 대상지 동측으로 지봉로(폭원 20m, 4~5차로)가 주 접근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 보행동선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br>•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 |
| 5.7 전파장해 | 전파장해 영향 저감 | x | • 해당사항 없음 | - | - |
| 6.1 인구 (6.2 주거 포함) | 인구 고려한 계획 | ○ | • 인구증가율은 감소, 고령자수 증가 추세<br>• 공동주택 입지로 인해 종로구의 인구수는 소폭 증가 예상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개발로 인해 생활권 접근성 향상 및 상주인구 증가 예측 | - |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6.3 산업 | 산업 고려한 계획 | X | • 해당사항 없음 | - | - |

##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 |
|---|---|---|---|---|---|---|
| | | | | 현 황 | 증 감 | 계 획 |
| 신규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426세대 | 증) 612세대 | 1,038세대 |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구분 | 계획내용 |
|---|---|
| 창신초등학교<br>서일문화예술 고등학교 |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br>•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br>• 공사 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br>•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br>•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 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안전 및 범죄예방 | • 단지 내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은 주동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등 환경설계를 통한 자연감시 시스템(휴먼시큐리티)을 구축<br>• 단지/아파트 출입문에 보안카메라 및 잠금장치 설치, 지하주차장 내 밝은 조명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비인가자의 진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 통제<br>•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 유도를 통해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위험 감소 및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br>• 산책로 및 보행가로변에는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 | -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신설 |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 | - | 증) 64,822.4 | 64,822.4 | - |

2.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면적(㎡) | | | 비율(%) | 비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계 | 64,822.4 | - | 64,822.4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617.9 | 감) 5,589.0 | 13,028.9 | 20.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33,974.8 | 감) 31,251.2 | 2,723.6 | 4.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281.2 | 증) 37,096.7 | 48,377.9 | 74.6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48.5 | 감) 256.5 | 692.0 | 1.1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위 치 | 용도지역 | | 면적(㎡) | 변경 사유 |
|---|---|---|---|---|
| | 기정 | 변경 | | |
| 창신동 23-2번지 일대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2,762.3 | •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5,855.6 | |
| | | 소계 | 18,617.9 |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 2,723.6 | |
| |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66.6 | |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30,984.6 | |
| | | 소계 | 33,974.8 |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1,281.2 | |
| | | 소계 | 11,281.2 | |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56.5 | |
|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692.0 | |

| 위 치 | 용도지역 | | 면적(㎡) | 변경 사유 |
|---|---|---|---|---|
| | 기정 | 변경 | | |
| | | 소계 | 948.5 | |
| | 계 | | 64,822.4 |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사용형태 | 연장(m) | 위치 |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기점 | 종점 | | | |
| 기정 | 대로 | 3 | 195 | 20~45 | 주간선 | 일반 | 1,680 (253) | 송인동 83-5 | 성북구 보문동1가 | - | - | - |
| 변경 | 대로 | 3 | 195 | 20~45 | 주간선 | 일반 | 1,680 (253) | 송인동 83-5 | 성북구 보문동1가 | - | - | 지봉로 소로3-H호선 중복결정 (L=12.0m) |
| 신설 | 중로 | 2 | A | 12~18 | 국지 | 일반 | 221 | 창신동 17-42 | 창신동 6-41 | - | - | 소로3-H호선 중복결정 (L=53.4m) 소로3-L호선 중복결정 (L=17.5m) |
| 신설 | 중로 | 2 | B | 15 | 국지 | 일반 | 140 | 창신동 23-216 | 창신동 23-393 | - | - | - |
| 신설 | 중로 | 3 | C | 12 | 국지 | 일반 | 44 | 창신동 23-393 | 창신동 23-386 | - | - | - |
| 기정 | 소로 | 3 | A | 4 | 국지 | 일반 | 63 (33) | 창신동 23-871 | 창신동 23-91 | - | - | - |
| 변경 | 소로 | 3 | A | 4 | 국지 | 일반 | 30 | 창신동 23-871 | 창신동 23-81 | - | - | - |
| 폐지 | 소로 | 3 | B | 6 | 국지 | 일반 | 6 | 창신동 128-86 | 창신동 23-778 | - | - | - |
| 신설 | 소로 | 3 | F | 6~15 | 국지 | 일반 | 130 | 창신동 17-12 | 창신동 23-875 | - | - | 소로3-H호선 중복결정 (L=71.9m), 소로3-J호선 중복결정 (L=3.8m) |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연장 내 ( )는 구역 내 부분에 해당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도로명 |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대로 3-195 | 대로 3-195 | • 소로3-H호선과 중복결정<br>- L=12.0m | • 창신동~숭인동간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 - | 중로 2-A | • 도로 신설<br>- B: 12~18m / L: 221m | • 정비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 및 공원연결로 조성을 위한 도로 신설<br>• 창신동~숭인동간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 - | 중로 2-B | • 도로 신설<br>- B: 15m / L: 140m | • 인접 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통한 도로 신설 |
| - | 중로 3-C | • 도로 신설<br>- B: 12m / L: 44m | • 인접 도로 확폭 및 정비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 소로 3-A | 소로 3-A | • 도로 연장 감소<br>- L: 63m → 30m | •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연장 감소 |
| 소로 3-B | - | • 도로 폐지 | •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
| - | 소로 3-F | • 도로 신설<br>- B: 6~15m / L: 130m | • 정비구역 내 원활한 진출입 및 창신기동대 연결로 조성을 위한 도로 신설<br>• 창신동~숭인동간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사용형태 | 연장(m) | 위치 |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기점 | 종점 | | | |
| 신설 | 소로 | 3 | H | 6 | 특수 | 일반 | 151.8<br>(137.3) | 숭인동<br>53-5 | 창신동<br>산6-41 | - | - | 보행자 전용도로 137.3m 중<br>대로3-195호선 중복결정<br>(L=12.0m),<br>중로2-A호선 중복결정<br>(L=53.4m),<br>소로3-F호선 중복결정<br>(L=71.9m),<br>수도공급시설 중복결정<br>(A=89.7㎡) |
| 신설 | 소로 | 3 | I | 6 | 특수 | 일반 | 36.4 | 창신동<br>23-315 | 창신동<br>6-13 | - | - | 보행자 전용도로.<br>창신공원 중복결정<br>(L=28.2m),<br>입체적 결정 (L=8.2m) |
| 신설 | 소로 | 3 | J | 6 | 특수 | 일반 | 13.9 | 창신동<br>산6-25 | 창신동<br>산6-25 | - | - | 보행자 전용도로.<br>소로3-F호선 중복결정<br>(L=3.8m),<br>입체적 결정 (L=10.1m) |
| 신설 | 소로 | 3 | L | 6 | 특수 | 일반 | 25.5 | 창신동<br>산6-41 | 창신동<br>산6-41 | - | - | 보행자 전용도로.<br>중로2-A호선 중복결정 (L=17.5m),<br>입체적 결정 (L=8.0) |

※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하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설치시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엘리베이터, 계단 및 연결 통로 등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여 설치한 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지봉로상부에 조성되는 입체보행로(소로3-H) 구간에 대하여 창신동23일대에서 先 사업추진시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이후 숭인동56일대 사업추진시 일체 조성함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도로명 |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소로 3-H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br>- B: 6m /<br>L: 151.8m (137.3m) | • 창신동과 숭인동간 동~서의 보행네트워크 연결, 창신공원 및 숭인근린공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 - | 소로 3-I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br>- B: 6m / L: 36.4m | • 창신공원 및 채석장전망대간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 - | 소로 3-J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br>- B: 6m / L: 13.9m | • 소로3-H와 창신 획지2간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 - | 소로 3-L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br>- B: 6m / L: 25.5m | • 소로3-H와 창신 획지1간 보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입체보행로 신설(중복결정) |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폐지 | 1 | 지봉골공원 | 어린이공원 | 창신동 산6-25일대 | 3,538.0 | 감) 3,538.0 | - | - | - |
| 신설 | 1 | 창신공원 | 문화공원 | 창신동 23-315 일대 | - | 증) 10,041.9 | 10,041.9 | -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자원순환센터)중복결정, 소로3-I호선과 중복결정 |

※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1 | 지봉골공원 | • 공원 폐지<br>- A : 3,538.0㎡ | • 정비구역 내 창신공원 신설(대체 확보)에 따른 공원 폐지 |
| 1 | 창신공원 | • 공원 신설<br>- A : 10,041.9㎡ | • 지역의 명소화 및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역사공원 신설<br>• 지하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자원순환센터) 중복결정<br>• 소로3-1호선(입체보행로)과 중복결정 |

다.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 | 창신녹지 | 완충녹지 | 창신동 14-20 일대 | 4,426.0 | 감) 1,180.6 | 3,245.4 | 건설부고시 제342호 (1980.11.14.) |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
| - | 창신녹지 | • 녹지 면적 변경<br>- A : 4,426.0㎡ → 3,245.4㎡<br>(감 1,180.6㎡) | • 창신공원 및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자원순환센터)(중복결정) 조성에 따른 면적 감소 |

라. 유통 및 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폐지 | 1 | - | 열공급설비 | 창신동 23-315 일대 | 6,998.0 | 감) 6,998.0 | - | - | - |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 | 열공급설비 | • 열공급설비 폐지<br>- A : 6,998.0㎡ | • 정비사업에 따른 창신공원 및 자원순환 센터 조성을 위한 열공급설비 폐지 |

2)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 | 낙산 아리수 올림터 | 수도 공급설비 | 창신동 23-815 일대 | - | 증) 120.0 | 120.0 | - | 중로 2-A 중복결정 (A=35.2㎡) 소로 3-F 중복결정 (A=84.8㎡) 소로 3-H 중복결정 (A=89.7㎡) |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 | 낙산아리수올림터 | • 수도공급설비 신설<br>- A : 120.0㎡ | • 창신동 산6-25번지(지봉골공원) 내 위치한 낙산가압장의 대체 시설로써 기존 수도가압시설 기능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수도공급설비 신설 |

마.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1 | 자원순환 센터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 창신동 23-315 일대 | - | 증) 6,000 | 6,000 | - | 창신공원 지하부 중복결정 |

※ 공공재원(종로구)으로 조성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1 | 자원순환센터 | • 자원순환센터 신설<br>- A : 6,000㎡ | •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자원순환센터)을 창신공원 지하부에 신설하여 중복결정 |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구분 | 가구 | 획지 | | 면적(㎡) | 위치 | 비고 |
|---|---|---|---|---|---|---|
| 신설 |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 전체 | | 47,244.8 | 창신동 23-2 일대 | - |
| | | | 획지1 | 41,236.9 | 창신동 23-2 일대 | |
| | | | 획지2 | 6,007.9 | 창신동 23-814 일대 | |

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구분 | | 획지 | 용도 | 비고 |
|---|---|---|---|---|
| 신설 | 허용용도 | 획지1<br>획지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br>•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 구분 | 획지 | 건폐율 | 비고 |
|---|---|---|---|
| 신설 | 획지1 | 60% 이하 | - |
| | 획지2 | | |

나) 용적률 계획

| 구분 | 획지 | 용적률 | | | | 비고 |
|---|---|---|---|---|---|---|
|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
| 신설 | 전체 | 205.04% | 205.04% | 223.56% 이하 | - | 건축계획 용적률은 건축심의 시 법정상한용적률 이하 범위에서 결정 |
| | 획지1 | 206.92% | 206.92% | 221.65% 이하 | - | 건축계획 용적률 210.00% |

| 구분 | 획지 | 용적률 | | | | 비고 |
|---|---|---|---|---|---|---|
|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
| | 획지2 | 192.16% | 192.16% | 236.62% 이하 | 246.57% 이하 | 건축계획 용적률 246.57% |

다) 높이 계획

| 구분 | 지역 | 높이 기준 | 비고 |
|---|---|---|---|
| 신설 | 획지1<br>획지2 | 해발고도 125m이하(28층 이하) 범위에서 영역별 높이 계획 준수 | 낙산 최고높이 이하 |

## 다. 건축물 배치 계획

###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분 | 적용 위치 | 계획내용 |
|---|---|---|
| 건축한계선 | 획지1<br>획지2 | • 대지경계선 및 공공보행통로로부터 3m 이상 |
| 벽면한계선 | | • 건축한계선에서 3m 이상 (건축한계선을 활용하여 보행공간 조성구간에 적용)<br>• 공공보행통로로부터 3m 이상 (1층 필로티의 경우 해당없음) |

### 2)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 구분 | | 적용위치 | 계획내용 |
|---|---|---|---|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 창신 6가길 주변 |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서 가로의 1/2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도로 레벨 이상)에 가로활성화 시설을 연도형으로 조성<br>•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br>-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br>-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 라. 경관계획(배치 · 형태 포함)

###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 구분 | 적용위치 | 계획내용 |
|---|---|---|
| 건축물의 배치 | 획지1<br>획지2 | • 건폐율을 고려한 대상지 내 적절한 통풍, 채광, 개방감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br>• 간선도로 변은 탑상형 주동 배치 등 적정 배치를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계획 |
| 건물 진출입구 | 획지1<br>획지2 | • 보행약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단차가 발생하는 지점에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계획 |

2) 건축물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구분 | 적용위치 | 계획내용 |
|---|---|---|
| 건축물의 외부 형태 | 획지1<br>획지2 | • 채석장, 구릉지 등 주변의 경관을 고려한 창의적 디자인을 통해 입면 다양화<br>• 단지 외곽 개방 및 담장 미설치 등 주변 지역과의 소통을 유도하는 시각적으로 열린단지 조성(권장) |
| 재료 및 색채 | 획지1<br>획지2 |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 |

3) 경관에 관한 계획

| 구분 | 적용지역 | 계획내용 |
|---|---|---|
| 조명계획 | 획지1<br>획지2 | •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조명 설치계획 |
| 스카이라인 | 획지1<br>획지2 | • 인접 낙산공원 · 한양도성, 북측 아파트단지 등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 |
| 저층배치 구간 | 획지1 | • 안양암 인근 저층배치구간 설정 |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구분 | 적용위치 | 계획 내용 | 비고 |
|---|---|---|---|
| 공공보행통로 | 획지1<br>획지2 | • 공공보행통로(폭원 6m 이상) 계획<br>- 지봉로~대상지~채석장 공원 연결<br>- 단지출입구~대상지~창신6가길 연결 | - |

2) 환경관리 계획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1.1 비오톱 |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 | • 비오톱 유형평가 1, 2, 5등급, 개별비오톱 2등급 및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 •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생태 기능 복원 및 강화 | - |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1.2 생태네트워크 |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 • 기존 시가지 상태로 주변 녹지가 미미한 상태임 | •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br>• 녹지평가지표 I등급으로 계획됨 | - |
| 1.3 동식물상 | 동식물상 보호 | ○ | • 현존식생은 시가화 지역, 아까시나무림, 경작지,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조사됨 | •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서식환경개선<br>•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생물서식공간 마련 | - |
| 1.4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 보전 | ○ | • 대상지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 - |
| 2.1 토지이용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br>• 노후주택지역으로 주변 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수 위치 |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br>-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오픈스페이스 확보<br>• 공동주택, 근생시설, 부대복리시설 | - |
| 2.2 토양 | 토양오염 최소화 | ○ | •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기준 만족<br>•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br>• 공사장비를 통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br>• 토양오염발생시 신고 및 적법처리계획 수립 | - |
| 2.3 지형·지질 |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 • 평균표고 58.51m<br>• 평균경사 19.43°<br>• 불투수포장 90% 이상 | • 부지계획고는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절성토고를 지양하여 지형변화 최소화 | - |
| 3.1 물순환, 수리 · 수문 | 생태면적률 30% | ○ | • 생태면적율 30% 이상 계획 | •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을 적용하여 생태면적률 30%이상 계획<br>• 저영향개발(LID) 적용 검토 | - |
| 3.2 수질 |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 • 수질현황:Ia(매우좋음)~Ib(좋음)<br>※ BOD기준<br>• 공사 시 토사유출 발생<br>• 운영 시 계획인구에 의한 오수발생<br>•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지역 '한강 H' 유역에 해당 | • 공사 시 토사유출저감대책 수립 (침사지, 유출지하수저감대책)<br>• 운영 시 우오수, 상수공급대책 수립(저영향개발계획 등) | - |
| 4.1 바람 | 바람길 확보 | ○ | • 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와 공동주택 및 상업지가 위치함 | •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 - |
| 4.2 열 | 열환경 환경 최소화 | ○ | • 열환경 공간 유형 조사<br>• 대부분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 해당 | •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 - |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4.3 대기질 · 미세먼지 | 대기오염 최소화 | ○ | • 모든 항목 대기환경기준 하회<br>•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질 영향 예상 | • 공사 시 저감방안 수립 (살수, 가설 방진망 등)<br>• 운영 시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 (친환경 보일러, 녹지조성 등) | - |
| 4.4 악취 | 악취공해 해결 | x | • 해당사항 없음 | - | - |
| 4.5 온실가스 | 온실가스 저감 | ○ | • 온실가스 매년 증가추세<br>• 공사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 공사 시 저감방안 수립(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 등)<br>•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물 수립계획 | - |
| 4.6 에너지 |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 | • 대상지는 황함유량 0.1%이하의 경유 및 황함유량 0.3%이하의 중유 사용지역에 해당함<br>• 향후 에너지사용량 증가 | • LNG사용, 온실가스배출 최소화<br>•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 - |
| 5.1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 • 공사 시 생활·건설폐기물 및 분뇨 발생 예상<br>• 운영 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예상 | •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분뇨발생 저감대책 수립 | - |
| 5.2 소음·진동 | 소음·진동 최소화 | ○ | • 현재 교통소음 영향 지역<br>• 공사 시 소음영향이 예상<br>• 운영 시 교통량에 따른 소음영향 예상 | • 공사 시 소음저감방안 수립 (저소음장비, 가설방음판넬 등) | - |
| 5.3 경관 | Skyline 보전 | ○ | • 도심지 경관이며 근거리에 자연녹지경관 위치함<br>• 건축 밀집지역으로 건물상부 일부 조망 | • 건축물 색채 및 식재계획 수립<br>•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 |
| 5.4 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 • 종로구 관내에 공원,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 위치<br>• 대상지와 최소 170m 이격하여 숭인근린공원이 위치함 | • 대상지 내부에 오픈스페이스 및 단지내 조경녹지 계획으로 주민 휴식공간 마련 | - |
| 5.5 일조 | 일조 침해 최소화 | ○ | •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으로 지형적 단차가 있는 지역 | • 건축물 적정이격거리를 설정한 위치선정<br>• 건축물 주변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br>• 관련법을 준수한 건축계획 수립 | - |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의 반영사항 | 비고 |
|---|---|---|---|---|---|
| 5.6 보행친화 공간 | 보행자 보호계획 수립 | ○ | • 대상지 동측으로 지봉로(폭원 20m, 4~5차로)가 주 접근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 보행동선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br>•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 |
| 5.7 전파장해 | 전파장해 영향 저감 | X | • 해당사항 없음 | - | - |
| 6.1 인구 (6.2 주거 포함) | 인구 고려한 계획 | ○ | • 인구증가율은 감소, 고령자수 증가 추세<br>• 공동주택 입지로 인해 종로구의 인구수는 소폭 증가 예상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개발로 인해 생활권 접근성 향상 및 상주인구 증가 예측 | - |
| 6.3 산업 | 산업 고려한 계획 | X | • 해당사항 없음 | - | - |

3)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주택의 규모별 비율(법적상한용적률 증가분 제외)

| 구분 | 내용 |
|---|---|
| 계획 기준 |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br>※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br>•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4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 |

| 건립규모 | 세대수 | 전체 비율 | 임대주택 비율 |
|---|---|---|---|
| 합계 | 155 | 15.05% | 100.0% |
| 전용 39㎡ | 62 | 6.01% | 40.0% |
| 전용 46㎡ | 81 | 7.87% | 52.3% |
| 전용 59㎡ | 12 | 1.17% | 7.7% |

※ 전체 1,030세대

Ⅲ. 2024년 제 7차( ‘24.07.31)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연번 | 협의의견 | 반영계획 | 비 고 |
|---|---|---|---|
| 1 | • 보행자 전용도로, 수도공급설비 등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등은 금회 수정가결 요청(안)을 기본으로 하되, 보행자 전용도로(소로 3-H, 3-J, 3-I)의 폭원은 6m로 수정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금회 수정가결 요청(안)으로 작성되었으며, 보행자 전용도로(소로3-H호선, 소로3-I호선, 소로3-J호선, 소로3-L호선)은 기존 3m에서 6m로 확폭 하였으며 전용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하였음. | - |
| 2 | • 지봉로 상부 입체보행교계획은 대상지 및 숭인동 56두 구역의 사업추진 시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 | • 창신동23 일대에서 선 사업 추진시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이후 숭인동56일대에서 사업추진시 일체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에 명기하였음. | - |
| 3 | • 서측 공원 상부로 연계되는 입체보행로계획은 향후 유지관리 담보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소로 3-I) 결정 범위 내 전용 엘리베이터를 포함 검토하고,<br>• 채석장 전망카페 등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편의시설(화장실 등)을 확보 검토할 것.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결정 범위 내 엘리베이터, 계단 및 연결통로 등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여 계획하였으며 조성 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br>• 엘리베이터와 연결된 상부는 채석장 전망카페 인근에 기 조성된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하부 편의시설은 창신공원 내 적정 위치에 조성될 예정임. | - |
| 4 | • 상한용적률계획 관련 주관부서에서 정비계획 결정고시 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선방안’ 등 관련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인할 것. | • 창신동 23번지 일대는 2023. 11. 10.~ 12. 11. 정비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한 구역으로 2024. 10. 18. 전부 개정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선방안’ 경과규정(제4장 제1절)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획함. | - |
| 5 | • 벽면한계선 및 건축한계선계획은 구역 전체 계획 필요성(동측, 남측 경계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융통성 있게 조정할 것. | • 도로변과 공공보행통로 주변의 벽면한계선 및 건축한계선은 유지하고 창신공원 연접부나 획지2의 구역 외 필지와 접하는 부분 등 일부 필요성이 낮은 구간의 벽면한계선을 조정하여 계획함 | - |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정비계획 결정도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8), 종로구 도시개발과(☎02-2148-2683)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도면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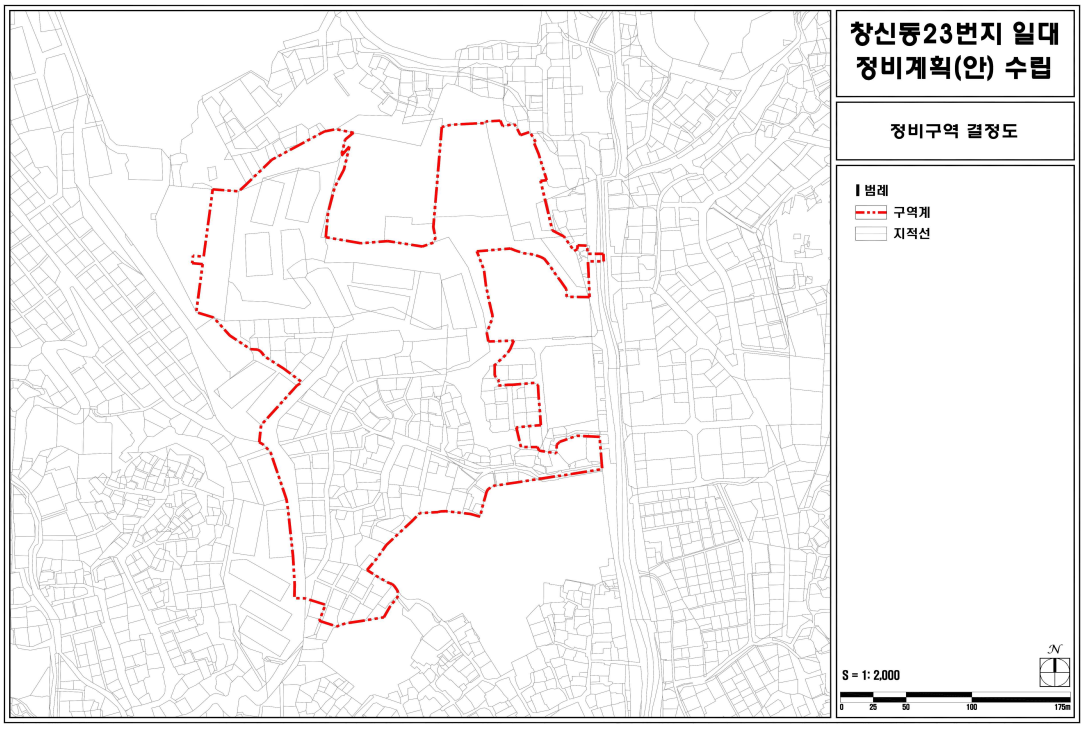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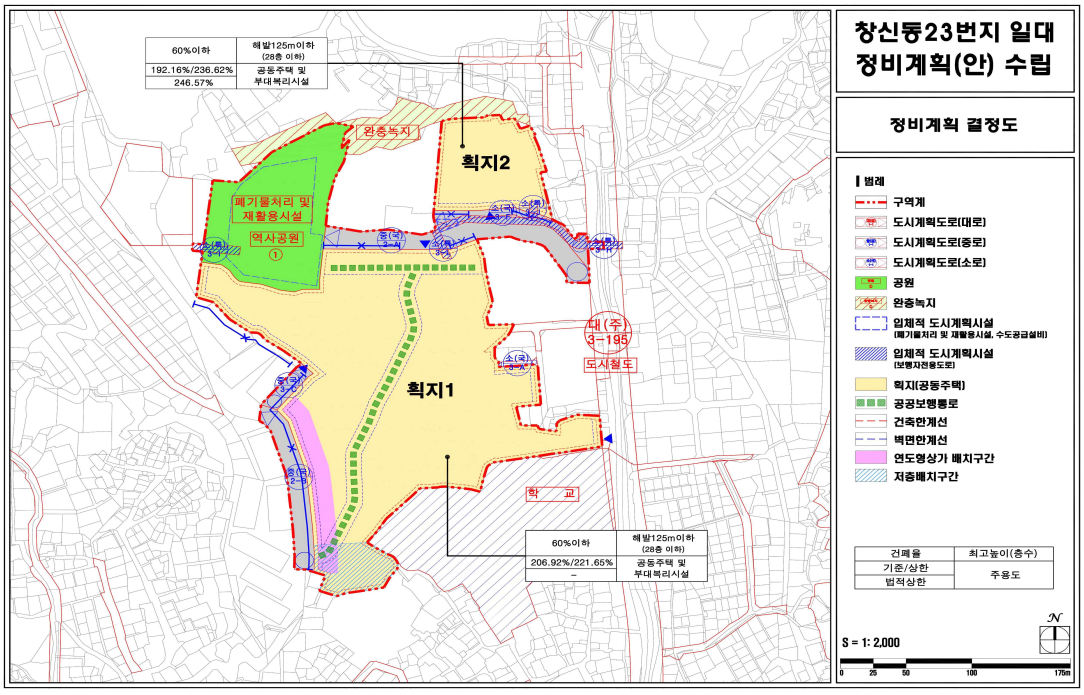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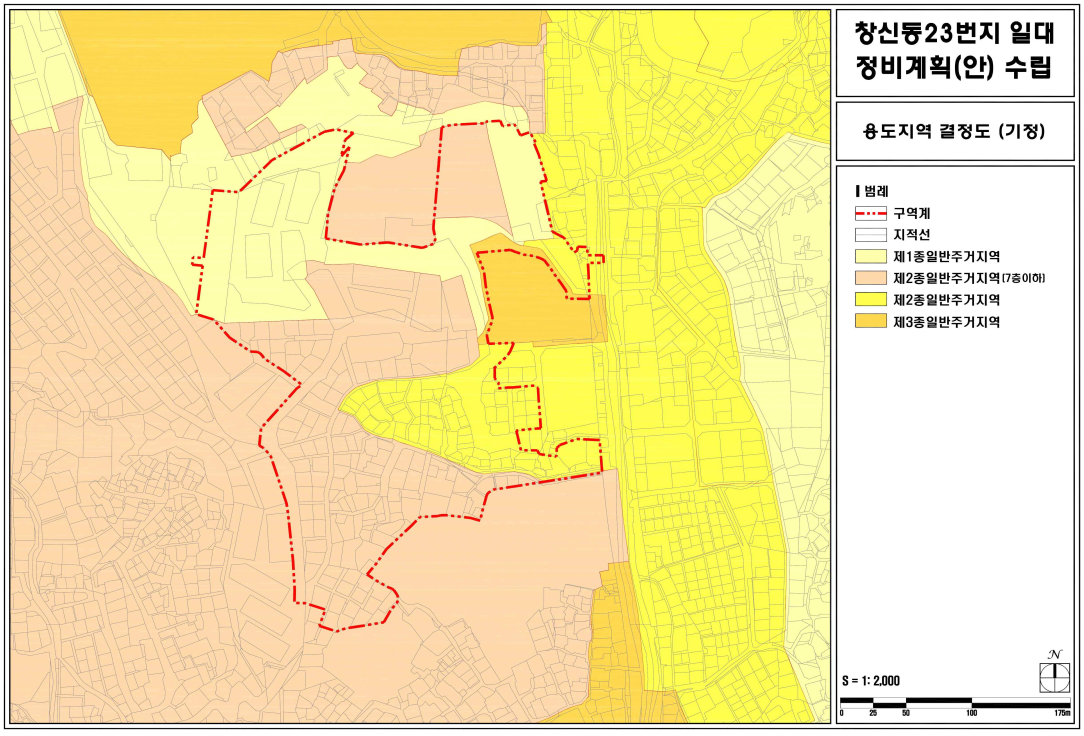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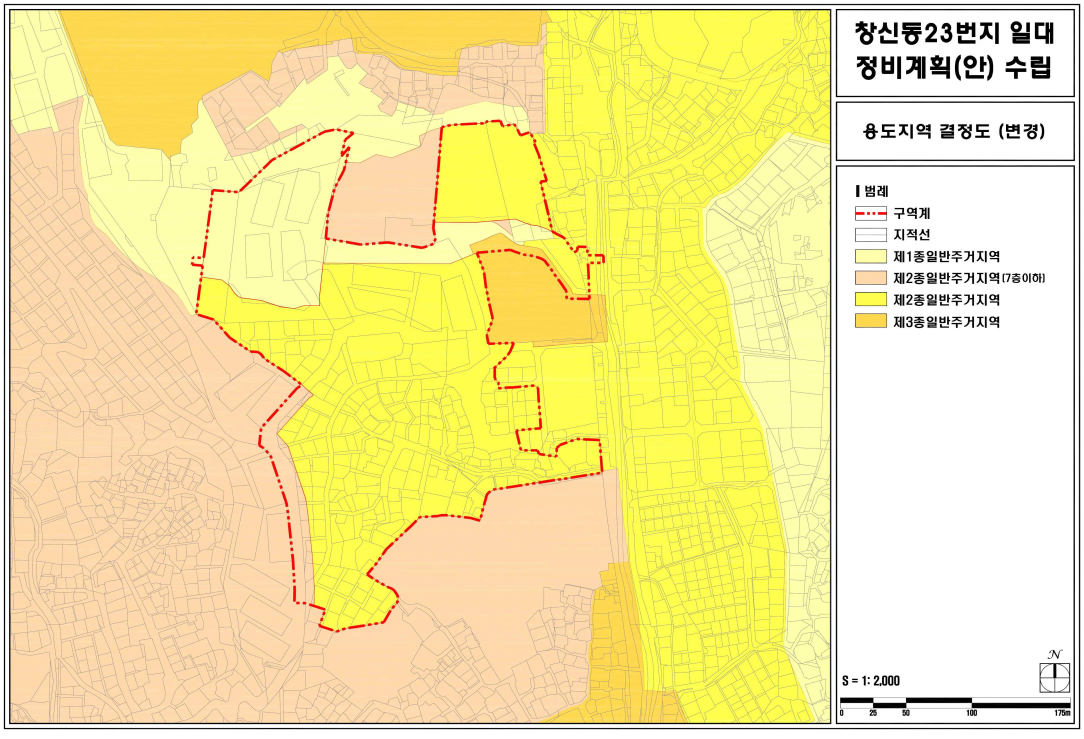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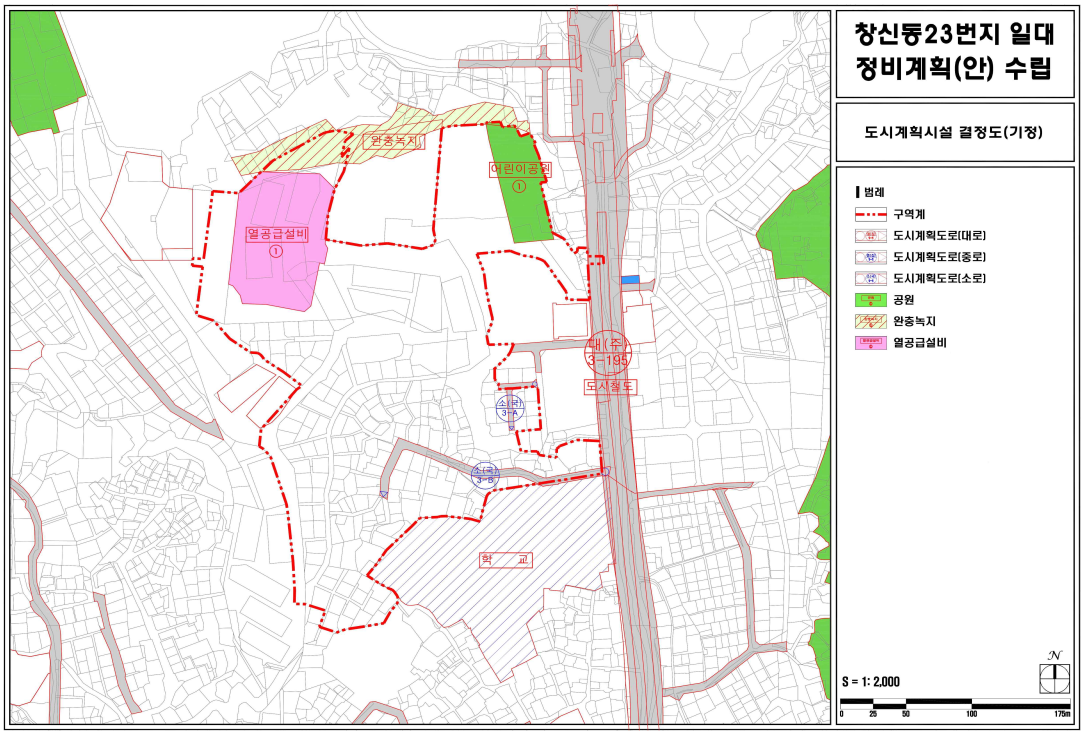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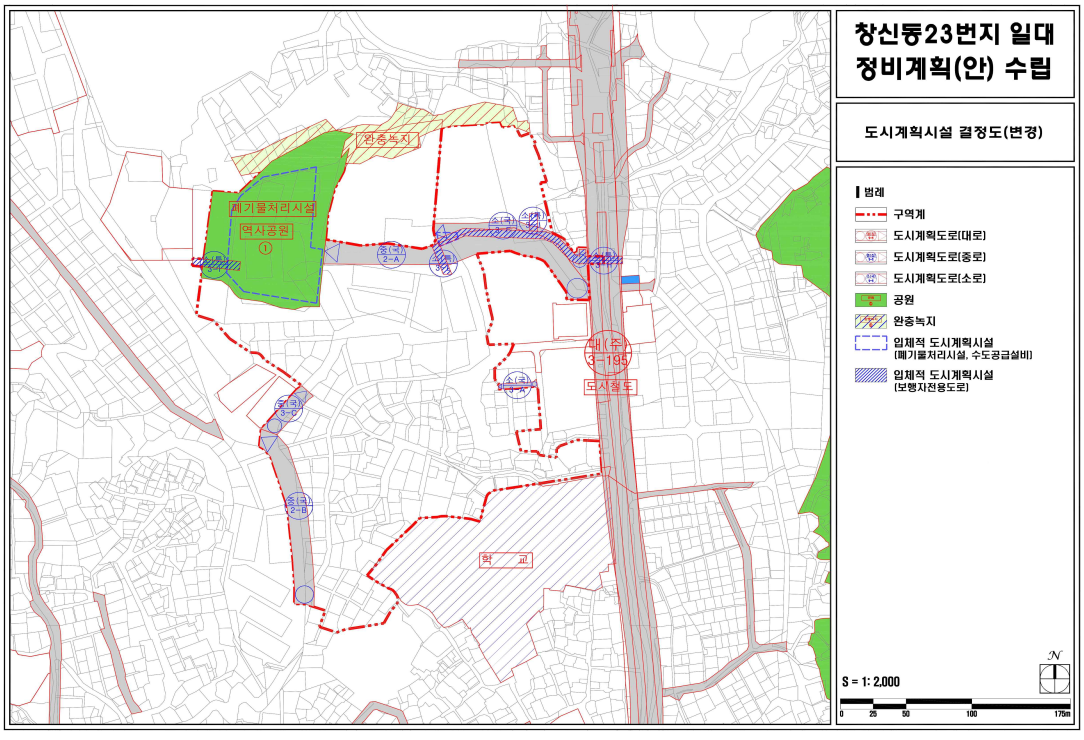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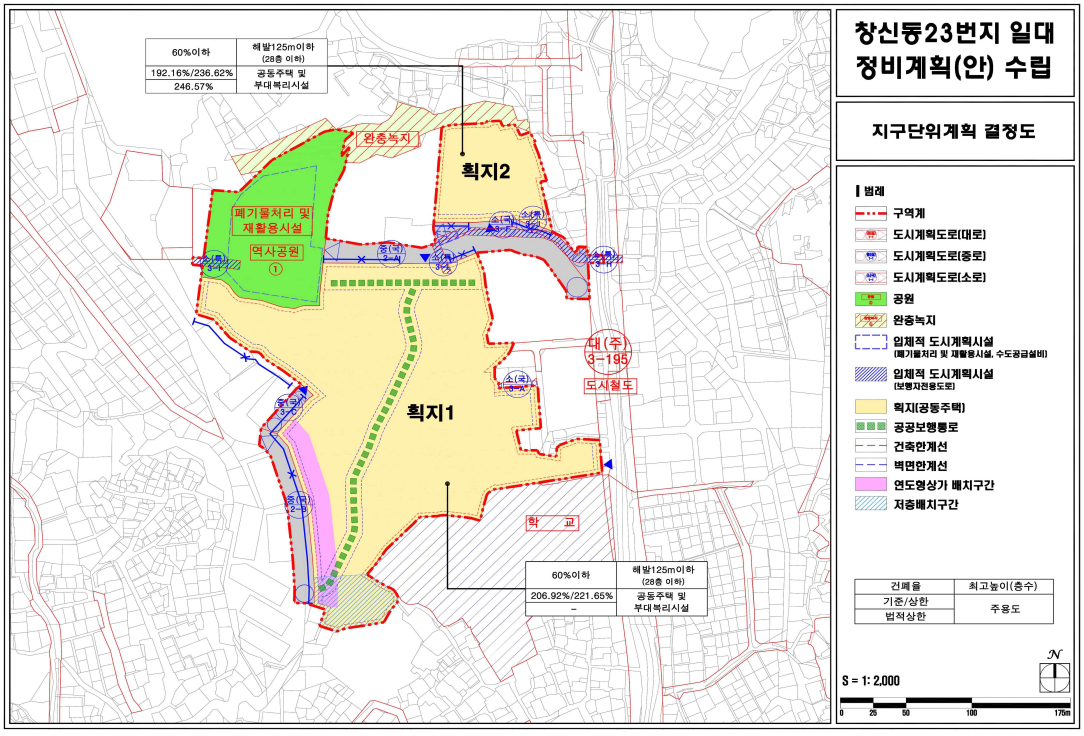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4호

##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분의 사업제안 등)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867호, 2019.7.12.)되고, 두 차례 재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346호, 2024.8.1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728호, 2024.10.4.) 되었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같은법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8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2024.12.1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 취소된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목적
      - 서울 동남권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혼잡도 완화
      - 위례신도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다. 사업구간: 송파구 위례신도시~강남구 신사동
   라. 사업규모: 연장 14.7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마. 사업기간: (건설) 착공일로부터 6년, (운영)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바. 사업추진방식: BTO-rs(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위험분담형)
   사. 최초제안자 : (가칭)강남메트로주식회사

2. 취소사유
   두 차례의 제3자 제안 재공고에도 민간의 사업 미참여

3.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5호

##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24. 12. 13.)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 연번 | 자치구 | 명 칭(가칭) | 위 치 | 면적(㎡) | 권리산정기준일 |
|---|---|---|---|---|---|
| 1 | 중랑구 | 면목동174-1일대 | 면목동174-1일대 | 35,969.7 | 2024.11.20. |
| 2 | 광진구 | 자양동 227-147일대 | 자양동 227-147일대 | 40,836.7 | 2024.09.20. |
| 3 | 강북구 | 미아동130일대 | 미아동130일대 | 71,095.9 | 2024.10.24. |
| 4 | 서대문구 | 홍제동287-118일대 | 홍제동287-118일대 | 15,345 | 2024.11.21. |

※ 면적은 참고용으로, 향후 측량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2.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동 실효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236)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 부서명 | 연락처 | 비고 |
|---|---|---|---|
| 중랑구 | 주택개발추진단 | 02-2094-6892 | |
| 광진구 | 주거사업과 | 02-450-9703 | |
| 강북구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 02-901-6868 | |
| 서대문구 |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 02-330-2964 | |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중랑구 면목동 174-1번지 일대

○ 광진구 자양동 227-147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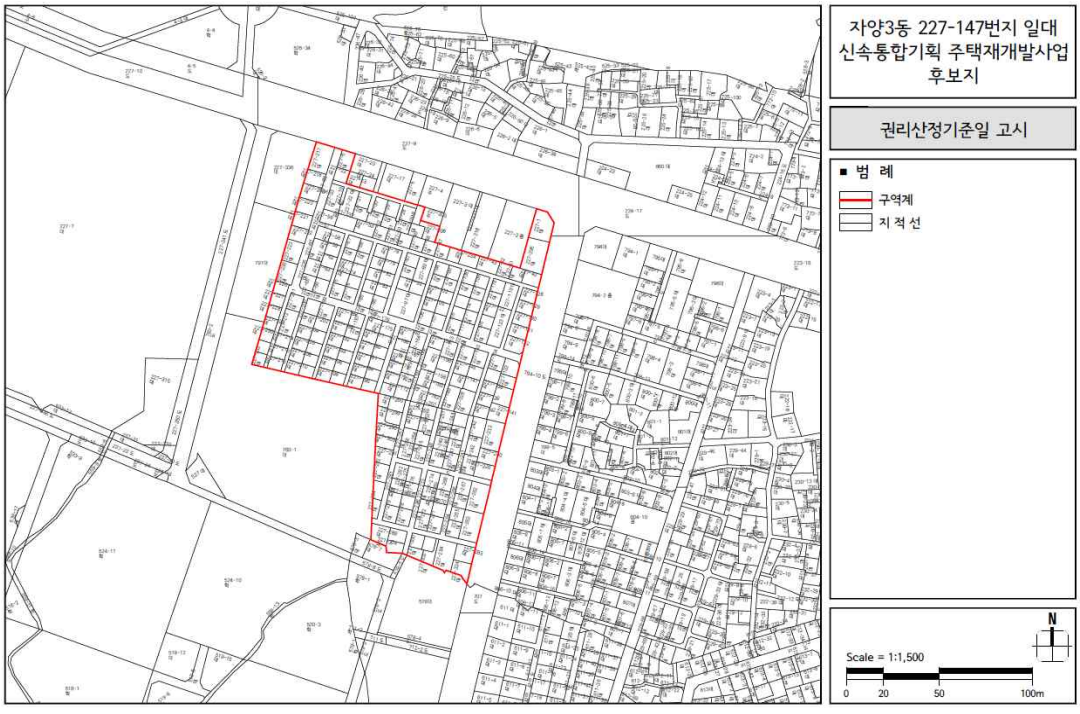

○ 강북구 미아동13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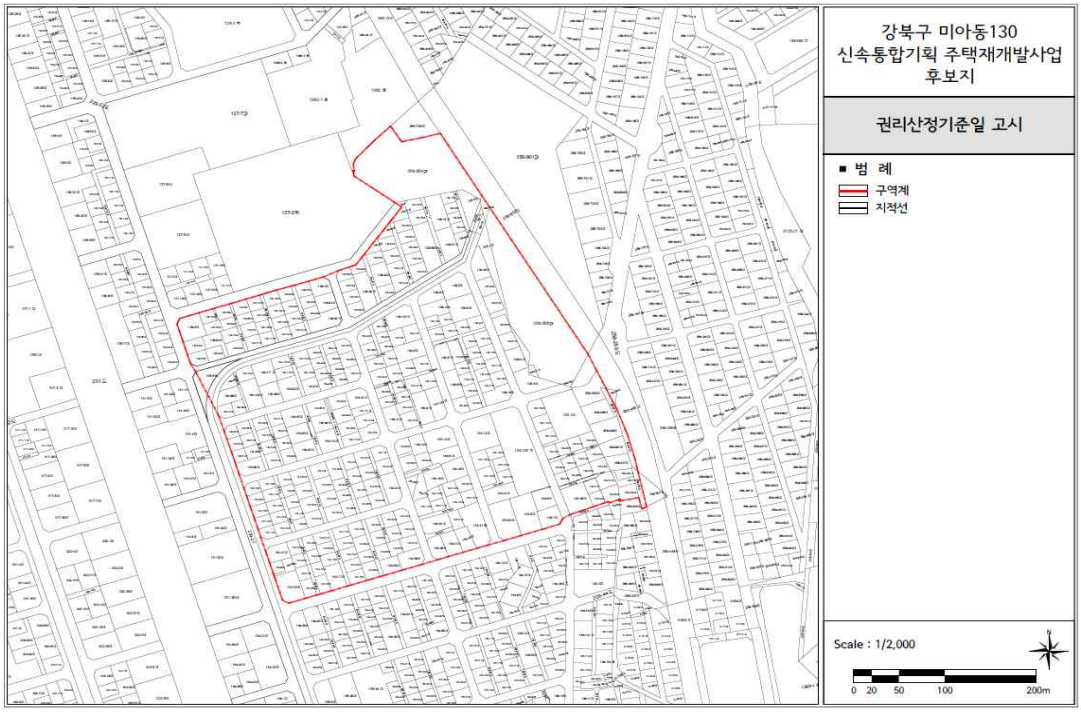


○ 서대문구 홍제동287-118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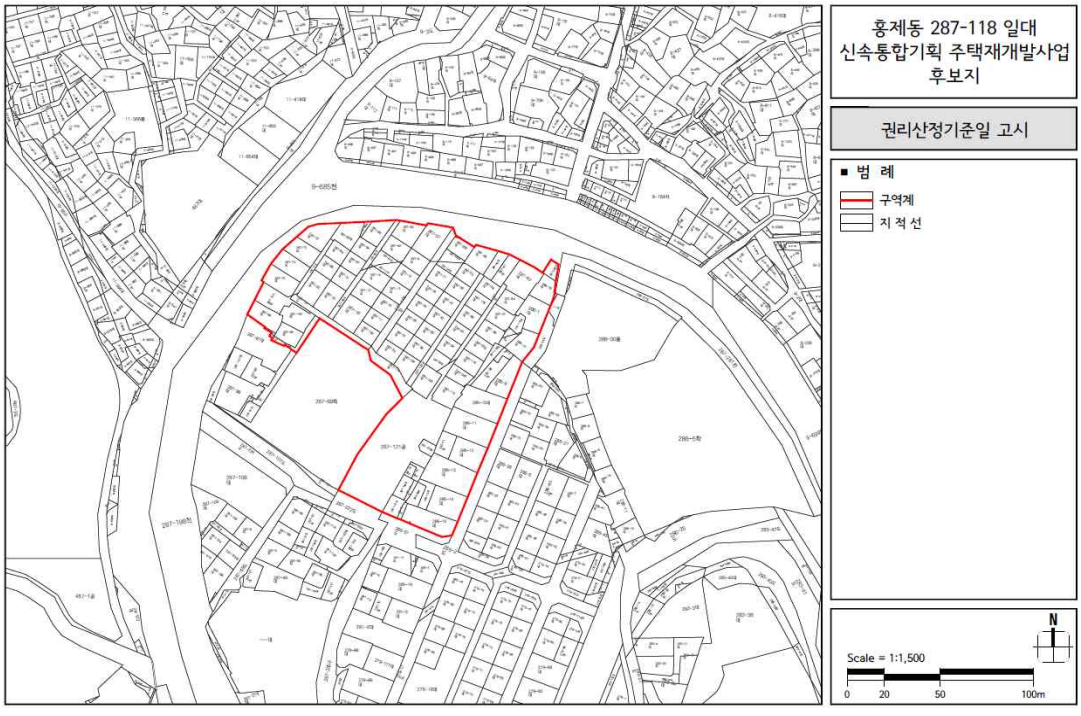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6호

##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구로구 고척동 52-332번지 일대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정비구역 현황

| 구역명 | 위 치 | 구역면적(㎡) | 추진단계 | 비고<br>(최초결정고시) |
|---|---|---|---|---|
| 고척동 한효아파트<br>재건축정비구역 | 구로구 고척동 52-332번지<br>일대 | 17,192 | 정비구역의 지정<br>(고시일: 2023.1.5.)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호<br>(2023.1.5.) |

   나. 해제기한 연장 : 2027. 1. 5.까지(2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4) 및 구로구 주택과(☎02-860-294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7호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 · 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 11. 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387호(2009. 10. 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9호(2014. 7. 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3호(2017. 6.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1호(2018. 4.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3호(2018. 8.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5호(2019. 3.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2호(2019. 11.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1호(2020. 6.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3호(2021. 6.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6호(2021. 12. 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호(2023.2.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96호(2023.3.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4호(2023.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호(2024.1.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 명칭 | 유형 | 위치 | 면 적(㎡) | | | 지정목적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 주거 지형 |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 | 948,492.3 | 감) 321.2 | 948,171.1 |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보광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년도 : 변경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연도 : 2025년 → 2032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 사람과 장소 중심의 매력적인 지형 순응형 주거지로 계획하여 사람 사는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

○ 남산, 한강 등 주변지역을 고려한 종합적 · 광역적 계획수립으로 효율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라. 재정비촉진지구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구 분 | | 면 적(㎡) | | | 구성비(%)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948,492.3 | 감) 321.2 | 948,171.1 | 100.0 | - |
| 주택용지 | 소계 | 660,560.3 | 감) 221.8 | 660,338.5 | 69.6 | - |
| | 주상복합 | 167,637.3 | 증) 559.4 | 168,196.7 | 17.7 | - |
| | 공동주택 | 492,923.0 | 감) 781.2 | 492,141.8 | 51.9 | 존치 아파트 포함 |
| 기타 | 소계 | 27,860.6 | 감) 5.8 | 27,854.8 | 3.0 | - |
| | 종교시설용지 | 10,631.1 | 감) 5.7 | 10,625.4 | 1.1 | - |
| | 우체국 | 450.0 | 감) 0.1 | 449.9 | 0.1 | - |
| | 근린생활용지 | 3,764.5 | - | 3,764.5 | 0.4 | - |
| | 기타용지 | 3,119.0 | - | 3,119.0 | 0.3 | 변전소 이전부지 |
| | 학교용지 | 9,896.0 | - | 9,896.0 | 1.1 | 존치4(보광초) |
| 공공용지 | 소계 | 260,071.4 | 감) 93.6 | 259,977.8 | 27.4 | - |
| | 도로 | 126,289.3 | 감) 135.6 | 126,153.7 | 13.3 | - |
| | 공원 | 48,154.2 | 증) 10.0 | 48,164.2 | 5.1 | - |
| | 녹지 | 2,801.0 | - | 2,801.0 | 0.3 | - |
| | 공공청사 | 3,050.0 | 증) 14.5 | 3,064.5 | 0.3 | - |
| | 사회복지시설 | 3,040.0 | 증) 17.5 | 3,057.5 | 0.3 | - |
| | 교육시설 | 60,930.4 | - | 60,930.4 | 6.4 | - |
| | 공공문화시설 | 10,851.5 | - | 10,851.5 | 1.2 | - |
| | 체육시설 | 4,955.0 | - | 4,955.0 | 0.5 | -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및 오기정정(3구역 편입예정 획지(411㎡)를 공동주택에서 주상복합으로 정정)

2) 인구 · 주택수용계획(변경) : 33,535인 / 12,976세대

| 구 분 | | 주택수(호) | | | 인구수(인) | |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계 | | 12,944 | 증)32 | 12,976 | 33,450 | 증)85 | 33,535 | - |
| 재정비 촉진구역 | 소계 | 12,244 | 증)32 | 12,276 | 31,834 | 증)85 | 31,919 | - |
| | 40㎡ 이하 | 954 | 증)6 | 960 | 2,480 | 증)16 | 2,496 | - |
| | 40㎡~60㎡ | 4,760 | 증)49 | 4,809 | 12,376 | 증)128 | 12,504 | - |
| | 60㎡~85㎡ | 3,759 | 증)2 | 3,761 | 9,773 | 증)6 | 9,779 | - |
| | 85㎡ 초과 | 2,771 | 감)25 | 2,746 | 7,205 | 감)65 | 7,140 | - |
| 존치관리구역 | | 700 | - | 700 | 1,616 | - | 1,616 | 기존세대 수용 |

※ 변경 인구수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대당 2.6인을 적용함
※ 변경사유 : 한남4 · 5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에 따른 결과 반영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구 분 | 명칭 | 개소 | 면적(㎡)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계 | | 12 | 82,826.9 | 증) 32.0 | 82,858.9 | - |
| 교육 시설 | 소 계 | 2 | 60,930.4 | - | 60,930.4 | - |
| | 초등학교 | 1 | 10,755.4 | - | 10,755.4 | - |
| | 중 · 고등학교 | 1 | 50,175.0 | - | 50,175.0 | - |
| 공공 · 체육 문화시설 | 소 계 | 10 | 21,896.5 | 증) 32.0 | 21,928.5 | - |
| | 공공청사 | 5 | 7,951.6 | 증) 14.5 | 7,966.1 | - |
| | 119안전센터 | 1 | 800.0 | - | 800.0 | - |
| | 사회복지시설 | 3 | 8,189.9 | 증) 17.5 | 8,207.4 | - |
| | 체육시설 | 1 | 4,955.0 | - | 4,955.0 | -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

| 구 분 | 명칭 | 개소 | 면적(㎡)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계 | | 12 | 50,955.2 | 증) 10.0 | 50,965.2 | - |
| 공원 시설 | 소 계 | 11 | 48,154.2 | 증) 10.0 | 48,164.2 | - |
| | 문화공원 | 3 | 17,364.9 | - | 17,364.9 | - |
| | 어린이공원 | 2 | 9,152.2 | 감) 1.4 | 9,150.8 | - |
| | 소공원 | 6 | 21,637.1 | 증) 11.4 | 21,648.5 | - |
| 녹지 시설 | 소 계 | 1 | 2,801.0 | - | 2,801.0 | - |
| | 연결녹지 | 1 | 2,801.0 | - | 2,801.0 | -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5) 교통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6) 경관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 구분 | 구역 번호 | 생활권 유형 | 동명 | 지번 | 면적(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방식 | 정비유형 |
|---|---|---|---|---|---|---|---|---|---|---|---|
| 기정 | 촉진2 | 뉴타운 | 보광동 | 265 | 11.5 | 170% | - | 60% | 2 | 재개발사업 | 전면개발 |
| 기정 | 촉진3 | 뉴타운 | 한남동 | 686 | 38.6 | 190% | - | 60% | 1 | 재개발사업 | 전면개발 |
| 기정 | 촉진4 | 뉴타운 | 보광동 | 360 | 16.0 | 190% | - | 60% | 2 | 재개발사업 | 전면개발 |
| 기정 | 촉진5 | 뉴타운 | 동빙고동 | 60 | 18.4 | 190% | - | 60% | 2 | 재개발사업 | 전면개발 |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 구 분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 | 사업의 종류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 948,492.3 | 감) 321.2 | 948,171.1 | - | - |
| 재정비 촉진구역 | 소 계(4개 구역) | | 844,941.1 | 감) 321.2 | 844,619.9 | - | - |
| |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 보광동 272-3번지 일대 | 114,580.6 | - | 114,580.6 | 재개발사업 | - |
| |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 한남동 686번지 일대 | 386,395.5 | - | 386,395.5 | 재개발사업 | - |
| |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 보광동 360번지 일대 | 160,258.0 | 감) 321.2 | 159,936.8 | 재개발사업 | - |
| |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 183,707.0 | - | 183,707.0 | 재개발사업 | - |
| 존치관리 구역 | 소 계(4개 구역) | | 103,551.2 | - | 103,551.2 | - | - |
| | 한남1 존치관리구역 | 보광동 151번지 일대 | 58,795.0 | - | 58,795.0 | - | 오산 중고등학교, 삼성리버빌 |
| | 한남2 존치관리구역 | 한남동 807번지 일대 | 28,996.0 | - | 28,996.0 | - | - |
| | 한남3 존치관리구역 | 한남동 550번지 일대 | 2,961.0 | - | 2,961.0 | - | - |
| | 한남4 존치관리구역 | 이태원동 15-13번지 일대 | 12,799.2 | - | 12,799.2 | - | 보광 초등학교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가)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없음)

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없음)

다)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

| 구 분 | | | 면 적(㎡) | | | 구성비(%)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 계 | | | 160,258 | 감) 321.2 | 159,936.8 | 100.0 | - |
| 주거지역 | 일반 주거 지역 | 소 계 | 131,222 | 감) 419.6 | 130,802.4 | 81.8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63 | 감) 1.4 | 1,561.6 | 1.0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29,557 | 감) 429.4 | 129,127.6 | 80.8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5 | 증) 11.2 | 56.2 | 0.0 | - |

| 구 분 | | | 면 적(㎡) | | | 구성비(%)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7 | - | 57.0 | 0.0 | - |
| | 준주거지역 | | 29,036 | 증) 98.4 | 29,134.4 | 18.2 | -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라)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변경없음)

10)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 고도지구(변경없음)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 용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12 | 남산 주변 |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123-15, 127-7, 141-11 일대 | 28m 이하 | 19,496 (986) | 건고 제174호 (72.5.8) | 건축물 높이산정기준 참조 |
| 기정 | 13 | 남산 주변 |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57-1, 72-16, 132-8, 한남동 737-57 일대 | 15m 이하 | 51,113 (663) | 건고 제174호 (72.5.8) | 건축물 높이산정기준 참조 |
| 기정 | 14 | 남산 주변 |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137-23 일대 | 23m 이하 | 1,241 (175) | 건고 제174호 (72.5.8) | 건축물 높이산정기준 참조 |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을 따르되, 건물 옥상돌출부, 옥상돌출물 및 필로티는 높이에 포함하며, 옥상에 설치되는 높이 3m 이내의 승강기탑·계단탑 및 난간벽(투시형 또는 그 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공간으로 되고 높이 1.5m 미만인 것에 한정)은 제외]

※ 지형차에 의한 높이완화 기준
- 완화범위: 대상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은 지역에 대해 완화
  (12m, 16m지역 → 최대 20m이하까지 완화 / 20m, 24m지역 → 최대 28m이하까지 완화)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한 높이완화기준
- 완화범위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市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최대 45m 범위 등 내에서 완화 가능

※ 완화적용 방법, 세부운영기준 등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평창 고도지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함

※ 높이 초과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 시 높이기준 완화 가능

※ 고도지구 지정 이전 건축으로 높이초과된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2호 가, 다목에 따른 호텔업에 한함)의 경우 기존 높이까지 완화 가능

※ ( )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임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 구분 | 구 역 명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기준 용적률 (%)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 최대 용적률 (%) | 높이계획 | | 비고 |
|---|---|---|---|---|---|---|---|---|---|
| | | | | | | | 평균층수/ 최고층수 | 최고높이(m) | |
| 촉진 구역 |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 주상복합, 주거 | 60이하 | 170 | 202 | 202 | - /14 | 45 | - |
| |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 주상복합, 주거 | 60이하 | 190 | 232.5 | 232.5 | - /22 | 73 | - |
| |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 주상복합, 주거 | 60이하 | 190 | 228 | 228 | - /23 | 73 | - |
| |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 주상복합, 주거 | 60이하 | 190 | 222.3 | 222.3 | - /23 | 73 | - |

※ 한남3,4구역 건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 가중평균선에서의 높이가 아닌 공동주택부분 지반층에서의 층수 기준 최고높이임(단, 구역전체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해발 90m 이하 적용)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변경없음)

| 구 분 | 획 지 명 | 최 고 높 이 | 비 고 |
|---|---|---|---|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 3-7-2 | 73m | |
| | 4-31-1 | 73m | |
| | 4-32-1 | 73m | |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변경)

| 구 역 명 | | 구역 면적 (㎡) | 기반시설면적(㎡) | | | | 시설제공 면적(㎡) (건축물등) -② | 국공유지(㎡) | | | 순부담 면적 (㎡) (①+②-③-④ -⑤) | 순부담률 (%) |
|---|---|---|---|---|---|---|---|---|---|---|---|---|
| | | | 합계 -① | 도로 | 공원 녹지 | 기타 | | 계획 기반 시설내 -③ | 기존 기반 시설내 -④ | 유상 매입 시설 -⑤ | | |
| 계 | 기정 | 844,941.1 | 204,508.2 | 121,701.3 | 50,955.2 | 31,851.9 | 18,244.6 | 59,396.0 | 60,405.7 | - | 102,951.1 | 12.2 |
| | 변경 | 844,619.9 | 204,414.6 | 121,565.7 | 50,965.2 | 31,883.9 | 18,244.6 | 59,396.0 | 60,405.7 | - | 102,857.5 | 12.2 |
| 촉진구역 | 한남2 재정비 촉진구역 | 114,580.6 | 30,821.7 | 19,008.8 | 5,993.6 | 5,819.3 | 4,940.0 | 12,302.4 | 11,721.1 | - | 11,738.2 | 10.2 |
| | 한남3 재정비 촉진구역 | 386,395.5 | 92,576.5 | 51,849.3 | 27,263.6 | 13,463.6 | 5,512.0 | 21,945.2 | 25,576.3 | - | 50,567.0 | 13.1 |
| | 한남4 재정비 촉진 구역 기정 | 160,258.0 | 43,981.0 | 29,763.0 | 8,128.0 | 6,090.0 | 3,796.0 | 17,426.6 | 10,718.0 | - | 19,632.4 | 12.3 |
| | 한남4 재정비 촉진 구역 변경 | 159,936.8 | 43,887.4 | 29,627.4 | 8,138.0 | 6,122.0 | 3,796.0 | 17,426.6 | 10,718.0 | - | 19,538.8 | 12.2 |
| | 한남5 재정비 촉진구역 | 183,707.0 | 37,129.0 | 21,080.2 | 9,570.0 | 6,479.0 | 3,996.6 | 7,721.8 | 12,390.3 | - | 21,013.5 | 11.4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일부 국·공유지를 매입(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에 따른 '순부담' 면적 산정시 무상양여 대상에 해당하는 국공유지(계획기반시설 내, 기존기반시설내)는 기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만 해당됨[주거사업과-6457(2018.6.8.)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 부담주체별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 구 분 | 비용분담 | | | | 비고 |
|---|---|---|---|---|---|
| | 시 | 구 | 교육청 | 민간 | |
| 도로 | - | - | - | ○ | (소로3-8호선 및 소로3-9호선 현황도로 정비포함)<br>(중로1-135호선 미조성도로 조성 및 도로정비 포함) |
| 주차장 | - | - | - | ○ | (한남2·3·4촉진구역 지하주차장 설치비 민간부담) |
| 공원·녹지 | - | - | - | ○ | - |

| 구 분 | 비용분담 | | | | 비고 |
|---|---|---|---|---|---|
| | 시 | 구 | 교육청 | 민간 | |
| 공공공지 | - | - | - | ○ | - |
| 공공청사 | - | - | - | ○ | (한남2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br>(한남3촉진구역 건축공사비 민간부담)<br>(한남4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br>(한남5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
| 사회복지시설 | - | - | - | ○ | (한남2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br>(한남3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br>(한남4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
| 학교 | - | - | - | ○ | (한남3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
| 체육시설 | - | - | - | ○ | (한남5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
| 청소년수련시설 | - | - | - | ○ | (한남5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br>(청소년 문화의집, 진로직업체험센터) |
| 문화시설(도서관) | - | - | - | ○ | (한남5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 구 분 | 구역명 | 계획 세대수 | 일반주택 (세대) | 임대주택(세대) | | | | | 비고 |
|---|---|---|---|---|---|---|---|---|---|
| | | | | 소계 | 전용면적 40㎡이하 | 전용면적 40~50㎡ | 전용면적 50~60㎡ | 전용면적 60~85㎡ | |
| 계 | | 12,244 | 10,396 | 1,848 | 709 | 809 | 300 | 30 | 기정 |
| | | 12,276 | 10,422 | 1,854 | 711 | 813 | 300 | 30 | 변경 |
| 한남 재정비 촉진 지구 | 한남2재정비 촉진구역 | 1,537 | 1,299 | 238 | 104 | 134 | - | - | - |
| |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 5,816 | 4,940 | 876 | 356 | 356 | 164 | - | - |
| | 한남4재정비 촉진구역 | 2,331 | 1,981 | 350 | 117 | 172 | 51 | 10 | - |
| | 한남5재정비 촉진구역 | 2,560 | 2,176 | 384 | 132 | 147 | 85 | 20 | 기정 |
| | | 2,592 | 2,202 | 390 | 134 | 151 | 85 | 20 | 변경 |

※ 한남4,5재정비촉진구역 :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010.6)에 의거하여 기준용적률 20%상향
※ 변경사유 :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에 따른 결과 반영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

| 구분 | 추진시기 | 이주시기 | 입주시기 | 대상 | 비고 |
|---|---|---|---|---|---|
| 1단계 | 2009년 | 2023년 | 2029년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 재개발사업 |
| 2단계 | 2010년 | 2026년 | 2030년 |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 재개발사업 |
| | | 2027년 | 2032년 | 한남4, 5재정비촉진구역 | 재개발사업 |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촉진구역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등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
※ 대규모 철거 및 이주로 인한 전세난이 우려될 경우 구청장은 전 단계 사업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다음단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시장이 권역별 주택수급 등을 판단하여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을 요구할 경우 구청장은 시기를 조정하여야 함
※ 변경사유 : 현재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한 이주 및 입주시기 조정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7) 방재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8) 정보화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9) 에너지순환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20)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한남2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다) 한남4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 구 분 |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360 일대 | 160,258 | 감) 321.2 | 159,936.8 | -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없음)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구 분 | 명 칭 | 면적(㎡) | | | 비율(%) | 비고 |
|---|---|---|---|---|---|---|
| |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 계 | | 160,258 | 감) 321.2 | 159,936.8 | 100.00 | - |
| 획지 | 소 계 | 115,341 | 감) 221.8 | 115,119.2 | 71.98 | - |
| | 주상복합 | 21,082 | 증) 559.4 | 21,641.4 | 13.53 | - |
| | 공동주택 | 94,259 | 감) 781.2 | 93,477.8 | 58.45 | -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43,981 | 감) 93.6 | 43,887.4 | 27.44 | - |
| | 도 로 | 29,763 | 감) 135.6 | 29,627.4 | 18.52 | - |
| | 공 원 | 8,128 | 증) 10.0 | 8,138.0 | 5.09 | 소공원, 어린이공원 |
| | 사회복지시설A | 2,040 | 증) 1.1 | 2,041.1 | 1.28 | 노인복지시설 등 |
| | 사회복지시설B | 1,000 | 증) 16.4 | 1,016.4 | 0.63 | 키움센터 |
| | 공공청사A | 1,200 | 증) 12.6 | 1,212.6 | 0.76 | 서울장학재단 등 |
| | 공공청사B | 1,400 | 증) 4.0 | 1,404.0 | 0.88 | 주민센터 |
| | 공공청사C | 450 | 감) 2.1 | 447.9 | 0.28 | 파출소 |
| 기반시설 | 소 계 | 450 | 감) 0.1 | 449.9 | 0.28 | - |
| | 우체국 | 450 | 감) 0.1 | 449.9 | 0.28 | - |
| 기타 | 소 계 | 486 | 감) 5.7 | 480.3 | 0.30 | - |
| | 종교시설 | 486 | 감) 5.7 | 480.3 | 0.30 | 보광사 |

※ 주차장은 사회복지시설A과 중복결정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및 오기정정(3구역 편입예정 획지(411㎡)를 공동주택에서 주상복합으로 정정)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1 | A | 15~30 (20~23.25) | 보조 도로 | 1,204 (737) | 보광동 129-1대 일대 | 이태원동 141-11대 일대 | 일반 도로 | - | 총고제772호 (36.12.26.) | 보광로 |
| 기정 | 중로 | 1 | 135 | 20~27 (23) | 보조도로 | 4,545 (334) | 반포대교 | 용비교 | 일반도로 | - | 건고제143호 (70.3.26) | |
| 기정 | 중로 | 2 | 10 | 15 | 집산 도로 | 410 (265) | 동빙고동 4-3도 일대 | 보광동 216-3도 일대 | 일반 도로 | - | 건고제578호 (36.12.26.) | -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2 | 14 | 15 | 집산 도로 | 500 (195) | 한남동 543-8대 일대 | 보광동 80-2대 일대 | 일반 도로 | - | 서고제590호 (78.11.8.) | - |
| 기정 | 중로 | 3 | 20 | 15 | 집산 도로 | 50 | 동빙고동 1-2도 일대 | 보광동 387-5대 일대 | 일반 도로 | - | 서고제2023-49호 (23.02.16) | - |
| 기정 | 중로 | 2 | A | 15~21 | 집산 도로 | 290 | 보광동 231-23대 일대 | 동빙고동 1-3대 일대 | 일반 도로 | - | 서고제2023-49호 (23.02.16) | - |
| 기정 | 소로 | 2 | A | 10 | 집산 도로 | 270 | 보광동 151-3도 일대 | 보광동 216-99도 일대 | 일반 도로 | - | 서고제2023-49호 (23.02.16) | - |

※ ( )는 구역내 폭원 및 연장을 의미함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1 | 공영주차장 | 보광동 215-2일대 | 2,040 | 증) 1.1 | 2,041.1 |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사회복지시설A 중복결정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 ▌공원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A | 공원 | 소공원 | 보광동 393일대 | 6,565.0 | 증) 11.4 | 6,576.4 |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 |
| 변경 | 3 | 공원 | 어린이 공원 | 보광동 35-13일대 | 7,536.3 (1,563) | 감) 1.4 (감)1.4) | 7,534.9 (1,561.6) | 서고제2017-223호 (2017.06.29.) | - |

※ ( ) : 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종류 | 위 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A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보광동 243-5일대 | 1,200 | 증) 12.6 | 1,212.6 |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 |
| 변경 | B | 공공청사 | 주민센터 | 보광동 216-56일대 | 1,400 | 증) 4.0 | 1,404.0 |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보광동 주민센터 |
| 변경 | C | 공공청사 | 파출소 | 보광동 216-12일대 | 450 | 감) 2.1 | 447.9 |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파출소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A | 사회복지시설 | 보광동 215-2일대 | 2,040 | 증) 1.1 | 2,041.1 |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주차장 중복결정 |
| 변경 | B | 사회복지시설 | 보광동 243-8일대 | 1,000 | 증) 16.4 | 1,016.4 |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다)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

| 구분 | 구역구분 |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 | | | 비고 |
|---|---|---|---|---|---|---|---|---|---|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 기정 | 한남4재정비 촉진구역 | 160,258 |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 712 | 1 | - | 711 | - | - |
| 변경 | 한남4재정비 촉진구역 | 159,936.8 |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 712 | 1 | - | 711 | - | - |

※ 존치되는 건축물 1개동은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 지역자산 보전계획에 따라 종교시설로 존치되는 보광사(무효묘)를 의미함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 건축시설계획(변경)

|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최고층수 | 최고 높이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 | | |
| 기정 | 한남4 재정비 촉진구역 | 160,258 | 4-30 | 18,593 | 용산구 보광동 448번지일대 | 공동주택 | 60이하 | 267이하 | 15층 | 55m |
| | | | 4-31(1) | 8,201 | 용산구 보광동 336번지일대 | 주상복합 | 60이하 | 348이하 | 23층 | 73m |
| | | | 4-31(2) | 18,763 | 용산구 보광동 373-1번지일대 | 공동주택 | 60이하 | 170이하 | 12층 | 46m |
| | | | 4-32(1) | 12,881 | 용산구 보광동 231-51번지일대 | 주상복합 | 60이하 | 345이하 | 23층 | 73m |
| | | | 4-32(2) | 20,142 | 용산구 보광동 342번지일대 | 공동주택 | 60이하 | 226이하 | 15층 | 55m |
| | | | 4-33 | 20,950 | 용산구 보광동 417번지일대 | 공동주택 | 60이하 | 140이하 | 12층 | 46m |
| | | | 4-34 | 15,400 | 용산구 보광동 168-32번지일대 | 공동주택 | 60이하 | 214이하 | 15층 | 55m |
| 변경 | 한남4 재정비 촉진구역 | 159,936.8 | 4-30 | 18,642.9 | 용산구 보광동 448번지일대 | 공동주택 | 60이하 | 268이하 | 15층 | 55m |
| | | | 4-31(1) | 8,254.3 | 용산구 보광동 336번지일대 | 주상복합 | 60이하 | 335이하 | 23층 | 73m |
| | | | 4-31(2) | 18,480.3 | 용산구 보광동 373-1번지일대 | 공동주택 | 60이하 | 176이하 | 12층 | 46m |
| | | | 4-32(1) | 12,955.2 | 용산구 보광동 231-51번지일대 | 주상복합 | 60이하 | 335이하 | 23층 | 73m |

|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최고층수 | 최고 높이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 | | |
| | | | 4-32(2) | 20,054.0 | 용산구 보광동 342번지일대 | 공동주택 | 60이하 | 230이하 | 15층 | 55m |
| | | | 4-33 | 20,910.3 | 용산구 보광동 417번지일대 | 공동주택 | 60이하 | 140이하 | 12층 | 46m |
| | | | 4-34 | 15,390.3 | 용산구 보광동 168-32번지일대 | 공동주택 | 60이하 | 214이하 | 15층 | 55m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구분 (전용면적) | 총세대수 | | | 분양세대 | | | 임대세대 | | |
|---|---|---|---|---|---|---|---|---|---|
| | 기정 | 증감 | 변경 | 기정 | 증감 | 변경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2,331 | - | 2,331 | 1,981 | | 1,981 | 350 | - | 350 |
| 40㎡미만 | 218 | 증)2 | 220 | 101 | 증)2 | 103 | 117 | - | 117 |
| 40~50㎡미만 | 344 | 증)4 | 348 | 172 | 증)4 | 176 | 172 | - | 172 |
| 50~60㎡미만 | 442 | 증)15 | 457 | 391 | 증)15 | 406 | 51 | - | 51 |
| 60~85㎡미만 | 626 | 감)13 | 613 | 616 | 감)13 | 603 | 10 | - | 10 |
| 85㎡이상 | 701 | 감)8 | 693 | 701 | 감)8 | 693 | - | -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배치, 높이 및 형태 지침도 참조 |
|---|---|

※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시설 설치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불합리한 구역계 조정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 및 건축심의 결과 반영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
| 재개발사업 | 2단계 (2010~2025년)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내수재해위험지구 EL(+)18.5m 이상 | 기정 |
| 재개발사업 | 2단계 (2010~2032년)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내수재해위험지구 EL(+)18.5m 이상 | 변경 |

※ 변경사유 :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반영

###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건립위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기준 |
|---|---|---|---|---|
| 계 | 23,000이상 | 350 | - | 15.0% |
|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 23,000이상 | 117 | 40㎡ 미만 | 5.0% |
| | | 172 | 40㎡~50㎡ 미만 | 7.4% |
| | | 51 | 50㎡~60㎡ 미만 | 2.2% |
| | | 10 | 60㎡ 초과 | 0.4% |

※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임대주택 확보

라) 한남5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없음)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 건축시설계획(변경)

| 결정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 높이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 | 평균층수 | 최고층수 | 최고높이 |
| 기정 | 한남5 재정비 촉진 구역 | 183,707 | 5-36 | 36,481 | 용산구 동빙고동 28-12번지일대 | 공동주택 | 60이하 | 190이하 | - | 12 | 41m |
| | | | 5-37 | 24,206 | 용산구 동빙고동 225-1번지일대 | 공동주택 | 60이하 | 205이하 | - | 15 | 50m |
| | | | 5-39 | 16,126 | 용산구 주성동 34-7번지일대 | 공동주택 | 60이하 | 150이하 | - | 10 | 35m |
| | | | 5-41 | 41,810 | 용산구 동빙고동 73번지일대 | 공동주택 | 50이하 | 215이하 | - | 12 | 41m |
| | | | 5-42 | 22,563 | 용산구 서빙고동 122-8번지일대 | 주상복합 | 60이하 | 395이하 | - | 23 | 73m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구분 (전용면적) | 총세대수 | | | 분양세대 | | | 임대세대 | | |
|---|---|---|---|---|---|---|---|---|---|---|
| | | 기정 | 증감 | 변경 | 기정 | 증감 | 변경 | 기정 | 증감 | 변경 |
| | 계 | 2,560 | 증)32 | 2,592 | 2,176 | 증)26 | 2,202 | 384 | 증)6 | 390 |
| | 40㎡미만 | 265 | 증)4 | 269 | 133 | 증)2 | 135 | 132 | 증)2 | 134 |
| | 40~50㎡미만 | 295 | 증)7 | 302 | 148 | 증)3 | 151 | 147 | 증)4 | 151 |
| | 50~60㎡미만 | 471 | 증)23 | 494 | 386 | 증)23 | 409 | 85 | - | 85 |
| | 60~85㎡미만 | 660 | 증)15 | 675 | 640 | 증)15 | 655 | 20 | - | 20 |
| | 85㎡이상 | 869 | 감)17 | 852 | 869 | 감)17 | 852 | - | -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배치, 높이 및 형태 지침도 참조 | | | | | | | | | |

※ 1.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공공시설 설치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불합리한 구역계 조정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3. 구역 전체의 건축물 높이는 해발 90m 이하 적용

※ 변경사유 :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에 따른 결과 반영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
| 재개발사업 | 2단계 (2010~2025년) |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현황 : 2,635세대<br>계획 : 2,560세대<br>감) 75세대 | - | 기정 |
| 재개발사업 | 2단계 (2010~2032년) |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현황 : 2,635세대<br>계획 : 2,592세대<br>감) 43세대 | - | 변경 |

※ 변경사유 :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및 건축심의에 따른 결과 반영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건립위치 | 연면적(㎡) | | 세대수 | | 세대규모(전용) | 비고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계 | 25,005 | 27,209 | 384 (15.0%) | 390 (15.0%) | - | - |
|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 25,005 | 27,209 | 132 (5.2%) | 134 (5.2%) | 40㎡ 미만 | - |
| | | | 147 (5.7%) | 151 (5.7%) | 40㎡~50㎡ | - |
| | | | 85 (3.3%) | 85 (3.3%) | 50㎡~60㎡ | - |
| | | | 20 (0.8%) | 20 (0.8%) | 60~85㎡ 미만 | - |

※ 변경사유 :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에 따른 결과 반영

2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 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에 명시

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360 일대 | 160,258 | 감) 321.2 | 159,936.8 | -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 | 면 적(㎡) | | | 구성비(%)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 계 | | | 160,258 | 감) 321.2 | 159,936.8 | 100.0 | - |
| 주거지역 | 일반 주거 지역 | 소 계 | 131,222 | 감) 419.6 | 130,802.4 | 81.8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63 | 감) 1.4 | 1,561.6 | 1.0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29,557 | 감) 429.4 | 129,127.6 | 80.8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5 | 증) 11.2 | 56.2 | 0.0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7 | - | 57.0 | 0.0 | - |
| | 준주거지역 | | 29,036 | 증) 98.4 | 29,134.4 | 18.2 |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159,936.8 | -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1 | 공영주차장 | 보광동 215-2일대 | 2,040 | 증) 1.1 | 2,041.1 |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사회복지시설A 중복결정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 공원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A | 공원 | 소공원 | 보광동 393일대 | 6,565.0 | 증) 11.4 | 6,576.4 |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 |
| 변경 | 3 | 공원 | 어린이 공원 | 보광동 35-13일대 | 7,536.3 (1,563) | 감) 1.4 (감)1.4) | 7,534.9 (1,561.6) | 서고제2017-223호 (2017.06.29.) | - |

※ ( ) : 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종류 | 위 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A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보광동 243-5일대 | 1,200 | 증) 12.6 | 1,212.6 |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 |
| 변경 | B | 공공청사 | 주민센터 | 보광동 216-56일대 | 1,400 | 증) 4.0 | 1,404.0 |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보광동 주민센터 |
| 변경 | C | 공공청사 | 파출소 | 보광동 216-12일대 | 450 | 감) 2.1 | 447.9 |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파출소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A | 사회복지시설 | 보광동 215-2일대 | 2,040 | 증) 1.1 | 2,041.1 |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주차장 중복결정 |
| 변경 | B | 사회복지시설 | 보광동 243-8일대 | 1,000 | 증) 16.4 | 1,016.4 | 서고제2023-49호 (2023.02.16) | -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 획지번호 | 면적(㎡)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획지 | 4-30 | 18,593 | 증) 49.9 | 18,642.9 | - |
| 변경 | 획지 | 4-31(1) | 8,201 | 증) 53.3 | 8,254.3 | - |
| 변경 | 획지 | 4-31(2) | 18,763 | 감) 282.7 | 18,480.3 | - |
| 변경 | 획지 | 4-32(1) | 12,881 | 증) 74.2 | 12,955.2 | - |
| 변경 | 획지 | 4-32(2) | 20,142 | 감) 88.0 | 20,054.0 | - |
| 변경 | 획지 | 4-33 | 20,950 | 감) 39.7 | 20,910.3 | - |
| 변경 | 획지 | 4-34 | 15,400 | 감) 9.7 | 15,390.3 | -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나) 건축물 용도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 용적률 계획(변경)

| 구분 | | 용적률 | | | 비고 |
|---|---|---|---|---|---|
|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
| 기정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 190% 이하 | - | 228% 이하 | 정비계획 용적률 226.98% |
| 변경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 190% 이하 | - | 228% 이하 | 정비계획 용적률 227.46% |

※ 변경사유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측량 및 건축심의 결과 반영

▌ 높이 계획(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바.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사. 열람 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 (☎02)2133-7218) 및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02)2199-7452, 744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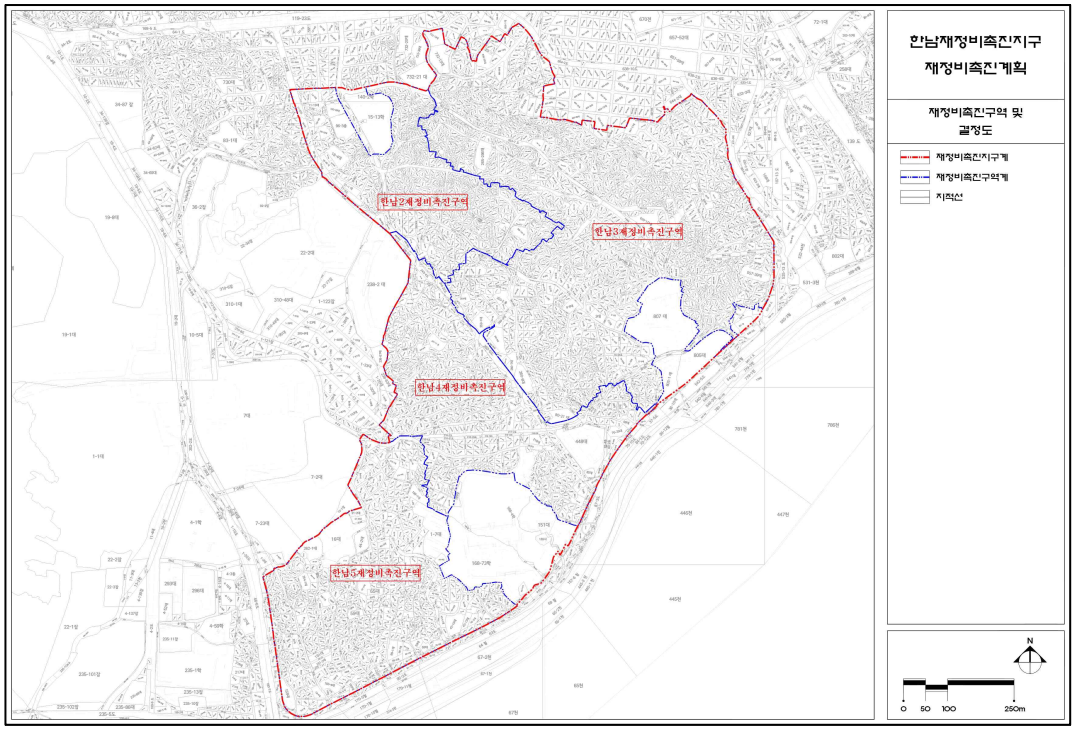


[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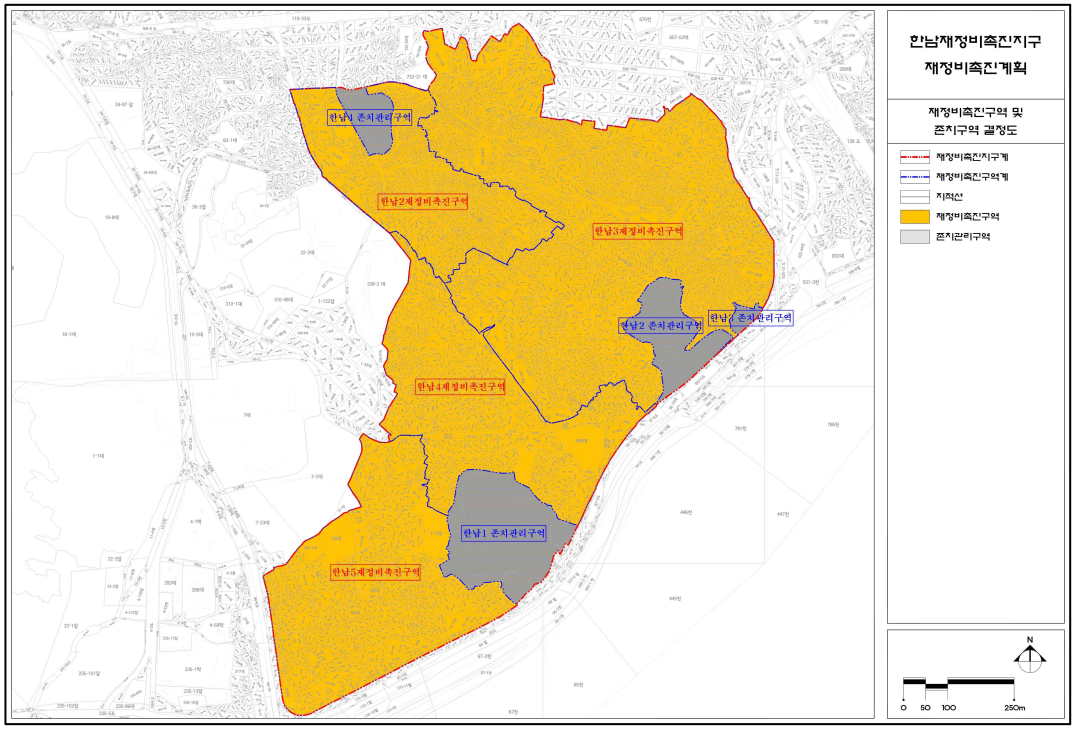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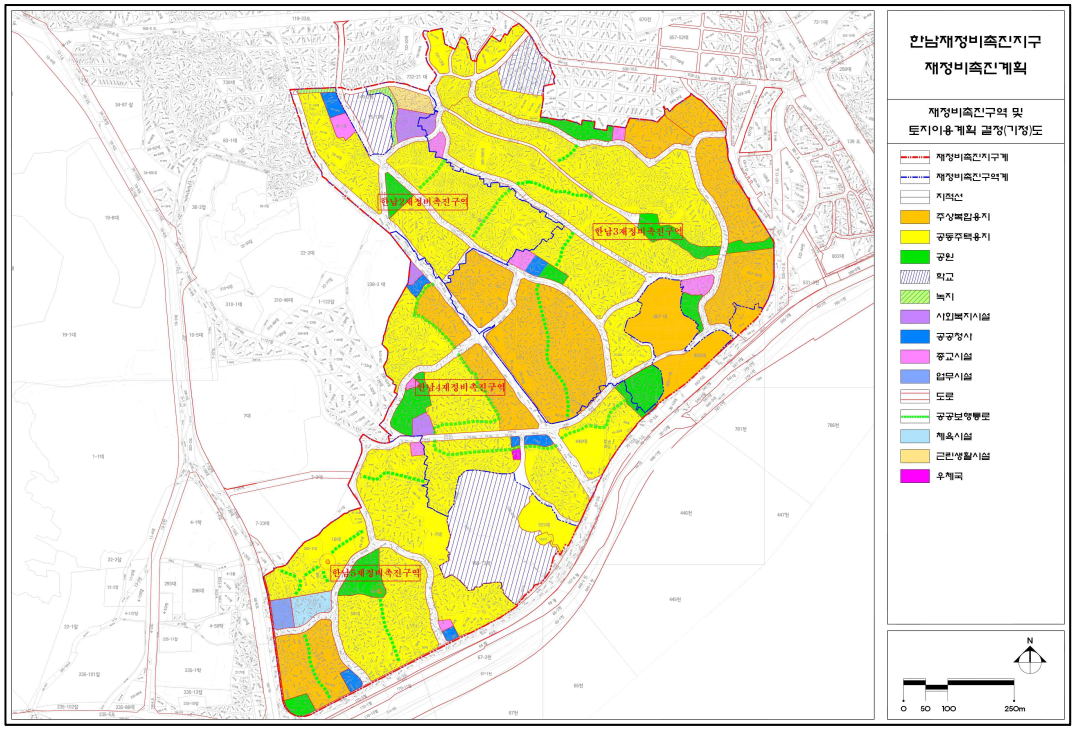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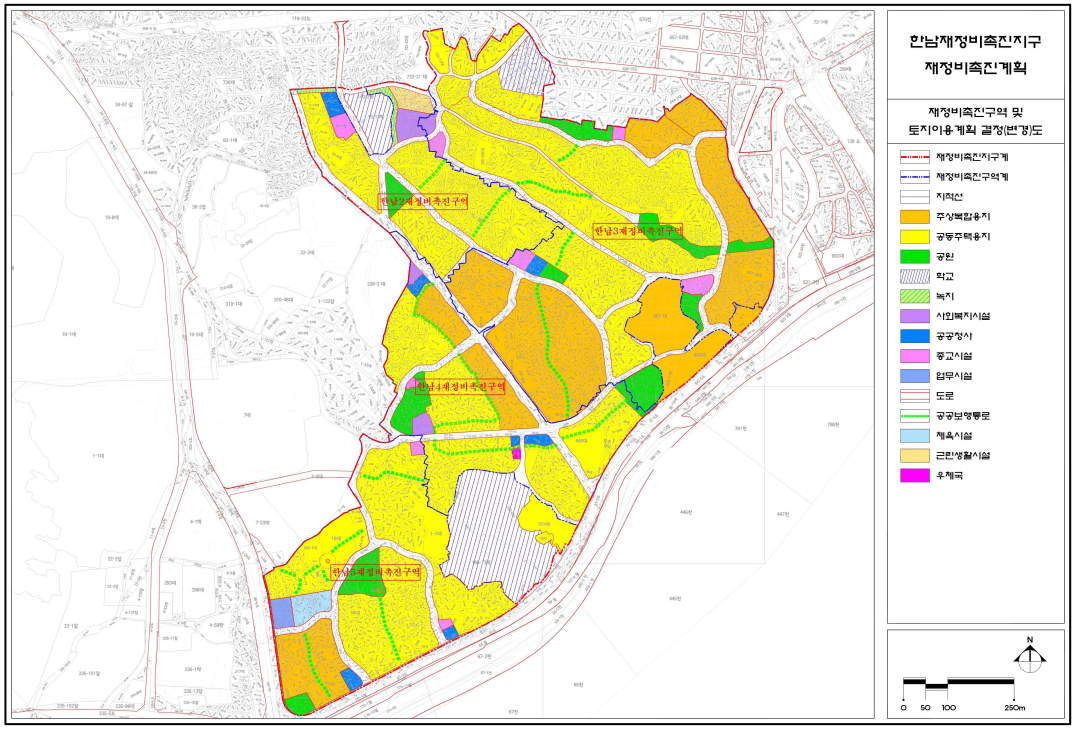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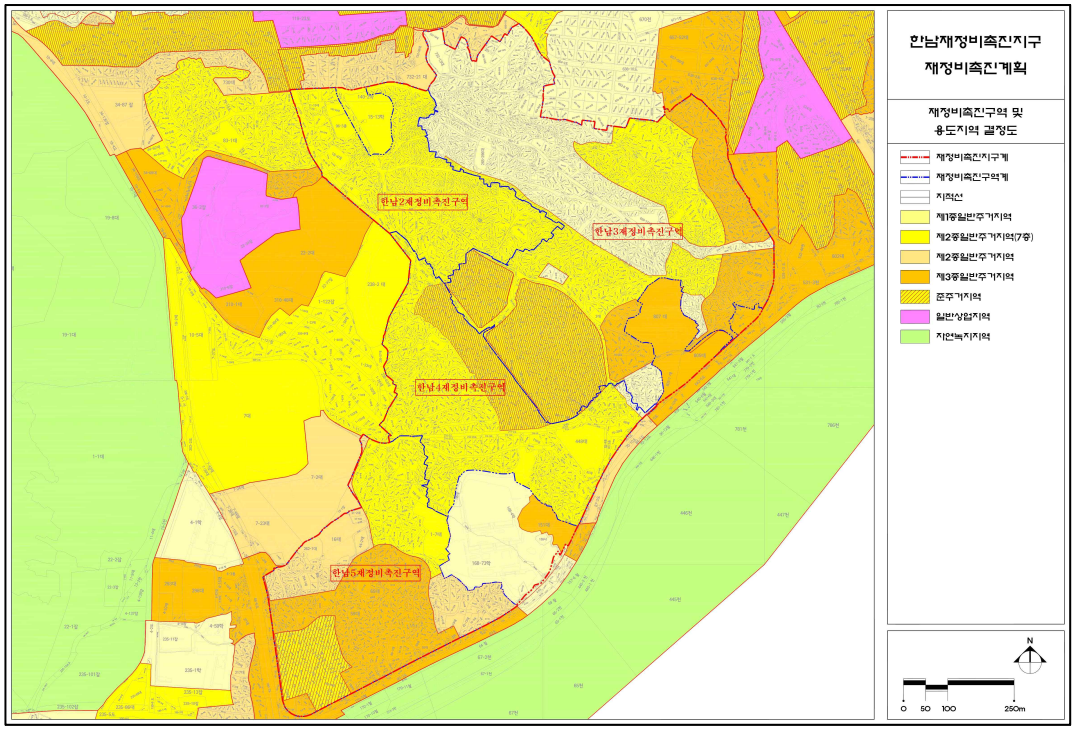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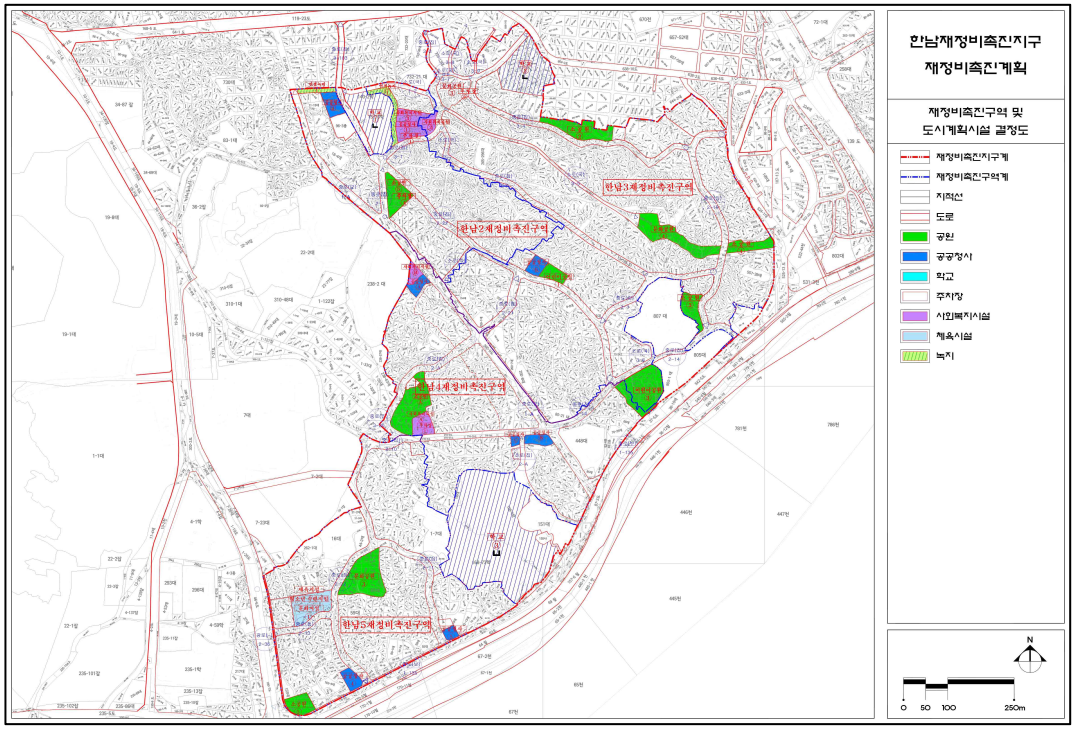

[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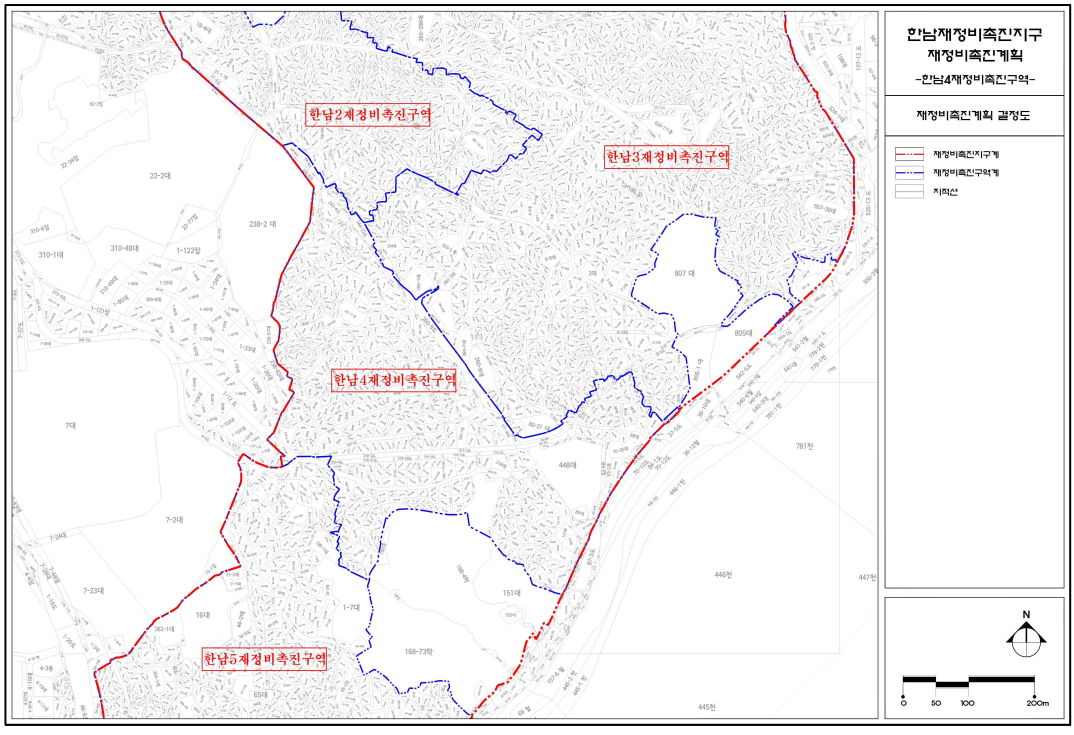


[ 한남4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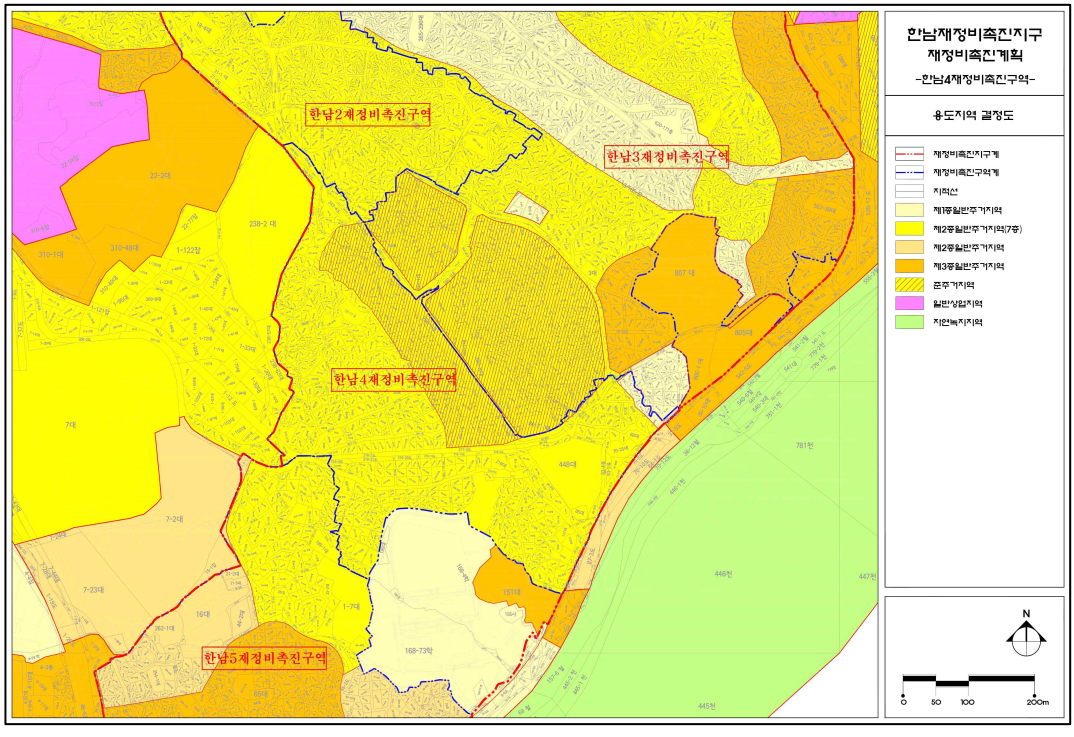

[ 한남4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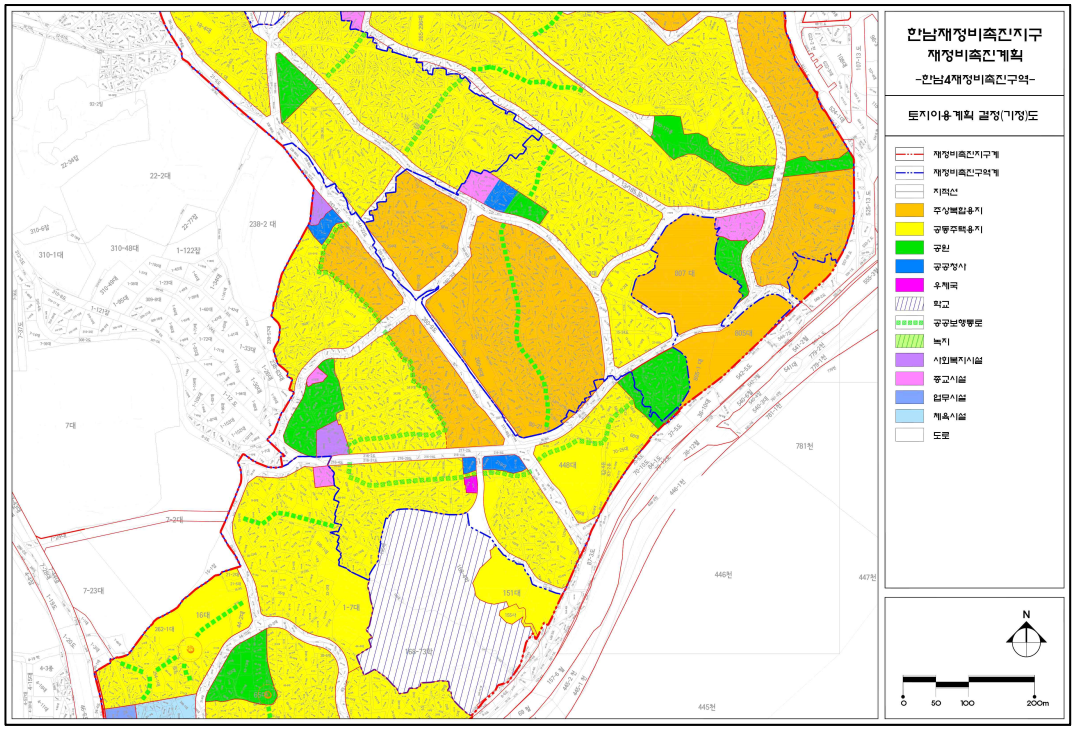


[ 한남4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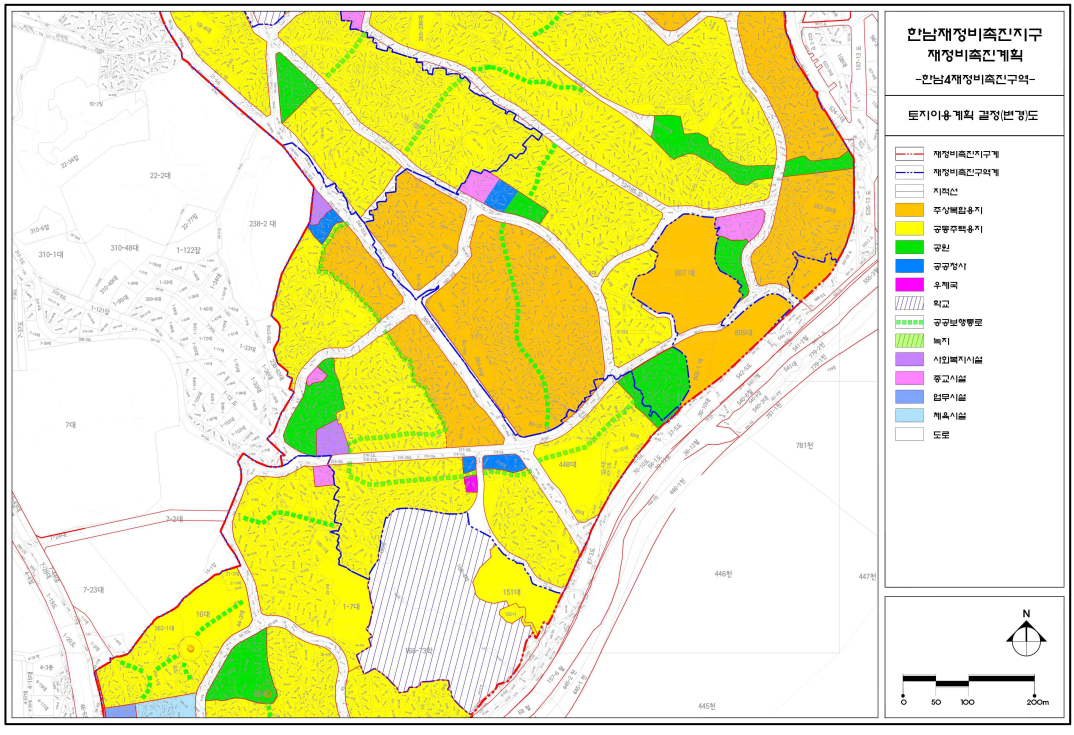

[ 한남4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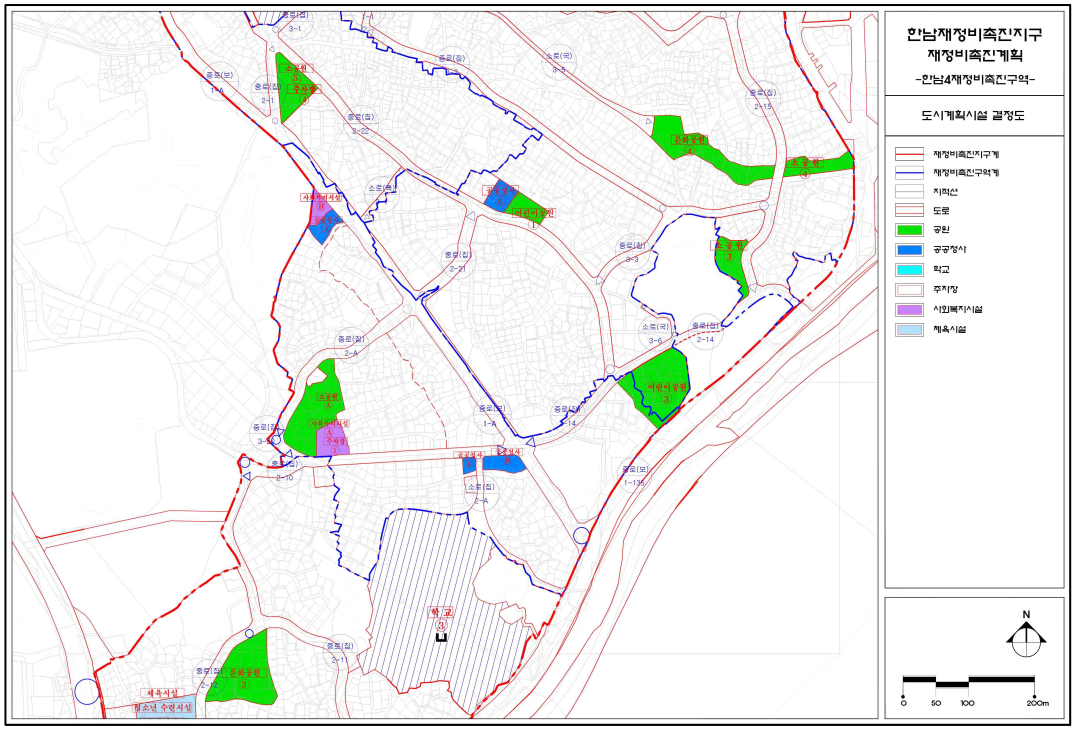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8호

#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 7항에 따라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목적
   가. 신영동 저층주거단지의 특수성 반영 및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도모
   나. 휴먼타운 2.0시범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주택 조성 및 마을미관 증진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건축구역 |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 14,062 |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 구역명 | 용 도 | 구역 내 건축물 동 수 |
|---|---|---|
|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건축구역 | 아파트 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9동 |

   나. 특례적용사항

| 구역명 | 특례적용대상 | 적용여부 | 적용취지 |
|---|---|---|---|
| 너와나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건축 구역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제3항 | 조건부 완화 | - 자연경관지구 조경면적 제한으로 사업성 확보 및 주거환경개선에 제약<br>- 옥상녹지의 확대로 입체녹화를 통한 도시녹지 공간확보 및 녹지체계의 다양성 확보<br>- 전면공지 및 주차공간 등의 개선을 통해 개방된 가로공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 효과 |

| 구역명 | 특례적용대상 | 적용여부 | 적용취지 |
|---|---|---|---|
| |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 조건부 완화 | - 자연경관지구 등 관리계획상 건축규제로 인해 노후·불량 건축물 방치 및 신축 미비<br>- 건폐율 완화로 사업성 확보 및 자연경관지구를 고려한 저층 건축물 유도<br>- 경사대지 지하공간 활성화(지하주차장 등) 및 가로변 미관증진과 가로공간 개선 효과 |
| |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조건부 완화 | - 개별필지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 부족<br>- 용적률 완화적용을 통한 사업성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유도<br>- 우수한 디자인의 단독주택조성 및 마을경관 창출 유도 (건축한계선 지정 등) |
| |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 적용 완화 | - 소규모 필지 내 사업성으로 인한 건축면적 확보를 위해 획일적인 배치로 도시미관 저하<br>- 이격거리 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건축배치 유도 (민법상 최소 이격거리 0.5m준수) |
|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적용 완화 | - 자연경관지구에서의 높이제한으로 사업성 확보 및 경관증진에 제약<br>- 층수 및 높이제한 완화로 다양한 스카이라인 조성 및 도시미관 증진<br>- 필로티, 공지 등 가로공간 확보를 통한 사업성 증대 및 주거환경개선효과 |

4.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사항

가.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 운영 · 관리(안)

| | |
|---|---|
| 운영 원칙 | -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3년간 한시적 운영으로 성과 등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지속 운영 여부 판단<br>-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 건축물 건축신고/인허가 후 12개월 내 착공신고 원칙,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특례 사항 무효 처리 |
| 운영 관리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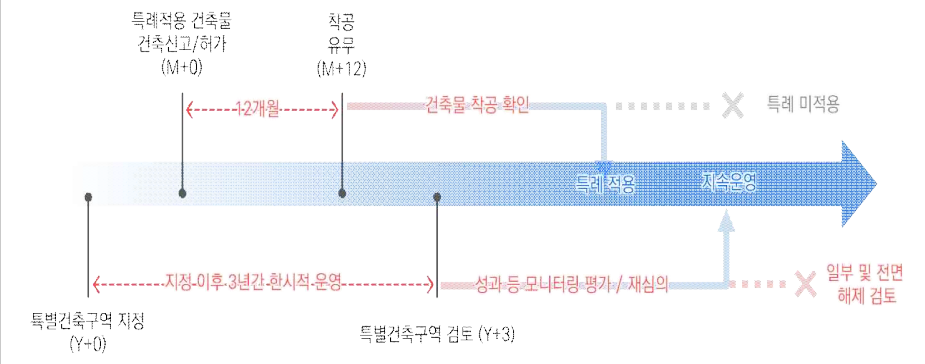 |

나. 열람장소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4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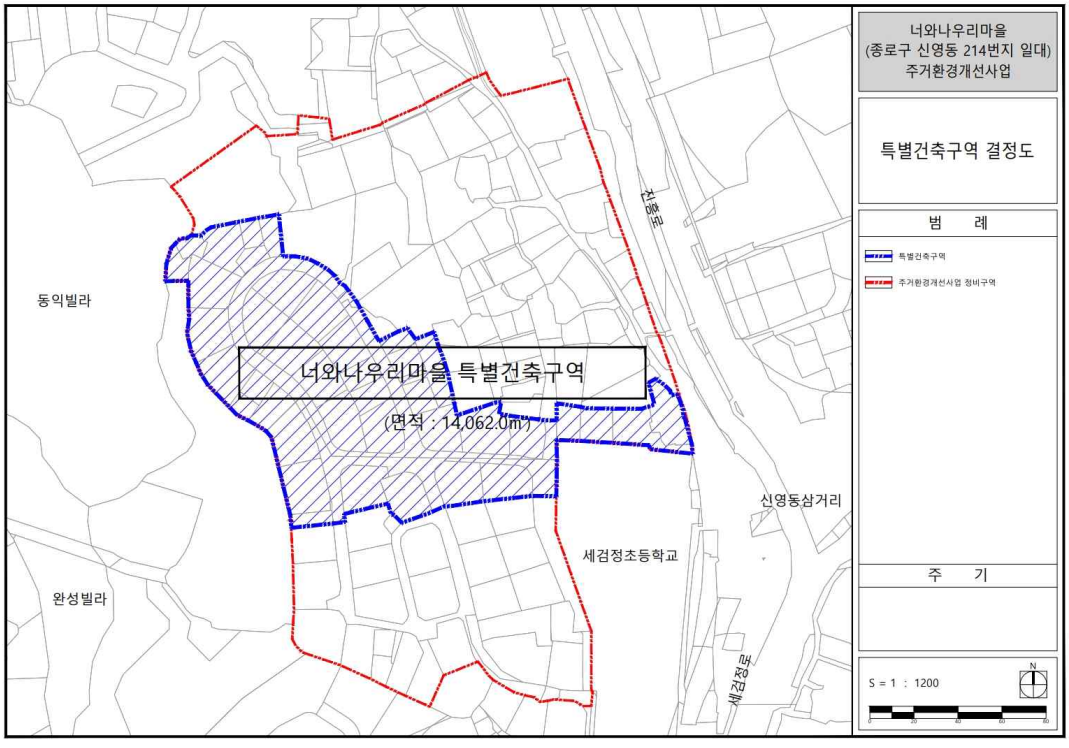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9호

##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4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5호(2009.09.10.)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6호(2010.09.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0호(2012.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6호(2013.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6호(2016.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6호(2017.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6호(2017.0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8호(2018.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0호(2019.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7호(2020.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8호(2020.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3호(2020.1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4호(2020.1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4호(2021.06.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9호(2021.0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89호(2021.10.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호(2022.0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3호(2022.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21호(2022.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45호(2022.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4호(2023.0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호(2023.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7호(2023.03.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0호(2023.12.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0호(2024.0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0호(2024.10.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 구분 | 구역명 | 유형 | 위치 | 면 적 (㎡) | |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 중심지형 | 동대문구 용두·전농동 일대 | 358,116.4 (370,774.3) | 감) 28.6 | 358,087.8 | 최초결정일 : 2009.09.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5호) |

※ ( )는 기고시(서고시 제2024-500호, ' 24.10.24)시 오기 면적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변경

가. 기준년도 : 2010년

나. 목표연도 : 2030년

3.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부도심 기능 회복도모

나. 청량리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을 통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균형발전 도모(청량리 광역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울 동북권의 관문역할 수행)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함

4.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존치관리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 : 변경

| 구분 | 사업방식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총계 | | | | 358,116.4 | 감) 28.6 | 358,087.8 | - |
| 촉진지구 | 소계 | | | 148,485.9 | 감) 28.6 | 148,457.3 | - |
|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청량리1재정비촉진구역 | 용두동 10-12일대 | 1,819.2 | - | 1,819.2 | - |
| | | 청량리2재정비촉진구역 | 용두동 786일대 | 1,938.3 | - | 1,938.3 | - |
| | |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 용두동 11-1일대 | 7,020.6 | - | 7,020.6 | - |
| | |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 전농동 620-47일대 | 41,602.5 | 감) 28.6 | 41,573.9 | - |
| | |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 용두동 26일대 | 51,665.9 | - | 51,665.9 | - |
| | | 전농재정비촉진구역 | 용두동 494일대 | 28,202.4 | - | 28,202.4 | - |
| | 주택재개발 |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 전농동 643일대 | 16,237.0 | - | 16,237.0 | - |
| | 개별건축 | 소계 | | 209,630.5 | - | 209,630.5 | - |
| | | 존치지역 (존치관리구역) | | 209,630.5 | - | 209,630.5 | - |

5.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결정 :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외 다른 구역 변경없음

6.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 : 변경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br>(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동대문구<br>전농동 620-47일대 | 41,602.5 | 감) 28.6 | 41,573.9 | - |

■ 결정(변경) 사유서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변경 | • 구역 면적 변경 (구역계 변경 없음)<br>- 41,602.5㎡ → 41,573.9㎡ 감)28.6㎡ |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 구분 | | 면 적 (㎡) | | | 구성비(%)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계 | | 41,602.5 | 감) 28.6 | 41,573.9 | 100.0 | - |
| 주거지역 | 소계 | 1,788.4<br>(1,509.7) | 증) 17.9 | 1,806.3 | 4.35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474.0<br>(475.9) | 증) 19.3 | 493.3 | 1.19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314.4<br>(1,033.8) | 감) 1.4 | 1,313.0 | 3.16 | - |
| 상업지역 | 소계 | 39,814.1<br>(40,092.8) | 감) 46.5 | 39,767.6 | 95.65 | - |
| | 일반상업지역 | 39,814.1<br>(40,092.8) | 감) 46.5 | 39,767.6 | 95.65 | - |

※ ( )는 기고시(서고시 제2023-14호, ' 23.01.12)시 오기 면적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전농동<br>620-47일대 | • 용도지역별 면적 변경<br>-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br>474.0㎡ → 493.3㎡ 증) 19.3㎡<br>- 제3종일반주거지역<br>1,314.4㎡ → 1,313.0㎡ 감) 1.4㎡<br>- 일반상업지역<br>39,814.1㎡ → 39,767.6㎡ 감) 46.5㎡ |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 변경 |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구분 | | | 면 적 (㎡) | | | 구성비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계 | | | 41,602.5 | 감) 28.6 | 41,573.9 | 100.0 | - |
| 획지 | 소계 | | 26,330.2 | - | 26,330.2 | 63.3 | - |
| | 복합용지 | | 26,330.2 | - | 26,330.2 | 63.3 | - |
| 정비기반시설 | 소계 | | 15,272.3 | 감) 28.6 | 15,243.7 | 36.7 | - |
| | 도로 | | 9,874.0 | 감) 20.3 | 9,853.7 | 23.7 | - |
| | 공원 | | 3,522.0 | - | 3,522.0 | 8.5 | - |
| | 광장 | | 495.0 | 감) 8.3 | 486.7 | 1.2 | - |
| | 녹지 | | 842.7 | - | 842.7 | 2.0 | - |
| | 보행자전용도로① | | 538.6 | - | 538.6 | 1.3 | 소로(특) 3- |
| | 입체적 결정 | 보행자 전용도로② | - | 증) 374.9 | 374.9 | - | 선상광장연결통로(4F) |
| | | 지하도로 | 66.26 | 증) 250.52 | 316.78 | - | 4번출입구(B1F): 30.06㎡<br>5번출입구(B1F): 36.2㎡<br>민자역사연결통로(B1F):250.52㎡ |

※ 보행자전용도로② 및 지하도로는 지상·지하 연결통로(입체적결정시설)로 합계 면적에서 제외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전농동 620-47 일대 | •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br>- 도로 면적 변경<br>9,874.0㎡ → 9,853.7㎡ 감) 20.3㎡<br>- 광장 면적 변경<br>495.0㎡ → 486.7㎡ 감) 8.3㎡<br>• 토지이용계획상 지상·지하 연결통로 면적 반영<br>- 보행자전용도로② (선상광장연결통로, 4F)<br>0㎡ → 374.9㎡ 증) 374.9㎡<br>- 지하도로 (민자역사연결통로, B1F)<br>66.26㎡ → 316.78㎡ 증) 250.52㎡ |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br>• 토지이용계획상 지상·지하 연결통로 면적 반영 |

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 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대로 | 1 | - | 8~35.5 | 집산도로 | 271 | 전농동 625-3 | 전농동 588-1 | 일반도로 | - | 서고시 제1996-359호 ('96.12.31.) | - |
| 기정 | 대로 | 1 | 51 | 35~42 | 주간선도로 | 3,300 | 종로6가 89 | 청량리동 749 | 일반도로 | - | 서고시 제2020-427호 ('20.10.22) | - |
| 기정 | 대로 | 3 | 130 | 25~47 | 보조간선도로 | 2,100 | 오스카 극장동측 | 전농동 광장 | 일반도로 | - | 서고시 제1998-187호 ('98.05.01) | - |
| 폐지 | 중로 | 1 | 383 | 20 | 보조간선도로 | 476 | 전농동 675 | 전농동 588-1 | 고가일반도로 | - | 서고시 제1997-63호 ('97.03.07) | 구역 외 |
| 기정 | 중로 | 2 | 379 | 15 | 집산도로 | 92 | 용두동 9-7 | 용두동 47-7 | 일반도로 | - | 서고시 제1996-359호 ('96.12.31) | - |
| 기정 | 중로 | 2 | 380 | 12~15 | 집산도로 | 303 | 전농동 622-8 | 전농동 620-67 | 일반도로 | - | 서고시 제2013-176호 ('13.06.07) | - |
| 기정 | 중로 | 2 | - | 5.9~17.6 | 특수도로 | 19.6 | 전농동 620-67 | 전농동 620-69 | 지하도로 | - | 서고시 제2016-166호 ('16.06.16) | 중복결정 광장170.1㎡ 입체적결정 : 30.06㎡ |
| 기정 | 중로 | 2 | - | 15 | 특수도로 | 38.8 | 전농동 620-67 | 전농동 620-69 | 지하도로 | - | 서고시 제2016-166호 ('16.06.16) | 중복결정 광장467.4㎡ 입체적결정 : 36.2㎡ |
| 신설 | 소로 | 2 | - | 7.3~8.2 | 특수도로 | 55.2 | 전농동 588-179 | 전농동 588-1 | 보행자전용도로 | - | - | 중복결정 철도56.1㎡ 입체적결정 : 374.9㎡ |
| 신설 | 소로 | 2 | - | 8.2~9.4 | 특수도로 | 47.5 | 전농동 620-181 | 전농동 588-1 | 지하도로 | - | - | 중복결정 철도103.6㎡ 입체적결정 : 250.52㎡ |
| 기정 | 소로 | 3 | - | 6 | 특수도로 | 90 | 전농동 620-88 | 전농동 620-51 | 보행자전용도로 | - | 서고시 제2013-176호 ('13.06.07) | - |

※ 중로1-383은 구역 외 시설이나 금회 변경 사항으로 일괄 처리함

■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중로 1-383 | - | • 도로 폐지(구역 외) | • 「전농동588~배봉로간 고가도로 건설취소」에 따른 도로 폐지 |
| - | 소로 2-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br>- B=7.3~8.2m, L=55.2m | • 선상광장연결통로 조성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 - | 소로 2- | • 지하도로 신설<br>- B=8.2~9.4m, L=47.5m | • 민자역사연결통로 조성을 위해 지하도로 신설 |

(2) 보행자전용도로 입체적 결정조서 : 신설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구분 | 내 용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 | 보행자 전용도로 | 전농동 588-179 | 길이 | - | 증) 55.2m | 55.2m | - | 지상 (4F) |
| | | | | 폭 | - | 증) 6.5~6.9m | 6.5~6.9m | | |
| | | | | 높이 | - | 증) 25.6~32.2m | 25.6~32.2m | | |
| | | | | 면적 | - | 증) 374.9㎡ | 374.9㎡ | | |

※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면적 등은 추후 관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보행자 전용도로 | • 보행자전용도로 입체적 결정<br>면적 : 374.9㎡ (지상4층) | • 선상광장 연결통로 조성 및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입체적 결정 |

(3)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조서 : 변경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구분 | 내 용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① | 지하 도로 | 전농동 620-69 일원 | 길이 | 1.7m | - | 1.7m | 서고시 제2006-166호 ('16.06.16) | 지하 (B1F) |
| | | | | 폭 | 17.5m | - | 17.5m | | |
| | | | | 높이 (해발고도) | 8.1~11.5m | - | 8.1~11.5m | | |
| | | | | 면적 | 30.06㎡ | - | 30.06㎡ | | |
| 기정 | ② | 지하 도로 | 전농동 620-67 일원 | 길이 | 2.4m | - | 2.4m | 서고시 제2006-166호 ('16.06.16) | 지하 (B1F) |
| | | | | 폭 | 19.1m | - | 19.1m | | |
| | | | | 높이 (해발고도) | 8.1~11.9m | - | 8.1~11.9m | | |
| | | | | 면적 | 36.2㎡ | - | 36.2㎡ | | |
| 신설 | ③ | 지하 도로 | 전농동 620-181 일원 | 길이 | - | 증) 25.8m | 25.8m | - | 지하 (B1F) |
| | | | | 폭 | - | 증) 8.6~9.4m | 8.6~9.4m | | |
| | | | | 높이 (해발고도) | - | 증) 8.3~14.6m | 8.3~14.6m | | |
| | | | | 면적 | - | 증) 250.52㎡ | 250.52㎡ | | |

※ 금회 신설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면적 등은 추후 관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③ | 지하도로 | •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br>면적 : 250.52㎡ (지하1층) | • 민자역사 연결통로 조성 및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입체적 결정 |

(4) 철도 결정조서 : 변경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규 모 (㎡)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철도 | 일반철도 (철도역) | 전농동 588-1 일대 | 152,825.8 | - | 152,825.8 | 서고시 제2002-386호 ('02.10.31) | 경원선 청량리역 |
| 변경 | 철도 (중앙선) | 일반철도 | 전농동 588-1 일대 | 247,011.93 | 감)650.15 | 246,361.78 | 건설부고시 제1997-194호 ('97.06.17) | 도로, 광장,고속철도와 일부 중복결정 |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철도 | • 철도 면적 변경<br>- 247,011.93㎡ → 246,361.78㎡ 감) 650.15㎡ | • 사업지/민자역사 간 연결통로 도시계획시설 종류 변경(철도→도로)에 따른 철도 면적 감소 |

(5) 철도 입체적 결정 : 변경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구분 | 내 용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폐지 | - | 철도 (중앙선) | 전농동 588-179 | 길이 | 6.5~7.0m | 감) 6.5~7.0m | - | 서고시 제2021-264호 (21.06.10) | 지상 (4F) |
| | | | | 폭 | 55.2m | 감) 55.2m | - | | |
| | | | | 높이 (해발고도) | 28.6m~32.2m | 감) 28.6m~32.2m | - | | |
| | | | | 면적 | 374.9㎡ | 감) 374.9㎡ | - | | |
| 폐지 | - | 철도 (중앙선) | 전농동 588-1 | 길이 | 33.9m | 감) 33.9m | - | 서고시 제2021-264호 (21.06.10) | 지하 (B1F) |
| | | | | 폭 | 7.8m~10.5m | 감) 7.8m~10.5m | - | | |
| | | | | 높이 (해발고도) | 8.4m~16.6m | 감) 8.4m~16.6m | - | | |
| | | | | 면적 | 275.25㎡ | 감) 275.25㎡ | - | | |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철도 (중앙선) | • 입체적 결정 폐지<br>- 지상(4F) 감) 374.9㎡<br>- 지하(B1F) 감) 275.25㎡ | • 지상(4F) : 연결통로 시설 종류 변경(철도→도로)<br>• 지하(B1F) : 지장물 ·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설치 범위를 조정하고 연결통로 시설 종류 변경(철도→도로) |

(6)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① | 공원 | 가로공원 | 전농동 620-51일원 | 2,343.1 | - | 2,343.1 | 서고시 제2013-176호 ('13.06.07) | - |
| 기정 | ④ | 공원 | 소공원 | 용두동 7일원 | 497.2 | - | 497.2 | 서고시 제2010-336호 ('10.09.30) | - |
| 기정 | ㉛ | 공원 | 어린이공원 | 용두동 9-11일원 | 1,585.0 (681.7) | - | 1,585.0 (681.7) | 서고시 제1996-359호 ('96.12.31) | - |

※ ( )는 구역 내 사항임

(7)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① | 녹지 | 경관녹지 | 전농동 623-4일원 | 842.7 | - | 842.7 | 서고시 제2013-176호 ('13.06.07) | - |

(8) 광장 결정조서 : 변경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㉙ | 광장 | 일반광장 | 전농동 588-1일원 | 24,360.7 (495.0) | 감) 8.3 | 24,352.4 (486.7) | 서고시 제1093호 ('66.11.26) | - |

※ ( )는 구역 내 사항임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㉙ | 광장 | • 광장 면적 변경<br>24,360.7㎡(495.0㎡) → 24,352.4㎡(486.7㎡)<br>감) 8.3㎡ |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9)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 (구역 외)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폐지 | 주차장 | 노외(지상) 주차장 | 전농동 588-1일대 (선로상부) | 7,170 | 감) 7,170 | - | 서고시 제1997-63호 ('97.03.07) | • 구역 외<br>• 미집행시설실효 ('20.07.02)<br>• 철도시설과 중복면적 7,170㎡ |
| 신설 | 주차장 | 노외(지상) 주차장 | 전농동 588-1일대 (선로상부) | - | 증) 7,170 | 7,170 | - | • 구역 외<br>• 미집행시설 재지정<br>• 철도시설과 중복면적 7,170㎡ |

※ 4구역 외 시설이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시설이며 금회 변경 사항으로 일괄 처리함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주차장 | • 실효된 장기미집행시설 재지정<br>면적 : 7,170㎡ | • 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금회 재지정 |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의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시 반영

사.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 | | | 비고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 기정 | 청량리 4구역 | 41,602.5 | 복합용지 | 26,330.2 | 전농동 620-47일원 | 132 | - | - | - | 132 | - |
| 변경 | 청량리 4구역 | 41,573.9 | 복합용지 | 26,330.2 | 전농동 620-47일원 | 132 | - | - | - | 132 | - |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br>(%)</th><th rowspan="2">용적률<br>(%)</th><th rowspan="2">높이<br>(m)</th><th rowspan="2">비 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기정</td><td>청량리<br>4구역</td><td>41,602.5</td><td>복합용지</td><td>26,330.2</td><td>전농동<br>620-47일원</td><td>업무·판매<br>주거·숙박·문화</td><td>60<br>이하</td><td>996<br>이하</td><td>200m<br>이하</td><td>-</td></tr>
<tr><td>변경</td><td>청량리<br>4구역</td><td>41,573.9</td><td>복합용지</td><td>26,330.2</td><td>전농동<br>620-47일원</td><td>업무·판매<br>주거·숙박·문화</td><td>60<br>이하</td><td>995<br>이하</td><td>200m<br>이하</td><td>-</td></tr>
<tr><td>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용적률 : ① + ② = 995.8% → 995.0% 이하 적용<br>① 기준용적률 : 794.4%
<table>
<tr><th>용도지역</th><th>획지면적(㎡)</th><th>비율(%)</th><th>기준용적률</th><th>비고</th></tr>
<tr><td>제2종일반(7층이하)</td><td>247.7</td><td>0.9</td><td>200.0</td><td rowspan="3">가중평균1)</td></tr>
<tr><td>일반상업</td><td>26,082.5</td><td>99.1</td><td>800.0</td></tr>
<tr><td>계</td><td>26,330.2</td><td>100.0</td><td>794.4</td></tr>
</table>
※ 1) 가중평균 = (제2종일반용적률 × 비율) + (일반상업지역용적률 × 비율)<br><br>② 상한용적률 : 기정(202.4%) → 변경(201.4%)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인센티브 산식</th><th>적용내용</th><th>완화량</th></tr>
<tr><td>기정</td><td>공공시설(도로 등) 기부채납</td><td>기준용적률×1.3×α1)</td><td>794.4%×1.3×0.196</td><td>202.4</td></tr>
<tr><td>변경</td><td>공공시설(도로 등) 기부채납</td><td>기준용적률×1.3×α2)</td><td>794.4%×1.3×0.195</td><td>201.4</td></tr>
<tr><td colspan="3">소계</td><td>-</td><td>201.4</td></tr>
</table>
※ 1) α = 순부담면적 ÷ 획지면적 = 5,161.6㎡ ÷ 26,330.2㎡ = 0.196<br>※ 2) α = 순부담면적 ÷ 획지면적 = 5,144.2㎡ ÷ 26,330.2㎡ = 0.195</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건축한계선<br>• 대로 1-호선변 : 3m<br>• 중로 2-380호선변 : 3m<br>• 대상지 북측 민자역사 연접지역 : 5m</td></tr>
<tr><td>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 청량리역 광장 및 선상광장을 연결하는 공공(입체)보행통로 조성<br>(폭 3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td></tr>
</table>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계획 : 변경

① 공공시설 부담률 : 기정 {(15,272.3-5,291.7-4,819.0)/41,602.5}×100 = 12.41%
변경 {(15,243.7-5,280.5-4,819.0)/41,573.9}×100 = 12.37%

| 구분 | 촉진구역<br>계획기반시설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br>국공유지면적 | 기존기반시설 내<br>국공유지면적 | 촉진구역<br>총 면적 | 순부담률 |
|---|---|---|---|---|---|
| 기정 | 15,272.3㎡ | 5,291.7㎡ | 4,819.0㎡ | 41,602.5㎡ | 12.41% |
| 변경 | 15,243.7㎡ | 5,280.5㎡ | 4,819.0㎡ | 41,573.9㎡ | 12.37% |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4) 용적률 계획 : 변경

①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 획지면적(㎡) | 용적률 적용기준(%) | 비고 |
|---|---|---|---|
| 계 | 26,330.2 | -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247.7 | 2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250 | |
| 일반상업지역 | 26,082.5 | 800 | |

※ 기준용적률 : (247.7㎡ X 200% + 26,082.5㎡ X 800%) / 26,330.2㎡ = 794.4%

② 상한용적률

| 구분 | 산정내용 | 비고 |
|---|---|---|
| 기정 |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X (1+1.3α) = 794.4% X (1+1.3X0.196) = 996.8%<br>※ α값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비율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br>= {15,272.3-(5,291.7+4,819.0)}/26,330.2 = 0.196<br>• 상한용적률 = 996%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 변경 |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X (1+1.3α) = 794.4% X (1+1.3X0.195) = 995.8%<br>※ α값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비율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br>= {15,243.7-(5,280.5+4,819.0)}/26,330.2 = 0.195<br>• 상한용적률 = 995%이하 | |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아. 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 : 변경없음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계획내용</th></tr>
<tr><td>주택연면적 비율</td><td colspan="3">65%이하</td></tr>
<tr><td>장기전세주택 공급<br>및 문화시설 확보</td><td colspan="3">▌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기여의 50%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br>공공기여 잔여분은 문화시설로 공급<br>• 장기전세주택 공급량 = 26,330.2㎡ X 32.5% = 8,557.3㎡이상<br>▌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br>• 기준 : 8,557.3㎡ X 50% = 4,278.6㎡이상<br>• 계획 : 4,388.6㎡ [전용면적 60㎡이하 : 64세대(100%)]<br>▌문화시설 공급계획 : 건축연면적 2,529.9㎡ (토지+건축물)<br>※ 장기전세주택 공급기준 (서고시 제2010-336호, 2010.09.30)<br>- 용도용적제 배제에 따라 증가되는 주택용도 용적률의 25%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br>-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용적률X주거비율X25%이상<br>= (800%-600%) X 65% X 25% = 32.5%</td></tr>
<tr><td>주택의 규모 및<br>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3">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세대수</th><th>비고</th></tr>
<tr><td rowspan="4">복합용지</td><td>건립예정 세대수 계</td><td>1,425</td><td>-</td></tr>
<tr><td>60㎡이하</td><td>64</td><td rowspan="2">국민주택 규모이하</td></tr>
<tr><td>60~85㎡이하</td><td>1,232</td></tr>
<tr><td>85㎡초과</td><td>129</td><td>-</td></tr>
</table>
▌주택 전체 연면적의 80%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br>▌전체 세대수 : 1,425세대 (장기전세주택 64세대 포함)
</td></tr>
</table>

자.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도시경관 | • 경관계획<br>–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br>•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계획<br>– 도로변의 정연한 가로경관과 상호연속성을 확보하되 주요부 통경축 및 개방감 확보<br>– 건축물 전면에 유효한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가로망확보, 보행자의 쾌적성 등을 제공함 | – |
| 환경보전 | • 토양오염방지<br>– 불투수 포장면 최소화<br>• 녹지조성<br>–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 |
| 재난방지 | •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함<br>• 터파기 공사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시행<br>• 건설소음<br>– 가설방음판넬 설치<br>– 저소음 건설 기계등을 선택하여 주간(08:00~18:00)에만 작업실시<br>• 먼지<br>– 방진망 설치 : 부지경계상에서 가설방음판넬과 연계된 방진망(H=1.5m)설치<br>–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사업대상지 진출입부분)<br>– 주기적인 살수실시(하계기준 1일 6회 이상) | – |

차.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 본 사업지는 상업지역 밀집지로 자연적인 지형 및 식재, 식물상이 빈약하여 보호수 또는 양호한 수목이 전무한 상태이나 사업시행시 양호한 수목은 사업시 구역내 나대지 지역에 이식 후 재식토록 함

카.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
| 기정 | 도시환경 정비사업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 토지 등 소유자 | 1,293세대 증가 | 해당사항 없음 | – |
| 변경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 | | | |

※ 증가예상 세대수 = 계획세대수 – 기존세대수 = 1,425세대 – 132세대 = 1,293세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 변경

7.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청량리4구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br>(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동대문구<br>전농동 620-47일대 | 41,602.5 | 감) 28.6 | 41,573.9 | - |

■ 결정(변경) 사유서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변경 | • 구역면적 변경 (구역계 변경없음)<br>- 41,602.5㎡ → 41,573.9㎡ 감)28.6㎡ |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나. 용도지역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 구분 | | 면 적 (㎡) | | | 구성비(%)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계 | | 41,602.5 | 감) 28.6 | 41,573.9 | 100.0 | - |
| 주거지역 | 소계 | 1,788.4<br>(1,509.7) | 증) 17.9 | 1,806.3 | 4.35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474.0<br>(475.9) | 증) 19.3 | 493.3 | 1.19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314.4<br>(1,033.8) | 감) 1.4 | 1,313.0 | 3.16 | - |
| 상업지역 | 소계 | 39,814.1<br>(40,092.8) | 감) 46.5 | 39,767.6 | 95.65 | - |
| | 일반상업지역 | 39,814.1<br>(40,092.8) | 감) 46.5 | 39,767.6 | 95.65 | - |

※ (  )는 기고시 (서고시 제2023-14호, ' 23.01.12)시 오기 면적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전농동<br>620-47일대 | • 용도지역 별 면적 변경<br>-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br>474.0㎡ → 493.3㎡ 증) 19.3㎡<br>- 제3종일반주거지역<br>1,314.4㎡ → 1,313.0㎡ 감) 1.4㎡<br>- 일반상업지역<br>39,814.1㎡ → 39,767.5㎡ 감) 46.5㎡ |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 변경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반시설 결정조서 : 변경

① 도로 결정조서 : 변경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대로 | 1 | - | 8~35.5 | 집산 도로 | 271 | 전농동 625-3 | 전농동 588-1 | 일반 도로 | - | 서고시 제1996-359호 ('96.12.31.) | - |
| 기정 | 대로 | 1 | 51 | 35~42 | 주간선 도로 | 3,300 | 종로6가 89 | 청량리동 749 | 일반 도로 | - | 서고시 제2020-427호 ('20.10.22) | - |
| 기정 | 대로 | 3 | 130 | 25~47 | 보조 간선 도로 | 2,100 | 오스카 극장동측 | 전농동 광장 | 일반 도로 | - | 서고시 제1998-187호 ('98.05.01) | - |
| 폐지 | 중로 | 1 | 383 | 20 | 보조 간선 도로 | 476 | 전농동 675 | 전농동 588-1 | 고가 일반 도로 | - | 서고시 제1997-63호 ('97.03.07) | 구역 외 |
| 기정 | 중로 | 2 | 379 | 15 | 집산 도로 | 92 | 용두동 9-7 | 용두동 47-7 | 일반 도로 | - | 서고시 제1996-359호 ('96.12.31) | - |
| 기정 | 중로 | 2 | 380 | 12~15 | 집산 도로 | 303 | 전농동 622-8 | 전농동 620-67 | 일반 도로 | - | 서고시 제2013-176호 ('13.06.07) | - |
| 기정 | 중로 | 2 | - | 5.9~17.6 | 특수 도로 | 19.6 | 전농동 620-67 | 전농동 620-69 | 지하 도로 | - | 서고시 제2016-166호 ('16.06.16) | 중복결정 광장170.1㎡ 입체적결정 : 30.06㎡ |
| 기정 | 중로 | 2 | - | 15 | 특수 도로 | 38.8 | 전농동 620-67 | 전농동 620-69 | 지하 도로 | - | 서고시 제2016-166호 ('16.06.16) | 중복결정 광장467.4㎡ 입체적결정 : 36.2㎡ |
| 신설 | 소로 | 2 | - | 7.3~8.2 | 특수 도로 | 55.2 | 전농동 588-179 | 전농동 588-1 | 보행자 전용 도로 | - | - | 중복결정 철도56.1㎡ 입체적결정 : 374.9㎡ |
| 신설 | 소로 | 2 | - | 8.2~9.4 | 특수 도로 | 47.5 | 전농동 620-181 | 전농동 588-1 | 지하 도로 | - | - | 중복결정 철도103.6㎡ 입체적결정 : 250.52㎡ |
| 기정 | 소로 | 3 | - | 6 | 특수 도로 | 90 | 전농동 620-88 | 전농동 620-51 | 보행자 전용 도로 | - | 서고시 제2013-176호 ('13.06.07) | - |

※ 중로1-383은 구역 외 시설이나 금회 변경 사항으로 일괄 처리함

■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중로 1-383 | - | • 도로 폐지(구역 외) | • 「전농동588~배봉로간 고가도로 건설취소」에 따른 도로 폐지 |
| - | 소로 2- |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br>- B=7.3~8.2m, L=55.2m | • 선상광장연결통로 조성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 - | 소로 2- | • 지하도로 신설<br>- B=8.2~9.4m, L=47.5m | • 민자역사연결통로 조성을 위해 지하도로 신설 |

② 보행자전용도로 입체적 결정조서 : 신설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구분 | 내 용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 | 보행자 전용도로 | 전농동 588-179 | 길이 | - | 증) 55.2m | 55.2m | - | 지상 (4F) |
| | | | | 폭 | - | 증) 6.5~6.9m | 6.5~6.9m | | |
| | | | | 높이 | - | 증) 25.6~32.2m | 25.6~32.2m | | |
| | | | | 면적 | - | 증) 374.9㎡ | 374.9㎡ | | |

※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면적 등은 추후 관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보행자 전용도로 | • 보행자전용도로 입체적 결정<br>면적 : 374.9㎡ (지상4층) | • 선상광장 연결통로 조성 및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입체적 결정 |

③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조서 : 변경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구분 | 내 용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① | 지하 도로 | 전농동 620-69 일원 | 길이 | 1.7m | - | 1.7m | 서고시 제2006-166호 ('16.06.16) | 지하 (B1F) |
| | | | | 폭 | 17.5m | - | 17.5m | | |
| | | | | 높이 (해발고도) | 8.1~11.5m | - | 8.1~11.5m | | |
| | | | | 면적 | 30.06㎡ | - | 30.06㎡ | | |
| 기정 | ② | 지하 도로 | 전농동 620-67 일원 | 길이 | 2.4m | - | 2.4m | 서고시 제2006-166호 ('16.06.16) | 지하 (B1F) |
| | | | | 폭 | 19.1m | - | 19.1m | | |
| | | | | 높이 (해발고도) | 8.1~11.9m | - | 8.1~11.9m | | |
| | | | | 면적 | 36.2㎡ | - | 36.2㎡ | | |
| 신설 | ③ | 지하 도로 | 전농동 620-181 일원 | 길이 | - | 증) 25.8m | 25.8m | - | 지하 (B1F) |
| | | | | 폭 | - | 증) 8.6~9.4m | 8.6~9.4m | | |
| | | | | 높이 (해발고도) | - | 증) 8.3~14.6m | 8.3~14.6m | | |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구분 | 내 용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 | | 면적 | - | 증) 250.52㎡ | 250.52㎡ | | |

※ 금회 신설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면적 등은 추후 관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③ | 지하도로 | •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br>면적 : 250.52㎡ (지하1층) | • 민자역사 연결통로 조성 및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입체적 결정 |

④ 철도 결정조서 : 변경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규 모 (㎡)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철도 | 일반철도 (철도역) | 전농동 588-1 일대 | 152,825.8 | - | 152,825.8 | 서고시 제2002-386호 ('02.10.31) | 경원선 청량리역 |
| 변경 | 철도 (중앙선) | 일반철도 | 전농동 588-1 일대 | 247,011.93 | 감)650.15 | 246,361.78 | 건설부고시 제1997-194호 ('97.06.17) | 도로, 광장,고속철도와 일부 중복결정 |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철도 | • 철도 면적 변경<br>- 247,011.93㎡ → 246,361.78㎡ 감) 650.15㎡ | • 사업지/민자역사 간 연결통로 도시계획시설 종류 변경(철도→도로)에 따른 철도 면적 감소 |

⑤ 철도 입체적 결정조서 : 변경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구분 | 내 용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폐지 | - | 철도 (중앙선) | 전농동 588-179 | 길이 | 6.5~7.0m | 감) 6.5~7.0m | - | 서고시 제2021-264호 (21.06.10) | 지상 (4F) |
| | | | | 폭 | 55.2m | 감) 55.2m | - | | |
| | | | | 높이 (해발고도) | 28.6m~32.2m | 감) 28.6m~32.2m | - | | |
| | | | | 면적 | 374.9㎡ | 감) 374.9㎡ | - | | |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구분 | 내 용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폐지 | - | 철도 (중앙선) | 전농동 588-1 | 길이 | 33.9m | 감) 33.9m | - | 서고시 제2021-264호 (21.06.10) | 지하 (B1F) |
| | | | | 폭 | 7.8m~10.5m | 감) 7.8m~10.5m | - | | |
| | | | | 높이 (해발고도) | 8.4m~16.6m | 감) 8.4m~16.6m | - | | |
| | | | | 면적 | 275.25㎡ | 감) 275.25㎡ | - | | |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철도 (중앙선) | • 입체적 결정 폐지<br>- 지상(4F) 감) 374.9㎡<br>- 지하(B1F) 감) 275.25㎡ | • 지상(4F) : 연결통로 시설 종류 변경(철도→도로)<br>• 지하(B1F) : 지장물 · 시설물 간섭을 최소화하여 설치 범위를 조정하고 연결통로 시설 종류 변경(철도→도로) |

⑥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① | 공원 | 가로공원 | 전농동 620-51일원 | 2,343.1 | - | 2,343.1 | 서고시 제2013-176호 (' 13.06.07) | - |
| 기정 | ④ | 공원 | 소공원 | 용두동 7일원 | 497.2 | - | 497.2 | 서고시 제2010-336호 (' 10.09.30) | - |
| 기정 | ⑬ | 공원 | 어린이공원 | 용두동 9-11일원 | 1,585.0 (681.7) | - | 1,585.0 (681.7) | 서고시 제1996-359호 (' 96.12.31) | - |

⑦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① | 녹지 | 경관녹지 | 전농동 623-4일원 | 842.7 | - | 842.7 | 서고시 제2013-176호 (' 13.06.07) | - |

⑧ 광장 결정조서 : 변경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㉓ | 광장 | 일반광장 | 전농동 588-1일원 | 24,360.7 (495.0) | 감) 8.3 | 24,352.4 (486.7) | 서고시 제1093호 ( '66.11.26) | - |

※ ( )는 구역 내 사항임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㉓ | 광장 | • 광장 면적 변경<br>24,360.7㎡(495.0㎡) → 24,352.4㎡(486.7㎡)<br>감) 8.3㎡ |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⑨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 (구역 외)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폐지 | 주차장 | 노외(지상) 주차장 | 전농동 588-1일대 (선로상부) | 7,170 | 감) 7,170 | - | 서고시 제1997-63호 (' 97.03.07) | 구역 외<br>미집행시설실효 (' 20.07.02)<br>철도시설과 중복면적 7,170㎡ |
| 신설 | 주차장 | 노외(지상) 주차장 | 전농동 588-1일대 (선로상부) | - | 증) 7,170 | 7,170 | - | 구역 외<br>미집행시설 재지정<br>철도시설과 중복면적 7,170㎡ |

※ 구역 외 시설이나 금회 변경 사항이므로 일괄 처리함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주차장 | • 실효된 장기미집행시설 재지정<br>면적 : 7,170㎡ | • 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금회 재지정 |

⑩ 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①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 면 적 (㎡) | | | 비율(%) | 비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획지 | 26,330.2 | - | 26,330.2 | 100 | 복합용지 |

②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구분 | 용 도 | 비고 |
|---|---|---|
| 주용도 | 업무·판매·주거·숙박·문화 | - |

㉡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폐율 계획

| 구분 | 건폐율 계획 | 비고 |
|---|---|---|
| 기정 | 60% 이하 | - |

▌용적률 계획

| 구분 | 용적률 계획 | | 비고 |
|---|---|---|---|
| | 기준 | 상한 | |
| 기정 | 794.4% | 996.0% 이하 | - |
| 변경 | 794.4% | 995.0% 이하 | - |

▌높이 계획

| 구분 | 높이 계획 | 비고 |
|---|---|---|
| 기정 | 200m 이하 | - |

③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

| 구분 | 내 용 | 비고 |
|---|---|---|
| 건축한계선 | • 대로 1-호선변 : 3m<br>• 중로 2-380호선변 : 3m<br>• 대상지 북측 민자역사 연접지역 : 5m | - |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①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 적용위치 | 내용 | 비고 |
|---|---|---|---|
| 공공<br>보행통로 | • 청량리역 광장 ~ 민자역사 선상광장 | • 청량리역 광장 및 민자역사 선상광장을 연결하는 공공(입체)보행통로 조성<br>(폭 3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 | - |

② 환경관리계획 : 변경없음

| 구분 | 목표기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예측 및 반영사항 | 비고 |
|---|---|---|---|---|
| 1. 생태면적률 | 30%이상 | • 생태공간 확보 | • 조경녹지 확보,부분포장 및 투수성 포장활용<br>• 생태면적율30%이상 확보 | - |
| 2. 생태<br>네트워크 | 녹지평가지표1 | • 네트워크기능 향상 | • 공개공지 및 조경공간계획<br>• 보행동선 경계부에 조경식재<br>• 가로수 계획 | - |
| 3. 지형변동 | 지형·지질변동<br>최소화 | • 지반고 변화 미미함 | • 현 지반고를 최대한 활용<br>• 자연·인공지반녹지 조성으로 인해 포장률 변화<br>• 부분포장, 투수성포장 활용 | - |
| 4. 비오톱 | 비오톱보전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 : 상업 및 업무지 비오톱<br>• 비오톱유형평가도 : 4등급<br>• 개별비오톱평가도 : 평가제외지역 | • 조경녹지와 투수성 포장의 조성으로 인해 비오톱의 기능이 향상될 것임 | - |
| 5. 일조 | 일조침해 최소화 | • 일조영향 미미 | • 인접한 대지경계선과 건축선과의 이격거리 확보 | - |
| 6. 바람 및 미기후 | 바람길 확보 | • 건축물 조성에 따른 바람 및 미기후 변화 | • 주동 간 충분한 이격거리확보<br>• 녹지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바람길 확보 | - |
| 7. 에너지 |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 에너지사용량 증가 | •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 참여<br>• 청정연료 사용 | - |

| 구분 | 목표기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예측 및 반영사항 | 비고 |
|---|---|---|---|---|
| 8. 경관 | 조망권 확보 | • 주변지역 조망권 보호 필요 | •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건축배치 조성 | - |
| 9. 휴식 및 여유공간 |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 공지, 커뮤니티시설 등을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 - |
| 10. 보행 친화공간 | 보행자도로 계획수립 | • 보행로 필요 | • 도로변 전면공지 및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을 통해 보행공간 확충 | - |
| 11. 소음 및 진동 | 공사시 65dB(A)이하 | • 공사시 소음발생<br>• 차량통행 소음발생 | •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장비의 분산투입<br>• 차량 통행속도 규제 | - |
| 12. 폐기물 | 폐기물 처리 | • 건축폐기물 발생 | • 건축폐기물 최대한 재활용 및 위탁처리<br>• 동대문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 |

③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 세대수(세대) | 비율(%) | 비고<br>(전용면적) |
|---|---|---|---|
| 총 세대수 | 1,425 | - | - |
| 장기전세주택 세대수 | 64 | 100.0 | - |
| 60㎡ 이하 | 64 | 100.0 | 29㎡, 36㎡, 49㎡, 59㎡ |

8. 2024년 제8차(’ 24.11.27)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심의결과 | 조치계획 | 비고 |
|---|---|---|
| • 기부채납 시설(청년창업공간 등 5호)에 대한 용도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청·서울시립대·청량리4구역 사업시행자 간 관리협약을 체결할 것 | • 기부채납 시설의 구체적 용도, 위치 및 면적 등은 운영주체(서울시립대)와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연결통로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공공기여 이행·관리협약을 체결하겠음.<br>• 아울러, 실시계획인가 전이라도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기부채납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 반영 |

9.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0.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11.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02-2133-7217) 및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29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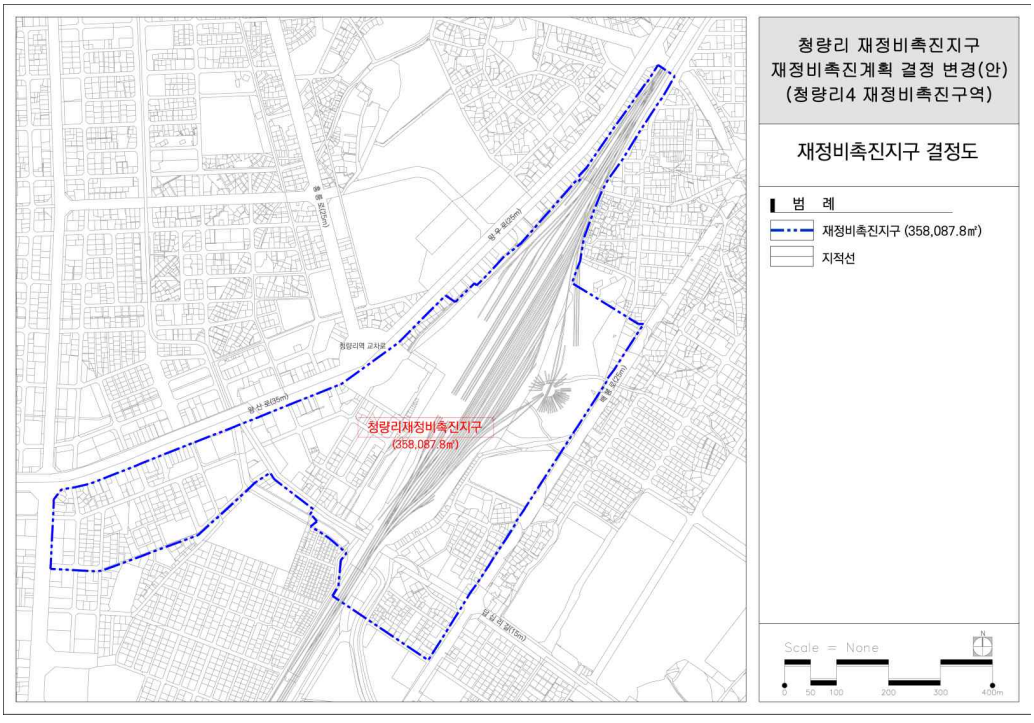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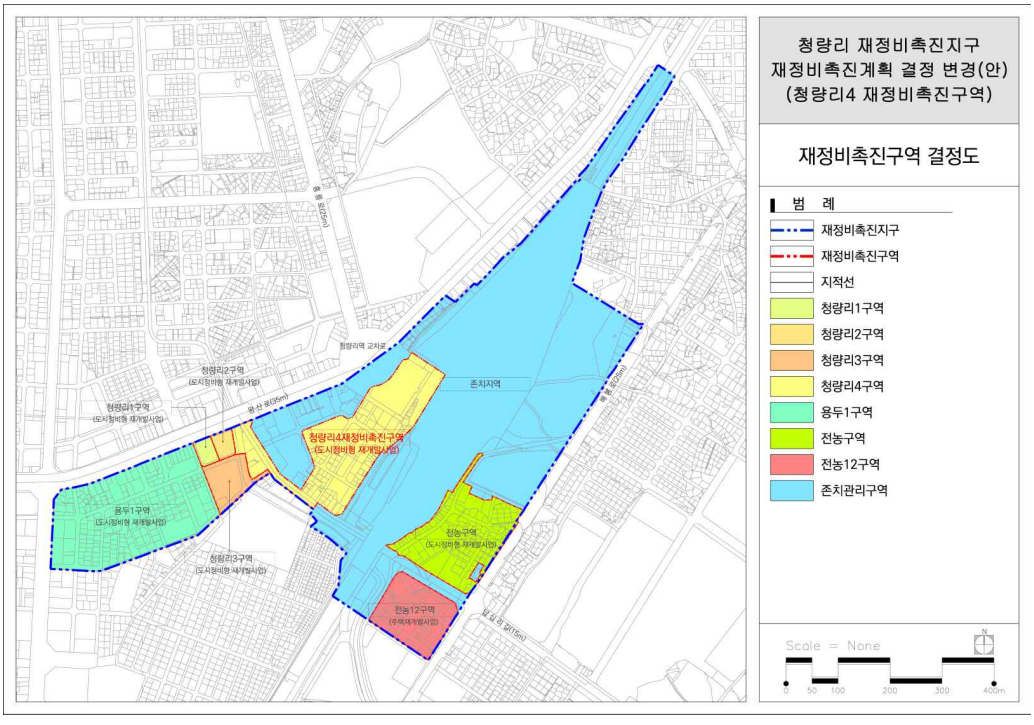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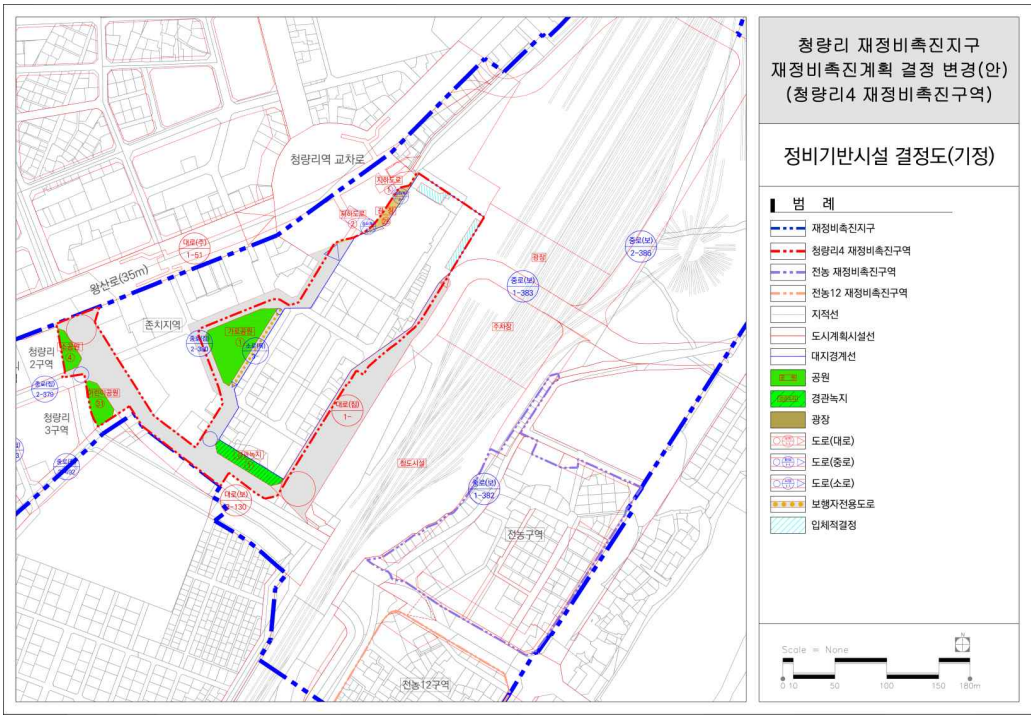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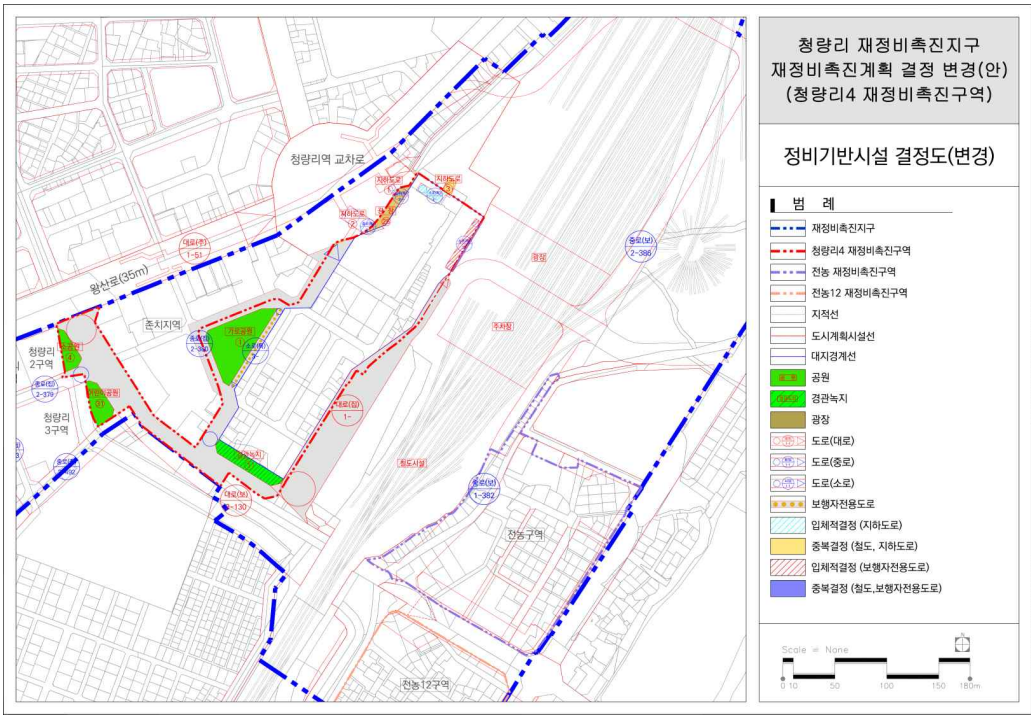

■ 촉진계획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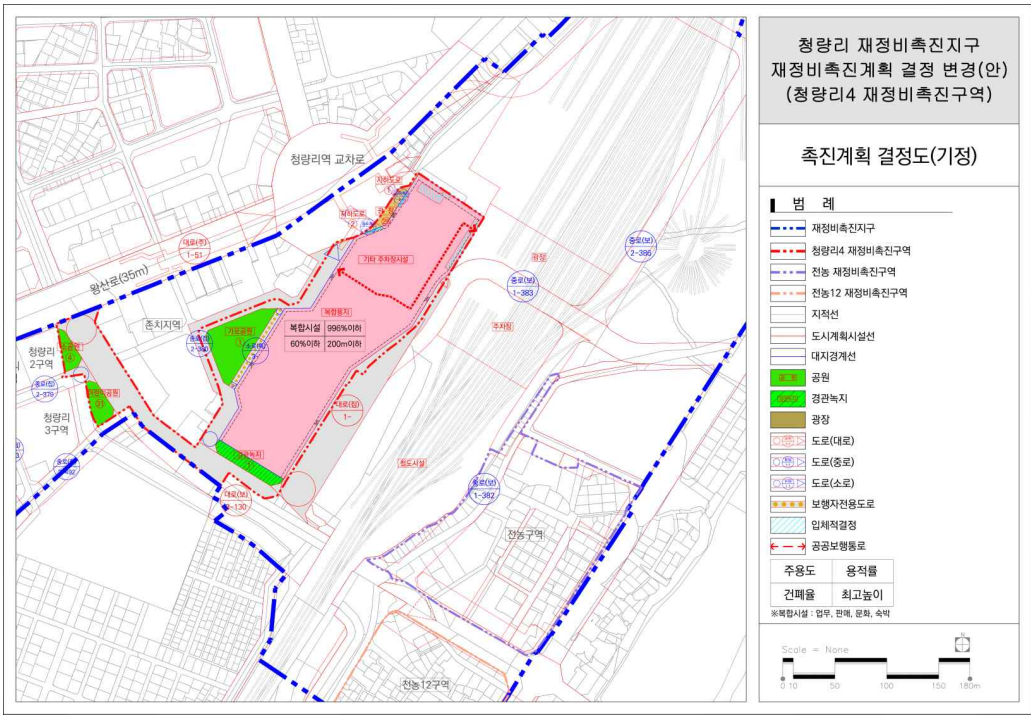


■ 촉진계획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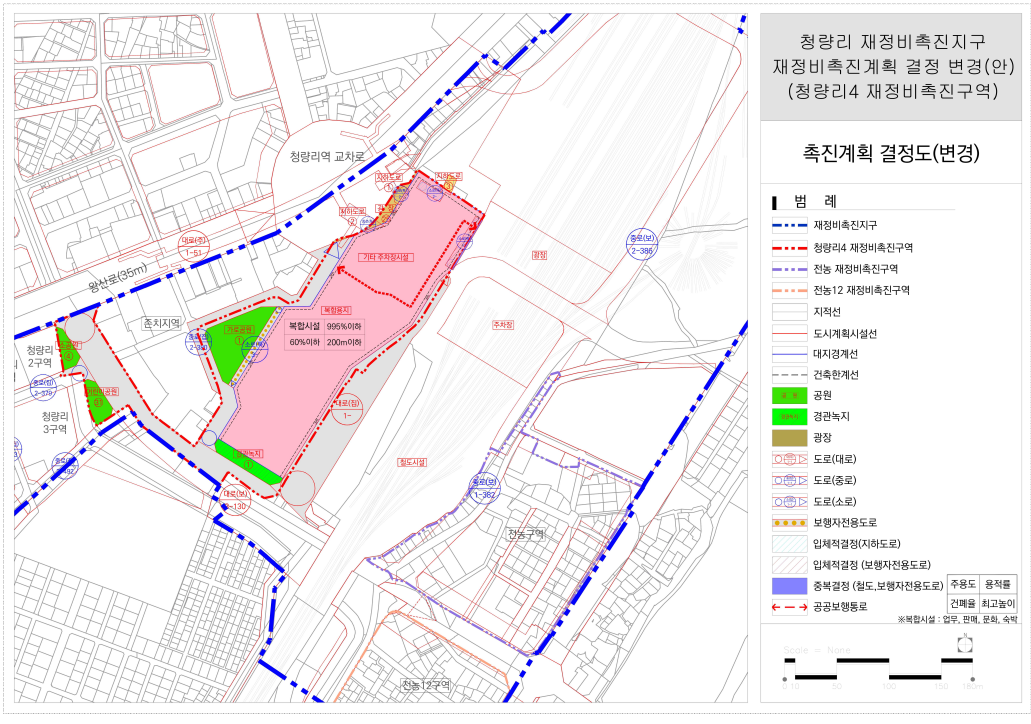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입체(중복) 결정도(지하1층 평면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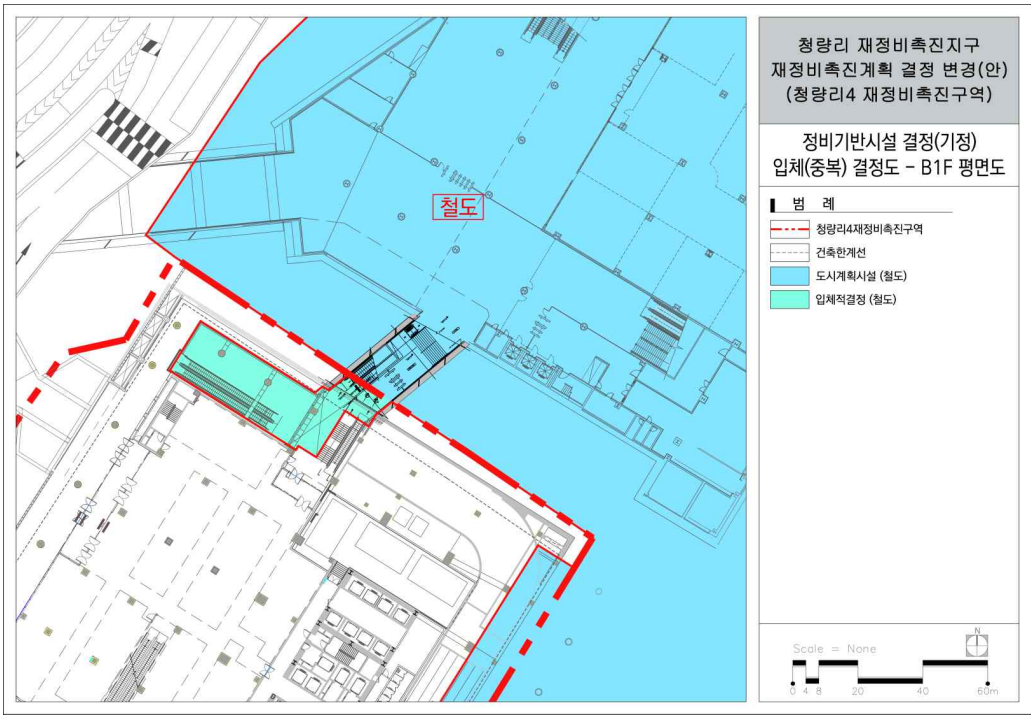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입체(중복) 결정도(지하1층 평면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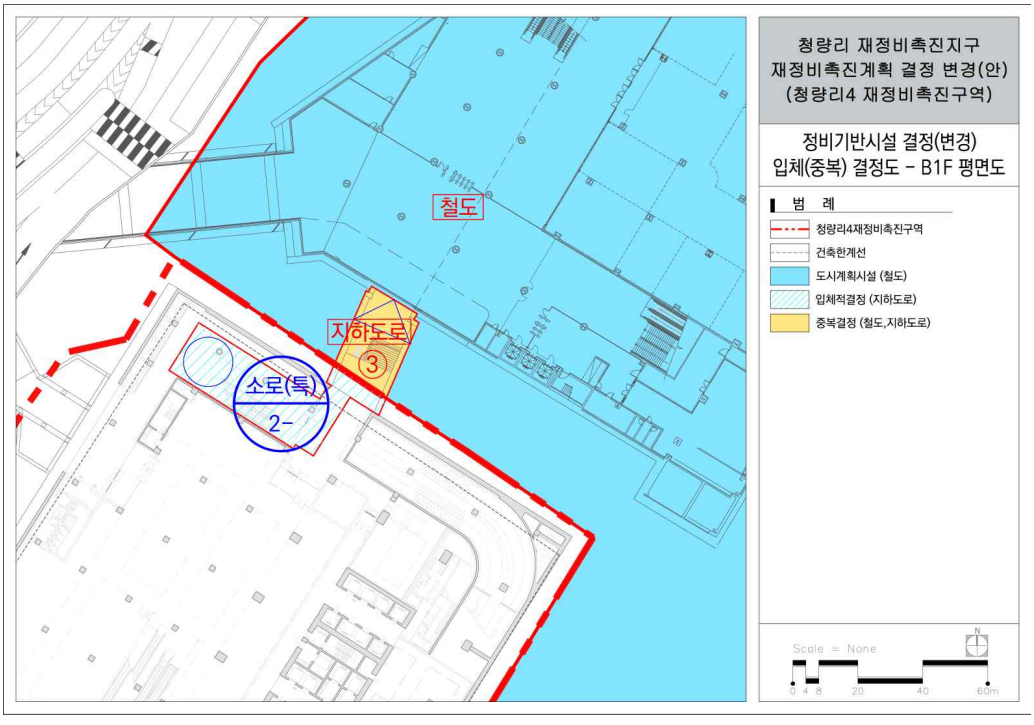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입체(중복) 결정도(지하1층 단면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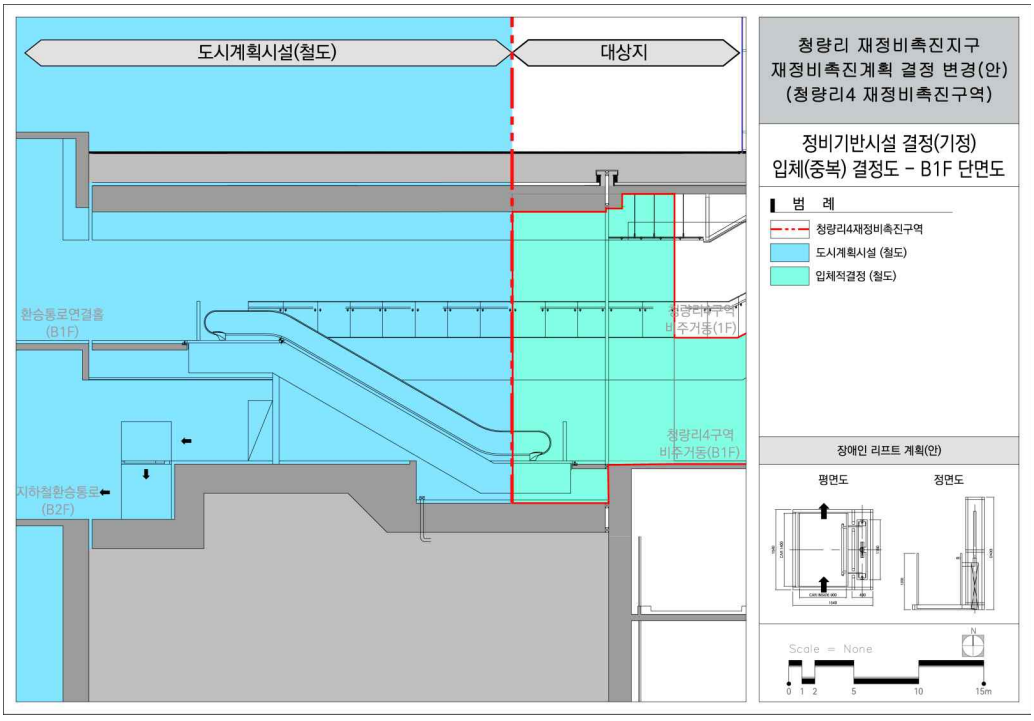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입체(중복) 결정도(지하1층 단면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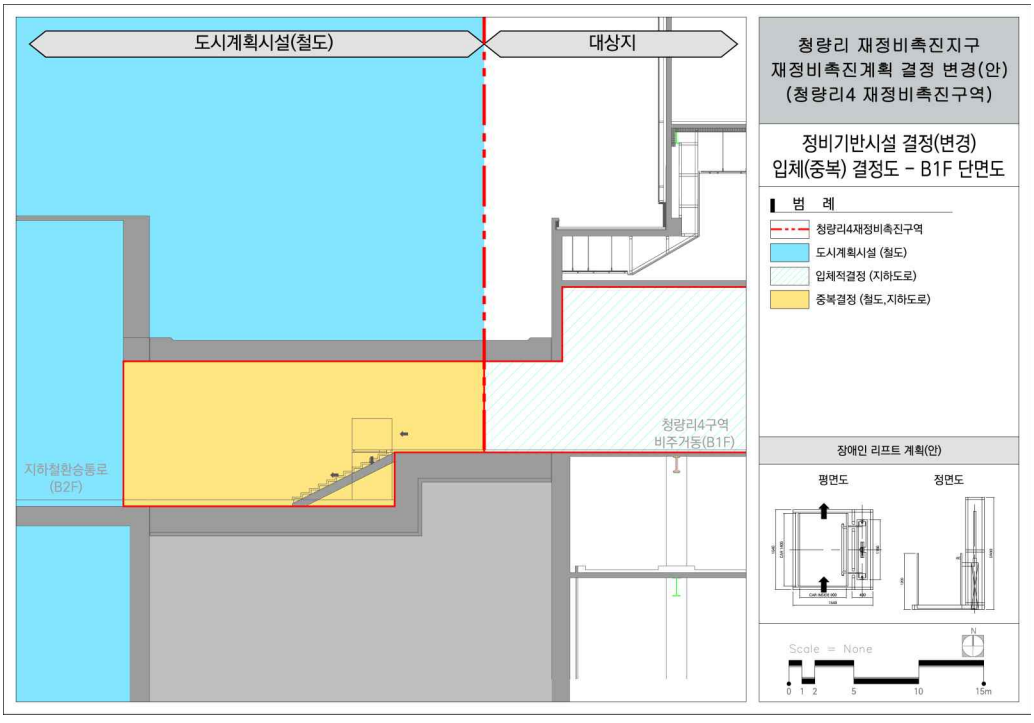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입체(중복) 결정도(지상4층 평면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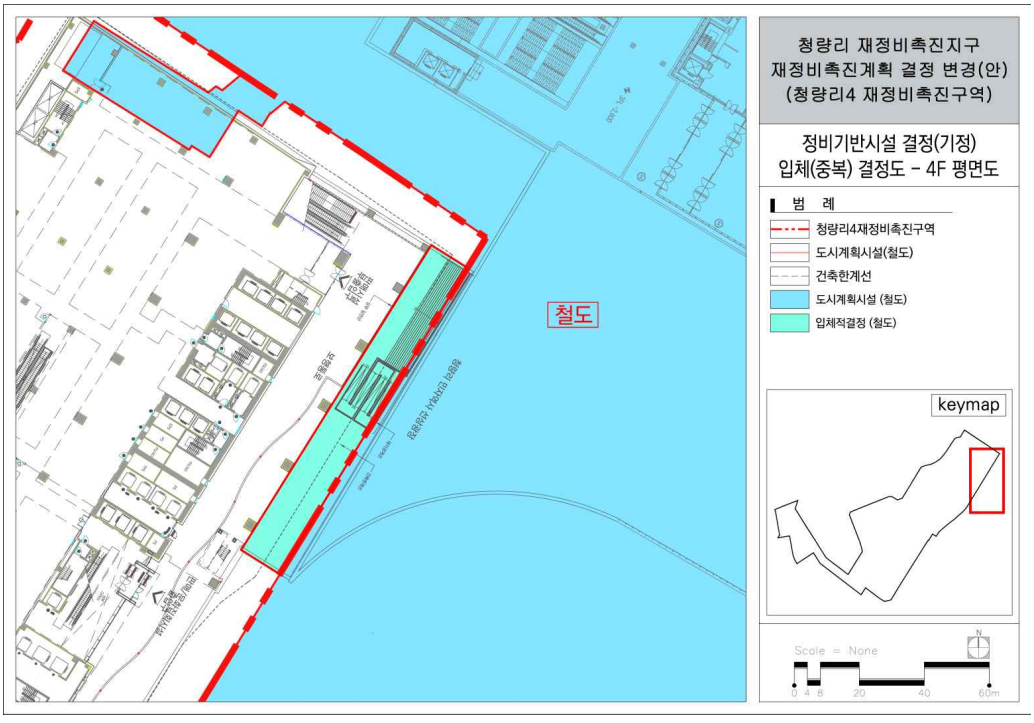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입체(중복) 결정도(지상4층 평면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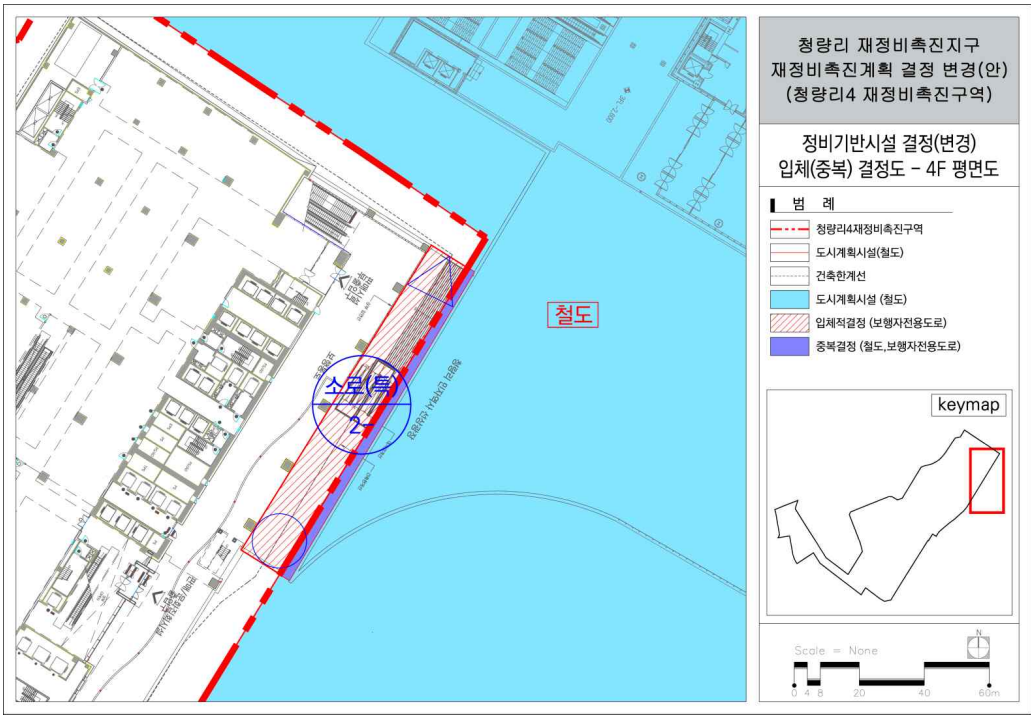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입체(중복) 결정도(지상4층 단면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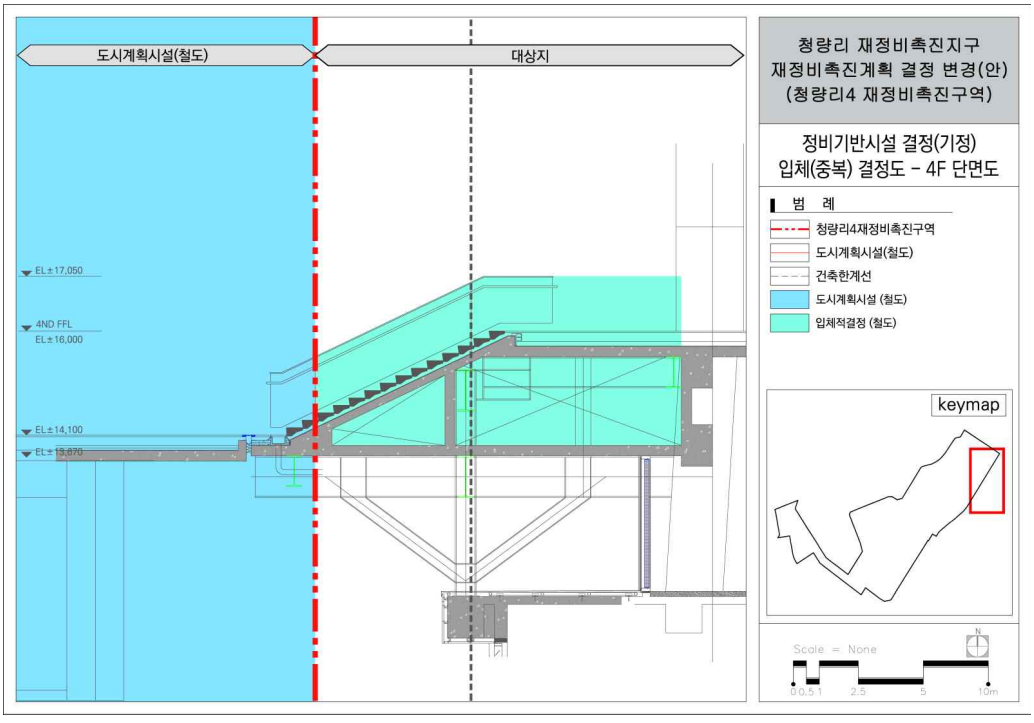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입체(중복) 결정도(지상4층 단면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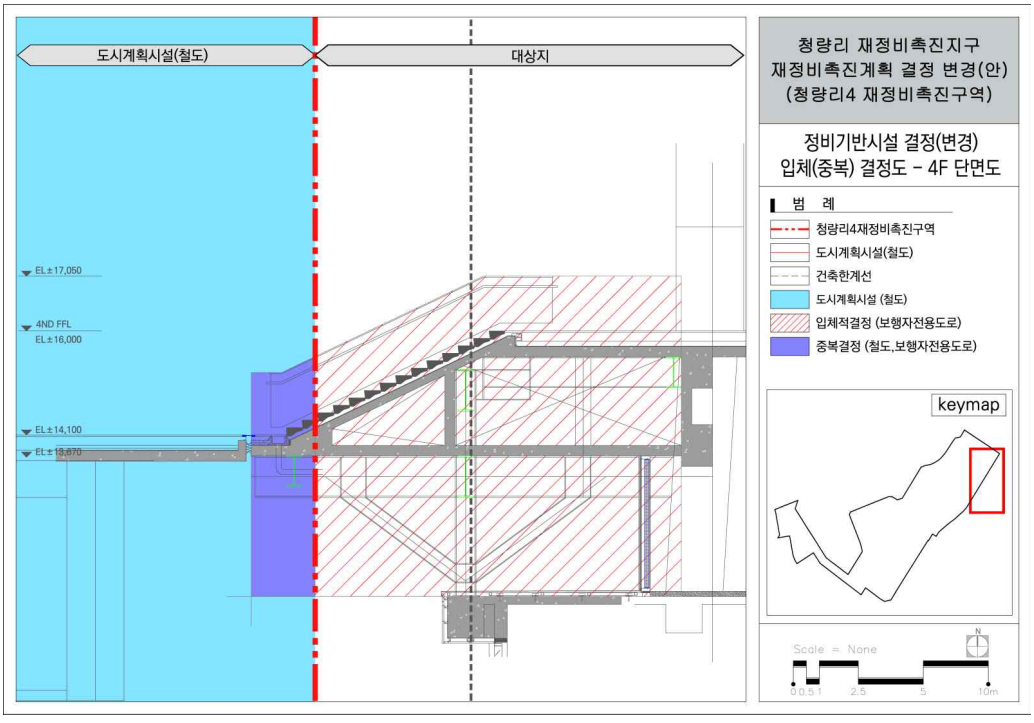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11호

## 전문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등록대상

| 업 종 | 상 호 | 등록번호<br>(등록일자)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전문소방시설관리업 | ㈜유일에프에스이 | 제서울(서대문)2024-1호 | 김시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44, 2층 | 02-307-119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시설업담당(☎02-6981-54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32호

##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미배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12.31. ~ 2025.1.13.(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 업 체 명<br>(대 표 자) | 업종 및<br>등록번호 | 소 재 지 | 처분사유 | 관련<br>법규 | 처분내용 | 처분<br>근거 |
|---|---|---|---|---|---|---|
| 웅원건설㈜<br>(정현수) | 토목공사업<br>01-0817 | 서울특별시 용산구<br>장문로 97, 3층<br>301호 (보광동) | 사업자등록(505-81-27352)폐업<br>폐업일자 : 2024.09.10. | 법<br>제83조 및<br>「부가가치세법」<br>제8조제8항 및 9항 | 등록말소<br>(2025.01.15.) | 법<br>제83조<br>제12호 |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5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41호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4. 12. 19. ~ 2025. 1. 1. (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2025. 1. 2. ~ 2025. 1. 15.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14일
 - 이의제기 기한: 2025. 1. 2. ~ 2025. 3. 2.(60일간)
   ※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이의제기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F A X: 02-2133-1076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 이의신청서 1부. 끝.

부과일자 2024-12-01 / 납기일자 2025-01-31

| 순번 | 등기번호 | 반송사유 | 반송일시 | 수취인주민번호 | 수취인명 | 발송지 주소 | 위반행위 | 위반일시 |
|---|---|---|---|---|---|---|---|---|
| 1 | 1078833770491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401호 | 이동상인 | 2024-07-02 10:35 |
| 2 | 1078833770492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401호 | 이동상인 | 2024-07-16 11:01 |
| 3 | 1078833770496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401호, 402호 | 이동상인 | 2024-07-18 14:35 |
| 4 | 1078833770494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401호, 402호 | 이동상인 | 2024-07-10 11:17 |
| 5 | 1078833770493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401호 | 이동상인 | 2024-07-29 10:58 |
| 6 | 1078833770495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401호, 201호(청우하인즈빌) | 이동상인 | 2024-07-11 11:42 |
| 7 | 1078833770553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8011**-******* | 임*재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47 101동1305호(삼성미도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28 11:01 |
| 8 | 1078833770554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29 11:53 |
| 9 | 1078833770555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31 10:31 |
| 10 | 1078833770497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401호 | 이동상인 | 2024-07-20 12:51 |
| 11 | 1078833770498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401호, 401호 | 이동상인 | 2024-07-23 11:00 |
| 12 | 1078833770557 | 기타 | 2024-12-06 10:12 | 6908**-******* | 강*철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3길 2-15 1층101호, 1층101호 | 이동상인 | 2024-08-30 10:41 |
| 13 | 1078833770559 | 기타 | 2024-12-06 10:12 | 6908**-******* | 강*철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3길 2-15 1층101호, 404동 1501호 | 이동상인 | 2024-08-23 11:46 |
| 14 | 1078833770560 | 기타 | 2024-12-06 10:12 | 6908**-******* | 강*철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3길 2-15 1층101호 | 이동상인 | 2024-08-28 12:16 |
| 15 | 1078833770499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401호 (노량진동) | 이동상인 | 2024-07-26 14:10 |
| 16 | 1078833770500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401호 (노량진동) | 이동상인 | 2024-07-31 10:53 |
| 17 | 1078833770501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401호 (노량진동) | 이동상인 | 2024-07-05 14:00 |
| 18 | 1078833770562 | 주소불명 | 2024-12-02 15:46 | 7902**-******* | 이*지 |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9가길 22-2 | 연설권유 | 2024-08-16 20:50 |
| 19 | 1078833770564 | 기타 | 2024-12-06 10:50 | 4812**-******* | 이*희 |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문영아파트 102동 602호, 102동 602호(문영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27 11:10 |
| 20 | 1078833770502 | 기타 | 2024-12-05 18:01 | 4811**-******* | 김*록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301동 804호, 307호(문영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06 10:05 |

| 순번 | 등기번호 | 반송사유 | 반송일시 | 수취인주민번호 | 수취인명 | 발송지 주소 | 위반행위 | 위반일시 |
|---|---|---|---|---|---|---|---|---|
| 21 | 1078833770503 | 기타 | 2024-12-05 18:01 | 4811**-******* | 김*록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301동 804호, 404동 1501호(노량진동) | 이동상인 | 2024-07-13 10:55 |
| 22 | 1078833770504 | 기타 | 2024-12-05 18:01 | 4811**-******* | 김*록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301동 804호, 404동 1501호(노량진동) | 이동상인 | 2024-07-20 09:51 |
| 23 | 1078833770565 | 기타 | 2024-12-06 06:55 | 4711**-******* | 서*석 |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2동 11층 1105호(삼윤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14 10:44 |
| 24 | 1078833770566 | 기타 | 2024-12-06 06:55 | 4711**-******* | 서*석 |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종암동 | 이동상인 | 2024-08-20 10:37 |
| 25 | 1078833770567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6905**-******* | 신*식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 성내동 | 이동상인 | 2024-08-28 13:37 |
| 26 | 1078833770505 | 기타 | 2024-12-05 18:01 | 4811**-******* | 김*록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301동 804호 | 이동상인 | 2024-07-02 10:28 |
| 27 | 1078833770506 | 기타 | 2024-12-05 18:01 | 4811**-******* | 김*록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301동 804호(중계동 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24 11:27 |
| 28 | 1078833770507 | 기타 | 2024-12-06 10:37 | 6610**-******* | 김*기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옥탑, 종암동 | 이동상인 | 2024-07-04 13:32 |
| 29 | 1078833770508 | 기타 | 2024-12-06 10:37 | 6610**-******* | 김*기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옥탑, 종암동 | 이동상인 | 2024-07-08 12:30 |
| 30 | 1078833770572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문영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31 10:22 |
| 31 | 1078833770558 | 이사불명 | 2024-11-29 16:32 | 5304**-******* | 김*직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404동 1501호, 404동1501호 | 이동상인 | 2024-08-30 10:52 |
| 32 | 1078833770568 | 기타 | 2024-12-06 12:40 | 4111**-******* | 김*석 | 서울시 양천구 은행정로 5길 42-2, 종암동 | 철도종사자 위반 | 2024-08-02 14:03 |
| 33 | 1078833770569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성내동 | 이동상인 | 2024-08-02 14:20 |
| 34 | 1078833770570 | 기타 | 2024-12-06 06:55 | 4711**-******* | 서*석 |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102동 603호 | 이동상인 | 2024-08-18 10:10 |
| 35 | 1078833770571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2층 | 이동상인 | 2024-08-31 10:00 |
| 36 | 1078833770509 | 이사불명 | 2024-11-29 11:24 | 6801**-******* | 문*자 | 인천시 서구 가정로387, 121동 2201호 | 전도연설 | 2024-07-27 13:52 |
| 37 | 1078833770510 | 기타 | 2024-12-06 10:12 | 6102**-******* | 박*선 |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20-7 2층 | 이동상인 | 2024-07-20 12:27 |
| 38 | 1078833770511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6905**-******* | 신*식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 | 이동상인 | 2024-07-04 10:35 |
| 39 | 1078833770512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6905**-******* | 신*식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 | 이동상인 | 2024-07-06 08:58 |
| 40 | 1078833770573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5길 15 | 이동상인 | 2024-08-06 11:22 |
| 41 | 1078833770513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6905**-******* | 신*식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 | 이동상인 | 2024-07-24 10:47 |

| 순번 | 등기번호 | 반송사유 | 반송일시 | 수취인주민번호 | 수취인명 | 발송지 주소 | 위반행위 | 위반일시 |
|---|---|---|---|---|---|---|---|---|
| 42 | 1078833770514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6905**-******* | 신*식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 | 이동상인 | 2024-07-24 11:10 |
| 43 | 1078833770515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6905**-******* | 신*식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 | 이동상인 | 2024-07-26 09:59 |
| 44 | 1078833770516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6905**-******* | 신*식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 | 이동상인 | 2024-07-26 11:52 |
| 45 | 1078833770577 | 기타 | 2024-12-06 08:01 | 4711**-******* | 서*석 |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 이동상인 | 2024-08-31 09:48 |
| 46 | 1078833770578 | 기타 | 2024-12-06 08:01 | 4711**-******* | 서*석 |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 이동상인 | 2024-08-31 10:06 |
| 47 | 1078833770517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7403**-******* | 이*용 | 경기도 군포시 금재로 25번길 13 101호(금정동), 옥탑층 | 이동상인 | 2024-07-12 21:24 |
| 48 | 1078833770518 | 기타 | 2024-12-06 06:55 | 7008**-******* | 이*일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7, 21호(신림동) | 이동상인 | 2024-07-08 11:33 |
| 49 | 1078833770519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03 10:35 |
| 50 | 1078833770520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04 10:10 |
| 51 | 1078833770581 | 기타 | 2024-12-06 10:12 | 5206**-******* | 김*현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53길 2 303호 | 이동상인 | 2024-08-10 10:00 |
| 52 | 1078833770582 | 기타 | 2024-12-06 08:01 | 4711**-******* | 서*석 |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 이동상인 | 2024-08-01 11:05 |
| 53 | 1078833770521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15 11:33 |
| 54 | 1078833770522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15 12:00 |
| 55 | 1078833770523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16 12:06 |
| 56 | 1078833770524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16 14:01 |
| 57 | 1078833770574 | 주소불명 | 2024-12-03 14:42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5길 15 | 이동상인 | 2024-08-09 10:42 |
| 58 | 1078833770575 | 주소불명 | 2024-12-03 14:42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5길 15 | 이동상인 | 2024-08-12 14:23 |
| 59 | 1078833770576 | 주소불명 | 2024-12-03 14:42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5길 15 | 이동상인 | 2024-08-14 10:42 |
| 60 | 1078833770525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22 14:00 |
| 61 | 1078833770526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23 12:02 |
| 62 | 1078833770527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25 11:02 |

| 순번 | 등기번호 | 반송사유 | 반송일시 | 수취인주민번호 | 수취인명 | 발송지 주소 | 위반행위 | 위반일시 |
|---|---|---|---|---|---|---|---|---|
| 63 | 1078833770528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27 11:27 |
| 64 | 1078833770529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29 13:26 |
| 65 | 1078833770530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8011**-******* | 임*재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47 101동1305호(삼성미도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09 17:09 |
| 66 | 1078833770531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8011**-******* | 임*재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47 101동1305호(삼성미도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17 13:24 |
| 67 | 1078833770532 | 기타 | 2024-12-06 08:00 | 9203**-******* | 조*원 | 서울시 구로구 429-97 2층, 2층 | 이동상인 | 2024-07-23 11:07 |
| 68 | 1078833770594 | 기타 | 2024-12-06 10:37 | 6610**-******* | 김*기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종암동 | 이동상인 | 2024-08-29 12:59 |
| 69 | 1078833770593 | 주소불명 | 2024-12-02 10:09 | 6603**-******* | 권*관 |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63 | 이동상인 | 2024-08-28 11:50 |
| 70 | 1078833770592 | 주소불명 | 2024-12-02 10:09 | 6603**-******* | 권*관 |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63 | 이동상인 | 2024-08-28 11:06 |
| 71 | 1078833770533 | 기타 | 2024-12-06 09:40 | 5405**-******* | 한*엽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9안길 7 | 연설.권유 | 2024-07-29 20:03 |
| 72 | 1078833770534 | 주소불명 | 2024-12-02 11:27 | 6906**-******* | 김*권 |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35 (생연동) | 열차 내 폭언 | 2024-10-15 12:20 |
| 73 | 1078833770535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08 11:37 |
| 74 | 1078833770536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13 13:15 |
| 75 | 1078833770600 | 기타 | 2024-12-06 06:55 | 4711**-******* | 서*석 |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신당동) | 이동상인 | 2024-08-15 11:50 |
| 76 | 1078833770537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6905**-******* | 신*식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 | 이동상인 | 2024-08-14 09:35 |
| 77 | 1078833770538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14 10:37 |
| 78 | 1078833770539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6905**-******* | 신*식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 | 이동상인 | 2024-08-15 11:10 |
| 79 | 1078833770540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6905**-******* | 신*식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 | 이동상인 | 2024-08-16 10:35 |
| 80 | 1078833770603 | 기타 | 2024-12-06 06:55 | 4711**-******* | 서*석 |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신당동) | 이동상인 | 2024-08-19 11:30 |
| 81 | 1078833770604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6905**-******* | 신*식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 | 이동상인 | 2024-08-20 11:28 |
| 82 | 1078833770541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16 10:46 |
| 83 | 1078833770542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6905**-******* | 신*식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 | 이동상인 | 2024-08-17 10:16 |

| 순번 | 등기번호 | 반송사유 | 반송일시 | 수취인주민번호 | 수취인명 | 발송지 주소 | 위반행위 | 위반일시 |
|---|---|---|---|---|---|---|---|---|
| 84 | 1078833770543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17 10:52 |
| 85 | 1078833770544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17 12:00 |
| 86 | 1078833770605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 이동상인 | 2024-08-21 12:15 |
| 87 | 1078833770485 | 기타 | 2024-12-06 10:12 | 9105**-******* | 고*결 | 서울시 영등포구 도영로 7길 15 102-603, 102동 603호 | 이동상인 | 2024-07-23 11:07 |
| 88 | 1078833770486 | 주소불명 | 2024-12-02 09:32 | 7208**-******* | 김*용 | 서울 금천구 탑골로 3길 22-1, 202호 | 기부요청 | 2024-07-31 13:20 |
| 89 | 1078833770545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17 12:59 |
| 90 | 1078833770546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8011**-******* | 임*재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47 101동1305호(삼성미도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19 10:58 |
| 91 | 1078833770547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4610**-******* | 신*교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77-1층(산본동) | 이동상인 | 2024-08-19 14:11 |
| 92 | 1078833770548 | 폐문부재 | 2024-12-06 10:00 | 8011**-******* | 임*재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47 101동1305호(삼성미도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22 10:35 |
| 93 | 1078833770609 | 기타 | 2024-12-06 06:36 | 6506**-******* | 한*옥 |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27 704동 1404호 | 연설권유 | 2024-08-30 20:17 |
| 94 | 1078833770487 | 이사불명 | 2024-11-29 16:32 | 5304**-******* | 김*직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휴먼시아아파트) 404동 1501호, 404동 1501호 | 이동상인 | 2024-07-31 10:44 |
| 95 | 1078833770488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401호 | 이동상인 | 2024-07-12 15:35 |
| 96 | 1078833770489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401호 (문영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04 14:39 |
| 97 | 1078833770490 | 기타 | 2024-12-06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401호, 404동 1501호(문영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7-13 10:08 |
| 98 | 1078833770549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23 13:34 |
| 99 | 1078833770550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23 14:15 |
| 100 | 1078833770551 | 기타 | 2024-12-06 10:12 | 6102**-******* | 박*선 |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20-7 | 이동상인 | 2024-08-24 11:38 |
| 101 | 1078833770550 | 폐문부재 | 2024-12-06 12:33 | 5409**-******* | 이*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716호 (평화주공아파트) | 이동상인 | 2024-08-23 14:15 |
| 102 | 1078833770551 | 기타 | 2024-12-06 10:12 | 6102**-******* | 박*선 |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20-7 | 이동상인 | 2024-08-24 11:38 |
| 103 | 1078833770552 | 이사불명 | 2024-11-29 11:24 | 6801**-******* | 문*자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87, 121동 2201호 | 연설권유 | 2024-08-24 13:33 |

<서식2>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과 태 료 처분내역 | 위반일시 | | 위반장소 | |
| | 부과관청 | | 부과일자 | |
| | 부과번호 | | 부과금액 | |
| 이의내용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신청인 (인)

서울시장 귀하

※ 문의전화 : 02-2133-4342 FAX : 02-2133-1076

☞ 팩스(FAX)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42호

## 철도안전법 위반 과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4. 12. 19. ~ 2025. 1. 1.(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baekho8@seoul.go.kr
 팩스: 02-2133-1076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의견제출기한 : 2025. 1. 1. ~ 2025. 1. 15. (15일간)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2024년 9월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건

| 순번 | 등기번호 | 반송일시 | 수취인주민번호 | 수취인명 | 발송지 주소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
| 1 | 1078833768377 | 2024-12-05 09:50 | 4210**-******* | 이*연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173-4호 2호방 | 열차 | 2024-09-14 10:35 |
| 2 | 1078833768380 | 2024-11-29 16:32 | 5304**-******* | 김*직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휴먼시아 404동 1501호 | 열차 | 2024-09-04 10:26 |
| 3 | 1078833768381 | 2024-11-29 16:32 | 5304**-******* | 김*직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휴먼시아 404동 1501호 | 열차 | 2024-09-05 10:29 |
| 4 | 1078833768382 | 2024-12-05 10:05 | 6908**-******* | 강*철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3길 2-15 1층 101호 | 열차 | 2024-09-10 11:52 |
| 5 | 1078833768383 | 2024-12-05 10:05 | 6908**-******* | 강*철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3길 2-15 1층 101호 | 열차 | 2024-09-13 10:45 |
| 6 | 1078833768384 | 2024-11-29 16:32 | 5304**-******* | 김*직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휴먼시아 404동 1501호 | 열차 | 2024-09-26 10:56 |
| 7 | 1078833768385 | 2024-12-05 11:20 | 4812**-******* | 이*희 |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102동 602호 문영아파트 | 열차 | 2024-09-07 10:16 |
| 8 | 1078833768387 | 2024-12-05 10:05 | 6202**-******* | 이*실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84길-12 | 열차 | 2024-09-14 11:01 |
| 9 | 1078833768389 | 2024-12-05 10:05 | 6202**-******* | 이*실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84길-12 | 열차 | 2024-09-23 09:38 |
| 10 | 1078833768390 | 2024-12-05 07:01 | 5307**-******* | 윤*기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길 6-15(신림동) | 열차 | 2024-09-23 10:40 |
| 11 | 1078833768391 | 2024-12-05 11:20 | 4812**-******* | 이*희 |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102동 602호 문영아파트 | 열차 | 2024-09-24 10:45 |
| 12 | 1078833768393 | 2024-12-05 10:00 | 6004**-******* | 정*해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683번안길 17-21 B03호(금정동) | 열차 | 2024-09-04 13:30 |
| 13 | 1078833768394 | 2024-12-05 09:50 | 7201**-******* | 장*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36번길 20, 나동 101호(가능동) | 열차 | 2024-09-11 18:31 |
| 14 | 1078833768395 | 2024-12-05 07:58 | 4711**-******* | 서*석 |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수유동) | 열차 | 2024-09-20 10:50 |
| 15 | 1078833768396 | 2024-12-05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 열차 | 2024-09-22 10:13 |
| 16 | 1078833768397 | 2024-12-05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 열차 | 2024-09-22 10:29 |
| 17 | 1078833768399 | 2024-12-05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5길 15 | 열차 | 2024-09-03 12:00 |
| 18 | 1078833768400 | 2024-12-05 10:06 | 6610**-******* | 김*기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 열차 | 2024-09-04 10:27 |
| 19 | 1078833768401 | 2024-12-05 07:02 | 4711**-******* | 서*석 |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 열차 | 2024-09-06 10:40 |
| 20 | 1078833768402 | 2024-12-05 07:02 | 4711**-******* | 서*석 |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 열차 | 2024-09-21 10:18 |

| 순번 | 등기번호 | 반송일시 | 수취인주민번호 | 수취인명 | 발송지 주소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
| 21 | 1078833768404 | 2024-12-05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5길 15 | 열차 | 2024-09-24 10:40 |
| 22 | 1078833768405 | 2024-12-05 13:00 | 6603**-******* | 권*관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 열차 | 2024-09-03 10:35 |
| 23 | 1078833768406 | 2024-12-05 13:00 | 6603**-******* | 권*관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 열차 | 2024-09-03 11:10 |
| 24 | 1078833768410 | 2024-12-05 07:02 | 4711**-******* | 서*석 |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 열차 | 2024-09-07 10:45 |
| 25 | 1078833768416 | 2024-12-05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 열차 | 2024-09-11 13:13 |
| 26 | 1078833768419 | 2024-12-05 07:02 | 4711**-******* | 서*석 |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 열차 | 2024-09-13 11:24 |
| 27 | 1078833768421 | 2024-12-05 13:00 | 6603**-******* | 권*관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 열차 | 2024-09-14 11:10 |
| 28 | 1078833768423 | 2024-12-05 07:02 | 4711**-******* | 서*석 |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 열차 | 2024-09-14 13:05 |
| 29 | 1078833768424 | 2024-12-05 13:00 | 6603**-******* | 권*관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 열차 | 2024-09-16 10:18 |
| 30 | 1078833768426 | 2024-12-05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 열차 | 2024-09-18 12:51 |
| 31 | 1078833768429 | 2024-12-05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 열차 | 2024-09-20 11:04 |
| 32 | 1078833768432 | 2024-12-05 07:58 | 4711**-******* | 서*석 |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 열차 | 2024-09-23 10:57 |
| 33 | 1078833768433 | 2024-12-05 09:00 | 4406**-******* | 김*옥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 열차 | 2024-09-24 12:45 |
| 34 | 1078833768442 | 2024-12-05 06:02 | 6306**-******* | 장*길 |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3길 60-3(사당동) | 열차 | 2024-09-30 11:09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 | |
| | 당사자 | 성명(명칭) | |
| | | 주소<br>(전화번호: ) | |
| | 의 견 | | |
| |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54호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2. 19. ~ 2025. 1. 3.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고객번호 | 급수설비 소재지 | 납 기 | | | |
|---|---|---|---|---|---|
| | | 과 목 | 납 기 | 횟수 | 금 액(원) |
| 042672960 | 관악구 남현12길 37, 1층 B01호 | 상하수도요금 | 22.07 ~ 24.07 | 13 | 1,841,590 |

나. 압류 내역

| 압류구분 | 압류물건 | 물건소유자 | | 압류금액(원) | 압류일 |
|---|---|---|---|---|---|
| | | 성 명 | 주 소 | | |
| 부동산 (건물) | 금천구 독산동 1023-4 명성팰리스 303호 | 박○진 |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3길 33, 501호(화곡동, 로즈빌) | 1,841,590 | 24.11.8. |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고객번호 | 급수설비 소재지 | 납 기 | | | |
|---|---|---|---|---|---|
| | | 과 목 | 납 기 | 횟수 | 금 액(원) |
| 038336934 | 관악구 남현3길 39, 205호(B) CS타운 | 상하수도요금 | 21.09 ~ 24.09 | 19 | 281,580 |

나. 압류 내역

| 압류구분 | 압류물건 | 물건소유자 | | 압류금액(원) | 압류일 |
|---|---|---|---|---|---|
| | | 성 명 | 주 소 | | |
| 부동산<br>(건물) | 관악구 남현동 1064-23 CS타운 B동 205호 | 강○아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수로26번길 5-1, C동 101호(계산동, 서울다세대) | 281,580 | 24.11.8. |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김혜리(☎02-3146-44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58호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내용

| 연번 | 등 록<br>번 호 | 상 호<br>(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
| 1 | 111430 | ㈜삼화동력개발<br>(정*봉)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72, 3층<br>(방이동) | 사업자 폐업 | 등록취소<br>(2024.12.19.)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동법 시행령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289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62호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공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 제20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 구분 | | 관리대행업체 | 평가대상기간 | 평가점수 | 비고 |
|---|---|---|---|---|---|
| 탄천물재생센터 | 수처리 시설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23.1.1.~'23.12.31. | 77 | |
| | 건조시설 | | 23.1.1.~'23.12.31. | 91 | |
| 서남물재생센터 | 수처리 시설 | | 23.1.1.~'23.12.31. | 83 | |
| | 분뇨처리 시설 | | 23.1.1.~'23.12.31. | 78 | |
| | 건조시설 | | 23.1.1.~'23.12.31. | 80 | |
| | 소각시설 | | 23.1.1.~'23.12.31. | 83 | |
| 중랑물재생센터 | 총인처리시설 | 대양엔바이오㈜<br>한종산업개발㈜ | 23.7.1.~'23.12.31. | 81 | |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물재생시설과(☎02-2133-38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64호

#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1-1공구)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4호(2017. 9. 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5호(2018. 11. 29.)로 실시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호(2022. 1. 6.)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호(2024. 1. 18.)로 실시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된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이 부분준공(1-1공구) 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무소 소재지: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9, 1-28, 1-29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전체 27,423㎡ 중 10,746.3㎡(1-1공구)
 나. 용도별 면적

| 구 분 | | 면 적(㎡) | | | | 구성비(%) |
|---|---|---|---|---|---|---|
| | | 전체 | 1지구 | | 2지구 | |
| | | | 1-1공구 (준공부분) | 1-2공구 (미준공) | 2공구 (미준공) | |
| 합 계 | | 27,423.0 | 10,746.3 | 3,783.1 | 12,893.6 | 100.0 |
| 상업 용지 | 소 계 | 19,115.9 | 10,746.3 | - | 8,369.6 | 69.7 |
| | 씨드큐브 창동 | 10,746.3 | 10,746.3 | - | - | 39.2 |
| | 복합환승센터 | 8,369.6 | - | - | 8,369.6 | 30.5 |
| 도시 기반 시설 용지 | 소 계 | 8,307.1 | - | 3,783.1 | 4,524.0 | 30.3 |
| | 도 로 | 4,745.1 | - | 3,783.1 | 962.0 | 17.3 |
| | 공 원 | 1,400.0 | - | - | 1,400.0 | 5.1 |
| | 광 장 | 2,162.0 | - | - | 2,162.0 | 7.9 |

5. 준공일자 : 2024. 12. 11.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및 「공유재산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02-2133-8289), 서울주택도시공사 창동사업부(☎02-3410-7571)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73호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 후 재산(부동산) 압류 통지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 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2. 19. ~ 2025. 1. 2.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 고객번호 | 급수설비 소재지 | 납 기 | | | | 비고 |
|---|---|---|---|---|---|---|
| | | 과목 | 납 기 | 횟수 | 금 액 | |
| 041268970 | 마포구 망원동 424-15 지하~1층 | 수도요금 | 2024. 11월 납기 | 1회 | 171,260원 | |

| 압류 구분 | 압류물건 | 물건소유자 | | | 압류금액 | 압류일 |
|---|---|---|---|---|---|---|
| | | 성 명 | 주민번호 (반송사유) | 주 소 | | |
| 부동산 | 마포구 망원동 424-15 | 이종철 | 770920-1*****<br>(등기번호<br>1. 1105002448985<br>폐문부재<br>2. 1105001576032<br>폐문부재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298번길 10 201호 (생연동) | 171,260원 | 2024.11.22. |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다영(☎02-3146-35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75호

##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0호(2009.2.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81호(2021.7.2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회현동 1가 100-266 일대 남산1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남산1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100-266 일대
다. 면　　적 : 604,178.00㎡
라. 조성계획 변경(안)

| 구 분 | | 변 경 전 | | 변 경 후 | | 비 고 |
|---|---|---|---|---|---|---|
| |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
| 계 | | 604,178.00 | 85,803.30 | 604,178.00 | 88,740.47 | 시설면적 증) 2,937.17㎡ |
| 기반시설 | 소계 | 74,014.48 | 38,514.48 | 76,951.65 | 41,451.65 | 증) 2,937.17㎡ |
| | 도로 | 66,067.68 | 30,567.68 (35,500.00) | 69,004.85 | 33,504.85 (35,500.00) | 증) 2,937.17㎡ |
| | 광장 | 7,946.80 | 7,946.80 | 7,946.80 | 7,946.80 | 변경없음 |
| 조경시설 | | 598.17 | 598.17 | 598.17 | 598.17 | 변경없음 |
| 유희시설 | | 0 | 0 | 0 | 0 | 변경없음 |
| 휴양시설 | | 5,863.40 | 5,863.40 | 5,863.40 | 5,863.40 | 변경없음 |
| 교양시설 | | 15,355.61 | 13,684.12 | 15,355.61 | 13,684.12 | 변경없음 |
| 운동시설 | | 2,882.33 | 2,882.33 | 2,882.33 | 2,882.33 | 변경없음 |
| 편익시설 | | 23,674.49 | 23,674.49 | 23,674.49 | 23,674.49 | 변경없음 |
| 관리시설 | | 586.31 | 586.31 | 586.31 | 586.31 | 변경없음 |
| 녹지및기타 | | 481,203.21 | - | 478,266.04 | | 감2,937.17㎡ |
| 시 설 율 (법정 40%) | | (85,803.30) / 604,178.00) X 100 = 14.20% | | (88,740.47 / 604,178.00) X 100 = 14.69% | | 증) 0.49% |
| 건 폐 율 (법정 10%) | | (10,515.52 / 604,178.00) X 100 = 1.74% | | (10,515.52 / 604,178.00) × 100 = 1.74% | | |

마.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바.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02-3783-5962)
아.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02-2133-2155)와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02-3783-5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100-266일대)

| 구 분 | | 변경 전 | | | | | | 변경 후 | | | | | | 비 고 |
|---|---|---|---|---|---|---|---|---|---|---|---|---|---|---|
| |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
| | | | | 동수 (동) | 바닥면적 (㎡) | 연면적 (㎡) | | | | 동수 (동) | 바닥면적 (㎡) | 연면적 (㎡) | | |
| 계 | | 604,178.00 | 85,803.30 | 25 | 10,515.52 | 49,122.33 | 214 | 604,178.00 | 88,740.47 | 25 | 10,515.52 | 49,122.33 | 214 | 증) 2,937.17 ㎡ |
| 기반시설 | 소계 | 74,014.48 | 38,514.48 | | | | 33 | 76,951.65 | 41,451.65 | | | | 33 | |
| | 도로 | 66,067.68 | 30,567.68 (35,500.00) | | | | | 69,004.85 | 33,504.85 (35,500.00) | | | | | 증) 2,937.17 ㎡ |
| | 광장 | 7,946.80 | 7,946.80 | | | | (33) | 7,946.80 | 7,946.80 | | | | (33) | |
| 조경시설 | | 598.17 | 598.17 | | | | 7 | 598.17 | 598.17 | | | | 7 | |
| 유희시설 | | 0 | 0 | | | | 0 | 0 | 0 | | | | 0 | |
| 휴양시설 | | 5,863.40 | 5,863.40 | 1 | 64.17 | 64.17 | 105 | 5,863.40 | 5,863.40 | 1 | 64.17 | 64.17 | 105 | |
| 교양시설 | | 15,355.61 | 13,684.12 | 9 | 5,646.68 | 29,337.29 | 3 | 15,355.61 | 13,684.12 | 9 | 5,646.68 | 29,337.29 | 3 | |
| 운동시설 | | 2,882.33 | 2,882.33 | | | | 24 | 2,882.33 | 2,882.33 | | | | 24 | |
| 편익시설 | | 23,674.49 | 23,674.49 | 14 | 4,685.42 | 19,325.32 | 42 | 23,674.49 | 23,674.49 | 14 | 4,685.42 | 19,325.32 | 42 | |
| 관리시설 | | 586.31 | 586.31 | 1 | 119.25 | 395.55 | | 586.31 | 586.31 | 1 | 119.25 | 395.55 | | |
| 녹지 및 기타 | | 481,203.21 | - | | | | | 478,266.04 | | | | | | 감) 2,937.17 ㎡ |
| 시 설 율 (법정 40%) | | (85,803.30) / 604,178.00) X 100 = 14.20% | | | | | | (88,740.47 / 604,178.00) X 100 = 14.69% | | | | | | 증) 0.49% |
| 건 폐 율 (법정 10%) | | (10,515.52 / 604,178.00) X 100 = 1.74% | | | | | | (10,515.52 / 604,178.00) × 100 = 1.74% | | | | | | |

## 2. 시설조서

| 구분 | 시설명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비고 |
|---|---|---|---|---|---|---|---|---|---|---|---|---|---|---|---|---|---|---|---|---|
| |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합 계 | | | | 604,178.00 | 85,803.30 | | 25 | 10,515.52 | 49,122.33 | 214 | | | 604,178.00 | 88,740.47 | | 25 | 10,515.52 | 49,122.33 | 214 | |
| 기반시설 | 소 계 | | | 74,014.48 | 38,514.48 | | | | | 33 | | | 76,951.65 | 41,451.65 | | | | | 33 | |
| | 도 로 | | | 66,067.68 | 30,567.68<br>(35,500.00) | | | | | | | | 69,004.85 | 33,504.85<br>(35,500.00) | | | | | | 증) 2,937.17㎡ |
| | 광 장 | 가 | | 7,946.80 | 7,946.80 | | | | | 33 | 가 | | 7,946.80 | 7,946.80 | | | | | 33 | |
| | | 가-1 | 중구 남창동 205-4 | (607.93) | (607.93) | | | | | (2) | 가-1 | 중구 남창동 205-4 | (607.93) | (607.93) | | | | | (2) | |
| | | 가-2 | 〃 | (410.88) | (410.88) | | | | | (1) | 가-2 | 〃 | (410.88) | (410.88) | | | | | (1) | |
| | | 가-3 | 중구 회현동1가 100-115 | (69.32) | (69.32) | | | | | (1) | 가-3 | 중구 회현동1가 100-115 | (69.32) | (69.32) | | | | | (1) | |
| | | 가-4 | 〃 | (3,210.68) | (3,210.68) | | | | | | 가-4 | 〃 | (3,210.68) | (3,210.68) | | | | | | |
| | | 가-5 | 〃 | (296.17) | (296.17) | | | | | (1) | 가-5 | 〃 | (296.17) | (296.17) | | | | | (1) | |
| | | 가-6 | 중구 회현동1가 100-177 | (365.67) | (365.67) | | | | | (11) | 가-6 | 중구 회현동1가 100-177 | (365.67) | (365.67) | | | | | (11) | |
| | | 가-7 | 〃 | (948.52) | (948.52) | | | | | (2) | 가-7 | 〃 | (948.52) | (948.52) | | | | | (2) | |

| 구분 | 시설명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비고 |
|---|---|---|---|---|---|---|---|---|---|---|---|---|---|---|---|---|---|---|---|---|
| |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가-8 | 중구 예장동 8-1 | (435.98) | (435.98) | | | | | (3) | 가-8 | 중구 예장동 8-1 | (435.98) | (435.98) | | | | | (3) | |
| | | 가-9 | 중구 예장동 산5-6 | (1,404.77) | (1,404.77) | | | | | (12) | 가-9 | 중구 예장동 산5-6 | (1,404.77) | (1,404.77) | | | | | (12) | |
| | | 가-10 | 용산구 후암동 30-80 | (196.88) | (196.88) | | | | | | 가-10 | 용산구 후암동 30-80 | (196.88) | (196.88) | | | | | | |
| 조경시설 | 소 계 | | | 598.17 | 598.17 | | | | | 7 | | | 598.17 | 598.17 | | | | | 7 | |
| | 안개분수 | 타-2 | 중구 예장동 산5-6 | (10.40) | (10.40) | | | | | | 타-2 | 중구 예장동 산5-6 | (10.40) | (10.40) | | | | | | |
| | 실개천 | 타-3 | 〃 | (536.92) | (536.92) | | | | | (7) | 타-3 | 〃 | (536.92) | (536.92) | | | | | (7) | |
| | 연 못 | 타-4 | 〃 | (50.85) | (50.85) | | | | | | 타-4 | 〃 | (50.85) | (50.85) | | | | | | |
| 휴양시설 | 소 계 | | | 5,863.40 | 5,863.40 | | 1 | 64.17 | 64.17 | 105 | | | 5,863.40 | 5,863.40 | | 1 | 64.17 | 64.17 | 105 | |
| | 휴게소 | 다 | | 5,863.40 | 5,863.40 | | 1 | 64.17 | 64.17 | 105 | 다 | | 5,863.40 | 5,863.40 | | 1 | 64.17 | 64.17 | 105 | |
| | | 다-1 | 중구 회현동1가 산1-2 | (53.59) | (53.59) | | | | | | 다-1 | 중구 회현동1가 산1-2 | (53.59) | (53.59) | | | | | | |
| 휴양시설 | 휴게소 | 다-2 | 중구 회현동1가 산1-2 | (41.02) | (41.02) | | | | | | 다-2 | 중구 회현동1가 산1-2 | (41.02) | (41.02) | | | | | | |
| | | 다-3 | 중구 남대문로5가 467 | (71.84) | (71.84) | | | | | | 다-3 | 중구 남대문로5가 467 | (71.84) | (71.84) | | | | | | |

| 구분 | 시설명 | 변경 전 | | | | | | | | 변경 후 | | | | | | | | 비고 |
|---|---|---|---|---|---|---|---|---|---|---|---|---|---|---|---|---|---|---|
| |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다-4 | 중구 남대문로5가 467 | (71.43) | (71.43) | | | | | | 다-4 | 중구 남대문로5가 467 | (71.43) | (71.43) | | | | | | |
| | | 다-5 | 중구 남대문로5가 467 | (76.64) | (76.64) | | | | | | 다-5 | 중구 남대문로5가 467 | (76.64) | (76.64) | | | | | | |
| | | 다-6 | 용산구 후암동 30-80 | (608.58) | (608.58) | | | | | (6) | 다-6 | 용산구 후암동 30-80 | (608.58) | (608.58) | | | | | (6) | |
| | | 다-7 | 용산구 후암동 산5-6 | (1,056.43) | (1,056.43) | | | | | (7) | 다-7 | 용산구 후암동 산5-6 | (1,056.43) | (1,056.43) | | | | | (7) | |
| | | 다-8 | 중구 예장동 8-1 | (171.96) | (171.96) | | | | | (1) | 다-8 | 중구 예장동 8-1 | (171.96) | (171.96) | | | | | (1) | |
| | | 다-9 | 중구 예장동 산5-6 | (826.88) | (826.88) | | | | | (19) | 다-9 | 중구 예장동 산5-6 | (826.88) | (826.88) | | | | | (19) | |
| | | 다-10 | 중구 예장동 8-1 | (945.70) | (945.70) | 시멘트 | (1) | (64.17) | (64.17) | (10) | 다-10 | 중구 예장동 8-1 | (945.70) | (945.70) | 시멘트 | (1) | (64.17) | (64.17) | (10) | |
| | | 다-11 | 중구 예장동 산5-6 | (720.23) | (720.23) | | | | | (14) | 다-11 | 중구 예장동 산5-6 | (720.23) | (720.23) | | | | | (14) | |
| | | 다-12 | 중구 남산동2가 52-1 | (218.91) | (218.91) | | | | | (6) | 다-12 | 중구 남산동2가 52-1 | (218.91) | (218.91) | | | | | (6) | |
| | | 다-13 | 중구 회현동1가 산1-2 | (118.10) | (118.10) | | | | | (2) | 다-13 | 중구 회현동1가 산1-2 | (118.10) | (118.10) | | | | | (2) | |
| | | 다-14 | 중구 회현동1가 산1-16 | (145.71) | (145.71) | | | | | (12) | 다-14 | 중구 회현동1가 산1-16 | (145.71) | (145.71) | | | | | (12) | |

| 구분 | 시설명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비고 |
|---|---|---|---|---|---|---|---|---|---|---|---|---|---|---|---|---|---|---|---|---|
| |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다-15 | 중구 회현동1가 산1-2 | (159.59) | (159.59) | | | | | (9) | 다-15 | 중구 회현동1가 산1-2 | (159.59) | (159.59) | | | | | (9) | |
| | | 다-16 | 중구 회현동1가 산1-16 | (363.49) | (363.49) | | | | | (12) | 다-16 | 중구 회현동1가 산1-16 | (363.49) | (363.49) | | | | | (12) | |
| | | 다-17 | 증구 회현동1가 산1-2 | (213.30) | (213.30) | | | | | (7) | 다-17 | 증구 회현동1가 산1-2 | (213.30) | (213.30) | | | | | (7) | |
| 교양시설 | 소 계 | | | 15,355.61 | 13,684.12 | | 9 | 5,646.68 | 29,337.29 | 3 | | | 15,355.61 | 13,684.12 | | 9 | 5,646.68 | 29,337.29 | 3 | |
| | 남산시립도서관 | 5 | 용산구 후암동 30-84 | 2,683.70 | 2,683.70 | R/C | 1 | 1,909.84 | 9,329.37 | | 5 | 용산구 후암동 30-84 | 2,683.70 | 2,683.70 | R/C | 1 | 1,909.84 | 9,329.37 | | |
| | 안중근기념관 | 6 | 중구 남대문로5가 471 | 2,347.24 | 1,185.02 | R/C | 1 | 1,185.02 | 3,756.61 | | 6 | 중구 남대문로5가 471 | 2,347.24 | 1,185.02 | R/C | 1 | 1,185.02 | 3,756.61 | | |
| | 서울과학교육원 | 7 | 중구 회현동1가 100-177 | 2,639.69 | 2,639.69 | R/C | 1 | 2,206.06 | 15,905.55 | | 7 | 중구 회현동1가 100-177 | 2,639.69 | 2,639.69 | R/C | 1 | 2,206.06 | 15,905.55 | | |
| | 보호각 | 8 | 중구 회현동 100-267 | 2,036.29 | 2,036.29 | S/C | 1 | (1,787) | (1,440) | | 8 | 중구 회현동 100-267 | 2,036.29 | 2,036.29 | S/C | 1 | (1,787) | (1,440) | | |
| | 박물관 안내실 | 9 | 중구 회현동 100-267 | 363.08 | 363.08 | R/C | 1 | 223.90 | 223.90 | | 9 | 중구 회현동 100-267 | 363.08 | 363.08 | R/C | 1 | 223.90 | 223.90 | | |
| | 봉수대 | 자 | 중구 예장동 산5-6 | 237.27 | 106.14 | | | | | | 자 | 중구 예장동 산5-6 | 237.27 | 106.14 | | | | | | |

| 구분 | 시설명 | 변경 전 | | | | | | | | 변경 후 | | | | | | | | 비고 |
|---|---|---|---|---|---|---|---|---|---|---|---|---|---|---|---|---|---|---|
| |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와룡묘 | 바 | 중구 예장동 산5-6 | 500.00 | 121.86 | 목조 | 4 | 121.86 | 121.86 | (3) | 바 | 중구 예장동 산5-6 | 500.00 | 121.86 | 목조 | 4 | 121.86 | 121.86 | (3) | |
| | 동상 기념비 | 하 | | 4,548.34 | 4,548.34 | | | | | | 하 | | 4,548.34 | 4,548.34 | | | | | | |
| | 김유신 장군상 | 하-1 | 중구 남창동 205-4 | (340.00) | (340.00) | | | | | | 하-1 | 중구 남창동 205-4 | (340.00) | (340.00) | | | | | | |
| | 김구상 | 하-2 | 중구 회현동1가 100-115 | (525.00) | (525.00) | | | | | | 하-2 | 중구 회현동1가 100-115 | (525.00) | (525.00) | | | | | | |
| | 이시영상 | 하-3 | 〃 | (181.41) | (181.41) | | | | | | 하-3 | 〃 | (181.41) | (181.41) | | | | | | |
| | 안중근 의사상 | 하-4 | 용산구 후암동 30-80 | (191.41) | (191.41) | | | | | | 하-4 | 용산구 후암동 30-80 | (191.41) | (191.41) | | | | | | |
| | 정약용상 | 하-5 | 용산구 후암동 30-84 | (112.50) | (112.50) | | | | | | 하-5 | 용산구 후암동 30-84 | (112.50) | (112.50) | | | | | | |
| | 이황상 | 하-6 | 〃 | (180.00) | (180.00) | | | | | | 하-6 | 〃 | (180.00) | (180.00) | | | | | | |
| | 조지훈 시 비 | 하-7 | 중구 예장동 산5-6 | (100.00) | (100.00) | | | | | | 하-7 | 중구 예장동 산5-6 | (100.00) | (100.00) | | | | | | |
| | 반공청년 기념비 | 하-8 | 〃 | (850.00) | (850.00) | | | | | | 하-8 | 〃 | (850.00) | (850.00) | | | | | | |

| 구분 | 시설명 | 변경 전 | | | | | | | | 변경 후 | | | | | | | 비고 |
|---|---|---|---|---|---|---|---|---|---|---|---|---|---|---|---|---|---|
| |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 규모 |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71)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 규모 |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71) | |
| 폐지 | 안중근의사 유묵석비 | 하-9 | | (64.35) | (64.35) | | | | | | 하-9 | | (64.35) | (64.35) | | | | | | |
| | 조선신궁기단 | 하-10 | | (11.15) | (11.15) | | | | | | 하-10 | | (11.15) | (11.15) | | | | | | |
| 신설 | 조선신궁기단2 | 하-11 | | (18.93) | (18.93) | | | | | | 하-11 | | (18.93) | (18.93) | | | | | | |
| | 분수대유적 | 하-12 | | (283.05) | (283.05) | | | | | | 하-12 | | (283.05) | (283.05) | | | | | | |
| | 조선신궁배전터 | 하-13 | | (328.95) | (328.95) | | | | | | 하-13 | | (328.95) | (328.95) | | | | | | |
| | 성곽흔적1 | 하-14 | | (376.06) | (376.06) | | | | | | 하-14 | | (376.06) | (376.06) | | | | | | |
| | 성곽흔적2 | 하-15 | | (109.78) | (109.78) | | | | | | 하-15 | | (109.78) | (109.78) | | | | | | |
| | 조선신궁배수로 유적 | 하-16 | | (31.05) | (31.05) | | | | | | 하-16 | | (31.05) | (31.05) | | | | | | |
| | 경사지 항양도성 | 하-17 | | (836.9) | (836.9) | | | | | | 하-17 | | (836.9) | (836.9) | | | | | | |
| | 기념비1 | 하-18 | | (3.90) | (3.90) | | | | | | 하-18 | | (3.90) | (3.90) | | | | | | |

| 구분 | 시설명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비고 |
|---|---|---|---|---|---|---|---|---|---|---|---|---|---|---|---|---|---|---|---|---|
| |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기림비2 | 하-19 | | (3.90) | (3.90) | | | | | | 하-19 | | (3.90) | (3.90) | | | | | | |
| 어린이시설 | 소 계 | | | 2,882.33 | 2,882.33 | | | | | 24 | | | 2,882.33 | 2,882.33 | | | | | 24 | |
| | 배드민턴장 | 라 | | 490.44 | 490.44 | | | | | | 라 | | 490.44 | 490.44 | | | | | | |
| | | 라-1 | 중구 예장동 산5-6 | (163.48) | (163.48) | | | | | | 라-1 | 중구 예장동 산5-6 | (163.48) | (163.48) | | | | | | |
| | | 라-2 | 용산구 용산동2가 산1-3 | (326.96) | (326.96) | | | | | | 라-2 | 용산구 용산동2가 산1-3 | (326.96) | (326.96) | | | | | | |
| | 체력단련장 | 마 | | 2,391.89 | 2,391.89 | | | | | 24 | 마 | | 2,391.89 | 2,391.89 | | | | | 24 | |
| | | 마-1 | 중구 예장동 산5-6 | (1,439.00) | (1,439.00) | | | | | (12) | 마-1 | 중구 예장동 산5-6 | (1,439.00) | (1,439.00) | | | | | (12) | |
| | | 마-2 |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 (759.64) | (759.64) | | | | | (3) | 마-2 |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 (759.64) | (759.64) | | | | | (3) | |
| | | 마-3 |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 (193.25) | (193.25) | | | | | (9) | 마-3 |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 (193.25) | (193.25) | | | | | (9) | |
| 편의시설 | 소 계 | | | 23,674.49 | 23,674.49 | | 14 | 4,685.42 | 19,325.32 | 42 | | | 23,674.49 | 23,674.49 | | 14 | 4,685.42 | 19,325.32 | 42 | |
| | 주차장 | 나 | | 8,459.26 | 8,459.26 | | | | | 14 | 나 | | 8,459.26 | 8,459.26 | | | | | 14 | |
| | | 나-1 | 중구 회현동1가 100-115 | (457.60) | (457.60) | | | | | | 나-1 | 중구 회현동1가 100-115 | (457.60) | (457.60) | | | | | | |

| 구분 | 시설명 | 변경 전 | | | | | | | | 변경 후 | | | | | | | | 비고 |
|---|---|---|---|---|---|---|---|---|---|---|---|---|---|---|---|---|---|---|
| |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나-2 | 중구 회현동1가 100-177 | (2,046.11) | (2,046.11) | | | | | (9) | 나-2 | 중구 회현동1가 100-177 | (2,046.11) | (2,046.11) | | | | | (9) | |
| 편의시설 | 주차장 | 나-3 | 용산구 후암동 30-84 | (4,956.94) | (4,956.94) | | | | | | 나-3 | 용산구 후암동 30-84 | (4,956.94) | (4,956.94) | | | | | | |
| | | 나-5 |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 (998.61) | (998.61) | | | | | (5) | 나-5 |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 (998.61) | (998.61) | | | | | (5) | |
| | 화장실 | 2 | | 414.46 | 414.46 | | 4 | 254.74 | 360.74 | 2 | 2 | | 414.46 | 414.46 | | 4 | 254.74 | 360.74 | 2 | |
| | | 2-1 | 중구 회현동1가 산1-2 | | | | | | | | 2-1 | 중구 회현동1가 산1-2 | | | | | | | | |
| | | 2-2 | 중구 예장동 산5-6 | (135.00) | (135.00) | R/C | (1) | (135.00) | (135.00) | | 2-2 | 중구 예장동 산5-6 | (135.00) | (135.00) | R/C | (1) | (135.00) | (135.00) | | |
| | | 2-3 | 용산구 후암동 30-84 | (86.36) | (86.36) | R/C | (1) | (62.57) | (62.57) | | 2-3 | 용산구 후암동 30-84 | (86.36) | (86.36) | R/C | (1) | (62.57) | (62.57) | | |
| | | 2-4 | 용산구 후암동 산1-2 | (57.17) | (57.17) | R/C | (1) | (57.17) | (57.17) | | 2-4 | 용산구 후암동 산1-2 | (57.17) | (57.17) | R/C | (1) | (57.17) | (57.17) | | |
| | | 2-5 | 중구 회현동1가 산1-2 | (135.93) | (135.93) | R/C | (1) | (0) | (106) | (2) | 2-5 | 중구 회현동1가 산1-2 | (135.93) | (135.93) | R/C | (1) | (0) | (106) | (2) | |
| | 서울타워 | 3 |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 10,898.60 | 10,898.60 | R/C | 2 | 3,049.81 | 15,187.96 | 20 | 3 |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 10,898.60 | 10,898.60 | R/C | 2 | 3,049.81 | 15,187.96 | 20 | |

| 구분 | 시설명 | 변경 전 | | | | | | | | 변경 후 | | | | | | | | 비고 |
|---|---|---|---|---|---|---|---|---|---|---|---|---|---|---|---|---|---|---|
| |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3-1 |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 | | | (1) | | | | 3-1 |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 | | | (1) | | | | |
| | | 3-2 |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 | | | (1) | | | | 3-2 |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 | | | (1) | | | | |
| | 매 점 | 4 | | 446.93 | 446.93 | | 3 | 284.18 | 470.98 | | 4 | | 446.93 | 446.93 | | 3 | 284.18 | 470.98 | | |
| | | 4-1 |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 (310.85) | (310.85) | R/C | (1) | (148.10) | (262.81) | | 4-1 |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 (310.85) | (310.85) | R/C | (1) | (148.10) | (262.81) | | |
| | | 4-2 | 용산구 회현동1가 산1-1 | (136.08) | (136.08) | 목구조,R/C | (2) | (136.08) | (208.17) | | 4-2 | 용산구 회현동1가 산1-1 | (136.08) | (136.08) | 목구조,R/C | (2) | (136.08) | (208.17) | | |
| | 삭 도 | 사 | 중구 회현동1가 산1-19 | 1,321.30 | 1,321.30 | | 2 | 656.79 | 2,272.25 | | 사 | 중구 회현동1가 산1-19 | 1,321.30 | 1,321.30 | | 2 | 656.79 | 2,272.25 | | |
| | 삭도하단 승강장 | | | (561.25) | (561.25) | R/C | (1) | (455.16) | (1,859.92) | | | | (561.25) | (561.25) | R/C | (1) | (455.16) | (1,859.92) | | |
| | 삭 도 주차장 | | | (760.05) | (760.05) | | | | | | | | (760.05) | (760.05) | | | | | | |
| | 기념품 판매장 | | | | | R/C | (1) | (201.63) | (412.33) | | | | | | R/C | (1) | (201.63) | (412.33) | | |
| | 한국삭도 (종점) | 아 | 중구 예장동 산5-6 | 1,539.40 | 1,539.40 | | 3 | 439.90 | 1,033.39 | | 아 | 중구 예장동 산5-6 | 1,539.40 | 1,539.40 | | 3 | 439.90 | 1,033.39 | | |

| 구분 | 시설명 | 변경 전 | | | | | | | | 변경 후 | | | | | | | | 비고 |
|---|---|---|---|---|---|---|---|---|---|---|---|---|---|---|---|---|---|---|
| |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부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편의시설 | | 아-1 | 중구 예장동 산5-6 | | | R/C | (1) | (391.74) | (986.85) | | 아-1 | 중구 예장동 산5-6 | | | R/C | (1) | (391.74) | (986.85) | | |
| | | 아-2 | 종구 예장동 산5-6 | | | 목구조 | (1) | (10.70) | (10.70) | | 아-2 | 종구 예장동 산5-6 | | | 목구조 | (1) | (10.70) | (10.70) | | |
| | | 아-3 | 중구 예장동 산5-6 | | | 철골구조 | (1) | (37.46) | (35.84) | | 아-3 | 중구 예장동 산5-6 | | | 철골구조 | (1) | (37.46) | (35.84) | | |
| | 경사형 엘리베이터 | 차 | 중구 회현동1가 산1-32 | 117.13 | 117.13 | | | | | | 차 | 중구 회현동1가 산1-32 | 117.13 | 117.13 | | | | | | |
| | 약수터 | 파 | 중구 예장동 산5-6 | 477.41 | 477.41 | | | | | 6 | 파 | 중구 예장동 산5-6 | 477.41 | 477.41 | | | | | 6 | |
| | | 파-1 | 중구 예장동 산5-6 | (100.00) | (100.00) | | | | | | 파-1 | 중구 예장동 산5-6 | (100.00) | (100.00) | | | | | | |
| | | 파-2 | 중구 예장동 산5-6 | (377.41) | (377.41) | | | | | (6) | 파-2 | 중구 예장동 산5-6 | (377.41) | (377.41) | | | | | (6) | |
| 관리시설 | 소 계 | | | 586.31 | 586.31 | | 1 | 119.25 | 395.55 | | | | 586.31 | 586.31 | | 1 | 119.25 | 395.55 | | |
| | 관리 사무소 | 1 | 중구 회현동1가 산1-2 | 586.31 | 586.31 | | 1 | 119.25 | 395.55 | | 1 | 중구 회현동1가 산1-2 | 586.31 | 586.31 | | 1 | 119.25 | 395.55 | | |
| 녹지및기타 | 소 계 | | | 481,203.21 | | | | | | | | | 478,266.04 | | | | | | | 감) 2,937.17㎡ |
| | 녹 지 | | | 481,203.21 | | | | | | | | | 478,266.04 | | | | | | | 감) 2,937.17㎡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연장 (m) | 면적 (㎡)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
| 당초 | 소계 | | | | 8,494.00 | 30,567.68 | | | | |
| 변경 | | | | | 9,910.79 | 33,504.85 | | | | |
| 당초 | 중로 | 계 | | | 2,075.00 | 4,500.00 | | | | |
| 당초 | | 1 | 1 | 20 | 895.0 | (17,900.00) | 도시계획도로 | 공원경계 | 공원경계 | |
| 당초 | | 1 | 2 | 20 | 880.0 | (17,600.00) | 도시계획도로 | 공원경계 | 공원경계 | |
| 당초 | | 2 | 1 | 15 | 300.0 | 4,500.00 | 부진입로 | 중로 1-1 | 중로 1-2 | |
| | | * 도시계획도로는 부지면적에는 산입, 시설면적에는 ( )로 표시하여 미 산입시킴으로서 시설율에 미포함. | | | | | | | | |
| 당초 | 소로 | 계 | | | 2,215.00 | 13,440.50 | | | | |
| 당초 | | 1 | 2 | 10 | 205.50 | 2,005.50 | 부진입로 | 중로 1-1 | 광장6 | |
| 당초 | | 3 | 1 | 10 | 72.50 | 725.00 | 산책로 | 광장6 | 산책로18 | |
| 당초 | | 3 | 9 | 6 | 281.00 | 1,686.00 | 부진입로 | 중로 1-1 | 공원경계 | |
| 당초 | | 3 | 2 | 6 | 336.00 | 2,016.00 | 부진입로 | 공원경계 | 주차장5 | |
| 당초 | | 3 | 3 | 6 | 535.00 | 3,210.00 | 부진입로 | 공원경계 | 남산타워 | |
| 당초 | | 3 | 4 | 4 | 82.00 | 328.00 | 산책로 | 소로 3-2 | 남산타워 | |
| 당초 | | 3 | 5 | 4 | 45.00 | 180.00 | 산책로 | 소로 3-3 | 남산타워 | |
| 당초 | | 3 | 6 | 5 | 479.00 | 2,395.00 | 부진입로 | 공원경계 | 중로 1-2 | |
| 당초 | | 3 | 7 | 5 | 164.00 | 820.00 | 산책로 | 중로 1-2 | 남산3호터널 | |
| 당초 | | 3 | 8 | 5 | 15.00 | 75.00 | 산책로 | 중로 1-1 | 공원경계 | |
| 당초 | 등산로 | 계 | | | 1,411.00 | 4,587.93 | | | | |
| 변경 | | | | | 2,827.79 | 7,525.10 | | | | |
| 당초 | | - | 25 | 3 | 130.00 | 390.00 | 등산로 | 중로 1-2 | 화장실1 | |
| 당초 | | - | 26 | 4 | 637.00 | 2,808.43 | 등산로 | 산책로24 | 광장8 | |
| 당초 | | - | 27 | 2 | 116.00 | 232.00 | 등산로 | 휴게소7 | 산책로23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연장 (m) | 면적 (㎡)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
| 당초 | | - | 28 | 3 | 56.00 | 168.00 | 등산로 | 공원경계 | 소로 3-3 | |
| 당초 | | - | 29 | 3 | 159.00 | 477.00 | 등산로 | 공원경계 | 소로 3-3 | |
| 당초 | | - | 30 | 1.5 | 13.00 | 19.50 | 등산로 | 산책로33 | 산책로32 | |
| 당초 | | - | 31 | 1.5 | 66.00 | 99.00 | 등산로 | 휴게소14 | 소로 3-6 | |
| 당초 | | - | 32 | 3 | 56.00 | 168.00 | 등산로 | 공원경계 | 반공청년기념비 | |
| 당초 | | - | 33 | 2 | 79.00 | 158.00 | 등산로 | 공원경계 | 약수터2 | |
| 당초 | | - | 34 | 2 | 34.00 | 68.00 | 등산로 | 산책로33 | 소로 3-6 | |
| 신설 | | - | 35 | 2 | 1,020.02 | 1,949.50 | 등산로 | 휴게소 7 | 공원경계 | |
| 신설 | | - | 36 | 2 | 325.00 | 725.48 | 등산로 | 공원경계 | 주차장5 | |
| 신설 | | - | 37 | 2 | 136.77 | 262.19 | 등산로 | 공원경계 | 휴게소11 | |
| 당초 | | 계 | | | 2,793.00 | 8,039.25 | | | | |
| 당초 | | - | 1 | 3.6 | 523.00 | 1,883.00 | 산책로 | 광장1 | 광장10 | |
| 당초 | | - | 2 | 2 | 200.00 | 400.00 | 산책로 | 산책로4 | 산책로39 | |
| 당초 | | - | 3 | 2.3 | 309.00 | 711.00 | 산책로 | 중로 1-1 | 산책로2 | |
| 당초 | | - | 4 | 2 | 46.00 | 92.00 | 산책로 | 산책로2 | 산책로1 | |
| 당초 | | - | 5 | 2 | 16.00 | 32.00 | 산책로 | 산책로1 | 산책로6 | |
| 당초 | | - | 6 | 2 | 77.00 | 154.00 | 산책로 | 광장2 | 산책로8 | |
| 당초 | 산책로 | - | 7 | 2.5 | 8.00 | 20.00 | 산책로 | 광장2 | 산책로6 | |
| 당초 | | - | 8 | 3 | 82.00 | 246.00 | 산책로 | 중로1-2 | 산책로6 | |
| 당초 | | - | 9 | 3 | 48.00 | 144.00 | 산책로 | 산책로1 | 산책로6 | |
| 당초 | | - | 10 | 1.5 | 214.00 | 321.00 | 산책로 | 산책로1 | 산책로1 | |
| 당초 | | - | 11 | 4 | 11.00 | 44.00 | 산책로 | 중로1-2 | 산책로8 | |
| 당초 | | - | 12 | 2 | 122.00 | 244.00 | 산책로 | 산책로10 | 산책로1 | |
| 당초 | | - | 13 | 4 | 64.00 | 256.00 | 산책로 | 산책로1 | 산책로14 | |
| 당초 | | - | 14 | 2 | 65.00 | 130.00 | 산책로 | 산책로13 | 산책로1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연장 (m) | 면적 (㎡)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
| 당초 | | - | 15 | 6 | 49.00 | 294.00 | 산책로 | 중로 2-1 | 산책로43 | |
| 당초 | | - | 16 | 5 | 34.00 | 170.00 | 산책로 | 중로 1-2 | 산책로44 | |
| 당초 | | - | 18 | 4 | 93.50 | 374.00 | 산책로 | 소로 3-1 | 안중근기념관 | |
| 당초 | | - | 19 | 2 | 162.00 | 324.00 | 산책로 | 산책로22 | 휴게소6 | |
| 당초 | | - | 20 | 2 | 53.00 | 106.00 | 산책로 | 정양용상 | 주차장1 | |
| 당초 | | - | 22 | 4 | 150.00 | 600.00 | 산책로 | 광장7 | 화장실5 | |
| 당초 | | - | 23 | 2.5 | 136.50 | 341.25 | 산책로 | 산책로27 | 경사지 한양도성 | |
| 당초 | | - | 24 | 4.5 | 70.00 | 315.00 | 산책로 | 산책로25 | 화장실5 | |
| 당초 | | - | 35 | 2 | 44.00 | 88.00 | 산책로 | 산책로37 | 산책로3 | |
| 당초 | | - | 36 | 2 | 6.00 | 12.00 | 산책로 | 산책로37 | 휴게소4 | |
| 당초 | | - | 37 | 2 | 130.00 | 260.00 | 산책로 | 산책로3 | 휴게소5 | |
| 당초 | | - | 38 | 3 | 12.00 | 36.00 | 산책로 | 산책로3 | 산책로39 | |
| 당초 | | - | 40 | 6.5 | 37.00 | 240.50 | 산책로 | 안내실 | 성곽흔적-1 | |
| 당초 | | - | 41 | 6.5 | 31.00 | 201.50 | 산책로 | 성곽흔적-1 | 광장6 | |

# 조성계획총괄도(변경전)

## 남산1근린공원

SCALE=1/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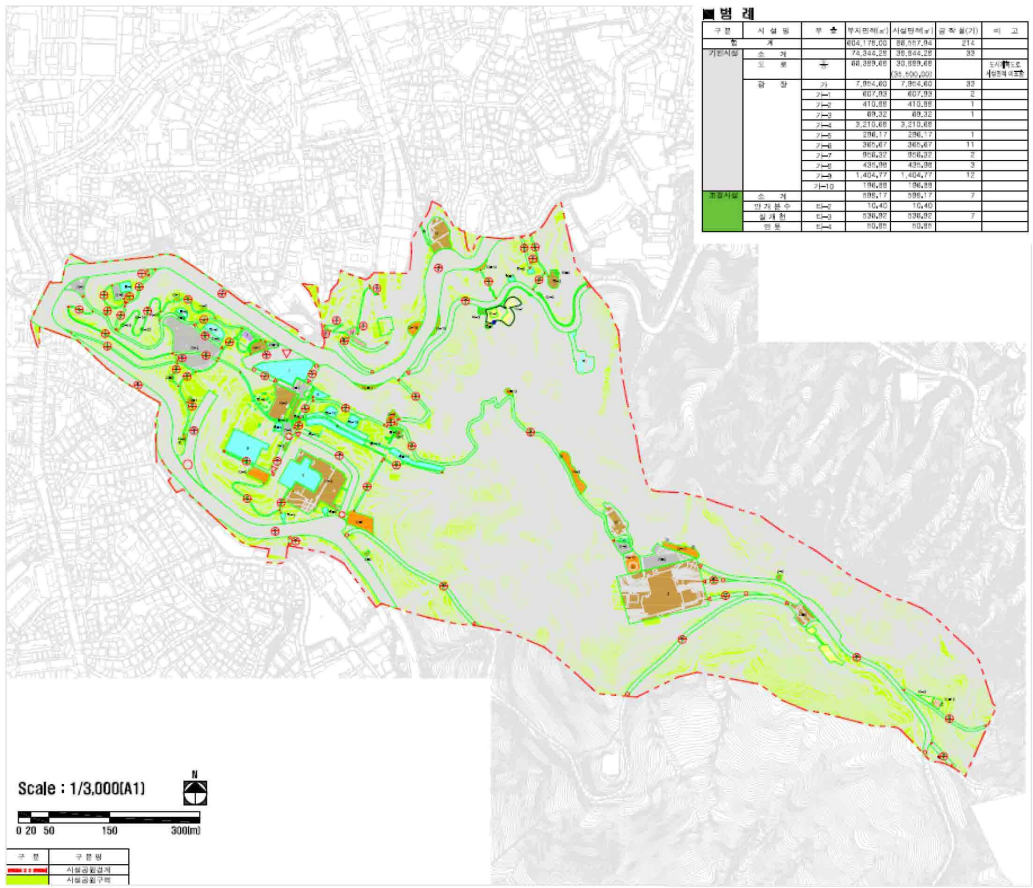


■ 범 례

| 구 분 | 시 설 명 | 부 호 | 무지면적(㎡) | 시설면적(㎡) | 공 작 물(기) | 비 고 |
|---|---|---|---|---|---|---|
| 합 | 계 | | 864,176.03 | 86,557.84 | 214 | |
| 기반시설 | 소 계 | | 74,346.28 | 39,844.28 | 33 | |
| | 도 로 | 소 | 66,389.68 | 30,889.68 | | 도시계획도로 폭원에 포함 |
| | | | | 31,500.000 | | |
| | 광 장 | 가 | 7,864.40 | 7,864.40 | 32 | |
| | | 가-1 | 607.93 | 607.93 | 2 | |
| | | 가-2 | 410.88 | 410.88 | 1 | |
| | | 가-3 | 69.32 | 69.32 | 1 | |
| | | 가-4 | 3,210.68 | 3,210.68 | | |
| | | 가-5 | 286.17 | 286.17 | 1 | |
| | | 가-6 | 367.67 | 367.67 | 11 | |
| | | 가-7 | 856.32 | 856.32 | 2 | |
| | | 가-8 | 431.88 | 431.88 | 3 | |
| | | 가-9 | 1,404.77 | 1,404.77 | 12 | |
| | | 가-10 | 196.89 | 196.89 | | |
| 공공시설 | 소 계 | | 596.17 | 596.17 | 7 | |
| | 안 전 봉 수 | 다-2 | 10.40 | 10.40 | | |
| | 철 개 천 | 다-3 | 536.37 | 536.37 | 7 | |
| | 맨 홀 | 다-4 | 50.01 | 50.01 | | |

■ 범 례

| 구 분 | 시 설 명 | 부 호 | 무지면적(㎡) | 시설면적(㎡) | 공 작 물(기) | 비 고 |
|---|---|---|---|---|---|---|
| 휴양시설 | 소 계 | | 8,974.40 | 8,974.40 | 105 | |
| | 물 계 소 | 다 | 8,974.40 | 8,974.40 | 105 | |
| | | 다-1 | 53.59 | 53.59 | | |
| | | 다-2 | 47.09 | 47.09 | | |
| | | 다-3 | 71.84 | 71.84 | | |
| | | 다-4 | 71.43 | 71.43 | | |
| | | 다-5 | 76.64 | 76.64 | | |
| | | 다-6 | 605.78 | 605.78 | 6 | |
| | | 다-7 | 1,056.43 | 1,056.43 | 7 | |
| | | 다-8 | 171.86 | 171.86 | 1 | |
| | | 다-9 | 574.28 | 574.28 | 19 | |
| | | 다-10 | 948.70 | 948.70 | 10 | |
| | | 다-11 | 770.23 | 770.23 | 14 | |
| | | 다-12 | 218.91 | 218.91 | 8 | |
| | | 다-13 | 118.10 | 118.10 | 7 | |
| | | 다-14 | 148.71 | 148.71 | 12 | |
| | | 다-15 | 159.69 | 159.69 | 9 | |
| | | 다-16 | 363.48 | 363.48 | 12 | |
| | | 다-17 | 213.20 | 213.20 | 7 | |
| | | 다-18 | 16 | 16 | | |
| | | 다-19 | 15 | 15 | | |
| | | 다-20 | 19 | 19 | | |
| | | 다-21 | 15 | 15 | | |
| 유희시설 | 소 계 | | 367.6 | 367.6 | | |
| | 어린이놀이터 | 나 | 367.6 | 367.6 | | |
| 교양시설 | 소 계 | | 15,351.25 | 13,689.76 | 3 | |
| | 남산시립도서관 | 5 | 2,883.70 | 2,883.70 | | |
| | 안중근기념관 | 6 | 2,347.22 | 1,185.00 | | |
| | 서울과학고등학교 | 7 | 2,839.69 | 2,839.69 | | |
| | 팔각정 | 8 | 2,036.19 | 2,036.19 | | |
| | 백불김현배동상 | 9 | 367.12 | 367.12 | | |
| | 분수대 | 자 | 237.27 | 106.14 | | |
| | 위령탑 | 바 | 550.00 | 121.76 | 3 | |
| | | 총 | 4,540.54 | 4,540.54 | | |
| | 김유신장군상 | 총-1 | 340.00 | 340.00 | | |
| | 대구상 | 총-2 | 525.00 | 525.00 | | |
| | 이시영상 | 총-3 | 181.41 | 181.41 | | |
| | 안중근의사상 | 총-4 | 181.41 | 181.41 | | |
| | 동학혁상 | 총-5 | 112.20 | 112.20 | | |
| | 이회영상 | 총-6 | 180.00 | 180.00 | | |
| | 손기정 시비 | 총-7 | 100.00 | 100.00 | | |
| | 한글창제 기념비 | 총-8 | 850.00 | 850.00 | | |
| | 해중국학자 경배석 | 총-9 | 64.35 | 64.35 | | |
| | 조선신궁기마상 | 총-10 | 11.15 | 11.15 | | |
| | 조선신궁기단상 | 총-11 | 18.93 | 18.93 | | |
| | 분수대경계석 | 총-12 | 283.05 | 283.05 | | |
| | 조선신궁배전비 | 총-13 | 328.20 | 328.20 | | |
| | 심훈흉비1 | 총-14 | 376.06 | 376.06 | | |
| | 심훈흉비2 | 총-15 | 108.78 | 108.78 | | |
| | 조선총독부석재 | 총-16 | 31.00 | 31.00 | | |
| | 청사진측량도원 | 총-17 | 836.90 | 836.90 | | |
| 운동시설 | 소 계 | | 2,882.33 | 2,882.33 | 24 | |
| | 배드민턴장 | 라 | 480.44 | 480.44 | | |
| | | 라-1 | 163.48 | 163.48 | | |
| | | 라-2 | 316.96 | 316.96 | | |
| | 체력단련장 | 마 | 2,381.89 | 2,381.89 | 24 | |
| | | 마-1 | 1,438.00 | 1,438.00 | 12 | |
| | | 마-2 | 715.64 | 715.64 | 3 | |
| | | 마-3 | 193.25 | 193.25 | 9 | |
| 공원시설 | 소 계 | | 73,674.49 | 73,674.49 | 42 | |
| | 주 차 장 | 나 | 8,459.76 | 8,459.76 | 14 | |
| | | 나-1 | 457.80 | 457.80 | | |
| | | 나-2 | 2,046.11 | 2,046.11 | 8 | |
| | | 나-3 | 4,316.84 | 4,316.84 | | |
| | | 나-4 | 999.61 | 999.61 | 6 | |
| | 화 장 실 | 2 | 414.48 | 414.48 | 2 | |
| | | 2-1 | 135.00 | 135.00 | | |
| | | 2-2 | 86.76 | 86.76 | | |
| | | 2-3 | 57.72 | 57.72 | | |
| | | 2-4 | 135.00 | 135.00 | 2 | |
| | 서 울 타 워 | 3 | 10,898.80 | 10,898.80 | 20 | |
| | 매 점 | 4 | 448.80 | 448.80 | | |
| | | 4-1 | 310.80 | 310.80 | | |
| | | 4-2 | 138.00 | 138.00 | | |
| | 식 도 | 사 | 1,371.30 | 1,371.30 | | |
| | 충국여도(흉원) | 아 | 1,538.40 | 1,538.40 | | |
| | 정시멜로비아비 | 차 | 117.13 | 117.13 | | |
| | 약수터 | 카 | 477.41 | 477.41 | 6 | |
| | | 카-1 | 100.00 | 100.00 | | |
| | | 카-2 | 377.41 | 377.41 | 6 | |
| 환경시설 | 소 계 | | 586.31 | 586.31 | | |
| | 환경저무수 | 1 | 586.31 | 586.31 | | |
| 도시계획시설 | 소 계 | | 480,448.27 | | | |
| | 합 계 | | 480,448.27 | | | |

# 조성계획총괄도(변경후)

SCALE=1/3,000

## 남산1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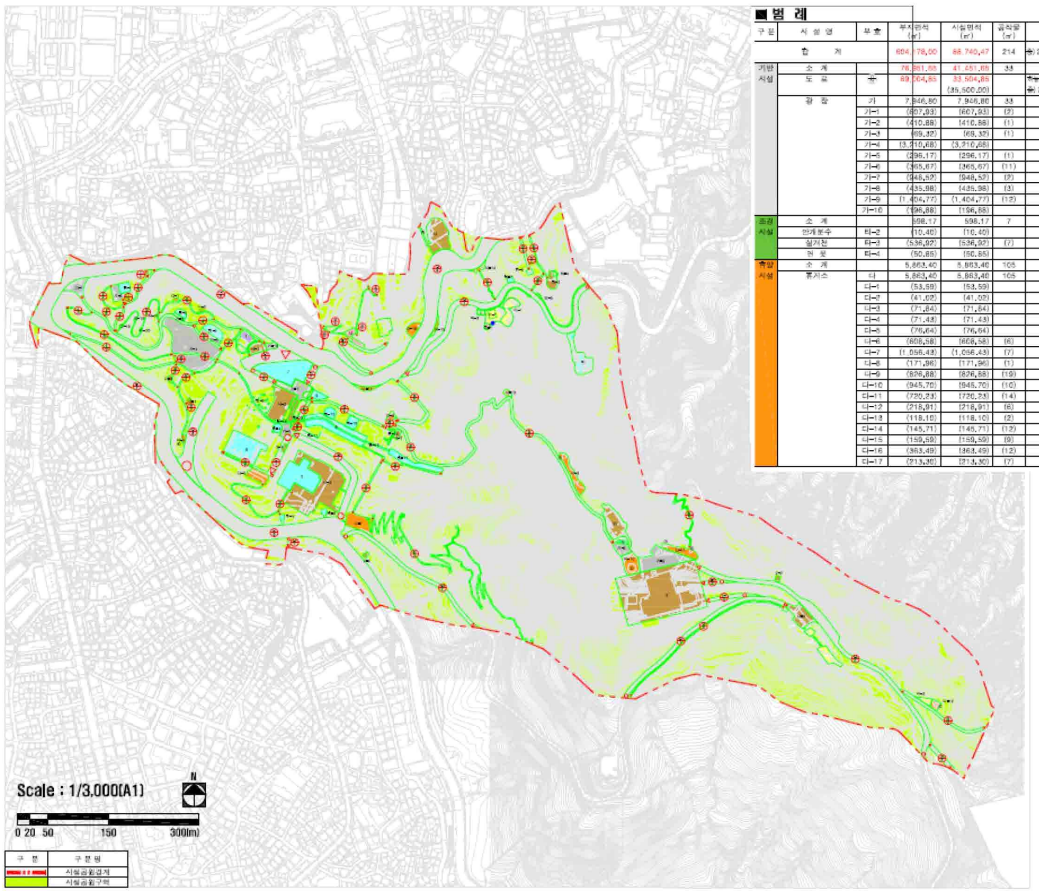


■ 범 례

| 구분 | 시 설 명 | 부호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 비고 |
|---|---|---|---|---|---|---|
| | 합 계 | | 604,78.00 | 88,740.47 | 214 | ⇔2,937.17㎡ |
| 기반시설 | 소 계 | | 78,881.55 | 41,251.55 | 33 | |
| | 도 로 | 도 | 49,504.55 | 33,504.55 (35,500.00) | | 주유소동측 1호 ⇔2,937.17㎡ |
| | 광 장 | 광 | 7,946.90 | 7,946.90 | 33 | |
| | | 광-1 | (667.93) | (667.93) | (2) | |
| | | 광-2 | (410.88) | 1410.88) | (1) | |
| | | 광-3 | (69.37) | (69.37) | (1) | |
| | | 광-4 | (3,210.48) | (3,210.48) | | |
| | | 광-5 | (296.17) | (296.17) | (1) | |
| | | 광-6 | (365.67) | (365.67) | (11) | |
| | | 광-7 | (948.57) | (948.57) | (2) | |
| | | 광-8 | (435.98) | (435.98) | (3) | |
| | | 광-9 | (1,404.77) | (1,404.77) | (12) | |
| | | 광-10 | (196.88) | (196.88) | | |
| 공원시설 | 소 계 | | 598.17 | 598.17 | 7 | |
| | 안개분수 | 타-2 | (10.40) | (10.40) | | |
| | 실개천 | 타-3 | (536.37) | (536.37) | (7) | |
| | 전 망 | 타-4 | (50.85) | (50.85) | | |
| 측량시설 | 소 계 | | 5,863.40 | 5,863.40 | 105 | |
| | 벤치스 | 다 | 5,863.40 | 5,863.40 | 105 | |
| | | 다-1 | (53.59) | (53.59) | | |
| | | 다-2 | (41.05) | (41.05) | | |
| | | 다-3 | (71.84) | (71.84) | | |
| | | 다-4 | (71.43) | (71.43) | | |
| | | 다-5 | (76.64) | (76.64) | | |
| | | 다-6 | (668.58) | (668.58) | (6) | |
| | | 다-7 | (1,556.43) | (1,556.43) | (7) | |
| | | 다-8 | (171.96) | (171.96) | (1) | |
| | | 다-9 | (826.88) | (826.88) | (10) | |
| | | 다-10 | (945.70) | (945.70) | (10) | |
| | | 다-11 | (720.23) | (720.23) | (14) | |
| | | 다-12 | (218.91) | (218.91) | (6) | |
| | | 다-13 | (118.10) | (118.10) | (2) | |
| | | 다-14 | (145.71) | (145.71) | (12) | |
| | | 다-15 | (159.59) | (159.59) | (9) | |
| | | 다-16 | (363.49) | (363.49) | (12) | |
| | | 다-17 | (213.90) | (213.90) | (7) | |

| 구분 | 시 설 명 | 부호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 비고 |
|---|---|---|---|---|---|---|
| 교통시설 | 소 계 | | 15,355.61 | 13,664.12 | 3 | |
| | 남산식림도시관 | 5 | 2,683.76 | 2,683.76 | | |
| | 한홍근 기념관 | 6 | 2,347.24 | 1,185.02 | | |
| | 서울기후 교육원 | 7 | 2,639.69 | 2,639.69 | | |
| | 보호각 | 8 | 2,036.29 | 2,036.29 | | |
| | 학생관찰실습 | 9 | 363.06 | 363.06 | | |
| | 동수대 | 지 | 237.57 | 106.14 | | |
| | 화장실 | 마 | 500.00 | 121.86 | (3) | |
| | 동상기념비 | 현 | 4,148.34 | 4,148.34 | | |
| | 김종스 동굴광 | 측-1 | (340.00) | (340.00) | | |
| | 김구상 | 측-2 | (525.00) | (525.00) | | |
| | 이식벌상 | 측-3 | (181.41) | (181.41) | | |
| | 한홍근 흉사상 | 측-4 | (191.41) | (191.41) | | |
| | 정약용상 | 측-5 | (112.50) | (112.50) | | |
| | 이충상 | 측-6 | (100.00) | (100.00) | | |
| | 조지훈 시비 | 측-7 | (100.00) | (100.00) | | |
| | 빈궁청년 기념비 | 측-8 | (850.00) | (850.00) | | |
| | 한홍근박사묘역비 | 측-9 | (64.35) | (64.35) | | |
| | 조선식물기념1 | 측-10 | (11.13) | (11.13) | | |
| | 조선식물기념2 | 측-11 | (18.93) | (18.93) | | |
| | 봉우대 묘역 | 측-12 | (283.05) | (283.05) | | |
| | 조선신경제전비 | 측-13 | (328.95) | (328.95) | | |
| | 숲속초소1 | 측-14 | (376.06) | (376.06) | | |
| | 숲속초소2 | 측-15 | (109.78) | (109.78) | | |
| | 조선신문예우호 문비 | 측-16 | (31.05) | (31.05) | | |
| | 김시치 현양도상 | 측-17 | (836.90) | (836.90) | | |
| | 기념비1 | 측-18 | (3,90) | (3,90) | | |
| | 기념비2 | 측-19 | (3,90) | (3,90) | | |
| 운동시설 | 소 계 | | 2,882.53 | 2,882.53 | 24 | |
| | 배드민턴장 | 라 | 490.44 | 490.44 | | |
| | | 라-1 | (183.48) | (183.48) | | |
| | | 라-2 | (326.96) | (326.96) | | |
| | 체력단련장 | 마 | 2,391.89 | 2,391.89 | 24 | |
| | | 마-1 | (1,439.00) | (1,439.00) | (12) | |
| | | 마-2 | (759.84) | (759.84) | (8) | |
| | | 마-3 | (193.05) | (193.05) | (4) | |
| 편익시설 | 소 계 | | 23,674.49 | 23,674.49 | 42 | |
| | 주차장 | 나 | 8,459.26 | 8,459.26 | 14 | |
| | | 나-1 | (457.60) | (457.60) | | |
| | | 나-2 | (2,046.11) | (2,046.11) | (9) | |
| | | 나-3 | (4,956.94) | (4,956.94) | | |
| | | 나-4 | (998.61) | (998.61) | (5) | |
| | 휴정실 | 2 | 414.46 | 414.46 | 7 | |
| | | 2-2 | (135.00) | (135.00) | | |
| | | 2-3 | (86.36) | (86.36) | | |
| | | 2-4 | (57.17) | (57.17) | | |
| | | 2-5 | (135.93) | (135.93) | (2) | |
| | 버들마당 | 3 | 10,898.60 | 10,898.60 | 76 | |
| | 매 점 | 4 | 446.93 | 446.93 | | |
| | | 4-1 | (310.85) | (310.85) | | |
| | | 4-2 | (136.08) | (136.08) | | |
| | 석 도 | 사 | 1,321.36 | 1,321.36 | | |
| | 사도휴게 습강장 | | (561.25) | (561.25) | | |
| | 식도 주차장 | | (760.05) | (760.05) | | |
| | 현국석도 (종점) | 아 | 1,539.40 | 1,539.40 | | |
| | 공사용 엘리베이터 | 차 | 117.13 | 117.13 | | |
| | 약수터 | 천 | 477.41 | 477.41 | 6 | |
| | | 천-1 | (100.00) | (100.00) | | |
| | | 천-2 | (377.41) | (377.41) | (6) | |
| 관리시설 | 소 계 | | 586.31 | 586.31 | | |
| | 관리사무소 | 1 | 586.31 | 586.31 | | |
| 녹지 및 기타 | 소 계 | | 478,266.64 | | | |
| | 녹지 및 기타 | | 478,266.64 | | | 외 2,937.17㎡ |

# 조성계획총괄도(변경전)

SCALE=1/1,200

## 남산1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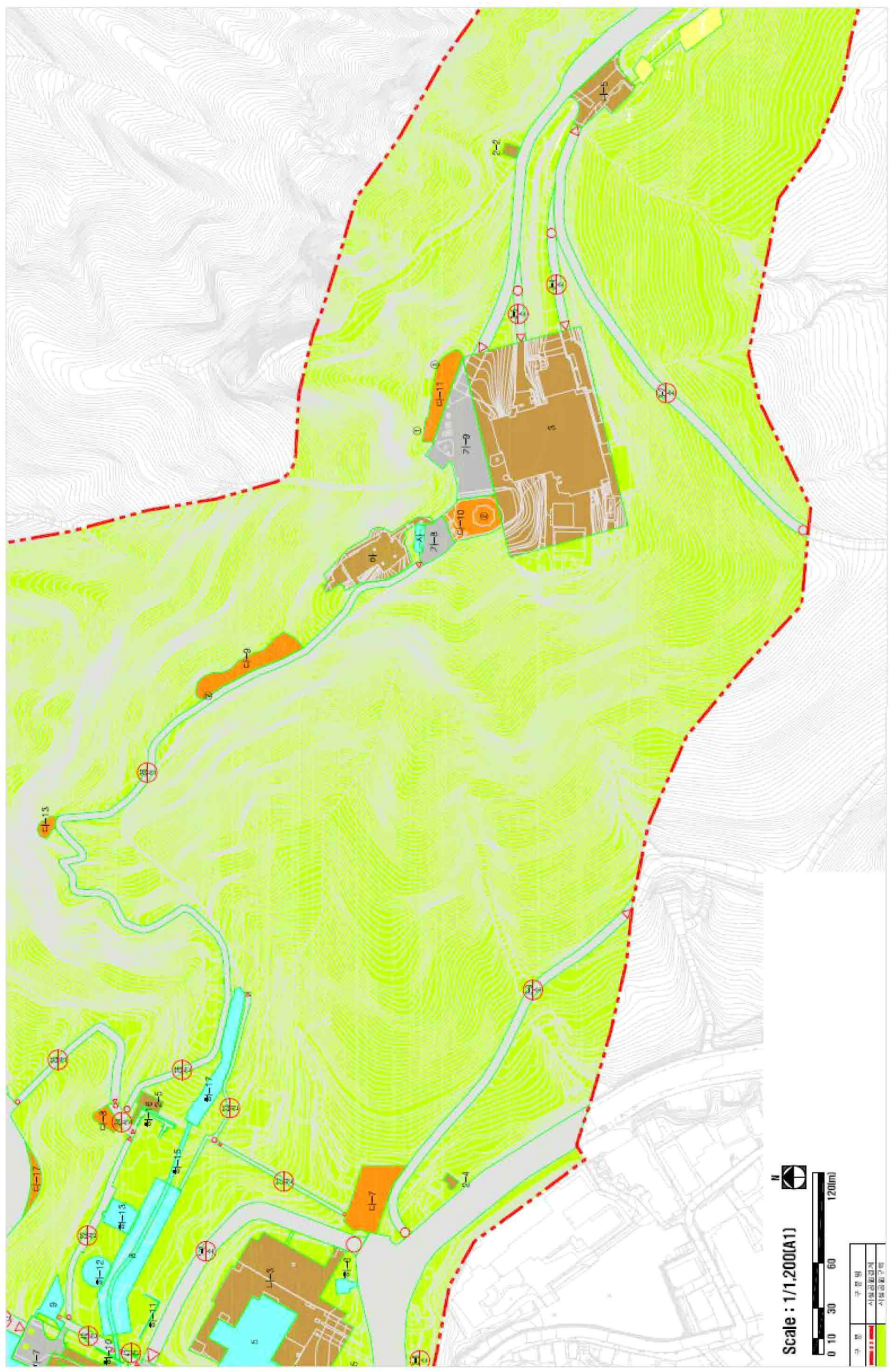

# 조성계획총괄도(변경후)

SCALE=1/1,200

## 남산1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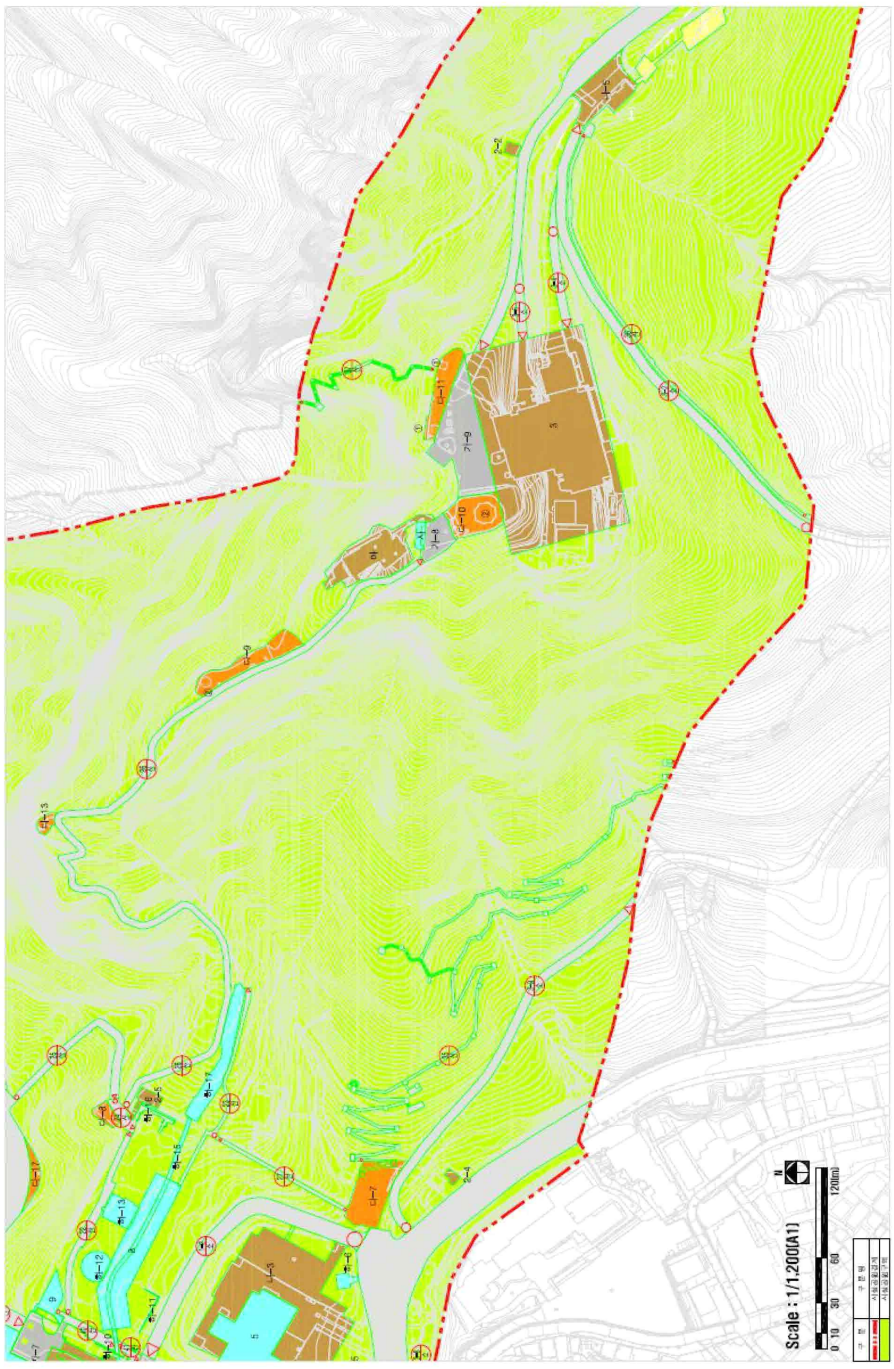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76호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수시분 부과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16건)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 | | |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 | | 처분내용 |
|---|---|---|---|---|---|---|---|
| 순번 | 차량 등록번호 | 성명 | 주소 | 일시 | 장소 | 내용 | 과태료 |
| 1 | 01모1993 | ㈜*엔에스씨오알피 |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9-08 14:24 |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 200,000원 |
| 2 | 01오4661 | 이*호,김*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9-10 14:50 | 용산02_강변북로(구리) 2차로 | 〃 | 〃 |
| 3 | 27너7522 | 권*만 |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9-10 05:40 | 동작01_노량진역(노량진로) 2차로 | 〃 | 〃 |
| 4 | 82루6153 | 김*태 |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9-13 21:27 | 경기도 수원시 LG전자베스트샵(수원방면) 4차선 | 〃 | 〃 |
| 5 | 01버6507 | 김*중 |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9-17 16:01 | 중랑01_북부간선도로 3차로 | 〃 | 〃 |
| 6 | 05머3355 | 정*철 |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9-18 11:46 | 중랑01_북부간선도로 1차로 | 〃 | 〃 |
| 7 | 75부3592 | 김*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9-22 16:33 | 구로06_개봉교후방 1차로 | 〃 | 〃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 | | |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 | | 처분내용 |
|---|---|---|---|---|---|---|---|
| 순번 | 차량 등록번호 | 성명 | 주소 | 일시 | 장소 | 내용 | 과태료 |
| 8 | 서울73라5614 | ㈜*모스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9-24 02:36 | 영등포03_서울교(경인로) 2차로 | 〃 | 〃 |
| 9 | 80무9392 | 윤*영 |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9-25 15:47 | 광진01_동일로(군자교 지하차도) 2차로 | 〃 | 〃 |
| 10 | 01보6885 | ㈜이*인터내셔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9-26 09:10 | 은평02_통일로 2차로 | 〃 | 〃 |
| 11 | 28부5917 | 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2024-09-28 01:22 | 광진03_워커힐(아차산로) 2차로 | 〃 | 〃 |
| 12 | 91나7401 | CHA*DHRY SAJID SALEEM |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9-28 15:34 | 인천광역시 천상교앞 계양구 서운동 143-22(1차로) | 〃 | 〃 |
| 13 | 서울55마1932 | 정*수 |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9-28 21:51 | 용산02_강변북로(구리) 4차로 | 〃 | 〃 |
| 14 | 04더8181 | 주-한*에이치에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9-29 12:18 | 중랑01_북부간선도로 3차로 | 〃 | 〃 |
| 15 | 02도1970 | 현*캐피탈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9-30 13:56 |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1차로 | 〃 | 〃 |
| 16 | 34어5114 | 정*석 |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9-30 14:45 | 강남08_수서IC 4차로 | 〃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이의신청 안내

가. 이의신청 기한 :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나. 본 부과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이의신청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모바일(문자)제출 :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촬영하여 업무용 핸드폰 (010-9615-3659)으로 문자 전송
- 담당 : 김석근(Tel 02-2133-3659) 끝.

붙임 :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 | | |
|---|---|---|---|---|---|
| 신청인 | 성 명<br>(차량번호) | ( )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 |
| 과태료 처분내역 | | 부과기관 | 서울특별시 | 부과번호 | |
| | | 부과일자 | | 과태료 금 액 | |
| | | 위반내용 |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운행제한 위반 | | |
| 과 태 료<br>처분에 대한<br>불 복 사 유 | | | | | |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77호

## 시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철거)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76 시유재산 및 인근에 사다리 등이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어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무단적치물(사다리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 고 명: 시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철거) 계고서 공시송달
○ 공고내용: 행정대집행 계고서(붙임)
○ 공시송달 기간 : 2024. 12. 19.~2025. 1. 2. (15일)
○ 공고방법: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 게재
○ 공고사유: 무단적치물 소유자 파악 불가능(송달 불가능)
○ 공고대상: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76 시유재산 무단점유 사다리, 체인자물쇠, 접이식의자 등
○ 기타사항: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서울시는 배상(보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행 후 행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변상금을 행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한내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시 재산관리과(☎02-2133-3294)

제2024- 호

#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24년 5월, 8월 두차례에 걸쳐 영등포구 여의도동 1-876 시유지와 인접지에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사다리, 체인자물쇠, 접이식 의자 등을 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유재산의 유지관리, 통행하는 시민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여 안전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4년 12월 26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위 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 량 | 대집행 방법 |
|---|---|---|---|
| 서울시 영등포구<br>여의도동 1-876<br>도로 및 인접지 | 사다리<br>체인자물쇠<br>접이식 의자 등 | 다 수<br>(400여개) | 철 거 |

2024년 12월 19일

# 서 울 특 별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무단적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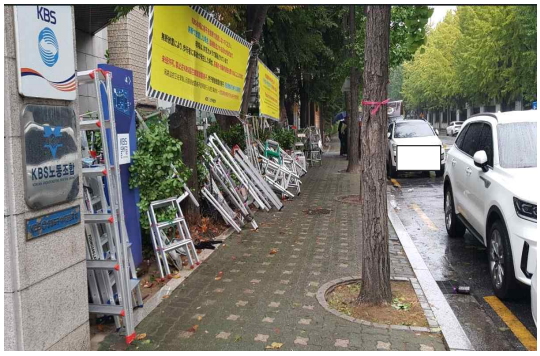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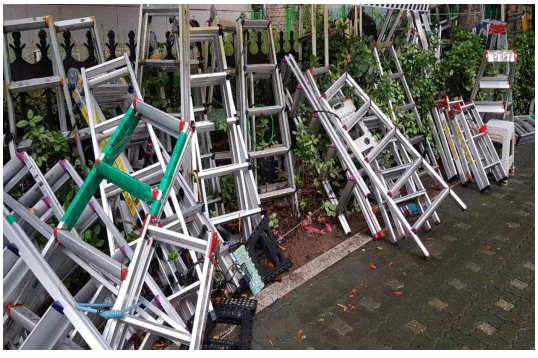

경계출입 안내
현 위치(영등포구 여의도동 1-87)는
접이식 삼각사다리 등
아오니 소요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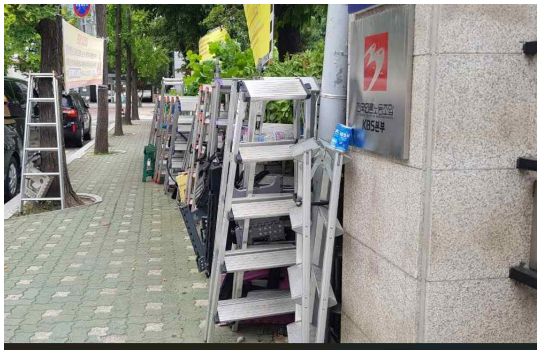

KBS

Please do not leave ladders unattende
KBS 한국방송

후문
3
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78호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29조, 제31조에 근거하여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화물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금 고지서 및 독촉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시보에 공시송달(공고)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12.19 ~ 2025. 1. 2.(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
독촉이후에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명시함.

※「행정절차법」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는 마스킹 처리.

| | | |
|---|---|---|
| 당사자 | 명칭(성명) | 노*양 |
| | 과세대상 | 서울84*1916 |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93길 **, 1층 |
| 환수금내역 | | 택시물류과-3403(2013.02.06)에 따른 97,380원 |
| 등기우편송달내역 | | 등기번호 : 1078833796163 반송사유 : 주소불명 |

| | | |
|---|---|---|
| 당사자 | 명칭(성명) | 박*섭 |
| | 과세대상 | 서울86*7776 |
| |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대안길 1** |
| 환수금내역 | | 물류정책과-3259(2024.8.30)에 따른 75,350원 |
| 등기우편송달내역 | | 등기번호 : 1078833812683 반송사유 : 폐문부재 |

| | | |
|---|---|---|
| 당사자 | 명칭(성명) | 김*찬 |
| | 과세대상 | 서울80*5588 |
|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44, 114동 1*03호 (장기동, 초당마을 주공아파트) |
| 환수금내역 | | 물류정책과-9023(2024.6.26)에 따른 14,850원 |
| 등기우편송달내역 | | 등기번호 : 10788338126 84 반송사유 : 폐문부재 |

| | | |
|---|---|---|
| 당사자 | 명칭(성명) | 이*영 |
| | 과세대상 | 서울82*4918 |
|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로7길 73, 10*동 100*호 (논공읍, 청구아파트) |
| 환수금내역 | | 물류정책과-9093(2023.7.4.)에 따른 5,270원 |
| 등기우편송달내역 | | 등기번호 : 10788337352 80 반송사유 : 폐문부재 |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일(2025.1.2)이 납부기한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81호

#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37호(2024.09.12.)로 결정(변경)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동남권사업과(☎02-2133-8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기정 | 1 | 광로 | 2 | 20 | 50 | 주간선도로 | 7,780 | 서초동 광로21 | 송파동 광로19 | 일반도로 | 건고시 제198호 (1971.4.7.) | • (기정)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3,427㎡)<br>• (변경) 도로 중복결정 : 지하 - 영동대로(3,336㎡→1,562㎡, 감1,774㎡)<br>• (변경)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 : 지하 -복합환승센터지하 (9,068㎡→9,078㎡, 증10㎡)<br>• (기정)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 지하(178㎡)<br>• (기정)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15,706㎡) |
| 변경 | | 광로 | 2 | 20 | 50 | 주간선도로 | 7,780 | 서초동 광로21 | 송파동 광로19 | 일반도로 | | |
| 기정 | 2 | 대로 | 3 | 70 | 25~30 | 보조간선도로 | 1,875 | 청담동 중로1-36 | 대치동 대로1-22 | 일반도로 | 건고시 제198호 (1971.4.7.) | • (변경)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 (13,094㎡→12,853㎡, 감241㎡)<br>• (변경) 광장 중복결정 - 광장㉮(4,798㎡→4,720㎡, 감78㎡)<br>• (기정)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GTX-A(424㎡)<br>• (기정)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 지하(1,842㎡)<br>• (기정)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 176㎡) |
| 변경 | | 대로 | 3 | 70 | 25~30 | 보조간선도로 | 1,875 | 청담동 중로1-36 | 대치동 대로1-22 | 일반도로 | | |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기정 | 3 | 대로 | 3 | 192 | 27~40 | 주간선도로 | 9,416 | 송파구 장지동 717 시계 | 광진구 노유동 96-4 | 자동차전용도로 | 서고시 제305호 (1992.9.28.) | • (변경) 철도 중복결정 : 지하<br>- 도시철도(9호선)<br>(89㎡→443㎡, 증354㎡)<br>• (변경) 철도 중복결정 : 지하<br>- GTX-A<br>(3,217㎡→3,208㎡, 감9㎡)<br>• (기정) 광장 중복결정<br>- 광장㉮(13,436㎡)<br>- 광장㉯(184㎡)<br>• (변경) 하천 중복결정 : 지상<br>- 지방하천(탄천)<br>(81,605㎡→79,002㎡, 감2,603㎡)<br>• (변경)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br>- 지하(206㎡→172㎡, 감34㎡) |
| 변경 | | 대로 | 3 | 192 | 27~40 | 주간선도로 | 9,416 | 송파구 장지동 717 시계 | 광진구 노유동 96-4 | 자동차전용도로 | | |
| 기정 | 4 | 대로 | 3 | 204 | 25~28 | 보조간선도로 | 273 | 삼성동 172-2 (대로3-70) | 잠실동 4 (중로1-86) | 일반도로 | 서고시 제142호 (1998.4.20.) | • (기정) 광장 중복결정<br>- 광장㉯(78㎡)<br>• (기정)하천 중복결정 : 지상<br>- 지방하천(탄천) (7,179㎡) |
| 변경 | | 대로 | 3 | 204 | 25~28 | 보조간선도로 | 273 | 삼성동 172-2 (대로3-70) | 잠실동 4 (중로1-86) | 일반도로 | | |
| 기정 | 5 | 중로 | 1 | 86 | 20~40 | 보조간선도로 | 1,750 | 잠실동 중로1-136 | 잠실동 대1-22 | 일반도로 | 건고시 제198호 (1971.4.7.) | • (기정)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br>- 지상(125㎡)<br>• (기정) 철도 중복결정 : 지하<br>- 도시철도(9호선)(417㎡)<br>• (기정) 체육시설 중복결정 : 지상<br>- 잠실종합운동장(8,038㎡)<br>• (변경) 하천 중복결정 : 지상<br>- 지방하천 (탄천)<br>(38,595㎡→38,443㎡,감152㎡)<br>• (기정) 지하차로수직적범위결정<br>(길이 550m, 폭 19~25m<br>높이 5m, 지하 9.7m~12.5m,<br>수평투영면적 12,861㎡) |
| 변경 | | 중로 | 1 | 86 | 20~40 | 보조간선도로 | 1,750 | 잠실동 중로1-136 | 잠실동 대1-22 | 일반도로 | | |
| 기정 | 6 | 중로 | 1 | 136 | 20~25 | 주간선도로 | 15,910 | 동작동 국립묘지앞 | 암사동 암사광장 | 자동차전용도로 | 건고시 제198호 (1971.4.7.) | • (기정) 하천 중복결정 : 지상<br>- 지방하천(탄천)(9,104㎡)<br>• (기정) 광장 중복결정<br>- 광장㉮(13,990㎡)<br>- 광장㉰(5,860㎡)<br>- 광장㉱(8,328㎡)<br>• (기정) 지하차로 수직적범위결정<br>(길이 335m, 폭 22m<br>높이 5m, 지하 3.7m~8.3m,<br>수평투영면적 4,442㎡) |
| 변경 | | 중로 | 1 | 136 | 20~25 | 주간선도로 | 15,910 | 동작동 국립묘지앞 | 암사동 암사광장 | 자동차전용도로 | | |
| 기정 | 7 | 중로 | 2 | 289 | 17.4~25 | 주간선도로 | 21,050 | 반포동 115-1 | 강동구 암사동 | 자동차전용도로 | 서고시 제635호 (1983.11.25.) | • (변경) 하천 중복결정 : 지상<br>- 지방하천(탄천)<br>(8,001㎡→8,231㎡, 증230㎡)<br>• (변경) 광장 중복결정<br>- 광장㉮<br>(12,455㎡→13,814㎡, 증1,359㎡)<br>- 광장㉰(6,137㎡)<br>- 광장㉱(8,659㎡)<br>• (기정) 지하차로 수직적범위결정 |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변경 | | 중로 | 2 | 289 | 17.4 ~25 | 주간선 도로 | 21,050 | 반포동 115-1 | 강동구 암사동 | 자동차 전용도로 | | (길이 335m, 폭 25m 높이 5m, 지하 3.7m~8.3m, 수평투영면적 5,192㎡) |

-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광로2-20 | 광로2-20 | • 도로 중복결정 : 지하<br>- 영동대로(3,336㎡→1,562㎡, 감1,774㎡)<br>•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 : 지하<br>-복합환승센터지하(9,068㎡→9,078㎡, 증10㎡) | • 중복결정 면적 오기정정 |
| 대로3-70 | 대로3-70 | • 하천 중복결정 : 지상<br>- 지방하천(탄천)(13,094㎡→12,853㎡, 감241㎡)<br>• 광장 중복결정<br>- 광장㉮(4,798㎡→4,720㎡, 감78㎡) | • 중복결정 면적 오기정정 |
| 대로3-192 | 대로3-192 | • 철도 중복결정 : 지하<br>- 도시철도(9호선, 89㎡→443㎡, 증354㎡)<br>• 철도 중복결정 : 지하<br>- GTX-A (3,217㎡→3,208㎡, 감9㎡)<br>• 하천 중복결정 : 지상<br>- 지방하천(탄천)(81,605㎡→79,002㎡, 감2,603㎡)<br>•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br>- 지하(206㎡→172㎡, 감34㎡) | • 중복결정 면적 오기정정 |
| 중로1-86 | 중로1-86 | • 하천 중복결정 : 지상<br>- 지방하천 (탄천)(38,595㎡→38,443㎡, 감152㎡) | • 중복결정 면적 오기정정 |
| 중로2-289 | 중로2-289 | • 하천 중복결정 : 지상<br>- 지방하천(탄천)(8,001㎡→8,231㎡, 증230㎡)<br>• 광장 중복결정<br>- 광장㉯ (12,455㎡→13,814㎡, 증1,359㎡) | • 중복결정 면적 오기정정 |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 변경 없음

2)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가 | 광장(청담교 서측광장) | 교통광장 | 삼성동 | 91,327 | - | 91,327 | 서고시 제635호 (1983.11.25.) | • (변경) 도로 중복결정<br>- 도로③(13,436㎡)<br>- 도로⑥(13,990㎡)<br>- 도로⑦(12,455㎡→13,814㎡, 증1,359㎡)<br>• (변경) 지방하천(탄천) 중복결정 (17,752㎡→17,760㎡, 증8㎡) |
| 변경 | 나 | 광장(청담교 동측광장) | 교통광장 | 잠실동 | 34,990 | - | 34,990 | 서고시 제635호 (1983.11.25.) | • (변경) 도로 중복결정<br>- 도로⑥(5,860㎡)<br>- 도로⑦(6,137㎡→6,147㎡, 증10㎡)<br>• (변경) 지방하천(탄천) 중복결정 (20,056㎡→20,045㎡, 감11㎡) |
| 기정 | 다 | 광장(신천나들목 광장) | 교통광장 | 잠실동 | 47,564 | - | 47,564 | 서고시 제2024-437호 (2024.9.12.) | • (기정) 도로 중복결정<br>- 도로⑥(8,328㎡)<br>- 도로⑦(8,659㎡) |
| 변경 | 라 | 광장(삼성동 광장) | 교통광장 | 삼성동 | 7,816 | - | 7,816 | 서고시 제271호 (1994.08.18.) | • (기정) 지방하천(탄천) 중복결정 (2,011㎡)<br>• (기정) 도시철도(9호선) 중복결정 (582㎡)<br>• (변경) 도로 중복결정<br>- 도로③(184㎡)<br>- 도로②(4,798㎡→4,720㎡, 감78㎡)<br>- 도로④(78㎡) |

– 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가 | 광장(청담교 서측광장) | • 도로 중복결정<br>- 도로⑦(12,455㎡→13,814㎡, 증1,359㎡)<br>- 지방하천(탄천)(17,752㎡→17,760㎡, 증8㎡) | • 중복결정 면적 오기정정 |
| 나 | 광장(청담교 동측광장) | • 도로 중복결정<br>- 도로⑦(6,137㎡→6,147㎡, 증10㎡)<br>- 지방하천(탄천)(20,056㎡→20,045㎡, 감11㎡) | • 중복결정 면적 오기정정 |
| 라 | 광장(삼성동광장) | • 도로 중복결정<br>- 도로②(4,798㎡→4,720㎡, 감78㎡) | • 중복결정 면적 오기정정 |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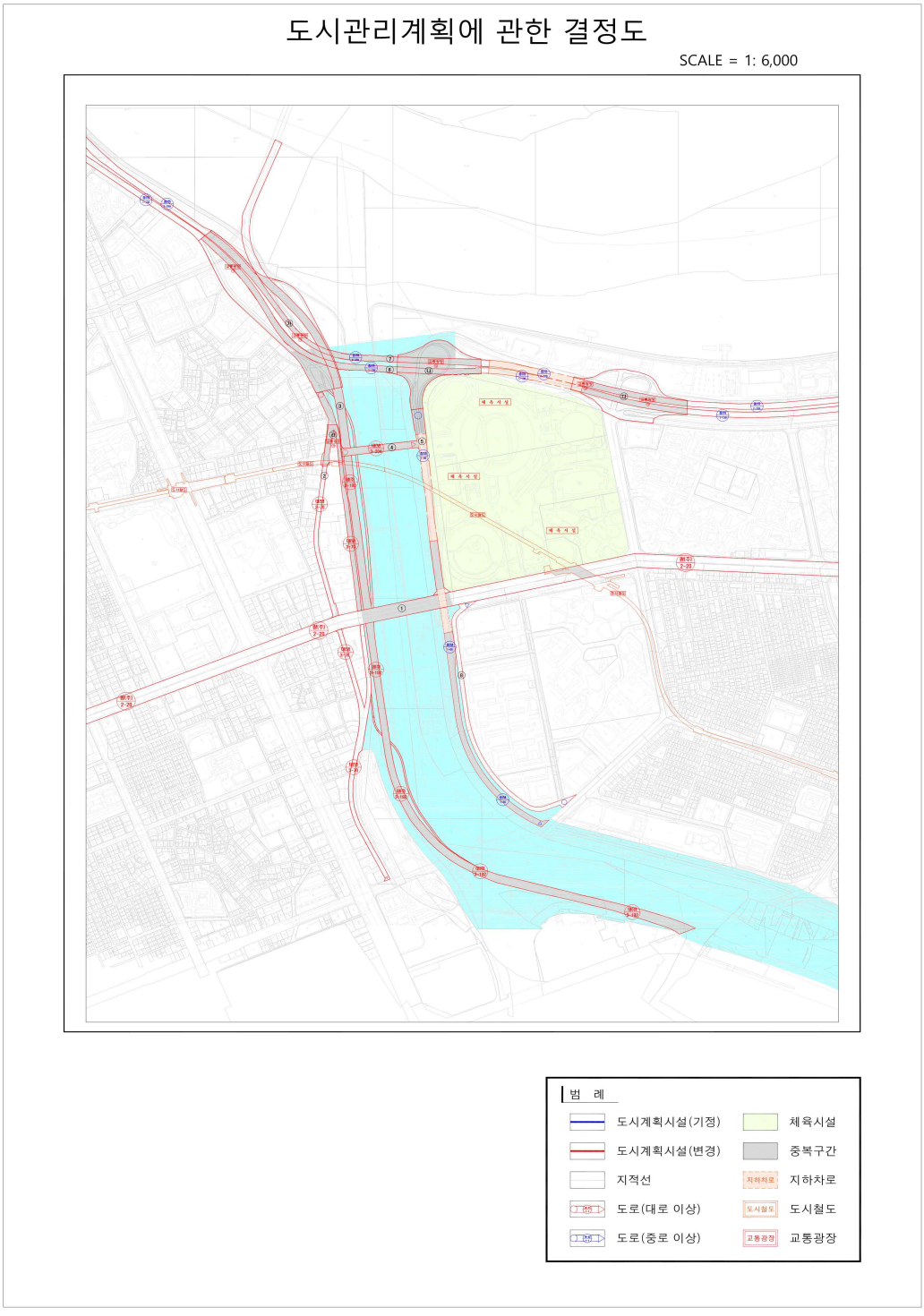

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송파구 잠실동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기정 | 1 | 광로 | 2 | 20 | 50 | 주간선도로 | 7,780 | 서초동 광로21 | 송파동 광로19 | 일반도로 | 건고시 제198호 (1971.4.7.) | • (기정)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3,427㎡) • (변경) 도로 중복결정 : 지하 - 영동대로(3,336㎡→1,562㎡, 감1,774㎡) • (변경)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 : 지하 -복합환승센터지하 (9,068㎡→9,078㎡, 증10㎡) • (기정)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 지하(178㎡) • (기정)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15,706㎡) |
| 변경 | | 광로 | 2 | 20 | 50 | 주간선도로 | 7,780 (412) | 서초동 광로21 | 송파동 광로19 | 일반도로 | | |
| 기정 | 2 | 대로 | 3 | 70 | 25~30 | 보조간선도로 | 1,875 | 청담동 중로1-36 | 대치동 대로1-22 | 일반도로 | 건고시 제198호 (1971.4.7.) | • (변경)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 (13,094㎡→12,853㎡, 감241㎡) • (변경) 광장 중복결정 - 광장㉯(4,798㎡→4,720㎡, 감78㎡) • (기정)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GTX-A(424㎡) • (기정)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 지하(1,842㎡) • (기정)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 176㎡) |
| 변경 | | 대로 | 3 | 70 | 25~30 | 보조간선도로 | 1,875 (839) | 청담동 중로1-36 | 대치동 대로1-22 | 일반도로 | | |
| 기정 | 3 | 대로 | 3 | 192 | 27~40 | 주간선도로 | 9,416 | 송파구 장지동 717 시계 | 광진구 노유동 96-4 | 자동차전용도로 | 서고시 제305호 (1992.9.28.) | • (변경)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도시철도(9호선) (89㎡→443㎡, 증354㎡) • (변경) 철도 중복결정 : 지하 - GTX-A (3,217㎡→3,208㎡, 감9㎡) • (기정) 광장 중복결정 - 광장㉮(13,436㎡) - 광장㉯(184㎡) • (변경) 하천 중복결정 : 지상 - 지방하천(탄천) (81,605㎡→79,002㎡, 감2,603㎡) • (변경)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 지하(206㎡→172㎡, 감34㎡) |
| 변경 | | 대로 | 3 | 192 | 27~40 | 주간선도로 | 9,416 (805) | 송파구 장지동 717 시계 | 광진구 노유동 96-4 | 자동차전용도로 | | |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기정 | 4 | 대로 | 3 | 204 | 25~28 | 보조간선도로 | 273 | 삼성동 172-2(대로3-70) | 잠실동 4(중로1-86) | 일반도로 | 서고시 제142호 (1998.4.20.) | • (기정) 광장 중복결정<br>- 광장㉰(78㎡)<br>• (기정)하천 중복결정 : 지상<br>- 지방하천(탄천)(7,179㎡) |
| 변경 | | 대로 | 3 | 204 | 25~28 | 보조간선도로 | 273 (273) | 삼성동 172-2(대로3-70) | 잠실동 4(중로1-86) | 일반도로 | | |
| 기정 | 5 | 중로 | 1 | 86 | 20~40 | 보조간선도로 | 1,750 | 잠실동 중로1-136 | 잠실동 대1-22 | 일반도로 | 건고시 제198호 (1971.4.7.) | • (기정)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br>- 지상(125㎡)<br>• (기정) 철도 중복결정 : 지하<br>- 도시철도(9호선)(417㎡)<br>• (기정) 체육시설 중복결정 : 지상<br>- 잠실종합운동장(8,038㎡)<br>• (변경) 하천 중복결정 : 지상<br>- 지방하천 (탄천)<br>(38,595㎡→38,443㎡,감152㎡)<br>• (기정) 지하차로수직적범위결정<br>(길이 550m, 폭 19~25m<br>높이 5m, 지하 9.7m~12.5m,<br>수평투영면적 12,861㎡) |
| 변경 | | 중로 | 1 | 86 | 20~40 | 보조간선도로 | 1,750 (1,077) | 잠실동 중로1-136 | 잠실동 대1-22 | 일반도로 | | |
| 기정 | 6 | 중로 | 1 | 136 | 20~25 | 주간선도로 | 15,910 | 동작동 국립묘지앞 | 암사동 암사광장 | 자동차전용도로 | 건고시 제198호 (1971.4.7.) | • (기정) 하천 중복결정 : 지상<br>- 지방하천(탄천)(9,104㎡)<br>• (기정) 광장 중복결정<br>- 광장㉯(13,990㎡)<br>- 광장㉱(5,860㎡)<br>- 광장㉲(8,328㎡)<br>• (기정) 지하차로 수직적범위결정<br>(길이 335m, 폭 22m<br>높이 5m, 지하 3.7m~8.3m,<br>수평투영면적 4,442㎡) |
| 변경 | | 중로 | 1 | 136 | 20~25 | 주간선도로 | 15,910 (2,428) | 동작동 국립묘지앞 | 암사동 암사광장 | 자동차전용도로 | | |
| 기정 | 7 | 중로 | 2 | 289 | 17.4~25 | 주간선도로 | 21,050 | 반포동 115-1 | 강동구 암사동 | 자동차전용도로 | 서고시 제635호 (1983.11.25.) | • (변경) 하천 중복결정 : 지상<br>- 지방하천(탄천)<br>(8,001㎡→8,231㎡, 증230㎡)<br>• (변경) 광장 중복결정<br>- 광장㉯<br>(12,455㎡→13,814㎡, 증1,359㎡)<br>- 광장㉱(6,137㎡)<br>- 광장㉲(8,659㎡)<br>• (기정) 지하차로 수직적범위결정<br>(길이 335m, 폭 25m<br>높이 5m, 지하 3.7m~8.3m,<br>수평투영면적 5,192㎡) |
| 변경 | | 중로 | 2 | 289 | 17.4~25 | 주간선도로 | 21,050 (2,583) | 반포동 115-1 | 강동구 암사동 | 자동차전용도로 | | |
| 기정 | 8 | - | - | - | 15 | 집산도로 | 1,015 (318) | 잠실동 149 | 잠실동 144 |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제716호 (1971.12.22.) | •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 ( )는 금회 사업시행 연장

- 도시계획시설(광장)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가 | 광장(청담교 서측광장) | 교통광장 | 삼성동 | 91,327 | - | 91,327 (91,327) | 서고시 제635호 (1983.11.25.) | • (변경) 도로 중복결정<br>- 도로③(13,436㎡)<br>- 도로⑥(13,990㎡)<br>- 도로⑦(12,455㎡→13,814㎡, 증1,359㎡)<br>• (변경) 지방하천(탄천) 중복결정 (17,752㎡→17,760㎡, 증8㎡) |
| 변경 | 나 | 광장(청담교 동측광장) | 교통광장 | 잠실동 | 34,990 | - | 34,990 (34,990) | 서고시 제635호 (1983.11.25.) | • (변경) 도로 중복결정<br>- 도로⑥(5,860㎡)<br>- 도로⑦(6,137㎡→6,147㎡, 증10㎡)<br>• (변경) 지방하천(탄천) 중복결정 (20,056㎡→20,045㎡, 감11㎡) |
| 기정 | 다 | 광장(신천나들목 광장) | 교통광장 | 잠실동 | 47,564 | - | 47,564 (47,564) | 서고시 제2024-437호 (2024.9.12.) | • (기정) 도로 중복결정<br>- 도로⑥(8,328㎡)<br>- 도로⑦(8,659㎡) |
| 변경 | 라 | 광장(삼성동 광장) | 교통광장 | 삼성동 | 7,816 | - | 7,816 (4,799) | 서고시 제271호 (1994.08.18.) | • (기정) 지방하천(탄천) 중복결정 (2,011㎡)<br>• (기정) 도시철도(9호선) 중복결정 (582㎡)<br>• (변경) 도로 중복결정<br>- 도로③(184㎡)<br>- 도로②(4,798㎡→4,720㎡, 감78㎡)<br>- 도로④(78㎡) |

※ ( )는 금회 사업시행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현대자동차(주), 기아(주), 현대모비스(주)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30년 5월 3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참조

다.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서소문2청사 9층 동남권사업과(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마.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붙임] 편입 토지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1 | 강남구 청담동 | 341-2 | 도 | 15,654.0 | 3,574.0 | 국 | 건설부 | | | | |
| 2 | 강남구 청담동 | 137 | 제 | 4,572.9 | 4,489.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3 | 강남구 청담동 | 139-34 | 도 | 119.4 | 119.4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4 | 강남구 청담동 | 347-2 | 도 | 8,817.0 | 831.0 | 국 | 건설부 | | | | |
| 5 | 강남구 청담동 | 136 | 공 | 830.7 | 830.7 | 공 | 서울특별시 | | | | |
| 6 | 강남구 청담동 | 139-35 | 도 | 54.6 | 54.6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7 | 강남구 청담동 | 135-22 | 도 | 199.1 | 199.1 | 국 | 건설부 | | | | |
| 8 | 강남구 청담동 | 135-3 | 도 | 555.9 | 555.9 | 국 | 건설부 | | | | |
| 9 | 강남구 청담동 | 135-11 | 도 | 418.5 | 418.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10 | 강남구 청담동 | 135-13 | 도 | 123.7 | 123.7 | 공 | 서울특별시 | | | | |
| 11 | 강남구 청담동 | 135-12 | 도 | 264.9 | 264.9 | 공 | 서울특별시 | | | | |
| 12 | 강남구 청담동 | 135-15 | 도 | 1,452.3 | 1,063.0 | 국 | 건설부 | | | | |
| 13 | 강남구 청담동 | 347-1 | 천 | 4,801.0 | 3.0 | 국 | 건설부 | | | | |
| 14 | 강남구 청담동 | 139-33 | 도 | 12,130.7 | 8,144.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15 | 강남구 청담동 | 135 | 도 | 3,085.8 | 3,085.8 | 공 | 서울특별시 | | | | |
| 16 | 강남구 청담동 | 139-36 | 도 | 400.1 | 400.1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17 | 강남구 삼성동 | 111 | 도 | 586.8 | 283.9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18 | 강남구 삼성동 | 80-1 | 도 | 586.8 | 8.0 | 국 | 건설부 | | | | |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19 | 강남구 삼성동 | 111-169 | 도 | 293.9 | 133.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20 | 강남구 삼성동 | 111-170 | 도 | 20.6 | 7.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21 | 강남구 삼성동 | 80-3 | 도 | 1,550.4 | 1,547.0 | 국 | 건설부 | | | | |
| 22 | 강남구 삼성동 | 80-9 | 도 | 2,360.3 | 2,040.0 | 국 | 건설부 | | | | |
| 23 | 강남구 삼성동 | 80-10 | 천 | 1,058.4 | 150.0 | 국 | 건설부 | | | | |
| 24 | 강남구 삼성동 | 81-5 | 도 | 97.2 | 97.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25 | 강남구 삼성동 | 185-1 | 천 | 15,985.0 | 438.0 | 국 | 건설부 | | | | |
| 26 | 강남구 삼성동 | 185-2 | 천 | 23,398.0 | 13,618.0 | 국 | 건설부 | | | | |
| 27 | 강남구 삼성동 | 185-3 | 도 | 21,733.0 | 18,026.0 | 국 | 건설부 | | | | |
| 28 | 강남구 삼성동 | 111-4 | 도 | 2,749.9 | 59.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29 | 강남구 삼성동 | 111-1 | 도 | 112.2 | 112.2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30 | 강남구 삼성동 | 79-1 | 대 | 5,858.8 | 29.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31 | 강남구 삼성동 | 80 | 도 | 17,662.1 | 17,401.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32 | 강남구 삼성동 | 81 | 도 | 4,896.5 | 4,896.5 | 공 | 서울특별시 | | | | |
| 33 | 강남구 삼성동 | 81-1 | 도 | 5,741.4 | 5,741.4 | 공 | 서울특별시 | | | | |
| 34 | 강남구 삼성동 | 111-11 | 도 | 11,614.7 | 11,564.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35 | 강남구 삼성동 | 186-3 | 천 | 10,437.0 | 6,681.0 | 국 | 건설부 | | | | |
| 36 | 강남구 삼성동 | 186-7 | 천 | 3,830.0 | 683.0 | 국 | 건설부 | | | | |
| 37 | 강남구 삼성동 | 111-186 | 도 | 1,870.7 | 1,777.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38 | 강남구 삼성동 | 111-30 | 도 | 3,874.4 | 3,389.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39 | 강남구 삼성동 | 171-4 | 대 | 2,892.7 | 2,709.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40 | 강남구 삼성동 | 81-4 | 제 | 6,826.3 | 6,101.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41 | 강남구 삼성동 | 172-2 | 도 | 2,186.7 | 2,110.0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42 | 강남구 삼성동 | 186-6 | 천 | 56,748.0 | 5,109.0 | 국 | 건설부 | | | | |
| 43 | 강남구 삼성동 | 172-112 | 도 | 651.9 | 651.9 | 공 | 서울특별시 | | | | |
| 44 | 강남구 삼성동 | 171 | 대 | 8,893.7 | 1,003.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45 | 강남구 삼성동 | 172-10 | 도 | 4,031.8 | 2,229.0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46 | 강남구 삼성동 | 172-11 | 도 | 2,266.5 | 2,219.0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47 | 강남구 삼성동 | 186-5 | 천 | 54,455.0 | 103.0 | 국 | 건설부 | | | | |
| 48 | 강남구 삼성동 | 171-56 | 대 | 4,898.1 | 427.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49 | 강남구 삼성동 | 172-24 | 도 | 2,265.2 | 2,229.0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50 | 강남구 삼성동 | 172-25 | 도 | 2,267.2 | 2,153.0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51 | 강남구 삼성동 | 171-1 | 대 | 6,383.7 | 1,050.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52 | 강남구 삼성동 | 172-42 | 도 | 2,332.3 | 2,319.0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53 | 강남구 삼성동 | 172-43 | 도 | 2,268.0 | 2,179.0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54 | 강남구 삼성동 | 172-65 | 도 | 1,208.3 | 1,202.0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55 | 강남구 삼성동 | 186-4 | 천 | 7,132.0 | 3,289.0 | 국 | 건설부 | | | | |
| 56 | 강남구 삼성동 | 172-69 | 도 | 1,281.8 | 1,268.0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57 | 강남구 삼성동 | 171-3 | 대 | 3,380.5 | 226.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58 | 강남구 삼성동 | 172-67 | 도 | 55.8 | 55.8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59 | 강남구 삼성동 | 172-66 | 도 | 43,711.9 | 2,222.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60 | 강남구 대치동 | 78-25 | 천 | 43,039.0 | 6,143.0 | 국 | 건설부 | | | | |
| 61 | 강남구 대치동 | 1011 | 도 | 43,853.0 | 2,057.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62 | 강남구 대치동 | 1012-3 | 도 | 985.2 | 976.0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63 | 강남구 대치동 | 998 | 대 | 6,664.4 | 13.0 | 국 | 경찰청 | | | | |
| 64 | 강남구 대치동 | 998-2 | 대 | 26.1 | 2.0 | 국 | 경찰청 | | | | |
| 65 | 강남구 대치동 | 1012-11 | 도 | 2,267.2 | 2,235.0 | 공 |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 66 | 강남구 대치동 | 998-1 | 대 | 2,956.0 | 52.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67 | 강남구 대치동 | 998-4 | 대 | 2,275.1 | 454.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68 | 강남구 대치동 | 1012-24 | 도 | 4,658.9 | 3,730.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69 | 강남구 대치동 | 1010 | 제 | 3,269.3 | 1,403.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70 | 강남구 대치동 | 1012-34 | 도 | 3,502.2 | 311.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71 | 강남구 대치동 | 78-29 | 천 | 10,473.0 | 2,134.0 | 국 | 환경부 | | | | |
| 72 | 강남구 대치동 | 78-30 | 천 | 37,618.0 | 9,208.0 | 국 | 환경부 | | | | |
| 73 | 강남구 대치동 | 78-28 | 천 | 26,973.0 | 3,043.0 | 국 | 환경부 | | | | |
| 74 | 송파구 잠실동 | 1168-9 | 천 | 4,651.0 | 3,056.0 | 국 | 환경부 | | | | |
| 75 | 송파구 잠실동 | 1168-8 | 천 | 14,912.0 | 46.0 | 국 | 환경부 | | | | |
| 76 | 송파구 잠실동 | 1-1 | 천 | 284,992.4 | 26,877.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77 | 송파구 잠실동 | 1 | 도 | 128,524.9 | 57,529.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78 | 송파구 잠실동 | 1168-4 | 천 | 10,266.0 | 508.0 | 국 | 건설부 | | | | |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79 | 송파구 잠실동 | 1168-1 | 천 | 4,646.0 | 28.0 | 국 | 건설부 | | | | |
| 80 | 송파구 잠실동 | 2 | 제 | 28,846.0 | 19,494.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81 | 송파구 잠실동 | 3 | 도 | 15,298.3 | 14,300.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82 | 송파구 잠실동 | 7 | 제 | 4,691.7 | 2,520.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83 | 송파구 잠실동 | 9 | 도 | 12,691.9 | 6,264.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84 | 송파구 잠실동 | 10 | 체 | 135,861.2 | 749.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85 | 송파구 잠실동 | 8 | 도 | 10,689.3 | 10,689.3 | 공 | 서울특별시 | | | | |
| 86 | 송파구 잠실동 | 10-1 | 체 | 212,361.7 | 21.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87 | 송파구 잠실동 | 14 | 제 | 4,087.1 | 4,087.1 | 공 | 서울특별시 | | | | |
| 88 | 송파구 잠실동 | 12 | 도 | 18,807.9 | 3,965.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89 | 송파구 잠실동 | 13 | 도 | 5,573.4 | 5,546.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90 | 송파구 잠실동 | 19-10 | 도 | 4,821.0 | 25.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91 | 송파구 잠실동 | 19-11 | 도 | 5,192.9 | 89.0 | 공 | 서울특별시송파구 | | | | |
| 92 | 송파구 잠실동 | 17 | 도 | 8,939.0 | 1,841.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93 | 송파구 잠실동 | 15 | 도 | 12,227.9 | 8,716.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94 | 송파구 잠실동 | 16 | 제 | 15,778.3 | 5,107.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95 | 송파구 잠실동 | 6 | 제 | 20,531.7 | 5,444.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96 | 송파구 잠실동 | 1168-3 | 천 | 19,166.0 | 2,331.0 | 국 | 건설부 | | | | |
| 97 | 송파구 잠실동 | 4 | 도 | 13,951.5 | 13,666.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98 | 송파구 잠실동 | 1082-1 | 천 | 40,739.0 | 292.0 | 국 | 건설부 | | | | |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99 | 송파구 잠실동 | 5 | 도 | 2,178.6 | 1,745.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100 | 송파구 잠실동 | 866-1 | 천 | 12,760.0 | 1,634.0 | 국 | 건설부 | | | | |
| 101 | 송파구 잠실동 | 120 | 도 | 2,047.1 | 1,764.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102 | 송파구 잠실동 | 866-3 | 천 | 34,017.0 | 3,838.0 | 국 | 경찰청 | | | | |
| 103 | 송파구 잠실동 | 121 | 도 | 4,666.6 | 52.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104 | 송파구 잠실동 | 144 | 도 | 884.0 | 366.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105 | 송파구 잠실동 | 50 | 도 | 3,190.0 | 103.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106 | 송파구 잠실동 | 134 | 도 | 9,360.9 | 7,104.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107 | 송파구 잠실동 | 143 | 제 | 3,142.5 | 2,317.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108 | 송파구 잠실동 | 145 | 도 | 3,140.2 | 2,341.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109 | 송파구 잠실동 | 133 | 제 | 16,801.0 | 1,081.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110 | 송파구 잠실동 | 64 | 도 | 3,251.8 | 2.0 | 공 | 송파구 | | | | |
| 111 | 송파구 잠실동 | 142 | 제 | 2,706.0 | 1,491.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112 | 송파구 잠실동 | 146 | 도 | 3,689.8 | 889.0 | 공 | 서울특별시 | | | | |
| 113 | 송파구 잠실동 | 925-1 | 천 | 27,270.0 | 781.0 | 국 | 국토해양부 | | | | |
| 114 | 송파구 잠실동 | 925-2 | 천 | 19,796.0 | 2,825.0 | 국 | 건설부 | | | | |
| 115 | 송파구 신천동 | 247-4 | 천 | 14,903.0 | 1,061.0 | 국 | 환경부 | | | | |
| 116 | 송파구 신천동 | 247-7 | 도 | 2,427.0 | 2,116.0 | 국 | 환경부 | | | | |
| 117 | 송파구 신천동 | 247-8 | 천 | 5,741.0 | 3,350.0 | 국 | 환경부 | | | | |
| | 합 계 | 117필지 | | | 413,503.3 | | | | |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83호

##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4. 12. 20. ~ 2025. 1. 3.(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 업 체 명 (대표) | 업종 및 등록번호 | 소 재 지 | 위반내용 | 예정된 처분내용 | 청문실시 | | 처분 근거 |
|---|---|---|---|---|---|---|---|
| | | | | | 일시 및 장소 | 주재자 | |
| ㈜아이렉스건설 (대표 최진규) | 건축 공사업 01-3760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4길 68 2층(역삼동, 이화빌딩)(역삼동) | ○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 등록말소 | 2025.1.6.(월) 10: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 주무관 남은주 | 법 제83조 제3의2호 |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8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7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법인 소재지, 영업소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제7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58조 및 별표 10
3. 대 상

| 연번 | 상호<br>(대표자) | 소재지 | 세목 | 위반내용 | 부과 예정액<br>(자진납부액) | 위반<br>일시 | 반송<br>사유 |
|---|---|---|---|---|---|---|---|
| 1 | ㈜사운드플레이스<br>(도*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610호(가양동)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br>(기술자) | 500,000원<br>(400,000원) | 2024.09.06. | 주소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 |

4. 공고 기간: 2024. 12. 19. ~ 2025. 1. 2.(15일간)
5. 의견 제출기한: ~ 2025. 1. 15.
6.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 내에는 자진납부액(부과예정액의 20% 감경)으로 납부가능하며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예정액으로 부과합니다.
   -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에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 제출처: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02-2133-289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02-2133-2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85호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 신 고 인 | | | | | 변 경 내 역 | | |
|---|---|---|---|---|---|---|---|
| 연번 | 상 호 | 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구분<br>(변경일) | 변경전 | 변경후 |
| 1 | 주식회사<br>셀럽코리아 | 서울<br>제950호 | 김현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br>테헤란로63길 8,<br>4층, 5층<br>(삼성동) | 소재지<br>( '24.12.0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br>507,<br>13층 117호<br>(삼성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br>테헤란로63길 8,<br>4층, 5층<br>(삼성동) |
| 2 | 엑소바이옴<br>코리아<br>주식회사 | 서울 후<br>제1574호 | 전승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br>460,<br>8층, 9층, 10층<br>(청담동) | 대표자<br>( '24.11.30.) | 차상복 | 전승우 |
| 3 | 수미 | 서울 후<br>제1001호 | 정순이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br>1층 177호<br>(구로동) | 폐업<br>( '24.12.06.) | | |
| 4 | 신약손 | 서울 후<br>제900호 | 이 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br>디지털로38길 17,<br>1층<br>(대림동) | 폐업<br>( '24.12.11.) | | |
| 5 | 골드스타 | 서울 후<br>제2844호 | 김명길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br>146,<br>102동 304호<br>(응암동) | 폐업<br>( '24.12.11) | | |
| 6 | 더 하얀 | 서울 후<br>제2691호 | 전은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7길<br>21,<br>1층 101호<br>(구의동) | 폐업<br>( '24.12.11) | | |
| 7 | 인셀덤샤이닝 | 서울 후<br>제2064호 | 남지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br>502-36,<br>1009동 1004호<br>(상암동) | 폐업<br>( '24.12.11)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86호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서 및 재산압류 통지서를 체납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부동산)

2. 공고기간: 2024. 12. 19. ~ 2025. 1. 2.(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1) 체납자: 성○열(611127-1******)
   2) 소재지번(사용본거지):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33번길 00-0, 101-000호
   3) 처분원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대표자 변경 사임신고 태만(2차)
   4) 체납액: 금1,162,000(과태료 1,000,000원, 가산금 162,000원)
      * 기준일 2024. 12. 9.으로 실체 체납금액이 다를 수 있음.
   5) 압류재산: 부동산(집합건물)
   6) 등기번호: 11004-0222-6874(재산압류통지서)
   7) 송달불능사유: 폐문 부재

4. 지방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며,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02-6981-7823),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78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87호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 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체납자 제재 안내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감치 1,000만원)이상이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89호

##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2. 19. ~ 2025. 1. 2.(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 연번 | 업 체 명 (대표) | 업종 및 등록번호 | 소 재 지 | 위반내용 | 예정된 처분내용 | 청문실시 | | 처분 근거 |
|---|---|---|---|---|---|---|---|---|
| | | | | | | 일시 및 장소 | 주재자 | |
| 1 | ㈜엔에스종합건설 (대표 최규화) | 건축 공사업 01-398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6길 9-14, 101호(서교동) |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 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2025.1.3.(금) 9:3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 주무관 홍혜나 |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
| 2 | 더블유종합건설㈜ (대표 송범석) | 건축 공사업 01-503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 84 3층(망우동,지우빌딩 ) |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 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2025.1.3.(금) 10:3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 주무관 홍혜나 |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
| 3 | 아이디종합건설㈜ (대표 김인태) | 건축 공사업 01-4769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자길 74, 상가동 20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 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2025.1.3.(금) 11: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 주무관 홍혜나 |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
| 4 | ㈜창성이에프건설 (대표 유광문) | 건축 공사업 01-38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5길 46, 비10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 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2025.1.3.(금) 13: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 주무관 홍혜나 |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92호

##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

서울특별시대중교통기본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 구 명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 도 로 명 : 연세로(기타 도로시설)

3. 구 간 : 연세로(신촌로터리~연세대삼거리) ※ 붙임 위치도 참조
   가. 기점(도로지번) : 창천동 18-52번지(신촌로터리)
   나. 종점(도로지번) : 신촌동 116-71번지(연세대삼거리)

4. 해 제 일 : 2025. 01. 01.(수)

5. 해제사유
   가.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목적(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 상실
   나. 자유로운 교통 수단의 통행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6.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대중교통기본조례 제16조에 의거 “3” 연세로 구간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의한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의 통행을 “4”의 시점부터 허용한다.

7.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02-2133-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구간 위치도 (현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502호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67개소(4.06㎢)

○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137,126.0㎡)

- 지정기간: 2025년 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 대상지역 | | | 면적(㎡) | 비 고 |
|---|---|---|---|---|
| 합 계 | | | 137,126.0 | |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신문로1가 158번지 일대 | 1,248.0 | 공공재개발 후보지 |
| | 동대문구 | 신설동 92-5번지 일대 | 11,204.0 | |
| | | 용두동 14-1번지 일대 | 20,780.0 | |
| | 강북구 | 미아동 61-79번지 일대 | 12,870.0 | |
| | 영등포구 |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 22,441.0 | |
| | | 양평동2가 29-6번지 일대 | 11,082.0 | |
| | 동작구 | 흑석동 99-3번지 일대 | 45,229.0 | |
| | 관악구 | 봉천동 922-1번지 일대 | 12,272.0 | |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예정지: 4개소(196,971.3㎡)

- 지정기간: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 대상지역 | | | 면적(㎡) | 비 고 |
|---|---|---|---|---|
| 합 계 | | | 196,971.3 | |
| 서울특별시 | 성북구 |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 31,295.0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
| | | 성북동 3-38번지 일대 | 67,307.9 | |
| | 강동구 |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 26,630.4 | |
| | 동대문구 |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 71,738.0 | |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예정지: 3개소(223,990.0㎡)
– 지정기간: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 대상지역 | | | 면적(㎡) | 비 고 |
|---|---|---|---|---|
| 합 계 | | | 223,990.0 | |
| 서울특별시 | 양천구 | 신월동 913번지 일대 | 119,136.8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
| | 종로구 | 숭인동 56번지 일대 | 41,926.5 | |
| | 종로구 | 창신동 23번지 일대 | 62,926.7 | |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예정지: 5개소(409,749.8㎡)
– 지정기간: 2025년 1월 4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 대상지역 | | | 면적(㎡) | 비 고 |
|---|---|---|---|---|
| 합 계 | | | 409,749.8 | |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고척동 253번지 일대 | 63,236.4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
| | 은평구 | 신사동 200번지 일대 | 62,270.3 | |
| | | 신사동 237번지 일대 | 54,630.0 | |
| | 금천구 | 시흥동 871번지 일대 | 88,326.3 | |
| | 동작구 | 상도동 279번지 일대 | 141,286.8 | |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예정지: 13개소(661,042.8㎡)
– 지정기간: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 대상지역 | | | 면적(㎡) | 비 고 |
|---|---|---|---|---|
| 합 계 | | | 661,042.8 | |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 85,639.6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
| | 성동구 | 마장동 382번지 일대 | 18,749.8 | |
| | 동대문구 |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 28,799.1 | |
| | 중랑구 | 면목동 69-14번지 일대 | 60,021.6 | |
| | 성북구 |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 | 78,180.4 | |
| | 은평구 | 불광동 600번지 일대 | 13,020.5 | |

| 대상지역 | | | 면적(㎡) | 비 고 |
|---|---|---|---|---|
| | 마포구 | 공덕동 11-24번지 일대 | 82,320.2 | |
| | 강서구 | 방화동 589-13번지 일대 | 34,900.0 | |
| | 구로구 |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 40,552.0 | |
| | 영등포구 |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 31,299.0 | |
| | 동작구 | 상도동 244번지 일대 | 50,142.0 | |
| | 송파구 | 마천동 45번지 일대 | 106,514.4 | |
| | 강동구 | 천호동 461-31번지 일대 | 30,904.2 | |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25개소(1,684,989.4㎡)

– 지정기간: 2025년 1월 4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 대상지역 | | | 면적(㎡) | 비 고 |
|---|---|---|---|---|
| 합 계 | | | 1,684,989.4 | |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창신동 23-605 일대 | 133,845.6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
| | | 창신동 629 일대 | 81,370.9 | |
| | 용산구 | 서계동 33 일대 | 112,599.1 | |
| | 성동구 | 사근동 293 일대 | 28,465.0 | |
| | | 사근동 212-1 일대 | 21,484.0 | |
| | 광진구 | 자양동 57-90 일대 | 139,130.0 | |
| | 동대문구 | 용두동 39-361 일대 | 24,957.2 | |
| | | 답십리동 471 일대 | 102,735.8 | |
| | 중랑구 | 망우동 461 일대 | 45,597.7 | |
| | 성북구 | 종암동 3-10 일대 | 25,351.0 | |
| | | 석관동 62-1 일대 | 62,086.2 | |
| | 강북구 | 번동 441-3 일대 | 32,877.0 | |
| | | 미아동 791-2882 일대 | 141,203.0 | |

| 대상지역 | | | 면적(㎡) | 비 고 |
|---|---|---|---|---|
| | 도봉구 | 방학동 685 일대 | 74,390.0 | |
| | 서대문구 | 홍제동 267-1 일대 | 28,502.4 | |
| | 마포구 | 망원동 416-67 일대 | 78,694.9 | |
| | 양천구 | 목동 232 일대 | 21,161.0 | |
| | 구로구 | 가리봉동 115 일대 | 90,875.3 | |
| | 영등포구 | 대림동 855-1 일대 | 42,505.3 | |
| | 동작구 | 사당동 288 일대 | 26,177.6 | |
| | 관악구 | 신림동 412 일대 | 169,069.0 | |
| | 송파구 | 마천동 183 일대 | 79,069.0 | |
| | 강남구 | 개포동 649 | 55,053.1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건축 |
| | | 개포동 652 | 32,106.9 | |
| | | 개포동 653 | 35,682.4 | |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9개소(742,252.0㎡)

– 지정기간: 2025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 대상지역 | | | 면적(㎡) | 비 고 |
|---|---|---|---|---|
| 합 계 | | | 742,252.0 | |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미아동 8-373 일대 | 51,466.0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건축 |
| | 구로구 | 궁동 213-27외 2필지 | 51,071.0 | |
| | 강동구 | 명일동 56 일대 | 37,658.0 | |
| | 송파구 | 송파동 151 일대 | 62,370.0 | |
| | 송파구 | 신천동 7 일대 | 343,266.0 | |
| | 양천구 | 신정동 1152 일대 | 44,082.0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
| | 중구 | 신당동 236-100 일대 | 63,893.0 | |
| | 중랑구 | 면목동 172-1 일대 | 47,798.0 | |

| 대상지역 | | | 면적(㎡) | 비 고 |
|---|---|---|---|---|
| | 중구 | 장충동2가 112 일대 | 40,648.0 | |

□ 허가구역 변경지역: 1개소(0.03㎢)

○ 공공재개발 미선정지: 1개소(32,330.0㎡)

– 지정기간: 2024년 8월 31일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

| 대상지역 | | | 면적(㎡)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천호동 338 일대 | 39,078.0 | 32,330.0 | 공공재개발 |

※ 2023년, 2024년 재지정 시 면적(33,426.0㎡) 오기되어 면적(39,078㎡) 정정함.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용 도 지 역 | | 면 적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 | 상업지역 | 15㎡ 초과 |
| | 공업지역 | 15㎡ 초과 |
| | 녹지지역 | 20㎡ 초과 |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 허가구역 해제지역: 1개소(0.02㎢)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미선정지 : 1개소(21,585.0㎡)

– 해제일자 : 2024년 12월 19일

| 대상지역 | | | 면적(㎡) | 비 고 |
|---|---|---|---|---|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신길동 1499 일대 | 21,585.0 | 신속통합기획<br>주택재개발 |

□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 붙임2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재지정지역 67개소 |
|---|---|

◎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

1. 종로구 신문로1가 158번지 일대

2.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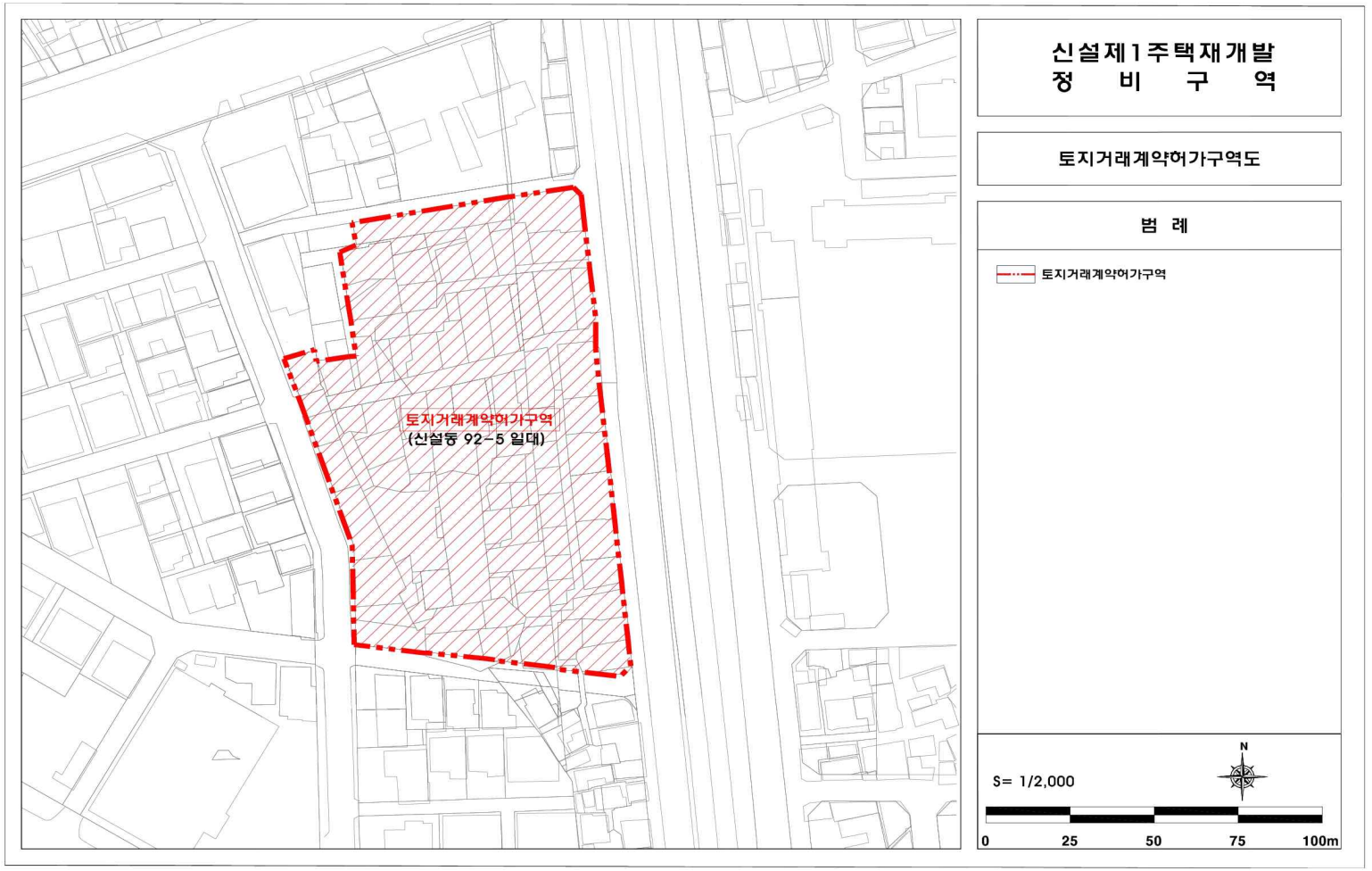

3. 동대문구 용두동 14-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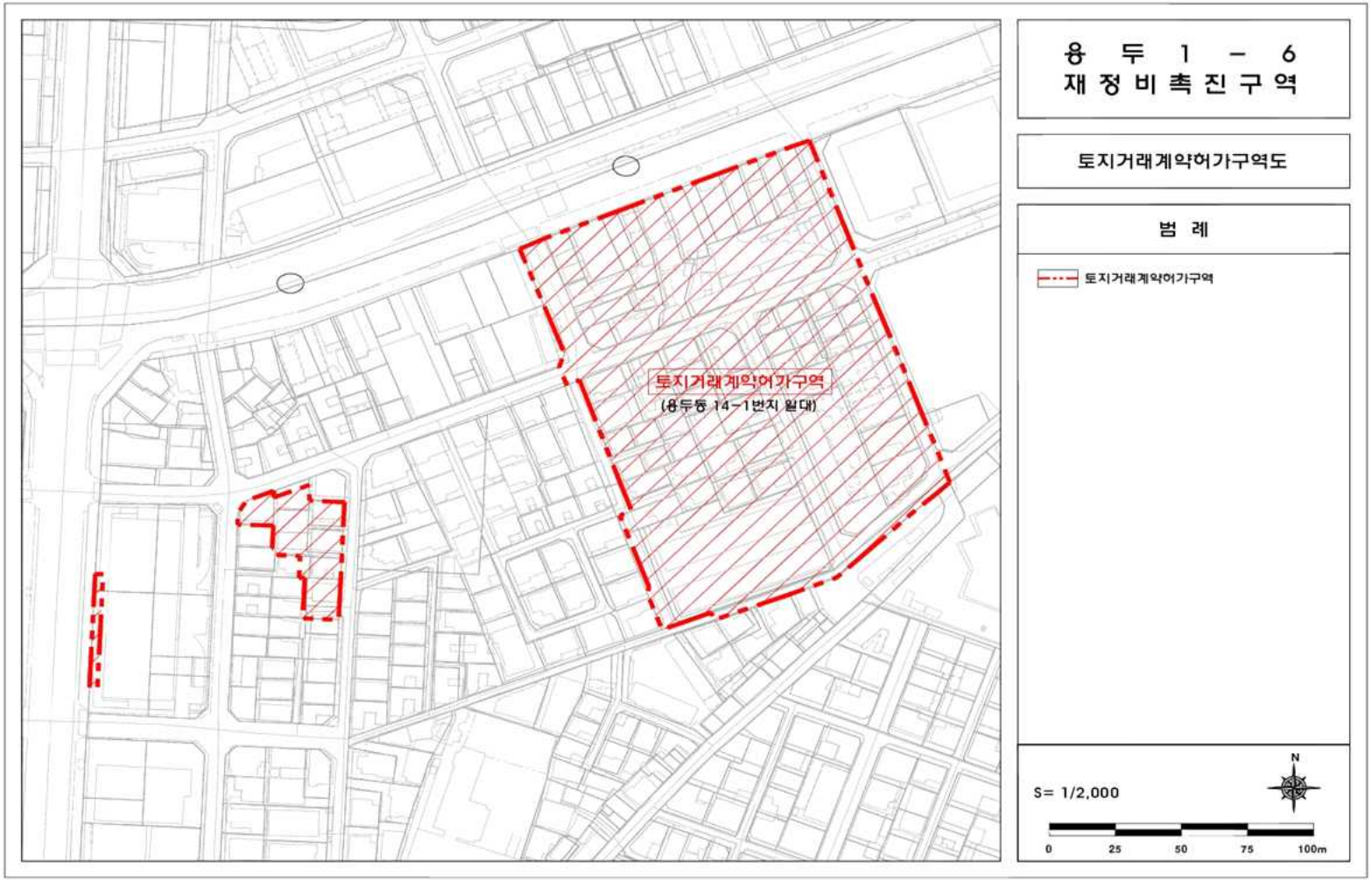

4.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5.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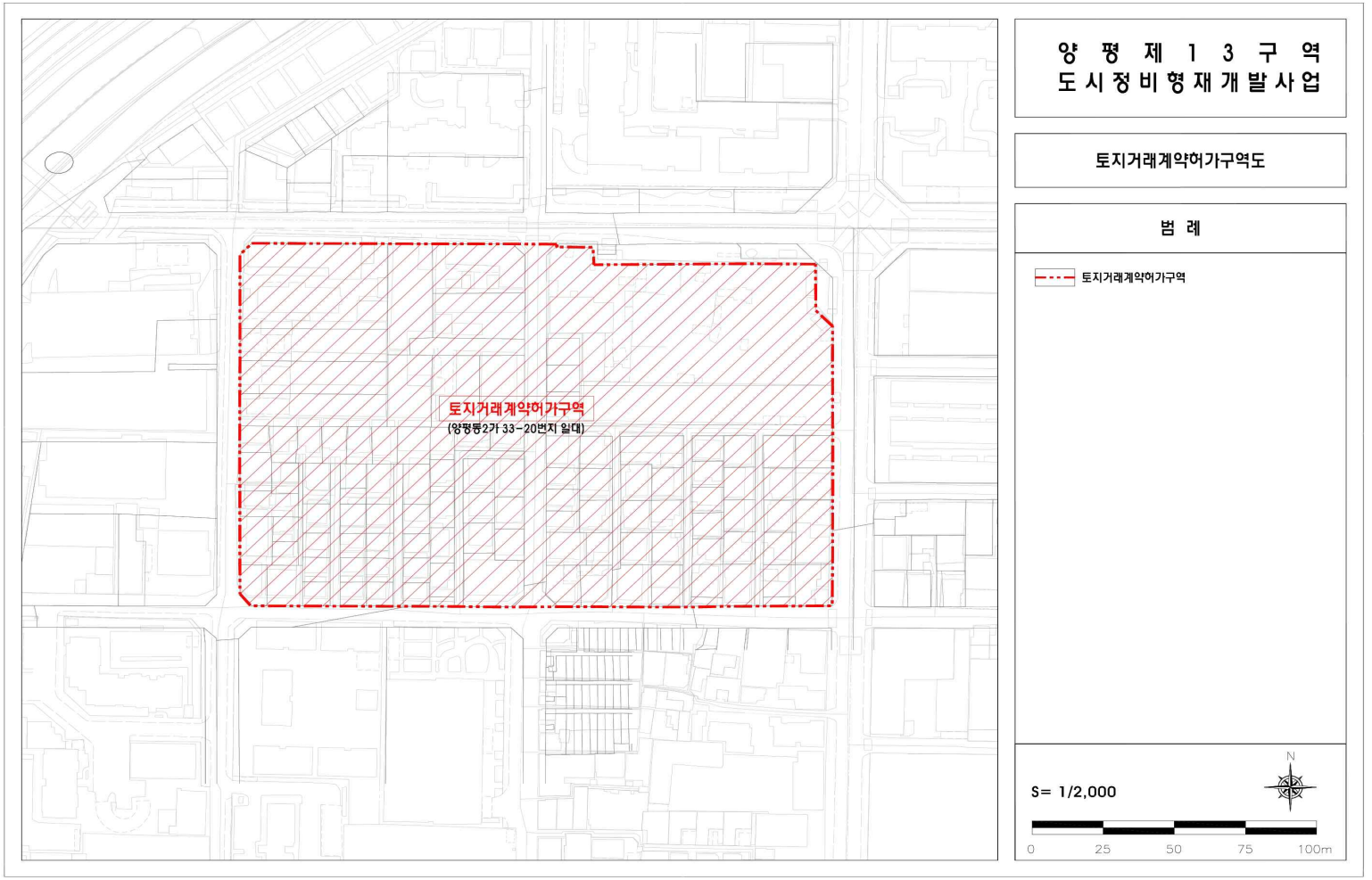

6. 영등포구 양평동2가 29-6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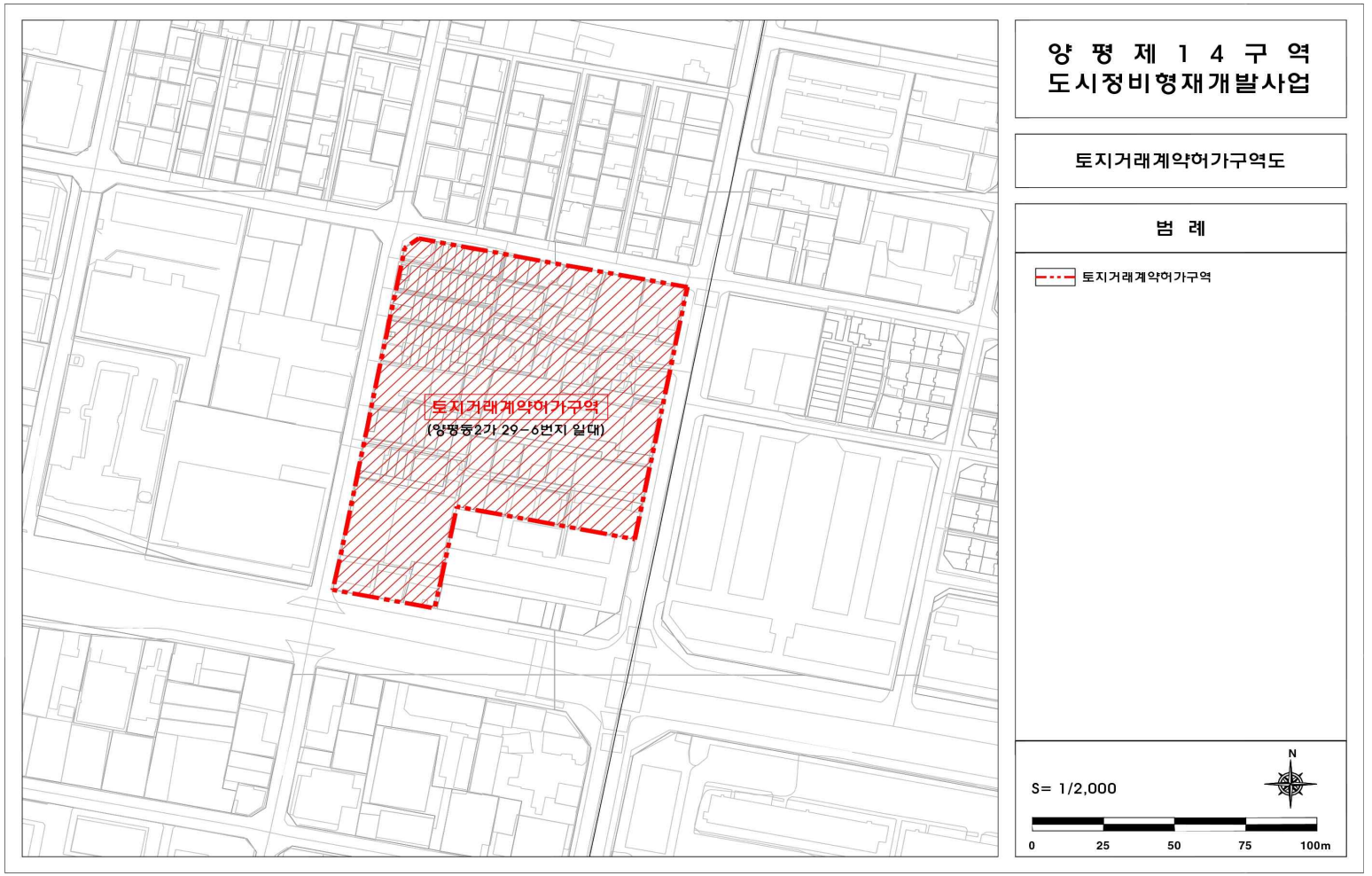

7. 동작구 흑석동 99-3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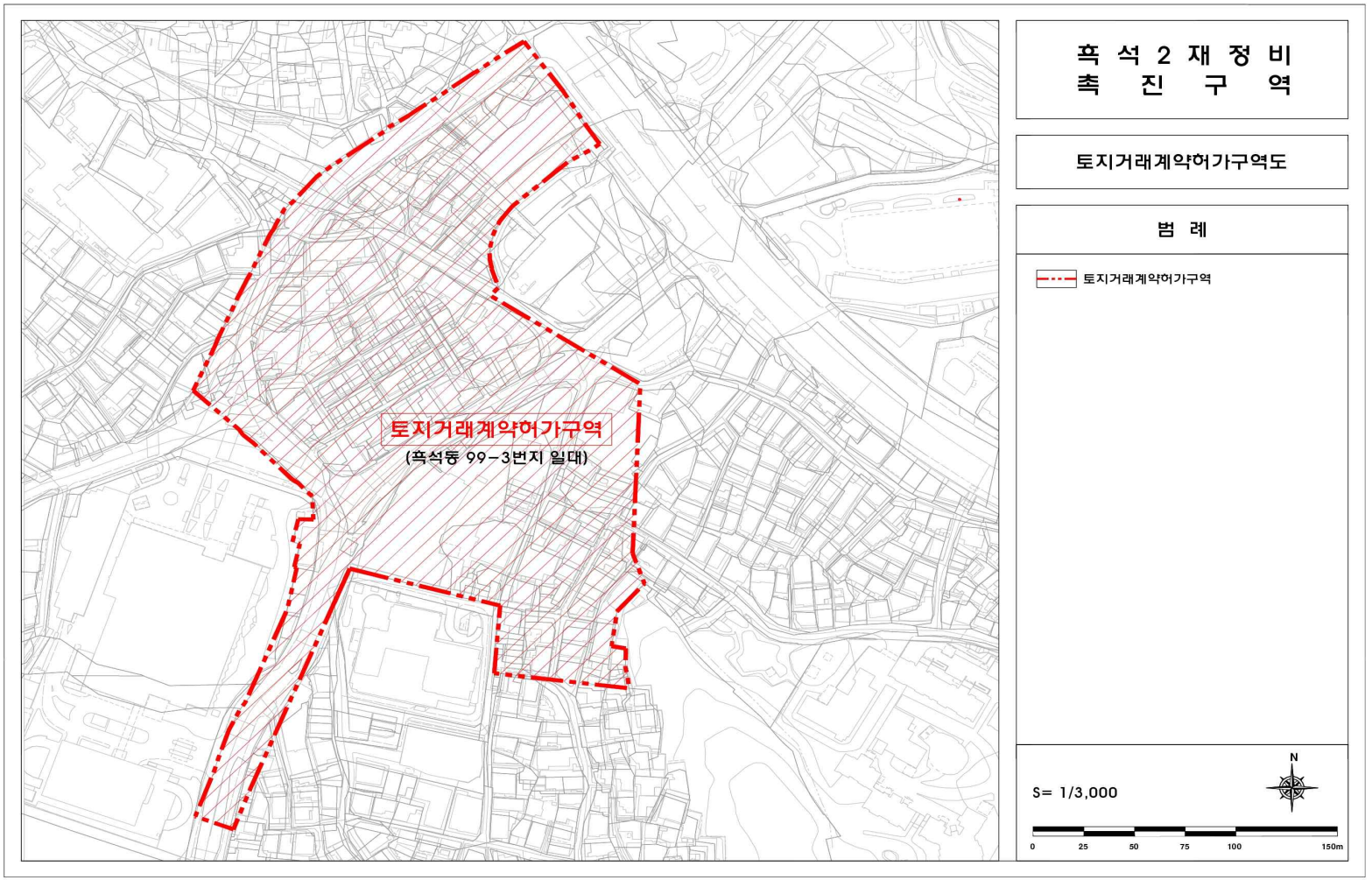

8.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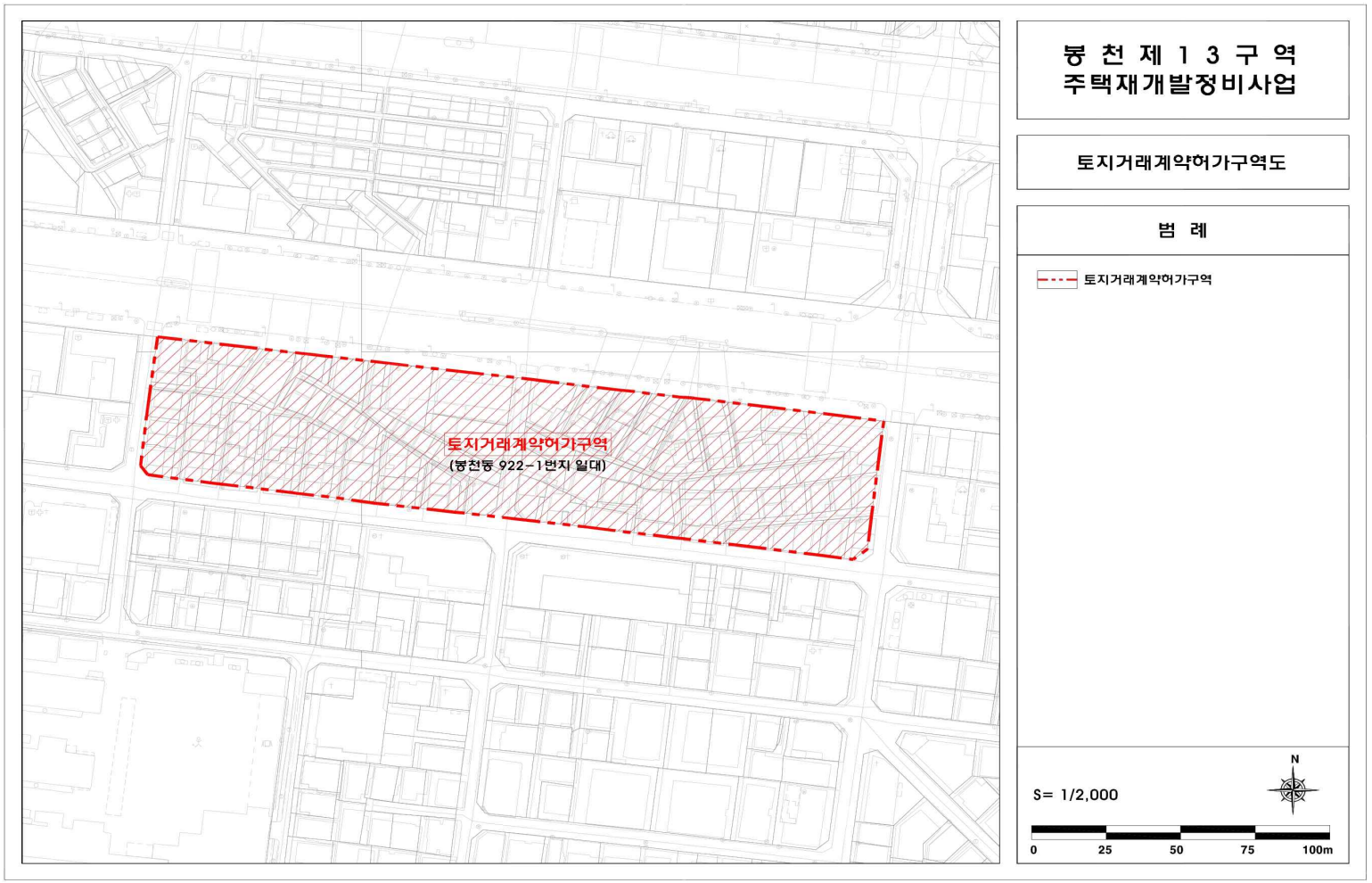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예정지 4개소

1. 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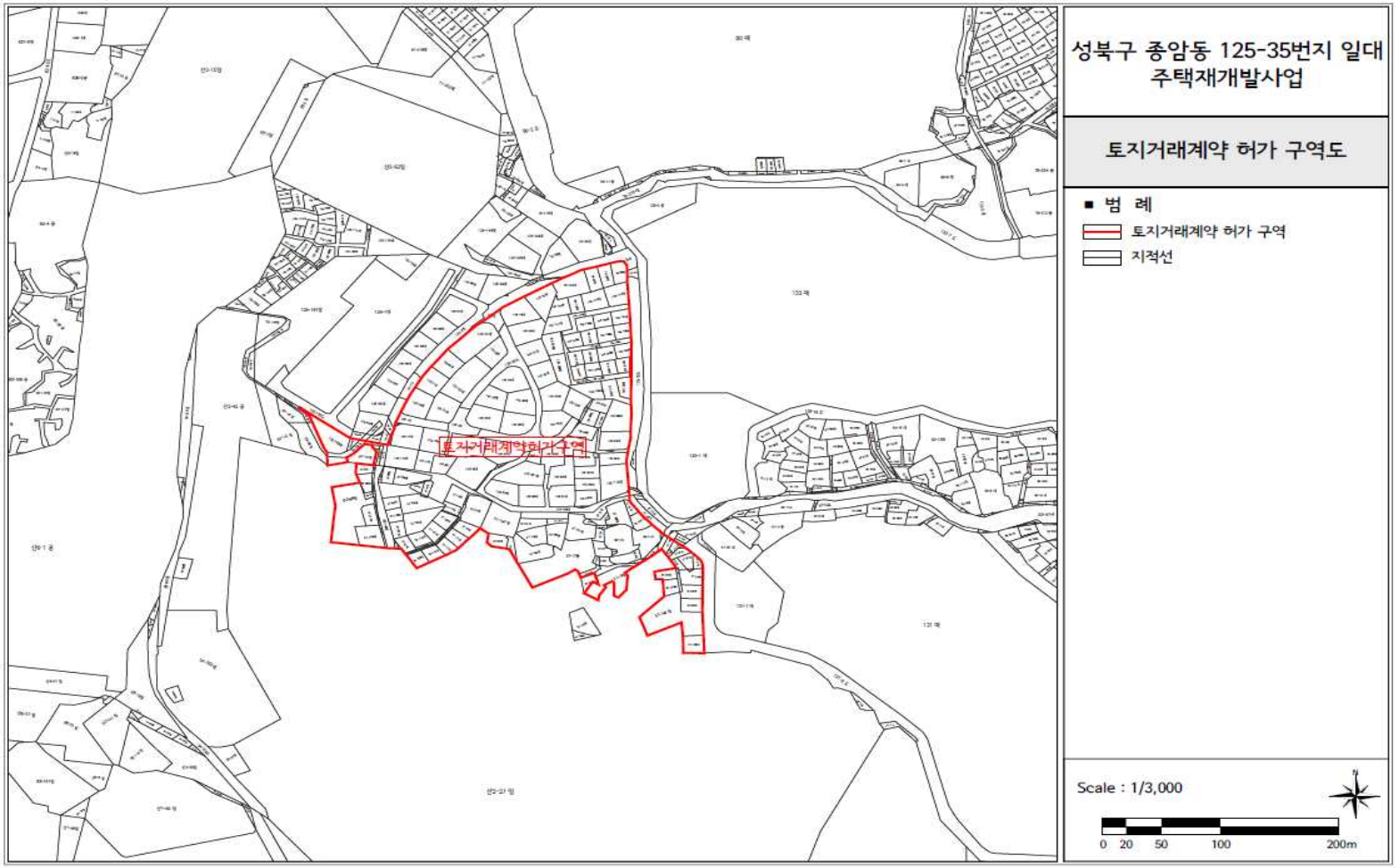

2. 성북구 성북동 3-38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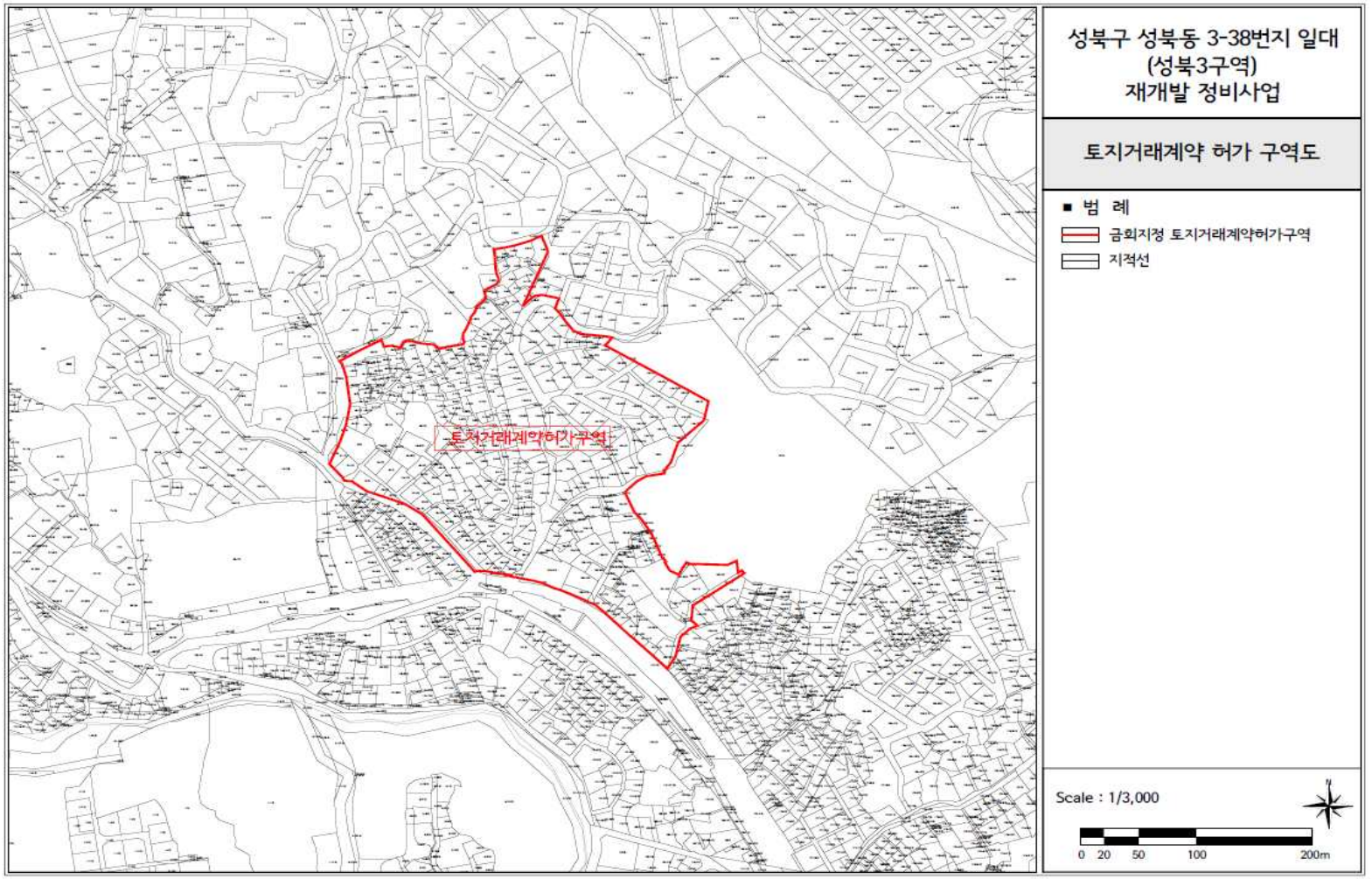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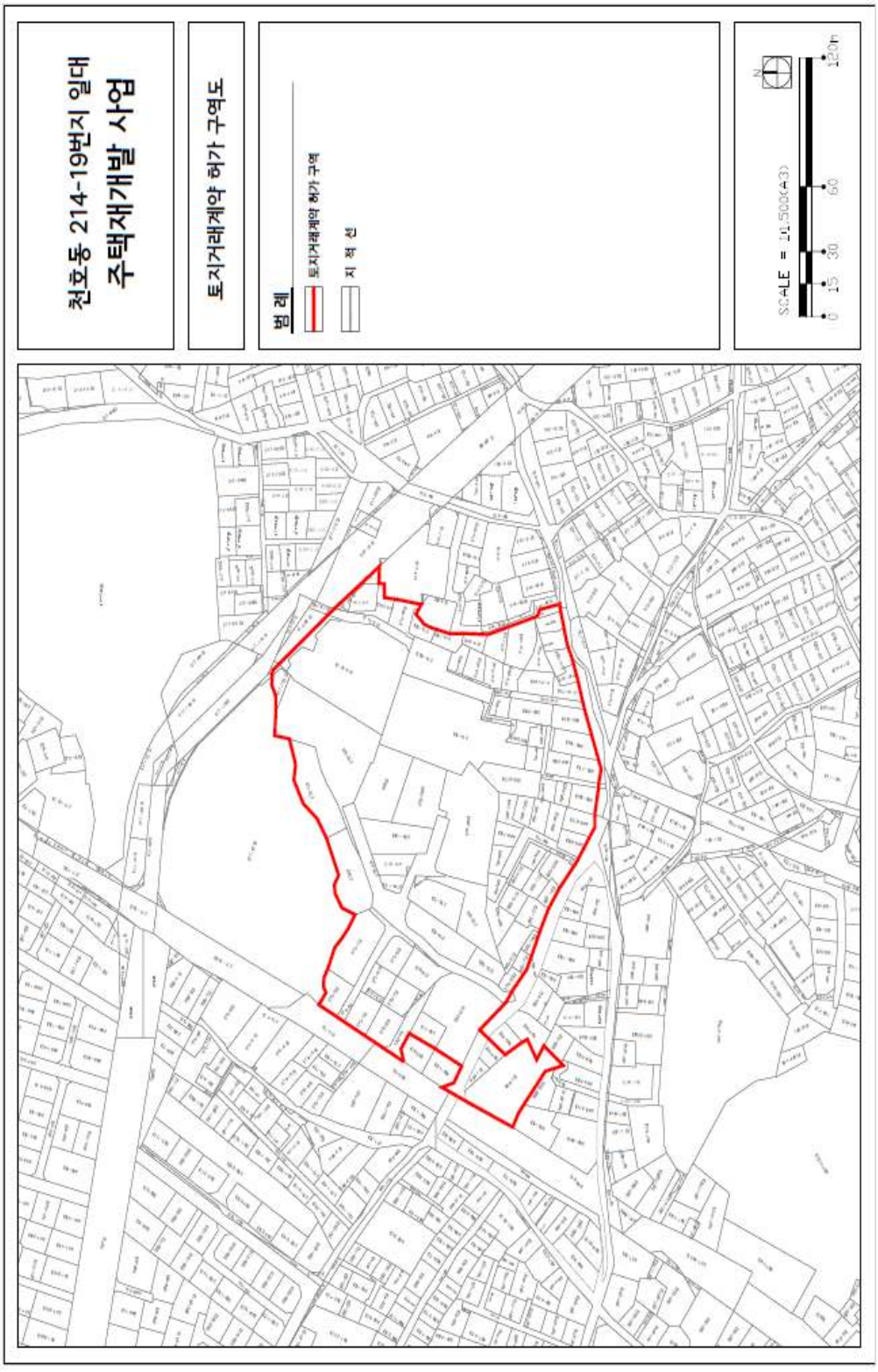


3. 강동구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4. 동대문구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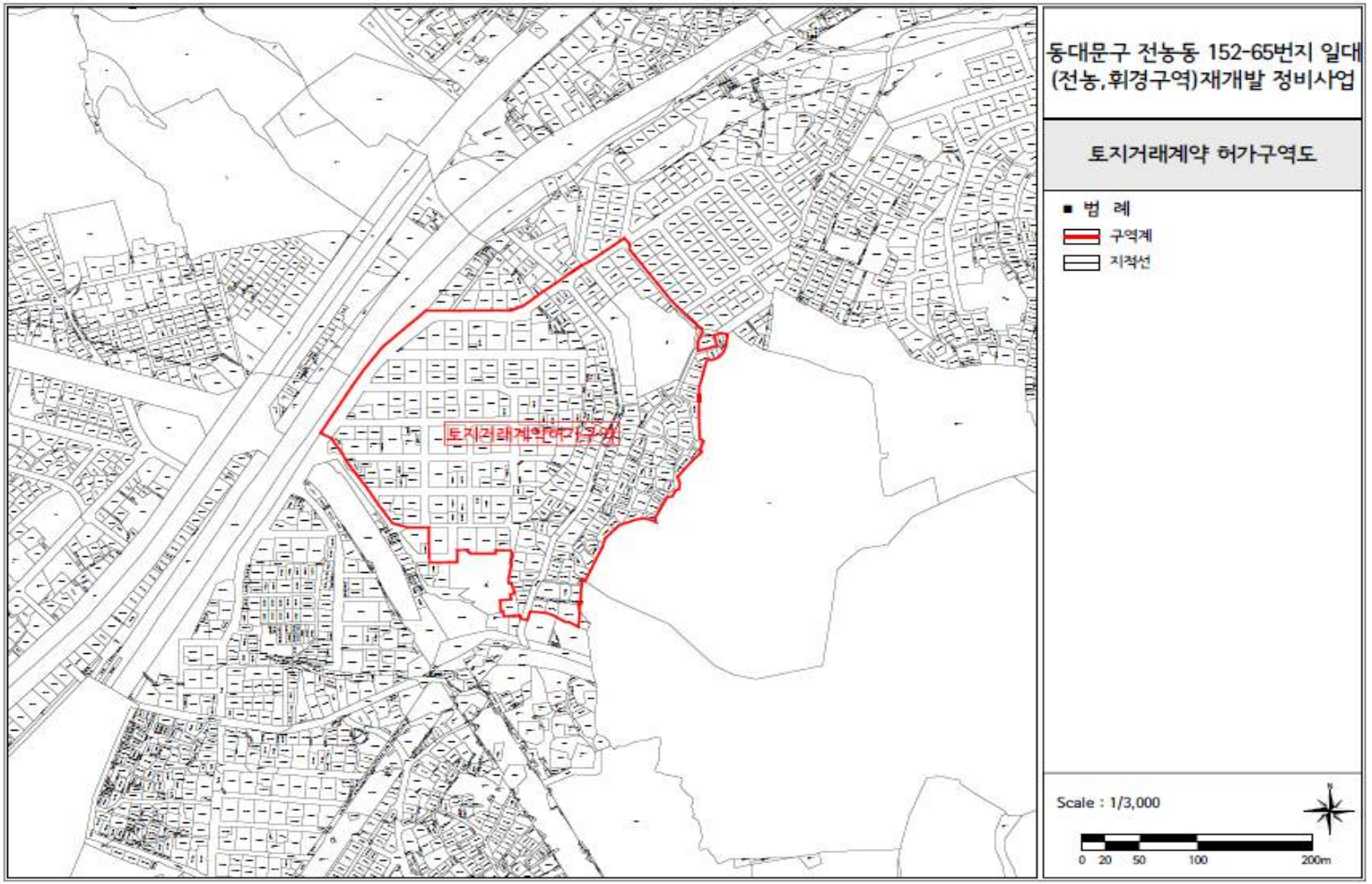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예정지 3개소

1. 양천구 신월동 913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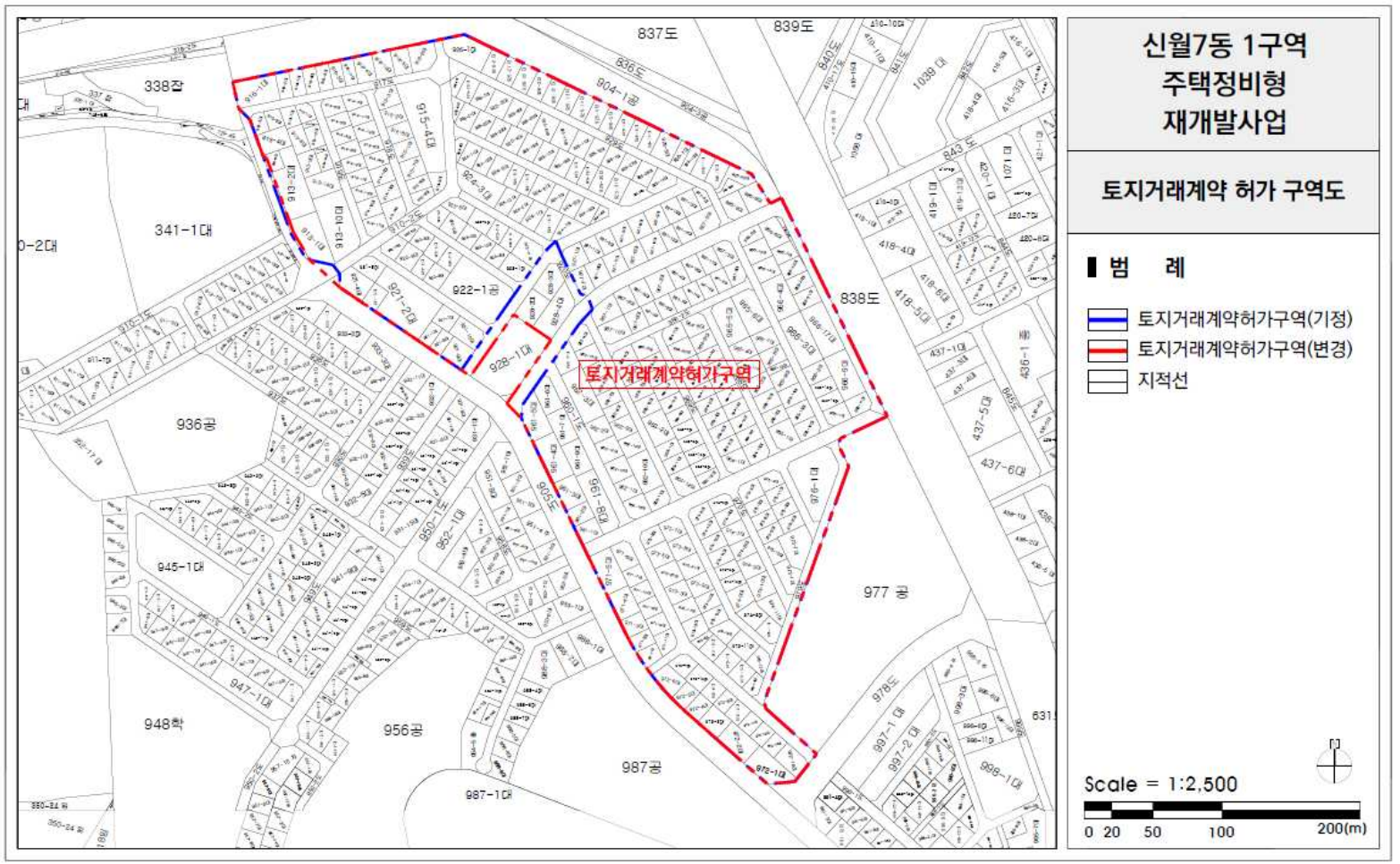

2. 종로구 숭인동 56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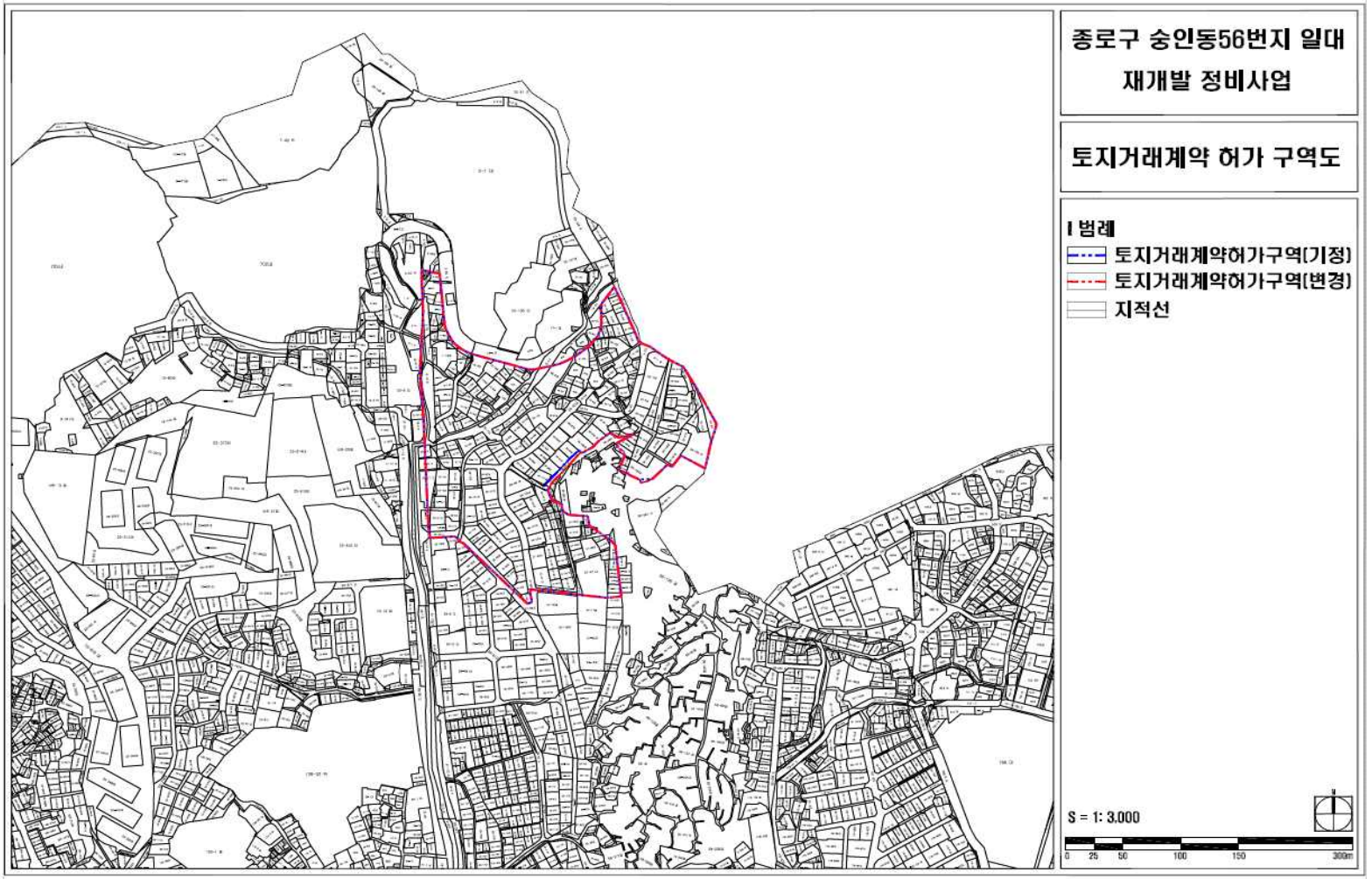

3.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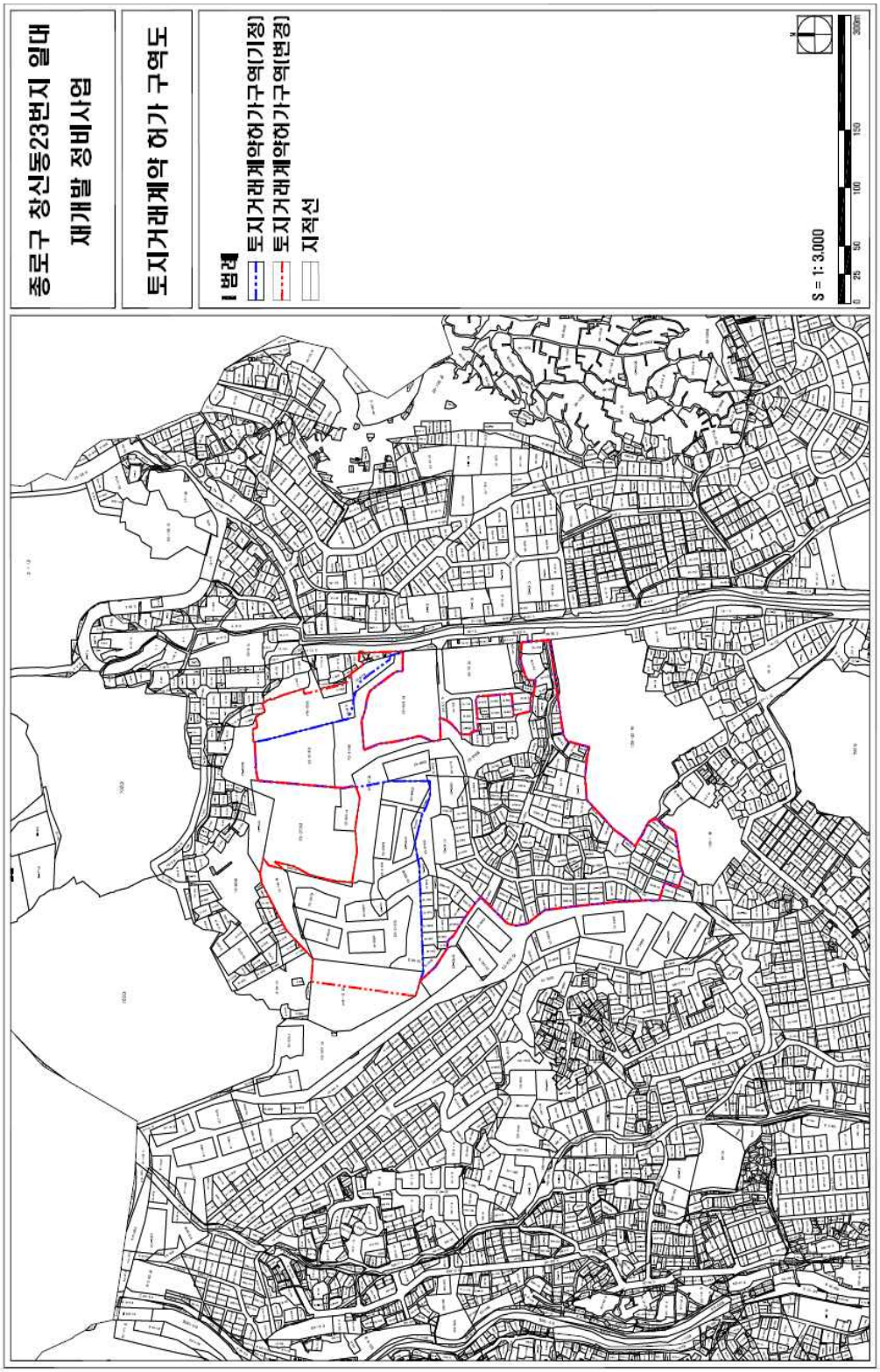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예정지 5개소

1.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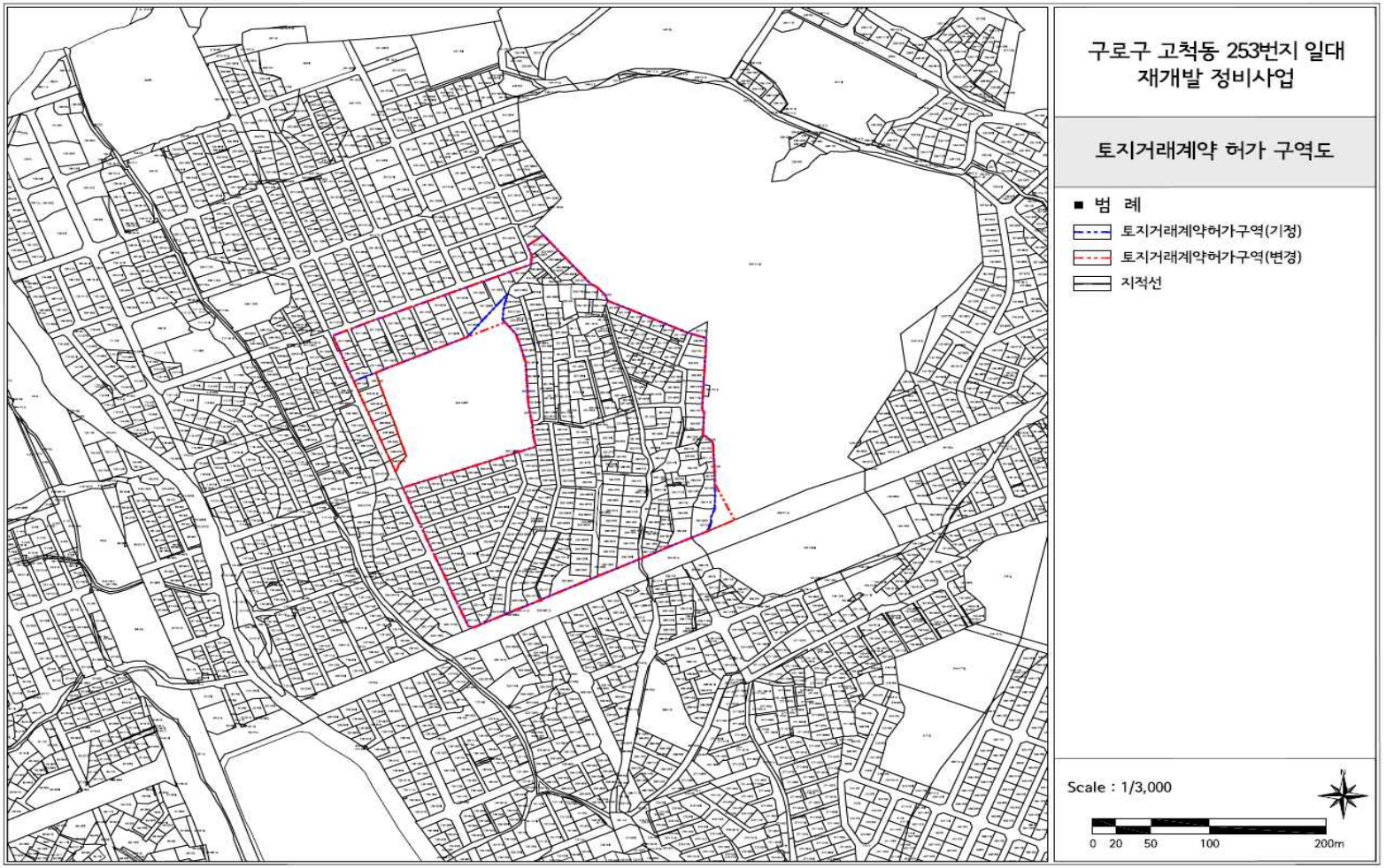

2.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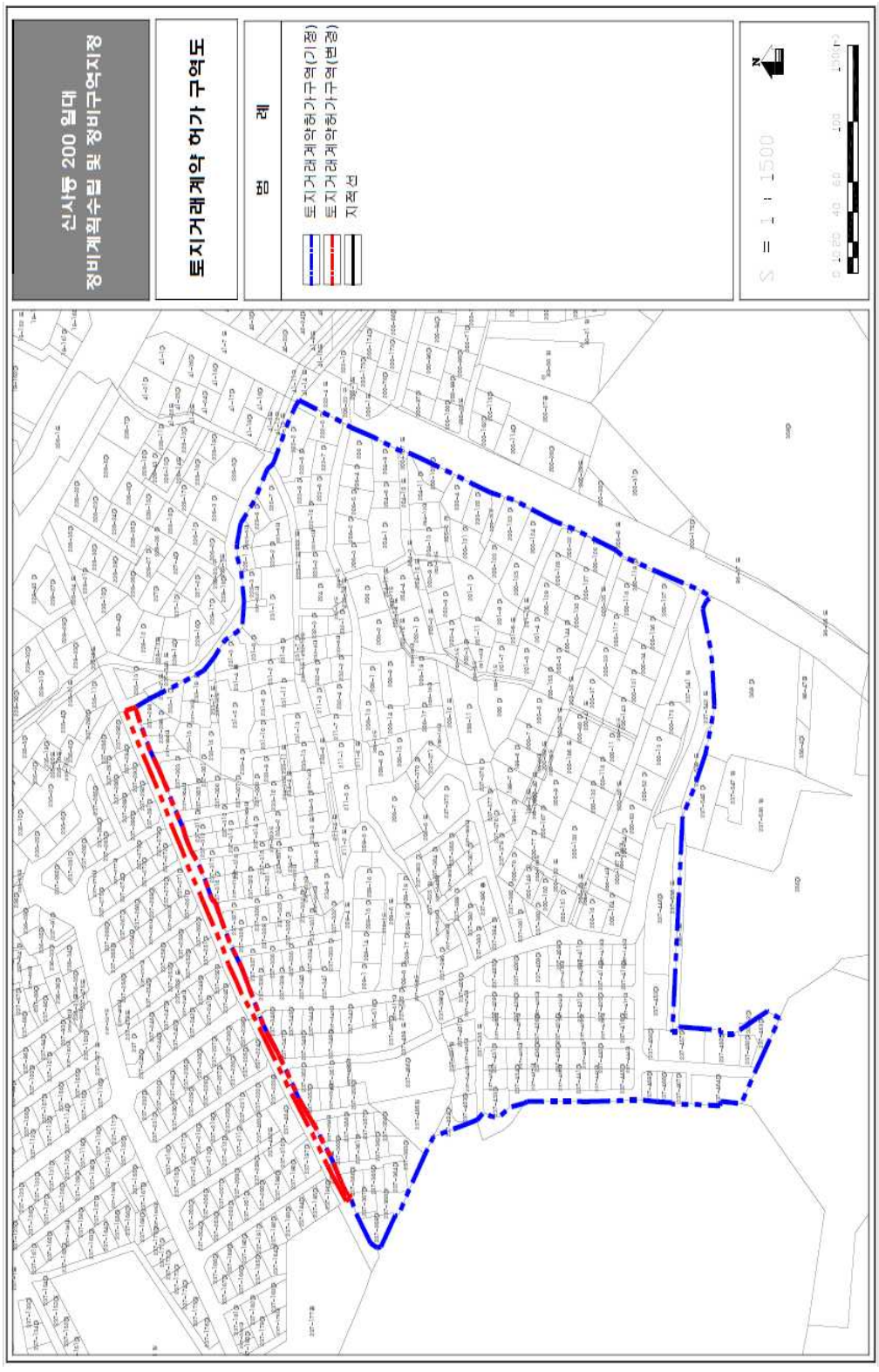

3.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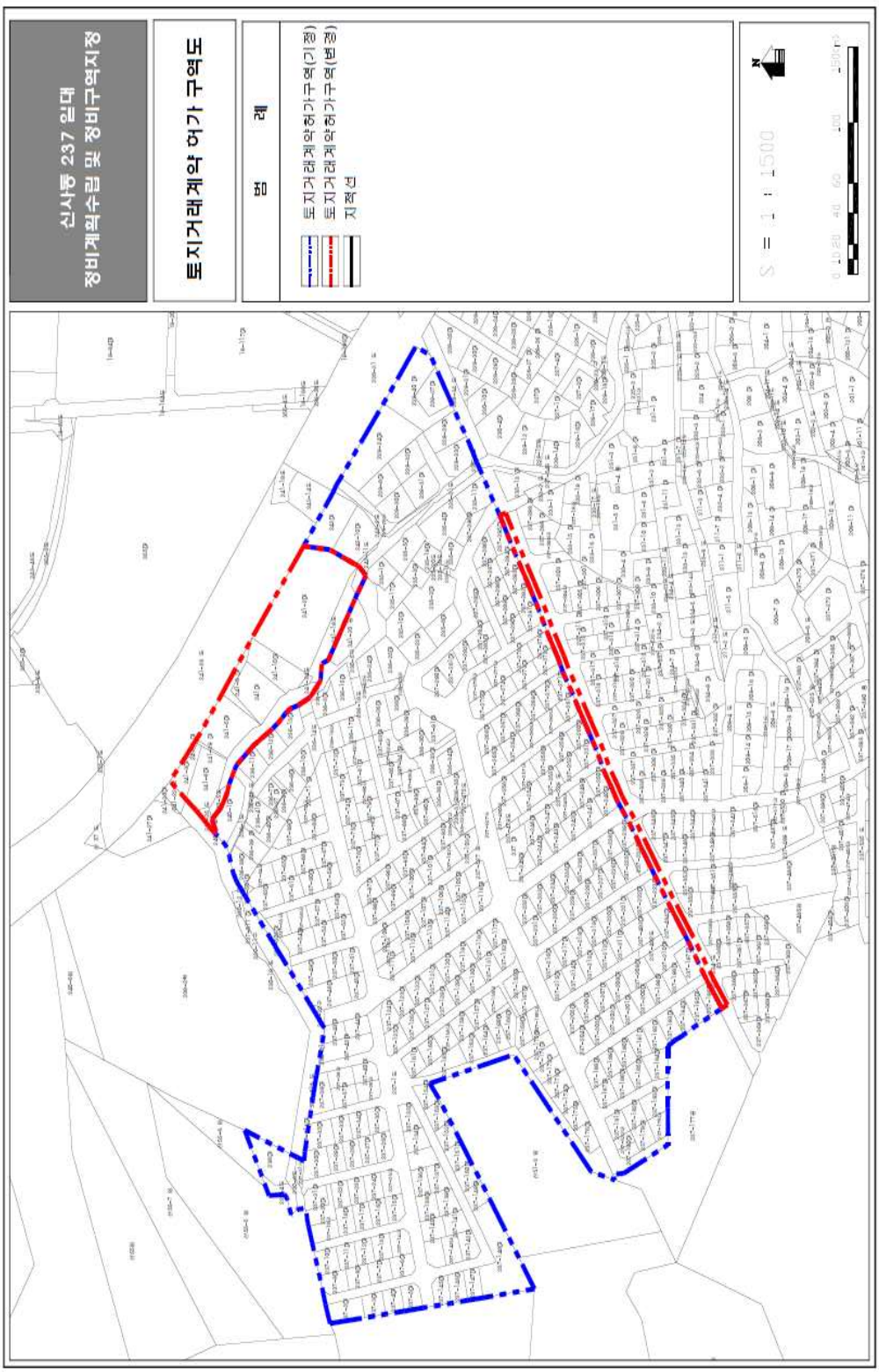

4.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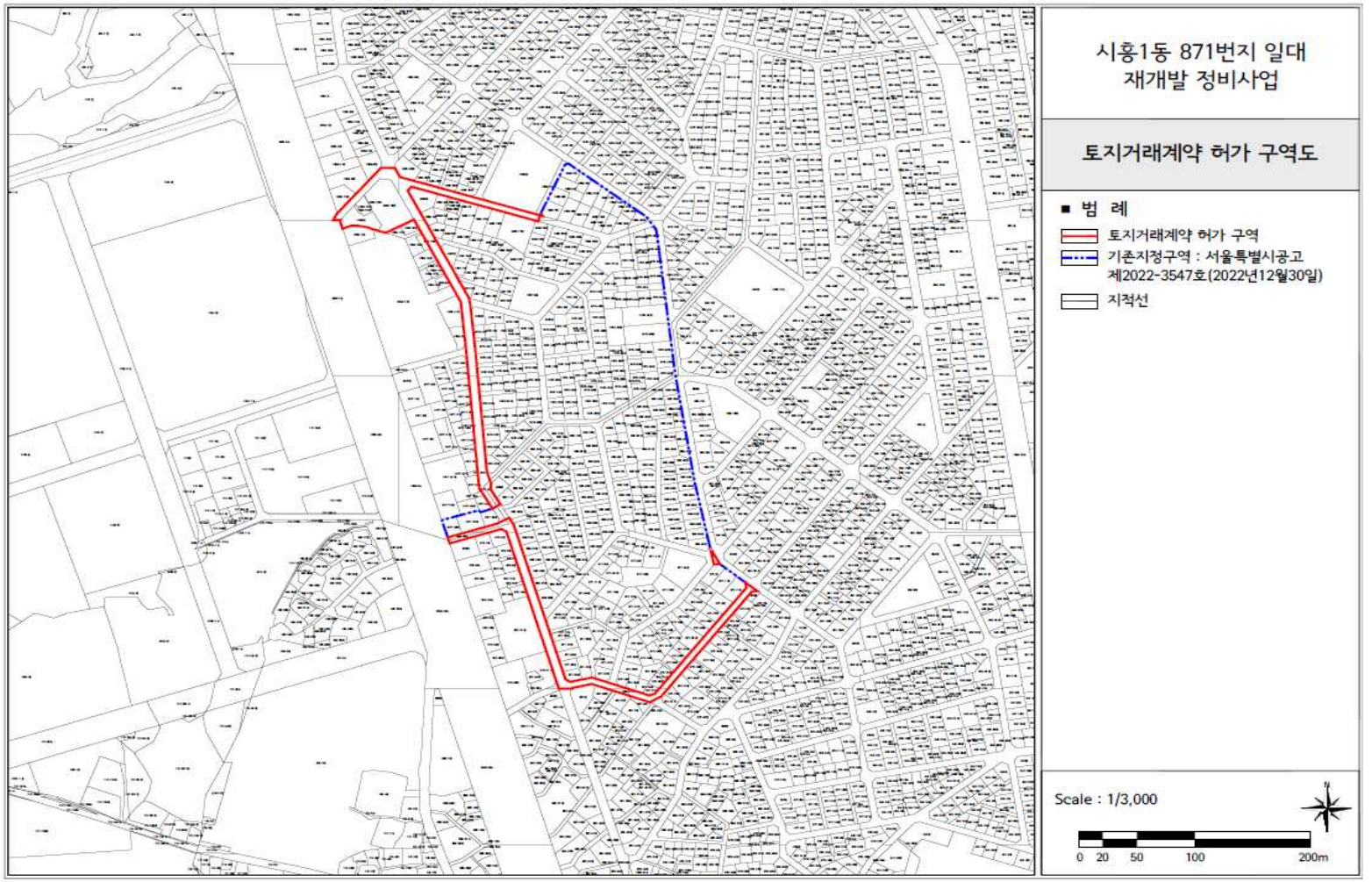

5.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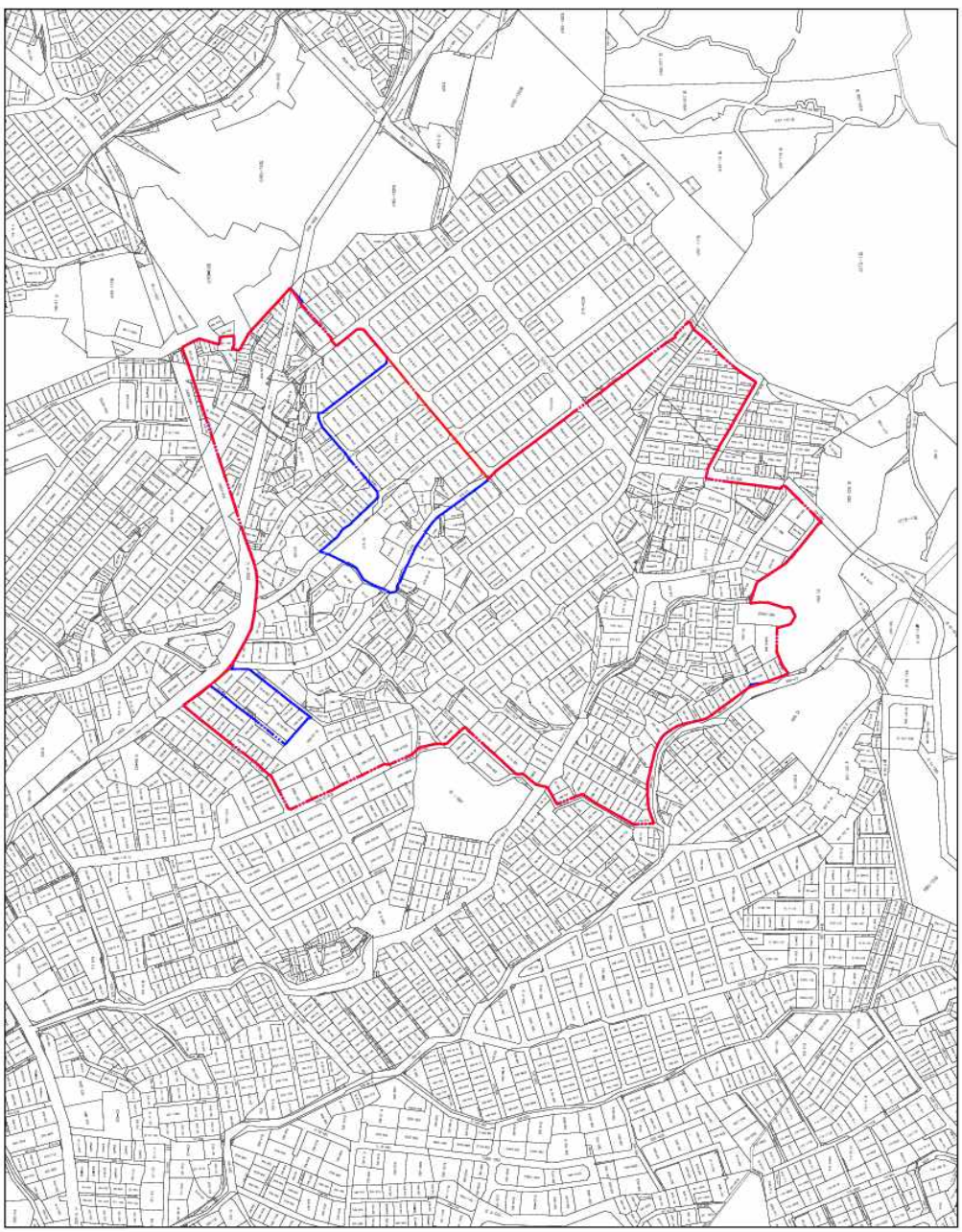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예정지 13개소

1.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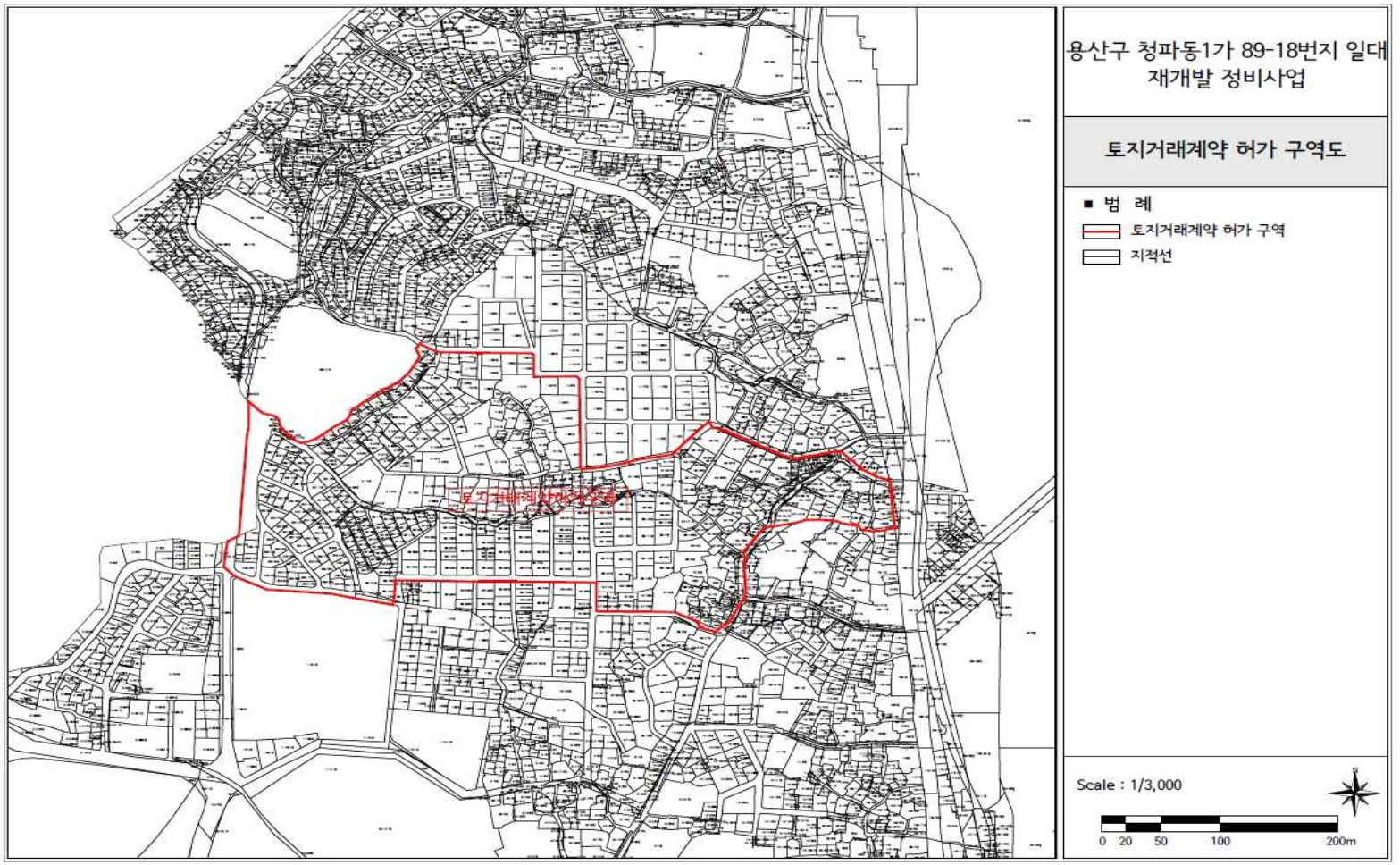

2. 성동구 마장동 382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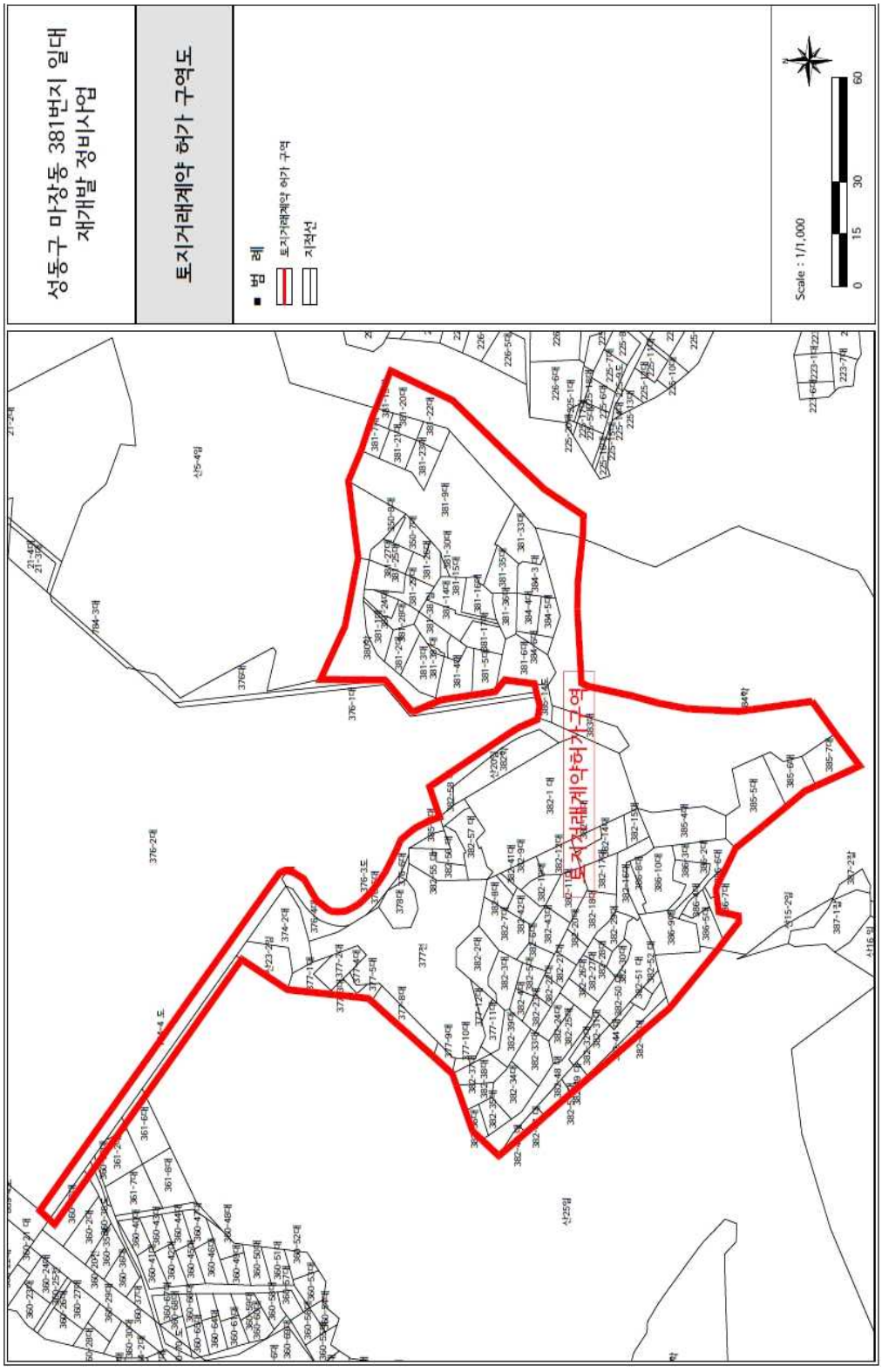

3. 동대문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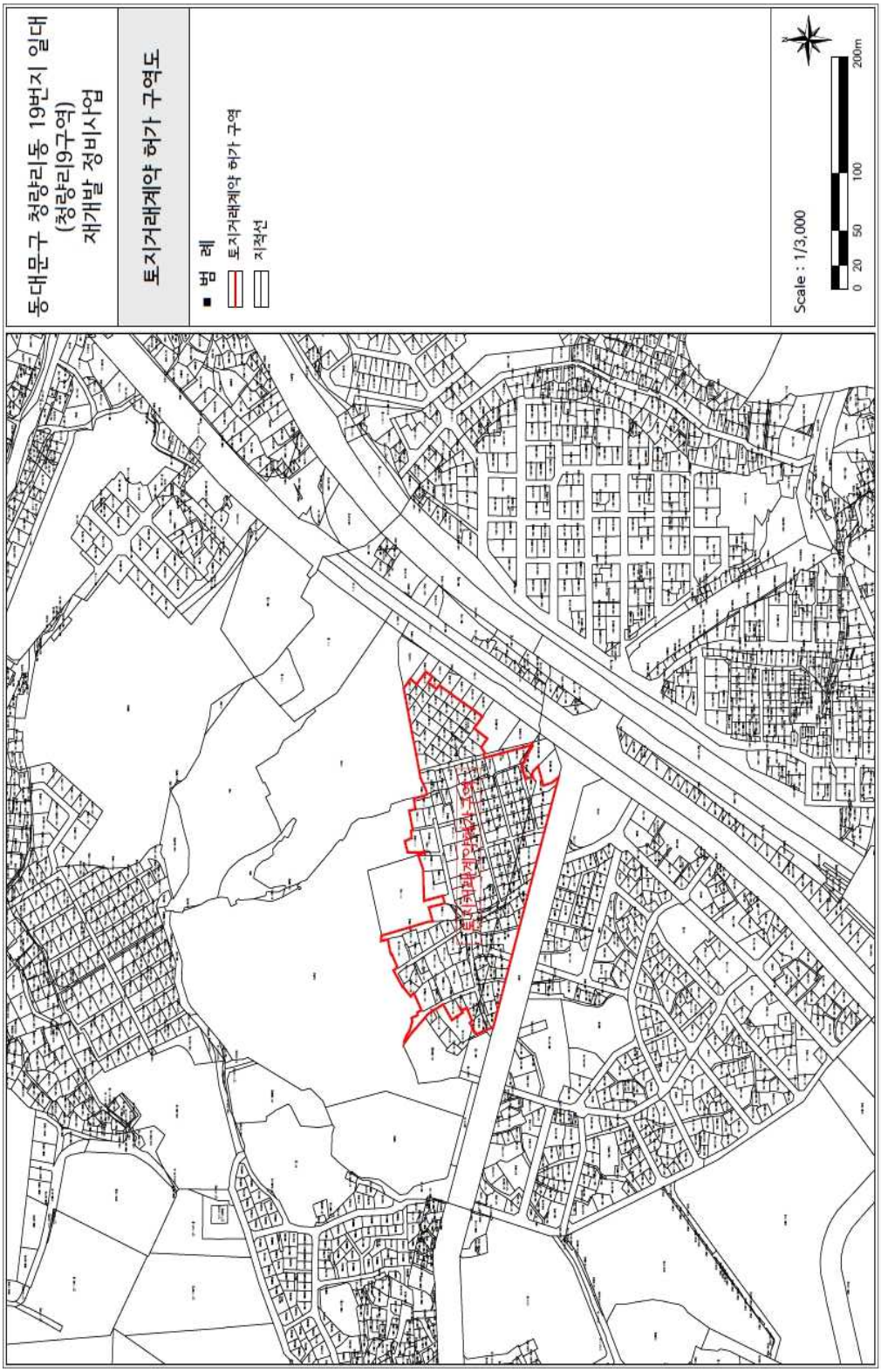

4. 중랑구 면목동 69-14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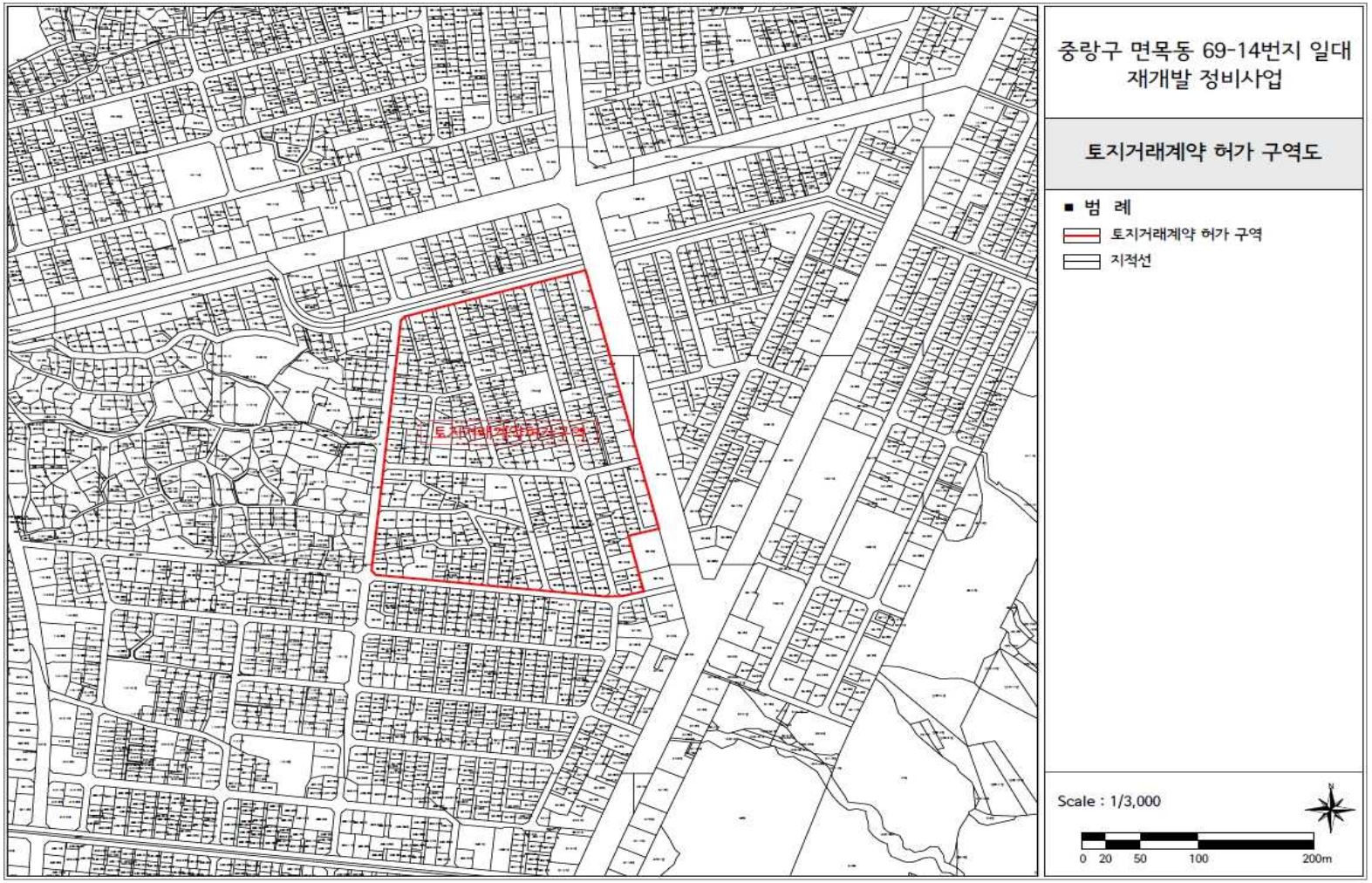

5. 성북구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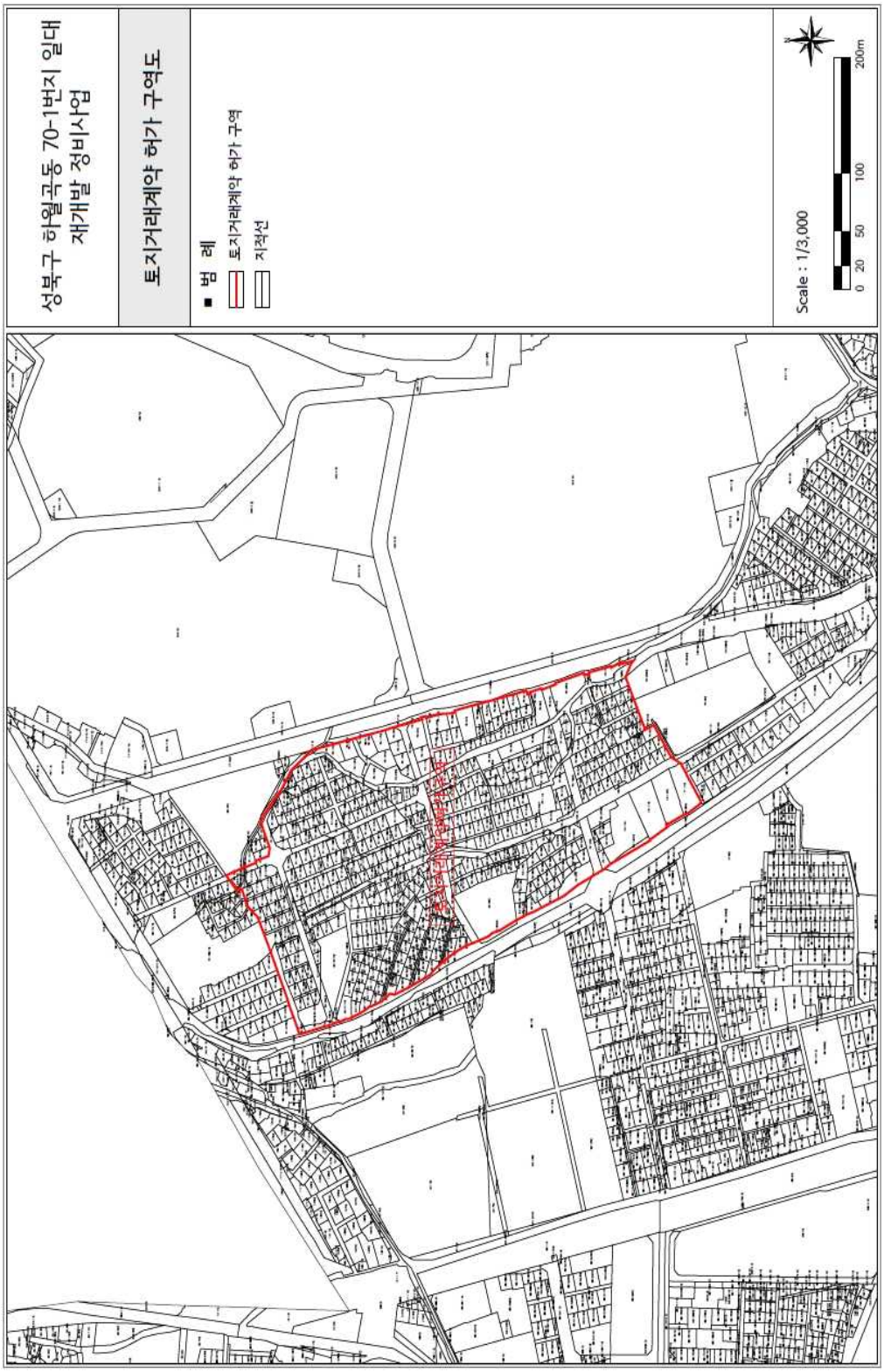

6.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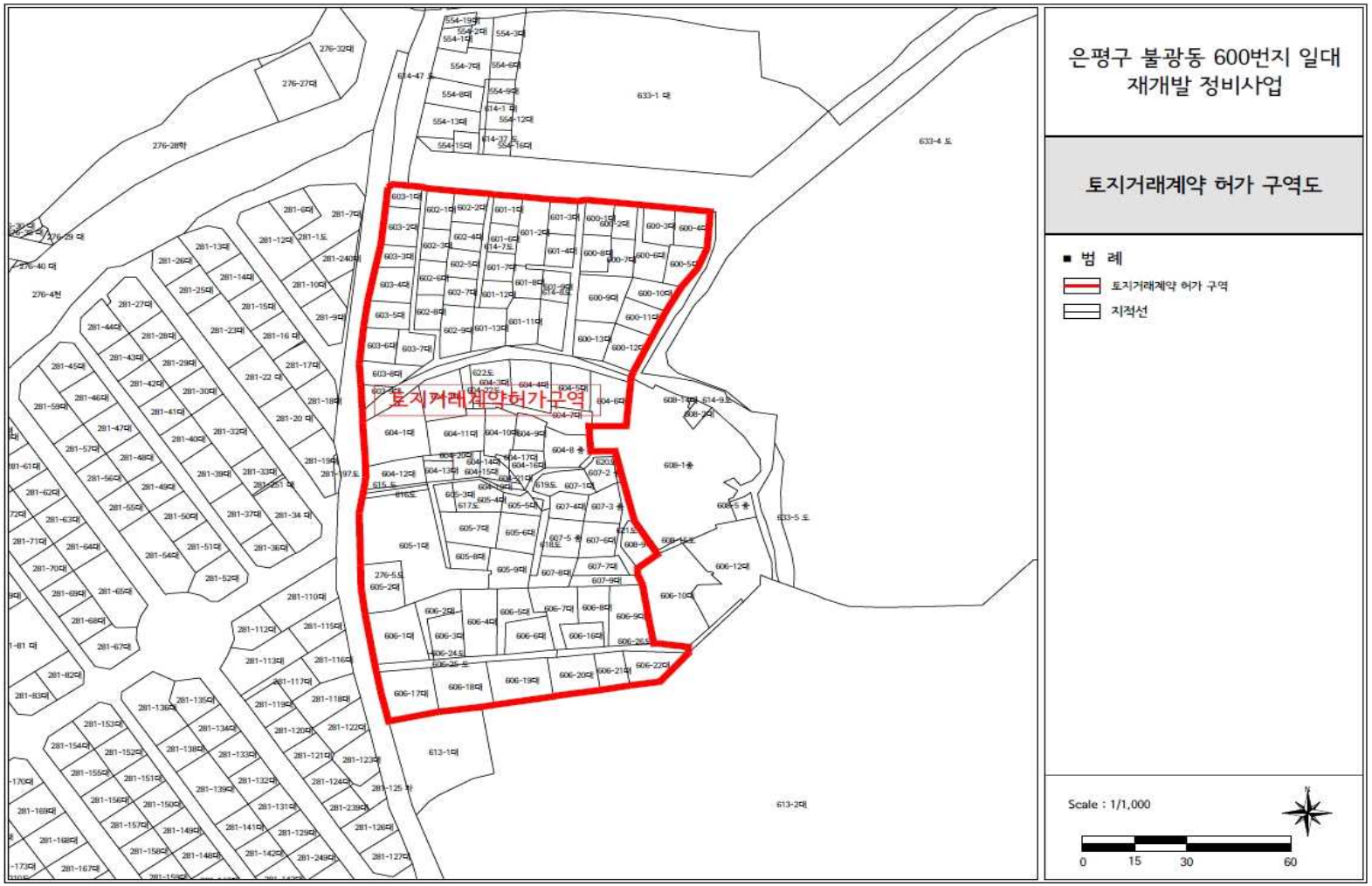

7. 마포구 공덕동 11-24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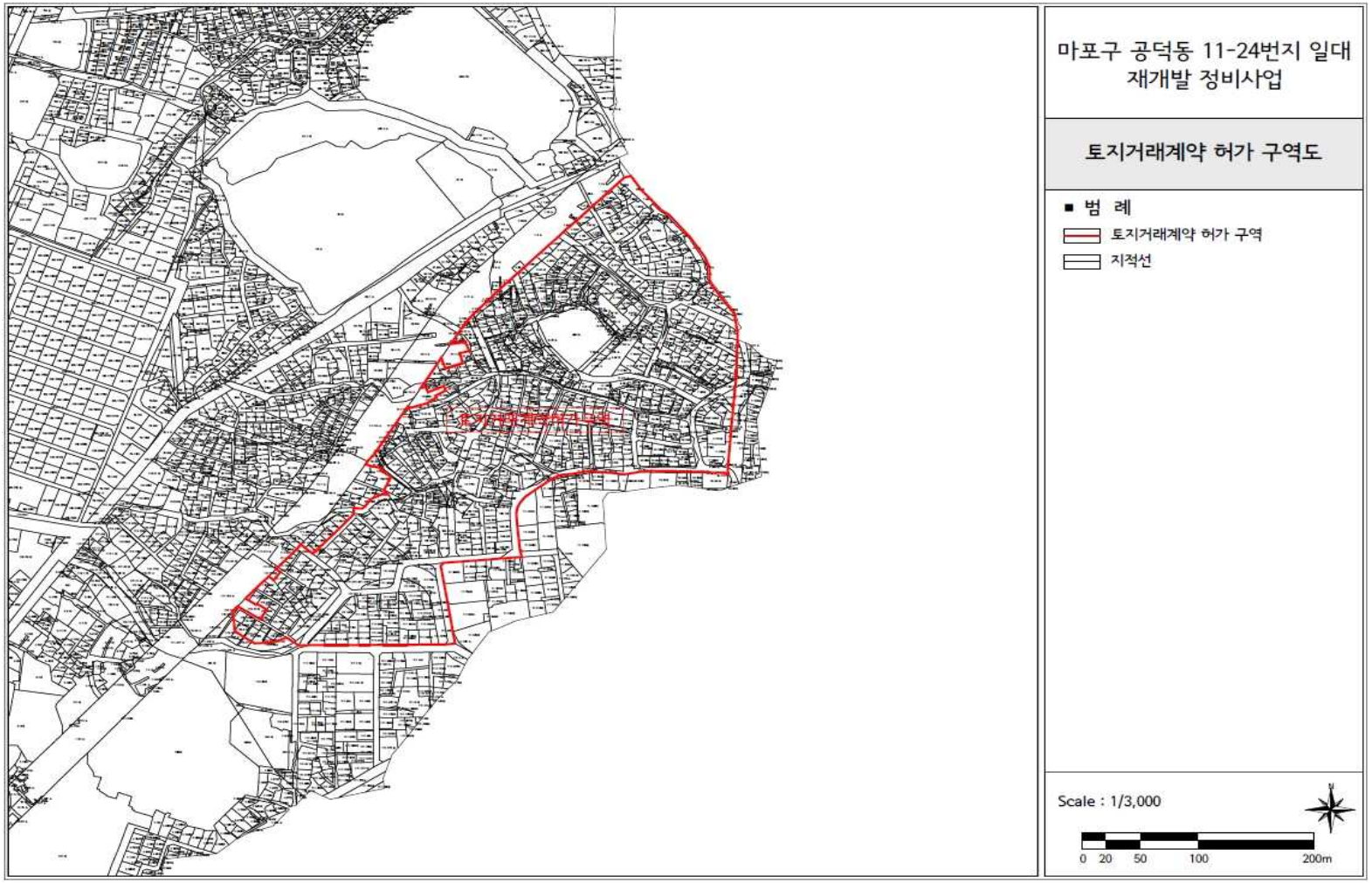

8. 강서구 방화동 589-13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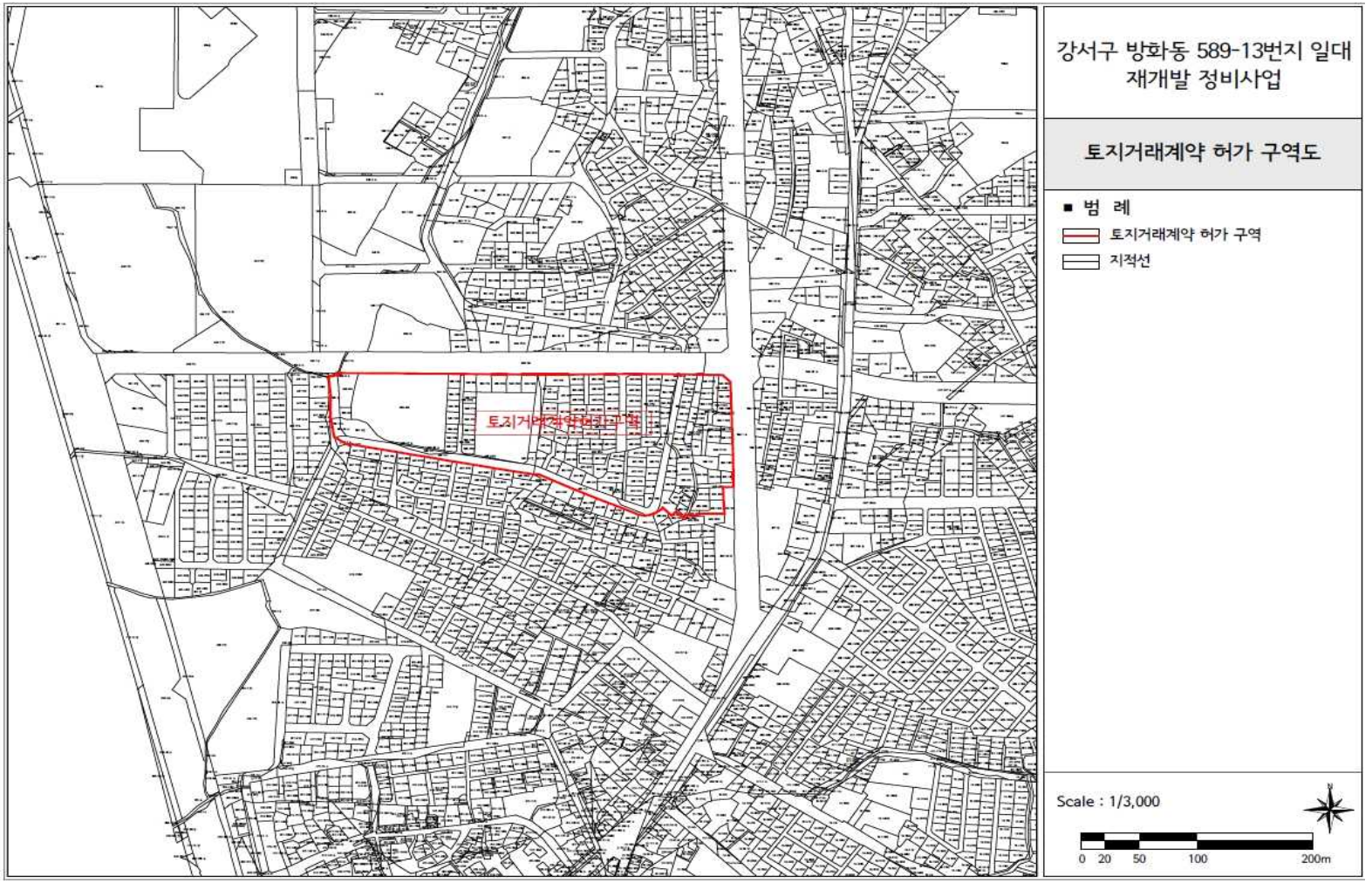

9. 구로구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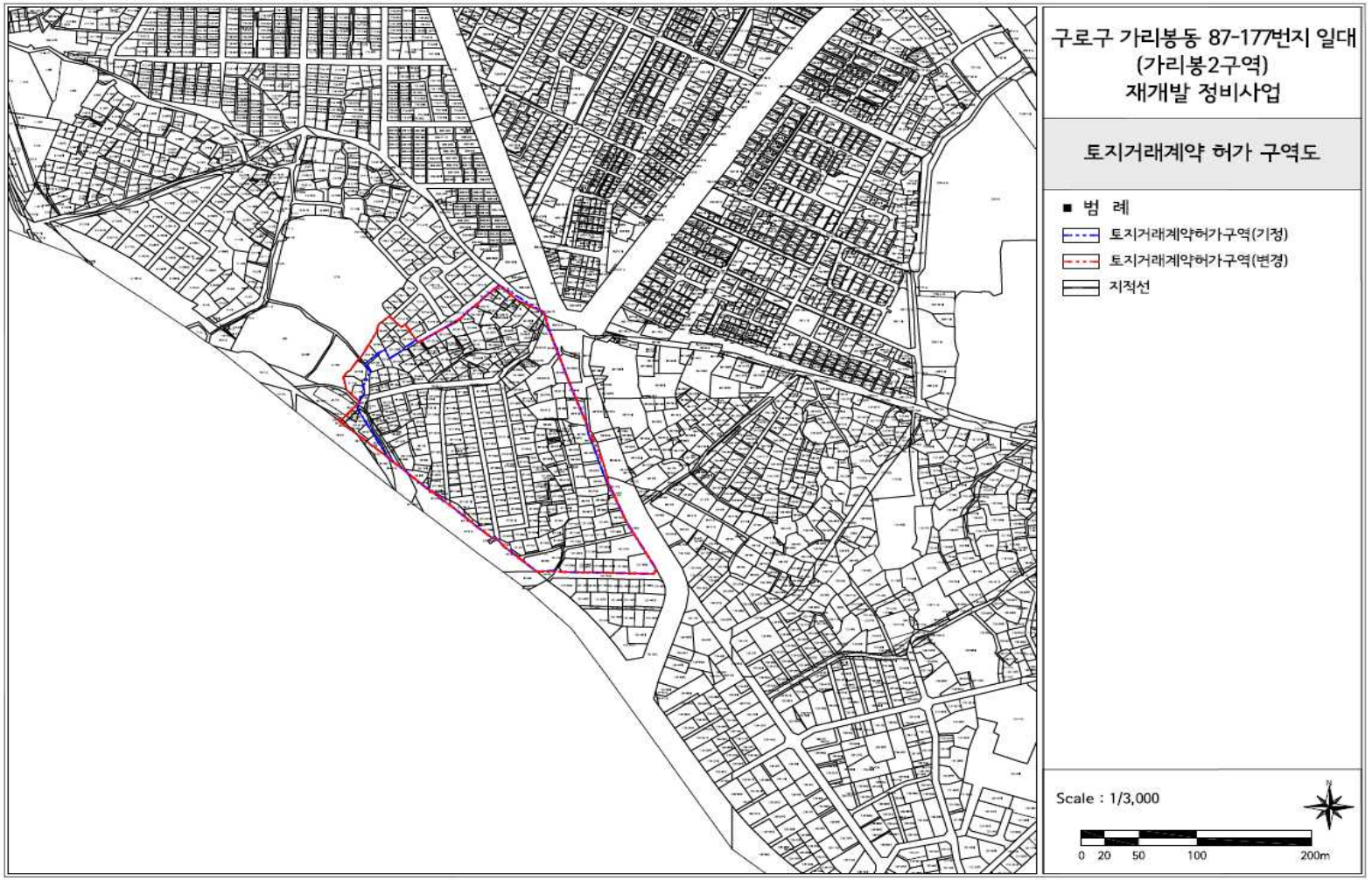

10.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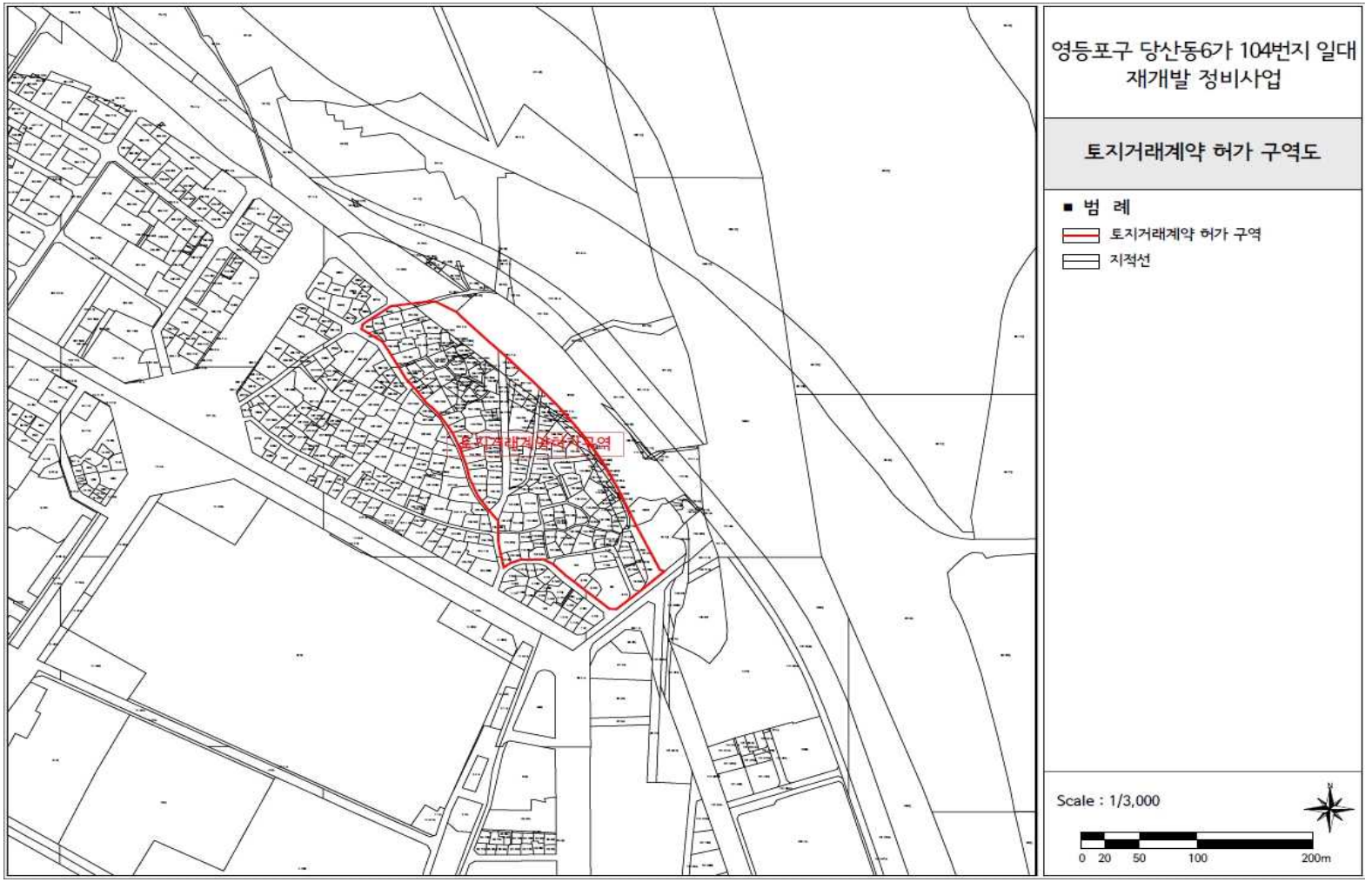

11.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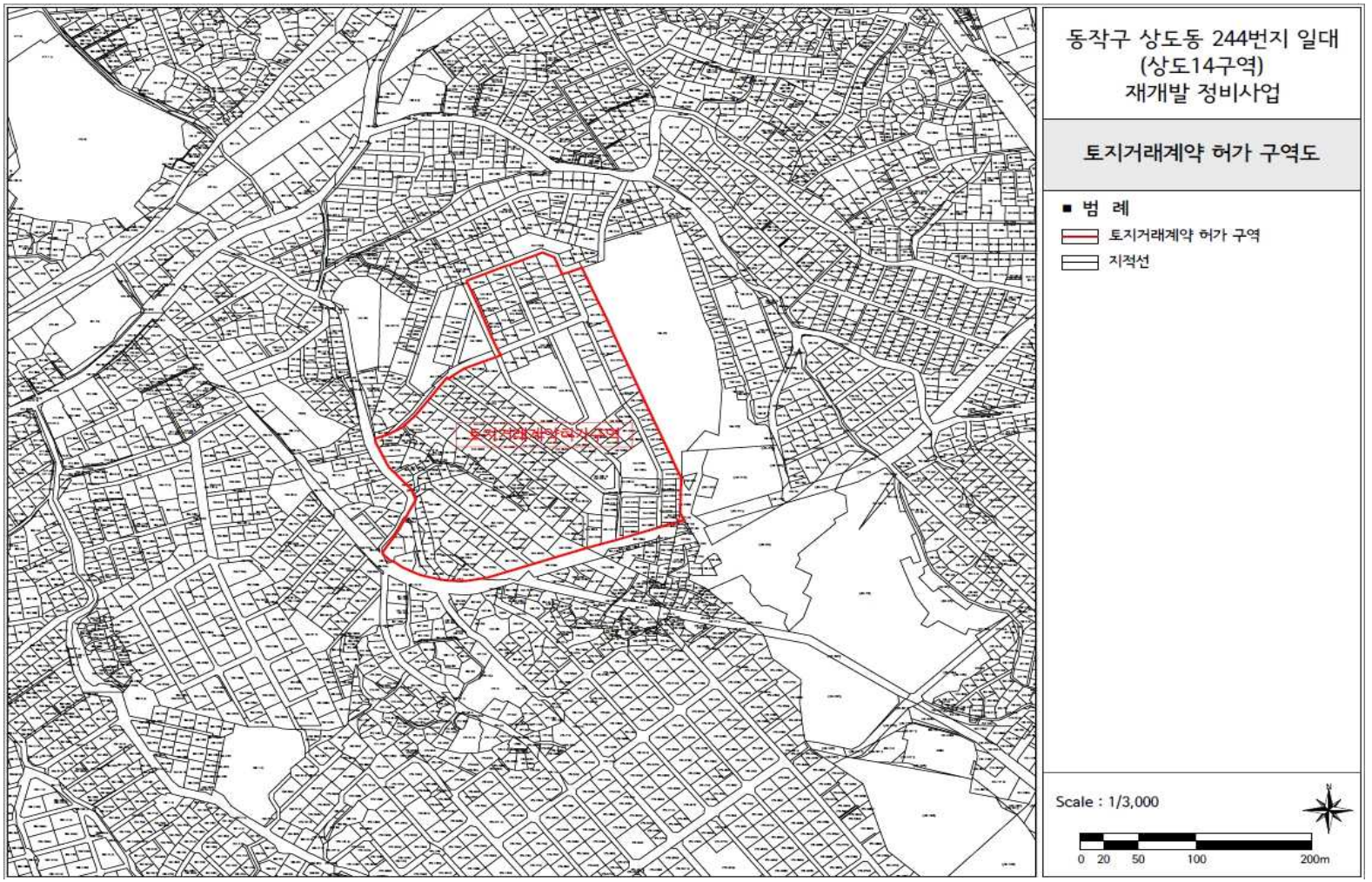

12. 송파구 마천동 45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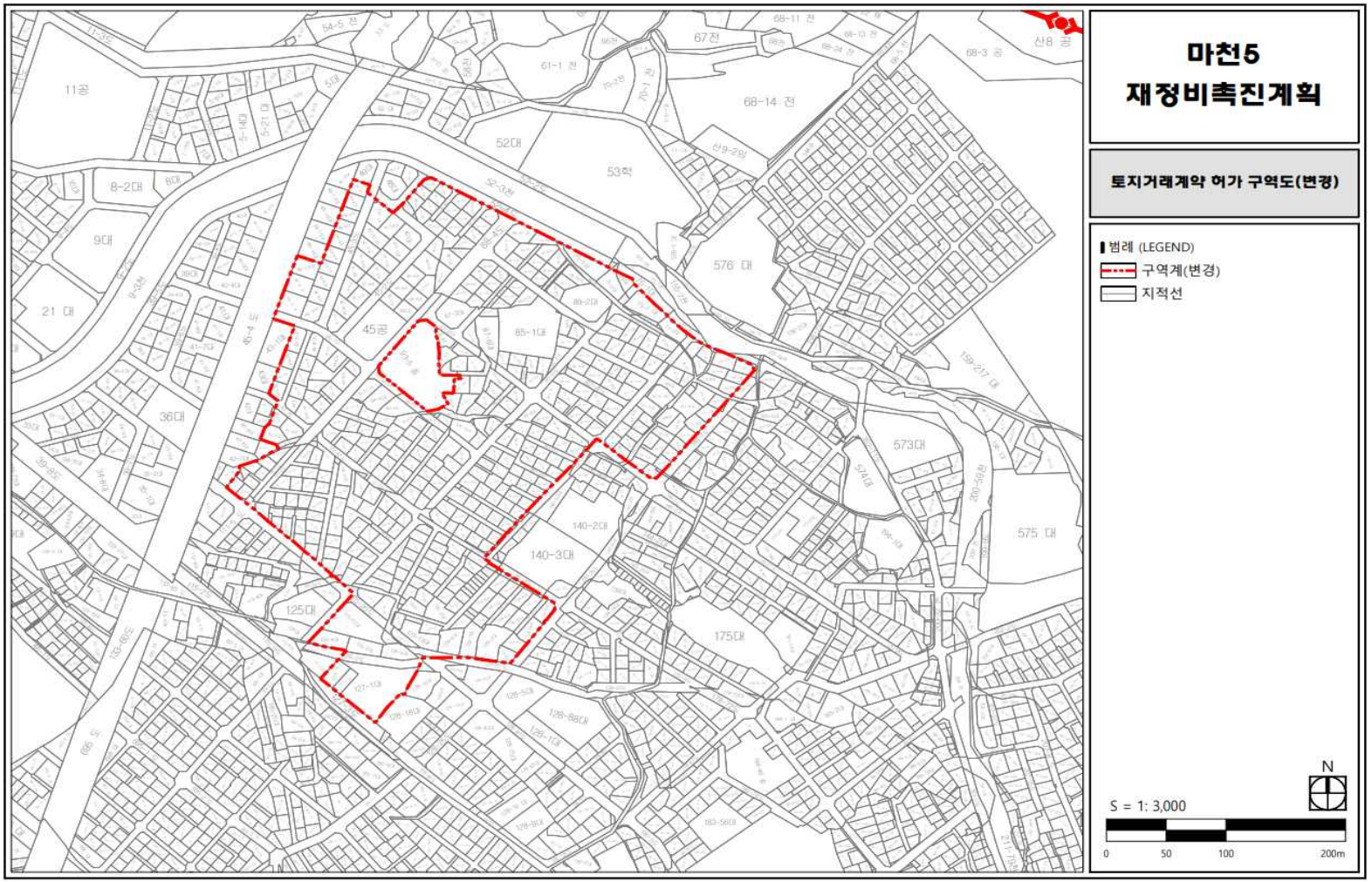

13. 강동구 천호동 461-3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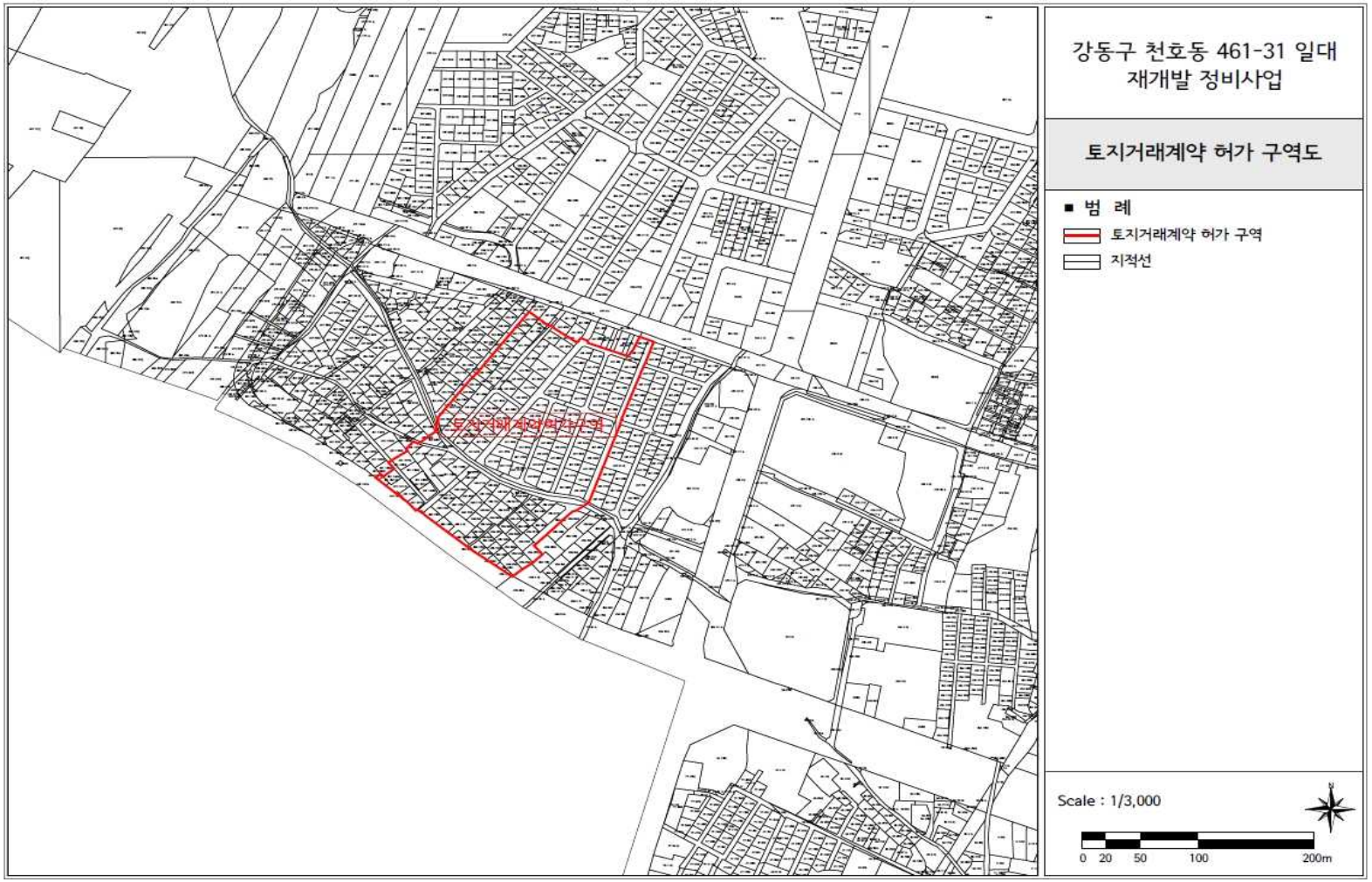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 재건축) 예정지 25개소

1. 종로구 창신동 23-605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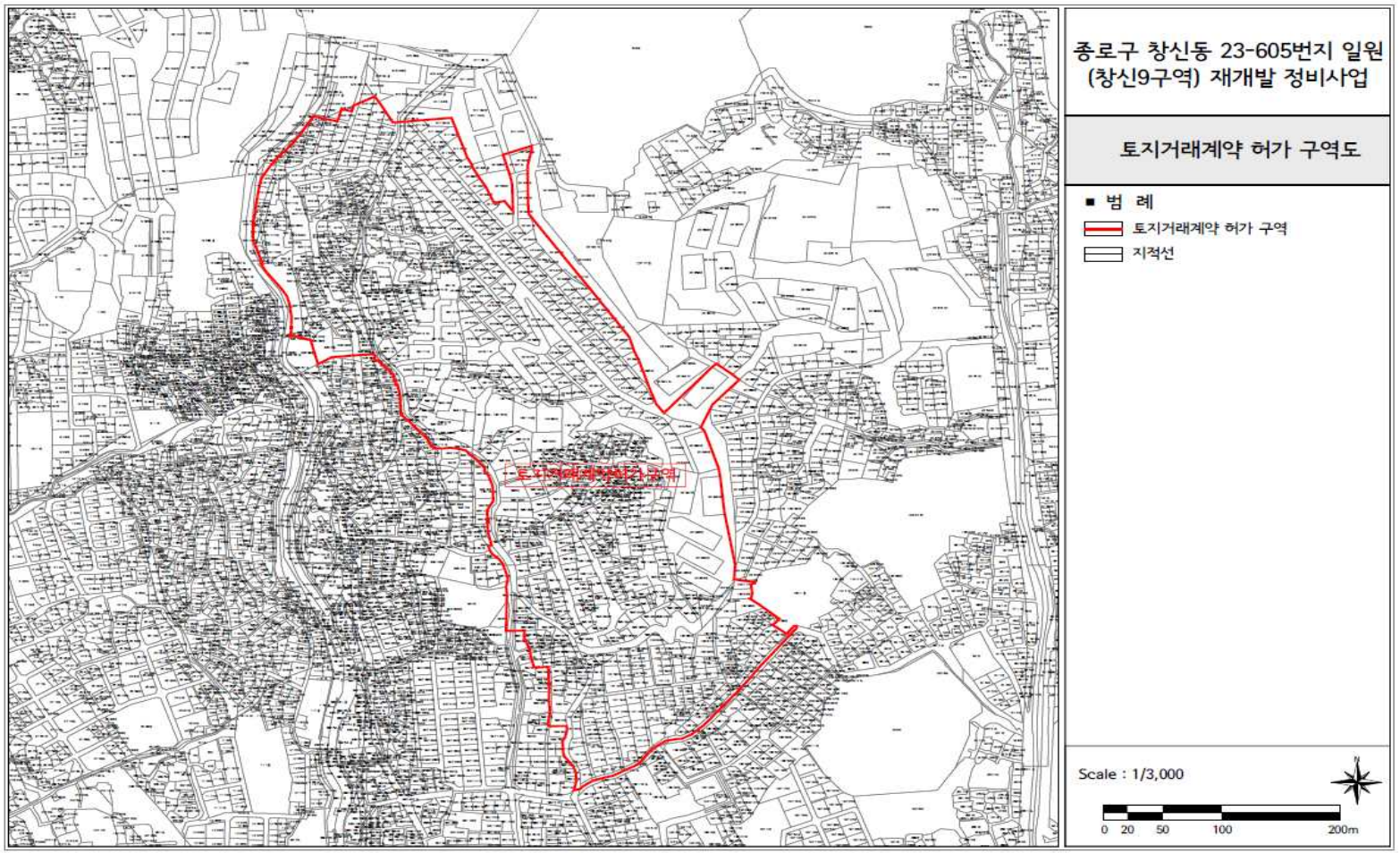

2. 종로구 창신동 629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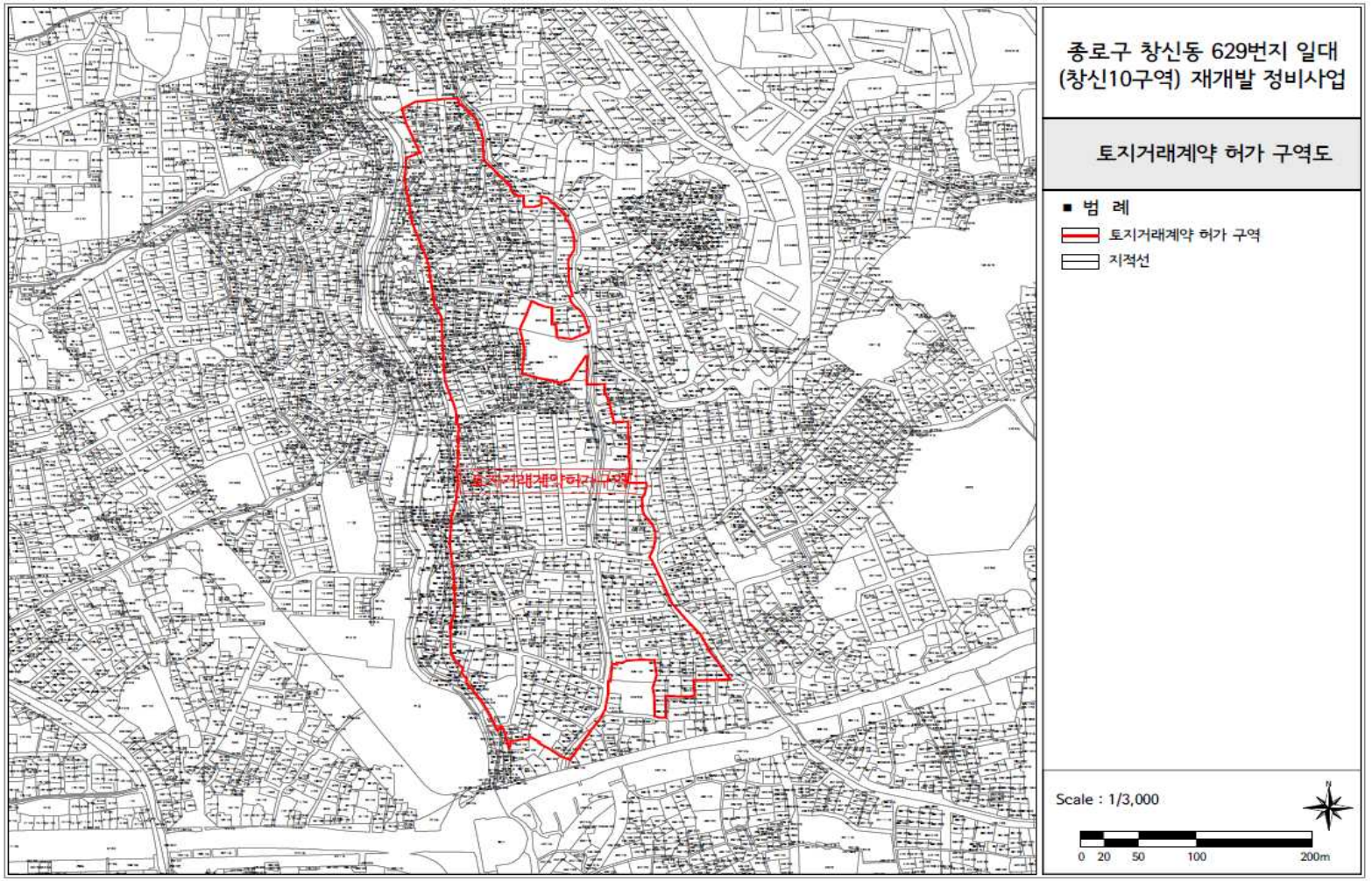

3.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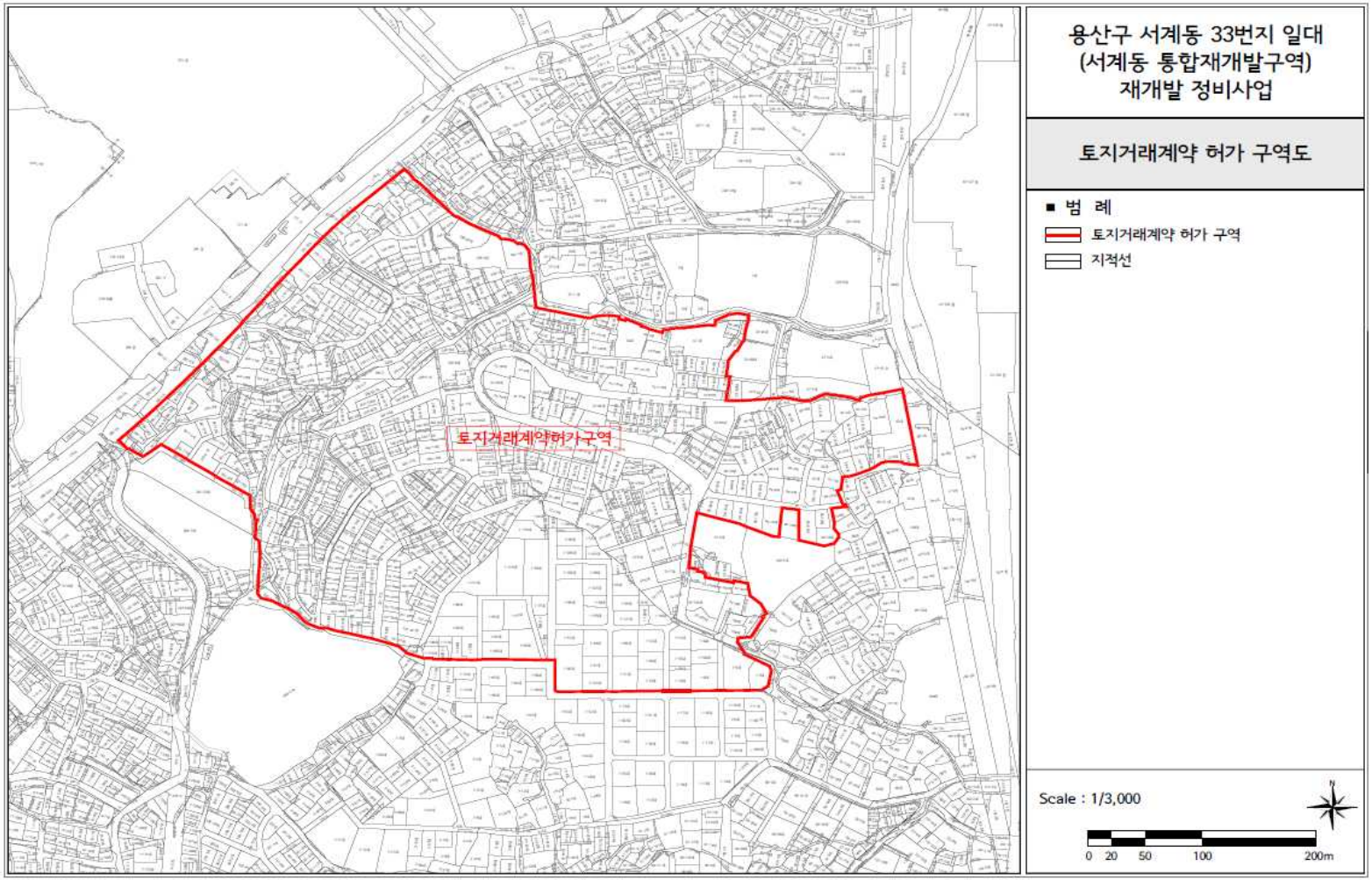

4. 성동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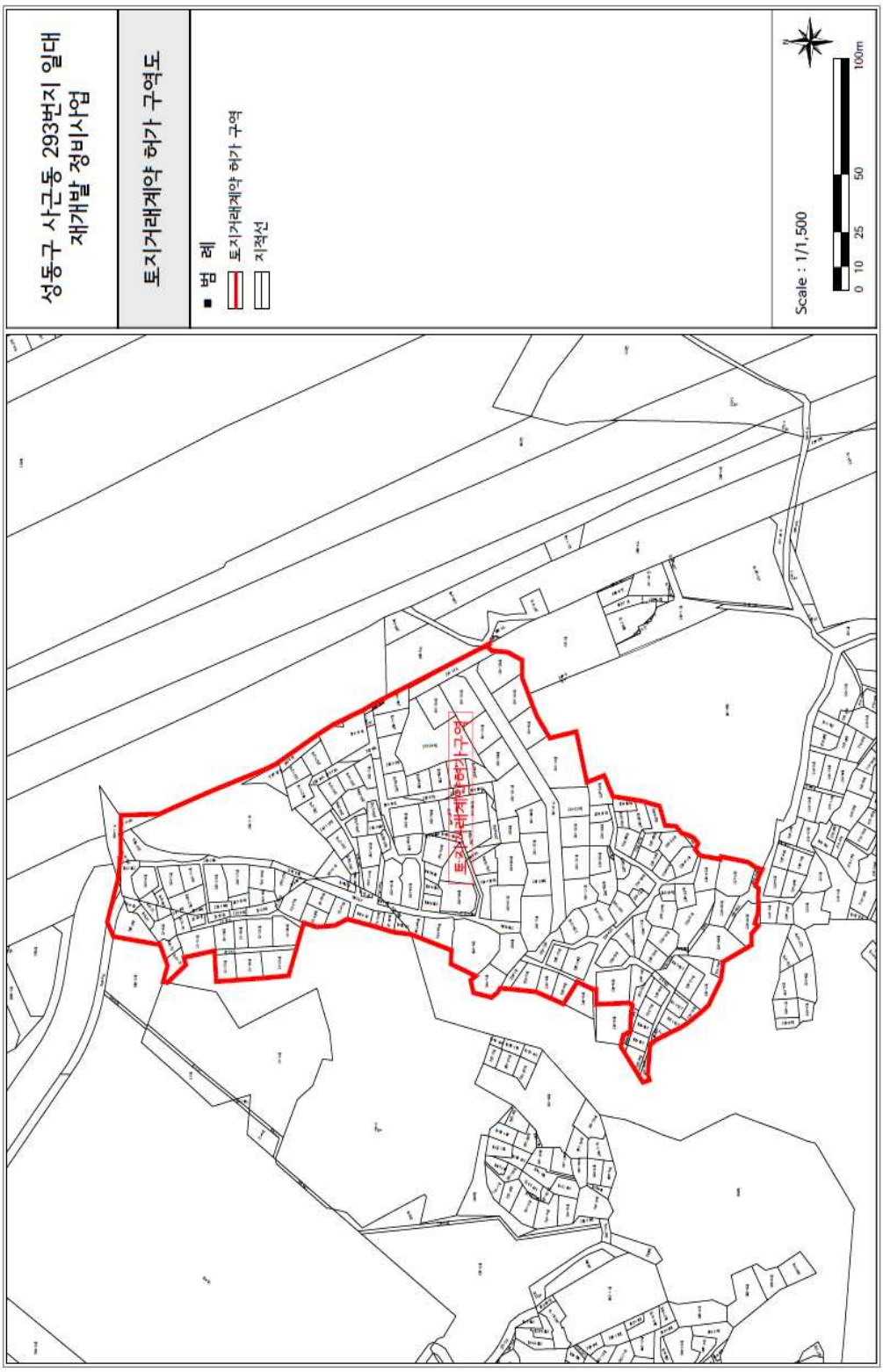

5. 성동구 사근동 212-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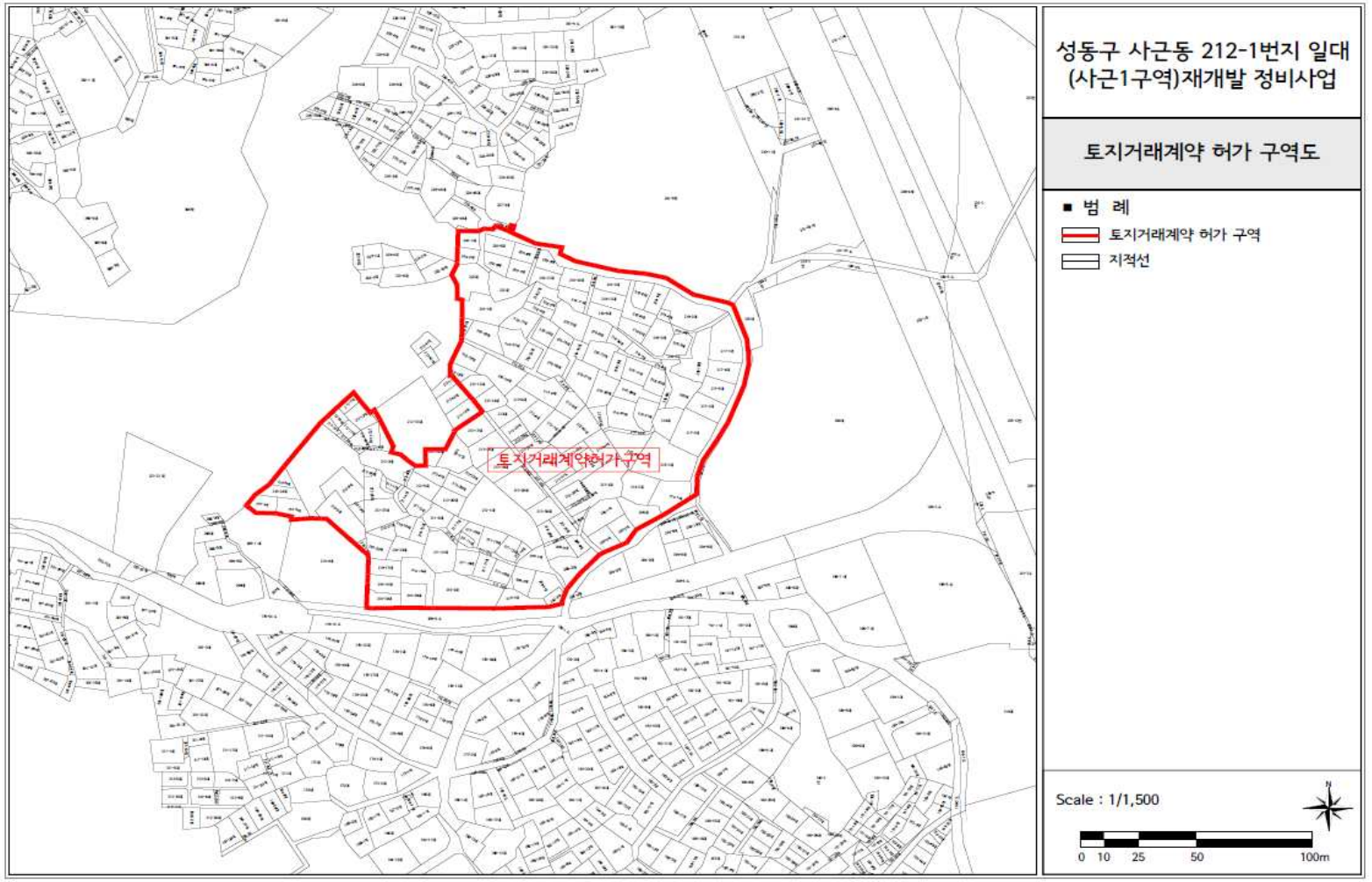

6. 광진구 자양동 57-90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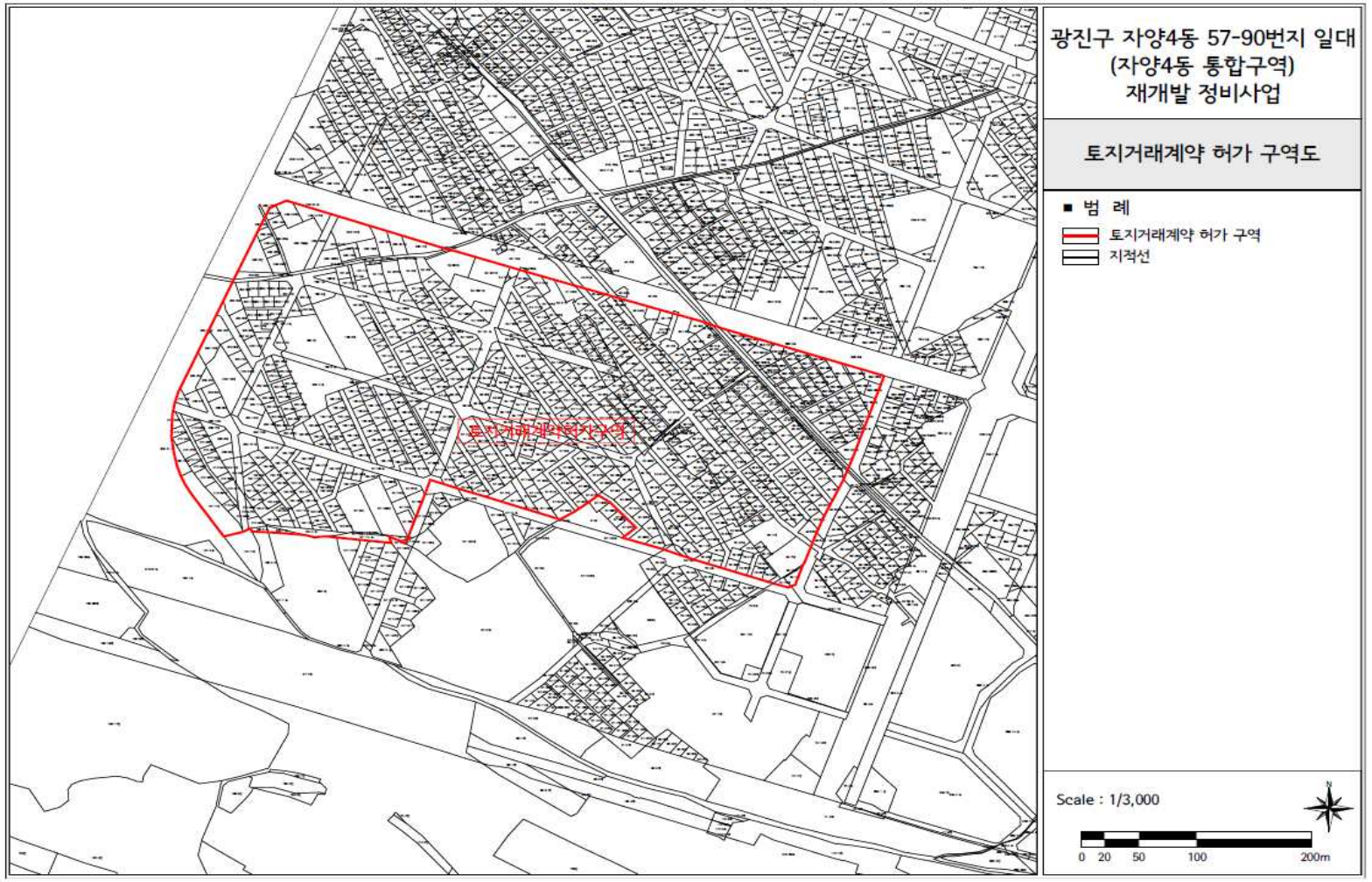

7.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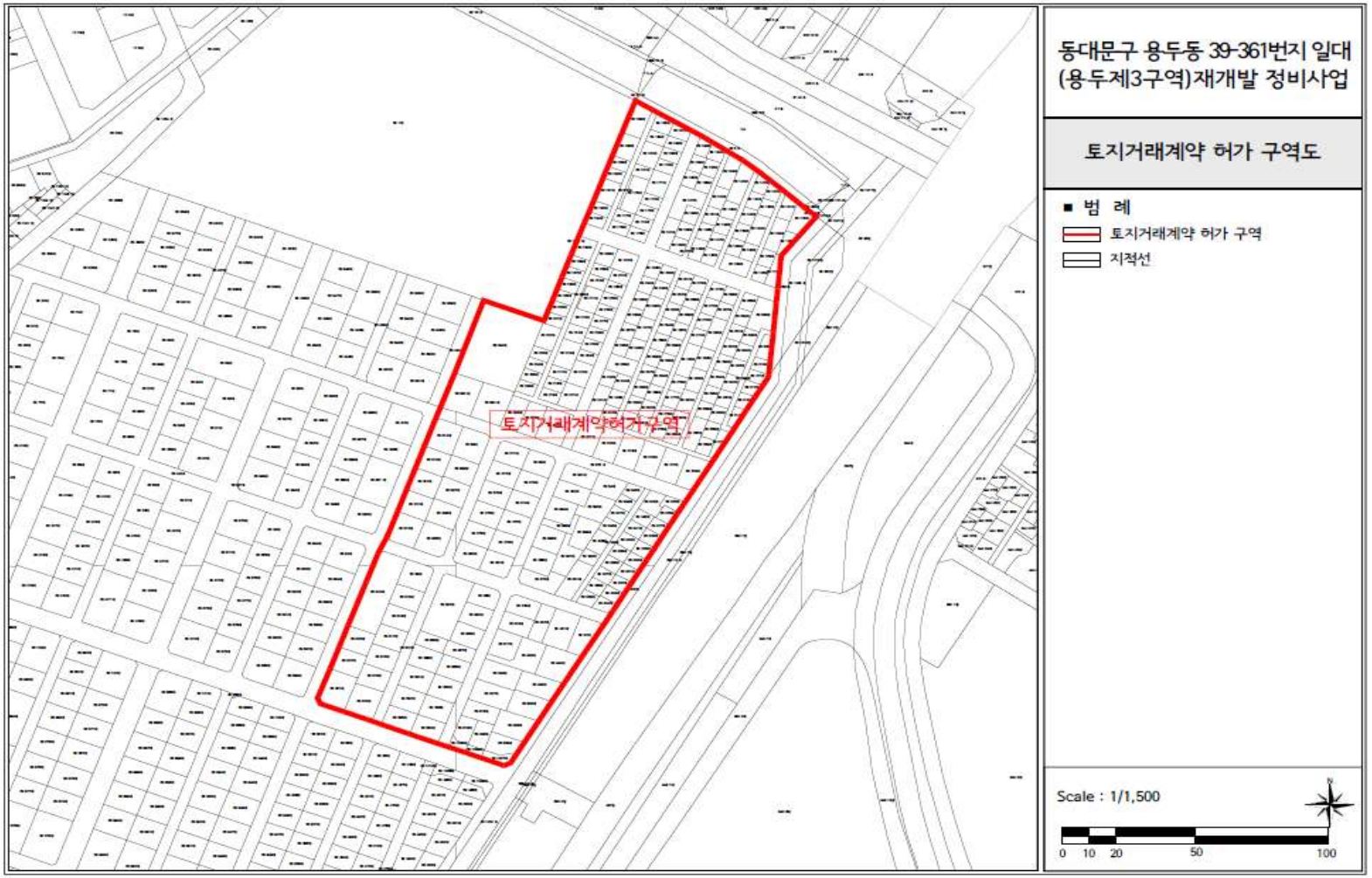

8.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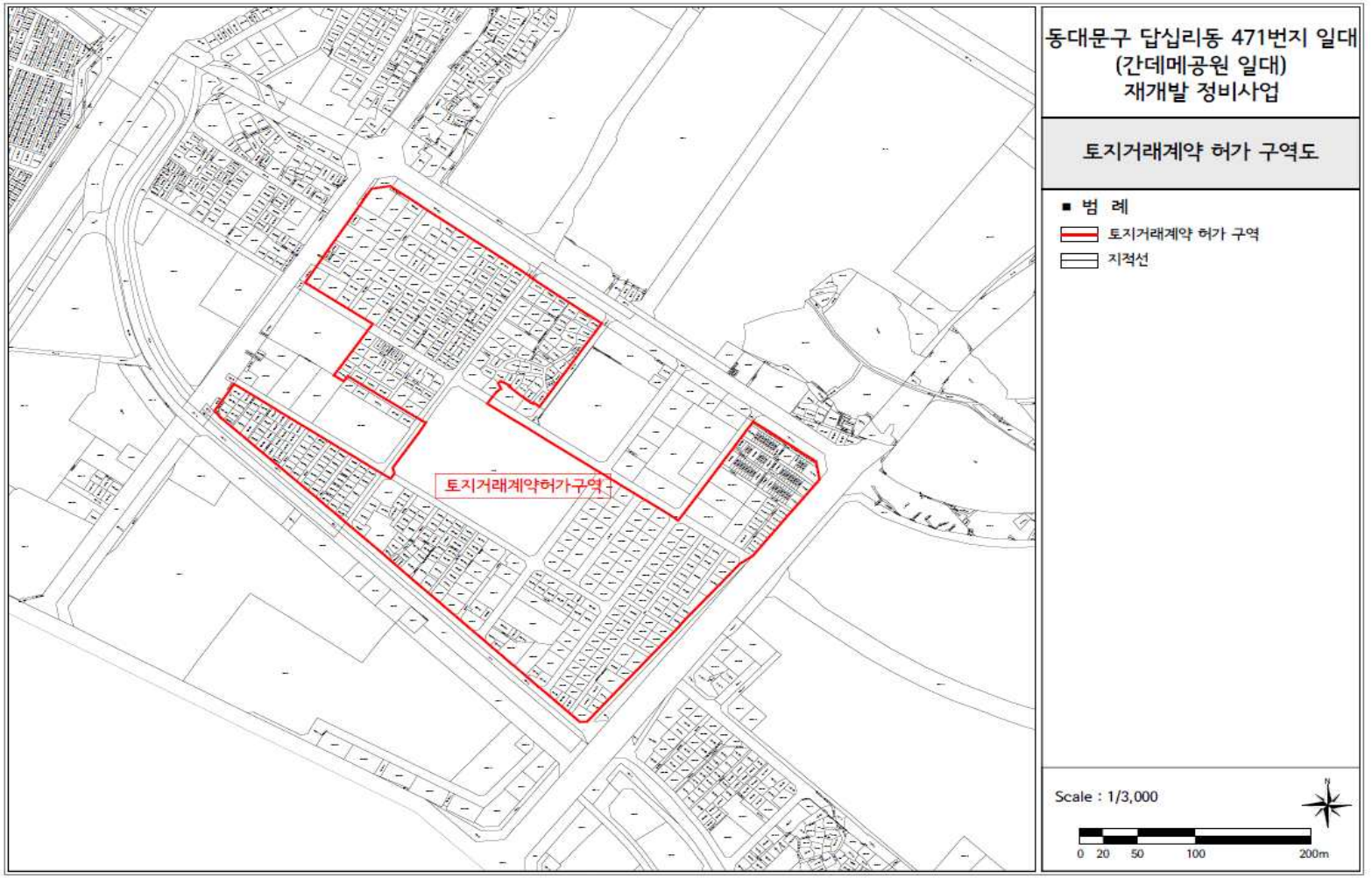

9. 중랑구 망우동 46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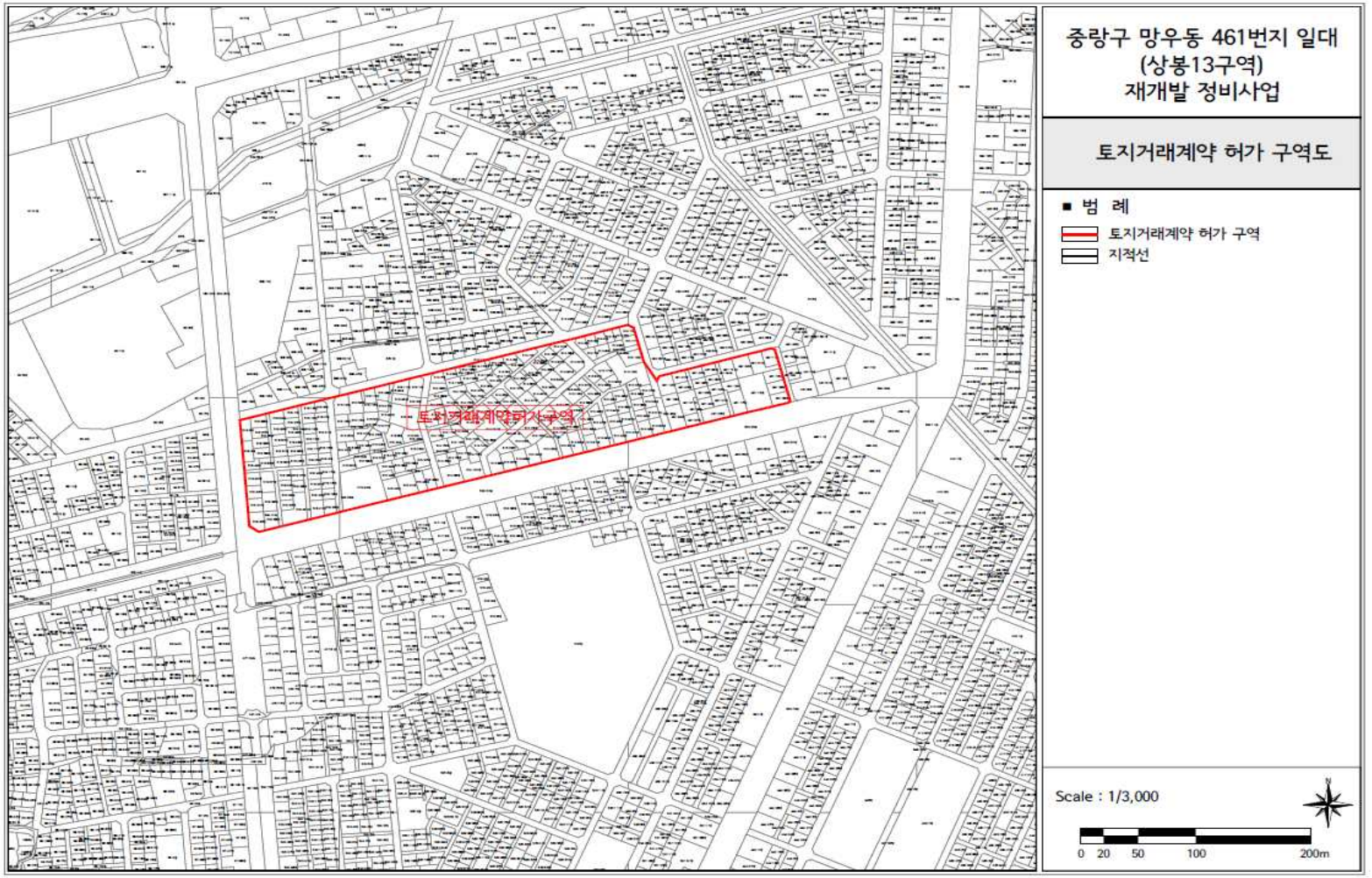

10. 성북구 종암동 3-10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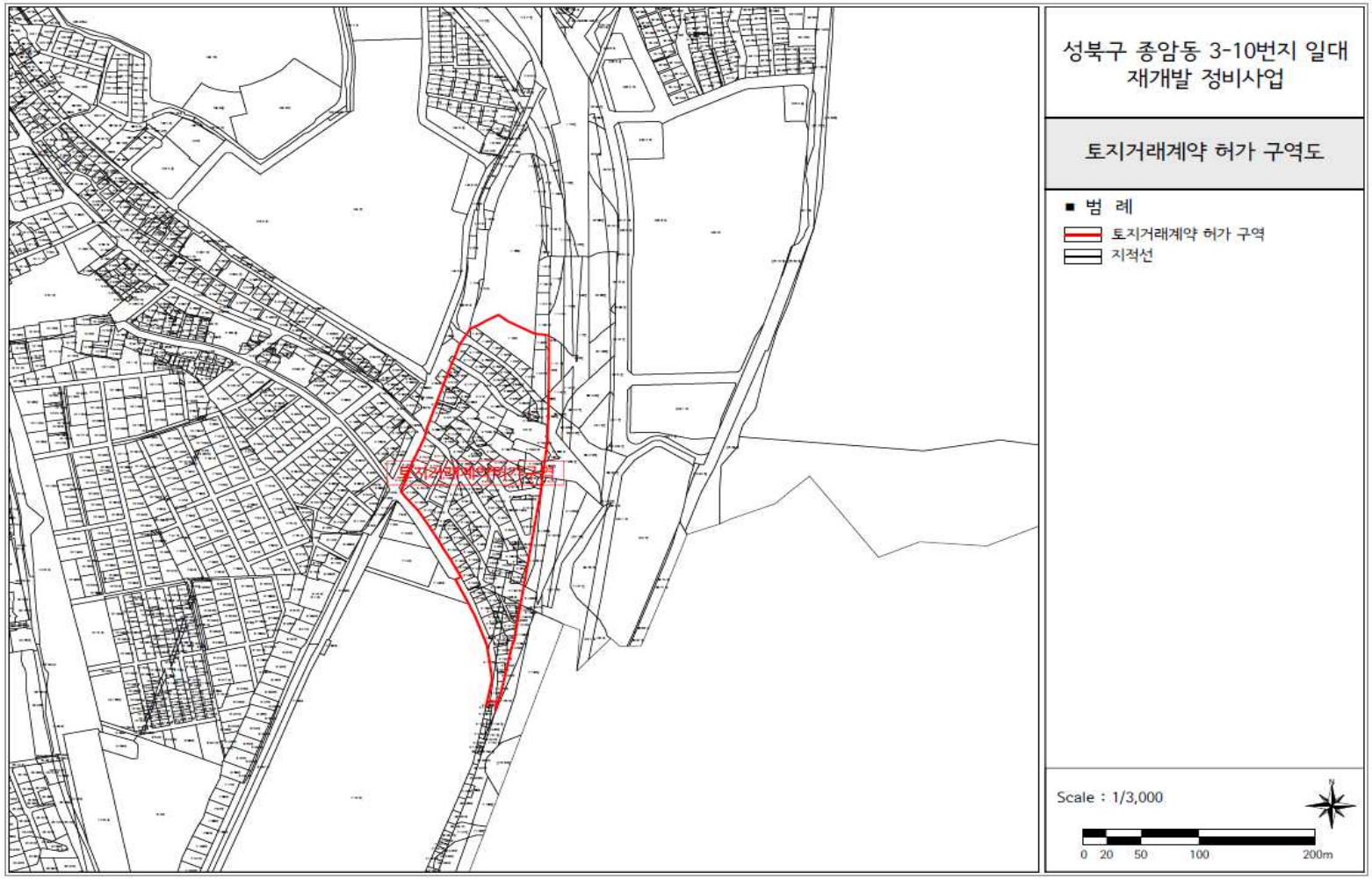

11. 성북구 석관동 62-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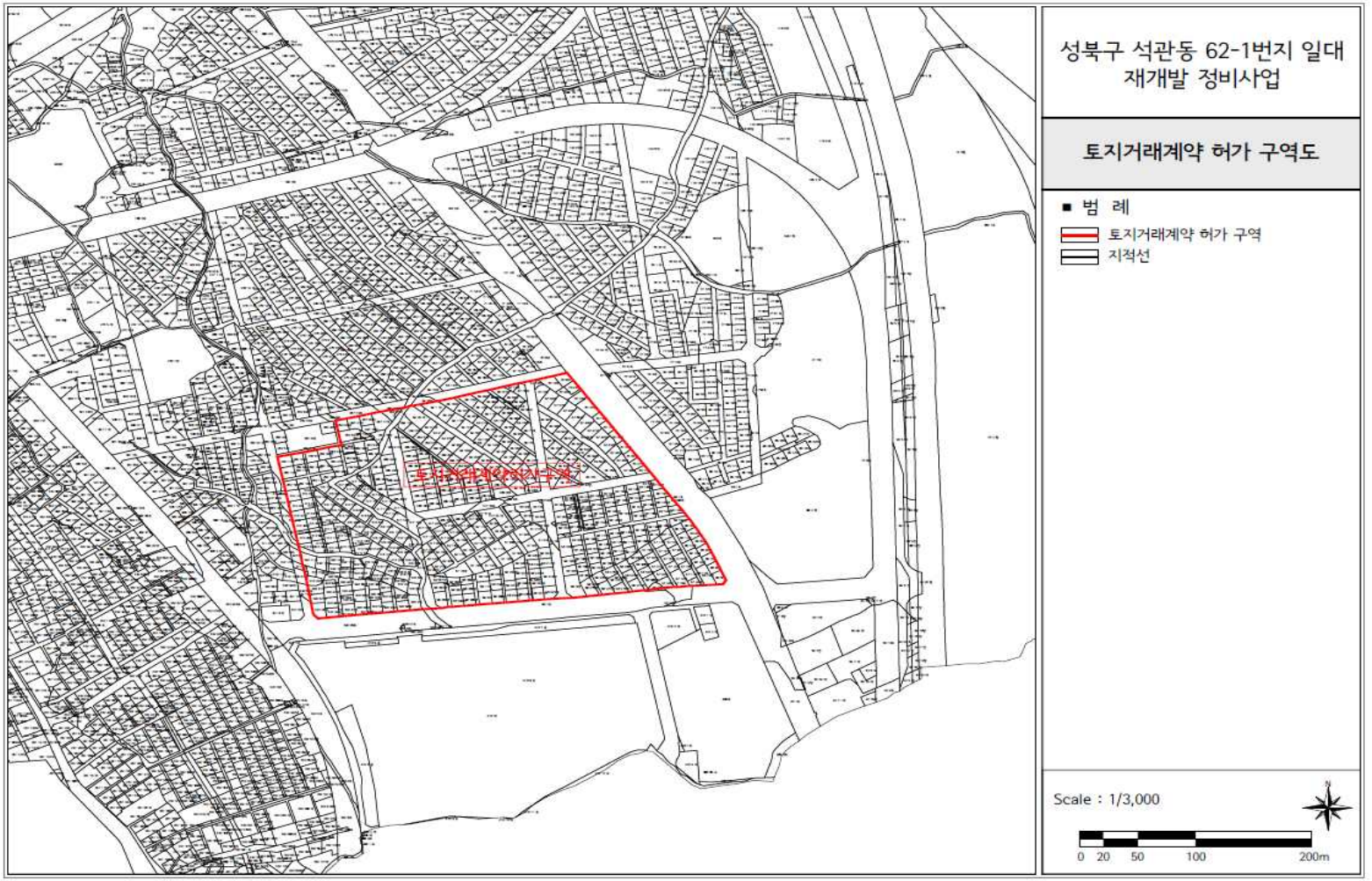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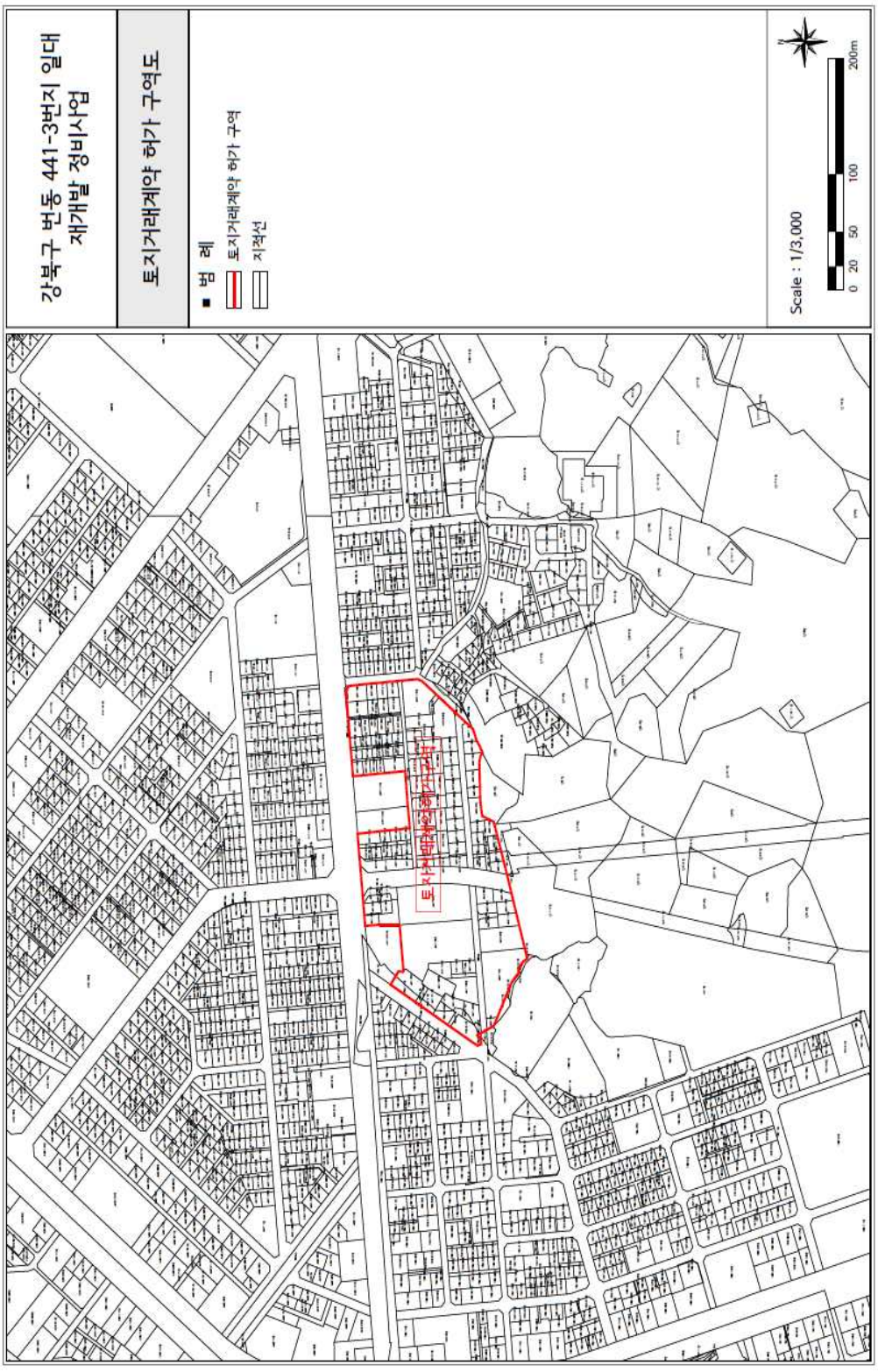


12.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일대

13. 강북구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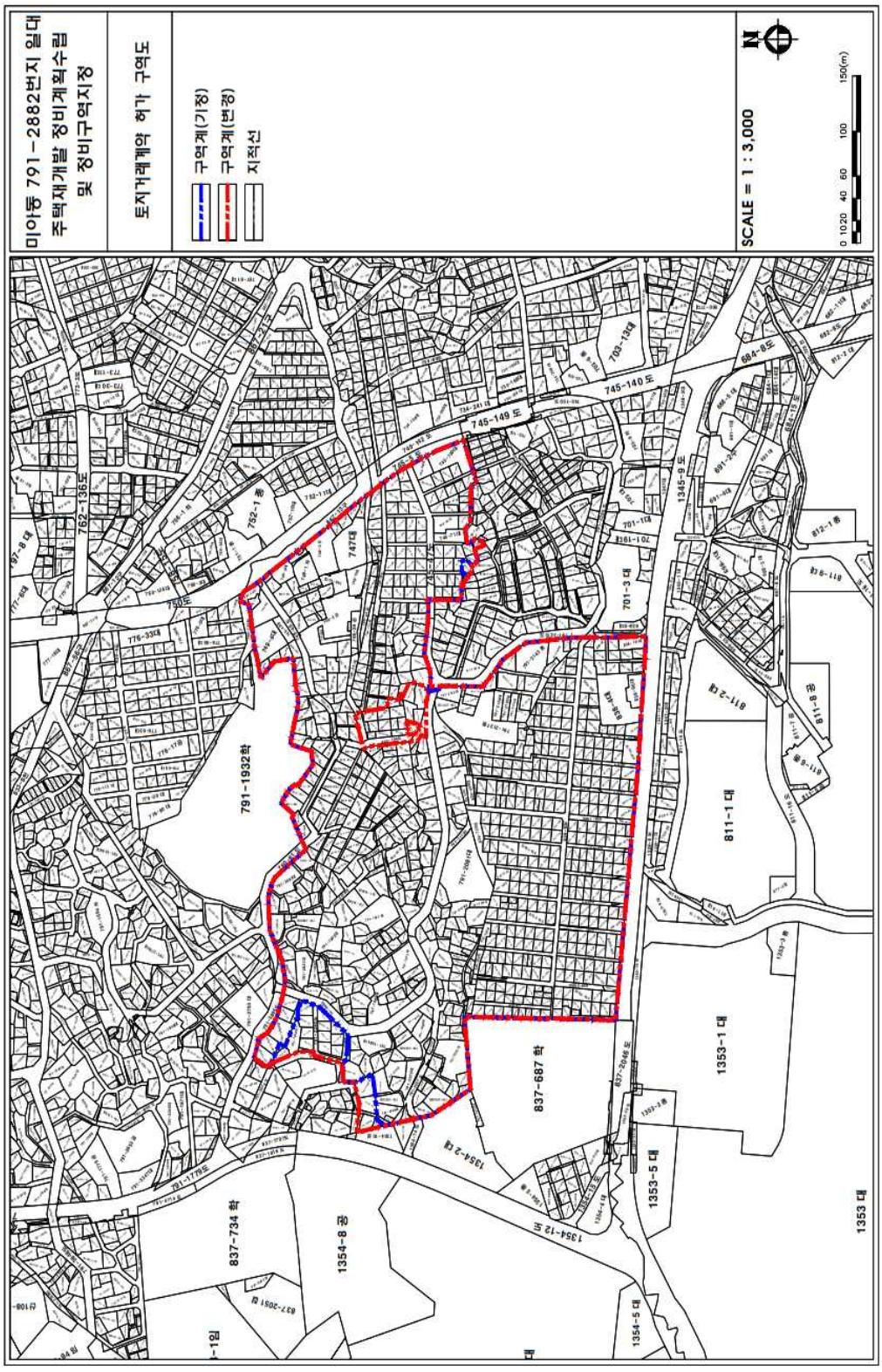

14. 도봉구 방학동 685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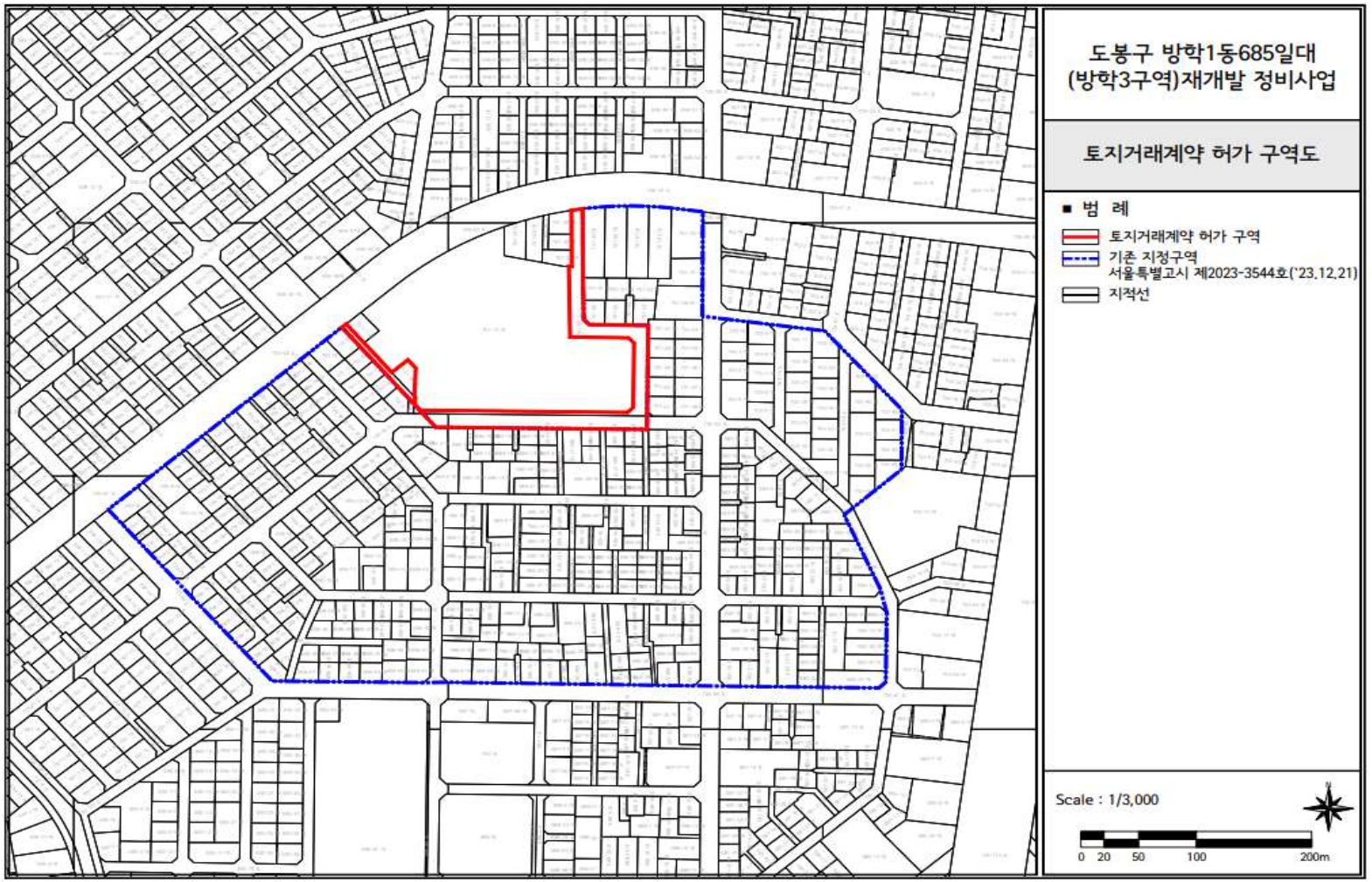

15. 서대문구 홍제동 267-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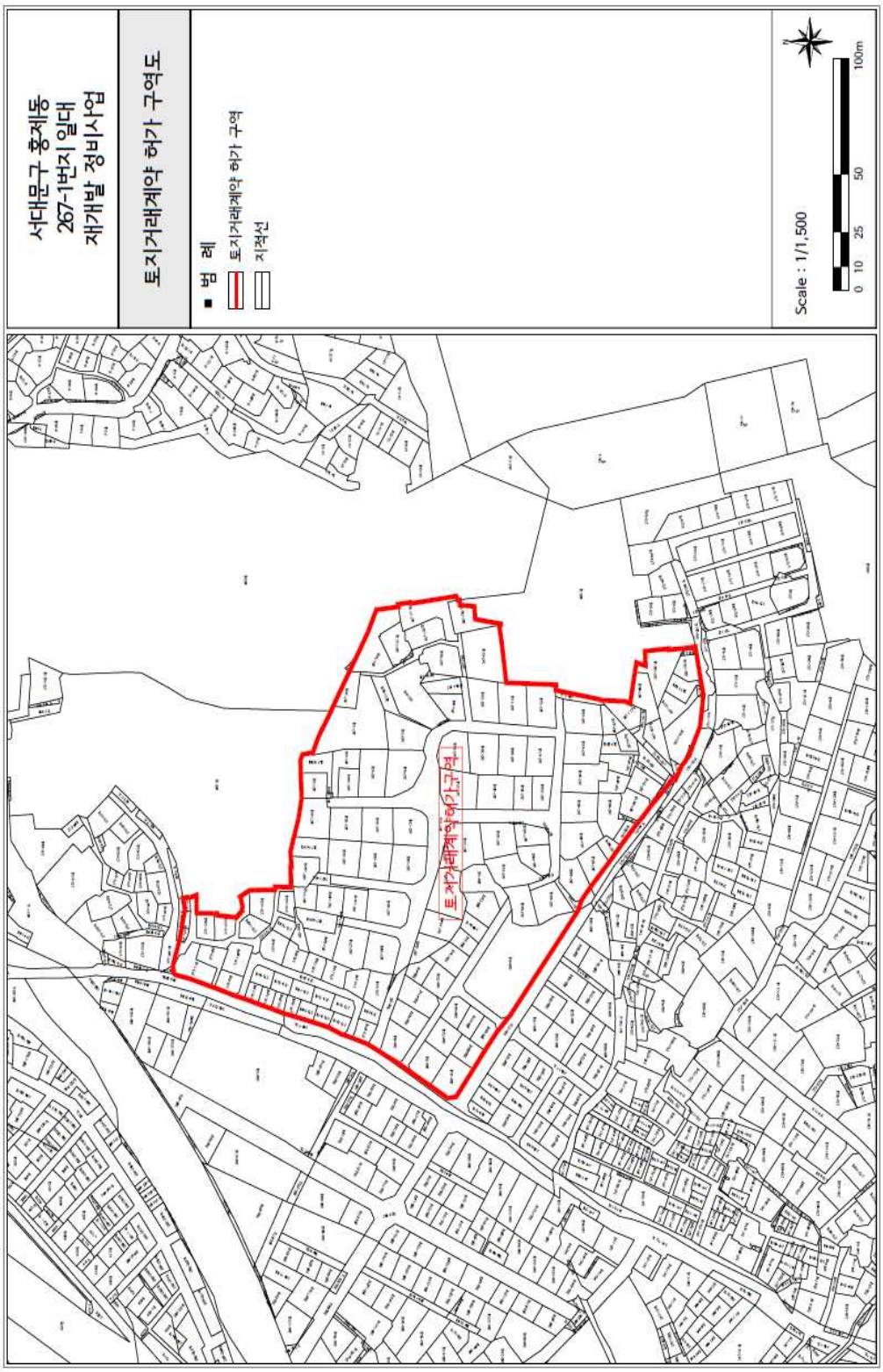

16. 마포구 망원동 416-67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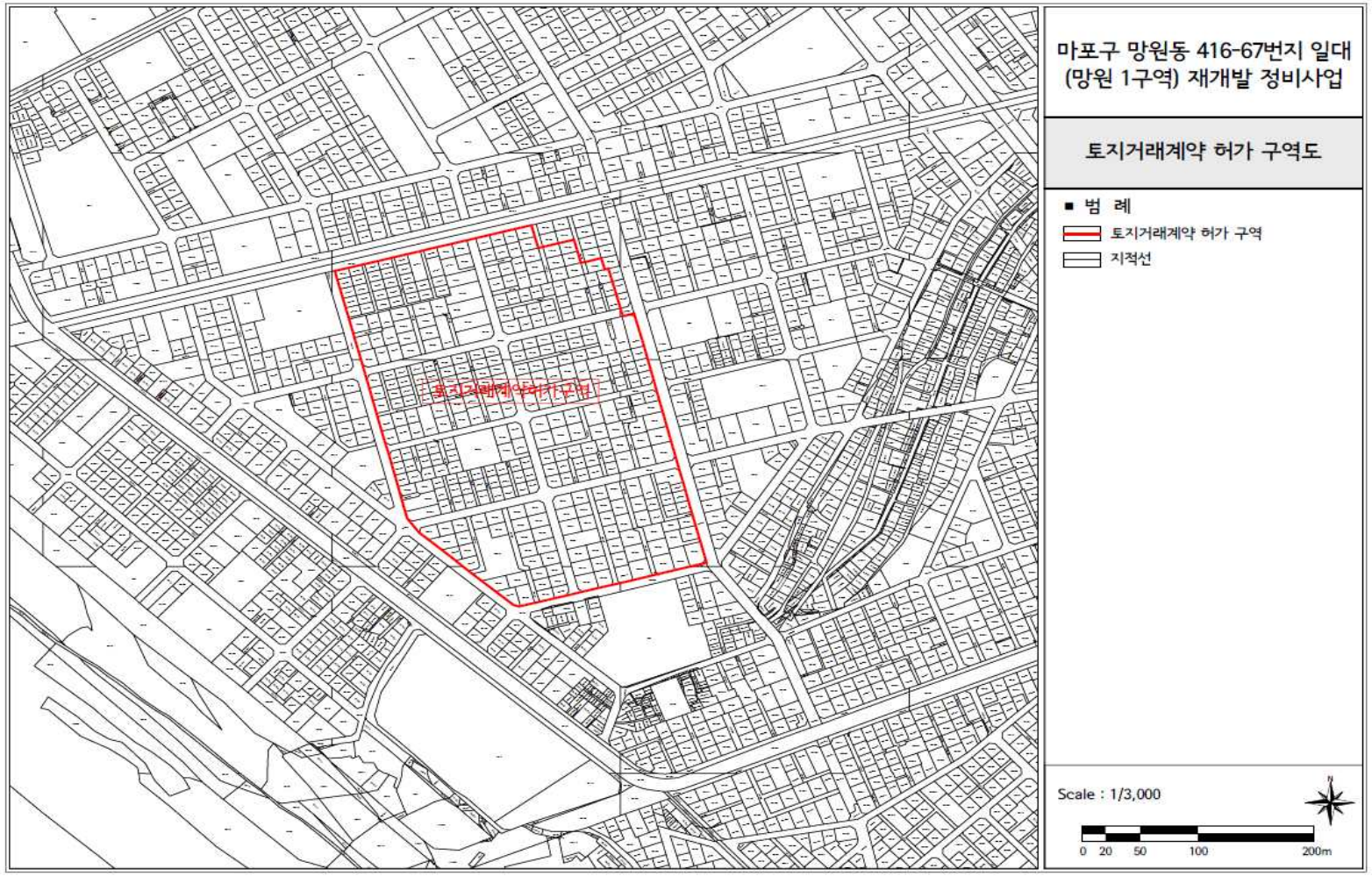

17. 양천구 목동 232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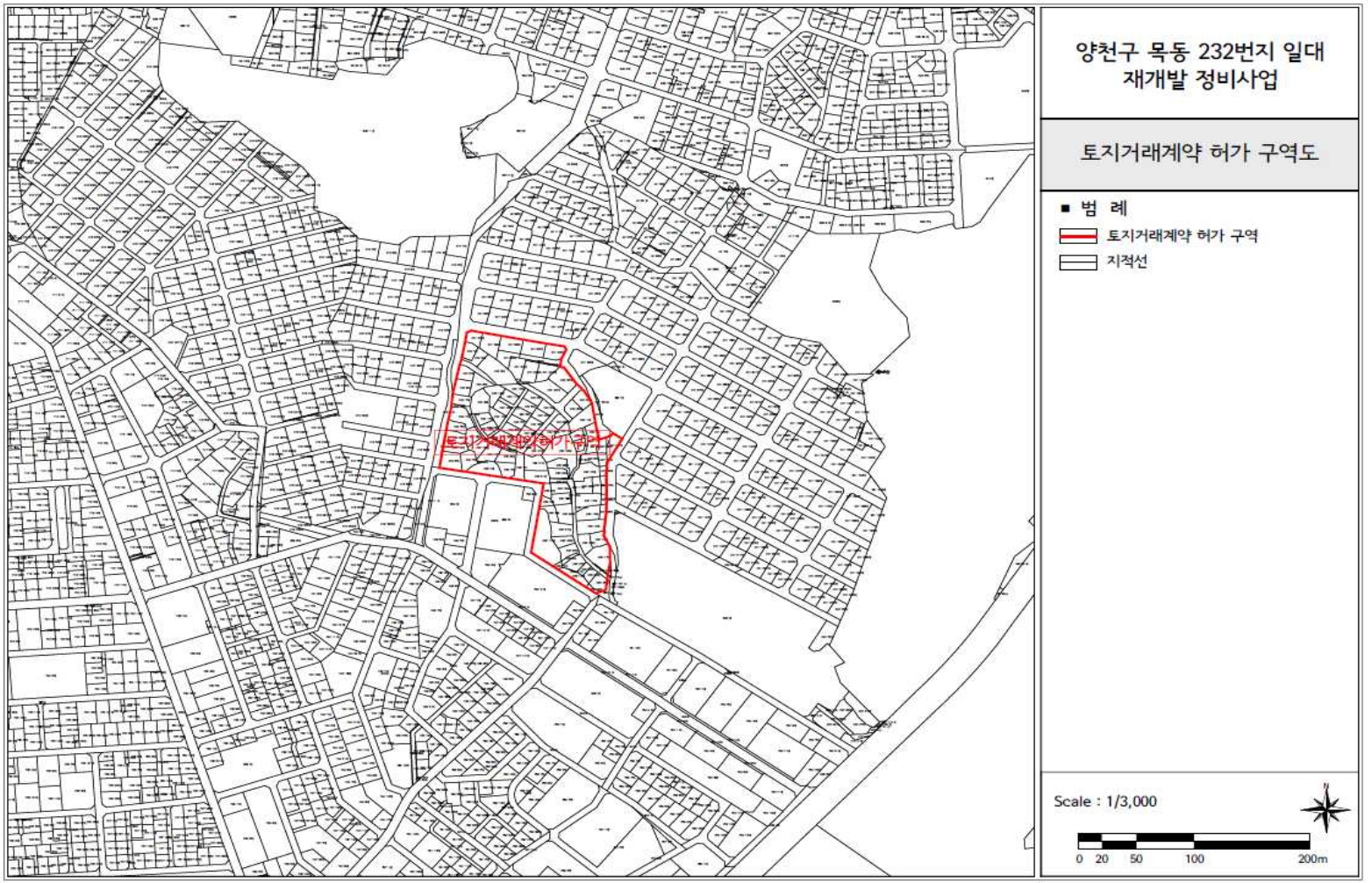

18.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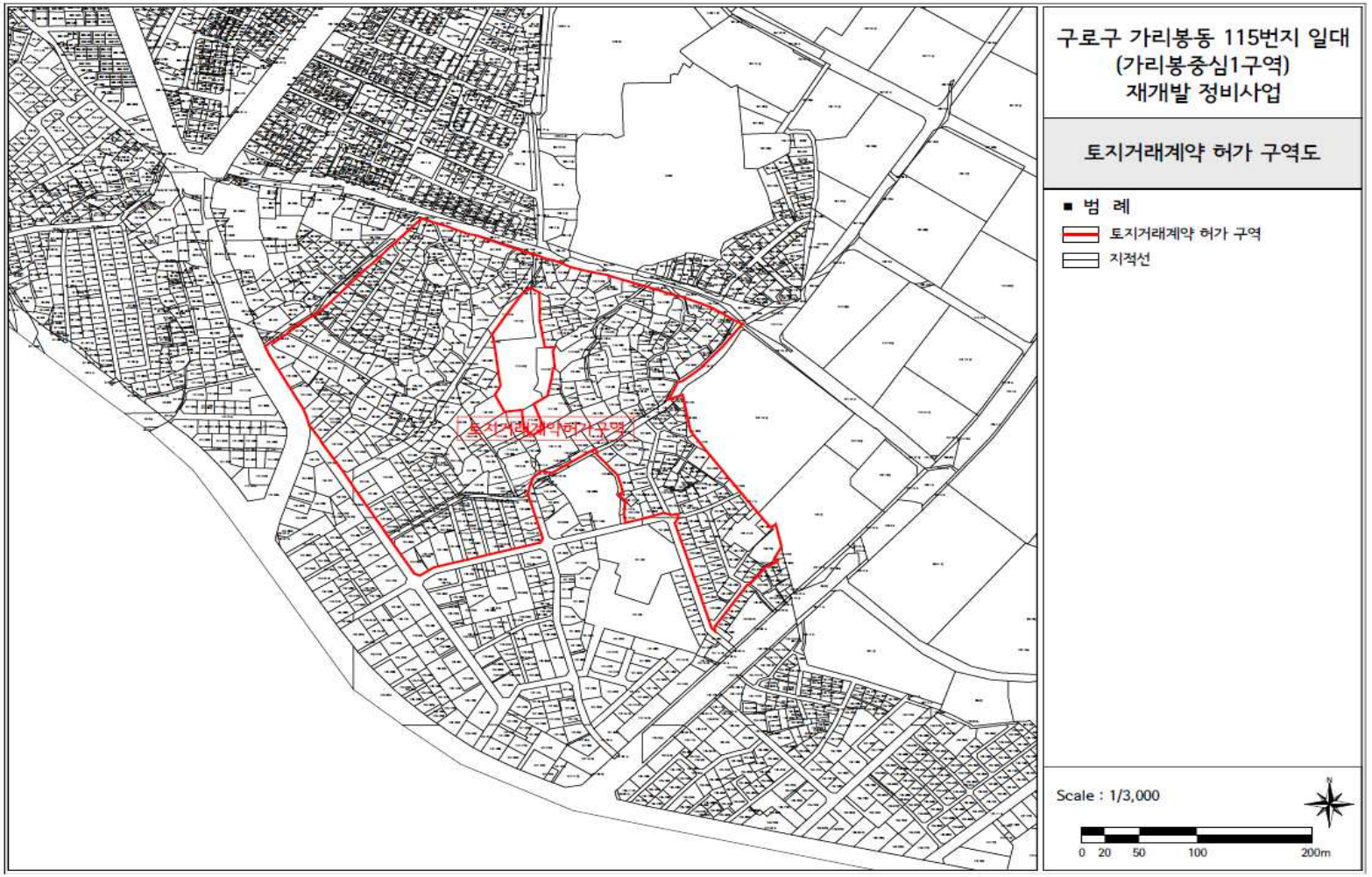

19.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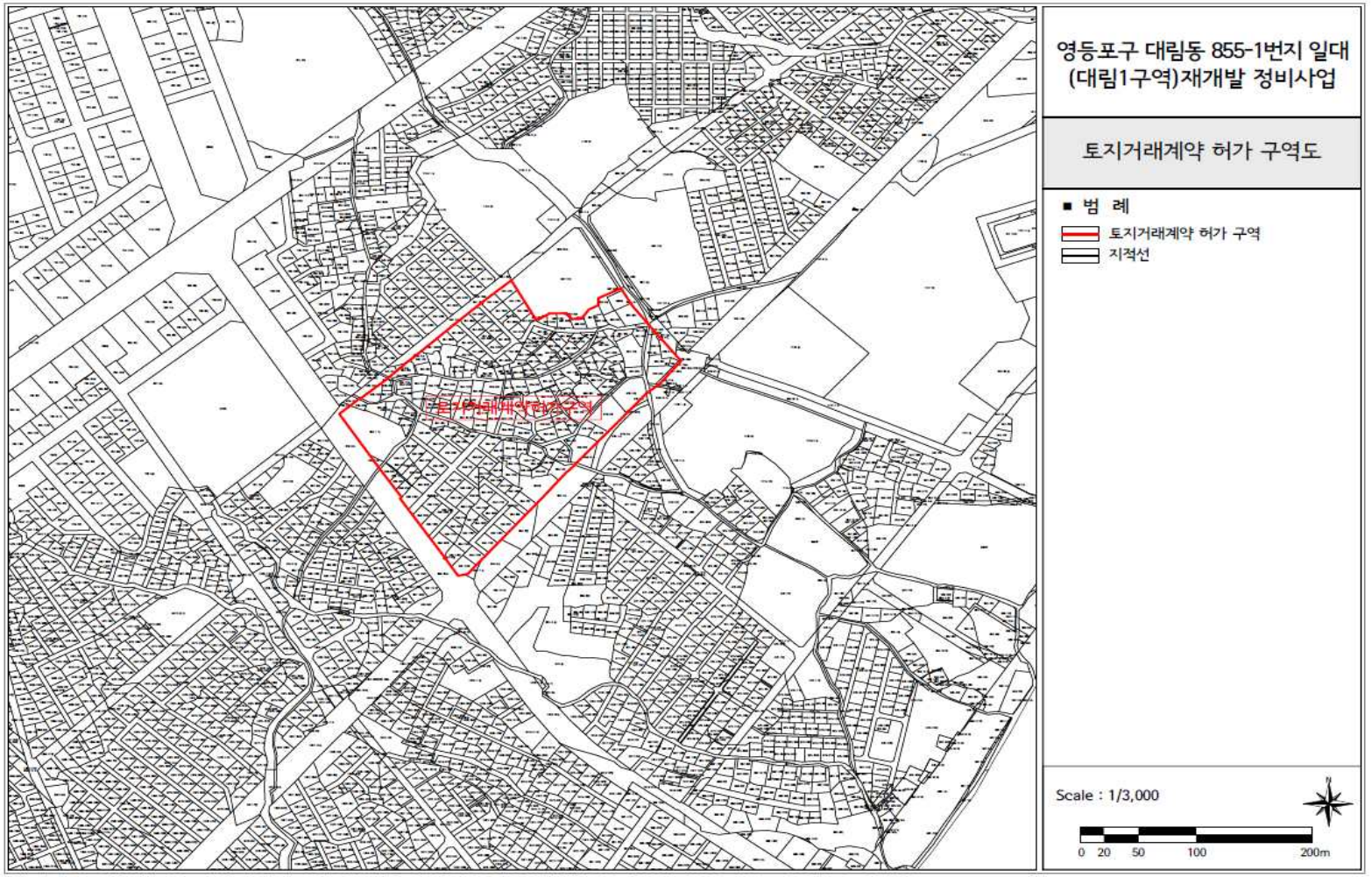

20. 동작구 사당동 288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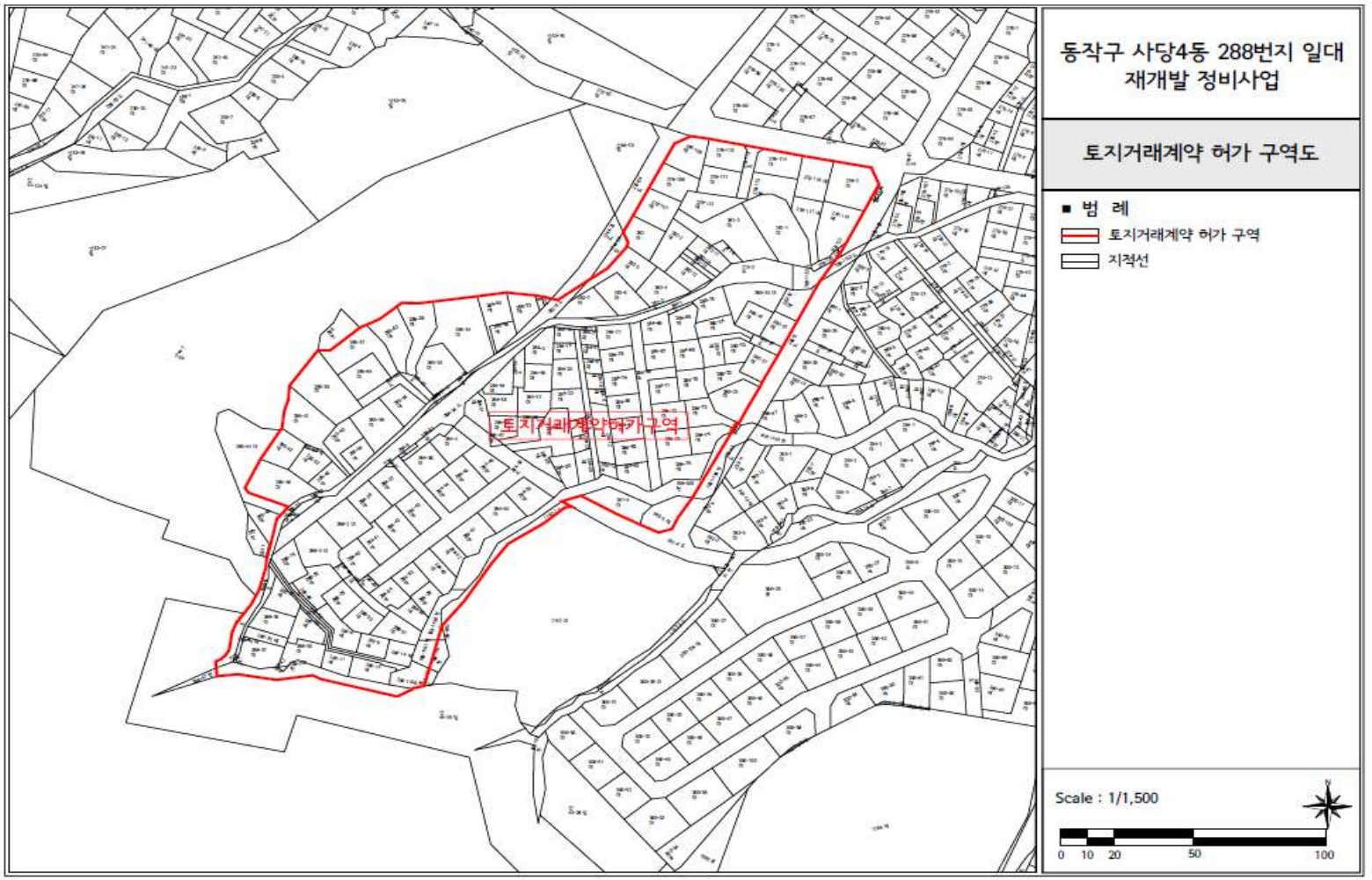

21.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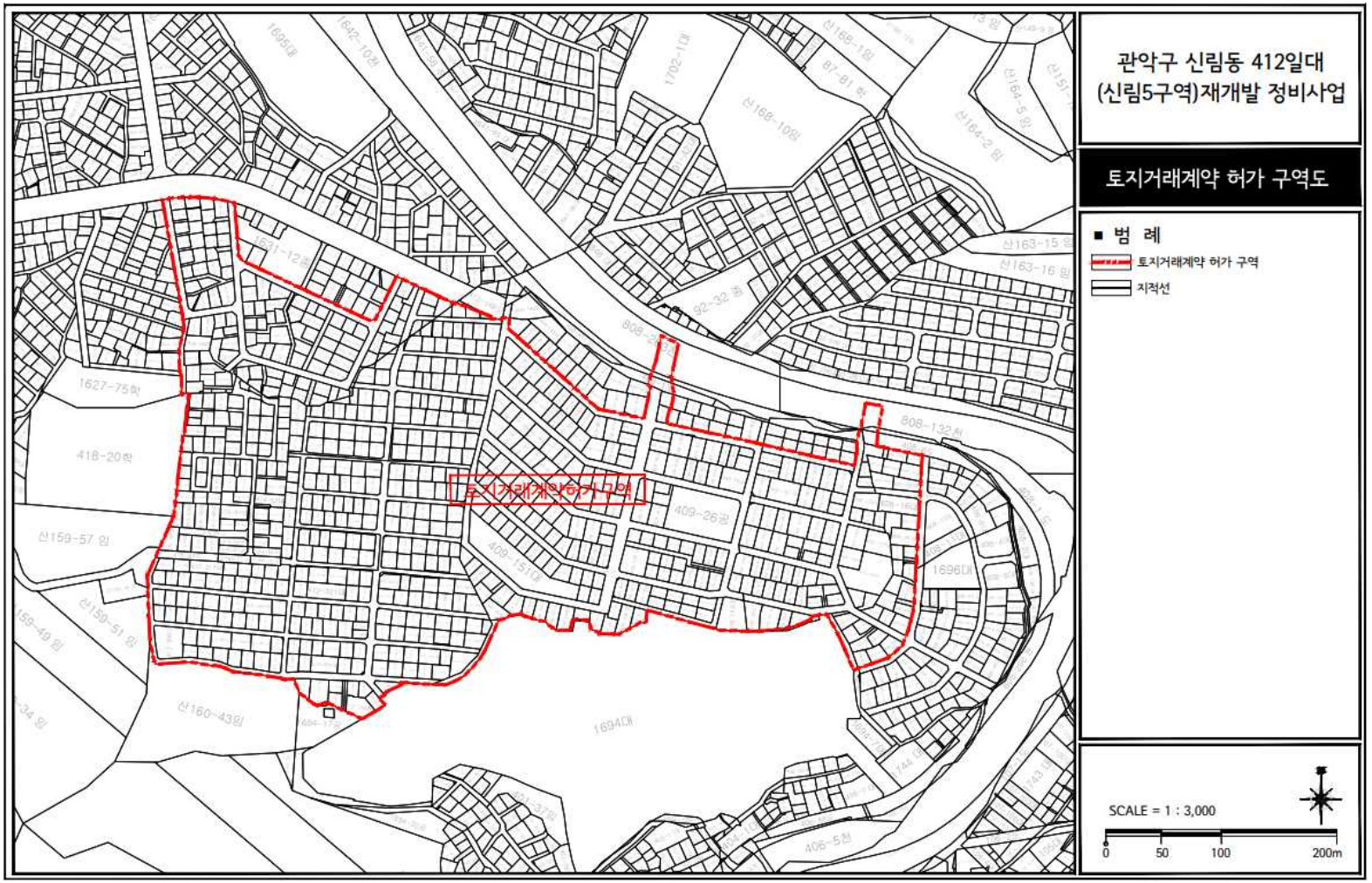

22. 송파구 마천동 183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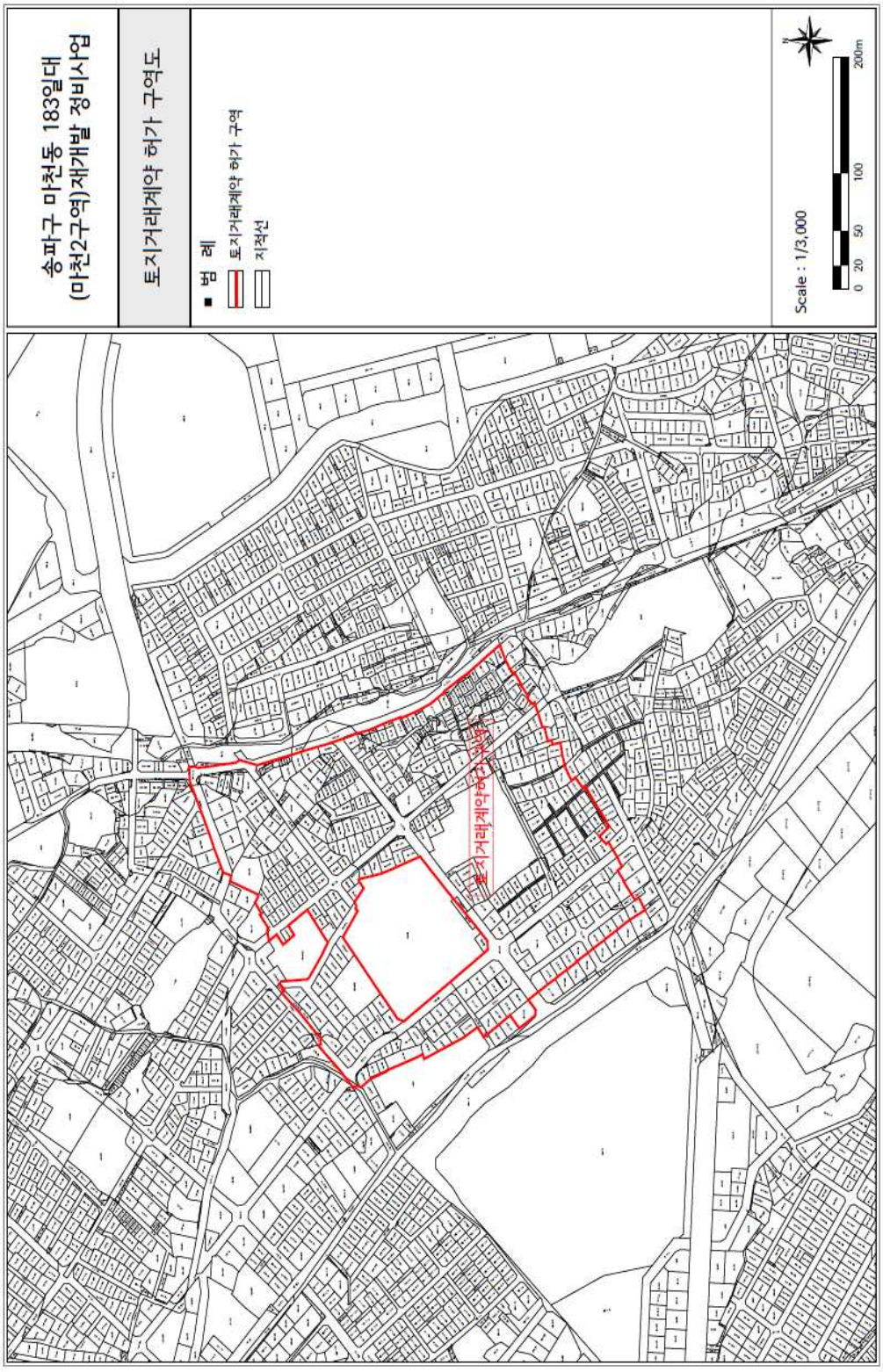

23~25. 강남구 개포동 649, 652, 65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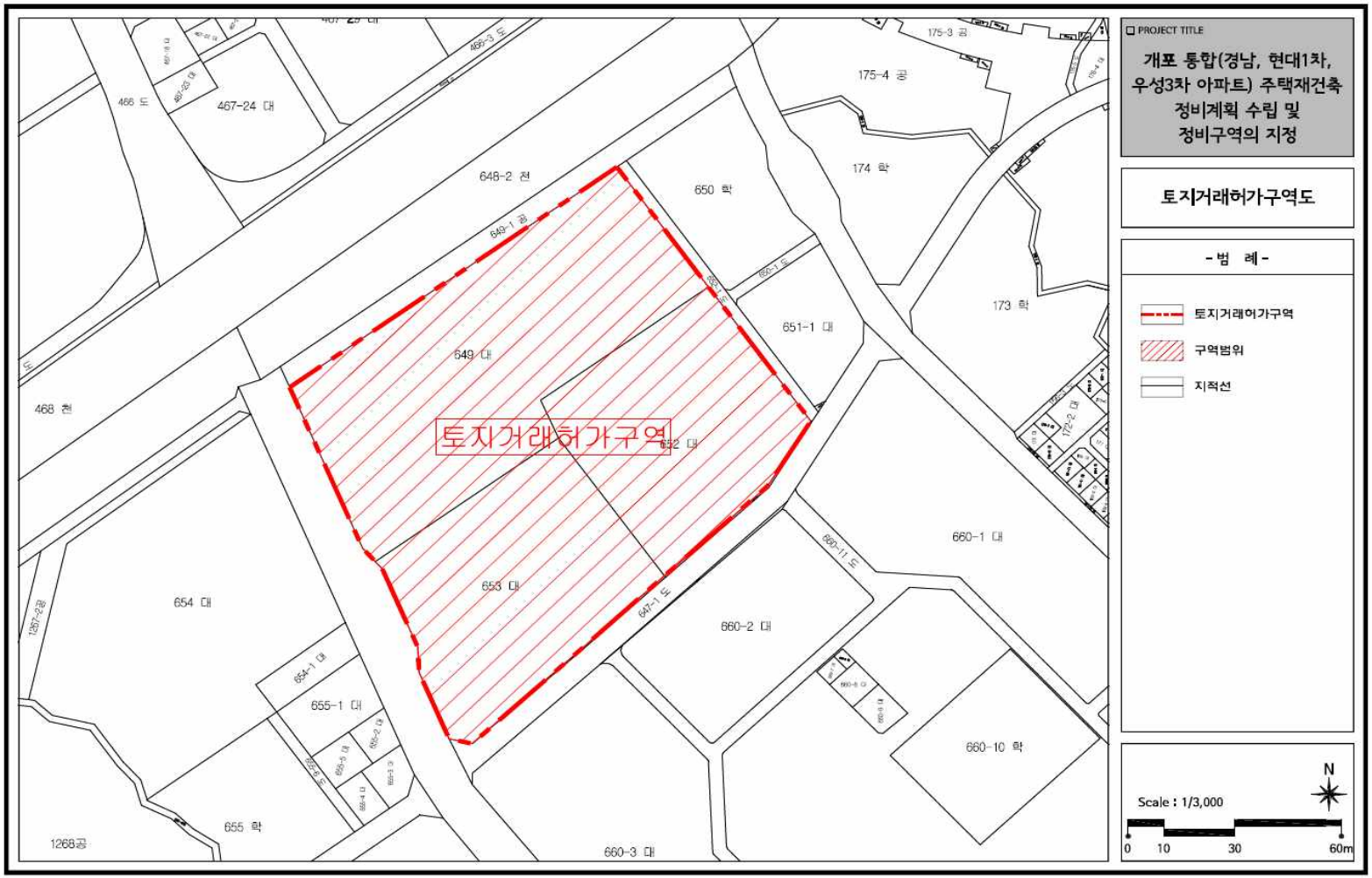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 재건축) 예정지 9개소

1. 강북구 미아동 8-373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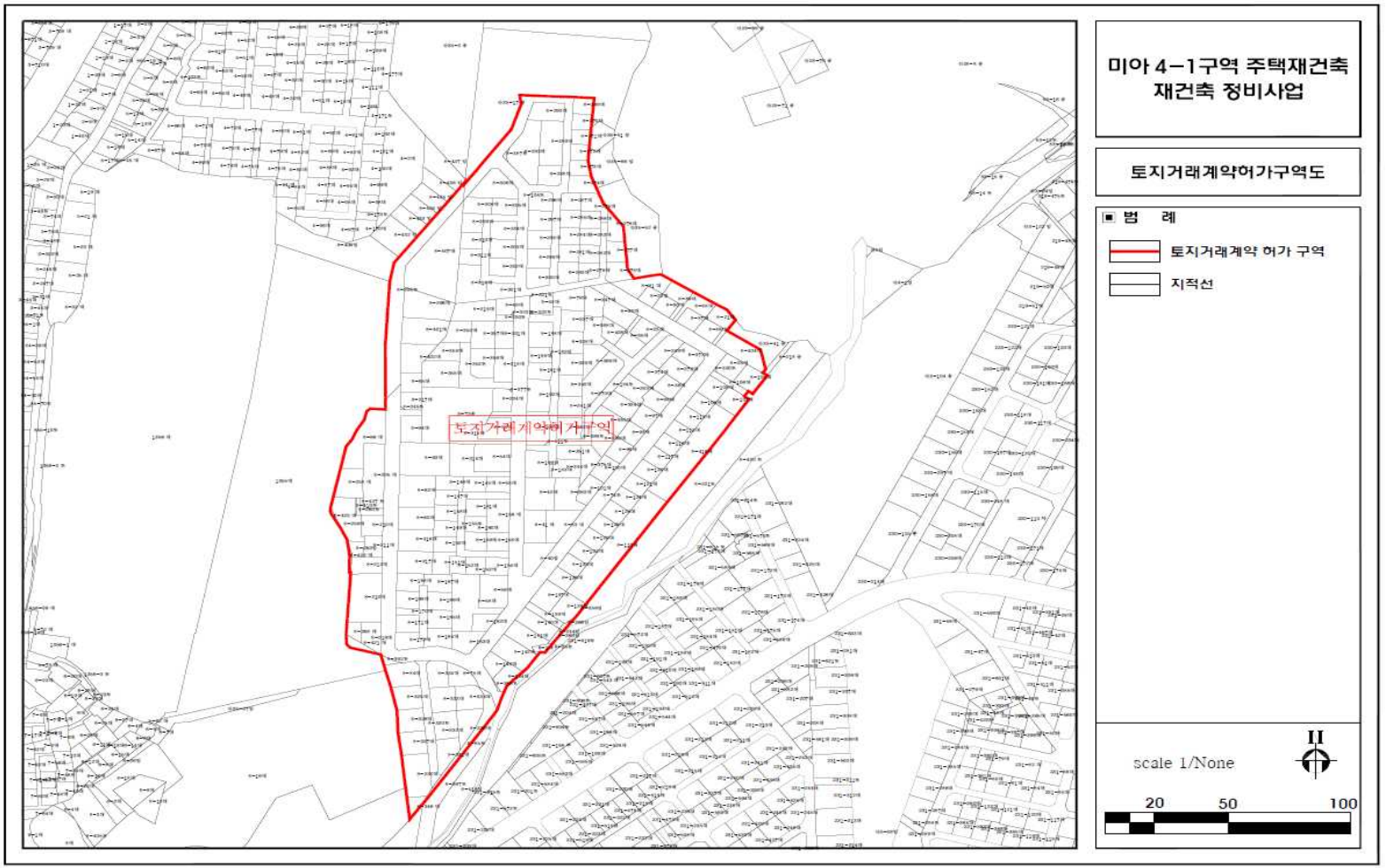

2. 구로구 궁동 213-27 외 2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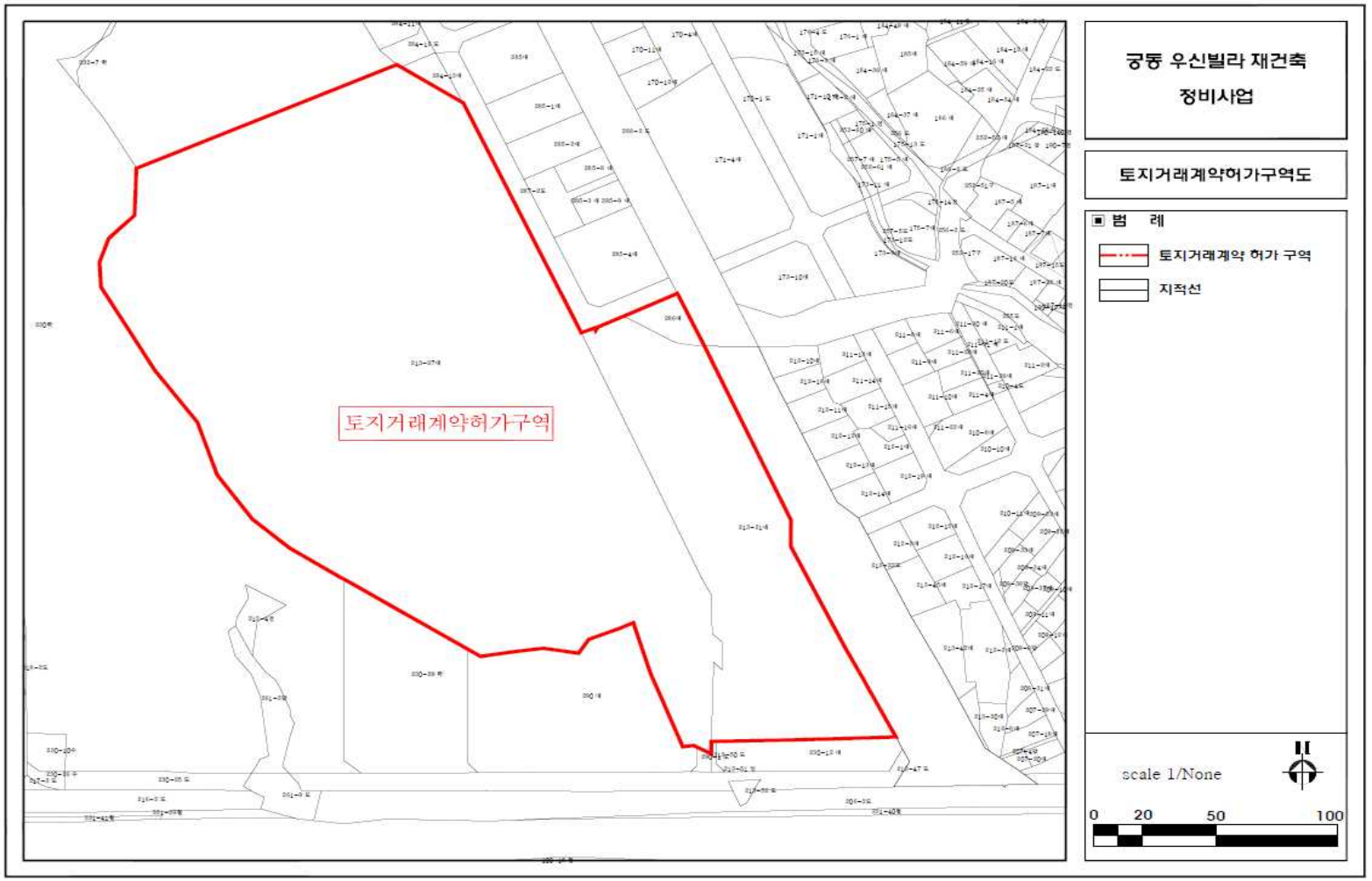

3. 강동구 명일동 56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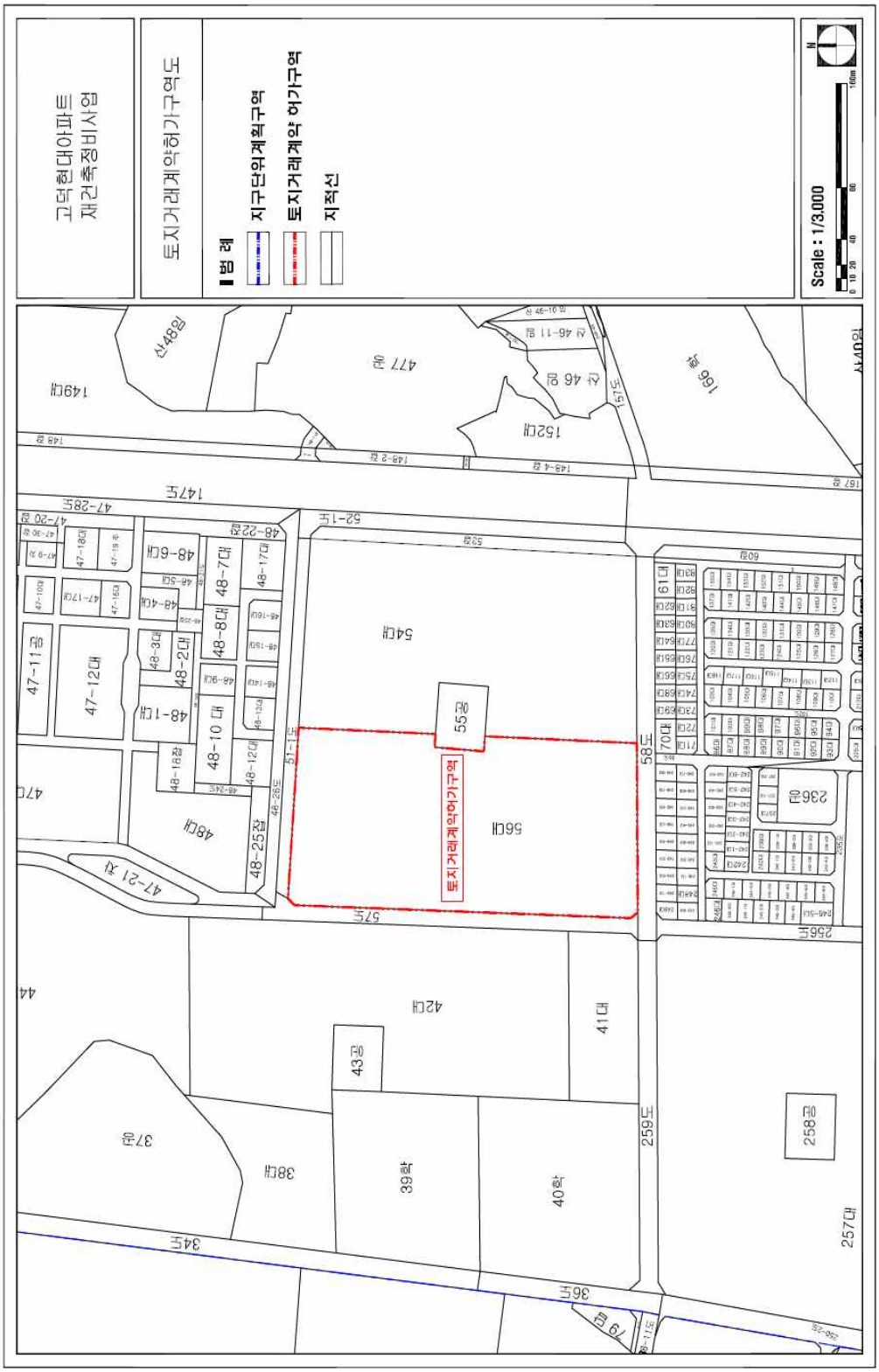

4. 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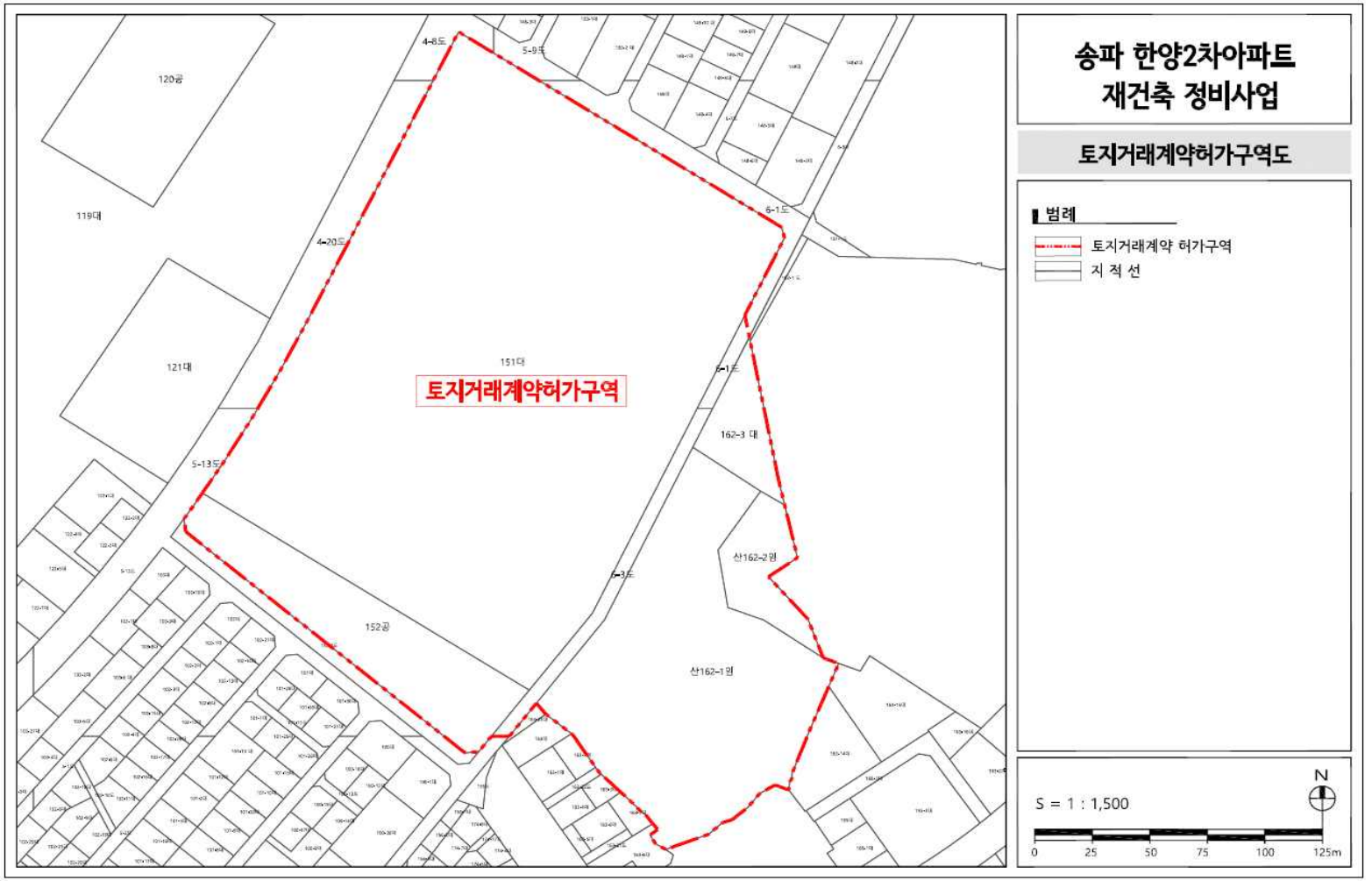

5. 송파구 신천동 7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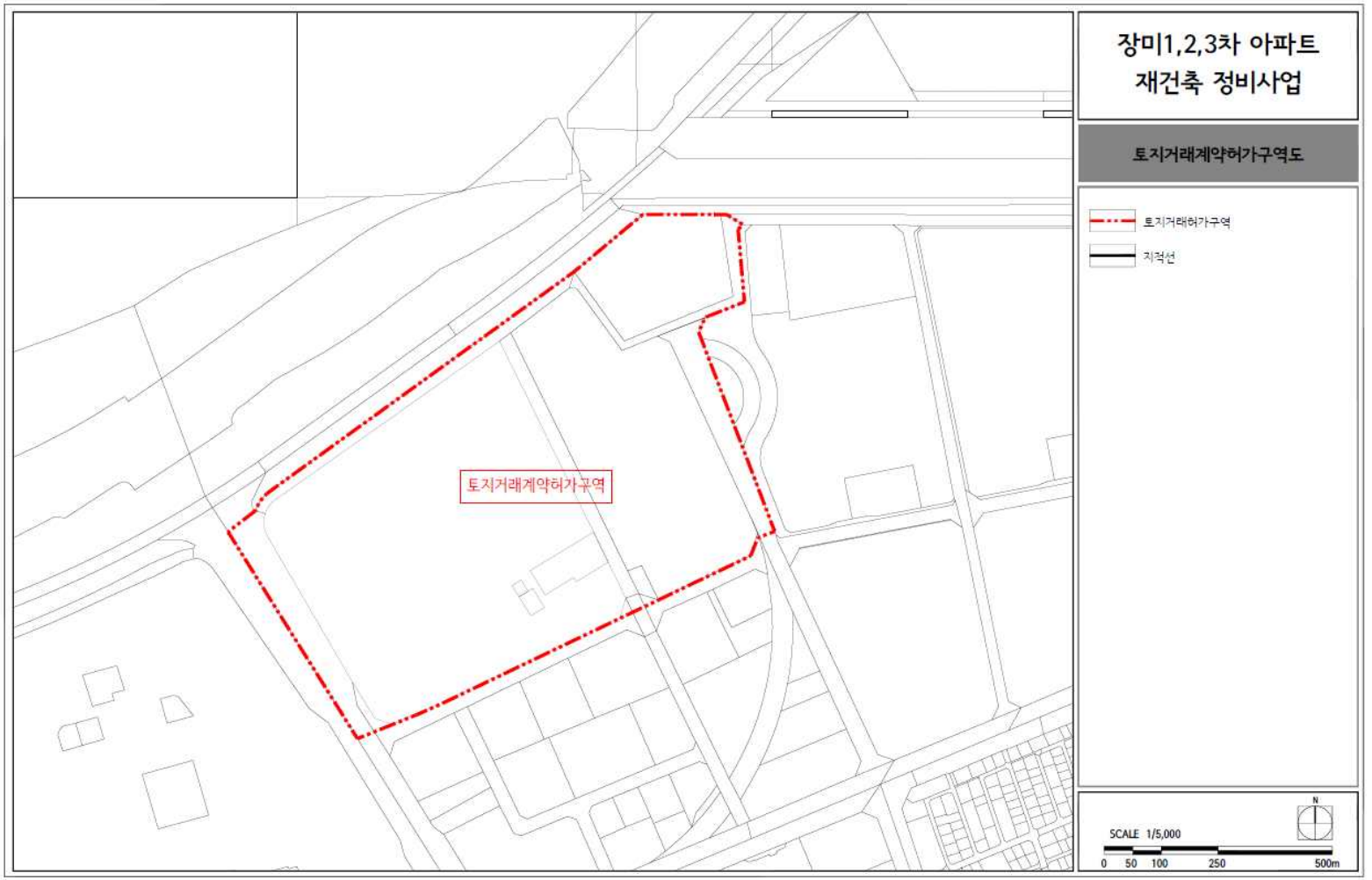

6.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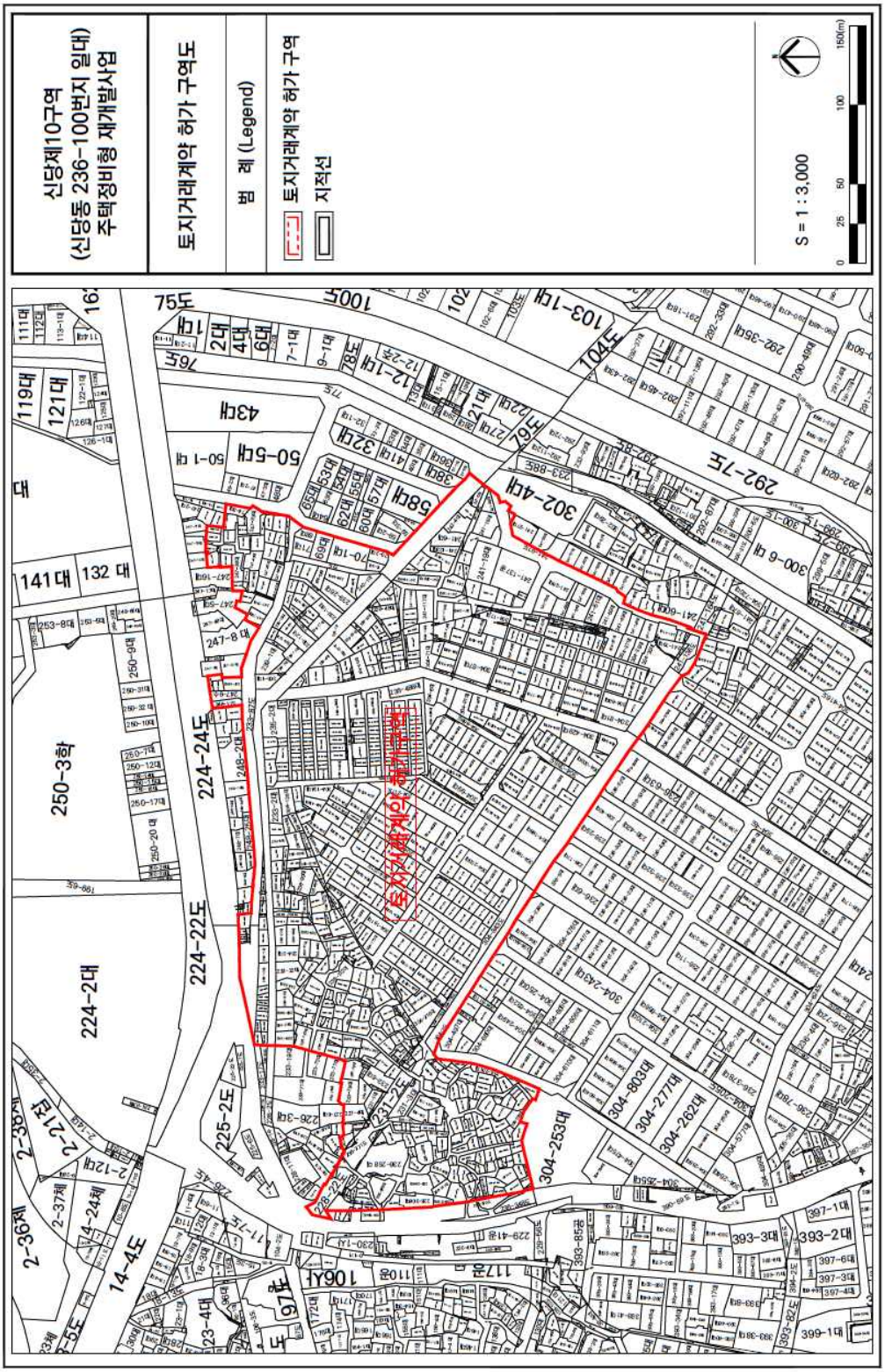


7. 중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8. 중랑구 면목동 172-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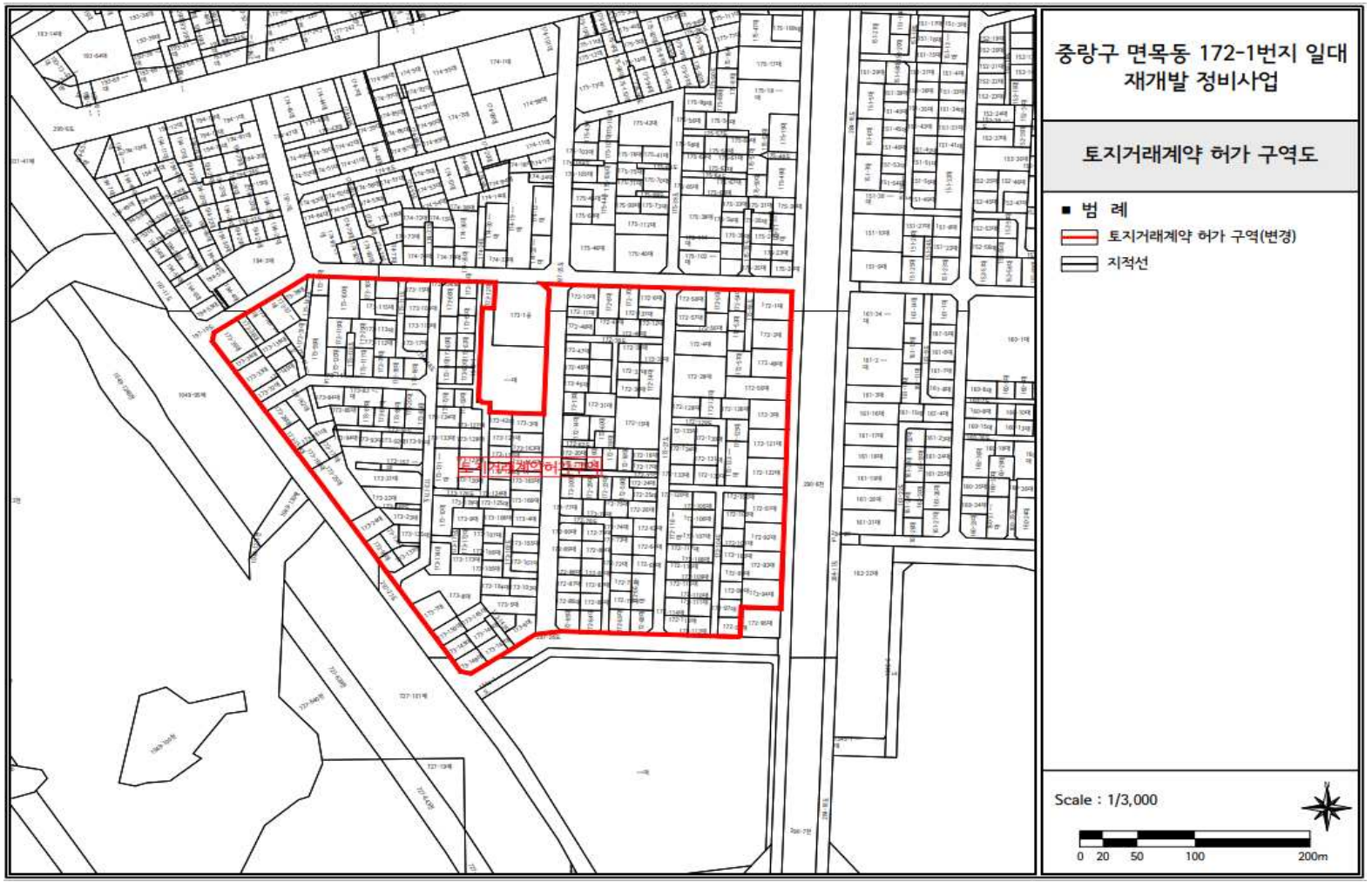

9. 중구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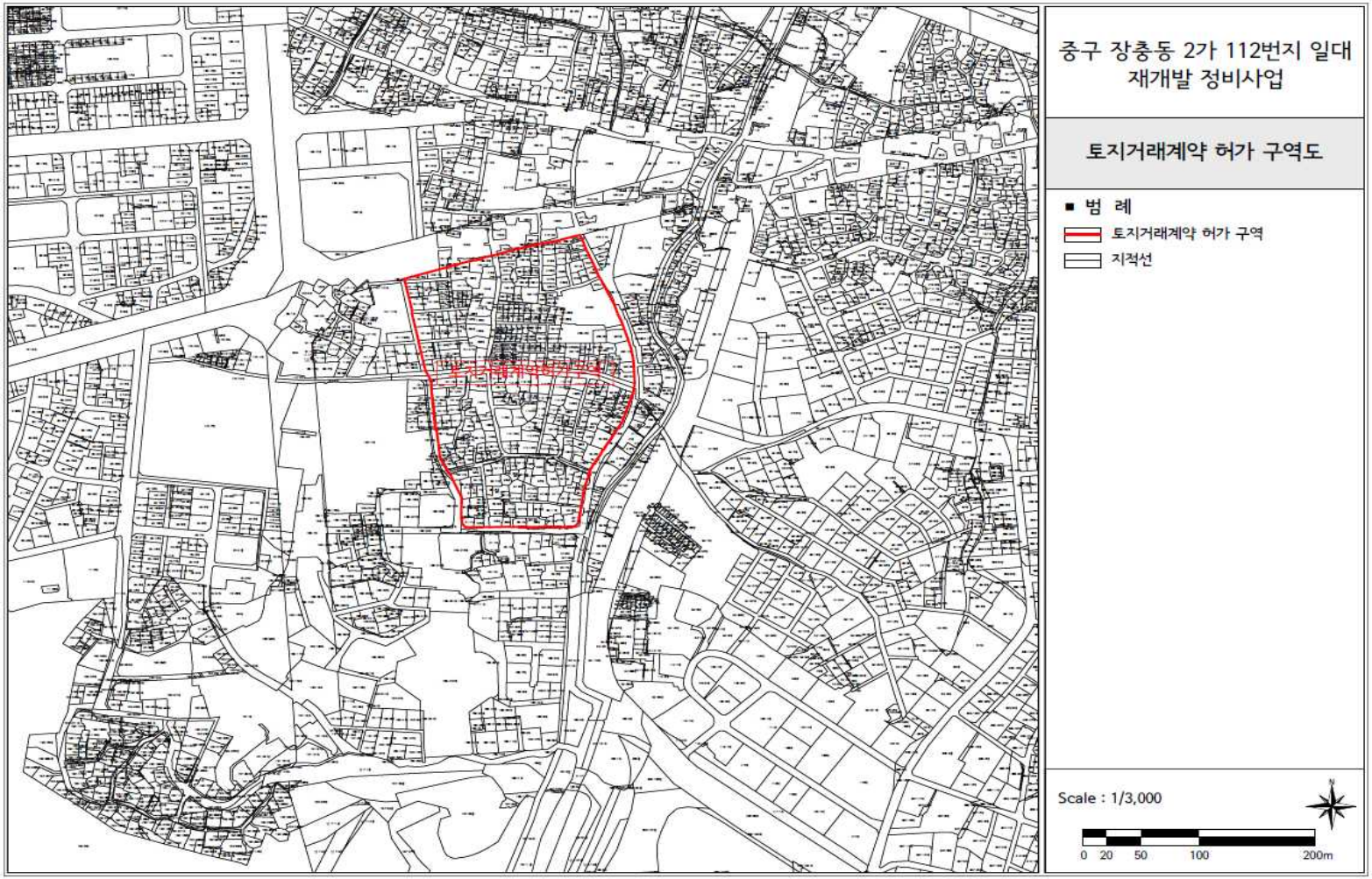

| 붙임2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구역변경 1개소 |
|---|---|

1.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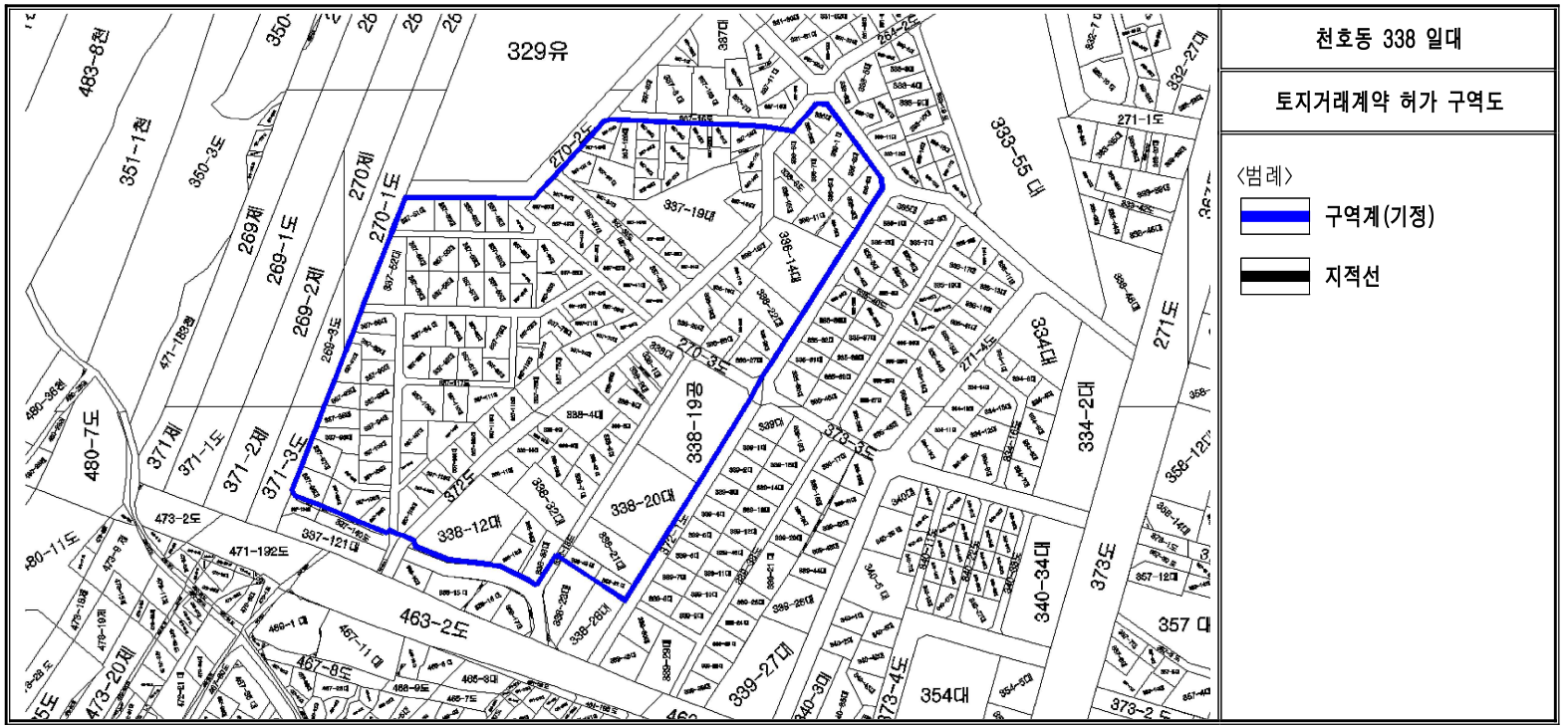

1.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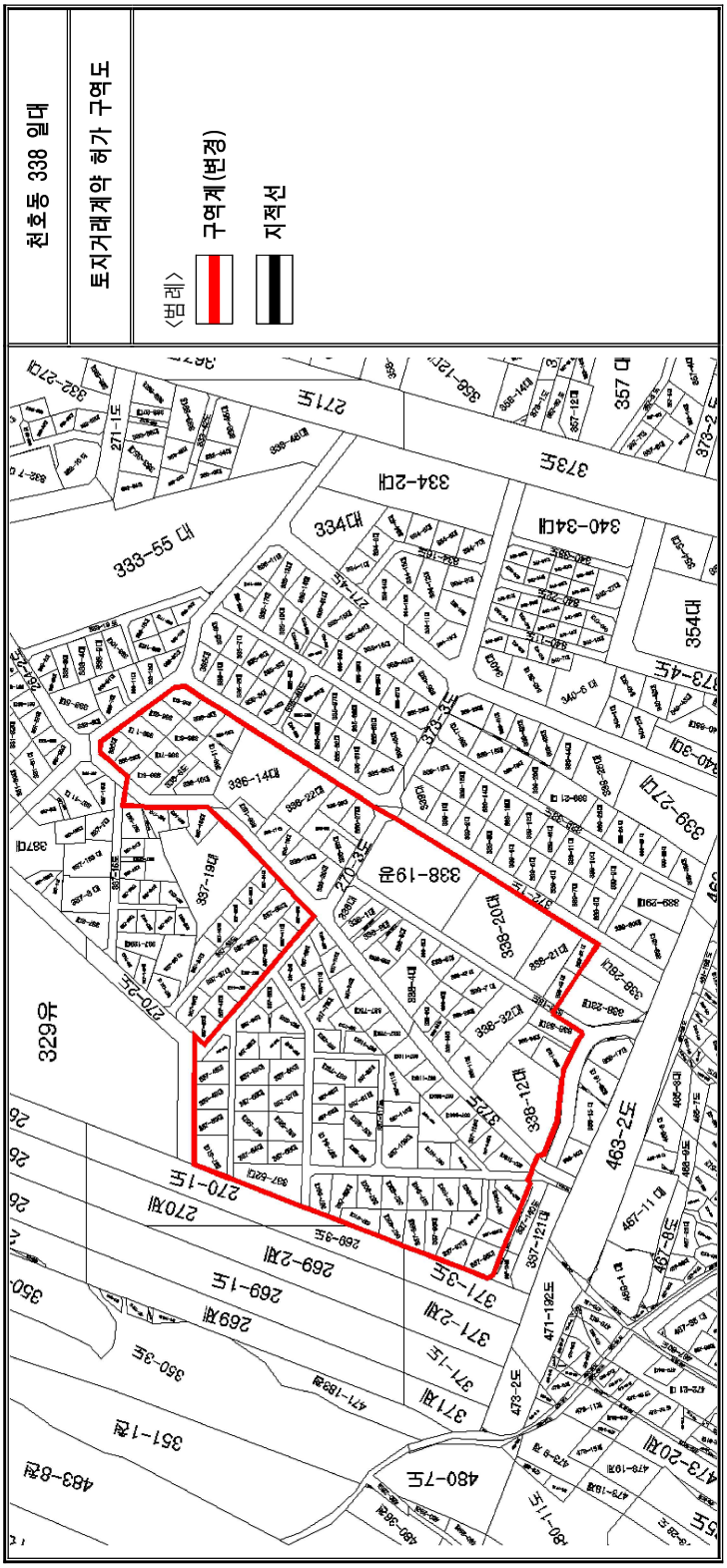

| 붙임2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해제 1개소 |
|---|---|

1. 영등포구 신길동 1499 일대(해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506호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2022.12.1.) 사업계획 승인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 마천역(5호선)~복정역(8호선, 수인분당선), 남위례역(8호선)
  나. 규모
    - 연장 5.3975km, 정거장 12개소(환승정거장 4개소), 차량기지 1개소, 종합관리동 1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나. 성명 :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9년~2025년

5. 사업계획 변경 사항
  ○ 정거장, 차량기지 등 시설 결정(중복)사항 일부 변경
  ○ 도로 신설(철도와 중복결정)

6.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 주요 사항

가. 교통시설

1) 철도(총괄표) : 성남시 변경없음

가) 본선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 | 연장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 | | |
| 기정 | 1~4 | 철도 | 도시철도 | 송파구 거여동 696-1번지 일원 (5호선 마천역) | 송파구 장지동(복정역), 성남시 창곡동, 남위례역 일원 | 거여동 장지동 창곡동 | 5,397.5 (2,120.2) | 41,104.8 (16,159.9) |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 (2022.12.01) | |
| 변경 | 1~4 | 철도 | 도시철도 | 송파구 거여동 696-1번지 일원 (5호선 마천역) | 송파구 장지동(복정역), 성남시 창곡동, 남위례역 일원 | 거여동 장지동 창곡동 | 5,397.5 (2,120.2) | 40,791.7 (16,159.9) | | •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일부 중복결정 구간 변경<br>• 정거장(1~12포함) |

※( )성남시 구간포함

나) 정거장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101 ~112 | 철도 | 도시철도 (정거장) | 송파구 마천동, 거여동, 장지동 ~ 성남시 창곡동 일원 | 10,471.0 (3,559.8) | | |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 (2022.12.01) | |
| 변경 | 101 ~112 | 철도 | 도시철도 (정거장) | 송파구 마천동, 거여동, 장지동 ~ 성남시 창곡동 일원 | - | 증) 44.9 | 10,515.9 (3,559.8) | - | • 도로, 공원, 공원, 광장, 철도 중복결정 구간 변경 |

※( )성남시 구간포함

다) 차량기지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5 | 철도 | 도시철도 (차량기지) | 송파구 거여동 221 | 16,372.0 | | |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 (2022.12.01) | |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5 | 철도 | 도시철도 (차량기지) | 송파구 거여동 221 | - | 감) 269 | 16,103.0 | - | • 공원 중복결정구간 변경(지하)<br>• 차량기지<br>- 관리동(지상) A=2,383.5 ㎡<br>- 지하(공원중복변경) A=12,563.0 ㎡ |

2) 도로(총괄표) : 신설(철도와 중복결정)

○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신설 | 소로 | 2 | A | 8 | 특수 도로 | 2,839.3 | 송파구 거여동 696-1 (101정거장) | 송파구 장지동 917-221 (성남시 시계) | 일반도로 | | | 위례선 ①번과 중복결정 |
| 신설 | 소로 | 2 | B | 8 | 특수 도로 | 438.0 | 송파구 장지동 579-5 (성남시 시계) | 송파구 장지동 595-10 (복정역) | 일반도로 | | | 위례선 ②번과 중복결정 |
| 신설 | 소로 | 2 | C | 8 | 특수 도로 | 1,400.7 |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9 (송파구 시계) |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407-13 (송파구 시계) | 일반도로 | | | 위례선 ③번과 중복결정 |
| 신설 | 소로 | 2 | D | 8 | 특수 도로 | 719.5 |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29-1 (위례선 지선) |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59-17 (남위례역) | 일반도로 | | | 위례선 ④번과 중복결정 |

7. 공람 도서(계획평면도 및 종단면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조서, 부지를 표시한 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8.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02-6438-254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송파구청 도시교통과(☎ 02-2147-3135)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교통기획과(☎ 031-729-2477)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92호**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3조제2항제2호, 제3호와 제5호에서 정한”을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4 제1호 표 중 제5호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 반복횟수별 벌점 | | |
|---|---|---|---|---|---|
| | | | 1차 | 2차 | 3차 |
| 제5호 |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 개원 촉구 후 불이행 시 등록말소 | | |

별표 4 제1호 표 중 제10호의 1개월 이상 휴원 미신고란 다음에 제10호의 폐원 미신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 반복횟수별 벌점 | | |
|---|---|---|---|---|---|
| | | | 1차 | 2차 | 3차 |
| 제10호 | 폐원 미신고 | 폐원 미신고 | 폐원 신고 촉구 후 불이행 시 등록말소 | | |

별표 4 제2호 표 중 제5호의 1개월 이상 휴소 미신고란 다음에 제5호의 폐소 미신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 반복횟수별 벌점 | | |
|---|---|---|---|---|---|
| | | | 1차 | 2차 | 3차 |
| 제5호 | 폐소 미신고 | 폐소 미신고 | 폐소 신고 촉구 후 불이행 시 폐지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학원 위치변경 신고 시 갖추어야 할 행정서류의 근거규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인용 별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학원의 휴·폐원에 대한 위반사항을 학원법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여 정비하고, 교습자의 '교습소 폐소 시 신고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다른 교육장 관할 지역으로 위치변경 신청 시 교육장이 보내야 하는 서류와 개인과외교습자가 갖춰야 할 서류 보존기간에 대한 근거규정 정비(제6조 및 제16조)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여 위반사항 정비(별표 4)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에 따라 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고자 할 경우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별표 4)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93호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을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edufine)”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에 속하는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지침을 정하고”를 “예산편성지침을”로, “알려야”를 “알리고, 그에 속하는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세부사업별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 사업별설명자료”를 “사업별설명자료”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지출)계획서”를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지출)계획서”를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지출)계획서를”을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세출예산배정계획요구서”를 “세출예산배정변경요구서”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교육시설관리본부라 한다”)”를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제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학교간 격차 해소 및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교부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제외)의 장에 의한 학교예산의 전출 및 보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교육시설관리본부의”를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제외)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로, “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출납폐쇄기한 종료 후 5일 이내에”를 “이월, 사고이월은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심사하여”를 “종합·심사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0일 이내에”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할 때에는 세출예산전용(이용)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를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전용(이용)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 또는 세출예산이체요구서(별지 24호의1 서식)”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을”을 “전

용·이체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결산기준에 따라 그에 속하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를 “결산기준을”로, “알려야 한다”를 “알리고, 그에 속하는 세입세출 결산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세입금납입독촉장”을 “독촉장”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교육시설관리본부”를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제외)”으로,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지출)계획서”를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로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2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관리요령」”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한다.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76조 중 “지급명령서(집합·송금·통상·대체)”를 “(계좌·현금)지급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자금이체(EFT)방식 또는 교육전자금융시스템(e교육금고)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다.

제7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5. 직무수행경비

제80조제1항 본문 중 “인감과”를 “것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으로 한다.

제83조 중 “지급명령서(집합·송금·통상·대체)”를 “(계좌·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8조제2항 중 “예금잔고증명을 붙인 현금및예금현재고조서”를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로, “현금 및 예금현재고 조서”를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로 한다.

제144조의 제목 “(증빙서류의 원본주의)”를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계문서 상의 날인과 제1항에 따른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의 관리에 대하여는 행정전자 서명의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46조를 삭제한다.

제149조제1항 중 “예금잔고금증명을 붙여”를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

까지”로 한다.

제150조의 제목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회계연도가 지난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로, “예금잔고증명을 붙여 1개월”을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로 한다.

제1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보관하되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증빙·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으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거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64조 중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를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 책임범위 및 업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상으로”로 한다.

제169조 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은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6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18호 서식, 제20호 서식, 제2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1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 서식, 제27호의2 서식, 제29호의2 서식, 제37호 서식, 제38호 서식, 제45호 서식, 제46호 서식, 제47호 서식, 제49호 서식, 제53호 서식, 제55호 서식, 제57호 서식, 제58호 서식, 제61호 서식, 제63호 서식, 제64호 서식, 제65호 서식, 제68호 서식, 제69호 서식, 제70호 서식, 제74호 서식, 제75호 서식, 제76호 서식, 제81호 서식, 제82조 서식, 제85호의1 서식, 제89호 서식, 제90호 서식, 제9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4호 서식은 삭제한다.

별지 제96호 서식, 제97호 서식, 제9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예 산 요 구 서

세입 (단위: 천원)

| 장 | 관 | 항 | 목 | 원가통계 비목 | 예산 요구액 | 산출기초 (단위: 원) | 전년도 예산액 | 비교 증감 |
|---|---|---|---|---|---|---|---|---|
| | | | | | | | | |

##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예 산 요 구 서

세출 (단위: 천원)

| 재원배분 기관 (기관명) | 재원배분 기관 (부서명) | 세부 사업 | 사업 항목 1 | 사업 항목 2 | 사업 항목 3 | 사업 항목 4 | 원가 통계목 | 예산 요구액 | 산출 기초 (단위: 원) | 전년도 예산액 | 비교 증감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 사 업 별 설 명 자 료

(세입)

## 1. 세입과목명

| (장) | (관) |
|---|---|
| (조직) 부서명 (팀명) | (담당자) |

Ⅰ.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 당해년도 | 전년도 | | 전년 대비 증감 | |
|---|---|---|---|---|---|
| | 본예산 (A) | 본예산 (B) | 최종예산 (C) | 본예산 (A-B) | 최종예산 (A-C) |
| 계 | | | | | |
| | | | | | |
| | | | | | |

Ⅱ. 세부설명

1. 근거

○

2. 내용

○

- 내용

·

·

- 예산액 : 천원

| | | |
|---|---|---|
| · 산출항목 | | 천원 |
| - 주요 예산 내용 | 산출내역 기재 = | 천원 |
| - 주요 예산 내용 | 산출내역 기재 = | 천원 |

3.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Y-3 | Y-2 | Y-1 | 비고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전년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수납액 | 수납예정액 | 계 | 비고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세출)

# 사업항목1(세세부사업명)

| | | |
|---|---|---|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조직) 부서명(팀명) | (담당자) | |

Ⅰ. 예산 총괄

1. 사업별 (단위 : 천원)

| 구분 | 당해년도 | 전년도 | | 전년 대비 증감 | |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
|---|---|---|---|---|---|---|
| | 본예산 (A) | 본예산 (B) | 추경예산 (C) | 본예산 (A-B) | 추경예산 (A-C) | |
| 계 | | | | | | |
| 사업항목 2 또는 3 | | | | | | |

2. 재원별 (단위 : 천원)

| 일반 재원 | 특별 교부금 | 국고 보조금 | 지자체전입금 | 기타 지원금 | 계 |
|---|---|---|---|---|---|
| | | | | | |

Ⅱ. 사업설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 사업근거

○

3. 사업내용

○

-

- 소요예산 : 천원

| | | | | |
|---|---|---|---|---|
| · | 세출목명 | | | 천원 |
| | - 주요 예산 내용 | 산출내역 | = | 천원 |
| | - 주요 예산 내용 | 산출내역 | = | 천원 |

4.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차년도이월 (c) | 불용액 (a-b-c) | 비고 |
|---|---|---|---|---|---|
| Y-3 | | | | | |
| Y-2 | | | | | |
| Y-1 | | | | | |

○ 전년도 추진현황

-

5. 당해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 추진일정

-

6. 사전절차 이행사항

[별지 제6호 서식]

## ○○○○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결산총(순)계표

(단위 : 천원)

| 과목 | | | | 예산액 (1) | 이월 등 증감액 (2) | 예산현액 (3)=(1)±(2) | 징수결정액 (4) | 수납액 (5) | 불납결손액 (6) | 미수납액 (7)=(4)-(5)-(6) |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누계 (8)=(5)-(3) |
|---|---|---|---|---|---|---|---|---|---|---|---|
| 장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주) : 순계표는 회계간 전·출입금을 제외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8호 서식]

## ○○○○년도 지방채조서

(단위 : 천원)

| 지방교육채구분 | 기간 | | 이율(%) | 기채선 | 기채액(A) | 기상환액(B) | 전년도상환 | | | | | | 당해연도상환계획액 | | | 금후상환계획액(E) | 기채사유 |
|---|---|---|---|---|---|---|---|---|---|---|---|---|---|---|---|---|---|
| | | | | | | | 상환계획 | | | 상환액 | | | | | | | |
| | 기채연도 | 상환완료예정년도 | | | | | 원금 | 이자 | 계 | 원금(C) | 이자 | 계 | 원금(D) | 이자 | 계 | | |
| | | | | | | | | | | | | | | | | | |

㈜ 1.지방채의 구분은 ①지방채증권, ②차관, ③예금은행차입금, ④기타차입금
2.기채액(A)=기상환액(B)+ 전년도상환(C)+ 당해연도상환계획액(D)+ 금후상환계획액(E)

[별지 제9호 서식]

## 채무부담행위 조서

(단위 : 천원)

| 과 목 | | | 사업명 | 채무부담 행 위 액 | 상환계획 | | | | 사유 |
|---|---|---|---|---|---|---|---|---|---|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사업 | | | ○○년 | ○○년 | ○○년 | ○○년 | |
| | | | | | | | | | |

[별지 제10호 서식]

## 계 속 비 사 업 조 서

(단위 : 천원)

| 기관(부서)명 | 과목 | | | 사업명 | 사업비총액 | 전전년도 이전 | | | 전 년 도 | | | 계 획 액 | | | 비고 |
|---|---|---|---|---|---|---|---|---|---|---|---|---|---|---|---|
|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예산액 | 지출액 | 지출잔액 | 예산액 | 지출액 | 지출잔액 | 당해년도 | ○○년도 | ○○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전년도 이전분은 예산액, 집행액(예정액), 집행잔액을 기입하고 당해 연도 이후분은 계획액만을 기입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

기관(부서)명 (단위 : 천원)

| 단위과제카드 | 세부사업 | 목 | 예산액 | 구분 | | 합계 | | 유보액 | | 1월 | | 2월 | | … | | 12월 | |
|---|---|---|---|---|---|---|---|---|---|---|---|---|---|---|---|---|---|
| | | | | | | 배정계획 | 지출계획 | 배정계획 | 지출계획 | 배정계획 | 지출계획 | 배정계획 | 지출계획 | 배정계획 | 지출계획 | 배정계획 | 지출계획 |
| | | | | 전년도 | 비율 | | | |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당해연도 | 비율 | | | |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별지 제18호 서식]

# 세 출 예 산 배 정 요 구 서

회계연도:

(단위 : 천원)

예산구분:

| 사업 | | | | | | 예산액 | 배정 요구액 | | 유보액 | | 1 분기 | | 2 분기 | | 3 분기 | | 4 분기 | |
|---|---|---|---|---|---|---|---|---|---|---|---|---|---|---|---|---|---|---|
| 기관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단위과제카드 | 목별 | | 배정계획 | 지출계획 | 배정계획 | 지출계획 | 배정계획 | 지출계획 | 배정계획 | 지출계획 | 배정계획 | 지출계획 | 배정계획 | 지출계획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 서식]

# 세출예산배정변경요구서

회계연도: 작성일자 :

| 분야 – 부문 | | 정책사업 | | 단위사업 | | 단위과제카드 | | 세부사업 | | 담당자 | |
|---|---|---|---|---|---|---|---|---|---|---|---|

1. 배정변경 요구내역 (단위 : 원)

| 예산구분 | 목 | 예산액 | 구분 | 합계 | 제1분기 | | | | 제2분기 | | | | 제3분기 | | | | 제4분기 | | | | 유보액 |
|---|---|---|---|---|---|---|---|---|---|---|---|---|---|---|---|---|---|---|---|---|---|
| | | | | | 1월 | 2월 | 3월 | 소계 | 4월 | 5월 | 6월 | 소계 | 7월 | 8월 | 9월 | 소계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 | |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증감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 서식]

## 학교교부(보조)계획서

| 분야 | | 부문 | | 소관 | |
|---|---|---|---|---|---|
| 정책사업 | | 단위사업 | | 세부사업 | |
| 단위과제카드 | | 사업항목 | | 요구일자 | |

1. 교부사업명:
2. 학교별교부계획

(단위 : 원)

| 설립 구분 | 학교명 | 기교부 계획금액 | 금회교부 계획금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 |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의1 서식]

## 세출예산이체요구서

기관(부서)명 : (단위: 천원)

| 예산과목 | | | | 단위업무 | 예산액 | 지출액 | 예산잔액 | 이체액 | 이체사유 | 이체(증) | |
|---|---|---|---|---|---|---|---|---|---|---|---|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 | | | | | | | 부서명 | 단위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사유란에는 예산이체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27호 서식]

## 징수결의서(제38조 관련)

<table>
<tr><td colspan="3" rowspan="2">징수결의서(징수결의)</td><td>징수결의<br>번호</td><td colspan="2"></td></tr>
<tr><td>담 당</td><td>검토</td><td>결재</td></tr>
<tr><td colspan="3" rowspan="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td><td></td><td></td><td></td></tr>
<tr><td>발의일자</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징수부등기</td><td>년 월 일</td><td>납입기한</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고지서발행</td><td>년 월 일</td><td>고지서번호<br>(전자납부번호)</td><td colspan="2">제 호</td></tr>
<tr><td>장</td><td></td><td>관</td><td></td><td>항</td><td></td></tr>
<tr><td>목</td><td colspan="3"></td><td>금액</td><td>₩</td></tr>
<tr><td rowspan="2">원가통계<br>비목</td><td rowspan="2"></td><td rowspan="2">금액</td><td rowspan="2">일금<br>₩</td><td>공급가액</td><td>₩</td></tr>
<tr><td>부가세액</td><td>₩</td></tr>
<tr><td>납부자</td><td colspan="5">주 소<br>성 명(상호)</td></tr>
<tr><td>제 목</td><td colspan="5"></td></tr>
<tr><td>내 용</td><td colspan="5"></td></tr>
<tr><td>회계<br>결의번호</td><td colspan="5"></td></tr>
</table>

| 행번 | 계정<br>과목코드 | 계정<br>과목명 | 차변금액 | 대변금액 |
|---|---|---|---|---|
| | | | | |

[별지 제27호의2 서식]

## 과오납금반환결의서(제50조 관련)

<table>
<tr><td colspan="3" rowspan="2">징수결의서<br>(과오납금반환결의서)</td><td>징수결의<br>번호</td><td colspan="3"></td></tr>
<tr><td>담 당</td><td colspan="2">검토</td><td>결재</td></tr>
<tr><td colspan="3" rowspan="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td><td></td><td></td><td></td></tr>
<tr><td>발의일자</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징수부등기</td><td colspan="2">년 월 일</td><td>과오납<br>반환일자</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관련문서</td><td colspan="6"></td></tr>
<tr><td>장</td><td></td><td>관</td><td></td><td>항</td><td colspan="2"></td></tr>
<tr><td>목</td><td colspan="3"></td><td>금 액</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원가<br>통계<br>비목</td><td rowspan="2"></td><td rowspan="2">금액</td><td rowspan="2">일금(-) 원정<br>-₩</td><td>공급가액</td><td colspan="2">₩</td></tr>
<tr><td>부가세액</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납부자</td><td>주소<br>성명(상호)</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채권자</td><td colspan="5">계좌번호<br>성 명(상호)</td></tr>
<tr><td colspan="2">제 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내 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회계결의번호</td><td colspan="5"></td></tr>
</table>

| 행번 | 계정과목코드 | 계정<br>과목명 | 차변금액 | 대변금액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별지 제29호의2 서식]

<table>
<tr><td colspan="3">납입고지서</td></tr>
<tr><td>학 번</td><td colspan="2"></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일금 원정</td></tr>
<tr><td>구 분</td><td>금 액</td><td>비 고</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합 계</td><td></td><td></td></tr>
<tr><td colspan="3">년 월 일까지 위의 금액을<br>해당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 학 교 장</td></tr>
</table>

[별지 제37호 서식]

# 수 입 일 계 표

| 담당 | | | |
|---|---|---|---|
| | | | |

○○○○년도교육비특별회계 ○○○○년도 ○○월 ○○일

| 과목 | | | | 적요 | 금액 | 영수필 통지서 매 수 |
|---|---|---|---|---|---|---|
| 장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별지 제38호 서식]

| | |
|---|---|
| 제 호 | ○○○○. ○○. ○○ |
| 독촉장 | |
| 수신 ○○○ | 발신 서울특별시교육청 |
| 납입금액 | |
| 연도 | ○○○○ |
| 납부기한 | ○○○○년 ○○년 ○○일 |
| 비고 | |

[별지 제45호 서식]

## 지출원인행위부(사용장부)

회계연도 : (년월: ~ )

정책: 단위: 세부: 목: (단위: 원)

| 일자 | 적요 | 채권자 | 부서 | 예산 | | | 원인행위액 | | | 잔액 | |
|---|---|---|---|---|---|---|---|---|---|---|---|
| | | | | 현액 (1) | 배정액 (2) | 재배정액 (3) | 교부액 | 지급액 | 계 (4) | 예산대비 (1)-(4) | 배정대비 (2)+(3)-(4) |
| 전월이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계 | | | | | | | | | | | |
| 누 계 | | | | | | | | | | | |

(주) 1.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이체·이용,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한다.

[별지 제46호 서식]

( ) 지출결의서

| 담당자 | 담당 | 과장 | 국장 | 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 담당자 | | 지출원 |
|---|---|---|---|---|---|---|---|
| | | | | | | | |

| | | | | | |
|---|---|---|---|---|---|
| 발의일자 | | 분야 | | 청구일자 | |
| 계약일자 | | 부문 | | 발의일자 | |
| 원인행위부등기 | | 정책사업 | | 지출부등기 | |
| 준공/납품일자 | | 단위사업 | | 지출결의번호 | |
| 검수일자 | | 세부사업 | | 지급명령번호 | |
| 예산구분 | | 단위과제카드 | | 지출구분 | |
| 예산부서 | | 목 | | 공급가액 | |
| 계약/품의번호 | | 세목 | | 부가세액 | |
| 원인행위번호 | | 원가목 | | 합계금액 | |
| 적 요 | | 채 권 자 | | 소득세 | |
| | | 채권자명 (실거래처) | | 주민세 | |
| | | 사업자번호 | | 기여금 | |
| | | 주민번호 | | 건강보험 | |
| | | 주소 | | 채권압류 | |
| | | | | 기타공제 | |
| 원인행위액 | | 예금주 | | 공제합계 | |
| 기지출액 | | 지급계좌 | | 채권자지급액 | |
| 금회지출액 | | 오른쪽의 금액을 영수함. | | 지급액 | |
| 지출잔액 | | | | | |

[별지 제47호 서식]

# 과목경정결의서

| 담당자 | | | | 20 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 담당자 | | |
|---|---|---|---|---|---|---|---|
| | | | | | | | |

| 당 초 | | | | 경 정 | |
|---|---|---|---|---|---|
| 발의일자 | | 예산구분 | | 발의일자 | |
| 지출부등기 | | 예산부서 | | 지출부등기 | |
| 지출결의번호 | | 유형 | | 지출결의번호 | |
| 변경차수 | | 원인행위번호 | | 변경차수 | |
| 지급명령번호 | | 원인행위액 | | 지급명령번호 | |
| 분야 | | 지출액 | | 분야 | |
| 부문 | | 경정사유 | | 부문 | |
| 정책사업 | | | | 정책사업 | |
| 단위사업 | | | | 단위사업 | |
| 세부사업 | | | | 세부사업 | |
| 단위과제카드 | | | | 단위과제카드 | |
| 목 | | | | 목 | |
| 세목 | | | | 세목 | |
| 원가통계목 | | | | 원가통계목 | |

| 행번 | 계정과목명 | 차변금액 | 대변금액 | 거래처명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합계 | | | | |

[별지 제49호 서식]

## (계좌·현금)지급명령

| 결 | 지출원 | 금고 |
|---|---|---|
| 재 | | |

년도 회계

(단위: 원)

| 연번 | 지급 명령 번호 | 명령구분 | 입금 유형 | 채권자 | 입금계좌 | | 지급액 | 비고 |
|---|---|---|---|---|---|---|---|---|
| | | | |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br>예금주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별지 제53호 서식]

( )반납결의서

| 담당자 | 담당 | 과장 | 국장 | 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 담당자 | | 지출원 |
|---|---|---|---|---|---|---|---|
| | | | | | | | |

| | | | | | |
|---|---|---|---|---|---|
| 발의일자 | | 분야 | | 발의일자 | |
| 원인행위부등기 | | 부문 | | 지출부등기 | |
| 예산구분 | | 정책사업 | | 지출결의번호 | |
| 예산부서 | | 단위사업 | | 변경차수 | |
| 원인행위번호 | | 세부사업 | | 지급명령번호 | |
| 변경차수 | | 단위업무 | | 반납금액 | |
| 당초 원인행위일 | | 목 | | 당초지출일자 | |
| | | 세목 | | 당초명령번호 | |
| | | 원가목 | | | |

| 적 요 | 반 납 자 | |
|---|---|---|
| | 채권자명 (실거래처) | |
| | 사업자번호 | |
| | 주민번호 | |
| | 주소 | |

| 순번 | 계정과목명 | 차변금액 | 대변금액 | 거래처명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5호 서식]

## 자금운용기록부

| 금융상품종류 | 계좌번호 | 운용<br>일자 | 적요 | 예치 | 해지 | 잔액 | 이자<br>수입 | 예치<br>일자 | 만기<br>일자 | 예치<br>일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별지 제57호 서식]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 년월일 | 종목 | 제목 | 채권자 | 수입액(1) | 지급액(2) | 잔액(1)-(2) | 결의번호 | 비고 |
|---|---|---|---|---|---|---|---|---|
| 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간 계 | | | | | | | | |
| 총 누 계 | | | | | | | | |

[별지 제58호 서식]

##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 일자 | 원가통계 비목 | 적요 | 납부자 (채권자) 성명 | 수납요청 금 액 | 수납 금액 (1) | 미수입 액 | 반환 금액 (2) | 잔액 (1-2) | (최초) 발생 일자 |
|---|---|---|---|---|---|---|---|---|---|
| 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간 계 | | | | | | | | | |
| 총 누 계 | | | | | | | | | |

[별지 제61호 서식]

현금출납부

| 일 자 | 제 목 | 채 주 | 수 입 액 | 지 출 액 | 잔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3호 서식]

##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 종 별 | 현 금 | 예 금 | 적 요 | 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4호 서식]

## 세 입 세 출 원 장(금고용)

(앞)

| 년<br>월<br>일 | 세 입 | | | 자 금<br>배정액<br>(2) | 세 출 | | | | 잔액<br>(1)-(2)<br>-(3)=(4) |
|---|---|---|---|---|---|---|---|---|---|
| | 수입 | 과오납<br>반환액 | 차액<br>(1) | | 지급액 | 반납액 | 과 목<br>경정액 | 차액<br>(3) | |
| | | | | | | | | | |

(뒤)

| 자 금 운 용 | | | 비 고 |
|---|---|---|---|
| 예 금 등<br>(5) | 환 입<br>(6) | 공금잔액<br>(4)-(5)+(6) | |
| | | | ※차입, 정기예금 등 |

[별지 제65호 서식]

## 세입금내역장(금고용)

○○ 징수관

| 년 월 일 | 적 요 | 증서번호 | 납부자성명 | 금 액 | 누 계 |
|---|---|---|---|---|---|
| | | | | | |

[별지 제68호 서식]

## 세출금내역장(금고용)

| 년 월 일 | 적요 | 번호 | 채권자 | 직급 | 송금 | 집합송금 | 소계 | 자금배정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9호 서식]

## 자금운용내역장(금고용)

| 년 월 일 | 적요 | 예치 | | | | 해지 | | | | 잔액 (1)-(2) |
|---|---|---|---|---|---|---|---|---|---|---|
| | | 정기예금 | 통지예금 | 차입 또는 대여 | 계 (1) | 정기예금 | 통지예금 | 차입 또는 대여 | 계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0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금고용)

| 년 월 일 | 적 요 | 채권자 | 수입(1) | 지급(2) | 잔고(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4호 서식]

# 세 입 월 계 표

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년 월분

| 전월계<br>(1) | 본월계<br>(2) | 금고과오납금반환<br>(3) | 누계<br>(1)+(2)-(3) |
|---|---|---|---|
| | | | |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징수관 귀하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

[별지 제75호 서식]

# 세 출 월 계 표

년도 월분

| 회계명 | 자금배정 | | 세 출(2) | | | | | | | 자금잔액 (1)-(2) |
|---|---|---|---|---|---|---|---|---|---|---|
| | 이번달 배정액 | 배정누계 (1) | 지난달 세출누계 (a) | 이번달 지급명령 (d) | | | 반납액 (e) | 과목경정 (f) | 이번달 세출누계 (a)+(d)-(e) | |
| | | | | 지급액 (b) | 미지급액 (c) | 지급명령 누계 (b) +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금예금잔액 | |
|---|---|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지출원 귀하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금고

[별지 제76호 서식]

##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년도 월분

| 구 분 | 전일잔액 | | | 금일입금 | | 금일지급 | | 금일 잔액 | | |
|---|---|---|---|---|---|---|---|---|---|---|
| | 정기예금 | 현금보관 | 합계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정기예금 | 현금보관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별지 제81호 서식]

지출증빙서

<표지>

20 년도

년 월 (기)분

# 지 출 증 빙 서

금액 ₩

전 책 중 책

지주 장

관서명

[별지 제82호 서식]

# 세 입 금 경 정 요 구 서

원 부

경정결의번호 :

| 구분 | 경정전 | 경정후 |
|---|---|---|
| 회계연도 | | |
| 납입기관 | | |
| 기관코드 | | |
| 징수관 | | |
| 세입과목 | | |
| 세입코드 | | |
| 금액 | | |
| 원수납일자 | | |
| 경정일자 | | |
| 비 고 | | |

년 월 일

| 담당자 | 수입금출납원 | 징수관 | 결재 |
|---|---|---|---|
| | | | |

경정요구서

경정결의번호 :

| 구분 | 경정전 | 경정후 |
|---|---|---|
| 회계연도 | | |
| 납입기관 | | |
| 기관코드 | | |
| 징수관 | | |
| 세입과목 | | |
| 세입코드 | | |
| 금액 | | |
| 원수납일자 | | |
| 경정일자 | | |
| 비 고 | | |

위와 같이 경정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인)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금고 귀하

경정통지서

경정결의번호 :

| 구분 | 경정전 | 경정후 |
|---|---|---|
| 회계연도 | | |
| 납입기관 | | |
| 기관코드 | | |
| 징수관 | | |
| 세입과목 | | |
| 세입코드 | | |
| 금액 | | |
| 원수납일자 | | |
| 경정일자 | | |
| 비 고 | | |

위와 같이 경정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금고 (인)

징수관 귀하

[별지 제85호의1 서식]

# 일 상 경 비 출 납 계 산 서

회계연도 (년월 : - )
부 서 : (단위 : 원)

| 수 령 액 (A) | | | | 사업명 | 지 급 액 (B) | | | | 잔액 (A-B) |
|---|---|---|---|---|---|---|---|---|---|
| 전기말계 (1) | 본기분 (2) | 본기분 반납 (3) | 누계 (1+2-3) | | 전기말계 (4) | 본기분 (5) | 본기분 반납 (6) | 누계 (4+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9호 서식]

## 총 괄 채 권 관 리 부

| 채권관리관별 | 전년도이월액 | | | 금회발생액 | | | 금회상환액 | | | 잔 액 | | | 비고 |
|---|---|---|---|---|---|---|---|---|---|---|---|---|---|
| | 이행기한도래액 | 이행기한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도래액 | 이행기한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도래액 | 이행기한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도래액 | 이행기한미도래액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0호 서식]

# 채 권 관 리 부

회계연월:

(단위: 원)

| 종별 | 채무자 | | 채 권 발 생 | | | | | 부과연도 | 독촉 | 상 환 | | | 기타소멸 | 잔액 | | | 비고 |
|---|---|---|---|---|---|---|---|---|---|---|---|---|---|---|---|---|---|
| | 성명 | 주소 | 사유 | 납기 | 발생년월일 | 원금 | 이율 | | | 원금 | 이자 | 계 | | 원금 | 이자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1호 서식]

## 지 출 부(지출원용)

회계연도 :
정책: 단위: 세부 : 목 : (단위:원)

| 일자 | 적요 | 채권자 | 부서 | 예 산 | | | 지 출 액 | | | 잔 액 | |
|---|---|---|---|---|---|---|---|---|---|---|---|
| | | | | 현액 (1) | 배정액 (2) | 재배정액 (3) | 교부액 | 지급액 | 계 (4) | 예산대비 (1)-(4) | 배정대비 (2)+(3)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계 | | | | | | | | | | | |
| 누 계 | | | | | | | | | | | |

[별지 제96호 서식]

## 채권발생(소멸)보고서

| 종별 | 채무자 주 소 | 담보 책임자 주 소 | 발 생 | | | | | 소 멸 | | | 비고 |
|---|---|---|---|---|---|---|---|---|---|---|---|
| | | | 채권액 | | 사유 | 납입기한 | 발생 년월일 | 상환액 | 상환일자 | 기타소멸 | |
| | | | 원금 | 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7호 서식]

## 채 권 현 재 액 보 고 서

(단위:원)

| 종별 | 전년도이월액 | | | 금회발생액 | | | 금회소멸액 | | | 잔 액 | | | 비고 |
|---|---|---|---|---|---|---|---|---|---|---|---|---|---|
| | 이행기한도래액 | 이행기한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도래액 | 이행기한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도래액 | 이행기한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도래액 | 이행기한미도래액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9호 서식]

# 조정결의서

| 담당자 | 담당 | 과장 | 재무관 | 년 교육청<br>교육비특별회계 | 담당자 | 담당 | 지출원 |
|---|---|---|---|---|---|---|---|
| | | | | | | | |

| | | | | | |
|---|---|---|---|---|---|
| 발의일자 | | 분야 | | 발의일자 | |
| 계약일자 | | 부문 | | 지출부등기 | |
| 원인행위부등기 | | 정책사업 | | 당초<br>원인행위액 | |
| 예산구분 | | 단위사업 | | 기원인행위<br>조정액 | |
| 예산부서 | | 세부사업 | | 금회조정액 | |
| 원인행위번호 | | 단위과제카드 | | | |
| 변경차수 | | 목 | | | |
| 당초원인행위일 | | 세목 | | 조정후<br>원인행위액 | |
| | | 원가목 | | | |

| 적 요 | 채권자 | |
|---|---|---|
| | 채권자명<br>(실거래처) | |
| | 사업자번호 | |
| | 주민번호 | |
| | 주소 | |
| | 예금주 | |
| | 지급계좌 |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조직개편 및 회계업무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항 내용 정비

나. 회계관리에 관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 법령·지침 제·개정 사항 반영

다. K-에듀파인 도입에 따라 각 조항 내용 및 별지 서식 현행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에듀파인 도입 등의 회계업무 환경변화를 반영한 개정

1) 직속기관 학교회계전출금 교부 근거 마련(제26조)

- 학교회계전출금 교부 권한을 직속기관(도서관, 평생학습관 제외)으로 확대

2)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제80조)

-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로 채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3)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제한문구 삭제(제164조)

- 재정보증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상한액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

4) 교육지원청 예·결산세부지침 수립 업무 감축(제1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 교육장의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결산 세부기준 별도 수립 내용 삭제

5) 지급명령서를 전자전송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76조)

- 전자자금이체(EFT), 교육전자금융시스템(e교육금고)으로 자금을 이체 할 경우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다는 단서 추가

6) 회계 증빙서류의 전자적 보관 근거 신설(안 제158조제3항)

-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증빙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

나. 상위법령·지침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

1) 이월예산 인용 법 조항 및 업무처리 기한 변경(제27조)

- 인용 법 조항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을 「제50조」로 변경
- 이월예산 제출기한 및 확정기한 변경

2) 예산의 이체 내용 추가(제30조)

- 예산의 전용·이용 외에 이체에 관한 내용 추가

3) 대가 지급 시 계좌입금 원칙의 예외사유 구체화(제72조제4항)

- 예외사유를 5가지로 세분화하여 정비

4)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적용 규정 변경(제72조제5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관리요령」 폐지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5) 지급명령서 발행 시 청구서 미첨부 사유 변경(제77조제1항)
-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는 ‘직무수행경비’로 변경하고, ‘복리후생비’는 삭제

6) 회계문서의 날인 인정 범위 확대 및 조항 통합(제144조 및 제146조)
- 회계문서의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제146조를 제144조에 통합하면서 제146조는 삭제

7) 출납계산서 제출기한 구체적 명시(제149조제1항 및 제150조)
- 일상경비출납계산서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제출기한을 명시

8) 회계 근거 규정의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제169조)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으로 변경

다. K-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용어 및 별지 서식 현행화를 위한 개정

1) K-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장치 정의 변경(안 제3조)
-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을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edufine)’으로 변경

2) 별지 서식 현행화에 따라 조항 내용 중 서식 명칭 변경
-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지출)계획서 →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제21조 및 제66조)
- 세출예산배정계획요구서 → 세출예산배정변경요구서(제25조)
- 세입금납입독촉장 → 독촉장(제58조)
- 지급명령서(집합·송금·통상·대체) → (계좌·현금)지급명령(제76조 및 제83조)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제150조)

3) K-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별지 서식 현행화
- 서식 삭제: 제2호 서식, 제94호 서식
- 서식 신설: 제24호의1 서식
- 서식 수정: 제1호 서식 등 총 42개 서식

#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24-79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79호(2023.11.09.)로 결정되고, 서울특별 중구 고시 제2024-18호(2024.03.14.)로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41호(2024.06.27.)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사업
- 명칭 : 서울시 중구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관련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

3) 사업시행규모 및 면적
- 규모 : L=10.55m, B=4.5m H= 3.7m 보행자 전용 지하도로 개설
- 면적 : 63.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캡스톤명동피에프브이 대표이사 이민석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3323호(영덕동, 유타워)

5) 사업의 착수(변경) 및 준공 예정일
- 기정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內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 변경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0개월 內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연번 | 소재지 | 지목 | 이용사항 | 면적(㎡) | | 소 유 자 | | 소유권 외의 권리 | | |
|---|---|---|---|---|---|---|---|---|---|---|
| | | | | 지적 | 편입면적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종류 및 내용 |
| 1 | 을지로2가 193-2 | 도 | 도로 | 4,664.5 | 56.46 | 국토교통부 | - | - | - | - |
| 2 | 을지로2가 185 | 대 | 대지 | 2,735.4 | 6.84 |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 - | - | - |
| 합계 | | - | | 7,399.9 | 63.30 | - | - | - | - | - |

다.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2)에 비치.

◈ 광진구고시 제2024-44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진구 광장동 237-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2024년 제4차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4.11.29.)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광 진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광장동 237-9번지 일대 유휴공간에 대한 공공시설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을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결정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 | 사회복지시설 | 광장동 237-9, 396-4 | - | - | 800 | - | |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 | 사회복지시설 | • 신설<br>- 면적 : 800㎡ | • 광장동 내 지역 여건상 필요시설인 어린이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신설 |

3. 관계도면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7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기 정 | 변 경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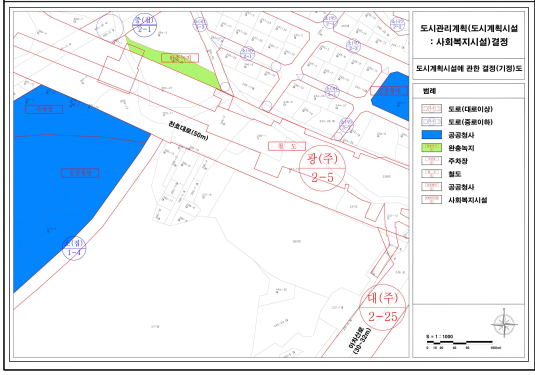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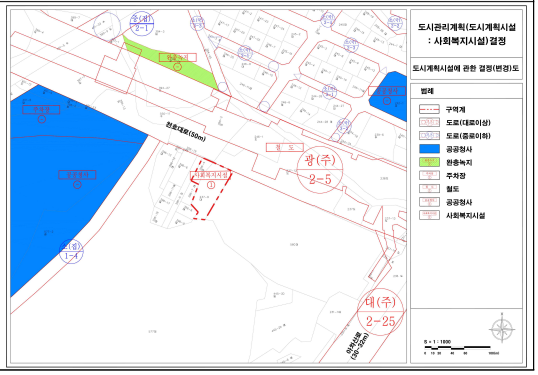 |

◈ 성북구고시 제2024-164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1996-7호(1996.2.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성북구고시 제2020-95호(2020.6.25.)로 실시계획 작성 고시, 성북구고시 제2020-141호(2020.8.6.)로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 성북구 고시 제2024-68호(2024.5.30.)로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 된 『월곡동 150~191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 (변경없음)

| 사업의 명칭 | 사업의 위치 | 사업의 규모 | 최초 결정고시 | 비고 |
|---|---|---|---|---|
| 월곡동 150 ~ 191간<br>도로확장공사 | 하월곡동 145 ~<br>하월곡동 96-264 | · B = 6m<br>· L = 230m | 성북구고시 제1996-7호<br>(1996.2.10.) |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1) 성 명 : 성북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1) 당초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024.12.31.까지
2) 변경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025.3.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변경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로과(☎02-2241-3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고시 제2024-134호

## 도시계획시설[증산(가칭)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73(2008.05.22.)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61호(2021.12.09.)호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변경 결정된 증산(가칭)문화공원에 대하여 2024년 제10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은 평 구 청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

2. 위　　치: 은평구 증산동 263

3. 면　　적: 4,445.3㎡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원녹지과(☎02-351-8008)

# 증산문화공원(가칭)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은평구 증산동 263번지)

| 구 분 | | 변경 전 | | | | | | 변경 후 | | | | | | 비 고 |
|---|---|---|---|---|---|---|---|---|---|---|---|---|---|---|
| |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
| | | | | 동수 (동) | 바닥면적 (㎡) | 연면적 (㎡) | | | | 동수 (동) | 바닥면적 (㎡) | 연면적 (㎡) | | |
| 계 | | 4,595.50 | 1,894.80 | | | | 24 | 4,445.30 | 2,217.40 | 1 | 881.34 | 3,381.66 | 19 | 감 322.60㎡ (감 5기) |
| 기반시설 | 소 계 | 1,057.50 | 1,057.50 | | | | | 1,066.20 | 1,066.20 | | | | | 증 140.00㎡ |
| | 도 로 | 557.80 | 557.80 | | | | | 597.40 | 597.40 | | | | | 증 170.90㎡ |
| | 광 장 | 499.70 | 499.70 | | | | | 468.80 | 468.80 | | | | | 감 30.90㎡ |
| 조경시설 | | 116.00 | 116.00 | | | | | - | - | | | | 7 | 감 116.00㎡ (증 7기) |
| 휴양시설 | | 136.10 | 136.10 | | | | 11 | 95.50 | 95.50 | | | | 5 | 감 40.60㎡ (감 6기) |
| 유희시설 | | 524.50 | 524.50 | | | | 7 | - | - | | | | | 감 524.50㎡ (감 7기) |
| 운동시설 | | 60.70 | 60.70 | | | | 6 | 1,055.7 | 1,055.7 | 1 | 881.34 | 3,381.66 | 7 | 증 995.00㎡ (증 1기) |
| 교양시설 | | | |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 | 2,700.70 | | | | | | 2,227.90 | | | | | | 감 472.80㎡ |
| 시설율 (제한없음) | | 1,894.80 / 4,595.50 x 100 = 41.23% | | | | | | 2,217.40 / 4,445.30 x 100 = 49.88% | | | | | | |
| 건폐율 (법정 20%) | | 0 / 4,595.50 x 100 = 0.00% | | | | | | 881.34 / 4,445.30 x 100 = 19.83% | | | | | | |

## 2. 시설조서

| 구분 | 시설명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비고 |
|---|---|---|---|---|---|---|---|---|---|---|---|---|---|---|---|---|---|---|---|---|
| |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 규모 |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기)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 규모 |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기) | |
| 합 계 | | | 증산동 263 | 4,595.50 | 1,894.80 | | | | | 24 | | 증산동 263 | 4,445.30 | 2,217.40 | 철골 콘크리트 | 1동 | 881.34 | 3,381.66 | 19 | |
| 기반시설 | 소계 | | 증산동 263 | 1,057.50 | 1,057.50 | | | | | | | 증산동 263 | 1,066.20 | 1,066.20 | | | | | | 증 8.70㎡ |
| | 도로 | | | 557.80 | 557.80 | | | | | | | | 597.40 | 597.40 | | | | | | 증 39.60㎡ |
| | 광장 | 가 | | 499.70 | 499.70 | | | | | | 가 | | 468.80 | 468.80 | | | | | | 감 30.90㎡ |
| | | 가-1 | | (93.20) | (93.20) | | | | | | | | | | | | | | | 폐지 |
| | | | | | | | | | | | 가-1 | | (121.40) | (121.40) | | | | | | 신설 |
| | | 가-2 | | (158.60) | (158.60) | | | | | | | | | | | | | | | 폐지 |
| | | | | | | | | | | | 가-2 | | (73.70) | (73.70) | | | | | | 신설 |
| | | 가-3 | | (146.70) | (146.70) | | | | | | | | | | | | | | | 폐지 |
| | | | | | | | | | | | 가-3 | | (13.70) | (13.70) | | | | | | 신설 |
| | | 가-4 | | (101.20) | (101.20) | | | | | | | | | | | | | | | 폐지 |

| 구분 | 시설명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비고 |
|---|---|---|---|---|---|---|---|---|---|---|---|---|---|---|---|---|---|---|---|---|
| |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 규모 |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기)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 규모 |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기) | |
| | | | | | | | | | | | 가-4 | | (260.00) | (260.00) | | | | | | 신설 |
| 조경시설 | 소계 | | 증산동 263 | 116.00 | 116.00 | | | | | | | 증산동 263 | | | | | | | | 감 116.00㎡ (증 7기) |
| | 바닥분수 | 다 | | 116.00 | 116.00 | | | | | | | | | | | | | | | |
| 휴양시설 | 소계 | | 증산동 263 | 136.10 | 136.10 | | | | | 11 | | 증산동 263 | 95.50 | 95.50 | | | | | 5 | 감 40.60㎡ (감 6기) |
| | 휴게쉼터 | 나 | | 136.10 | 136.10 | | | | | | 나 | | 95.50 | 95.50 | | | | | | |
| | | 나-1 | | (69.20) | (69.20) | | | | | | | | | | | | | | | 폐지 |
| | | | | | | | | | | | 나-1 | | (26.60) | (26.60) | | | | | | 신설 |
| | | 나-2 | | (66.90) | (66.90) | | | | | | | | | | | | | | | 폐지 |
| | | | | | | | | | | | 나-2 | | (31.10) | (31.10) | | | | | | 신설 |
| | | | | | | | | | | | 나-3 | | (37.80) | (37.80) | | | | | | 신설 |
| | 파고라 | ④ | | | | | | | | 9 | | | | | | | | | 2 | (감 7기) |
| | 연식의자 | ⑤ | | | | | | | | 2 | | | | | | | | | 3 | (증 1기) |

| 구분 | 시설명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 비고 |
|---|---|---|---|---|---|---|---|---|---|---|---|---|---|---|---|---|---|---|---|---|
| |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공작물(기) | 부호 | 위치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공작물(기) | |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유희시설 | 소계 | | 증산동 263 | 524.50 | 524.50 | | | | | 7 | | 증산동 263 | - | - | | | | | - | 감 524.50㎡ (감 7기) |
| | 어린이놀이터 | 라 | | 524.50 | 524.50 | | | | | | | | | | | | | | | |
| | 조합놀이대 | ① | | | | | | | | 1 | | | | | | | | | | |
| | 회전놀이대 | ② | | | | | | | | 2 | | | | | | | | | | |
| | 흔들놀이대 | ③ | | | | | | | | 4 | | | | | | | | | | |
| 운동시설 | 소계 | | 증산동 263 | 60.70 | 60.70 | | | | | 6 | | 증산동 263 | 1,055.70 | 1,055.70 | 철근콘크리트 | 1동 | 881.34 | 3,381.66 | 7 | 증 995.00㎡ (증 1기) |
| | 야외운동공간 | 마 | | 60.70 | 60.70 | | | | | | | | 174.36 | 174.36 | | | | | | 증 113.66㎡ |
| | 체력단련시설 | ⑥ | | | | | | | | 6 | ⑥ | | | | | | | | 7 | (증 1기) |
| | 복합문화체육센터 | | | | | | | | | | 다 | | 881.34 | 881.34 | 철근콘크리트 | 1동 | 881.34 | 3,381.66 | | 신설 |
| 녹지및기타 | 소계 | | 증산동 263 | 2,700.70 | | | | | | | | 증산동 263 | 2,227.90 | | | | | | | 감 472.80㎡ |
| | 녹지 | | | 2,700.70 | | | | | | | | | 2,096.60 | | | | | | | 감 604.10㎡ |
| | 기타 | 마 | | | | | | | | | | | 131.3 | | | | | | | 증 131.30㎡ |

3. 도로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연장(m) | 면적(㎡)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
| 당초 | 합 계 | | | | 239.4 | 557.8 | | | | |
| 변경 | | | | | 371.2 | 597.4 | | | | |
| 당초 | 소로 | 소 계 | | | 0.0 | 0.0 | | | | |
| 변경 | | | | | 72.2 | 106.5 | | | | |
| 신설 | | 3 | 1 | 6.0 | 48.5 | 69.2 | 진입로 | 녹지 및 기타 | 체육센터 다 | 증 69.2㎡ |
| 신설 | | 3 | 2 | 6.0 | 23.7 | 37.3 | 진입로 | 부지경계 | 부지경계 | 증 37.3㎡ |
| 당초 | 산책로 | 소 계 | | | 239.4 | 557.8 | | | | |
| 변경 | | | | | 299.0 | 490.9 | | | | |
| 폐지 | | 3 | 1 | 3.0 | 49.9 | 117.8 | 진입로 | 부지경계 | 광장-1 | 감 117.8㎡ |
| 신설 | | 3 | 1 | 3.0 | 19.1 | 63.1 | 연결로 | 광장-1 | 복합문화체육센터 | 증 6.44㎡ |
| 폐지 | | 3 | 2 | 3.0 | 99.3 | 212.7 | 연결로 | 산책로-1 | 산책로-1 | 감 212.7㎡ |
| 신설 | | 3 | 2 | 3.0 | 19.9 | 65.9 | 연결로 | 복합문화체육센터 | 광장-2 | 증 65.9㎡ |
| 폐지 | | 3 | 3 | 1.5 | 33.9 | 107.0 | 진입로 | 부지경계 | 부지경계 | 감 107.0㎡ |
| 신설 | | 3 | 3 | 1.5 | 19.0 | 34.2 | 연결로 | 부지경계 | 산책로-1 | 증 34.2㎡ |
| 폐지 | | 3 | 4 | 1.5 | 49.7 | 99.9 | 연결로 | 광장-3 | 산책로-3 | 감 99.9㎡ |
| 신설 | | 3 | 4 | 1.5 | 59.0 | 32.8 | 연결로 | 산책로-2 | 산책로-2 | 증 32.8㎡ |
| 폐지 | | 3 | 5 | 1.5 | 6.6 | 20.4 | 연결로 | 광장-4 | 산책로-4 | 감 20.4㎡ |
| 신설 | | 3 | 5 | 1.5 | 6.6 | 11.8 | 연결로 | 산책로-2 | 복합문화체육센터 | 증 11.8㎡ |
| 신설 | | 3 | 6 | 1.5 | 19.4 | 10.8 | 연결로 | 복합문화체육센터 | 산책로-2 | 증 10.8㎡ |
| 신설 | | 3 | 7 | 1.5 | 35.6 | 63.9 | 연결로 | 산책로-2 | 광장-2 | 증 63.9㎡ |
| 신설 | | 3 | 8 | 1.5 | 37.9 | 68.3 | 연결로 | 광장-4 | 광장-3 | 증 68.3㎡ |
| 신설 | | 3 | 9 | 1~2 | 60.7 | 97.2 | 연결로 | 부지경계 | 소로-1 | 증 97.2㎡ |
| 신설 | | 3 | 10 | 2.0 | 21.8 | 42.9 | 연결로 | 부지경계 | 소로-1 | 증 42.9㎡ |

# 조성계획결정도(기정)

## 증산(가칭)문화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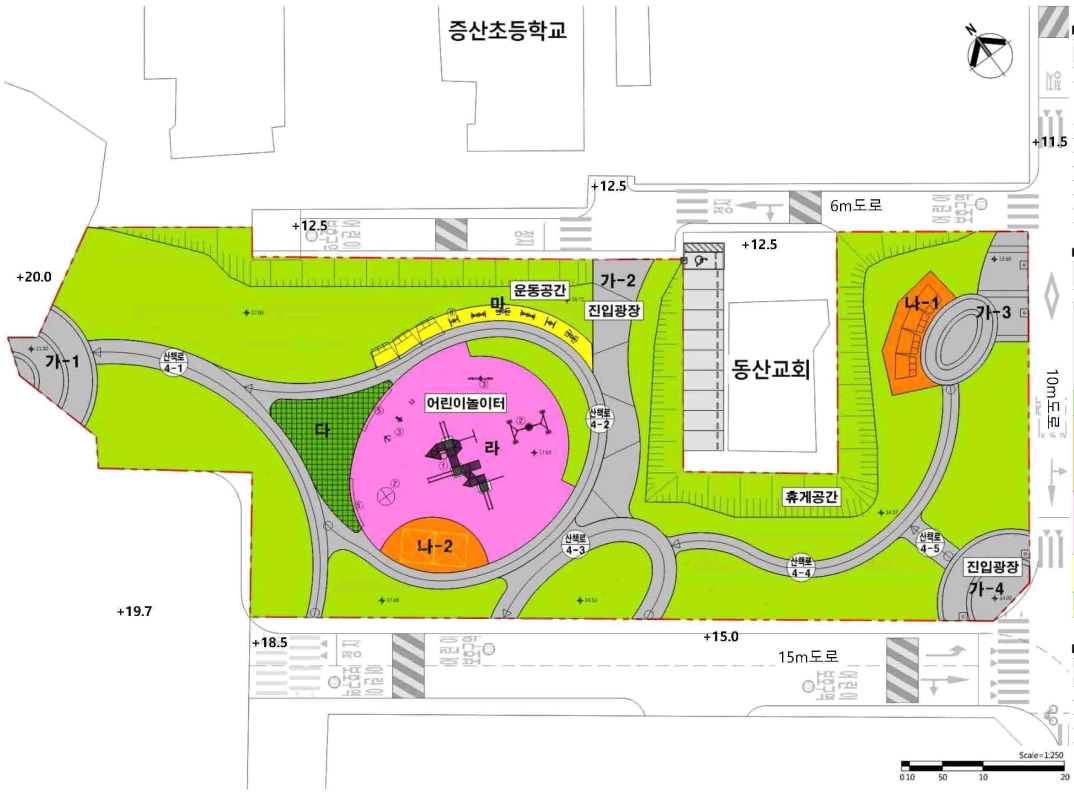


■총괄표

| 구분 |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축물 동수(동) |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 비고 |
|---|---|---|---|---|---|---|---|---|
| 계 | | 4,595.5 | 1,894.8 | - | - | - | 19 | |
| 기반시설 | 소계 | 1,057.5 | 1,057.5 | - | - | - | - | |
| | 도로 | 557.8 | 557.8 | - | - | - | - | |
| | 광장 | 499.7 | 499.7 | - | - | - | - | |
| 조경시설 | | 116.0 | 116.0 | - | - | - | 7 | |
| 휴양시설 | | 136.1 | 136.1 | - | - | - | 5 | |
| 유희시설 | | 524.5 | 524.5 | - | - | - | - | |
| 운동시설 | | 60.7 | 60.7 | - | - | - | 7 | |
| 교양시설 | | - |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 | 2,700.7 | - | - | - | - | - | |

■시설조서

| 구분 | | 부호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 비고 |
|---|---|---|---|---|---|---|---|---|---|---|
| 합계 | | | 4,595.5 | 1,894.8 | - | - | - | - | 24 | |
| 기반시설 | 소계 | | 1,057.5 | 1,057.5 | - | - | - | - | - | |
| | 도로 | | 557.8 | 557.8 | - | - | - | - | - | |
| | 광장 | 가 | 499.7 | 499.7 | - | - | - | - | - | |
| | | 가-1 | 93.2 | 93.2 | - | - | - | - | - | |
| | | 가-2 | 158.6 | 158.6 | - | - | - | - | - | |
| | | 가-3 | 146.7 | 146.7 | - | - | - | - | - | |
| | | 가-4 | 101.2 | 101.2 | - | - | - | - | - | |
| 조경시설 | 소계 | | 116.0 | 116.0 | - | - | - | - | - | |
| | 바닥분수 | 다 | 116.0 | 116.0 | - | - | - | - | - | |
| 휴양시설 | 소계 | | 136.1 | 136.1 | - | - | - | - | 11 | |
| | 휴게쉼터 | 나 | 136.1 | 136.1 | - | - | - | - | - | |
| | | 나-1 | 69.2 | 69.2 | - | - | - | - | - | |
| | | 나-2 | 66.9 | 66.9 | - | - | - | - | - | |
| | 파고라 | ④ | - | - | - | - | - | - | 9 | |
| | 앉식의자 | ⑤ | - | - | - | - | - | - | 2 | |
| 유희시설 | 소계 | | 524.5 | 524.5 | - | - | - | - | 7 | |
| | 어린이놀이터 | 라 | 524.5 | 524.5 | - | - | - | - | - | |
| | 조합놀이대 | ① | - | - | - | - | - | - | 1 | |
| | 회전놀이대 | ② | - | - | - | - | - | - | 2 | |
| | 흔들놀이대 | ③ | - | - | - | - | - | - | 4 | |
| 운동시설 | 소계 | | 60.7 | 60.7 | - | - | - | - | 6 | |
| | 야외운동공간 | 마 | 60.7 | 60.7 | - | - | - | - | - | |
| | 생활체육시설 | ⑥ | - | - | - | - | - | - | 6 | |
| 녹지 및 기타 | 소계 | | 2,700.7 | - | - | - | - | - | - | |
| | 녹지 | | 2,700.7 | - | - | - | - | - | - | |

■도로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연장 (m) | 면적 (㎡)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
| 합계 | | | | | | 557.8 | | | | |
| | 산책로 | 소계 | | | | 557.8 | | | | |
| 당초 | 산책로 | 4 | 1 | 3.0 | 49.9 | 117.8 | 진입로 | 부지경계 | 광장 가-1 | |
| - | 산책로 | 4 | 2 | 3.0 | 99.3 | 212.7 | 연결로 | 산책로 4-1 | 산책로 4-1 | |
| - | 산책로 | 4 | 3 | 1.5 | 33.9 | 107.0 | 진입로 | 부지경계 | 부지경계 | |
| - | 산책로 | 4 | 4 | 1.5 | 49.7 | 99.9 | 연결로 | 광장 가-3 | 산책로 4-3 | |
| - | 산책로 | 4 | 5 | 1.5 | 6.6 | 20.4 | 연결로 | 광장 가-4 | 산책로 4-4 | |

# 조성계획결정도(변경)

## 증산(가칭)문화공원

◈ 마포구고시 제2024-166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00-433 ~ 95-9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마 포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신설 | 소로 | 3 | - | 6 | 국지도로 | 54 | 성산동 200-433 | 성산동 95-9 | 일반도로 | - | - |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사유서

| 구분 | 시설명 | 결정 내용 | 결정 사유 |
|---|---|---|---|
| 신설 | 도로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br>- 위치 : 성산동 200-433 ~ 95-9간<br>- 규모 : B=6m, L=54m | 월드컵북로에서 모래내로5길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입안대상지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및 교통량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안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함 |

다. 지형도면의 작성

○ 마포구 교통건설국 도로개선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도로개선과(☏02-3153-975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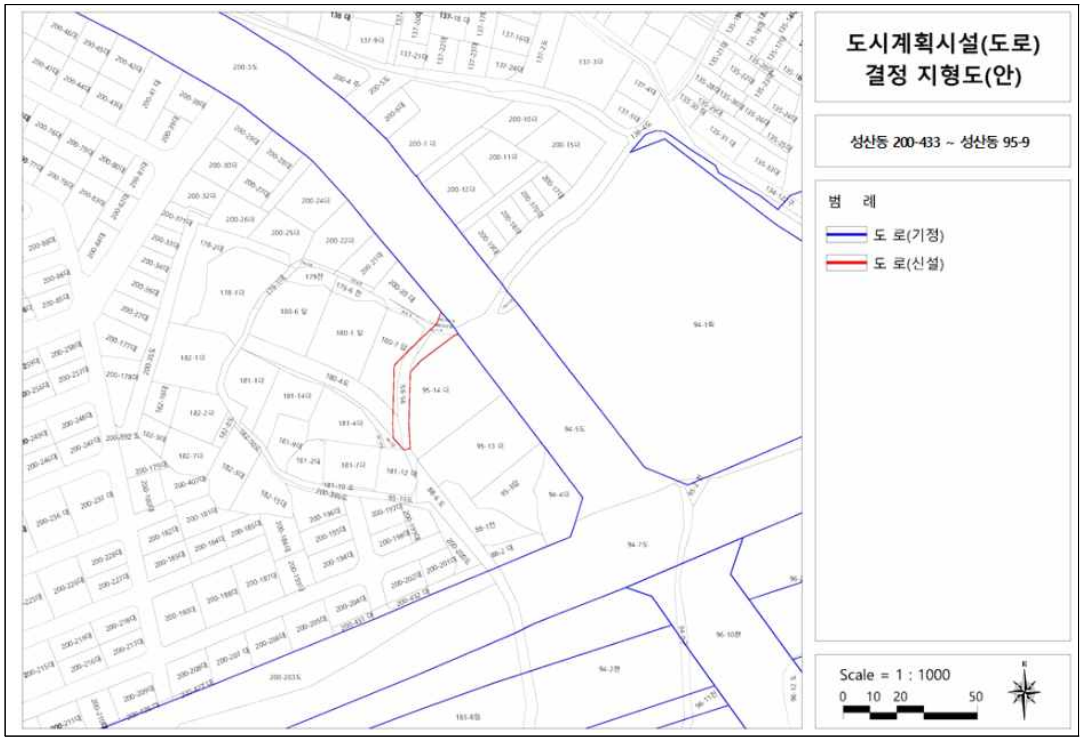


【상 세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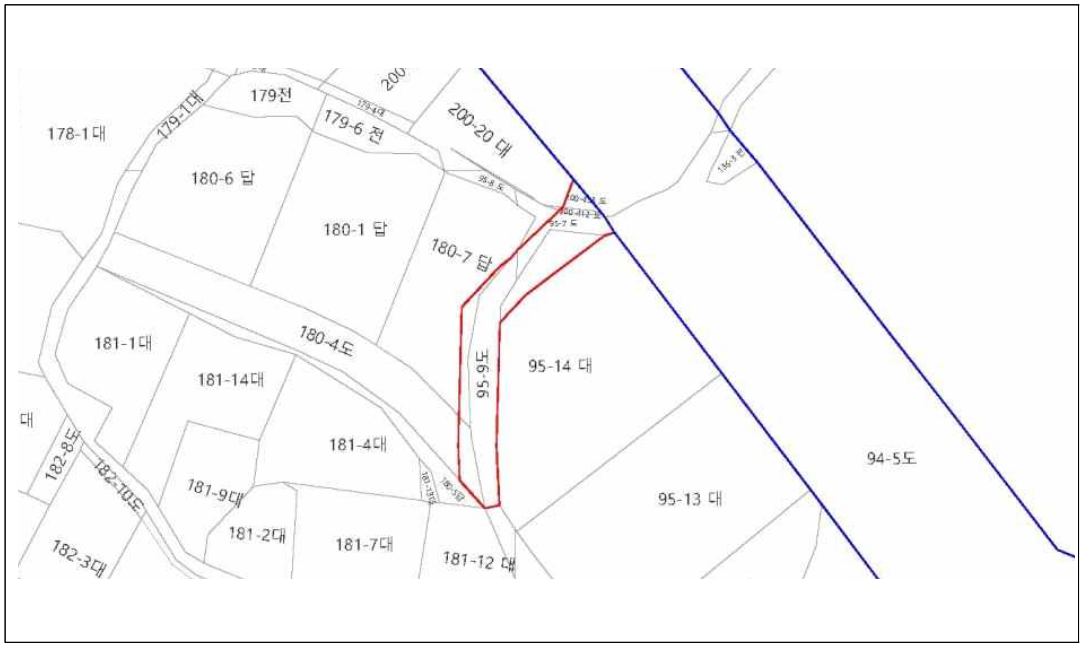

◈ 강서구고시 제2024-108호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강서구고시 제2024-37호(2024. 5. 23.)로 실시계획인가 된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02-2600-6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 규모 | 사업 시행자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
|---|---|---|---|
| 종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br>명칭: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사업 | 면적: 13,460.8㎡<br>내용: 사업부지 증설(증47㎡) | 이계환 외 2인<br>(토지소유자) | 강서구고시<br>제2022-137호<br>(2022. 12. 1.) |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인가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인가일로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소유자 주소 |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 비고 |
|---|---|---|---|---|---|---|---|---|---|
| 1 | 외발산동 | 411-41 | 잡 | 37 | 37 | 이계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222 | | |
| | | | | | | 이승훈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6길 41 103동 503호 | | |
| | | | | | | 이승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6길 15-20 101동 2103호 | | |
| | | | | | | 이서준 | 〃 | | 동의서 첨부 |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대장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소유자 주소 |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 비고 |
|---|---|---|---|---|---|---|---|---|---|
| 2 | 외발산동 | 412-5 | 잡 | 10 | 10 | 이계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222 | | |
| | | | | | | 이승훈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6길 41 103동 503호 | | |
| | | | | | | 이승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6길 15-20 101동 2103호 | | |
| | | | | | | 이서준 | 〃 | | 동의서 첨부 |
| 계 | | | | 47 | 47 | | | | |

라. 위 치 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작구고시 제2024-168호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84호(2019.8.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54호(2020.5.21.), 제2020-127호(2020.9.10.), 제2021-293호(2021.12.9.), 제2023-149호(2023.12.21.)로 실시계획인가(변경) 된 용봉정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용봉정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72-27 등 2필지
  ○ 면 적 : 189.8㎡
  ○ 내 용 : 토지보상 189.8㎡,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까지
  (변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게재생략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게재생략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노량진로 74, ☎02-820-9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고시 제2024-169호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2024-104호(2024.2.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174호(2020.11.26.), 제2020-200호(2020.12.31.), 제2021-229호(2021.9.30.), 제2022-193호(2022.12.22.), 제2023-141호(2023.12.21.)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상도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254 등 16필지
  ○ 면　　적 : 5,990㎡
  ○ 내　　용 : 토지보상 5,990㎡, 지장물 보상, 영업권 보상,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까지
  (변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노량진로 74, ☎02-820-9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고시 제2024-170호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04호(2024.2.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9-35호(2019.5.9.), 제2019-57호(2019.7.18.), 제2019-78호(2019.10.10.), 제2020-196호(2020.12.17.), 제2021-292호(2021.12.09.), 제2023-139호(2023.12.21.)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상도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 명 칭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248 등 12필지
- ○ 면 적 : 18,315㎡
- ○ 내 용 : 토지보상 18,315㎡, 지장물 보상,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까지
(변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02-820-9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 고시 제2024-171호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56호(2020.11.1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61호(2020.06.04.)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195호(2020.12.17.), 제2021-131호(2021.06.24.), 제2021-294호(2021.12.09.), 제2023-148호(2023.12.2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노량진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노량진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0-17 등 20필지
  ○ 면 적 : 1,869.5㎡
  ○ 내 용 : 토지보상 1,869.5㎡, 지장물 보상,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까지
  (변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9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고시 제2024-172호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87호(1962.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91호(2021.2.1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9-60호(2019.7.18.), 제2020-162호(2020.11.12.), 제2021-304호(2021.12.16.), 제2022-90호(2022.6.2.), 제2023-140호(2023.12.21.)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현충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 명 칭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현충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산88-76 등 18필지
- ○ 면 적 : 82,883.9㎡
- ○ 내 용 : 토지보상 82,883.9㎡, 지장물 보상,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까지
(변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02-820-98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고시 제2024-173호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02호(2021.7.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9-45호(2019.6.27.), 제2019-69호(2019.8.16.), 제2020-70호(2020.6.18.), 제2021-283호(2021.12.2.), 제2023-145호(2023.12.21.)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까치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11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까치산근린공원-2지역)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32-123 등 12필지
  ○ 면　　적 : 60,553㎡
  ○ 내　　용 : 토지보상 60,553㎡, 지장물 보상,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변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02-820-1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고시 제2024-174호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87호(1962.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91호(2021.2.18.)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62호(2020.6.4.), 제2020-148호(2020.10.15.), 제2021-286호(2021.12.2.), 제2023-146호(2023.12.21.)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현충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현충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49-74 등 32필지
  ○ 면　　적 : 15,790㎡
  ○ 내　　용 : 토지보상 15,790㎡, 지장물 보상,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까지
  (변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02-820-98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고시 제2024-176호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56호(2020.11.1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60호(2020.6.4.), 제2020-172호(2020.11.19.), 제2022-181호(2022.12.08.), 제2023-150호(2023.12.21.)로 실시계획인가(변경) 된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3-9번지 일대
  ○ 면 적 : 15,964㎡
  ○ 내 용 : 공원조성(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지장물 1동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변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노량진로 74, ☎02-820-98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고시 제2024-138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7호(1973.12.2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91호(2020.04.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158호(2022.12.0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신림동 253-2 ~ 신림동 255-5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기간연장)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53-2 ~ 신림동 255-5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신림동 253-2 ~ 신림동 255-5 간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규모(변경없음) : 폭원 4~6m, 연장 112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바. 사업기간(변경) : 2020. 5. 7. ~ 2025. 12. 31.(기정 2024.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53-2 ~ 신림동 255-5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림동 253-2 ~ 신림동 255-5 간 도로개설공사
○ 총사업규모 : 폭원 4~6m, 연장 112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 연번 | 소재지 |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지분율 | 비고 |
|---|---|---|---|---|---|---|---|---|---|---|---|---|---|
| | 동 | 지번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기타권리 | | |
| 1 | 신림 | 253-32 | 도로 | 10 | 10 | 도로 | 관악구 | | | | | | |
| 2 | 신림 | 253-64 | 도로 | 38 | 38 | 도로 | 관악구 | | | | | | 253-33 |
| 3 | 신림 | 253-59 | 대 | 18 | 18 | 도로 | 관악구 | | | | | | 253-14 |
| 4 | 신림 | 253-65 | 도로 | 15 | 15 | 도로 | 관악구 | | | | | | 253-34 |
| 5 | 신림 | 253-60 | 대 | 29 | 29 | 대지 | 관악구 | | | | | | 253-15 |
| 6 | 신림 | 253-68 | 도로 | 7 | 7 | 도로 | 관악구 | | | | | | 253-45 |
| 7 | 신림 | 253-66 | 도로 | 11 | 11 | 도로 | 관악구 | | | | | | 253-35 |
| 8 | 신림 | 253-69 | 도로 | 6 | 6 | 도로 | 관악구 | | | | | | 253-47 |
| 9 | 신림 | 253-61 | 대 | 18 | 18 | 도로 | 관악구 | | | | | | 253-17 |
| 10 | 신림 | 253-67 | 도로 | 29 | 29 | 도로 | 관악구 | | | | | | 253-36 |
| 11 | 신림 | 253-63 | 도로 | 6 | 6 | 도로 | 관악구 | | | | | | 253-30 |
| 12 | 신림 | 253-53 | 전 | 7 | 7 | 도로 | 관악구 | | | | | | |
| 13 | 신림 | 253-37 | 도로 | 10 | 10 | 도로 | 관악구 | | | | | | |
| 14 | 신림 | 253-62 | 도로 | 37 | 37 | 도로 | 관악구 | | | | | | 253-29 |
| 15 | 신림 | 253-54 | 도로 | 15 | 15 | 도로 | 관악구 | | | | | | |
| 16 | 신림 | 253-38 | 도로 | 7 | 7 | 도로 | 관악구 | | | | | | |
| 17 | 신림 | 253-55 | 도로 | 31 | 31 | 도로 | 관악구 | | | | | | |

| 연번 | 소재지 |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지분율 | 비고 |
|---|---|---|---|---|---|---|---|---|---|---|---|---|---|
| | 동 | 지번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기타권리 | | |
| 18 | 신림 | 818-17 | 구거 | 571 | 53 | 도로 | 국 | | | | | | |
| 19 | 신림 | 818-67 | 구거 | 81 | 81 | 도로 | 국 | | | | | | |
| 20 | 신림 | 257-41 | 도로 | 241 | 4 | 도로 | 관악구 | | | | | | 257-30 |
| 21 | 신림 | 257-25 | 도로 | 3 | 3 | 도로 | 관악구 | | | | | | |

# 위 치 도

□ 공사명 : 신림동 253-2 ~ 신림동 255-5 간 도로개설공사-№12

N

S

| 범 례 | |
|---|---|
| 금회시공 | 적색 |
| 기 시 공 | 청색 |
| 장래시공 | 황색 |

◈ 관악구고시 제2024-139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7호(1973.12.2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39호(2021.03.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184호(2022.12.0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신림동 703-1 ~ 신림동 654-33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기간연장)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03-1 ~ 신림동 654-33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신림동 703-1 ~ 신림동 654-33 간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규모(변경없음) : 폭원 6m, 연장 400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바. 사업기간(변경) : 2020. 6. 18. ~ 2025. 12. 31.(기정 2024.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03-1 ~ 신림동 654-33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림동 703-1 ~ 신림동 654-33 간 도로개설사업
○ 총사업규모 : 폭원 6m, 연장 400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 연번 | 소재지 |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지분율 | 비고 |
|---|---|---|---|---|---|---|---|---|---|---|---|---|---|
| | 동 | 지번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기타권리 | | |
| 1 | 신림 | 808-161 | 하천 | 7,167 | 1,952 | 도로 | 국 | | | | | | |
| 2 | 신림 | 703-28 | 대 | 15 | 15 | 도로 | 관악구 | | | | | | 703-3 |
| 3 | 신림 | 703-27 | 대 | 1 | 1 | 도로 | 관악구 | | | | | | 703-2 |
| 4 | 신림 | 637-7 | 도로 | 66 | 66 | 도로 | 관악구 | | | | | | |
| 5 | 신림 | 702-31 | 대 | 2 | 2 | 도로 | 관악구 | | | | | | 702-17 |
| 6 | 신림 | 702-30 | 대 | 2 | 2 | 도로 | 관악구 | | | | | | 702-1 |
| 7 | 신림 | 639-29 | 도로 | 7 | 7 | 도로 | 관악구 | | | | | | |
| 8 | 신림 | 700-60 | 도로 | 36 | 36 | 도로 | 관악구 | | | | | | |
| 9 | 신림 | 700-61 | 도로 | 7 | 7 | 도로 | 관악구 | | | | | | |
| 10 | 신림 | 655-16 | 도로 | 83 | 83 | 도로 | 관악구 | | | | | | |
| 11 | 신림 | 655-122 | 도로 | 73 | 73 | 도로 | 관악구 | | | | | | 655-99 |
| 12 | 신림 | 650-53 | 도로 | 17 | 17 | 도로 | 관악구 | | | | | | |
| 13 | 신림 | 654-57 | 도로 | 11 | 11 | 도로 | 이*현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 | | | | 미등기 |
| 14 | 신림 | 653-5 | 도로 | 36 | 36 | 도로 | 관악구 | | | | | | |
| 15 | 신림 | 654-58 | 도로 | 3 | 3 | 도로 | 관악구 | | | | | | |

| 연번 | 소재지 |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지분율 | 비고 |
|---|---|---|---|---|---|---|---|---|---|---|---|---|---|
| | 동 | 지번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기타권리 | | |
| 16 | 신림 | 653-2 | 도로 | 10 | 10 | 도로 | 관악구 | | | | | | |
| 17 | 신림 | 654-59 | 도로 | 10 | 10 | 도로 | 관악구 | | | | | | |
| 18 | 신림 | 653-3 | 도로 | 3 | 3 | 도로 | 관악구 | | | | | | |
| 19 | 신림 | 654-24 | 도로 | 747 | 528 | 도로 | 관악구 | | | | | | |

# 위 치 도

□ 공사명 : 신림동 703-1 ~ 신림동 654-33 간 도로개설공사-№32

| 범 례 | |
|---|---|
| 금회시공 | 적색 |
| 기 시 공 | 청색 |
| 장래시공 | 황색 |

◈ 관악구고시 제2024-140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7호(1973.12.2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135호(2020.06.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192호(2022.12.08.)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신림동 706-2 ~ 신림동 산 111-1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기간연장)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06-2 ~ 신림동 산 111-1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신림동 706-2 ~ 신림동 산 111-1 간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규모(변경없음) : 폭원 8m, 연장 395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바. 사업기간(변경) : 2020. 6. 18. ~ 2025. 12. 31.(기정 2024.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06-2 ~ 신림동 산 111-1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림동 706-2 ~ 신림동 산 111-1 간 도로개설공사
○ 총사업규모 : 폭원 8m, 연장 395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 연번 | 소재지 |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지분율 | 비고 |
|---|---|---|---|---|---|---|---|---|---|---|---|---|---|
| | 동 | 지번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기타 권리 | | |
| 1 | 신림 | 885-2 | 도로 | 59 | 59 | 도로 | 국 | | | | | | |
| 2 | 신림 | 718-1 | 도로 | 335 | 335 | 도로 | 관악구 | | | | | | |
| 3 | 신림 | 708-25 | 도로 | 221 | 50 | 도로 | 관악구 | | | | | | |
| 4 | 신림 | 706-3 | 도로 | 89 | 89 | 도로 | 관악구 | | | | | | |
| 5 | 신림 | 718-14 | 전 | 8 | 8 | 도로 | 관악구 | | | | | | |
| 6 | 신림 | 706-58 | 도로 | 128 | 128 | 도로 | 관악구 | | | | | | |
| 7 | 신림 | 706-136 | 도로 | 10 | 10 | 도로 | 관악구 | | | | | | |
| 8 | 신림 | 706-55 | 도로 | 258 | 258 | 도로 | 서울시 | | | | | 1889.52/5418 | |
| | | | | | | | 관악구 | | | | | 3525/5418 | |
| 9 | 신림 | 706-84 | 도로 | 66 | 66 | 도로 | 관악구 | | | | | | |
| 10 | 신림 | 706-109 | 도로 | 43 | 43 | 도로 | 관악구 | | | | | | |

# 위 치 도

□ 공사명 : 신림동 706-2 ~ 신림동 885-2 간 도로개설공사-№49

N

S

| 범 례 | |
|---|---|
| 금회시공 | 적색 |
| 기 시 공 | 청색 |
| 장래시공 | 황색 |

◈ 관악구고시 제2024-141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 1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117호(2020. 6.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83호(2023.8.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한 「봉천동 41-301 ~ 봉천동 32-2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기간연장)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1-301 ~ 32-2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봉천동 41-301 ~ 봉천동 32-2 간 도로개설공사
라. 총사업규모(변경없음) : 폭원 6m, 연장 190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바. 사업기간(변경) : 2020. 6. 18. ~ 2025. 12. 31.(기정 2024.12.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 별첨

#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1-301 ~ 봉천동 32-2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장기미집행 31번도로
○ 총사업규모 : 폭원 6m, 연장 190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 연번 | 소재지 |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지분율 | 비고(분할전지번) |
|---|---|---|---|---|---|---|---|---|---|---|---|---|---|
| | 동 | 지번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기타권리 | | |
| 1 | 봉천 | 738-56 | 천 | 2,019 | 500 | 현황도로 | 국유지 | | | | | | |
| 2 | 봉천 | 791-2 | 도로 | 370 | 370 | 현황도로 | 국유지 | | | | | | |
| 3 | 봉천 | 47-21 | 도로 | 6 | 6 | 현황도로 | 관악구 | | | | | | |
| 4 | 봉천 | 47-20 | 도로 | 24 | 24 | 현황도로 | 안 * 억 | 관악구 봉천동 **-* | | | | | |
| 5 | 봉천 | 47-19 | 도로 | 16 | 16 | 현황도로 | 양 * 석 | 관악구 중앙2길 ** | | | | | |
| 6 | 봉천 | 41-892 | 도로 | 52 | 17 | 현황도로 | 관악구 | | | | | | |
| 7 | 봉천 | 44-4 | 대지 | 49 | 49 | 주차장 | 김 * 진 | 관악구 중앙*길 ** | | | | 12/14 | |
| | | | | | | | 관악구 | | | | | 2/14 | |
| 8 | 봉천 | 45-5 | 도로 | 53 | 11 | 현황도로 | 관악구 | | | | | | |
| 9 | 봉천 | 44-13 | 대지 | 2 | 2 | 주차장 | 관악구 | | | | | | |
| 10 | 봉천 | 44-12 | 대지 | 7 | 7 | 주차장 | 관악구 | | | | | | |
| 11 | 봉천 | 45-8 | 대지 | 1 | 1 | 현황도로 | 이 * 완 | 관악구 봉천동 **-* | | | | | |
| 12 | 봉천 | 45-7 | 대지 | 5 | 5 | 관악구 | | | | | | | |

| 연번 | 소재지 |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지분율 | 비고(분할전지번) |
|---|---|---|---|---|---|---|---|---|---|---|---|---|---|
| | 동 | 지번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기타권리 | | |
| 13 | 봉천 | 41-331 | 도로 | 136 | 136 | 관악구 | | | | | | | |
| 14 | 봉천 | 41-909 | 대지 | 1 | 1 | 현황도로 | 김 * 옥 | 관악구 봉천동 **-*** | 한국주택금융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근저당 | | 41-303 |
| 15 | 봉천 | 41-858 | 대지 | 30 | 30 | 현황도로 | 관악구 | | | | | | |

# 위 치 도

□ 공사명 : 봉천동 41-301~32-2간 도로개설공사-№31

N

S

| 범 례 | |
|---|---|
| 금회시공 | 적색 |
| 기 시 공 | 청색 |
| 장래시공 | 황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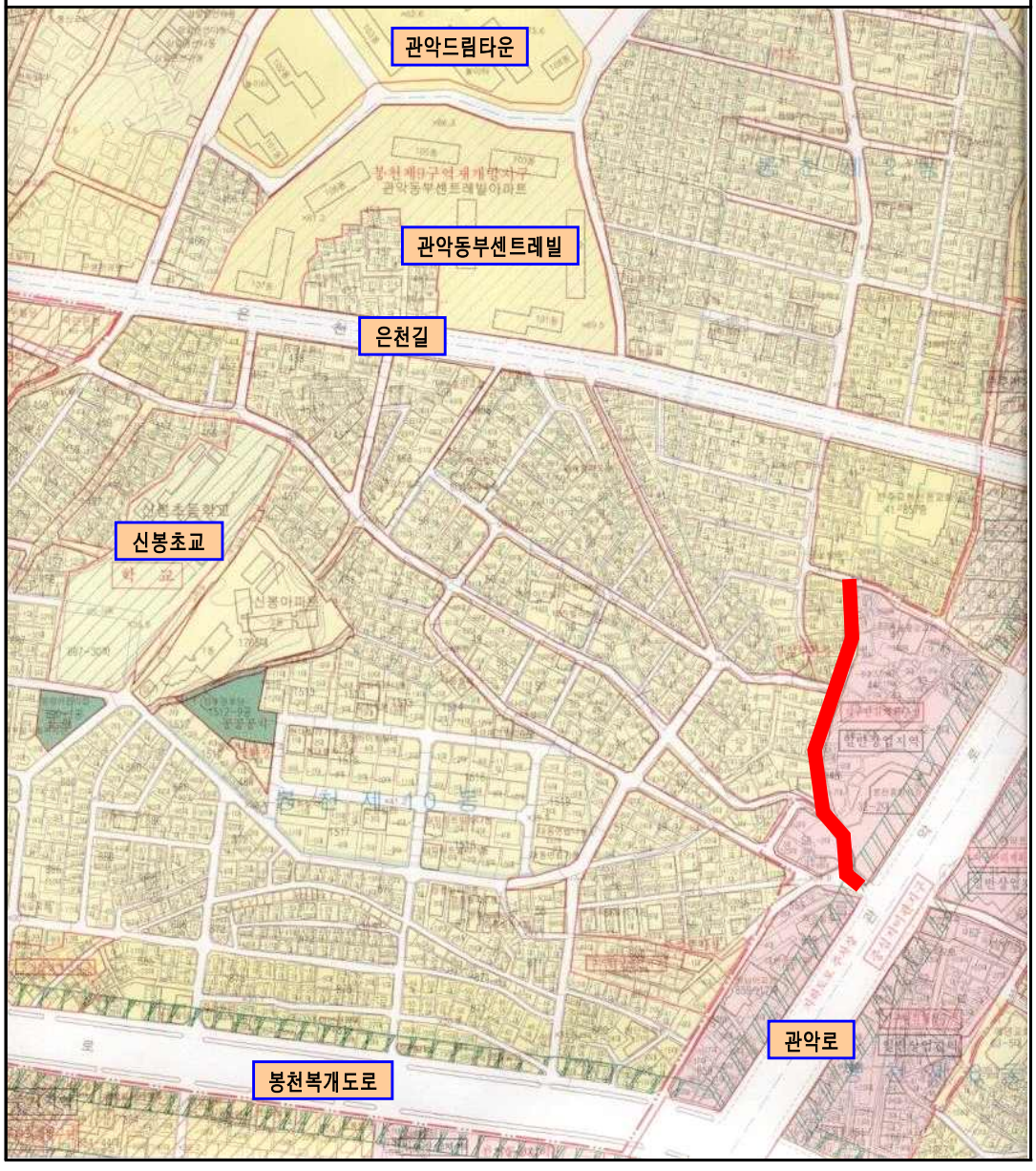

◈ 관악구고시 제2024-142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호(1972. 1. 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131호(2020.6.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177호(2022.1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사업기간변경) 고시한「봉천동 719-25~719-41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기간연장)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19-25~719-41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봉천동 719-25~719-41간 도로개설공사
라. 총사업규모(변경없음) : 폭원 4~10m, 연장 147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바. 사업기간(변경) : 2020. 6. 18. ~ 2025. 12. 31.(기정 2024.12.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 별첨

#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19-25 ~ 봉천동 719-41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장기미집행 45번도로
○ 총사업규모 : 폭원 4~10m, 연장 147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 연번 | 소재지 |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지분율 | 비고(분할전지번) |
|---|---|---|---|---|---|---|---|---|---|---|---|---|---|
| | 동 | 지번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기타권리 | | |
| 1 | 봉천 | 719-12 | 도로 | 394 | 332 | 현황도로 | 관악구 | | | | | | |
| 2 | 봉천 | 719-61 | 도로 | 287 | 287 | 현황도로 | 유원* | 서초구 서초동 ****-**, 디-*** | | | | 1/6 | 719-43 |
| | | | | | | | 유형* | 성북구 삼선동2가 *** | | | | 1/6 | |
| | | | | | | | 유이*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 | | | | 1/6 | |
| | | | | | | | 유정* | 서초구 방배동 ****-* 한****스 ***-**** | | | | 1/6 | |
| | | | | | | | 유상* | 광진구 천호대로137길 **-**,*동***호 | | | | 1/6 | |
| | | | | | | | 유*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 ***동****호 | | | | 1/6 | |
| 3 | 봉천 | 719-41 | 대지 | 192 | 2 | 현황도로 | 김*희 | 관악구 보라매로6길 **(봉천동) | 농협은행주식회사(독산동지점) |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 근저당 | | |

| 연번 | 소재지 |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지분율 | 비고(분할전지번) |
|---|---|---|---|---|---|---|---|---|---|---|---|---|---|
| | 동 | 지번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기타권리 | | |
| 4 | 봉천 | 719-58 | 도로 | 4 | 4 | 현황도로 | 권*식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 ***동 ***호 | | | | | |
| | | | | | | | 배*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 ***동 ***호 | | | | | |
| | | | | | | | 이*규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조산서재골로 **-*, ***동 ***호 | | | | | |

# 위 치 도

□ 공사명 : 봉천동 719-25~719-41간 도로개설공사-No.45

N

S

| 범 례 | |
|---|---|
| 금회시공 | 적색 |
| 기 시 공 | 청색 |
| 장래시공 | 황색 |

◈ 관악구고시 제2024-143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호(1972. 1. 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154호(2021. 11. 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4-23호(2024. 2. 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정정)고시한 「봉천동 719-41 ~ 봉천동 716-1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기간연장)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19-41 ~ 716-1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봉천동 719-41 ~ 봉천동 716-1 간 도로개설공사
라. 총사업규모(변경없음) : 폭원 6~10m, 연장 200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바. 사업기간(변경) : 2020. 6. 18. ~ 2025. 12. 31.(기정 2024.12.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 별첨

#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19-41 ~ 봉천동 716-1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장기미집행 46번도로
○ 총사업규모 : 폭원 6~10m, 연장 200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 연번 | 소재지 |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지분율 | 비고(분할전 지번) |
|---|---|---|---|---|---|---|---|---|---|---|---|---|---|
| | 동 | 지번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기타권리 | | |
| 1 | 봉천 | 715-75 | 도로 | 66 | 66 | 현황도로 | 김*남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31나길 **, *동****호 | | | | 5/15 | |
| | | | | | | | 관악구 | | | | | 10/15 | |
| 2 | 봉천 | 715-189 | 도로 | 17 | 17 | 현황도로 | 관악구 | | | | | | |
| 3 | 봉천 | 715-194 | 도로 | 4 | 4 | 현황도로 | 관악구 | | | | | | |
| 4 | 봉천 | 715-201 | 도로 | 19 | 19 | 현황도로 | 김*남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31나길 **, *동****호 | | | | 5/15 | 715-200 |
| | | | | | | | 관악구 | | | | | 10/15 | |
| 5 | 봉천 | 715-105 | 잡 | 3 | 3 | 현황도로 | 홍*옥 | 관악구 봉천동 ***-** | | | | | |
| 6 | 봉천 | 715-104 | 잡 | 3 | 3 | 현황도로 | 홍*옥 | 관악구 봉천동 ***-** | | | | | |
| 7 | 봉천 | 715-197 | 대 | 9 | 9 | 현황도로 | 이*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역길 ***,***호(봉천동) | | | | 1/2 | 715-18 |
| | | | | | | | 안*숙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역길 ***,***호(봉천동) | | | | 1/2 | |
| 8 | 봉천 | 715-198 | 대 | 1 | 1 | 현황도로 | 이*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역길 ***, ***호(봉천동) | | | | 1/2 | 715-18 |
| | | | | | | | 안*숙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역길 ***,***호(봉천동) | | | | 1/2 | |

| 연번 | 소재지 |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지분율 | 비고(분할전 지번) |
|---|---|---|---|---|---|---|---|---|---|---|---|---|---|
| | 동 | 지번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기타권리 | | |
| 9 | 봉천 | 843 | 구거 | 225 | 203 | 현황도로 | 국유지 | | | | | | |
| 10 | 봉천 | 715-199 | 대 | 2 | 2 | 현황도로 | 신*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6길 **, (반포동) | | | | 11.718/356 | 715-158 |
| | | | | | | | 신*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6길 **, (반포동) |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70-61 | 근저당 | 11.718/356 | |
| | | | | | | | 김*숙 |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길 **(봉천동) | 주식회사 신한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20(태평로2가) | 근저당 | 23.938/356 | |
| | | | | | | | 김*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6다길 *, ***호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술실대역지점) | 근저당 | 23.985/356 | |
| | | | | | | | 박*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1길 **-*(신림동) |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70-61 | 근저당 | 23.436/356 | |
| | | | | | | | 김*엽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28가길 **, ***호(봉천동) | | | | 23.938/356 | |
| | | | | | | | 이*도 |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6다길 *, ***호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보라매종합금융센터) | 근저당 | 11.9925/356 | |
| | | | | | | | 강*화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41길 **, ***호 | | | | 11.9925/356 | |
| | | | | | | | 최*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78길 *(신림동) |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70-61 | 근저당 | 23.436/356 | |
| | | | | | | | 홍*숙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봉천동) | 주식회사 신한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20(태평로2가) | 근저당 | 23.938/356 | |
| | | | | | | | 양*진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9길 **-*, ***호(봉천동) | | | | 23.985/356 | |
| | | | | | | | 문*현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 ***동 ***호 | | | | 23.436/356 | |
| | | | | | | | 박*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5길 *-*, ***호 | | | | 23.938/356 | |
| | | | | | | | 박*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길 ***-*, ***호 | | | | 11.9925/356 | |
| | | | | | | | 이*사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길 ***-*, ***호 | | | | 11.9925/356 | |
| | | | | | | | 김*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근저당 | 22.641/ | |

| 연번 | 소재지 |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지분율 | 비고(분할전 지번) |
|---|---|---|---|---|---|---|---|---|---|---|---|---|---|
| | 동 | 지번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기타권리 | | |
| | | | | | | | | 당곡6다길 *, ***호 | 국민은행 |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마들역지점) | | 356 | |
| | | | | | | | 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7가길 * | 주식회사 신한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시흥동지점) | 근저당 | 23.938/356 | |
| | | | | | | | 박*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6다길 **-*, ***호 (봉천동)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봉천중앙지점) | 근저당 | 23.985/356 | |
| 11 | 봉천 | 840-1 | 도로 | 2 | 2 | 현황도로 | 국유지 | | | | | | |
| 12 | 봉천 | 841 | 도로 | 109 | 71 | 현황도로 | 국유지 | | | | | | |
| 13 | 봉천 | 715-52 | 대 | 7 | 7 | 현황도로 | 김 * 호 | 중구 신당동 **-* | | | | | |
| 14 | 봉천 | 715-20 | 대 | 83 | 61 | 현황도로 | 시유지 | | | | | | |

# 위 치 도

□ 공사명 : 봉천동 719-41~716-1간 도로개설공사-No.46

N

S

| 범 례 | |
|---|---|
| 금회시공 | 적색 |
| 기 시 공 | 청색 |
| 장래시공 | 황색 |

◈ 관악구고시 제2024-144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호(1972. 1. 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133호(2020. 6.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182호(2022.12.8.)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기간 변경) 고시한「봉천동 465 ~ 봉천동 466-1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기간연장)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65 ~ 466-1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봉천동 465 ~ 466-1간 도로개설공사
라. 총사업규모(변경없음) : 폭원 8m, 연장 40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바. 사업기간(변경) : 2020. 6. 18. ~ 2025. 12. 31.(기정 2024.12.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 별첨

#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65 ~ 봉천동 466-1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장기미집행 47번도로
○ 총사업규모 : 폭원 8m, 연장 40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 연번 | 소재지 |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지분율 | 비고 |
|---|---|---|---|---|---|---|---|---|---|---|---|---|---|
| | 동 | 지번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기타권리 | | |
| 1 | 봉천 | 738-75 | 천 | 892 | 203 | 현황도로 | 국유지 | | | | | | |
| 2 | 봉천 | 465-6 | 도로 | 7 | 7 | 현황도로 | 김*순 | 동작구 신대방동 589-*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채무자 김*규 | 근저당/지상권 | 1/6 | |
| | | | | | | | 김기* | 관악구 봉천동 4** | | | | 1/6 | |
| | | | | | | | 김*매 | 관악구 봉천동 4** | | | | 1/6 | |
| | | | | | | | 김*석 | 관악구 봉천동 463-** | | | | 1/6 | |
| | | | | | | | 김*전 | 관악구 봉천동 ** | | | | 1/6 | |
| | | | | | | | 김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 *층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채무자 김*규 | 근저당/지상권 | 1/6 | |
| | | | | | | | | | 김*훈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150번길 **, ***동 ***호 | 근저당 | | |
| 3 | 봉천 | 466-19 | 도로 | 4 | 4 | 현황도로 | 시유지 | | | | | | |

# 위 치 도

□ 공사명 : 봉천동 465~466-1간 도로개설공사-№47

N

S

| 범 례 | |
|---|---|
| 금회시공 | 적색 |
| 기 시 공 | 청색 |
| 장래시공 | 황색 |

◈ 서초구고시 제2024-245호

## 도시계획시설사업(말죽거리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21-396호(2021. 7. 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3-385호(2023. 9. 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20-2번지 일대의 말죽거리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말죽거리근린공원)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고시 제2019-112호(2019. 6. 20.), 서초구 고시 제2020-33호(2020. 2. 27.), 서초구 고시 제2021-279호(2021. 12. 30.)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초구 공고 제2024-2504호(2024. 11. 28.)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7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1) 변 경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20-2 등 36필지
  2) 변 경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20-2 등 38필지
  3) 변경사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추진과정에서 필지 분할 발생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명　　칭: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
  3) 내　　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다. 사업의 면적: 132,020.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 행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변 경 전: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 변 경 후: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변경사유: 공원 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시일 소요
사.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아. 공원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에 관한 사항: 붙임(토지조서) 참조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조서 1부. 끝.

[붙임-토지조서] 도시계획시설사업(말죽거리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

| 구분 | 연번 | 법 정 동 | 지 번 | 지목 | 공부상 면적(㎡) | 도시계획시설 (공원) 면적(㎡) | 소유자 | 비고 |
|---|---|---|---|---|---|---|---|---|
| 기정 | 계 | | 36필지 | | | 132,020.3 | | 증) 2필지 |
| 변경 | 계 | | 38필지 | | | 132,020.3 | | |
| 기정 | 1 | 서초구 서초동 | 1180-10 | 수도용지 | 128 | 128 | 국 | |
| 변경 | 1 | 서초구 서초동 | 1180-10 | 수도용지 | 128 | 128 | 국 | |
| 기정 | 2 | 서초구 서초동 | 257-2 | 전 | 281 | 281 | 시 | |
| 변경 | 2 | 서초구 서초동 | 257-2 | 전 | 281 | 281 | 시 | |
| 기정 | 3 | 서초구 서초동 | 258-2 | 전 | 529 | 529 | 시 | |
| 변경 | 3 | 서초구 서초동 | 258-2 | 전 | 529 | 529 | 시 | |
| 기정 | 4 | 서초구 서초동 | 269-1 | 전 | 6 | 6 | 시 | |
| 변경 | 4 | 서초구 서초동 | 269-1 | 전 | 6 | 6 | 시 | |
| 기정 | 5 | 서초구 서초동 | 269-4 | 수도용지 | 13,884 | 13,884 | 시 | |
| 변경 | 5 | 서초구 서초동 | 269-4 | 수도용지 | 13,884 | 13,884 | 시 | |
| 기정 | 6 | 서초구 서초동 | 269-5 | 임야 | 190 | 190 | 시 | |
| 변경 | 6 | 서초구 서초동 | 269-5 | 임야 | 190 | 190 | 시 | |
| 기정 | 7 | 서초구 서초동 | 367-4 | 답 | 216 | 216 | 시 | |
| 변경 | 7 | 서초구 서초동 | 367-4 | 답 | 216 | 216 | 시 | |
| 기정 | 8 | 서초구 서초동 | 380-1 | 하천 | 1,396 | 1,156.8 | 국 | 필지분할 |
| 변경 | 8 | 서초구 서초동 | 380-1 | 하천 | 1,164 | 1,164 | 국 | |
| 기정 | 9 | 서초구 서초동 | 산21-12 | 임야 | 34 | 34 | 국 | |
| 변경 | 9 | 서초구 서초동 | 산21-12 | 임야 | 34 | 34 | 국 | |
| 기정 | 10 | 서초구 서초동 | 산21-6 | 임야 | 2,817 | 2,817 | 국 | |
| 변경 | 10 | 서초구 서초동 | 산21-6 | 임야 | 2,817 | 2,817 | 국 | |
| 기정 | 11 | 서초구 서초동 | 산30-17 | 임야 | 303 | 303 | 시 | |
| 변경 | 11 | 서초구 서초동 | 산30-17 | 임야 | 303 | 303 | 시 | |
| 기정 | 12 | 서초구 서초동 | 산30-22 | 임야 | 572 | 572 | 시 | |
| 변경 | 12 | 서초구 서초동 | 산30-22 | 임야 | 572 | 572 | 시 | |
| 기정 | 13 | 서초구 서초동 | 산30-5 | 임야 | 22 | 22 | 시 | |
| 변경 | 13 | 서초구 서초동 | 산30-5 | 임야 | 22 | 22 | 시 | |
| 기정 | 14 | 서초구 양재동 | 105-3 | 잡종지 | 1,331.3 | 1,331.3 | 시 | |
| 변경 | 14 | 서초구 양재동 | 105-3 | 잡종지 | 1,331.3 | 1,331.3 | 시 | |
| 기정 | 15 | 서초구 양재동 | 45-2 | 대 | 637 | 599.4 | 시 | 필지분할 |
| 변경 | 15 | 서초구 양재동 | 45-7 | 대 | 583 | 583 | 시 | |

| 구분 | 연번 | 법 정 동 | 지 번 | 지목 | 공부상 면적(㎡) | 도시계획시설 (공원) 면적(㎡) | 소유자 | 비고 |
|---|---|---|---|---|---|---|---|---|
| 기정 | 16 | 서초구 양재동 | 45-3 | 대 | 127 | 127 | 시 | |
| 변경 | 16 | 서초구 양재동 | 45-3 | 대 | 127 | 127 | 시 | |
| 기정 | 17 | 서초구 양재동 | 45-4 | 대 | 278 | 278 | 시 | |
| 변경 | 17 | 서초구 양재동 | 45-4 | 대 | 278 | 278 | 시 | |
| 기정 | 18 | 서초구 양재동 | 45-5 | 대 | 651 | 651 | 시 | |
| 변경 | 18 | 서초구 양재동 | 45-5 | 대 | 651 | 651 | 시 | |
| 기정 | 19 | 서초구 양재동 | 45-6 | 대 | 631 | 631 | 시 | |
| 변경 | 19 | 서초구 양재동 | 45-6 | 대 | 631 | 631 | 시 | |
| 기정 | 20 | 서초구 양재동 | 46-5 | 공원 | 378.6 | 378.6 | 시 | |
| 변경 | 20 | 서초구 양재동 | 46-5 | 공원 | 378.6 | 378.6 | 시 | |
| 기정 | 21 | 서초구 양재동 | 75-5 | 전 | 1,226 | 1,226 | 시 | |
| 변경 | 21 | 서초구 양재동 | 75-5 | 전 | 1,226 | 1,226 | 시 | |
| 기정 | 22 | 서초구 양재동 | 산20-2 | 임야 | 9,706 | 9,370.8 | 시 | |
| 변경 | 22 | 서초구 양재동 | 산20-2 | 임야 | 9,706 | 9,370.8 | 시 | |
| 기정 | 23 | 서초구 양재동 | 산20-3 | 공원 | 47,186 | 47,186 | 시 | |
| 변경 | 23 | 서초구 양재동 | 산20-3 | 공원 | 47,186 | 47,186 | 시 | |
| 기정 | 24 | 서초구 양재동 | 산23 | 묘지 | 69 | 69 | 국 | |
| 변경 | 24 | 서초구 양재동 | 산23 | 묘지 | 69 | 69 | 국 | |
| 기정 | 25 | 서초구 양재동 | 산24 | 묘지 | 83 | 83 | 국 | |
| 변경 | 25 | 서초구 양재동 | 산24 | 묘지 | 83 | 83 | 국 | |
| 기정 | 26 | 서초구 양재동 | 산45-1 | 임야 | 4,790 | 4,790 | 국 | |
| 변경 | 26 | 서초구 양재동 | 산45-1 | 임야 | 4,790 | 4,790 | 국 | |
| 기정 | 27 | 서초구 양재동 | 산47-2 | 임야 | 248 | 248 | 시 | |
| 변경 | 27 | 서초구 양재동 | 산47-2 | 임야 | 248 | 248 | 시 | |
| 기정 | 28 | 서초구 양재동 | 산46-1 | 임야 | 1,716 | 1,269.8 | 시 | 필지분할 |
| 변경 | 28 | 서초구 양재동 | 산46-3 | 임야 | 1,269 | 1,269 | 시 | |
| 기정 | 29 | 서초구 양재동 | 산46-2 | 임야 | 21,430.5 | 3,567.8 | 시 | |
| 변경 | 29 | 서초구 양재동 | 산46-4 | 임야 | 1,761 | 1,761 | 시 | 필지분할 |
| | 30 | 서초구 양재동 | 산46-5 | 임야 | 1,806 | 1,806 | 시 | |
| 기정 | 30 | 서초구 양재동 | 산47-1 | 임야 | 2,727 | 62.7 | 시 | |
| 변경 | 31 | 서초구 양재동 | 산47-3 | 임야 | 9 | 9 | 시 | 필지분할 |

| 구분 | 연번 | 법 정 동 | 지 번 | 지목 | 공부상 면적(㎡) | 도시계획시설 (공원) 면적(㎡) | 소유자 | 비고 |
|---|---|---|---|---|---|---|---|---|
| | 32 | 서초구 양재동 | 산47-4 | 임야 | 53 | 53 | 시 | |
| 기정 | 31 | 서초구 양재동 | 산49-6 | 임야 | 6,947 | 3,460.8 | 시 | 필지분할 |
| 변경 | 33 | 서초구 양재동 | 산49-23 | 임야 | 3,460 | 3,460 | 시 | |
| 기정 | 32 | 서초구 양재동 | 산53-3 | 임야 | 4,783 | 4,783 | 국 | |
| 변경 | 34 | 서초구 양재동 | 산53-3 | 임야 | 4,783 | 4,783 | 국 | |
| 기정 | 33 | 서초구 양재동 | 산54-3 | 임야 | 4,220 | 4,141.8 | 시 | |
| 변경 | 35 | 서초구 양재동 | 산54-3 | 임야 | 4,220 | 4,141.8 | 시 | |
| 기정 | 34 | 서초구 양재동 | 산54-4 | 임야 | 342 | 336.5 | 시 | |
| 변경 | 36 | 서초구 양재동 | 산54-4 | 임야 | 342 | 336.5 | 구 | |
| 기정 | 35 | 서초구 양재동 | 산57-34 | 임야 | 25,000 | 25,000 | 국 | |
| 변경 | 37 | 서초구 양재동 | 산57-34 | 임야 | 25,000 | 25,000 | 국 | |
| 기정 | 36 | 서초구 양재동 | 산57-35 | 임야 | 2,290 | 2,290 | 시 | |
| 변경 | 38 | 서초구 양재동 | 산57-35 | 임야 | 2,290 | 2,290 | 시,구 | |

◈ 강남구고시 제2024-2564호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9호(2014.10.3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62호(2017.4.28.)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92호(2020.6.4.)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강 남 구 청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

1.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 경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일대 | 25,655.8 | 증) 2.2 | 25,658.0 | - |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토지이용계획 (변경)

| 구 분 | | 면 적(㎡) | | | 비 율(%)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 계 | | 25,655.8 | 증) 2.2 | 25,658.0 | 100.0 | -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3,479.0 | 증) 1.5 | 3,480.5 | 13.6 | 기부채납 |
| | 공 원 | 1,200.0 | 증) 0.4 | 1,200.4 | 4.7 | 기부채납 |
| | 도 로 | 2,279.0 | 증) 1.1 | 2,280.1 | 8.9 | 기부채납 |
| 획 지 | 공동주택용지 | 22,176.8 | 증) 0.7 | 22,177.5 | 86.4 | - |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 면 적(㎡) | | | 비 율(%)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25,655.8 | 증) 2.2 | 25,658.0 | 100.0 |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655.8 | 증) 2.2 | 25,658.0 | 100.0 | - |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1 | 1 | 10~12 | 국지도로 | 170 | 삼성동 87 | 삼성동 111-3 | 일반 도로 | - | - | - |
| 기정 | 소로 | 1 | 2 | 10~12 | 국지도로 | 159 | 삼성동 82-1 | 삼성동 87 | 일반 도로 | - | - | -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167 | 삼성동 79-2 | 삼성동 111-4 | 특수 도로 | - | - | 보행자 전용도로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등) 결정(변경)조서

(1) 공원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1 | 도시공원 | 소공원 |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 1,200 | 증) 0.4 | 1,200.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69호 (2014.10.30.) | - |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기준(㎡)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합계(419세대) | 획지1 | 5,387.11 | 감) 73.19 | 5,313.92 | - |
| | 경로당 | | 162.23 | - | 162.23 | - |
| | 어린이집 | | 297.20 | - | 297.20 | - |
| | 작은도서관 | | 377.65 | - | 377.65 | - |

|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기준(㎡) |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어린이놀이터/휴게소 | | 622.00 | - | 622.00 | - |
| | 기 타 | | 3,928.03 | 감) 73.19 | 3,854.84 | 휘트니스센터, GX실 등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변경)

| 구분 | 구 역 구 분 |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 위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 | | | 비고 |
|---|---|---|---|---|---|---|---|---|---|---|---|
| | 명 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 기정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5,655.8 | 획지1 | 22,176.8 | 삼성동 79번지 일원 | 7 | - | - | 7 | - | - |
| 변경 | | 25,658.0 | 획지1 | 22,177.5 | | | | | | | |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7. 건축시설계획 (변경)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변경)

|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 | 비고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 정비 계획 | 법적 상한 | | |
| 기정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5,655.8 | 획지1 | 22,176.8 | 삼성동 79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 | 80m 이하 (25층) | - |
| 변경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5,658.0 | 획지1 | 22,177.5 | 삼성동 79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 | 80m 이하 (25층)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제2항적용(1:1재건축)
[제2항1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종전 주택 (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작거나 30%범위에서 큰 경우 제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구분 | | 세대수 | 비율(%) | 비고 |
|---|---|---|---|---|
| 기존전용면적 | 계획전용면적 | 419 | 100.0 | - |
| 79.09㎡ | 92.00㎡ | 251 | 60.0 | 조합원 |
| 82.98㎡ | 104.00㎡ | 20 | 4.7 | 조합원 |
| | 104.90㎡ | 75 | 17.9 | 조합원 |
| | 104.94㎡ | 25 | 6.0 | 조합원 |
| | 소계 | 120 | 28.6 | 조합원 |
| 147.97㎡ | 167.20㎡ | 48 | 11.4 | 조합원 |

| 구분 | 구역구분 |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 높이(m)(층수) | 비고 |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 정비계획 | 법적상한 | | |
|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 대로2-29도로변(학동로) : 6m | | | | | | | | | | |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용적률 계획 (기정)

| 구 분 | 산 정 내 용 | | | | |
|---|---|---|---|---|---|
| 토지이용계획 | 계 (구역면적) | 획지1 (공동주택용지)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 | 25,655.8㎡ | 22,176.8㎡ | 3,479.0㎡ | - | -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 순부담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br>-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br>= 3,479 - 0 - 0 = 3,479㎡ | | | | |
| 기준용적률 | • 기준용적률 = 210% | | | | |
| 허용용적률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 = 210% + 0% = 210% | | | | |
| 상한용적률 | • 상한용적률<br>= 허용 or 기준용적률 x (1 + 1.3 x $\alpha$)<br>= 210% x ( 1 + 1.3 x 0.1569 ) = 252.83% ≥ 250.0%<br>※ $\alpha$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br>= 3,479.0㎡ / 22,176.8㎡ = 0.1569<br>∴ 상한용적률 = 250% 이하 | | | | |

■ 용적률 계획 (변경)

| 구 분 | 산 정 내 용 | | | | |
|---|---|---|---|---|---|
| 토지이용계획 | 계 (구역면적) | 획지1 (공동주택용지)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 | 25,658.0㎡ | 22,177.5㎡ | 3,480.5㎡ | - | - |

| 구 분 | 산 정 내 용 |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 순부담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3,480.5 - 0 - 0 = 3,480.5㎡ |
| 기준용적률 | • 기준용적률 = 210% |
| 허용용적률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 = 210% + 0% = 210% |
| 상한용적률 | • 상한용적률 = 허용 or 기준용적률 x (1 + 1.3 x α) = 210% x ( 1 + 1.3 x 0.1569 ) = 252.83% ≥ 250.0%<br>※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 = 3,480.5㎡ / 22,177.5㎡ = 0.1569<br>∴ 상한용적률 = 250% 이하 |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변경없음)

###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 환경보전 | • 충분한 녹지공간의 조성 및 확보,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 - |
| 재난방지 |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공사시행 | - |

■ 환경성 검토결과 (변경없음)

| 검토항목 | | 목표기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예측 및 반영사항 |
|---|---|---|---|---|
| 자연환경 | 1.생태면적율 | 30% | •기존 토양포장상태 100%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틈새투수포장 적용하여 생태면적율 30%이상 확보 만족 |
| | 2.녹지네트워크 | 녹지평가지표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경녹지 계획 | •대상지내 공원 및 단지 내 조경등 계획에 반영 |
| | 3.지형변동 | 절성토비율 20%미만 | •절성토 비율 미미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 | |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지형변동비율 미미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 검토항목 | | 목표기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예측 및 반영사항 |
|---|---|---|---|---|
| | |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예상 | •지하공간 최소화, 차수성이 뛰어난 공법으로 지하수위유지 |
| | 4.비오톱 | 3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br>•비오톱유형평가 3,4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
| 생활환경 | 5.일조 | 일조침해 최소화 |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동 거리 확보 |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건축계획 수립 |
| | 6.바람 및 미기후 | 바람길 확보 | •서울시 주풍향은 서풍으로 나타남 |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공원 및 녹지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
| | 7.에너지 |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약계획수립 |
| | 8.경관 | Skyline보전 | •주변 스카이라인과 연계 |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
| | | 조망권 확보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 •주변 개발현황을 고려한 건축배치 |
| | 9.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소공원 확보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
| | 10.보행친화 공간 | 보행자전용 도로계획수립 | •인근학교 등 보행로 연결필요 | •건축한계선 내 전면공지 조성으로 보행공간 확충<br>•대상지 동측 보행자전용도로(6m) 조성을 통한 봉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
| | 11.폐기물 | 폐기물 처리 | •주거지에서 생활폐기물 발생 |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 12.소음·진동 | 생활소음규제 및 문화재 진동 기준만족 | •건설소음발생(공사시)<br>•건설진동발생(공사시)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br>•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9.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 | 비고 |
|---|---|---|---|---|---|---|---|
| | | | | 기존 | 계획 | 증 | |
| 기정 | 관리처분 방법에 의함 | 구역지정일 로부터 4년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 384 | 419 | 35 | -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정비구역 주변 현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비고 |
|---|---|---|
| 대상지 반경 400m 이내<br>봉은초등학교, 봉은중학교,<br>경기고등학교 위치 |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저감대책 및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등의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서초강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으며, 향후 실시계획 승인 전 서울시교육청과 사전협의 예정 | - |

11.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 구성비 (%) | 비 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 경 | 홍실아파트<br>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남구 삼성동<br>79번지 일대 | 25,655.8 | 증) 2.2 | 25,658.0 | 100.0 | - |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 면 적(㎡) | | | 비 율(%)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25,655.8 | 증) 2.2 | 25,658.0 | 100.0 |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655.8 | 증) 2.2 | 25,658.0 | 100.0 | - |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1 | 1 | 10~12 | 국지도로 | 170 | 삼성동 87 | 삼성동 111-3 | 일반 도로 | - | - | - |
| 기정 | 소로 | 1 | 2 | 10~12 | 국지도로 | 159 | 삼성동 82-1 | 삼성동 87 | 일반 도로 | - | - | -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167 | 삼성동 79-2 | 삼성동 111-4 | 특수 도로 | - | - | 보행자 전용도로 |

(2) 공원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1 | 도시공원 | 소공원 |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 1,200 | 증) 0.4 | 1,200.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69호 (2014.10.30.) | - |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가 구 | 면 적(㎡) | | | 비 율(%) | 비고 |
|---|---|---|---|---|---|---|
| |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 |
| 획지 | 소 계 | 22,176.8 | 증) 0.7 | 22,177.5 | 86.4 | - |
| | 획지1 | 22,176.8 | 증) 0.7 | 22,177.5 | 86.4 | - |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 구 분 | | 가 구 | 용 도 | 비 고 |
|---|---|---|---|---|
| 기정 | 허용용도 | 획지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br>•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용적률·높이) (변경)

가) 건폐율 계획 (변경)

| 구 분 | 지 역 | 건폐율 | 비 고 |
|---|---|---|---|
| 기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 |
|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 |

※ 강남구고시 제2020-92호(2020.6.4.) 당시 오기내용 정정 (건폐율:60%이하 → 50%이하)

나) 용적률 계획 (변경없음)

| 구 분 | 용 적 률 | | | | 비 고 | |
|---|---|---|---|---|---|---|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 | |
| | | |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 |
| 기정 | 210% 이하 | 210% 이하 | 250% 이하 | - | 정비계획 | 허용용적률 : 210%이하 |
| | | | | | | 상한용적률 : 250%이하 |
| | | | | | | 법적상한용적률 : -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변경없음)

| 구 분 | 용 적 률 완 화 | | 비 고 |
|---|---|---|---|
| | 공공시설 기부채납 | 소형주택 건설 | |
| 기정 | 13.6% | - | 총 13.6% |

다) 높이 계획 (변경없음)

| 구 분 | 지 역 | 높이기준 | 비 고 |
|---|---|---|---|
| 기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0m 이하<br>(25층) | 서울시 스카이라인<br>관리원칙 준수 |

(3)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구 분 | 적용위치 | 계 획 내 용 |
|---|---|---|
| 건축한계선 | ▮ 대상지 북측 학동로변 | ▮ 획지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구 분 | 적용위치 | 계 획 내 용 |
|---|---|---|
| 전면공지 | ▮ 대상지 북측 학동로변 |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br>- 폭원 : 6m |

(2) 환경관리계획

| 검토항목 | | 목표기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예측 및 반영사항 |
|---|---|---|---|---|
| 자연환경 | 1.생태면적율 | 30% | •기존 토양포장상태 100%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틈새투수포장 적용하여 생태면적율 30%이상 확보 만족 |
| | 2.녹지네트워크 | 녹지평가지표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경녹지 계획 | •대상지내 공원 및 단지 내 조경등 계획에 반영 |
| | 3.지형변동 | 절성토비율 20%미만 | •절성토 비율 미미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 | |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지형변동비율 미미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 | |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예상 | •지하공간 최소화, 차수성이 뛰어난 공법으로 지하수위유지 |
| | 4.비오톱 | 3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br>•비오톱유형평가 3,4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
| 생활환경 | 5.일조 | 일조침해 최소화 |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동 거리 확보 |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건축계획 수립 |
| | 6.바람 및 미기후 | 바람길 확보 | •서울시 주풍향은 서풍으로 나타남 |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공원 및 녹지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
| | 7.에너지 |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약계획수립 |
| | 8.경관 | Skyline보전 | •주변 스카이라인과 연계 |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
| | | 조망권 확보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 •주변 개발현황을 고려한 건축배치 |
| | 9.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소공원 확보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
| | 10.보행친화 공간 | 보행자전용 도로계획수립 | •인근학교 등 보행로 연결필요 | •건축한계선 내 전면공지 조성으로 보행공간 확충<br>•대상지 동측 보행자전용도로(6m) 조성을 통한 봉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
| | 11.폐기물 | 폐기물 처리 | •주거지에서 생활폐기물 발생 |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 12.소음·진동 | 생활소음규제 및 문화재 진동 기준만족 | •건설소음발생(공사시)<br>•건설진동발생(공사시)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br>•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4.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수립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3423-607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송파구고시 제2024-107호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59호(2020.11.12.)로 결정된 문정도시개발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송파구 고시 제2022-86호(2022.04.15.)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어,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 인가
- ○ 명 칭 : 서울동부구치소 대체복무생활관 증축

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8번지
- ○ 대지면적 : 36,367.70㎡(면적변경 없음)
- ○ 건축물현황

(단위:㎡)

| 구분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층수 | | 동수 | | 용도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전체 건축물 | 13,167.33 | 13,817.10 | 74,091.02 | 75,794.24 | 지상4층 | | 주2동 부6동 | 주3동 부6동 | 교정시설 (대체복무생활관) |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 성 명 : 법무부
-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 착수예정일: 2025.01.
- ○ 준공예정일: 2026.0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변경 없음

| 필지수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br>제3종일반주거지역<br>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잔유<br>면적<br>(㎡) | 소 유 자 | 비고 |
|---|---|---|---|---|---|---|---|
| 1 | 송파구<br>문정동 | 648 | 대 | 36,367.70 | - | 국(법무부) | |
| 소 계 | | | | 36,367.70 | - | | |

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없음

사.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건축과(☎02-2147-302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

◈ 송파구고시 제2024-110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국토교통부 고시 제198호(1971.4.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9-10호(2019.1.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0-133호(2020.12.3.)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115호(2021.6.17.), 송파구 고시 제2023-136호(2023.11.2.), 송파구 고시 제2024-54호(2024.6.2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방아다리길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24년 12월 19일
송 파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37-16번지 일원 [변경없음]
(송파구 방이동 437-16번지 외 1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방아다리길 연결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 노선명 | 구분 | 폭원(m) | 연장(m) | 면적(㎡)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대로 3-69 | 결정 | 25~36 | 5,973 | 150,148 | 송파구오금동(대2-67) | 강동구 암사동(중2-134) | 일반도로 | - | 건고198(1971.4.7) | - |
| | 인가 | 2.5~8.4 | 170 | 820 | 송파구 방이동 437-16 | 송파구 방이동 436-56 | - | - | - | - |
| 중로 1-A | 결정 | 23.5 | 36.4 | 1,024 | 서울시계 방이동 443-28 | 방이동 437-16 | 일반도로 | - | 송파구고시 제2019-10호(2019.1.17) | - |
| | 인가 | 23.5 | 36.4 | 1,024 | 서울시계 방이동 443-28 | 방이동 437-16 | - | - | - |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초 : 2020.12.3. ~ 2024.12.31.
○ 변경 : 2020.12.3. ~ 2025.08.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생략(토지조서 변동 없음)

7) 공공시설(도로)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 구간에 대하여는 시설물 준공 후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송파구)에 무상귀속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도로관리과(신관 7층)(☎02-2147-3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고시 제2024-220호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2호(2020.02.06.)로『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및『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5호(2022.04.21.)로『조성계획결정(최초)』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70호 (2022.09.01.)로『조성계획결정(경미한변경)』, 강동구 고시 제2023-74호(2023.05.10.)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제1호 어린이공원' 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1호 어린이공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 (4,640.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둔촌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
- 제1호 어린이공원
① 면적 : 4,640.0㎡, ② 내용 : 어린이공원 조성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승환)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오스카상가 3층 316호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기정) 인가고시일 ~ 2024.12
- (변경) 인가고시일 ~ 2025.03.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 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근저당권 등 말소 후 강동구에 무상으로 귀속

아.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붙 임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재건축재개발과 ☎ 02-3425-59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둔촌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 번지 일대

<제1호 어린이공원>

| 번호 | 행정구역 |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시·구 | 동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관계 | |
| 계 | | | 1필지 | | 112,101.1 | 4,640.0 | | | | | | |
| 1 | 서울시 강동구 | 둔촌동 | 170-1 | 대 | 112,101.1 | 4,640.0 | 둔촌주공재건축조합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 | | | |

별첨-2

## 위치 및 계획평면도

□ 위치도

□ 계획평면도

<제1호 어린이공원>

신속한 사업추진, 투명한 사업운영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수 신 :** 강동구청장

**참 조 :** 재건축재개발과장

**제 목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접수

발송 No. 2024.12.09 둔촌주공재건축

1.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진행하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 2024-102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변경)결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의 사업기간이 아래 내용과 같이 변경되어 실시계획인가(변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구 분<br>(위 치) | 변경 사유 | 사업시행기간<br>변경 (전) | 사업시행기간<br>변경 (후) |
|---|---|---|---|
| 서울특별시<br>강동구 둔촌1동<br>170-1번지<br><br>1호 어린이공원 | 5호선 지하철 환기시설 공사 중 1호 어린이공원과의 간섭구간 조경공사작업 불가로 인한 변경 요청 | 2023. 7. 31~<br>2024. 12.31<br>(강동구 고시<br>제2023-74호) | 2023. 7. 31<br>~2025. 03.31 |

* 붙임 1. 도시· 군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신청서 1부.끝.

**조 합 장 박 승 환** (인)

문 서 번 호 : 둔재2024 - 684호 시 행 일 자 : 2024. 12. 05.

우) 05404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성내동)
전화(02) 489-0222 / FAX(02)-6427-6427 / dc6427@hanmail.net

2024-12-05 15:47:20/신국철/신국철 출력된 문서는 사용 후 폐기해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 21.>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개월 |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박승환 | 생년월일 |
|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오스카상가 3층 316호 (전화번호: 02-473-0220) | |
| | 법인명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법인등록번호 244171-0010707 |
|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오스카상가 3층 316호 (전화번호: 02-473-0220) | |

## 신청내용

| | | | | | | | | |
|---|---|---|---|---|---|---|---|---|
| 사업명칭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공원조성사업(둔촌 제1호 어린이공원) | | | | | | | |
| 사업목적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공원을 지정함에 따라 본 조성계획을 통해 지역의 문화명소이자 시민들을 위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함. | | | | | | | |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 | | 사업면적 | 4,640.0㎡ | | | |
| 시행방법 | 자체자금으로 민간시행 | | | 시행기간 | 2023. 07. 31. ~ 2025.03. 31 | | | |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 대 | | | | | | |
| | 면적 | 4,640.0 | | | | | | |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 기반시설 | 조경시설 | 휴양시설 | 유희시설 | 녹지 및 기타 | | |
| | 면적 | 1,291.33 | 69.66 | 103.00 | 1,203.40 | 1,972.61 |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광장 | 도로 | | | | | |
| | 개요 | 624.19 | 667.14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신청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4-12-05 15:32:25/신국철/신국철 출력된 문서는 사용 후 폐기해주세요

(뒤쪽)

| | | |
|---|---|---|
| 첨부서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br>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br>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br>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br>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br>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br>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br>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 수수료<br>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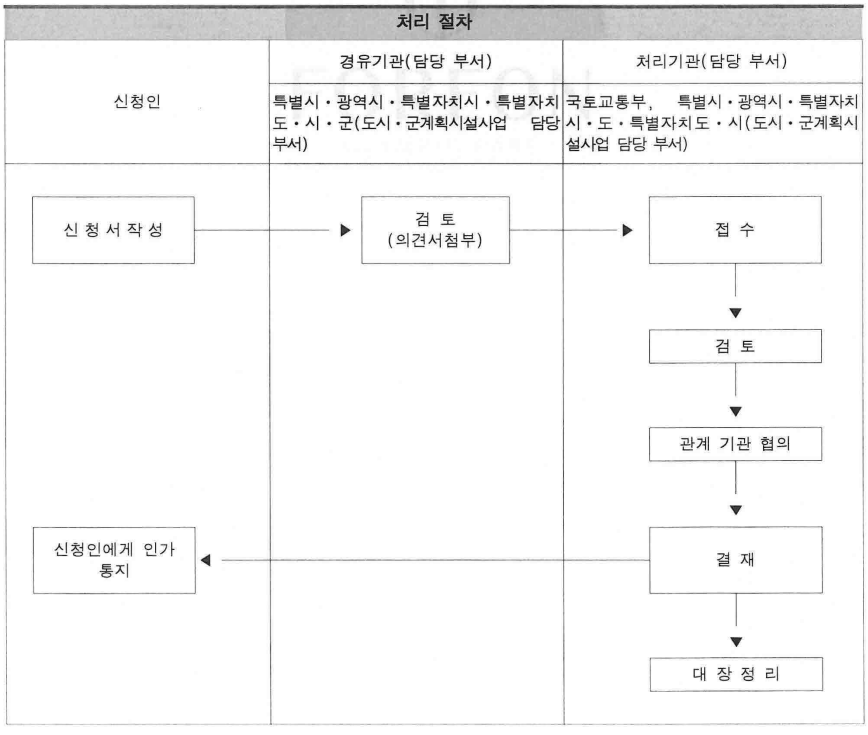


2024-12-05 15:32:25/신국철/신국철 출력된 문서는 사용 후 폐기해주세요

#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24-1396호

##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조성계획(최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호(2011.1.13.)로 자양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46호(2022.4.7)로 자양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에 대해 공원조성계획(최초) 수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광 진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3-31번지 일대
3. 면　　적 : 2,708㎡
4. 공원조성계획 : 기반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관리시설 등
5.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450-7775)
8. 안내사항
   ○ 본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43-31번지 일대)

| 구 분 | | 최초 | | | | | | 비 고 |
|---|---|---|---|---|---|---|---|---|
| |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
| | | | | 동수 (동) | 바닥면적 (㎡) | 연면적 (㎡) | | |
| 합 계 | | 2,708.00 | 540.07 | - | - | - | 22 | |
| 기반시설 | 소 계 | 442.04 | 442.04 | - | - | - | - | |
| | 도 로 | 283.08 | 283.08 | - | - | - | - | |
| | 광 장 | 158.96 | 158.96 | - | - | - | - | |
| 조경시설 | | 5.14 | 5.14 | - | - | - | - | |
| 휴양시설 | | 50.18 | 50.18 | - | - | - | 16 | |
| 유희시설 | | - | - | - | - | - | - | |
| 운동시설 | | 42.71 | 42.71 | - | - | - | 1 | |
| 교양시설 | | - |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 - | 5 | |
| 녹지 및 기타 | | 2,167.93 | - | - | - | - | - | |
| 시설률 (법정 20%) | | ( 540.07㎡ / 2,708.00㎡ ) × 100 = 19.94 % | | | | | | |
| 건폐율 (법정 5%) | | ( 0㎡ / 2,708.00㎡ ) × 100 = 0 % | | | | | | |

2. 시설조서

| 구분 | 시설명 | 최초 | | | | | | | | 비고 |
|---|---|---|---|---|---|---|---|---|---|---|
| | | 부호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축물 (㎡) | | 공작물 (기) | |
| | | | | | | | 바닥면적 | 연면적 | | |
| 합 계 | | | 2,708.00 | 540.07 | - | - | - | - | 22 | |
| 기반시설 | 소 계 | | 442.04 | 442.04 | - | - | - | - | - | |
| | 도 로 | | 283.08 | 283.08 | - | - | - | - | - | |
| | 광 장 | 가 | 158.96 | 158.96 | - | - | - | - | - | |
| | | 가-1 | 85.14 | 85.14 | - | - | - | - | - | |
| | | 가-2 | 54.02 | 54.02 | - | - | - | - | - | |
| | | 가-3 | 19.80 | 19.80 | - | - | - | - | - | |
| 조경시설 | 소 계 | | 5.14 | 5.14 | - | - | - | - | | |
| | 화단 | 나 | 5.14 | 5.14 | - | - | - | - | | |
| 휴양시설 | 소 계 | | 50.18 | 50.18 | - | - | - | - | 16 | |
| | 휴게소 | 다 | 50.18 | 50.18 | - | - | - | - | (6) | |
| | | 다-1 | 13.69 | 13.69 | - | - | - | - | (1) | |
| | | 다-2 | 13.39 | 13.39 | - | - | - | - | (1) | |
| | | 다-3 | 5.41 | 5.41 | - | - | - | - | (1) | |
| | | 다-4 | 6.20 | 6.20 | - | - | - | - | (1) | |
| | | 다-5 | 5.56 | 5.56 | - | - | - | - | (1) | |
| | | 다-6 | 5.93 | 5.93 | - | - | - | - | (1) | |
| | 파고라 | ① | - | - | - | - | - | - | 3 | |
| | 등의자 | ② | - | - | - | - | - | - | 12 | |
| | 흔들의자 | ③ | - | - | - | - | - | - | 1 | |
| 운동시설 | 소 계 | | 42.71 | 42.71 | - | - | - | - | 1 | |
| | 체력단련장 | 라 | 42.71 | 42.71 | - | - | - | - | - | |
| | 복합형야외운동기구 | ④ | - | - | - | - | - | - | 1 | |
| 관리시설 | 소 계 | | - | - | - | - | - | - | 5 | |
| | 공원명칭 안내판 | ⑤ | - | - | - | - | - | - | 2 | |
| | 금지행위 안내판 | ⑥ | - | - | - | - | - | - | 2 | |
| | 금연금주 안내판 | ⑦ | - | - | - | - | - | - | 1 | |
| 녹지 및 기타 | 소 계 | | 2,167.93 | - | -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 | 2,167.93 | - | - | - | - | - | - | |

3. 도로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연장 (m) | 면적 (㎡)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
| 신설 | 합 계 | | | | 189.4 | 283.08 | | | | |
| 신설 | 산책로 | 소 계 | | | 189.4 | 283.08 | | | | |
| 신설 | 산책로 | 산 | 1 | 1.8 | 7.8 | 13.96 | 산책로 | 가-1 | 가-2 | |
| | | 산 | 2 | 1.8~1.2 | 156.1 | 234.08 | 산책로 | 진입부 | 진입부 | |
| | | 산 | 3 | 1.5 | 3.3 | 4.89 | 산책로 | 진입부 | 산-2 | |
| | | 산 | 4 | 1.8 | 5.2 | 9.41 | 산책로 | 진입부 | 산-2 | |
| | | 산 | 5 | 1.2 | 6.0 | 7.62 | 산책로 | 진입부 | 산-2 | |
| | | 산 | 6 | 1.2 | 11.0 | 13.12 | 산책로 | 산-2 | 산-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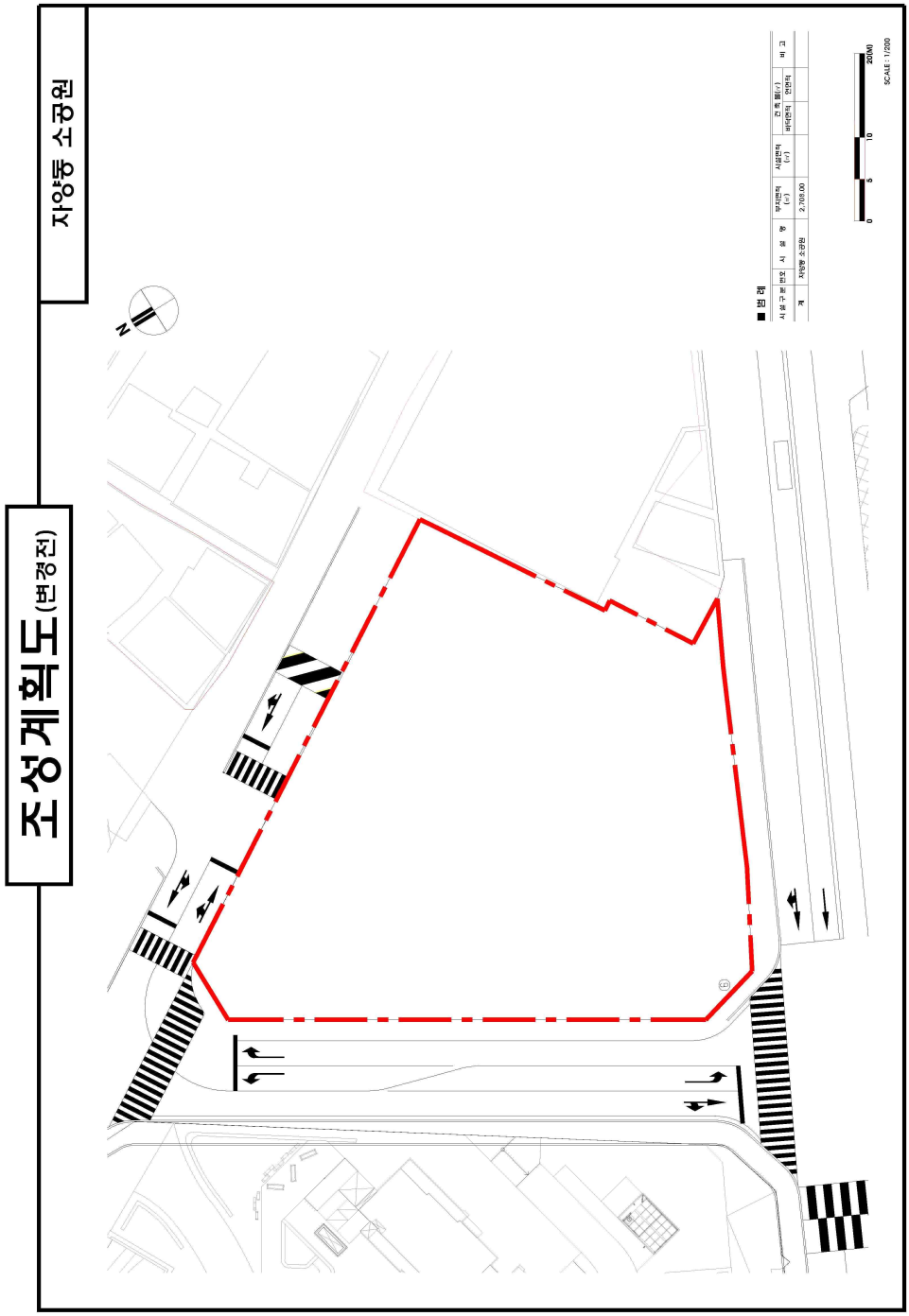
조성계획도 (변경전)
자양동 소공원
N
범 례
SCALE : 1/200
0
5
10
20(M)

# 조성계획도 (최초)

##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 범 례

| 시설구분 | 기호 | 시 설 명 | 시설면적(㎡) | 부지면적(㎡) | 규모 및 수량 | 비고 |
|---|---|---|---|---|---|---|
| 계 | | 자양동 소공원 | 2,708.00 | 540.07 | 시설율 19.94% | |
| 기반시설 | 소 계 | | 442.04 | | - | |
| | 도 로 | | 283.08 | | - | |
| | 가 | 광 장 | 158.96 | | - | |
| | 가-1 | | 85.14 | | - | |
| | 가-2 | | 54.02 | | - | |
| | 가-3 | | 19.80 | | - | |
| 오픈시설 | 소 계 | | 5.14 | | - | |
| | 나 | 화 단 | 5.14 | | - | |
| 휴양시설 | 소 계 | | 50.18 | 50.18 | 16 | |
| | 다 | 휴 게 소 | 50.18 | 50.18 | (6) | |
| | 다-1 | | 13.69 | 13.69 | (1) | |
| | 다-2 | | 13.39 | 13.39 | (1) | |
| | 다-3 | | 5.41 | 5.41 | (1) | |
| | 다-4 | | 6.20 | 6.20 | (1) | |
| | 다-5 | | 5.56 | 5.56 | (1) | |
| | 다-6 | | 5.93 | 5.93 | (1) | |
| | ① | 파 고 라 | - | - | 3 | |
| | ② | 등 의 자 | - | - | 12 | |
| | ③ | 콘 틀 의 자 | - | - | 1 | |
| 운영시설 | 소 계 | | 42.71 | 42.71 | 1 | |
| | 라 | 체 력 단 련 장 | 42.71 | 42.71 | 1 | |
| | ④ | 복합형어린이운동기구 | - | - | 1 | |
| 관리시설 | 소 계 | | - | - | 5 | |
| | ⑤ | 공원명칭 안내판 | - | - | 2 | 광 |
| | ⑥ | 금지행위 안내판 | - | - | 2 | 금 |
| | ⑦ | 금연급주 안내판 | - | - | 1 | 금연 |
| 녹지 및 기타 | 녹 지 | | 2,167.93 | -- | | |

# 시설물계획도 (최초)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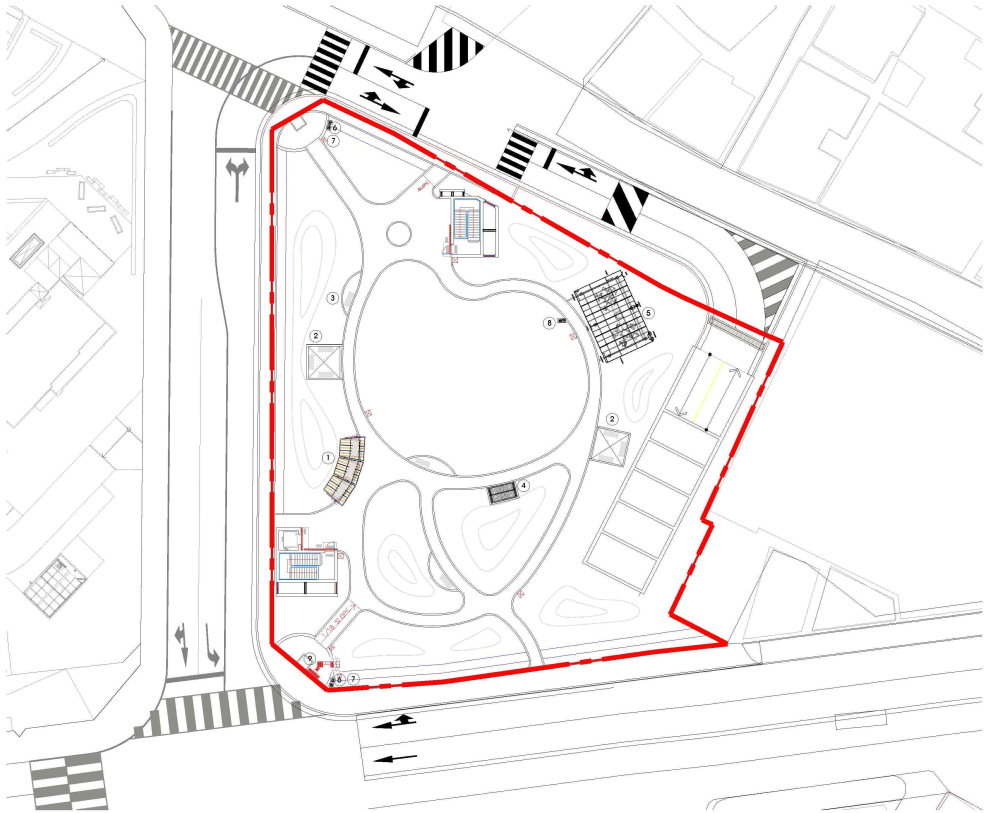


■ 시설수량 집계표

| 구분 | 시 설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① | 파 고 라 A | 8450x2800x3000 | EA | 1 | |
| ② | 파 고 라 B | 4000x4000x2700 | EA | 2 | |
| ③ | 벤 의 자 | 1600x610x813 | EA | 12 | |
| ④ | 콘 크 의 자 | 3000x1735x2215 | EA | 1 | |
| ⑤ | 복합운동 시설물 | 8840x6000x2830 | EA | 1 | |
| ⑥ | 공원명칭안내판 | 1200x800 | EA | 2 | |
| ⑦ | 금지행위안내판 | 700x1200 | EA | 2 | |
| ⑧ | 금연금주안내판 | 600x900 | EA | 1 | |
| ⑨ | 수 목 보 호 판 | 1200x1200 | EA | 2 | |

0 5 10 20(M)

SCALE : 1/200

# 포장계획도 (최초)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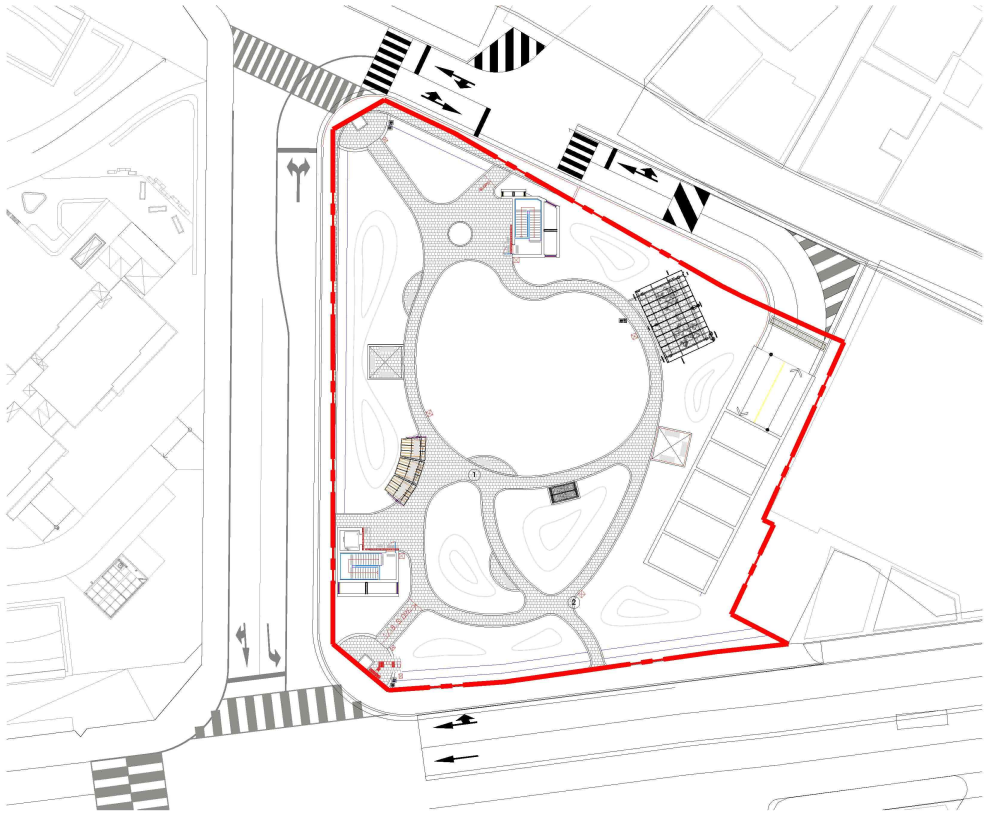

# 우배수계획도 (최초)

##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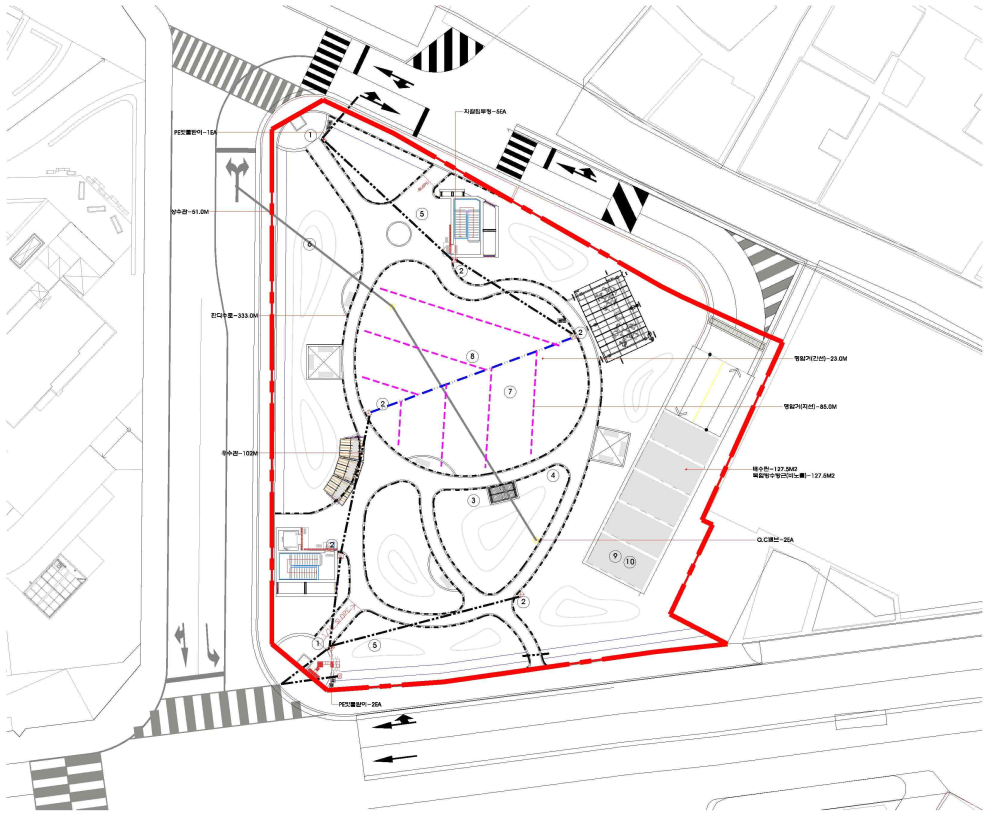


■ 우배수 수량 집계표

| 구분 | 시 설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① | P E 집 수 정 | 400x500 | EA | 3 | |
| ② | 자 갈 집 수 정 | 600x600x600 | EA | 5 | |
| ③ | Q . C 맨 보 | - | EA | 2 | |
| ④ | 잔 디 수 로 | W300 | M | 333.0 | |
| ⑤ | 우 수 관 | D300 | M | 102.0 | |
| ⑥ | 상 수 관 | D15 | M | 51.0 | |
| ⑦ | 방 범 거 (간선) | D200 | M | 23.0 | |
| ⑧ | 방 범 거 (지선) | D150 | M | 85.0 | |
| ⑨ | 배 수 판 | 500X500XT30 | ㎡ | 127.5 | |
| ⑩ | 복합형수방(리노륨) | 바닥 | ㎡ | 127.5 | |

# 식재계획도 (최초)

##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 구분 | 기호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상록교목 | | 소나무(조형) | H3.5xW1.5xR15 | 주 | 6 | |
| | | 소나무(조형) | H2.5xW1.2xR10 | 주 | 11 | |
| | | 스트로브잣나무 | H2.5xW1.2 | 주 | 28 | |
| | | 상록교목합계 | | 주 | 45 | |
| 낙엽교목 | | 느티나무 | H4.5xR20 | 주 | 4 | |
| | | 모과나무 | H3.0xR10 | 주 | 8 | |
| | | 백합나무 | H3.0xR10 | 주 | 3 | |
| | | 산수유 | H3.0xR12 | 주 | 9 | |
| | | 왕벚나무 | H4.0xB12 | 주 | 14 | |
| | | 홍단풍 | H3.0xR10 | 주 | 3 | |
| | | 낙엽교목합계 | | 주 | 41 | |
| | | 교목합계 | | 주 | 86 | |
| 상록관목 | | 탱금사철 | H1.0xW0.3 | 주 | 510 | |
| | | 상록관목합계 | | 주 | 510 | |
| 낙엽관목 | | 나무수국 | H1.0xW0.6 | 주 | 100 | |
| | | 삼색조팝 | H0.3xW0.3 | 주 | 150 | |
| | | 수수꽃다리 | H1.2xW0.4 | 주 | 140 | |
| | | 영산홍 | H0.3xW0.3 | 주 | 310 | |
| | | 화살나무 | H0.8xW0.4 | 주 | 70 | |
| | | 탱금조팝 | H0.3xW0.3 | 주 | 130 | |
| | | 낙엽관목합계 | | 주 | 900 | |
| | | 관목합계 | | 주 | 1,410 | |
| 지피 | | 가우라"백이백" | 8cm포트 | 본 | 590 | |
| | | 리아필"블루" | 17cm포트 | 본 | 200 | |
| | | 꽃창포 | 8cm포트 | 본 | 530 | |
| | | 노란속근코스모스 | 8m포트 | 본 | 380 | |
| | | 노랑꽃창포 | 2~3분얼x8cm | 본 | 290 | |
| | | 노랑세덤 | 8cm | 본 | 1,750 | |
| | | 니포피아 | 8cm포트 | 본 | 520 | |
| | | 돌단풍 | 8cm포트 | 본 | 200 | |
| | | 라아트리스 | 8cm포트 | 본 | 330 | |
| | | 매키나테필름 | 8cm포트 | 본 | 320 | |
| | | 맥문동 | 8cm | 본 | 250 | |
| | | 분홍세덤 | 8cm | 본 | 1,745 | |
| | | 붓꽃 | 10.2cm | 본 | 380 | |
| | | 비비추 | 8cm | 본 | 180 | |
| | | 사초"아이스댄스" | 10cm포트 | 본 | 460 | |
| | | 수호초 | 10.2cm | 본 | 140 | |
| | | 속근왜성천인국 | 8cm포트 | 본 | 530 | |
| | | 스웰라원추리 | 2~3분얼 | 본 | 510 | |
| | | 애버골드 | 10cm포트 | 본 | 400 | |
| | | 옥잠화 | 10.2cm | 본 | 190 | |
| | | 은목 | 8cm포트 | 본 | 610 | |
| | | 파랑세덤 | 8cm | 본 | 1,745 | |
| | | 흰꽃세덤 | 8cm | 본 | 1,745 | |
| | | 지피합계 | | 본 | 13,995 | |
| 잔디 | | 잔디(평떼) | 0.3×0.3×0.03 | m2 | 828 | |
| | | 잔디합계 | | m2 | 828 | |
| 기타 | | 정원장미(글래스) | H0.35x2년생 | 주 | 200 | |
| | | 정원장미(데임드 꼬르) | H0.35x2년생 | 주 | 450 | |
| | | 정원장미(블랙데라) | H0.35x2년생 | 주 | 200 | |

0 5 10 20(M)

# 동선계획도 (최초)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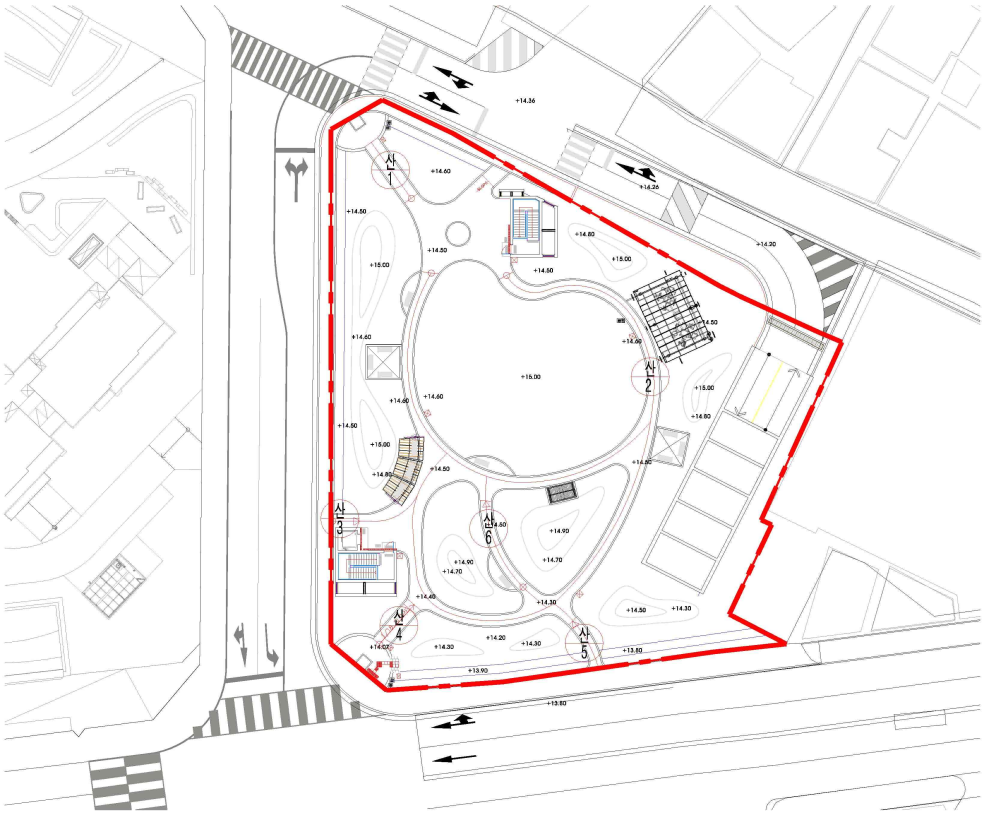


■ 범 례

| 시설구분 | 유형 | 번 호 | 폭원(m) | 연 장(m) | 면 적(㎡) | 비 고 |
|---|---|---|---|---|---|---|
| 계 | | | | 189.4 | 283.08 | |
| 산책로 | – | 소 계 | | 189.4 | 283.08 | |
| | | 1 | 1.8 | 7.8 | 13.96 | |
| | | 2 | 1.8~1.2 | 156.1 | 234.08 | |
| | | 3 | 1.5 | 3.3 | 4.89 | |
| | | 4 | 1.8 | 5.2 | 9.41 | |
| | | 5 | 1.2 | 6.0 | 7.62 | |
| | | 6 | 1.2 | 11.0 | 13.12 | |

0 5 10 20(M)

SCALE : 1/200

◈ 동대문구공고 제2024-1647호

## -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69호(2020.09.03.)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02호(2022.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97호(2023.08.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0호(2024.06.13.)로 변경결정 고시된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2.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5 번지(도시계획시설 :소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최초)안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2127-4579), 답십리2동주민센터 또는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2249-7949)으로 2025. 1. 2(목)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4. 12. 19.(목) ~ 2025. 01. 02.(목)

나. 공람장소 : 1)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2) 답십리2동주민센터 통합민원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1길 18)
3)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190, 자동차부품상가 A동 301호)

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2) 시 행 자 :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시행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4) 시행면적 : 17,882㎡
5)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건축계획 : 지하9층 ~ 지상32층, 공동주택 4개동(618세대, 임대포함) 및 판매시설, 근생시설, 업무시설
7)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

라. 공원조성계획(최초)안 내용

1) 종류/위치 : 도시공원(소공원)/답십리동 952-5번지

2) 결정조서(안)

| 구 분 | 부지면적(㎡) | 건 축 물 | | 비 고 |
|---|---|---|---|---|
| | | 시설면적(㎡) | 규모/수량 | |
| 총 계 | 1,695.0 | - | - | - |
| 도로 및 광장 | 219.24 | - | - | 도로 |
| 조 경 시 설 | - | 17.40 | 3 | 플랜터 |
| 휴 양 시 설 | 56.68 | - | 2 | 목재데크,파고라,조형벤치,<br>앉음벽 |
| 유 희 시 설 | - | - | - | - |
| 운 동 시 설 | - | - | - | - |
| 교 양 시 설 | - | - | - | - |
| 편 익 시 설 | - | - | - | - |
| 관 리 시 설 | - | - | 32 | cctv,안내판,공원등,수목투시등<br>분전함,볼라드,지하주차장안내 |
| 녹지 및 기타 | 1,401.68 | - | - | - |

마. 기타사항 : 본 사업시행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최초)안은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끝.

◈ 강북구공고 제2024-1674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76-51번지 강북구고시 제2005-39호(2005.7.7.)로 최초 결정되고 강북구고시 제2009-75호(2009.12.31.)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한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강 북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다.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① | 공공공지 | 강북구 수유동 576-51 | 207 | 증) 26 | 233 | 강북구고시 제2005-39호 (2005. 7. 7.) | 면적 증가 (26㎡) |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
| ① | 공공공지 | 면적 증가 (26㎡) |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해 필지(수유동 576-51)경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

라.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02-901-6845) 또는 공원녹지과(☎ 02-901-6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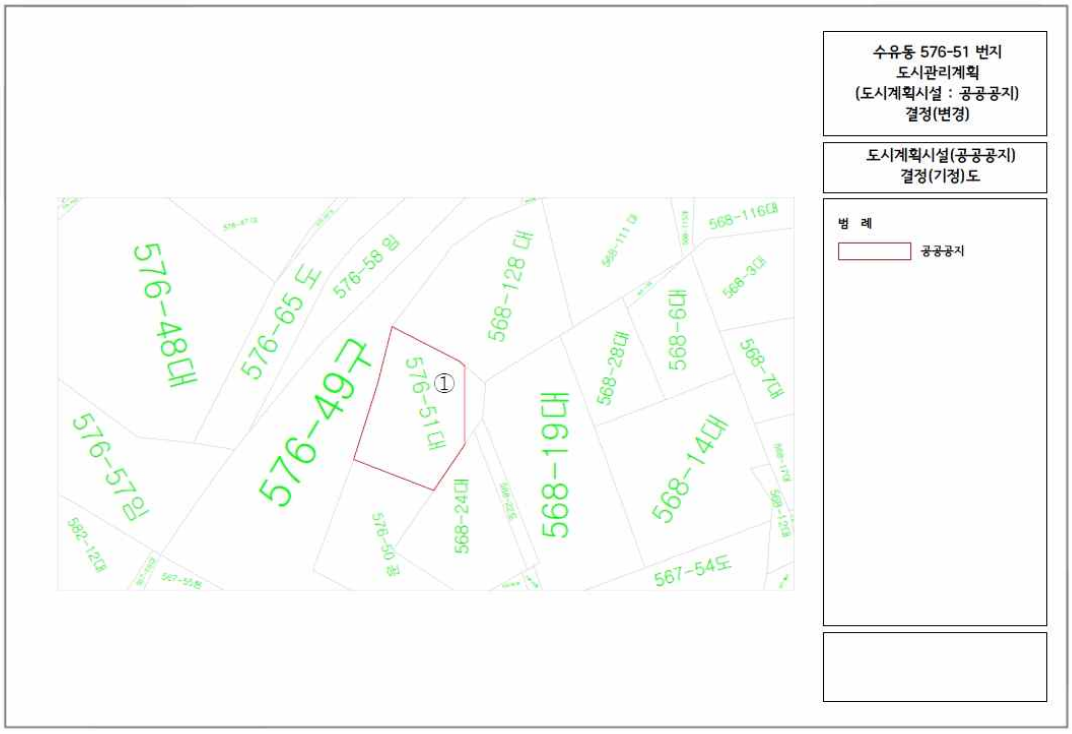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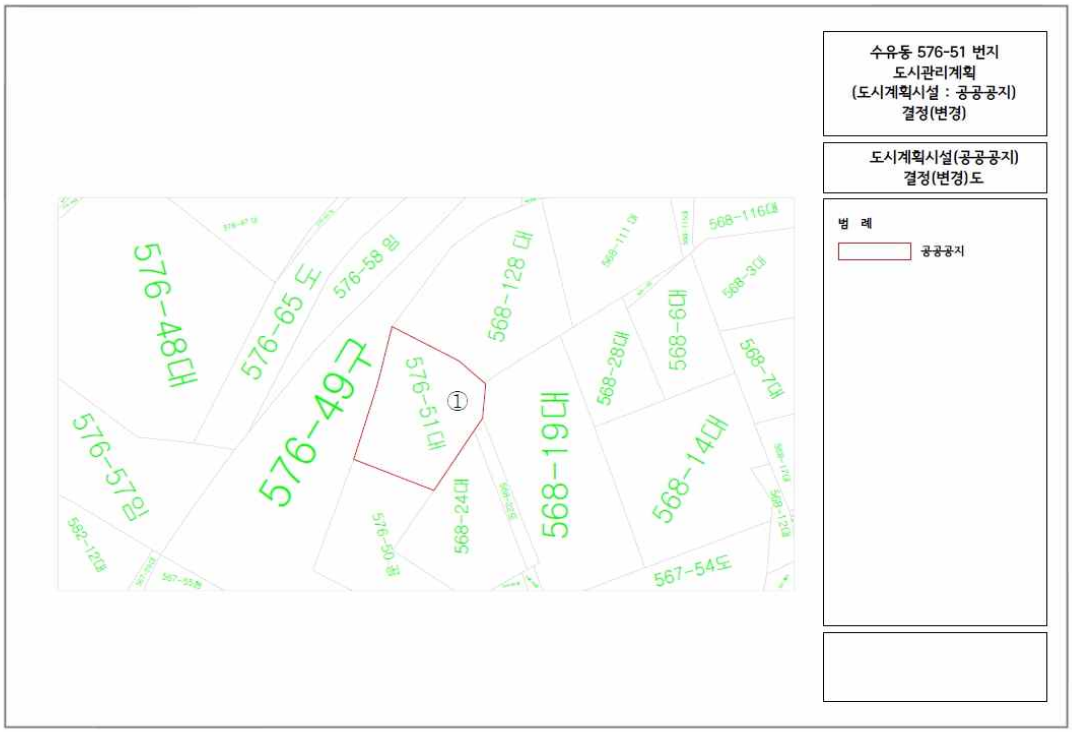

◈ 강북구공고 제2024-1682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27-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강 북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02-901-6844)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A | 공공청사 | 우체국 | 강북구 미아동 127-9번지 | - | 증)2,097.5 | 2,097.5 | - | |

○ 건축물의 범위 결정 조서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 60 이하 | 200 이하 | 7층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 결정 사유서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
| 공공청사 | ○ 공공청사(우체국) 신설<br>- 면적: 2,097.5㎡ | ○ 우체국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확보하고, 현재 노후된 강북우체국 건축물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 |

라.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시계획과(☎02-901-6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도

◈ 동작구공고 제2024-2270호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6-223호(2016.7.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9-45호(2019.6.27.), 제2019-69호(2019.8.16.), 제2020-69호(2020.6.18.), 제2021-282호(2021.12.2.), 제2023-144호(2023.12.21.)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까치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 명 칭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까치산근린공원-1지역)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36-16 등 12필지
- ○ 면 적 : 70,797㎡
- ○ 내 용 : 토지보상 70,797㎡,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등 : 따로붙임

사. 관계서류는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1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일련번호 | 소재지 지 번 | 지목 | 면 적(㎡) | | 소 유 자 |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지적 | 편입면적 | 주 소 | 성 명 | 지분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 | | 70,797 | 70,797 | | | | | | | |
| 1 | 사당동 산36-16 | 임야 | 47 | 47 | | 서울특별시 | 단독지분 | | | | |
| 2 | 사당동 산32-126 | 임야 | 17,295 | 17,295 | | 서울특별시 | 단독지분 | | | | |
| 3 | 사당동 1139-4 | 공원 | 3,105 | 3,105 | | 서울특별시 | 단독지분 | | | | |
| 4 | 사당동 산32-127 | 임야 | 2,634 | 2,634 | | 서울특별시 | 단독지분 | | | | |
| 5 | 사당동 산32-128 | 임야 | 4,508 | 4,508 | | 서울특별시 | 단독지분 | | | | |
| 6 | 사당동 산32-129 | 임야 | 3,682 | 3,682 | | 서울특별시 | 단독지분 | | | | |
| 7 | 사당동 산32-130 | 임야 | 4,809 | 4,809 | | 서울특별시 | 단독지분 | | | | |
| 8 | 사당동 산32-131 | 임야 | 574 | 574 | | 서울특별시 | 단독지분 | | | | |
| 9 | 사당동 산32-77 | 임야 | 5,133 | 5,133 | | 서울특별시 | 단독지분 | | | | |
| 10 | 사당동 산44-29 | 임야 | 6,115 | 6,115 | | 서울특별시 | 단독지분 | | | | |
| 11 | 사당동 산44-30 | 임야 | 10,240 | 10,240 | | 서울특별시 | 단독지분 | | | | |
| 12 | 사당동 산45-14 | 임야 | 12,655 | 12,655 | | 서울특별시 | 단독지분 | | | | |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일련번호 | 소재지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이용현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및내용 | |
| 1 | 사당동 산44-29 (사당로16라길 78) | 건물 | 55㎡ | 1 | | | 서울특별시 | | | | 기존 무허가 |
| | | 담장1 | 13.52㎡ | 1 | | | | | | | |
| | | 담장2 | 11.78㎡ | 1 | | | | | | | |

| 일련번호 | 소재지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이용현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및내용 | |
| | | 대문1 | 1.6㎡ | 1 | | | | | | | |
| | | 대문2 | 1.44㎡ | 2 | | | | | | | |
| | | 보일러실 | 1.96㎡ | 1 | | | | | | | |
| | | 가스보일러 | - | 1 | | | | | | | |

◈ 동작구공고 제2024-2271호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6-223호(2016.7.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53호(2020.5.21.), 제2020-65호(2020.6.18.), 제2021-287호(2021.12.2.), 제2023-147호(2023.12.21.)로 실시계획인가(변경) 된 까치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 명 칭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까치산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32-78 등 3필지
- ○ 면 적 : 1,894㎡
- ○ 내 용 : 토지보상 1,894㎡, 지장물 보상, 영업권 보상,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등 : 따로붙임

사. 관계서류는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1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일련번호 | 소재지 지 번 | 지목 | 면 적(㎡) | | 소 유 자 |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지적 | 편입면적 | 주 소 | 성 명 | 지분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및내용 | |
| | 계 | | 1,894 | 1,894 | | | | | | | |
| 1 | 사당동 산32-78 | 임야 | 590 | 590 | | 서울특별시 | 단독지분 | | | | |
| 2 | 사당동 산44-28 | 임야 | 1,276 | 1,276 | | 서울특별시 | 단독지분 | | | | |
| 3 | 사당동 산32-122 | 임야 | 28 | 28 | | 서울특별시 | 단독지분 | | | | |

##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 일련번호 | 소재지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이용현황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및 내용 | |
| 1 | 사당동 산32-78 (사당로 10길 87-6) | 건물 | 39㎡ | 1 | | | 서울특별시 | | | | 기존 무허가 건물 |
| | | 창고 | 6㎡ | 1 | | | | | | | |
| | | 부속건물 | 14㎡ | 1 | | | | | | | |
| | | 화장실 | 1㎡ | 1 | | | | | | | |
| 2 | 사당동 산32-78 (사당로 10길 87-8) | 건물 | 80㎡ | 1 | | | 서울특별시 | | | | 기존 무허가 건물 |
| | | 창고 | 5㎡ | 1 | | | | | | | |
| | | 창고 | 3㎡ | 1 | | | | | | | |
| | | 테라스 | 7㎡ | 1 | | | | | | | |
| | | 축대 | 22m | 1 | | | | | | | |
| | | 담장 | 20m | 1 | | | | | | | |
| | | 대문 | | 1 | | | | | | | |
| 3 | 사당동 산32-78 (사당로 10길 97) | 건물 | 110㎡ | 1 | | | 서울특별시 | | | | 유허가 건물 |
| | | 부속건물 | 9㎡ | 1 | | | | | | | |
| | | 화장실 | 8㎡ | 1 | | | | | | | |
| | | 목조구조물 | 15㎡ | 1 | | | | | | | |

# 사용 또는 수용할 영업권 조서

| 일련번호 | 소재지지번 | 물건의 종류 | 상호 | 수량 | 영업권의 종 류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및 내용 | |
| 1 | 사당동 산32-78 (사당로 10길 97) | 건물 1층 | 사당골 | 1 |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 | 서울특별시 | | | | 유허가 건물 |

◈ 강동구공고 제2024-2472호

##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29호(2006.9.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87호(2023.3.1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암사역사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준비를 위한 토지측량 및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3.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21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라.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의내용: 공원조성(토지보상)
바. 규　　모: 토지보상 3,754㎡
사.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7. 12. 31일까지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따로 붙임(이해관계인 추가)
자.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장소: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지분 | 성명 | 주소 |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 |
| 계 | | 1필지 | | 3,754 | 3,754 | | | | | | | |
| 1 | | 암사동 213 | 대 | 3,754 | 3,754 | 박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 30*동 1***호(**동) | 1/2 | 하*은행 | 서울특별시 **구 ***로 ** (***2가) | 근저당권 | |
| | | | | | | 박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 30*동 1***호(**동) | 125/3754 | 하*은행 (**피비센터지점) | 서울특별시 **구 ***로 ** (***1가) | 근저당권 | |
| | | | | | | 이알버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길 **, A동 ****호(**동) | 495/3754 | | | | |
| | | | | | | 이*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길 **, A동 ****호(**동) | 1257/3754 | 서울특별시 | | 구분지상권 | |

# 보 상 용 지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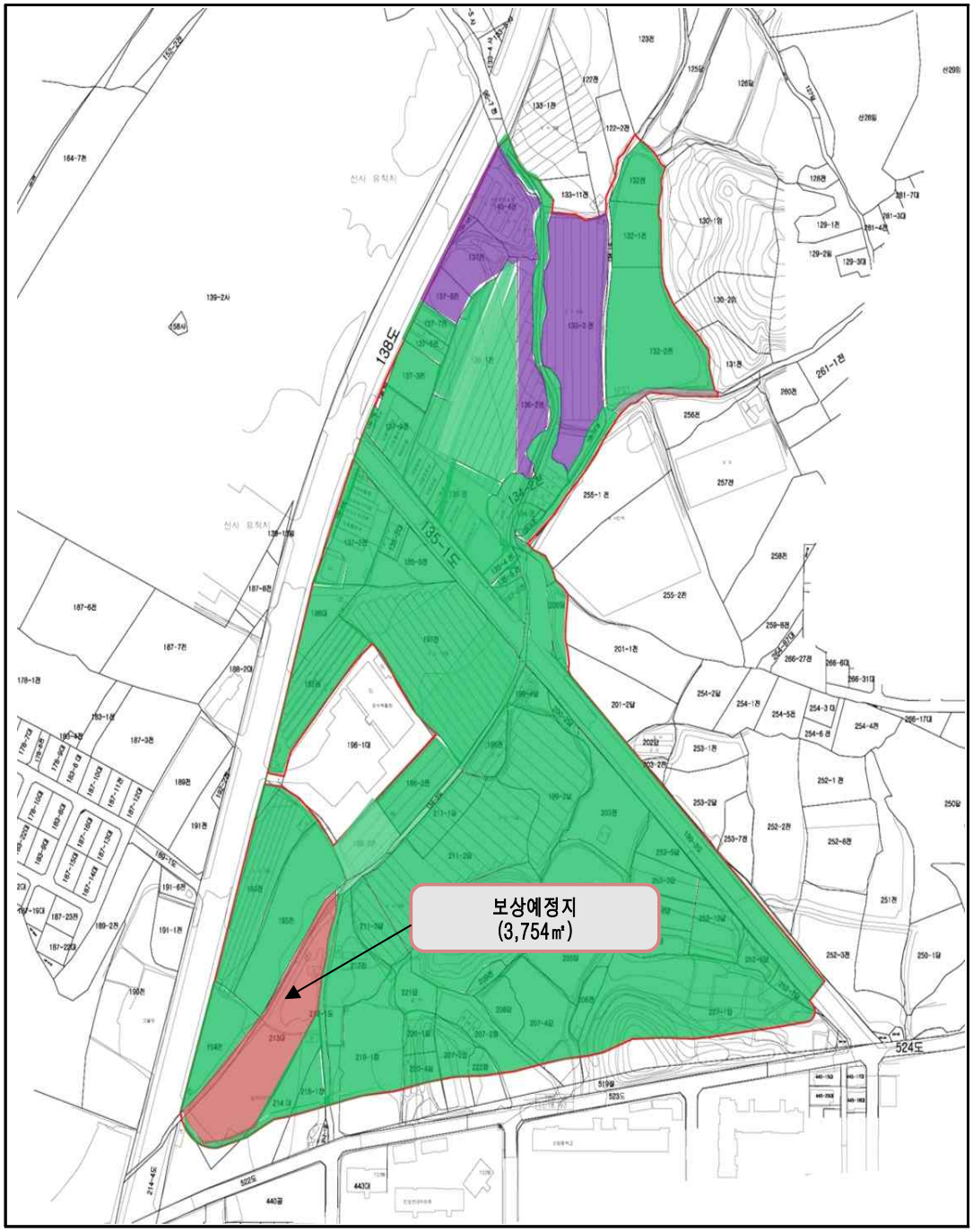

#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96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 허가 받은자 | | 점용허가(사용) 개요 | | | | 허가 연월일 |
|---|---|---|---|---|---|---|
| 성 명 | 주 소 | 허가구역 | 점용면적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
| 미래조선기술 |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47 10동 309호 | 서울시계내 한강 (광진구 강변북로 2160) | (선박2척) 641.28㎡ | 뚝섬유선장 상부공사보조 | '24. 12. 15. ~ '25. 03. 14. | '24. 12. 12. |

###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97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 허가 받은자 | | 점용허가(사용) 개요 | | | | 허가 연월일 |
|---|---|---|---|---|---|---|
| 성 명 | 주 소 | 허가구역 | 점용면적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
| 미래조선기술 |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47 10동 309호 | 서울시계내 한강 (광진구 강변북로 2160) | (선박1척) 403.2㎡ | 뚝섬유선장 상부공사보조 | '24. 12. 15. ~ '25. 03. 14. | '24. 12. 12. |

###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98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 수허가자 | |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 | | | 허 가 연월일 |
|---|---|---|---|---|---|---|
| 성 명 | 주 소 | 점용위치 | 점용면적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
|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206, 6층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8 | 86㎡ (동력선 6척) | 조종면허시험 대행업무 등 | ~ 2025. 12. 31. | 2024. 12. 13. |

# 사업소공고

◈ 금천소방서공고 제2024-7호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금 천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 업 종 | 상 호 | 등록번호<br>(등록일자)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전문<br>소방시설관리업 | ㈜신화방재 | 제 서울(금천)-2024-0007호<br>(2024.12.11.) | 이명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br>벚꽃로 254, 509호 | 02-2366-3211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6981-64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포소방서공고 제2024-3호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마 포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 업 종 | 상 호 | 등록번호<br>(등록일자)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전문<br>소방시설관리업 | 오성전기소방(주) | 제서울(마포)-2024<br>-0003호<br>(2024.12.10.) | 김인태,이남덕 | 서울특별시 마포구<br>모래내로7길 28, 3층 | 02-303-683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 관리업담당(☎02-6981-78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소방서공고 제2024-42호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송 파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 업 종 | 상 호 | 등록번호<br>(등록일자) | 대표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전문<br>소방시설<br>관리업 | ㈜동성이앤씨원 | 제 서울(송파)<br>-2024-0003호<br>(2024. 11. 25.) | 김철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br>30, 크레송빌딩 3층 | 02-423-8927 |
| | ㈜아세아방재 | 제 서울(송파)<br>-2024-0004호<br>(2024. 11. 27.) | 나판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성로26길<br>33 신화빌딩 2층 | 02-422-1191 |
| | ㈜명신화이어이엔지 | 제 서울(송파)<br>-2024-0005호<br>(2024. 11. 29.) | 김일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4길<br>35, 201호 | 02-406-3119 |
| | ㈜명신소방건설 | 제 서울(송파)<br>-2024-0006호<br>(2024. 11. 29.) | 김효진 | 서울특별시 송파구<br>백제고분로41길 25, 3층 | 02-425-0119 |
| | ㈜한국소방 | 제 서울(송파)<br>-2024-0007호<br>(2024. 12. 5.) | 이종은 | 서울특별시 송파구<br>백제고분로20길 1-14, 301호 | 02-539-2119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6981-52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 타

##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547호

###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신공항하이웨이(주) 대표이사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048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41-18번지
 - 면 적 : 81.4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변정보표시판 설치
 - 내 역 : 가변정보표시판 1개소

5. 점용기간 : (당초) 2020.01.01. ~ 2024.12.31.
 (변경) 2025.01.01. ~ 2029.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552호

##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7번지 일대(강서습지생태공원)
 - 면 적 : 4,59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강서습지생태공원 생물서식환경 개선 및 이용환경 재정비
 - 내 역 : 한강조망대, 습지관찰전망대, 생태체험학습장 등 설치

5. 점용기간 : 2024.1.25. ~ 2029.1.24.

6.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5.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557호

##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8, 165-33
   - 면 적 : 8,42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준설토 임시적치장 및 부대시설물 설치
   - 내 역 : 임시적치장 1개소, CCTV 2개소(H=8.0m),
     계근대 1개소(B=4.2m, L=10m), 컨테이너 1개소

5. 점용기간 : (당초) 2019.07.31. ~ 2024.12.31.
   (변경) 2025.01.01. ~ 2029.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558호

##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119특수구조단)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481-9, 484-3, 484-4, 485-29, 351-1번지 일원
 - 면 적 : 3,506.6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변 수난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광나루 수난구조대 설치
 - 내 역 : 청사신축 1개소, 펜스(H=1.5m, L=129m), 수상부교 및 도교 1식

5. 점용기간 : (당초) 2019.10.14. ~ 2024.12.31.
 (변경) 2025.01.01. ~ 2029.12.31.

| 기관의 장 |
| --- |
| 선람 |

| 공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